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1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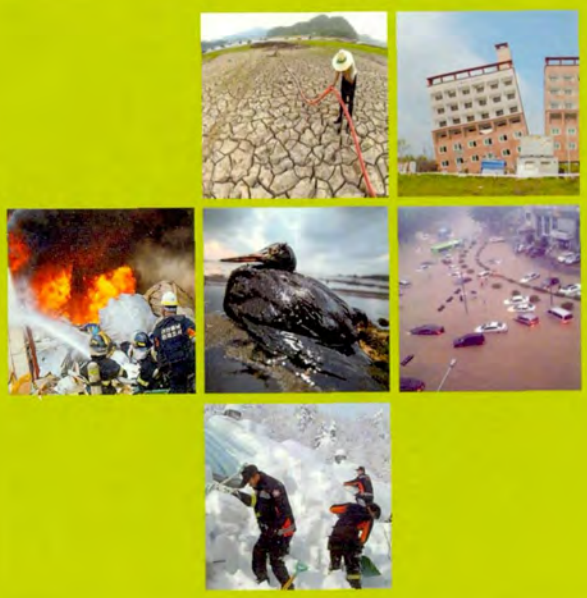

2016년 안전관리계획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20162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193-10



2016년 안전관리계획

서
AM 2016
16 11 23
행정자치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안 전 관 리 헌 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Ⅰ. 총 괄

1. 개 요 ····· 5
2. 성과 및 반성 ····· 6
3. 여건 및 전망 ····· 7
4. 추진방향 ····· 8
5. 재난안전관리 체계 ····· 10

Ⅱ.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자연재난 관리대책

1-1. 풍수해 ····· 33
1-2. 해일 ····· 66
1-3. 대설·한파 ····· 81
1-4. 낙뢰 ····· 93
1-5. 가뭄 ····· 105
1-6. 지진 ····· 117
1-7. 황사 ····· 123
1-8. 녹조 ····· 128
1-9. 적조 ····· 134
1-10. 폭염 ····· 142
1-11. 산사태 ····· 149

사회재난 관리대책

2-1. 대형화재 ····· 156
2-2. 문화재화재 ····· 167
2-3. 산불 ····· 178
2-4. 시설물재난 ····· 186
2-5. 지반침하 ····· 189
2-6. 저수지붕괴 ····· 199
2-7. 댐붕괴 ····· 205
2-8. 도로(육상화물운송) ····· 215
2-9. 철도교통사고 ····· 221
2-10. 해양선박(해수면 유·도선)사고 ····· 228
2-11. 내수면 유·도선사고 ····· 239
2-12. 유해화학물질사고 ····· 243
2-13. 생물테러 ····· 248
2-14. 대규모 해양오염 ····· 253
2-15. 대규모 수질오염 ····· 266
2-16. 에너지(전기·가스·석유)사고 ····· 273
2-17. 정보통신사고 ····· 299
2-18. 식용수 ····· 303
2-19. 환경(폐기물) ····· 315
2-20. 감염병 ····· 323
2-21. 가축전염병 ····· 329
2-22. 수산생물 전염병 ····· 340

안전관리대책

3-1. 어린이놀이시설 ····· 348

3-2. 승강기사고 ····· 350

3-3. 등산활동 ····· 353

3-4. 다중이용업소 ····· 359

3-5. 여름철물놀이 ····· 363

3-6. 내수면 수상레저 ····· 367

3-7. 도로교통사고 ····· 370

3-8. 산업단지 ····· 380

3-9. 농작업사고 ····· 391

3-10. 어업작업사고 ····· 403

3-11. 도청사 ····· 412

3-12. 공연장 ····· 417

3-13. 사회복지시설 ····· 422

3-14. 자연휴양림시설 ····· 434

3-15. 청소년시설 ····· 441

3-16. 가정·성·학교폭력 ····· 450

3-17. 자살예방 ····· 456

3-18. 식품안전사고 ····· 464

Ⅲ. 재정투자계획

1. 재정투자계획 ····· 471

Ⅳ.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1. 업무개요 ····· 481
2. 주요업무 ····· 481

Ⅴ. 행정사항

1. 재난 유형별 관리부서 현황 ····· 531
2. 도·시군 안전관리부서 연락처 ····· 534
3. 2016년도 재난대응훈련 계획 ····· 535
4. 재난안전 충남구현 업무협약 체결 기관현황 ····· 536
5. 행정사항 ····· 539

Ⅵ. 재난관리책임기관

1. 주요역할 및 협조지원사항 ····· 545

Ⅰ. 총 괄

목 차

Ⅰ. 총 괄

1. 개 요 ····· 5
2. 성과 및 반성 ····· 6
3. 여건 및 전망 ····· 7
4. 추진방향 ····· 8
5. 재난안전관리 체계 ····· 10

Ⅰ 총 괄

1. 개 요

가.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나. 수립목적

○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재난예방과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다. 성 격

○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별·단계별 대책**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계획 수립

❶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주기) → ❷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1년주기) → ❸ 시·도안전관리계획(1년주기) → ❹ 시·군·구안전관리계획(1년주기)

라. 수립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51개 유형

- 재난관리 대책 : 33개 유형(자연재난 11, 사회재난 22)
- 안전관리 대책 : 18개 유형(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 등)

○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 13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재정투자계획

○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등

2. 성과 및 반성

가. 성 과

○ 재난안전실 설치에 따른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점검·훈련 등 취약시기, 대상별 선제적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 통합지원 · 관리체계 획립에 역점

- 재난분야 연구를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최근 5년간 사고발생현황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13개 재난유형별 안전개선대책 도출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향상방안 마련, 안전한국훈련 등 사전적 예방·대비 노력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67개분야, 14,144개 시설 점검)
- 지역안전지수 부진지표 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중앙 건의
- 2015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 겨울철 자연재난 긴급대응 대책수립·운영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소방의 구조·구급 현장대응 능력 강화

- 사고다발지역 지정관리, 인명구조율 증가(14년 21천건 → 15년 24천건 14%↑)
- 선제적 출동단계 체제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신속한 관제기능 강화

나. 반 성

○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아직도 미흡하며, 메르스 사태 및 최근의 가뭄 등 대형 사회재난·자연재난 예방과 대응에는 도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한계

○ 각종 안정정책 추진에도 불구, 재산피해 증가추세* 이며, 전문 구급인력 확보 등 부족

* 최근 5년간 연평균 2,867건(전년대비 1.02%↓), 재산피해 21,785백만원(전년대비 6.39%↑)

○ 물놀이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련 지자체와 협업 및 공조 미비

3. 여건 및 전망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자연재난 위험 상존

* 우리나라 기온은 3.0~5.9℃ 상승(全지구는 1.8~3.7℃ 상승, 2099년 가정)

○ 기온 상승으로 기존 전염병의 확산이 빨라지며, 신종 전염병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나. 도민의 안전수요 증가에 따른 부응 필요

○ 삶의 질 향상으로 도민의 안전욕구 및 기대 증가로 자연재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한 예방안전시스템 필요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안전취약 요인이 증가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10년 75천명 → '15.9월 90천명 20%↑)

다. 대형·복합재난 등 재난발생 양상변화 및 신 유형의 재난발생

○ 경제성장 및 도시화로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대형·복합 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 고비용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한 고층빌딩의 중력에 의한 지반침하 및 대형화재 등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 예상

라. 세계화로 인한 위험 이동성 증가

○ 세계화에 따른 신종전염병의 확산, 해외 유해식품, 마약·불법 의약품의 유입증대로 도민건강 안전성 위험 증대

○ 국가 간 인구이동 증가로 테러 등 다양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고, IS가 우리나라를 '십자군동맹 62개국' 포함, 테러위험 증가

* 도내 불법체류자 약 3,500여명 거주(아산지역 2,000여명 추정)

4.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전	안전한 충남, 행복한 도민
목표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추진 전략	도민 안전의식·역량 향상	·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신고·단속을 통한 엄격한 법질서 확립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 선제적·예방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 재난현장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예·경보 및 종합관제 시스템 강화 · 계절별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시설물 사전예방 점검 및 안전기반 구축	·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도민 안전의식 · 역량 향상

○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주간을 안전주간으로 설정, 안전문화운동 전개

○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 · 홍보 실시

- 안문협 및 학교,직장,가정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 실시

○ 신고·단속을 통한 엄격한 법질서 확립

- 법규 위반행위 협업 신고체계 구축 등 공익신고 활성화

나. 재난 ·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 안전점검·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가능토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선제적·예방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 선제적 위험요소 제거, 안전지수 향상대책, 사전예방사업 투자확대 등

○ 재난현장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 재난유형별 피해발생 사례 중심으로 지휘부·대응부서 시뮬레이션 훈련강화

다.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호우, 태풍, 대설 등에 대비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 유지

○ 재난 예·경보 및 종합관제 시스템 강화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경보시설 구축, 재난관제시스템 정상 가동 유지

○ 계절별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 재난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매뉴얼 정비 등

라. 시설물 사전예방 점검 및 안전기반 구축

○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 동절기, 해빙기, 행락철 등 시기별 사전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5. 재난 · 안전관리 체계

가.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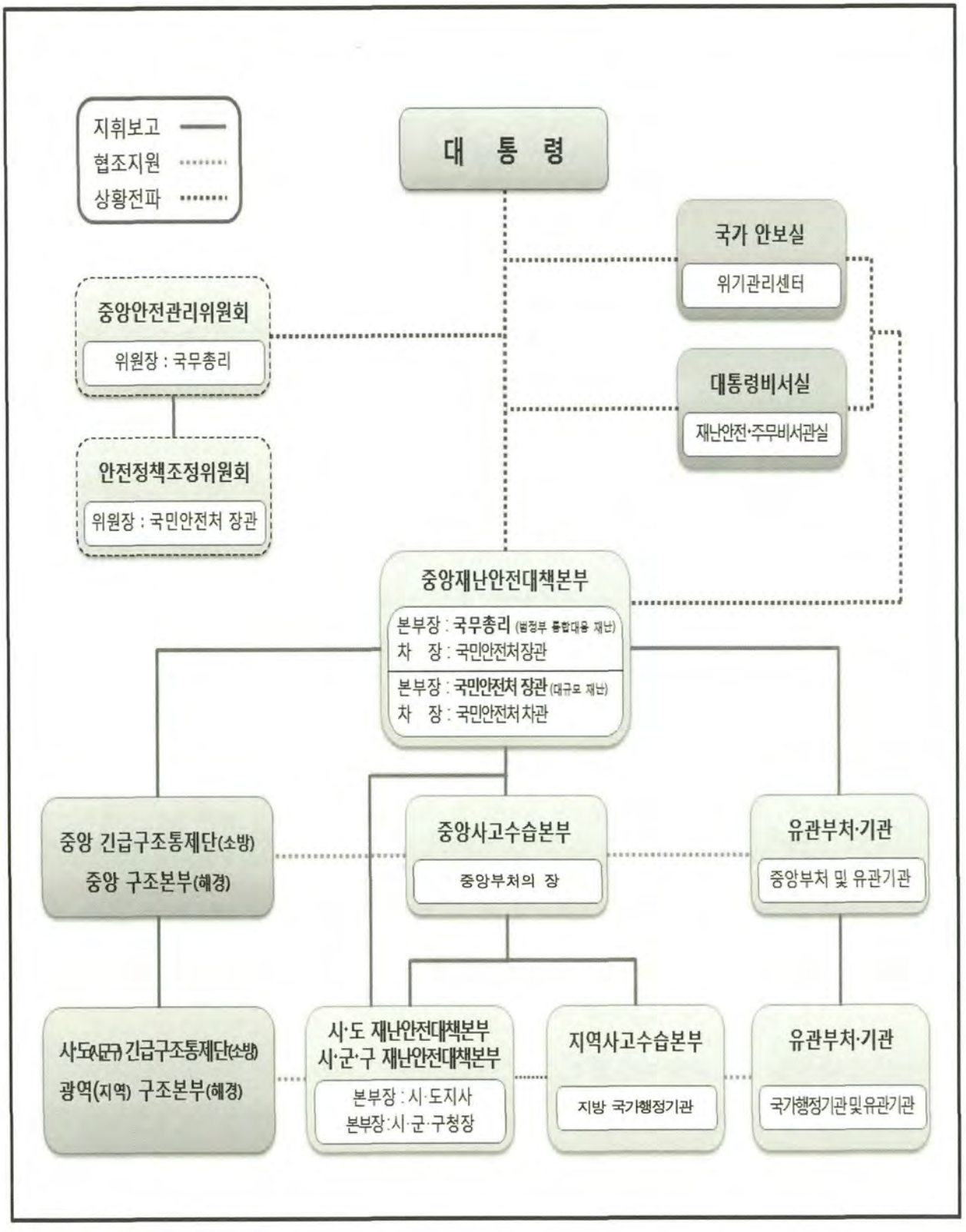

나.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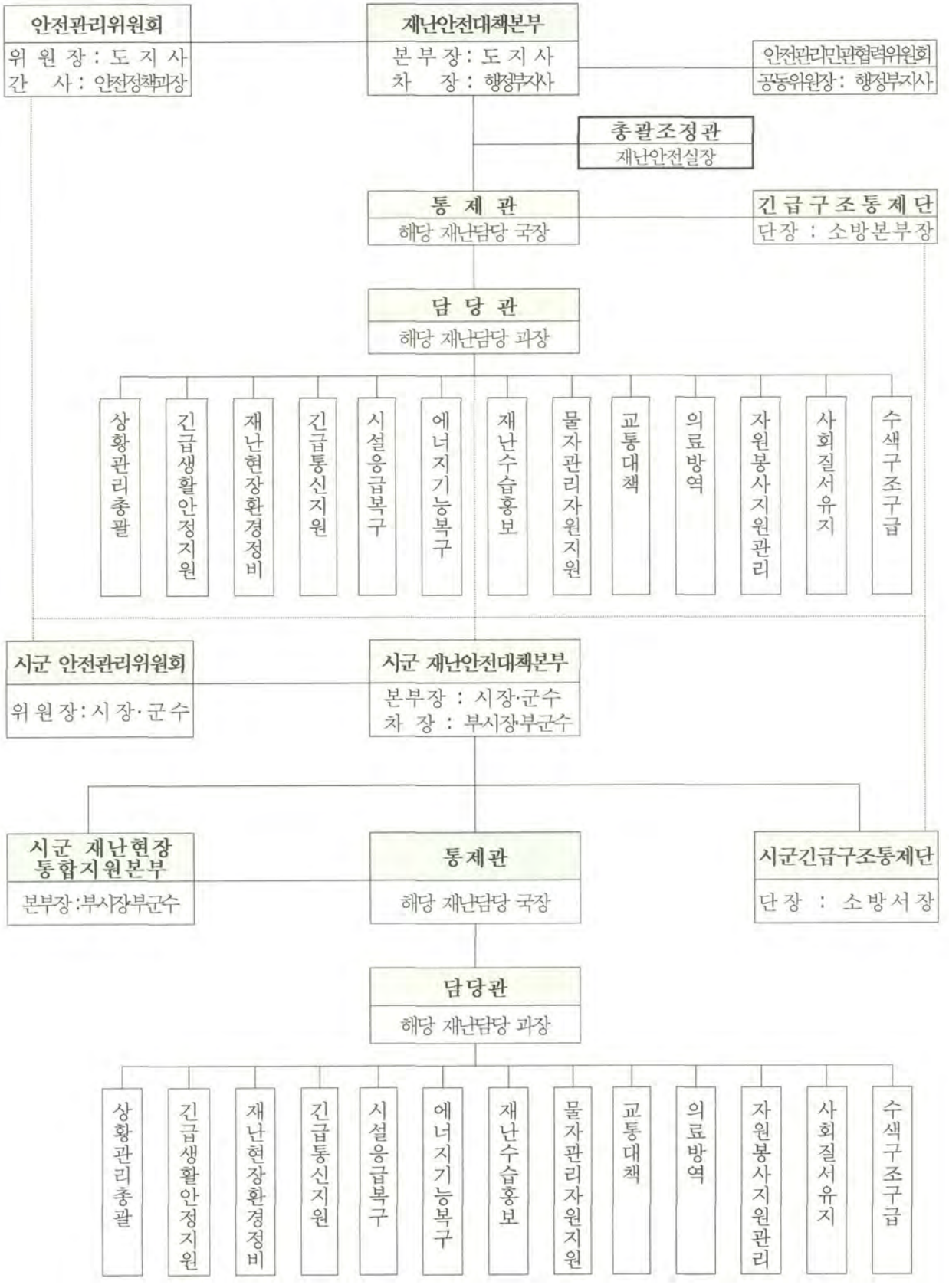

다. 협업기능별 주요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 정부 및 도차원의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상황실 설치 운영 - 현장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구급구조 지원기능 수행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 중대본 결정사항 이행계획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보고 ○ 지시사항 및 가족지원 요구사항 등 추진상황 보고 ○ 중앙 재대본에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보고 ○ 피해정보 수집, 보고, 분석, 처리 ○ 중대본 등 부처별 각 상황실 운영상황 협조 관리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현장수습조정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하고 민심동향 확인 등	〈주관부서〉 재난수습주관부서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 각종 상황실 통신, 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공무원 근무명령 및 급식·야식 지원 등 후생복지와 복무 단속 ○ 본부장 · 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재난관리 책임 및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지원부서〉 총무과 정보화지원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 도 구호지원반 편성 및 현장긴급배치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민간단체 지원협조 요청 ○ 구호물품 사전 구매선 지정 협조요청 ○ 도내 각 기관 구호품 현황파악 및 지원협조 요청 ○ 장기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 - 임시주거시설 장소 지정을 위해 시·군과 협의 - 구조자 응급조치 및 긴급 수용시설(학교, 실내체육관 등) 조치 ○ 실종자 가족 정서·심리치료 등 긴급 위기돌봄 서비스 제공 ○ 사망자 대비 시·군 장례식장 등 안치실 현황파악 ○ 구호물자 배분센터 설치 및 운영 - 구호물자 수송·접수·배분·보관 구성 등 관리체계 철저 ○ 식품위생분야 지원계획수립 및 가용 숙박시설 파악 ○ 제공되는 구호용 식음료 안전관리 지도 및 식중독 예방활동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지원부서〉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119광역기동단

구 분	임무 및 역할	주관부서
재난현장 환경정비	○ 각종 쓰레기로 인해 전염병 등 제2차 피해 예방위한 환경정비 ○ 쓰레기 임시 폐기장 지정 운영 및 대규모 발생시 장비동원 계획수립 및 처리 ○ 재난 쓰레기 발생정보 수집 분석하여 처리 및 수집운반 계획 수립 및 처리 ○ 각종사고로 인한 기름·화학물질·유해가스 등 유해물질의 수거 및 처리 ○ 특정쓰레기 처리방안 및 쓰레기 처리사항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수행 ○ 인근 시·도와 시·군·구 유관기관 장비협력체계 구축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해양정책과 <지원기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긴급통신 지 원	○ 긴급통신 지원 -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지역 상황관리 및 무전기 지원 - 기술인력 및 대체 통신자원 지원방안 등 상황관리 복구 위한 긴급복구반 투입 - 통신두절 장기화에 따른 도-시·군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강구 ○ 재난 안전·정보·건의 전용 홈페이지 구축 활용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수송지원 협의(고립지역 통신장비 및 물자수송차량 지원) <긴급통신지원 역할> ○ 재난현장지휘소 내 공동정보센터 운영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 ○ 현장내, 현장과 지휘소, 재난대책본부와의 통신망 구성·운영 ○ 기관간 통신, 재난현장 통합지휘통신 구성 및 대체통신수단 지정 **<현장 내>** ○ 긴급연락 체계 - 현장지휘소간, 현장요원간, 현장지휘소와 요원간 음성통화 ※ 일제지령, 그룹통화, 개별통화, 비상통화 기능 ○ 통신수단 - 주 통신수단(무선단말기 : UHF, VHF, 이동기지국) -대체 통신수단(무선:위성전화기, 해드폰, 생활무전기) **<현장지휘소와 재난상황실간>** ○ 긴급연락체계(음성), 문서정보·영상 등 멀티미디어 ○ 통신수단 - 주 통신수단(유선전화, Fax, PC, SNG차량) - 대체 통신수단(무선:위성전화기, 해드폰, 생활무전기)	<주관부서> 정보화지원과 <지원기관> ·소방본부 ·도경찰청 ·KT ·한국전력 ·SKT, LGU+

구 분	임무 및 역할	주관부서
시설응급복구	○ 인명구조 장비 투입 및 출동로 확보 위한 도로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 긴급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기업 포함) 자원 조정·통제 - 붕괴사고 등 중장비를 시용한 구조작업 지원 - 통제단장의 승인을 받아 잔해물 긴급 제거 처리 - 자원의 통행로 긴급구조 비상출동 수송로 확보 유지 ○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대응 - 공공시설 응급복구(도로, 교량, 하천, 하수도, 수리, 항만, 어항, 학교, 산림, 철도, 소규모시설, 소하천, 군사, 문화 등) - 민간시설 응급복구(농작물, 비닐하우스, 낙과, 축사, 육상양식장, 가축·수산생물 폐사 등)	<주관부서> 유형별 매뉴얼에 의함 <지원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지원협회 ·육군32사단 ·해군
에너지 기능복구	○ 에너지 시설 긴급복구 기본대응 활동 - 가스시설, 석유시설, 교통두절, 생활기반서비스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 · 확인 - 도로 · 교량, 하천,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 · 확인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설치 - 각종 사고에 대비분야별 사고대책 처리반 연락체계 유지 및 유관기관 업무 순위 조정 ○ 가스, 전기, 유류 등 지역내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활동 - 유형별 대응구역 SOP 설치·운영 - 가스 : 현장 활동요원의 안전과 가스시설조사, 파손된 가스라인 복구를 위한 자원 배치 - 전력 : 단전된 전선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자원 배치 - 석유 : 에너지 비상대책반 구성 및 대국민 에너지 절약 참여 협조 요청	<주관부서> 에너지산업과 <지원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수습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 전파(인터넷, 지역방송사) ○ 대언론 창구 단일화 및 재난상황, 구조구급상황 정확한 정보제공 ○ 언론매체 사용공간 확보, 취재라인 제공, 브리핑 준비 및 실시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방송사 자막요청,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집중 ○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및 위성중계차량 활용 피해상황 중계 ○ 각종 언론 인터뷰 전담, 언론사가 요구하는 자료 수집 및 제공	<주관부서> 홍보협력관 <지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기상대

<table>
<tr><th>구 분</th><th>임무 및 역할</th><th>주관부서</th></tr>
<tr><td>물자관리
자원지원</td><td>○ 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자재·장비 등 방재자원 동원 협력체계 구축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대책 계획수립
- 피해규모에 따라 부족한 방재자원 동원방안 모색
- 방재자원 동원협약에 의해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 부족자원 동원에 따른 정산 및 재비축 실시
○ 재난 상호협력 기능별 필수장비 확보
<table><tr><th>구 분</th><th>세 부 항 목</th></tr><tr><td>수색·구조·구급</td><td>구명보트, 유압펌프, 구급차, 로프총</td></tr><tr><td>의료방역</td><td>심실제세동기, 척추고정판, 방역차량, 앰블런스, 연막소독기</td></tr><tr><td>재난구호</td><td>구호물품지원차량, 헬기</td></tr><tr><td>복 구</td><td>백호우, 페이로더, 덤프트럭, 집게차, 양수기, 비상발전기</td></tr><tr><td>환경정비</td><td>청소차, 분뇨수거차, 폐유운반차량(탱크로리), 폐기물운반차량</td></tr></table></td><td>〈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기관〉
·각 부서
·전국재해구호협회</td></tr>
<tr><td>교통대책</td><td>○ 버스노선 증회 운행, 전세버스 운행 지원 등 여객자동차 적극 대처
○ 긴급수송지원(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운행지원 요청대비 준비완료
○ 사고현장 주변도로 점검·정비 등 안전관리 지시 및 요청(도로관리청)
○ 우회도로 확보 및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및 교통혼잡유발 불법주차 견인조치
○ 피해지역 대중교통 대책확립 및 주차안내, 교통질서 계도</td><td>〈주관부서〉
도로교통과
해양정책과
〈지원기관〉
·국토관리청</td></tr>
<tr><td>의료·방역</td><td>○ 현장응급진료소 설치·운영 및 충남권역 응급의료센터 출동 요청
- 인근지역 병원 응급실 및 병상수 등 수용가능 자원 파악
- 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시·군 구급차량과 소방 응급구조차 출동 요청
- 진료소, 구급차, 근무자 명령 및 근무조 편성
○ 구조자, 중상자, 피해자 가족 등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
○ 보건소 등 응급 의료기관과 지정병원 확보 관리
- 보건소 지역별 종합병원, 응급 의료기관 등 사전 파악 연락처 및 현황 관리
- 지역별 종합병원, 응급 의료기관 등 사전 파악 연락처 및 현황 관리
○ 사망자, 중상자 분류 및 후송
- 사망자 발생 : 영안실 이송, 시신안치소, 신원확인(DNA 검사 등)
○ 감염병 예방 등 방역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관리 조치, 환자 및 고위험군 관리, 검체 정보수집 총괄관리
- 긴급방역대책반장의 출동명령에 의해 즉시 현장출동 예방활동 수행</td><td>〈주관부서〉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지원기관〉
·보건환경연구원
·15개시군보건소</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임무 및 역할</th><th>주관부서</th></tr>
<tr><td>자원봉사
관 리</td><td>○ 안내소와 대기소 설치(텐트 책상 등 비품확보)
- 자원봉사자 및 단체 모집과 자격심사, 배치, 보험가입 등
- 자원봉사 지원관리, 피해상황과 자원봉사자 규모파악
○ 봉사단체 지원·협조체제 구축 및 행동요령 등 교육시킨 후 임무부여
○ 자원봉사자 심리치료, 건강서비스, 휴식처 등 제공
○ 구호센터 및 수용시설 현지에 본부 설치 운영
○ 봉사자들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시설, 장비·물자 등에 대해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대응계획 수립</td><td>〈주관부서〉
·도민협력새마을과
〈지원기관〉
·충남자원봉사센터</td></tr>
<tr><td>사회질서
유 지</td><td>○ 재난현장에서의 현장통제, 교통통제, 치안 등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
- 신속한 구조자 이송을 위한 현장 교통통제 라인 점검
- 희생자 가족 안전과 비밀보장을 위한 포토라인·치안라인 점검
○ 현장 각종 범죄 예방 및 시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확보
○ 인명구조 지원체계 확립, 재난상황반 대응조치 구성 및 신속대응
○ 구명로프 등 인명구조 장비 확보 즉시 출동, 통제선, 강제력 행사
○ 취약지·취약시설 점검 및 생활안전 순찰강화
○ 사고발생 우려지역 교통통제 등 사고예방활동 강화
○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치안유지 등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업무는 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전담 추진
○ 상황실과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상황관리 총괄직원 1인 파견근무</td><td>〈주관기관〉
충남지방경찰청
〈지원부서〉
·자치행정과</td></tr>
<tr><td>수색구조
구 급</td><td>○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추진
○ 각종 지원시설 수용 및 배치계획 수립
- 각종 재난 시 조난·실종 발생 시 수색과 구조업무 수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자 이송, 실종자 수색, 구조구급 총괄관리
○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table>
<tr><th>대응단계</th><th>재난규모</th><th>활동 개요</th><th>비 고</th></tr>
<tr><td>대응단계 1</td><td>일상적 사고</td><td>○소방서 긴급구조대가 일상적인 소방력으로 대응</td><td></td></tr>
<tr><td>대응단계 2</td><td>중형재난</td><td>○소방서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되고, 인근 소방서 구조진압반과 소방본부 구조진압반 부분 가동</td><td>재난사태 선포</td></tr>
<tr><td>대응단계 3</td><td>대형재난</td><td>○소방본부 구조진압반 완전 가동</td><td>특별재난지역선포</td></tr>
</table></td><td>〈주관부서〉
119광역기동단
〈지원기관〉
·충남경찰청
·육군32사단
·응급의료센터
·해양경비안전서
·대한적십자사</td></tr>
</table>

라.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기본 임무]

초기가동

구 분		기 본 임 무
초기대응		
	상황보고반	피해상황 파악
		상황보고서(상황판) 작성 및 보고
		회의준비 및 결과 전파
	응급의료반	응급의료소 설치(소장 : 보건소장)
		사상자 현황 파악·보고(방재센터와 공조)
	내부자원반	통제단 설치, 통제선 설치
		자원대기소 설치·운영

종합방재센터 초기대응

상황보고반	보고서 작성, 지휘부 보고
	사상자 현황 파악 보고
언론대응반	언론취재 동향파악 보고
	언론브리핑 제공
통신관리반	소방정보통신망 관리

전면가동

구 분		기 본 임 무
통제단장(본부장)		상황보고 청취, 지휘권 인수
		지휘부 상황보고, 현장 지휘·통제
		상황판단회의 주재
		통제단 운영규모 축소·확대 판단
통제단장 연락관		통제단장 개인장비, 통신응대 보좌
		통제단장 현장지휘 임무수행 보좌
		도지사 등 의전관리 및 연락망 확보
상황관리부	상황보고반	피해상황, 진행사항 파악 및 보고
		상황보고서 작성(지휘버스 공조)
		현장대응 필요정보 제공 및 지원
	언론대응반	종합방재센터와 공조하여 현황 일치 확인
		언론브리핑 자료작성 및 주기적 실시
	현장조사반	피해조사, 원인조사
		피해액 산정, 원인규명
	정보수집반	피해건물현황, 관계자 현황 등 정보 파악
		현장관련 모든 정보 수집하여 제공
현장지휘부	화재진압반	현장 화재진압상황 파악, 개인장구 점검
		진압대원 및 진압장비 방면 배치
		소방용수확보, 진압작전회의 개최
	인명구조반	현장 구조진압상황 파악, 개인장구 점검
		구조대원 및 구조장비 방면 배치
	응급의료반	사상자현황, 이송병원 현황 파악 및 보고
		구급대 재배치, 의료진 교대, 의료물품 지원
	자원관리반	현장투입 자원 파악, 자원대기소 설치
		교대조 편성 및 투입, 자원소요 파악
	기동반	구조진압활동, 특수장비 지원 및 조언
자원관리부	내부자원반	응소자원 점검, 대원 안전점검
		응소자원 현황 자원관리반 제공
	외부자원반	자원등록, 교대조 편성 및 투입
		자원현황 파악 및 각 부·반 제공
		동원자원에 대한 필요물품 지원
	의용소방자원반	의소대 자원현황 파악
		등록관리, 교대조, 휴식조 편성 및 투입
		차량 출입통제, 필요물품 제공
	급식보급반	여성의소대 급식반 임무부여, 의·식·주 제공
		배식관리, 장비응급수리

❖ 종합방재센터 초기대응은 현장 초기대응 3개반과 유기적으로 공조(협력)하여 임무 수행

[조 직]

구 분			직 위 및 편 제
통제단장			본부장
통제단장 연 락 관	1반	반장	소방행정팀장
		반원	의회 소방경, 소방행정팀 소방경·소방위 · 소방장1 · 소방장2 · 소방교
	2반	반장	기획예산팀장
		반원	기획예산팀 소방경 · 소방위1 · 소방위2
종합방재센터	센터장		종합방재센터장
	상 황 보 고 반	반장	상황팀장(1팀장 · 2팀장 · 3팀장)
		반원	상황팀(1팀 11명, 2팀 12명, 3팀 12명), 소방정보통신팀 소방경
	언 론 대 응 반	반장	상황지원팀장
		반원	상황지원팀 소방경 · 소방교1 · 소방교2
	통 신 관 리 반	반장	소방정보통신팀장
		반원	소방정보통신팀 통신7급, 소방위 · 소방교
상황관리부	부 장		119광역기동단장
	상 황 보고반	반장	재난대책팀장
		반원	재난대책팀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언 론 대응반	반장	교육홍보팀장
		반원	교육홍보팀 소방경
	현 장 조사반	반장	현장조사팀장
		반원	현장조사팀 소방경 · 소방위
	정 보 수집반	반장	예방지도팀장
		반원	예방지도팀 소방경 · 소방위
현장지휘부	부 장		화재대책과장
	화 재 진압반	반장	화재대책팀장
		반원	화재대책팀 소방경 · 소방위
	인 명 구조반	반장	구조팀장
		반원	구조팀 소방경 · 소방위
	응 급 의료반	반장	구급팀장
		반원	구급팀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자 원 관리반	반장	기동대장
		반원	기동대 소방위 · 소방교
	기동반	반장	기동대 1 · 2 · 3팀장(소방경)
		반원	기동대원(21명)
자원관리부	부 장		소방행정과장
	내 부 자 원 반	반장	소방감찰팀장
		반원	소방감찰팀 소방경 · 소방위 · 소방교
	외 부 자 원 반	반장	안전보건팀장
		반원	안전보건팀 소방경 · 소방위
	의용소방 자 원 반	반장	의용소방팀장
		반원	의용소방팀 소방경
	급 식 보 급 반	반장	회계장비팀장
		반원	회계장비팀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1 · 소방교2

마. 현장 응급 의료소 운영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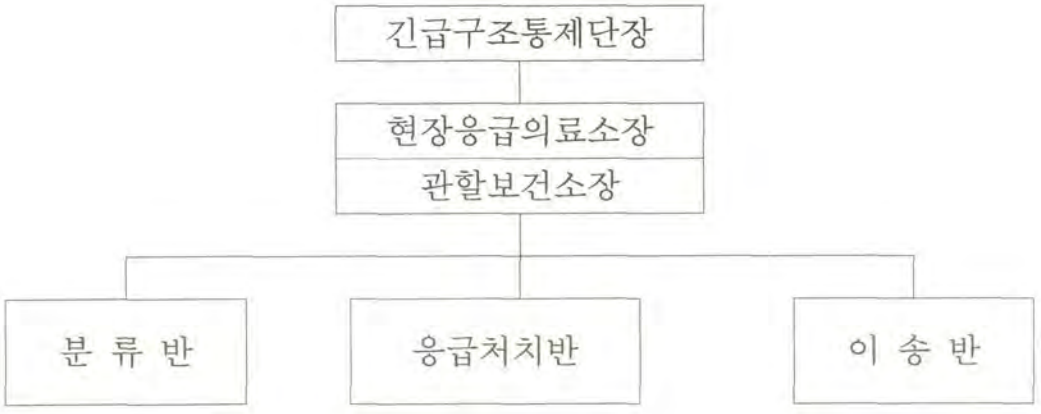

[기 능]

- ○ 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관리
- ○ 의료기관 현황 파악·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 통제단장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현장응급 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관할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류반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응급처치반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바. 긴급구조·지원 기관 현황

① 소방관서(긴급구조지원) : 국번없이 119

② 보건소 현황

부 서		연 락 처	주 소
천안시	동남구	(041) 521-2652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서북구	(041) 521-255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공주시보건소		(041) 855-5244	공주시 의당로 23
보령시보건소		(041) 932-2121	보령시 보령남로 234
아산시보건소		(041) 537-3404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서산시보건소		(041) 661-6500	서산시 벌말1길 51
논산시보건소		(041) 746-8011	논산시 논산대로 382
계룡시보건소		(042) 840-3507	계룡시 장안로 54
당진시보건소		(041) 360-6036	당진시 당진읍 서부로 56
금산군보건소		(041) 750-4311	금산군 금성면 금산로 1559
부여군보건소		(041) 830-2482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서천군보건소		(041) 950-6700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청양군보건의료원		(041) 942-3401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홍성군보건소		(041) 632-2588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36번길 30
예산군보건소		(041) 339-8002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태안군보건의료원		(041) 671-5300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③ 감염병 격리병원 현황

구분	의료기관명	확보 병상수	소 재 지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6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단국대학교의료원	30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천안의료원	5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천안시 서북구	천안충무병원	5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 3길8
공주시	공주의료원	4	공주시 웅진로 130
	공주현대병원	4	공주시 번영2호 18-10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30	보령시 죽성로 136
	신제일병원	10	보령시 대해로 52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10	아산시 문화로 381
	현대병원	5	아산시 시민로 388
서산시	서산의료원	12	서산시 중앙로 149
	서산중앙병원	12	서산시 수석산업로 5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50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계룡시	계룡병원	8	계룡시 계룡대로 295
	김광석외과의원	4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4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40	당진시 반촌로 5-15
	성모병원	15	당진시 중앙1로43(읍내동)
	합덕아산병원	10	당진시 합덕읍 합덕시장로174-1
금산군	학교법인 금산을지병원	24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2-3
부여군	건양대학교부여병원	20	부여군.읍 계백로 188
	성요셉병원	10	부여군.읍 사비로 78
서천군	금강병원	15	장항읍 장항로 91-40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12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홍성군	충청남도홍성의료원	33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24
예산군	예산삼성병원	6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9-2
	예산명지병원	4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6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④ 응급의료기관 현황 - 18개소

기관구분	지역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주 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천안시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041-550-6840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지역응급의료센터	천안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041-570-2119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천안시	천안충무병원	041-570-7519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041-689-7119	서산시 중앙로 149
	논산시	논산백제병원	041-733-0007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홍성군	충청남도홍성의료원	041-630-6119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지역응급의료기관	천안시	충청남도천안의료원	041-570-7247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화인메트로병원	041-567-5119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37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041-850-5222	공주시 웅진로 130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041-930-5333	보령시 죽성로 136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041-536-6666	아산시 문화로 381
		미래한국병원	041-545-6114	아산시 번영로 230번길 13
	서산시	서산중앙병원	041-661-1195	서산시 수석산업로 5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041-357-0100	당진시 반촌로 5-15
	부여군	건양대학교부여병원	041-837-1200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210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예산군	예산명지병원	041-335-5166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220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⑤ 종합병원 현황 - 13개소(병상수 100개 이상)

지 역	의료 기관명	전화번호	병상수
계	13개소		4.959
천안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041-570-2119	885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041-550-6840	811
	천안충무병원	041-570-7519	360
	충청남도천안의료원	041-570-7247	205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041-850-5222	233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041-930-5333	200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041-536-6666	209
논산시	논산백제병원	041-733-0007	647
서산시	서산중앙병원	041-661-1195	282
	충청남도서산의료원	041-689-7119	205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041-357-0100	288
홍성군	충청남도홍성의료원	041-630-6119	459
예산군	예산종합병원	041-330-4000	175

⑥ 발전소 - 4개소

대 상 시 설		소 재 지	연 락 처
발전회사명	발전소명(연료)		
한 국 중부발전(주)	보령화력 (유연탄, 가스)	충남 보령시	041-930-2119
	서천화력 (무연탄)	충남 서천군	041-950-2211
한 국 동서발전(주)	당진화력 (유연탄)	충남 당진시	041-351-1060
한 국 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유연탄)	충남 태안군	041-670-3131

사.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주요역할 및 협조 지원사항
1. 충남도교육청	• 생명존중·안전학교 조성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
2. 충남지방경찰청	• 재난현장 교통 통제 및 질서유지 등 안전대책
3. 중부지방산림청	• 산불방지 등 안전대책
4. 충청지방우정청	• 우편배송 및 운영관리체제 등 안전대책
5. 금강유역환경청	• 수질환경오염 등 안전대책
6. 금강홍수통제소	• 홍수범람 및 제한수위 유지 등 안전대책
7. 대전지방기상청	• 위험기상현상 감시 예측을 통한 재난사전 안전대책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근로자 산업재해 등 안전대책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 (서남부지역) 산업 재해 예방 및 수습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 (서북부지역) 산업 재해 예방 및 수습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국도 및 하천, 제방 등 안전대책
12.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 항만운영 등 해양안전대책
13. 보령해양경비안전서	• 유·도선 등 수난사고 안전대책
14. 태안해양경비안전서	• 유·도선 등 수난사고 안전대책
15.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 재난 구조구급·이재민 구호 등 안전대책
16. 육군 제32사단	•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안전대책
17.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 철도시설 운영관리 및 복구 등 안전대책
18.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 철도안전사고 시설 복구 관리
19.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전력공급 및 시설 운영관리 등 안전대책
20.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전기사용시설 등 안전대책
21.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 (북부지역) 가스공급 및 시설운영관리 등 안전대책
22.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 (서남부지역) 가스공급 및 시설운영관리 등 안전대책
23.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가스공급 사용시설 등 안전대책
24. KT충남고객본부	• 통신망 시설 운영관리 등 안전대책
25.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 댐 시설 운영관리 등 안전대책
26.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 댐 시설 운영관리 및 생활공업용수 공급대책
27.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 고속도로 시설 운영관리 및 교통정보 등 안전대책
2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토지주택관리안전대책
29. 국립공원관리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계룡산 탐방객 안전사고대책
30.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 태안 해안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대책
3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 안전대책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농산물유통 안전대책
33.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 농협분야 안전대책
34. 수협중앙회 태안어업정보통신국	• 수산재난발생 전파 및 피해상황 관리
35.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	• 산림분야 안전대책
36. KBS대전방송총국	• 재해방송 등 안전대책
37.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자료 유물 안전대책
38.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 산업단지 안전대책 및 피해기업 지원
3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 고속도로 시설 운영관리 및 교통정보 등 안전대책
40. 충청남도개발공사	• 도시개발지역내 재난안전 관리대책
4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화력발전 안전관리대책

아.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② 구　성

○ 위 원 장 : 충청남도지사

○ 위　　원

- 당연직 :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교육감, 육군 제32사단장, 충남 지방경찰청장,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도 관할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 간　사 : 안전정책과장

③ 기　능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운　영

○ 정기회의 : 매년 상·하반기 개최

○ 임시회의 : 필요시(수시)

⑤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당연직(33)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위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충청남도 교육감	도 교육감
		육군 제32사단장	지역관할 군부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도를 관할구역으로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중부지방산림청장 충청지방우정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중부해양경비 안전본부장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KT충남고객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장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충남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충청남도 경제산업실장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남도 농정국장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Ⅱ.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목 차

자연재난 관리대책

1-1. 풍수해 ····· 33

1-2. 해일 ····· 66

1-3. 대설·한파 ····· 81

1-4. 낙뢰 ····· 93

1-5. 가뭄 ····· 105

1-6. 지진 ····· 117

1-7. 황사 ····· 123

1-8. 녹조 ····· 128

1-9. 적조 ····· 134

1-10. 폭염 ····· 142

1-11. 산사태 ····· 149

사회재난 관리대책

2-1. 대형화재 ····· 156

2-2. 문화재화재 ····· 167

2-3. 산불 ····· 178

2-4. 시설물재난 ····· 186

2-5. 지반침하 ····· 189

2-6. 저수지붕괴 ····· 199
2-7. 댐붕괴 ····· 205
2-8. 도로(육상화물운송) ····· 215
2-9. 철도교통사고 ····· 221
2-10. 해양선박(해수면 유·도선)사고 ····· 228
2-11. 내수면 유·도선사고 ····· 239
2-12. 유해화학물질사고 ····· 243
2-13. 생물테러 ····· 249
2-14. 대규모 해양오염 ····· 253
2-15. 대규모 수질오염 ····· 266
2-16. 에너지(전기·가스·석유)사고 ····· 273
2-17. 정보통신사고 ····· 299
2-18. 식용수 ····· 303
2-19. 환경(폐기물) ····· 315
2-20. 감염병 ····· 323
2-21. 가축전염병 ····· 329
2-22. 수산생물 전염병 ····· 340

안전관리대책

3-1. 어린이놀이시설 ····· 348
3-2. 승강기사고 ····· 350
3-3. 등산활동 ····· 353

3-4. 다중이용업소 ····· 359
3-5. 여름철물놀이 ····· 363
3-6. 내수면 수상레저 ····· 367
3-7. 도로교통사고 ····· 370
3-8. 산업단지 ····· 380
3-9. 농작업사고 ····· 391
3-10. 어업작업사고 ····· 403
3-11. 도청사 ····· 412
3-12. 공연장 ····· 417
3-13. 사회복지시설 ····· 422
3-14. 자연휴양림시설 ····· 434
3-15. 청소년시설 ····· 441
3-16. 가정·성·학교폭력 ····· 450
3-17. 자살예방 ····· 456
3-18. 식품안전사고 ····· 464

II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1. 자연재난 관리대책

1-1. 풍수해 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320,822	18,758	26,170	26,872	272	21,712	132,974	22,578	67,068	69	4,349
태풍	159,048	-	2,915	79	272	-	109,725	1,142	44,915	-	-
호우	99,245	15,580	12,345	3,406	-	9,893	21,287	21,436	14,943	69	286
강풍	21,789	3,178	5,364	969	-	832	173	-	7,210	-	4,063
풍랑	40,740	-	5,546	22,418	-	10,987	1,789	-	-	-	-

2) 인명피해

(단위 : 명)

구 분		연평균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 계		1	15	-	-	-	-	-	9	-	5	-	-
사망 실종	소계	0.7	8	-	-	-	-	-	5	-	3	-	-
	사망	0.6	7	-	-	-	-	-	4	-	3	-	-
	실종	-	1	-	-	-	-	-	1	-	-	-	-
부상		0.6	7	-	-	-	-	-	4	1	2	-	-

나. 원인분석

1) 최근 10년간('05~'14) 풍수해로 인명피해 15명(사망·실종 8명, 부상 7명), 재산피해 320,822백만원 발생(공공시설 116,499 사유시설 204,323)

* 여름철 태풍 및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피해가 크며, 침수피해 4,889ha, 건물 1,733동(유실·전파 60, 반파 582, 침수 1,091), 선박 121척(전파 47, 반파 74), 이재민 630세대 1,447명 발생

2) 풍수해 피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및 국지적 집중호우 등이 주원인으로 연도별 피해격차 큼

다. 목표

구 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	-
재산피해(억원)	43	21	감 50%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태풍대비 훈련을 통한 현장 작동 가능한 풍수해 매뉴얼 작성, 재난관리 협업(13개) 체계 구축 및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태풍대비 훈련으로 풍수해 매뉴얼 현장 작동 점검 및 문제점 보완

- 도, 시·군, 유관기관 등 합동훈련으로 총체적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13개 협업부서, 시·군,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 이행 훈련으로 매뉴얼 현장 작동 점검 및 보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풍수해 매뉴얼 정비 사전준비	
2/4분기	태풍부상에 따른 종합훈련실시(5월 중)	
3/4분기	풍수해 매뉴얼 정비 및 중앙 승인요청(8월까지)	
4/4분기	풍수해 매뉴얼 배포(소관 실과 및 시·군)	

2) 재정사업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집중호우시 첨두유출량을 일시 저류하여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상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

◇ 홍수피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한 하천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형 하천복원

□ 사업내용

○ 재해위험지역 정비

- 4개분야(재해위험지구·재해위험저수지·서민밀집('15 일몰)·급경사지)를 통한 재해 위험요소 사전제거

  * 총 207지구 9,022억원 중 기투자 '15년까지 187지구 7,661억원 추진

○ 소하천 정비

-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총 2,160개소(3,121.3km) 3조6,044억원 중 '14까지 898개소(1,296km) 4,822억원 (정비율 44.2%)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기상이변과 물 부족 대비

  * 총 7지구(943억원) 중 2개지구 완료, '16년 5지구 240억원 추진계획

○ 지방하천정비사업

-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총 196지구(918.8km) 24,796억원 중 '15년까지 115지구(417.8km) 9,766억원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 및 사업 착수	
2/4분기	우기 전 재해예방사업 추진 점검 및 주요 구조물 완료	
3/4분기	재해예방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세부 공정 검토	
4/4분기	재해예방사업 이월 방지 및 사업 마무리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까지	'16	'17	'18	'19	비고
계	1,083,706	272,704	215,838	202,980	200,793	191,39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8,808	68,900	44,977	44,977	44,977	44,977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3,584	6,640	4,236	4,236	4,236	4,236	
소하천 정비사업	204,080	51,694	38,386	38,000	38,000	38,000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1,250	250	250	250	250	250	
풍수해보험료 지원	2,000	400	400	400	400	400	
서민밀집지역 위험개선사업	3,500	3,500	-	-	-	-	
우수저류시설 설치	94,347	49,295	24,061	11,589	9,402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1,868	3,300	7,142	7,142	7,142	7,142	
지방하천정비사업	431,459	82,899	87,140	87,140	87,140	87,140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3,680	-	3,420	3,420	3,420	3,420	
국가하천유지관리	29,130	5,826	5,826	5,826	5,826	5,826	

3) 점검, 홍보 등

◇ 현장 작동 상호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 및 국민불편 최소화

○ 여름철 사전대비 도 자체점검, 중앙 합동점검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예비특보단계부터 홍보방송 지속 실시(준비사항, 대피소 위치 등)

○ 태풍·호우시 행동요령, 풍수해보험 등 지속 홍보

□ **주요내용**

○ (협업관리) 협업기능을 활용한 여름철 재난관리 활성화

-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및 임무·역할 명확화

○ (상황관리)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한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및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구축·운영

○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발령

- 재해취약지역, 고립예상지역, 해안가 위험지역, 노후시설물 특별관리 등

○ (시설보호) 취약시설(지역) 전수점검·정비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 지하시설물 침수방지, 붕괴위험지역 등 안전대책 추진

○ (교통대책) 취약도로 사전통제 및 대중교통 연계운행체계 구축
- 침수우려 취약도로 통제, 대중교통 운행중단 대비 체계구축

○ (물자동원)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 민·군·유관기관 보유 응급복구물자 파악 및 긴급동원 사전협의

○ (홍보강화)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 집중 실시
- 재난정보 전파 재난방송체계 구축 및 홍보전담반 구성·운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협업 기능을 활용한 13개 협업 기능별 상황근무반 정비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수시) 재해취약지역 점검(수시)	
2/4분기	자연재난 대비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2016. 3. 16 ~ 2016. 5. 14)	
3/4분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2016. 5. 15 ~ 2016. 10. 15)	
4/4분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2016. 10. 16 ~ 2016. 11. 30)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2016. 12. 1 ~ 2017. 3. 15)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풍수해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특성, 피해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으로 장기적 지역방재정책 수립으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14조
-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중

* 용역업체 / 용역기간 : 이산 외 2개사 / 2015. 8. 25. ~ 2017. 8. 13.

- 15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승인완료 12/ 수립중 3(서천, 홍성, 태안)

2)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제도 운영

○ 개발행위에 대한 재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 사전예방 도모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협의대상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행정계획 : 39개 법령에 의한 50개 사업

* 개발사업 : 50개 법령에 의한 62개 사업

- 협의시기 : 계획수립·행위허가 및 승인 전
- 협의절차 : 허가·승인권자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
- 주요 협의내용 :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협의·운영계획

- 서면검토 : 면적 5천㎡~10만㎡, 연장 2㎞~5㎞ 개발계획
- 소집검토 : 면적 10만㎡, 연장 5㎞ 이상 개발계획
- 실태점검 : 연 1회이상 추진실태 점검(지침개정, '10.12.31)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1)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별 민·관 협력 체계 구축·운영
- 협업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임무·역할 명확화
- 재난발생에 따른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점검·확인

* 소관분야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 및 응급복구대책 수립 여부 확인

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뿐 아니라 민간자율 방재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사전예방 활동,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역 자율방재단 참여유도,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NGO) 적극 활용, 다양한 인적계층의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인적·물적 자원분석을 통한 실천 가능한 방안 도입

○ 기 능
- 민간차원의 재난대비, 대응활동 지원
- 지역재난대비 주요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 지역주민 방재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 상시대비 체제 시 주요임무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상시 관리
- 재난대비 사전점검·정비 및 방재물자·장비의 확보 비축
- 재난취약지구의 선정·관리 및 대책강구
- 방재단원의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사전대비 제제 및 비상단계 시 주요임무
- 경보의 전달 및 주민대피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전염병 방재를 위한 방역활동 전개 등 공중보건관리 등

○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 관리 : 15시 · 군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1) 긴급지원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의무화

○ 재난발생시 소관 분야별 지원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지역의 긴급지원계획 수립지침 마련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긴급지원 활용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http://drss.mpss.go.kr) 활용하여 기관간 재난관리자원 상호 응원

- 수방자재 등 증감사항 시스템 반영 등 자원변동사항 현행화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점검 · 관리

- 임시거주시설 관리 책임자를 정해 정기적 시설 점검 실시

○ 재해구호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비축기준량 확보 및 관리

- 재해구호물자 통합구축시스템 월간 점검 철저

□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관리실태 점검

1) 수방자재 확보·비축 실태 점검

○ 수방자재 종류 : 흡수성 모래주머니(순간마대), 물매트, 포대류, 묶음줄, 말목, 덮개류(비닐), 배수관(흄관, PE관), 작업공구 등

○ 수방자재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 한 소요량을 조사, 시설별로 일정량의 확보 기준량을 확보
- 긴급용으로 일정량만 보관하고 업체와 공급 계약체결로 보관창고

공간 부족현상 해소 및 내구연한 경과 자재에 대한 폐기처분

-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재물자 선정

○ 비축장소 : 시군·읍면동 창고, 관내 고립예상지역, 수해상습지역 등

○ 보관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자재는 우기 전까지 확보와 자재관리는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과 보관창고 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2)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관리 실태점검

○ 지정기준

- 대상장비 : 도져, 백호우, 페이로다, 덤프트럭,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침수피해 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집게차,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 지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예측한 복구장비의 종류, 소요대수를 조사하여 시설별로 일정량을 산정, 지정

① 산사태, 토사유실 등이 우려되는 도로절개지의 경우

- 장비종류 : 페이로더 또는 백호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도로규모, 지형 등 현장실정에 따라 산정

② 통수단면이 협소하거나 재해에 취약한 교량의 경우

- 장비종류 : 백호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교량규모, 가도설치 등을 감안 산정

○ 지정관리

-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취득 후 지정 관리
- 침수피해 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 처리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시신운구용 차량확보(보건소, 병원의 엠블런스 보유현황 사전 파악)
-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수선 등 사전 파악)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1단계 : 자치단체 보유 장비 · 2단계 : 유관기관 보유 장비
  · 3단계 : 군부대 장비 · 4단계 : 민간장비

○ 점검시기

- 5~10월 : 매월 파악, 11~익년5월 : 매분기파악

□ 긴급대피체계 구축

1) 이재민수용시설 지정·관리 실태점검

○ 지정기준

- 학교, 교회, 마을회관, 관공서, 창고 등 수용 가능한 건물 지정

※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가급적 지양

-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 수 등 감안, 상습침수지역 피해상황 예측 이재민 발생 가능 수 조사로 인근 지역 수용시설 지정

* 하천 수계별, 지역별 현실성 있는 대피와 수용 동시 운영이 가능한 시설 지정 운영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시 홍수로 침수되지 않도록 제방보다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지정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시 전기(자가발전), 수도, 도로 등 지역여건과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

- 지정 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동의서에 사용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소지 사전예방

*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가능계획 수립

* 집중호우 및 댐·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한 등급별 침수예상지역 대피 계획서 작성 보급

*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피계획 및 대응요령 숙지

○ 사전조치 할 사항

- 이재민 발생 시 수용 이재민 현지급식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또는 지사와 사전 협의
- 이재민 발생 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우기 전 관리상태 점검
- 대피시설 또는 읍면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 상비(구호세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 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2) 구호물자 지정·관리 등 실태점검

○ 비축기준

- 대상물자 : 구호세트, 양곡, 라면류, 의류, 천막, 모포·침구, 취사도구, 생필품 등
-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 사용량을 감안하되, 주택파손 및 침수피해를 고려, 세트화 구호물품 비축하며 소규모 재해 시는 시군구 비축물자 우선 사용하고 추가 필요시 (사)전국재해구호협회의 위탁 보관 구호품 사용 조치
- 보관 장소 : 시군, 읍면동 창고 및 (사)전국재해구호협회

○ 확보·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및 방재물자 수불대장 작성 비치
- 부족물자는 우기 전까지 전량 확보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양곡류나 내구연한이 짧은 의류 등은 현금으로 확보, 유사시 즉시 구입 사용
- 부패·변질 방지를 위하여 보관상태 수시점검

-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사전에 구매 선을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출 것

  ※ 부탄가스, 생수, 우유, 김치 등

- 지역 특성, 재해 유형 또는 비축기준 의거 구호세트 확보 조치
- 이재민 발생 시 구호물품 지급에 혼란이 없도록 수재의연품 등의 신속한 접수 및 효율적인 분배계획 사전 수립

○ 점검시기

-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재해구호물품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물	지원대상
일시구호세트 (1인 기준)	다목적보온덮개, 치약(20g), 칫솔(일회용), 비누(35g), 수건, 화장지(50매)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 한 자
응급구호세트 (기본용,1세대 2명)	이불 1장, 담요 1장, 칫솔(일회용)2개, 치약(175g) 1개, 세면비누(100g) 2개, 수건 2장, 화장지 2개, 베개 2개, 빨래줄.집게 1조, 손거울.빗 1조, 반짇고리 1개, 볼펜 1개, 메모지 1개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개인용,1인기준)	남 : 간소복 1벌, 속내의 1벌, 면도기 1개, 양말 1켤레(4종) 여 : 간소복 1벌, 속내의 1벌, 생리대 1조, 양말 1켤레(4종)	
재가구호세트 (4인1세대 기준)	휴대용가스렌지 1개, 코펠 1세트, 수저 4벌, 세탁비누 250g 1개, 세탁세제 1kg 1개, 주방세제 1kg 1통, 고무장갑 1켤레, 수세미 2개, 면장갑 1켤레(9종)	
개별구호물품	1) 일시구호세트용 : 1인당 생수 1병 2) 응급 기본용 : 1세대당 생수 2병 3) 재가구호세트용 : 1세대당 쌀 10kg,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부식류 1세트 4) 기타 : 즉석식품, 분유, 젖병, 기저귀, 모기약 등	일시,응급,재가구호세트 지급대상

※ 1. 개별구호물품은 필요에 따라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
- 응급구호물품 지급 시 재가구호세트의 물품 중 필요한 사항 지급 등
2. 주택침수, 반파 이상 재해 피해 시, 시·군 재해구호담당부서에서 지체 없이 해당(시·군 보관창고 보관 분) 구호품 지급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2) 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 상황판단회의

○ 근 거 :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

○ 목 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구 성 : 종합상황실장, 재난관련 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

○ 내 용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편제

업무·영역		주관부서	주요업무	협력부서
계	13개반	22개 실·과, 6개 유관기관		18개 실·과, 7개 유관기관
① 상황관리 총괄		자연재난과	-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사회재난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사회복지과	- 피해주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 이재민 심리안정 지원	저출산 고령화정책과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관리과 해양정책과	- 육상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해운항만과
④ 긴급통신 지원		정보화지원과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KT/한전
⑤ 시설응급복구		자연재난과외 시설관리 부서	- 피해시설 현황 파악 -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친환경농산과 등
⑥ 에너지 기능복구		에너지산업과	- 가스, 전기, 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⑦ 재난 수습 홍보		홍보협력관실	- 재난 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정보화지원과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사회재난과	-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예산담당관실
⑨ 교통대책		도로교통과	-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해운항만과 수산과
⑩ 의료·방역		보건정책과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식품의약과 축산과
⑪ 자원봉사관리		도민협력 새마을과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총무과
⑫ 사회질서유지		자치행정과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충남지방경찰청
⑬ 수색, 구조·구급		119광역기동단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소방행정과

□ 긴급구조 및 상황 공동관리체 운영

1) CP형 비상비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 · 운영 지원

- 통합 지휘 :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 시, 중앙대책본부 요원 파견요청
- 현장 CP 지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기능 수행

※ 중앙상황실과 CP간의 Hot-Line 구축 등

2) 구조·구급 활동 지원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 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 · 구급활동 지원

3) 피해상황 파악·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 · 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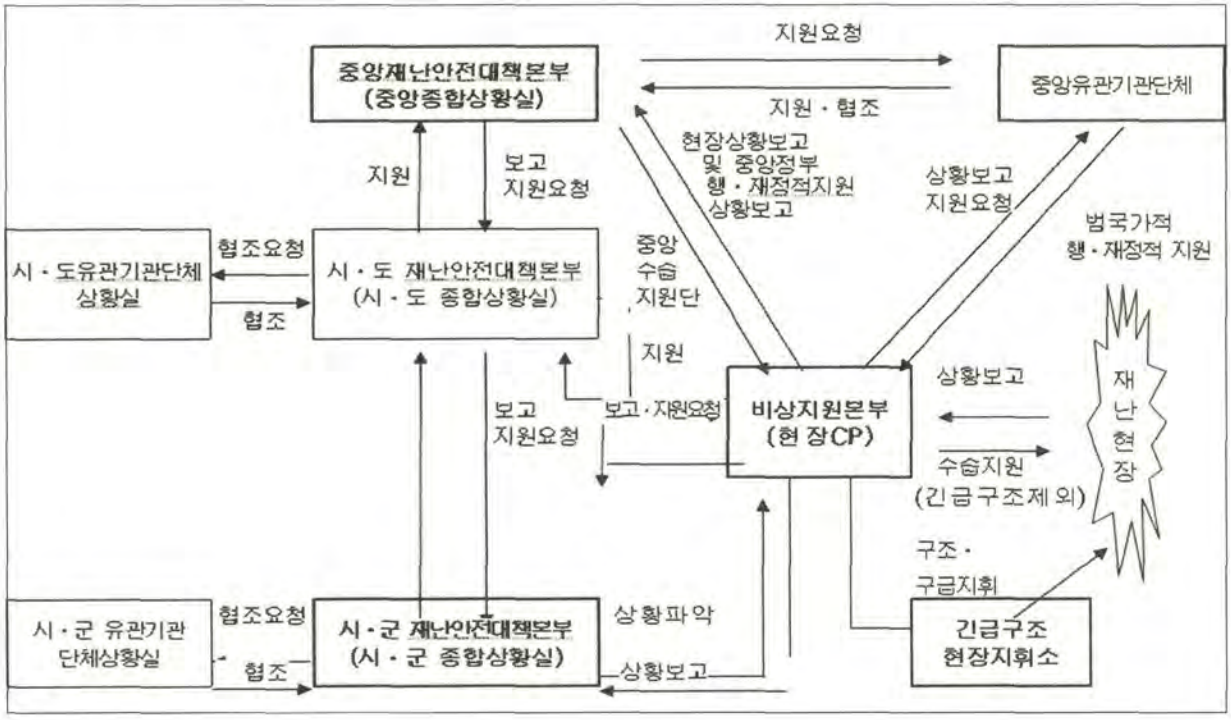

4)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사망.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위로금 지원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용 지원

○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예비비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5)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을 통한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가입단체(7)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 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 평상시 자원봉사
-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D/B 구축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샵, 교육, 연찬회, 훈련 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문회의의 구성.운영
- 구호품 수요파악, 구호기관 간 업무분담, 구호품 구매 및 비축

○ 비상시 자원봉사
- 대규모 재난발생시 총연합의 구성원들이 확보한 인적.물적 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도, 시군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6) 행정기관의 대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주민의 대피 :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 발생 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 홍수, 이상고조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 적절한 조작 및 사전조치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
- 학생보호대책 : 학생 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 재난발생 직후 대책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 통합지휘 : 지역본부장　　*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긴급구조 통제 단장이 수행)

○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 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방지 등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 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 피해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의 각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 기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 : 피해가 발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청 또는 상호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지원 등
- 기자재 등의 조달 등 :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실시

○ 의료 활동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 곤란 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등

-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등

○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등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등

○ 교통두절지역의 소통대책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등

○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관리 :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 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 이재민 구호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재민 급식, 구호물품 공급 등 구호지원에 필요한 이재민 수용시설 주변 급수, 전기, 통신, 도로두절 등 이재민 발생상황 정보를 민간구호기관 등에 실시간 전파 등

○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비상급수 :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 생필품 공급

*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기준에 의해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등

○ 시설물 응급복구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 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인력은 노동부에 기타인력은 국방부(인근부대)에 지원요청

-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는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하수도시설 : 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치 단체별로 복구 반을 편성 운영 등

- 전기시설 :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 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 : 통신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 반 편성 운영

- 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등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재해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등

* 항만·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의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등
* 공항시설 : 공항관리자는 공항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와 항공운항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철도시설 :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등

○ 군부대 지원요청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등

○ 청소 및 방역

- 청 소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등
- 방 역 :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등

○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 강화 및 안전 확보 등

○ 자원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및 시·도, 시·군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자연재난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자연재난 피해조사

- 접 수 : 최종 피해보고 공공시설 7일 이내, 사유시설 10일 이내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등

↓ 보 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국고부담 대상 시·군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 18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 24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 30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 36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미만인 시·군·구 : 42억원

재정력지수 / 구 분	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0.4 미만	0.4 이상 ~0.6 미만	0.6 이상
국고지원 대상 (피해액)	18억원 이상	24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6억원 이상	42억원 이상
해당시군	-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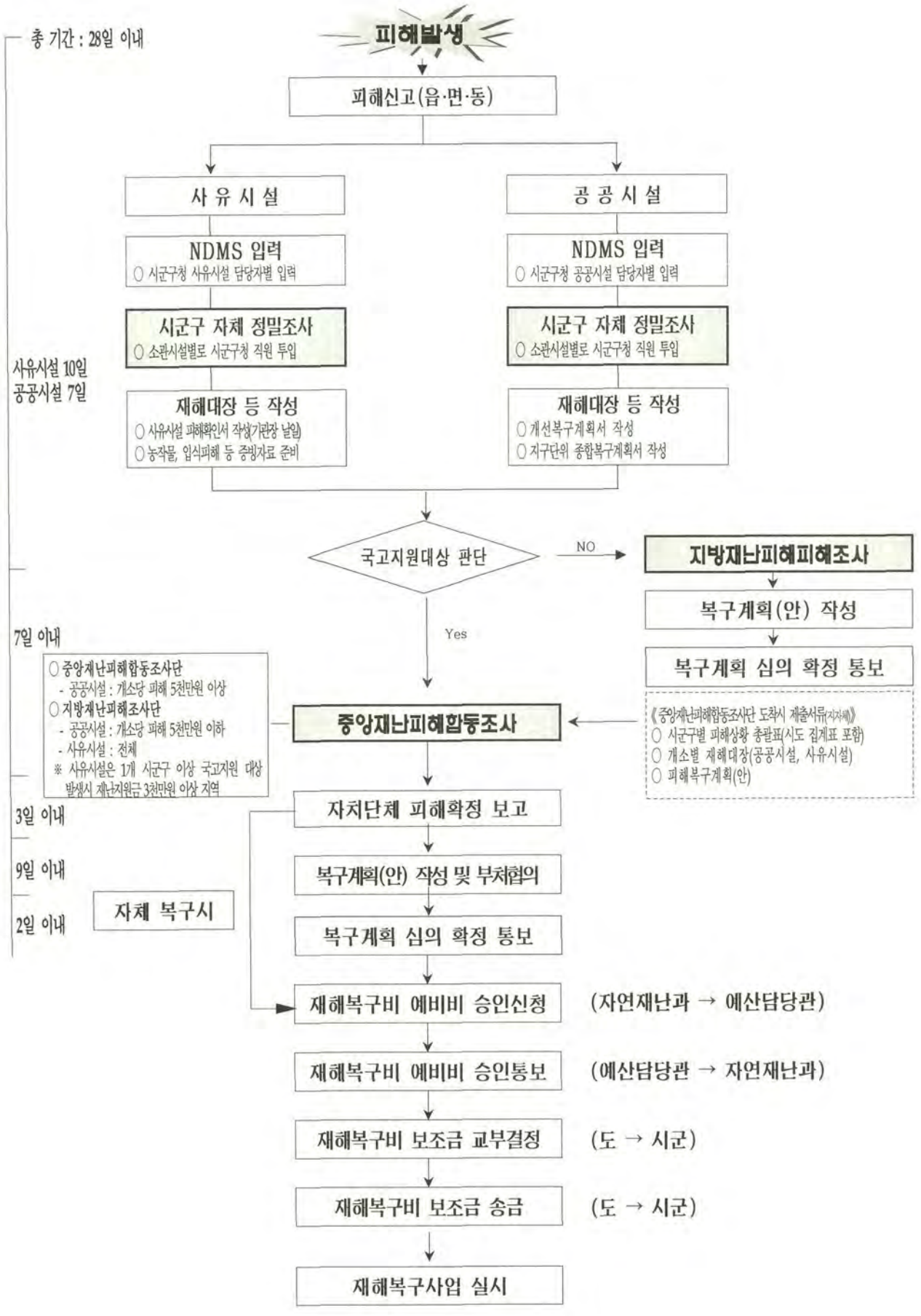
총 기간 : 28일 이내
피해발생
피해신고(읍·면·동)
사 유 시 설
공 공 시 설
NDMS 입력
○ 시군구청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NDMS 입력
○ 시군구청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시군구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시군구청 직원 투입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재해대장 등 작성
○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인)
○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재해대장 등 작성
○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서 작성
국고지원대상 판단
NO
지방재난피해피해조사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Yes
7일 이내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
○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공공시설 :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 사유시설 : 전체
※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 이상 국고지원 대상 발생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도착시 제출서류(지자체)》
○ 시군구별 피해상황 총괄표(시도 집계표 포함)
○ 개소별 재해대장(공공시설, 사유시설)
○ 피해복구계획(안)
3일 이내
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
9일 이내
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처협의
2일 이내
자체 복구시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재해복구비 예비비 승인신청
(자연재난과 → 예산담당관)
재해복구비 예비비 승인통보
(예산담당관 → 자연재난과)
재해복구비 보조금 교부결정
(도 → 시군)
재해복구비 보조금 송금
(도 → 시군)
재해복구사업 실시

<재난복구비용 부담액 및 부담률>

소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지원내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국민안전처	1. 사망·실종·부상자 구호금	○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지원100			
	2. 이재민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	-	-	-
	3. 이재민 장기구호	○ 주택이 전파·유실된자는 60일간 구호 ○ 주택이 반파된자는 30일간 구호 ○ 주택이 침수된자는 7일간 구호 ※ 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지원100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100			
	5. 공공시설	○ 공공건물 -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100 50 50 50 50	50 50 50 50 100		
	6. 응급복구	○ 자재대 및 장비비	50	50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		

소관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지원내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부	1.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60		30	10
	3.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지원35		55	10
	4.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5.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6. 초지 유실·매몰	〃			70	30
	7.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8.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
	9.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
	10.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11. 간접지원	○ 영농·양축·영어·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지원			
	12.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농림축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100 50 50 70	 50 50 30		
해양수산부	1. 염전 복구	○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60		30	10
	2. 어선	○ 40톤 미만 ○ 40톤 이상	지원35		55 70	10 30
	3. 어망·어구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지원35		55 70	10 30
	4. 수산물 증·양식시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5. 수산생물 입식	○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50		30	2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해 양 수산부	6. 공공시설	○ 어항시설 - 국가어항 - 지방,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어항	 100 50 50	 50 50		
		○ 어선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어업 무선국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양식장·양어장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산시설(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	50		50	
		○ 수위우량관측소시설 등 해양수산부관리 공공시설 등	100			
		○ 등대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일반해수욕장	50	50		
		○ 항만시설 ○ 지정항만(국가관리) ○ 지방항만(지방관리)	 100 50	 50		
교육부	1.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지원100			
	2. 공공시설	○ 국립학교시설 ○ 공립학교시설 ○ 사립학교시설 ○ 기타 공공시설	100 50 50	 50 50 50		50

소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구비지원내용	부담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행정자치부	1. 공공시설	○ 지방도, 군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 시도(시관내 국도, 지방도 포함) ○ 농어촌도로 ○ 자전거도로	50 50 50	50 100 50 50		
	2. 간접지원	○ 각종 지방세 감면	별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 공공시설	○ 일반 체육시설, 관광안내표지판 ○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 국민관광지시설,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	50 100 50	50 50		
문화재청	1. 공공시설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위탁)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100 70 50	 30 50		
환경부	1. 공공시설	○ 공원시설 - 국립공원 - 시·도립공원	 100 50	 50		
		○ 상하수도시설	50	50		
		○ 폐수·폐기물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100			
국토교통부	1. 사유시설	○ 주택복구	지원30		60	10
	2. 침수주택수리비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지원100			
	3. 공공시설	○ 도로시설 -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	100			
		○ 하천시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100 50	 50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국 토 교통부	3. 공공시설	○ 철도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마을기반조성	50	50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시설	100			
		○ 항공시설	100			
		○ 도시개발시설	50	50		
		○ 국토교통부 공공시설 등	100			
국방부	1. 공공시설	○ 군사시설	100			
산림청	1. 생계지원	○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자목 및 표고 버섯 재배사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3. 산림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4. 간접지원	○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5. 공공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시설 - 국유림 - 지자체 소유림 및 사유림	 100 50	 50		
		○ 휴양림 시설 등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수목원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기타공공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경찰청	1. 공공시설	○ 경찰시설	100			
보 건 복지부	1. 공공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미 래 창 조 과학부	1. 공공시설	○ 정보통신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100 50	 50		

※ ① 고속국도, 통신, 전력 등 국영기업체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보·양수장 등 사유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농림·수산시설 철거비는 지원복구 대상시설에 한하되 철거비 지원여부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2) 응급복구 및 지원 요청

○ 각 부서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파악 대처
- 전기, 통신시설(정전지역, 통신두절 긴급복구)
- 주택, 농경지, 농작물관련(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 어업시설(선박, 양식장 등)
- 도로, 하천시설물, 상하수도시설, 가스시설 등
- 전도 수목, 피해 산림목 제거
- 학교시설, 군사시설, 위험광고물·건축 부착물 철거 등

○ 피해 응급복구 및 조치 · 지원
- 민·관·군 총력 긴급복구 지원
  (군, 경, 공무원, 협회, 자원봉사 인력, 장비, 대민지원 차량 지원)
- 중앙과 인근 지자체 인력·장비 지원 요청
- 피해 응급복구비 시군별 소요액 파악 및 예비비지원 검토
- 응급복구 조기마무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원 검토 및 교부

3) 복구계획 수립 및 조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① 복구비 지원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지원

② 복구계획 수립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 보조
-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이 재해를 입은 경우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보조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
- 영농자금, 생활안전자금 등의 상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조합비, 국세, 지방세의 감면 등 간접지원

○ 재해복구사업

- 주택 및 농경지복구
-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공장, 상가, 시장(시설자재 및 기계류 등 포함)등의 피해건물에 대한 금융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응급복구에 관한 지원사항
- 공공시설의 복구 등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선포기준

구 분 \ 재정력지수	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0.4 미만	0.4 이상 ~0.6 미만	0.6 이상
국고지원 대상(피해액)	18억원 이상	24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6억원 이상	42억원 이상
해당시군	-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 (국고지원 대상의 2.5배이상 피해시 국고의 추가지원)	45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90억원 이상	105억원 이상

○ 선포절차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에게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 복구사업관리

1)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및 재해복구 TF팀 구성·운영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계약 지원 등 재해복구 TF팀 조기 구성·운영

○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대규모 피해발생시 부단체장을 총괄반장으로 TF팀 구성

2)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 및 복구사업 조기 완료

○ 목 적 :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전 실시설계 사전 심의로 재해재발 방지

○ 심의 대상

- 중앙 심의 :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복구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도지사가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 도 심의 :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 주요 검토사항

-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심의 시기 : 실시설계 완료 30일 전 사전심의

○ 민생관련시설의 조기 복구완료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3) 과학적 피해원인 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화 강화

○ 피해조사체계 개선

- 피해규모를 감안한 조사기간 차등적용

* 수해발생 규모에 따라 피해조사기간 탄력적용 규정마련

-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 복구지원체계 개선

- 복구계획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교육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지원대상 상향조정

* 우심 및 비우심 시군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사업 상향조정

- 복구비 국고추가지원방법 개선

* 지방비 국고추가지원 산정방법을 인구수, 재정력, 재해예방사업투자 정도 등을 고려한 지수개발 활용

* 현행 3단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국고 차등지원 방안 마련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수해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제 도입

* 현행 시설별·부처별·지구별 집행·정산제도를 사업비가 부족한 타 지구에 활용토록 제도화

- 수해복구사업 경제성 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 복구사업 완료 후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토록 제도화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 기능 강화

1-2. 해일 대책

가. 피해현황(없음)

나. 목표

구 분	'15년 발생건수	'16년 목표	비 고
인명피해	0	0	

다. 개선방안

1) 재정사업(없음)

2) 사전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태풍이나 온대성저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에 대비 대국민 예·경보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및 저지대 등 해안시설물의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주요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실무반 편성·운영 상황관리체제 확립

○ 해일대비 대피장소 지정 및 교육 · 홍보 강화

○ 민 · 관 · 군이 일체화된 해일대비 종합훈련체계 구축

○ 해안과 해안부근의 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과의 정비 연계

○ 해일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안전한국훈련 지진(지진해일) 기본계획 수립	
2/4분기	지진해일 발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도상훈련 실시	
3/4분기	도민 홍보 책자 및 팜플릿 제작·배포(지진,해일)	
4/4분기	해안가 해일위험지역 점검, 지진해일 대응요령 홍보강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 단계

(1) 중점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실무반 편성·운영(풍수해 대책 참조)

○ 지진 및 해일 예·경보체계 강화 지원

○ 해안시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수립

○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해일대비 훈련 실시

○ 지진해일 피해우려지역 및 대피시설 정비

(2) 세부 활동 내용

○ 지진 및 해일 예·경보시설

○ 예·경보체계 강화 지원

○ 방재시설 정비 외 유지·관리방안 마련

○ 해안과 해안부근의 각 시설(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 정비 연계

○ 항만, 어항에 있는 선박과 어구 등의 유출에 의해 배후지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마련

○ 해안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방재사업 추진

○ 항만시설의 확충 : 방파제 축조, 표지시설 보수, 연안침수 방지시설, 갑문시설 개보수 등

○ 어항시설의 확충(지방 및 정주어항)관리 방파제 축조 보강 및 관리

○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용

○ 해일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및 배포

○ 사전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정비
- 소규모방조제,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의 예찰활동 강화
- 해안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주민 안전지대 대피계획 수립
- 위험방조제 및 월류 우려 방조제 보강조치
-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
- 피해발생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위험시설별 장비 및 인력 지정 관리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해일발생을 가정한 연안지역 훈련 실시

○ 해일 내습 이전에 관련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일 고를 추정, 예·경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인구, 배후지 자산의 집적 등에 더하여, 지하시설로의 해일침수 등 근년의 피해형태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 마련

○ 월류한 해수가 장시간 저수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대책 동시 강구

○ 해일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관련 부서별로 해일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지진해일 주 의 보	○ 재난방송 요청(각 방송사) ○ 시·군, 유관기관 초기대응 지시(NDMS상황전파시스템) - 주민대피 등 신속대응 및 피해상황 보고 ○ 道직원 상황전파(문자메시지) ○ 초기 상황보고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등 ○[필요시] 소방·군경 출동 협조 요청	○ 道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1단계)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지진해일 경 보	○ 재난방송 요청(각 방송사) ○ 시·군, 유관기관 초기대응 지시(NDMS상황전파시스템) - 주민대피 등 신속대응 및 구조·구급 등 사태 수습 조치 ○ 道직원 상황전파(문자메시지) ○ 초기 상황보고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등 ○[필요시] 소방·군경 출동 협조 요청	○ 道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2단계) ※ 피해정도에 따라 근무단계 상향조정

※ 지진해일 특보기준(한반도 주변해역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 발생시)
· 지진해일주의보 : 예상파고 0.5m~1.0m일 때/ 지진해일경보 : 예상파고가 1.0m이상일 때

나) 대비단계

(1) 중점 대응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대비 비상연락망 등 구축.점검
○ 민간 현장모니터위원 활성화
○ 방재물자 및 동원장비 등 확보·관리 실태점검
○ 이재민수용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등 실태점검
○ 방역물자 및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비축 실태점검
○ 민·관·군 공동대응체계 구축
○ 관련부서 대비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2) 세부 활동 내용

○ 유관기관 지진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연락처 정비
○ 응급대응체제 정비
- 직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 자연재난 취약지역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작동상태 사전 점검

○ 재난정보의 전달·분석체계 구축

- 상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재난정보의 분석·정리 및 통신수단의 확보

○ 이상고조, 풍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보존시설 점검

○ 연안지역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확보

○ 구조·구급 대책 수립

-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구조용 장비 및 자재확보
- 유관기관간의 상호 관련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정비

○ 긴급의료 및 긴급수송 대책 수립

- 응급구호용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 비축, 재난의료시설을 선정하여 재난발생시 구급의료 활동
- 재난 시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다중화, 대체성을 고려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 파악·조정, 긴급수송 네트워크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

○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공급

- 대피장소, 대피로를 미리 지정,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난발생시 대피유도 계획 수립
- 대피장소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등 대피생활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정비
- 비상식량 조달 및 공급활동계획 수립
- 비축거점 및 수송거점 지정계획 수립

(충남 지진해일 재해취약지구)

자치단체	지구명	추진단계	이재민수	피해면적	재해약자
아산시	걸매지구	7단계	269	420ha	27명
서산시	벌말지구	7단계	50	10	1
홍성군	남당지구	7단계	320	250	4

(대피 담당자)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 화		재해약자
			사 무 실	핸드폰	
대피담당자	아산시 인주면	김환명	041-537-3161		27명
대피담당자	서산시 대산읍	홍성혁	041-660-3709		1명
대피담당자	홍성군 서부면	이철식	041-630-9455		4명

다) 대응단계

(1) 중점 대응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근무체제 확립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

(2) 세부 활동 내용

○ 지진해일 특보시 민방위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가동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웅 ~) -

주민여러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1회 반복방송)

우리지역에 ○○:○○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시다.
- 신속히 높은 지대 등 임시대피장소로 대피합시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시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이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지진해일발생 정보의 접수

○ 시·군 및 유관기관 초기 대응 지시(NDMS상황전파시스템)

- 시·군 및 유관기관에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사전조치 이행 및 신속대피 지시

○ 초기 상황보고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등

○ 지대본 근무자 비상소집

- 지대본 근무자 비상소집(문자메시지 및 유선통화)

○ 초기 상황판단회의 실시

위기상황	지진해일발생	발생일시	0000.7.1 00:00
발생위치	00항	발생규모	2-4m 해일
○ 피해 극심 지역(예측지역) ○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내) ○ 道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필요 ○ 지휘체계 보고 현황 ○ 시·군 및 유관기관 전파 현황 ○ 긴급 재난방송 요청(방송3사)			

1)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 중앙과 지방간 상황『공동관리제』운영

-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시, 중앙대책본부 요원 사전 파견
  · 현장 CP 지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기능 수행

※ 중앙상황실과 현장 CP간의 Hot-Line 구축,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2) 구조·구급 활동 지원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고립 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3) 피해상황 파악 · 전파

○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 · 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 현황 파악 및 전파

가.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1)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사망 ·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위로금 지원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용 지원

2)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및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3)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 도로 · 하천 · 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예비비 긴급지원

○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을 통한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평상시]

-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D/B 구축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샵, 교육, 연찬회, 훈련 실시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문회의의 구성 · 운영
- 구호품 수요파악, 구호기관 간 업무분담, 구호품 구매 및 비축

[비상시]

- 대규모 재난발생시 총연합의 구성원들이 확보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근무
-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원봉사 유도

다. 관련부서 대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가) 해일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나)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다)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상황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 주민의 대피 : 하천연안 저지대의 침수·고립예상지역과 산사태 발생예상지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재난사전조치 활동 :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배수장 등의 적절한 조작 및 사전조치 사항 관계기관에 통지

○ 학생보호대책 : 학생 수업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2)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현장에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 통합지휘 : 지역본부장,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행

3)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4)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활동

○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방지 등

○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토사재난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등

5) 구조·구급 활동

○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고립 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등

○ 고립지역 구조대책

-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배포 등

○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 피해지방자치단체의 활동

-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의 각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각 기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

- 피해가 발생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청 또는 상호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활동 등 지원

○ 기자재 등의 조달 등

-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기관이 휴대 등

6) 의료 활동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등

○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비축

- 5일간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을 비축 보관 등

7)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등

○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등

8) 교통두절지역의 소통대책

○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 의료소 및 의료기관 주변의 교통상황 점검 등

9)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가)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관리

○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등

나) 이재민 구호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재민 급식, 구호물품 공급 등 구호지원에 필요한 이재민 수용시설 주변 급수, 전기, 통신, 도로 두절 등 이재민 발생상황 정보를 민간구호기관 등에 실시간 전파 등

10)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비상급수 :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 생필품 공급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시스템 확립 등

11) 시설물 응급복구

가)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은 전문 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인력은 관계기관에 기타인력은 인근 군부대에 지원요청

나)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 관리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다)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상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하수도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복구 반을 편성 운영 등

○ 전기시설 :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 반 편성 운영

○ 통신시설 : 통신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 반 편성 운영

라) 공공시설 복구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등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등

○ 항만.어항시설 : 항만 및 어항의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등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사회공공시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등

12) 군부대 지원요청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요청 등

13) 청소 및 방역

○ 청 소 :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임시 지정된 적환장에 적치 및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확보 등

○ 방 역 :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등

14)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 강화 및 안전 확보 등

15) 자원봉사활동

○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및 시·군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라) 복구단계

(1) 중점 대응

○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대책 수립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2) 세부 활동 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도로, 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피해 조사
- 복구대책은 피해형태별로 수립, 지원하되 필요시 중앙 합동 복구지원단에 협조요청
- 체계적인 복구계획의 수립, 추진
- 개선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 피해의 사전 예방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절차 등 제도 개선
- 예비비 형태의 복구예산제도의 개선 추진
- 복구사업 발주, 입찰 등 복구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용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보급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 활동
- 피해가옥, 가축 등의 잔해 처리
- 방역소독, 가스·전력·통신 및 상수도 등 라이프라인 시설 복구

○ 해일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사진·동영상 등으로 재해흔적 기록

지진 및 지진해일피해 수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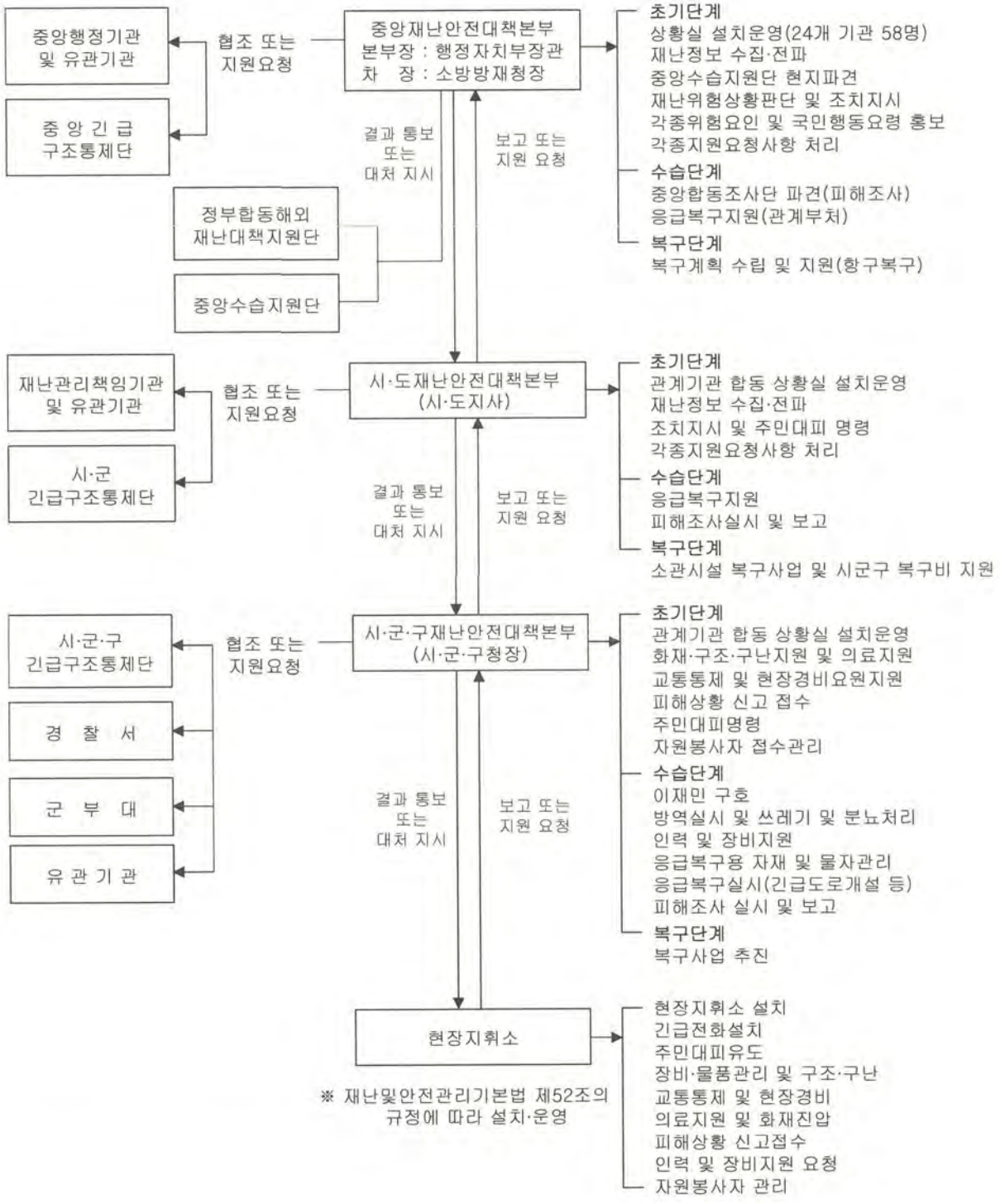

1-3. 대설·한파 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대설(계)	22,087	2,117	277	6	1,223	4,567	1,023	-	3,131	401	9,342
사유시설	19,997	27	277	6	1,223	4,567	1,023	-	3,131	401	9,342
공공시설	2,090	2,090	-	-	-	-	-	-	-	-	-

2) 인명피해 : 없음

나. 원인분석

1) 최근 10년간('05~'14) 대설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 22,087백만원 발생 (공공시설 2,090 사유시설 19,997)

2) 이상기후에 따른 연도별 격차가 크며, 주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과수재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큼.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	-
재산피해(억원)	93	46	감 50%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한 장비 및 자재구입

◇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훈련 실시

□ 사업내용

○ 폭설에 대처할 수 있는 제설자재 확보

- 2016년 자재 확보량 = '15년 확보량 + 추가 확보량

* 강설일수 증가 등 자재 부족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또는 예비비 활용추진

○ 부족장비 추가 구입 및 임대계약 적극 추진

- 부족장비 및 인력에 대해 임대·도급 및 임시고용 등 추진

※ 원거리지역 등 필요 구간에 대하여 도급 시행토록 사전 대비하거나, 사전에 구간 조정 협의

○ 설해취약구간 제설대책 마련

- 노면결빙 상습구간에 결빙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정비
- 염화칼슘 사용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제설대책 강구
- 고속도로 교통차단 시 인접 국도, 지방도 제설작업 강화대책 마련
- 소형 염수보관탱크 활용 신속한 염수보충으로 적기 제설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2015. 12.1 ~ 2016. 3.15)	
2/4분기	재해위약요인 사전제거 사업 실시(연중)	
3/4분기	재해위약요인 사전제거 사업 실시(연중)	
4/4분기	겨울철 취약시설 점검 및 사전대비(10.16~11.30)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12.1 ~ 익년 3.1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86	10	35	35	53	53	
재난대응훈련	186	10	35	35	53	53	

2)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기상·통제상황 등 도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중심의 홍보

○ 도민 자율 제설 참여 및 언론대응체계 사전구축

□ **주요내용**

○ 협업 기능을 활용한 13개 협업 기능별 상황근무반 정비

○ 재난예경보시설 작동상태 점검 · 확인(연중)

○ 13개 협업 기능별 개인별 임무 카드 작성 및 사전예고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도 자체점검(10월 중)

- 협업관리실태, 상황관리체계, 인명최소화대책, 제설자재·장비·인력 확보 등

○ 201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11월 중)

○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구성 · 운영(11월 중)

-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 7개 분야별* 상황관리체계 가동

* ①총괄, ②취약계층, ③농축분야, ④수산, ⑤전기·가스, ⑥상수도 공급, ⑦화재대책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11월 중)

○ 폭설대응 교통소통 훈련 실시(11월 중)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훈련내용 : 기습폭설로 차량 충돌사고 발생 및 차량고립에 따른 고립차량 운전자 구난·구호, 차량 우회, 제설작업 등
- 참석 : 재난 및 도로제설부서장 및 담당공무원,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군부대, 자율방재단)

○ 현장중심의 홍보활동 실시

-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상상황,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대중교통(시외·시내버스), 여객선 통제, 등산로 통제"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위주로 홍보실시
- SNS, CBS(재난문자서비스),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 마을앰프, 아파트단지 방송시설, 유선방송, 전광판, 행정차량, 지역 유선방송 등을 이용 홍보실시
- 대국민 홍보자료*를 활용 반상회, 이 · 통장회의 등 주민참여회의(교육)시 '내집앞 눈치우기' 등 주민참여 제설대책 집중홍보

* 홍보 동영상·브로셔, 교육자료(PPT) 등 관련자료(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활용)

○ 강설 단계별 언론대응체계 사전 구축 · 운영(3단계)

- (사전준비) 폭설피해 우려될 경우 언론대응 준비

- 홍보협력관실과 협조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대비·대응단계) 폭설에 따른 대규모 피해발생시
- 폭설에 따른 우리도 대응상황 등 브리핑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 방송사 인터뷰 및 국민행동요령 자막방송 등 언론홍보 강화
- (수습·복구단계) 강설 종료 후 응급복구 추진 시
- 강설종료에 따른 피해상황, 응급복구, 이재민구호 등 브리핑 실시

○ 폭설대응 교통소통훈련 실시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훈련내용 : 기습폭설로 차량 충돌사고 발생 및 차량고립에 따른 고립차량 운전자 구난·구호, 차량 우회, 제설작업 등
- 일　　자 : '15. 11. 25.(수) 15:00 ~ 16:00
- 장　　소 :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로(대로3-5)
- 주최/주관 : 충청남도·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 참석(약 300명) : 도 재난안전실장, 아산시부시장, 도의회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2015. 12.1 ~ 2016. 3.15)	
2/4분기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수시) 자연재난 대비 홍보물 제작 및 배부	
3/4분기	협업 기능을 활용한 13개 협업 기능별 상황근무반 정비	
4/4분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도 자체점검(10월 중) 폭설대응 교통소통 훈련 실시(11월 중)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구성·운영(11월 중)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

1) 한 단계 빠른 비상체제 가동

○ 대설 예상시 자연재난과장 주재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 예비특보(대설) 등 대설특보 발표시 재난안전실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 대규모 피해우려 시 차장(행정부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 개최

2) 선제적 상황근무체계 확립

○ **(평상시)** 24시간 3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 **(보강단계)** 평상시 근무인원을 제외한 자연재난과 직원3명 비상근무

○ **(비상단계)** 재난상황에 따라 1~5단계로 구분 비상근무 강화

단계별		본부장	차 장	통제관	담당관	반 원
준비단계	평상시					1명
보강단계	예비특보시				자연재난 과 장	3명
Ⅰ단계 (비상단계)	주의보			재난안전 실 장	자연재난 과 장	12명
Ⅱ단계 (비상단계)	경 보		행 정 부지사	재난안전 실 장	자연재난 과 장	40명
Ⅲ단계 (비상단계)	대 규 모 피해발생시	도지사	행 정 부지사	재난안전 국 장	자연재난 과 장	40명+α

- 주말·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사전 비상근무 예고제 시행** 및 **강설징후 3시간 전 비상발령, 강설 1시간 전 제설장비·인력 현장 배치** 원칙

3) 현장 상황 실시간 확인 및 재난정보 공유

○ 기상청, 道, 시군 상황실간 Hot-Line 구축하여 실시간 강설상황 공유, 기상특보상황 신속전파

4) (한파대책)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한파발표 및 지속기간 동안 관련실과(유관기관 포함) 합동 24시간 비상지원체계 유지

- 상수도 동파, 전기·가스·보일러 고장시 신속복구를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서비스반」 편성 등 상시 가동체계 사전 구축

5)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특성, 피해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으로 장기적 지역방재정책 수립으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14조
-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중

* 용역업체 / 용역기간 : 이산 외 2개사 / 2015. 8. 25. ~ 2017. 8. 13.

- 15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승인완료 12/ 수립중 3(서천, 홍성, 태안)

6)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 제도 운영

○ 개발행위에 대한 재해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 사전예방 도모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 협의대상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행정계획 : 39개 법령에 의한 50개 사업

* 개발사업 : 50개 법령에 의한 62개 사업

- 협의시기 : 계획수립·행위허가 및 승인 전
- 협의절차 : 허가·승인권자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
- 주요 협의내용 :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협의·운영계획

- 서면검토 : 면적 5천㎡~10만㎡, 연장 2㎞~5㎞ 개발계획
- 소집검토 : 면적 10만㎡, 연장 5㎞ 이상 개발계획
- 실태점검 : 연 1회이상 추진실태 점검(지침개정, '10.12.31)

나) 대비단계

1) 붕괴우려 시설물 특별관리 실시

○ 폭설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후 붕괴우려 시설물 지정
- 예비특보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시설별 위험도 사전 파악

○ 내부에 보강시설이 없는 PEB · 아치판넬 구조 건축물(소유자, 관리자) 지붕제설 및 출입통제 등 특별관리 실시

○ 위험시설별 관리담당자 복수지정(공무원 및 지역주민) 전담관리제 실시

2) 산간 고립예상마을 관리 강화

○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지정* 및 마을이장과 자치단체 상황실간 Hot-Line구축, 민·관·군 동원 제설

* 마을수 67, 가구수 1,549, 주민수 3,352명

○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물품 마을별로 사전배치

○ 적설량에 따라 차량 통제 기준 마련 및 경찰관서와 협조체계 구축

【산간지역 사전통제 기준】

구 분	적설량 및 노면상태	통제내용
전면통제	- 노면적설 10cm이상이고 계속 강설이 내릴 때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모든 차량 통행금지
부분통제	- 노면적설 5~10cm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월동장구 미 장착차량 및 대형 화물차량 통행금지

3) 학생 안전관리대책 적극 추진

○ 유치원, 초·중·고 학생*·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

기상특보 발표시 사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실시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

◈ (대설경보 예보시) 교육청 조치→지대본 발표→언론발표(지대본)

◈ (적설 10~20㎝ 기습 강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 따라 휴업조치

4) 국·도립공원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 (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관리강화

- 상습결빙 탐방로 안전로프, 안내판(2개소), 데크, 안전난간설치

○ **(도립·군립공원)** 상습결빙 구간 4개소, 3.0km, 안전로프, 안내간판, 통제소(6개소)설치

5) (한파대책) 독거노인, 취약계층 보호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돌봄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SNS를 활용한 상황전파

○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설치 및 점검 확인강화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가정에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6종*센서)구축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신속대처

*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 가스감지, 출입감지, 응급호출기₩

6) 제설취약구간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

○ 제설 취약구간(고개지역, 응달지역, 교량 등)전수조사 특별관리

○ 취약구간별 제설 담당책임제지정, 강설예상 1시간前 제설 장비·인력 전진배치 및 강설발생과 동시 제설제 살포

○ 경찰청 관리 상습결빙 및 입체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98개)에 대한 각 시군과 공조체제 강화

- 사고위험구간에 대해 道, 각시군 제설대책 포함 등 필요조치 확행
- 경찰협조를 통한 고갯길·램프구간 **월동장구 미착용 차량 진입통제**

⇒ 해당 시군에서 차량통제 요청시 관할 경찰서 즉시 출동 지원(협조)

7) 폭설지역 사고(고장) 차량 긴급구난 출동서비스 실시

○ 각 시군과 견인업체간 협약 체결*, 강설시 사고 및 고장차량의 신속한 갓길 이동조치로 교통정체 최소화

* 사업소, 각시군 렉카차 30대 협약체결 상황발생시 신속한 이동으로 교통불편 조기 해소

- 시군·렉카업체·경찰서간 제설상황 공유 및 고갯길 등 강설시 교통사고 취약구간 견인차 사전배치
- 교통체증 시에는 사고차량을 노견 등 안전지역으로 우선이동조치 후 제설작업 우선 실시 **(先 제설 後 견인조치)**

8)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 전년 대비 추가확보

○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15년 확보량 대비 120% 사전 구입·비축완료

○ 제설차 등 장비 확보(덤프, 백호우, 모래살포기, 제서기 등)·관리

○ 차량·트랙터 장착 제설삽날 확보 및 청소차·소방차 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기관과 사전협의 제설 대체차량 사전 지정·관리

○ 가로수 및 차량부식방지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확대

- 도사업소, 시군, 친환경제설제 생산업체(조달청 등록업체) 정보체계 공유

9) 취약 농축산시설물 재정비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도 · 홍보 강화

○ 폭설시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관리대상 지정

※ 비닐하우스160동, 축사82 인삼재배시설192, 수산 증·양식시설124

○ 기상상황(대설·한파특보) 및 상황단계별 피해예방 국민행동요령 전파를 위한 예·경보체계를 구축

- 시 · 군 · 구별 SMS 등에 시설물 소유자 휴대폰 DB구축 완료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10) 제설물자(장비 · 자재 · 인력) 긴급동원을 위한 사전협의

○ 유사시 신속한 인근시도·군부대 보유 재설물자 긴급동원을 위한 사전협약체결 및 가용 장비·자재·인력 현황파악·관리

※ (협약체결) 17개시도간 응원체계구축

○ 유관기관 · 민간단체 등과 제설 지원 인력 2,923명 긴급 동원을 위한 사전협조 체제 구축

○ 교통두절시 고립자 구조, 응급환자 후송,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지원 체계 구축

※ 헬기 137(국방부 29, 경찰청 19, 해양경찰 17, 항공구조구급대 27, 산림청 45대)

- 우리도 소방헬기 1대, 인근시도(충북, 전북, 경기)응원체계 구축

11) 시설물별 피해경감대책 추진

【 비닐하우스 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토록 지도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KS구조용강관 사용 지도, 재난예방사업 참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

○ 대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 철저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

【 인삼재배 시설 】

○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내재해기준(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강화

○ 대설시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축산시설 】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축사건축시 버팀목 골조 강화 등

○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파이프 등을 확보
- 제설 및 폐사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를 구축 및 방역 필요시 방역인력 현장 급파

다) 대응단계

1) 제설 물자 지원을 통한 내집앞 보행도로 제설작업 실시

○ 각 시군별 마을단위로 제설자재·장비 등 제설물자를 지원하여 보행도로의 눈을 주민들이 치울 수 있도록 유도

- 제설인력, 소요장비, 제설구간을 사전 파악하여 제설물자 지원

* 제설자재(염화칼슘 등) 및 제설장비(눈삽, 싸리비, 넉가래 등) 지원

- 등교길, 마을회관 등 주보행도로 및 상습결빙 등 사고위험구간위주 제설조치

○ 주민들의 자발적 제설참여 유도를 통한 보행안전 확보

2)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결행 사전예고제 실시

○ (농어촌버스) 대설주의보 발표시 SNS를 통한 농어촌 오지노선 버스결행 사전공지 교통불편 최소화(상황관리관 5,432명)

* 인가노선 수 1,306, 취약노선236

○ 응급환자 발생시 119 소방헬기 등을 이용한 응급조치

3) 지자체간 제설물자(장비 · 자재)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 제설자재 · 장비 실시간 현행화로 폭설로 제설물자 부족 해당시군에 긴급지원

- 해당시군에서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제설장비·자재 확보 및 사용현황 입력(재난안전실)
- 제설물자 사용현황 실시간 UP-date 실시
- 지속강설 등으로 인한 제설물자 부족 시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인접시도, 및 중앙에 응원요청

> ■ (응원요청) 필요자원검색→ 종류와 수량 입력→ 응원요청
> ■ (문자전송) 요청받은 시군의 자원관리 담당자에게 응원요청사항 문자메세지 전송

○ 응원요청을 받은 시도 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조치

- 제설물자 수송방법, 집결지(목적지)등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4조 및 시행령 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4)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대책 추진

○ 계량기* 보온조치(동파방지팩, 보온덮개 등) 및 검침원 수도사용량 확인시 계량기 동파방지 조치여부 점검

○ 수도 검침 시 보온용품 훼손으로 인한 동파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인정 검침제도*」 적극 활용 유도

* 동절기에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부과, 동절기 이후 실제사용량 확인 요금부과

5) 동파예방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요금고지서,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동파예방요령 홍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통장 등과 Hot-Line 구축

라) 복구단계

※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기준은 동일(풍수해 복구단계 참조)

1) 민·관·군 동원 응급복구 추진

○ 폭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시도별 기 체결된 군부대·유관기관(단체)를 동원 긴급응급복구 실시

※ 지역 군부대·건설기계협회·열관리시공협회 등과 시·군·구간 사전협약 체결

○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자체 응급복구가 어려운 시군이 있을 경우 인근 중앙 및 인근시도에 응급복구 인력·장비 지원 요청

※ 응급복구 지원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국민안전처와 도공간 협약체결)

2) 재난 관리기금 확보

○ **재난관리기금 395억원 확보, 피해발생시 즉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안 등 강구 조치**

3) 피해주민 간접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확대 추진

○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세제·융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본격 추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상》

(국세청) 국세 납세유예, (행자부·지자체) 지방세 감면, (복지부·건강공단·연금공단) 건보료 경감·국민연금 납부예외, (산업부·한국전력·가스공사·난방공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미래부·이통3사) 통신료 감면,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산림청) 복구자금 융자, (환경부·지자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농식품부·지자체) 농기계 수리 지원, (국토부·지적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보훈처)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4)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운영

○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이행을 위한 관련실과와 협업체계 구축

1-4. 낙뢰 대책

가. 피해현황

○ 최근 10년간('05~'14) 낙뢰 발생현황

- 연평균 낙뢰발생 횟수 140,969회 → '14년 64,698회

* 최고 '07년 242,495회, 최저 '09년 63,870회

- 낙뢰 전체 발생횟수의 89%가 여름철(6~8월)에 발생

○ 2014년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 '0', 재산피해 317백만원 발생

최근 5년간		평 균	소 계	'10	'11	'12	'13	'14	비고
낙뢰 발생	횟수(회)	132,567	662,838	164,193	130,495	105,196	198,256	64,698	
피해 현황	계	7.4	37	29	2	2	4	0	
	사망(명)	0.8	4	2	-	1	1	0	
	부상(명)	6.6	33	27	2	1	3	0	

나.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0	0	-
재산피해(억원)	0.2	0	△0.2

다.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낙뢰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

[1] 실태 및 문제점

○ 낙뢰 안전사고가 매년 특정시기인 여름 우기철에 반복적 발생함에도 낙뢰피해 빈발시기 및 대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보제 미시행

- 낙뢰피해 위험성 홍보 부진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의식 부족

2 대　　책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제도 시행

- 국민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
- 관계기관에서도 낙뢰피해 예방 활동 강화 병행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제 ❖

• 특정시기 및 일정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상되는 경우 시행

• 예방정보를 국민에게 사전 제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낙뢰피해 및 안전사고 사례, 예방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재난정보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

□ 각종 시설물 설치시 피뢰설비 등 예방시설 설치 강화

1 실태 및 문제점

○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피뢰시설 및 낙뢰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

- 20m 이상 건축물, 화학류 또는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전기통신설비, 열차, 전동차 등 극히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피뢰시설 설치 또는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낙뢰발생 예상에 따른 경보제 미실시, 빈발지역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낙뢰발생 예상시 위험지역의 우회산행이나 출입제한 등 관련 규정 부재

○ 낙뢰피해 발생 현황자료 관리기관 부재로 축적된 자료관리 부실

2 대 책

○ 낙뢰가 우려됨에도 제도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장소 등에 대한 제도 마련

- 낙뢰 빈발지역 피뢰시설 설치 및 경고에 대한 규정 강화
- 피뢰설비, 낙뢰빈발지역의 경고판 게시, 낙뢰 발생 예상시 위험지역의 우회 산행이나 출입제한 등
- 낙뢰 빈발지역 낙뢰특성 파악, 그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대피시설 등)
- 골프장,놀이공원,유원지 등 야외시설에 낙뢰경보시스템 구축 제도 보완

○ 낙뢰빈발지역 조사하여 DB작성, 낙뢰지도 제작 및 보급

○ 낙뢰보호 설계시 국제규격 표준에 따른 허용위험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종류별 · 규모별 피뢰설비 설치기준 마련

○ IEC 62305를 활용한 시설물의 낙뢰 침입경로별 방호대책 수립

※ IEC 62305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낙뢰보호 규격

2)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예방 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

1 실태 및 문제점

○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단계별 안전행동 요령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국민 혼동 우려

2 대 책

○ 낙뢰피해 예방 행동요령 및 대처법 단계별 구체적으로 행동요령 마련, 대국민 효율적 홍보대책 마련

- 낙뢰 발생전 징후에 따른 행동요령, 발생시 대처요령 등

○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은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함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 학교에서 교육부, 지자체, 기상청, 대한적십자사, 세이프키즈코리아 등과 같은 전문 안전교육기관과 연계시켜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 실시
- 체육시간 등을 활용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행동요령 및 대처법 교육

❖ 학교 등을 통한 낙뢰피해 예방 교육

○ 교육시기/주기
- 교육시기 : 여름철(6~9월)
- 교육주기 : 1회 / 매주

○ 교육대상/주제
- 유치원, 학교 등에서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및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체육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 활용

○ 교육내용
- 낙뢰전, 중, 후 단계별 취해야 할 행동과 대피할 장소 등
- 응급처지 요령
  - 학교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한 응급처지 및 상황대처 요령 등

☞ **교육기관을 통한 낙뢰피해 예방 안전교육의 의무화가 필요**

❖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 TV 방송사 활용, 자막방송 지속 실시에 의한 홍보
- 요청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7조
- 기　　간 : 6. 1 ~ 9. 30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YTN 등

○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 홍보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 구축
- 게재기간 : 6. 1 ~ 9. 30

○ 이동통신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CBS문자메세지 전송
- 재해문자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낙뢰피해 예방요령 홍보 등

○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방송
- 낙뢰예보가 있을시 기상 방송시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공원, 유원지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낙뢰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해야할 장소 및 행동요령
  - 낙뢰예보시 등산, 낚시, 골프 등 야외 운동 자제 등

○ 현지 홍보방송
- 가두방송차량, 공원·운동장 앰프, 민방위 메가폰 등을 활용하여 현지 홍보 실시

□ 낙뢰피해 예방 국민행동요령

① 재해에 대비해 평상 시 조치
② 재해가 다가왔을 때나 재해 발생 직후의 조치(재해 응급 대응 시)
③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
- 낙뢰에 의한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 담당자나 주민들에게 행동요령 교육

※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세 가지 기본 행동요령 홍보·교육

1 재해에 대비한 평상 시 준비사항

(1) 낙뢰의 특성에 대해 알아 둔다.

① 대기가 불안정할 때와 국지적 상승 기류에 의해서 뇌운(적란운)이 발생한다.

② 적란운이 뭉게뭉게 성장하는 것이 보이면, 몇 분 후에 낙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③ 천둥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근처에 낙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④ 낙뢰는 비가 내리기 전에도 발생한다.

⑤ 낙뢰의 위험은 뇌운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된다.

(2) 예보·주의보에 귀를 기울인다.

① 낙뢰는 좁은 범위의 단시간의 기상 현상이므로 현재의 기상 관측 체제에서는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옥외 레저나 옥외 작업 전에는 낙뢰가 발생하기 쉬운 기상 상황인지 확인한다.

② 낙뢰의 예보나 주의보는 수시로 변경·발령·해제되기 때문에 옥외에서는 충분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예보는 빗나갈 가능성이 많고, 주의보가 낙뢰의 발생보다 늦는 일도 많이 있다. 낙뢰 주의보가 나와 있어도 실제로 낙뢰가 발생하는 것은 발령 지역 내의 극히 일부이다.

③ 출발 전부터 낙뢰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피 장소가 거의 없는 등산이나 하이킹, 숲 속에서의 캠프, 바다나 강에서의 낚시 등의 레저는 중지한다.

(3) 낙뢰의 접근을 알아서 사전에 대피한다.

천둥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이미 낙뢰의 위험 지역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두꺼운 구름으로 주위가 어두워지거나 적란운의 성장을 발견했을 때에도 대피가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4) 낙뢰와 조우했을 때의 긴급 피난

낙뢰 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둥소리를 듣고 낙뢰의 접근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낙뢰 위험지역에 들어가 버린 경우로 ⑤에 나타낸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5) 긴급 대피 시에는

① 수목(작은 가지나 잎도 포함해)의 4 m 이내로 가까이 있지 않는다.

② 비가 내려도 절대로 우산은 쓰지 않는다. 피켈 등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리지 않는다.

③ 낚싯대, 골프 클럽 등 긴 물체는 소재에 상관없이 몸에서 떼어 놓고 지면에 눕혀 놓는다.

④ 고무장화·비닐 레인코트를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⑤ 금속류는 그대로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낙뢰를 끌어 들이지 않는다.

⑥ 낮은 자세를 취할 때는 엎드려 눕지 말고 양 다리의 간격을 좁게 해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낙뢰 시에 지면을 흐르는 전류가 몸에 흘러 부상을 당한다.)

⑦ 낙뢰 후, 다음 낙뢰가 떨어질 때까지의 안전한 시간간격이란 것은 없다.

⑧ 낙뢰가 일어나기 직전 지면의 전위가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속에 철 맛이 퍼지고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고, 공기가 정전기를 띤 것처럼 피부가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때에는 그 자리로부터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반드시 자세를 낮게 하고 전력으로 대피한다.

2 낙뢰에 대한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4 단계 구분)

(1) 충분히 안전한 장소

①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과 단독주택 등의 목조 건축물 옥외 안테나가 연결된 텔레비전이나 무전기에서는 2 m 이상 떨어진다.

② 전원선·전화선과 이것으로 연결되는 모든 전기 기구(가전기기·게임기·전등 등)나 유선 전화 등에서는 반드시 1 m 이상 떨어진다.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은 휴대 전화나, 전지로 구동하는 전기 기구의 사용은 안전)

③ 가스관·수도관이나 가스마개·수도꼭지에서는 1 m 이상 떨어진다.

④ 기둥·벽·천정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다.

⑤ 취사장·세탁실·목욕탕도 지면에 떨어진 전류가 수도 배관 등으로 전해져 올 수 있으므로 금지

⑥ 옥내 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수영장에 낙뢰 전류가 들어가면 몸이 감전되어 익사한다.)

⑦ 다만, 낙뢰에 의한 건축물이나 텔레비전의 화재의 위험성은 남는다.

⑧ 방금 근처에 낙뢰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건물(지붕·천정과 지붕과의 사이의 공간)이나 전화, 전기 기구, 전기 배선 주위(배전반을 포함한다)를 반드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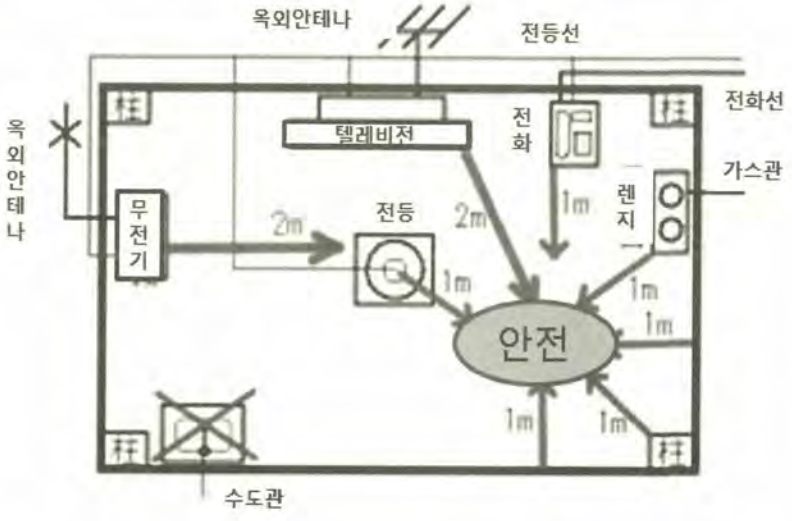

< 낙뢰 시 옥내 대피 요령 >

⑨ 지붕이 금속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버스·열차·비행기 안에서 창은 닫고 차체·핸들·전기 기기에는 손대지 않는다.

⑩ 동굴로 대비할 경우 입구에는 서지 않는다. 내부는 어둡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고 또한 산소 결핍·추락·전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2) 비교적 안전한 장소(100%안전한 것은 아니고 5%이내의 위험성 있다.)

① 높이 5~30 m의 물체(수목, 건물, 폴, 전선, 전주)의 보호 범위 물체로부터, 4 m 이상 떨어진다. (콘크리트 전주는 2 m 이상)

② 옆으로 뻗어 나온 잎이나 작은 가지로부터도 반드시 4 m 이상 떨어진다.

③ 물체의 꼭대기를 올려보는 각도가 45도 이상의 위치에서 자세를 낮게 한다.(양 다리를 가지런히 해서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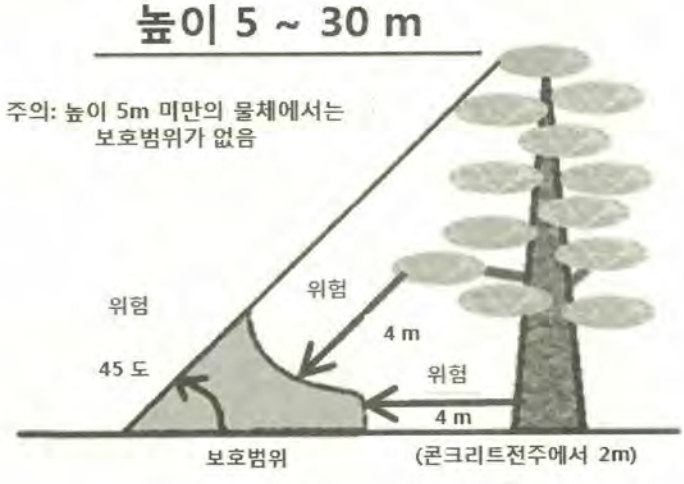

< 낙뢰 시 나무로 대피하는 요령 >

④ 높이 30 m 이상의 물체(고층 건축물, 대형 크레인, 굴뚝, 송전선의 철탑)의 보호 범위 물체로부터 4 m이상 떨어진다.(송전선의 철탑은, 2 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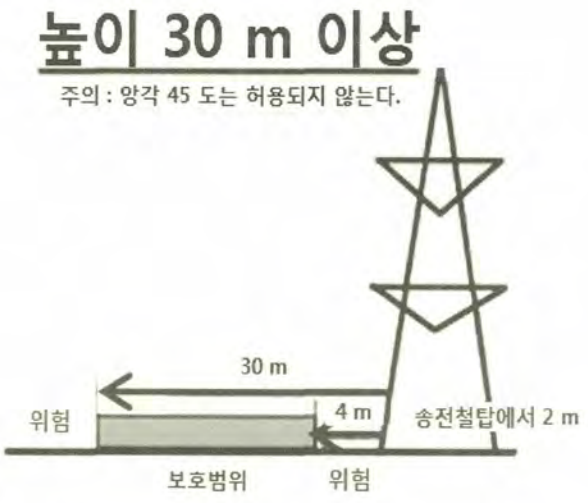

< 낙뢰 시 철탑으로 대피하는 요령 >

⑤ 다리 아래·마른 움푹 팬 곳이나 도랑

(3) 안전성이 낮은 장소(위험성은 높지만,(d)보다 위험성은 낮다.)

① 숲이나 숲 속에서는 나무가 드문드문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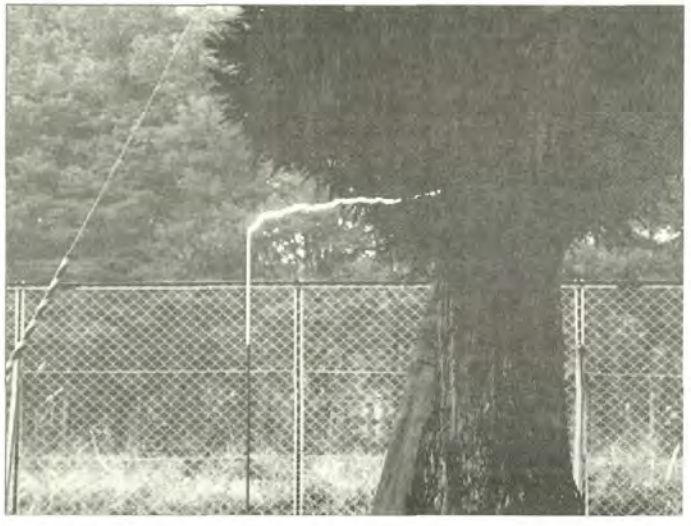

그림 6. 나무 옆 측격뢰 사진

② 습기 찬 움푹 팬 곳이나 도랑

③ 피뢰침 설비가 없는 오두막·함석지붕의 가옥·정자

(4) 위험한 장소 (즉시 떨어져서 안전한 곳(a~c)으로 허리를 굽혀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① 주위에 낙뢰가 격렬하게 발생하고 대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양 다리를 가지런히 해서 주저앉아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② 높이 5 m미만의 물체(수목·바위 등)의 주위는 보호 범위가 없고, 오히려 측격뢰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다.

③ 높이 5~30 m의 물체(수목, 건물, 폴, 전선, 전주)의 보호 범위 밖

④ 높이 30 m이상의 물체(고층 건축물, 크레인, 굴뚝, 고압 철탑)의 보호 범위 밖

⑤ 숲이나 숲 안 (숲이나 숲의 입구 부근도 마찬가지)

⑥ 텐트 가운데나 해변의 파라솔 아래도 위험하다.

⑦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다.

⑧ 산 정상, 능선, 제방 위, 하천 부지, 전답, 해변, 바다 위, 호수 위 등의 트인 곳은 피한다.

(5) 대피 해제

① 낙뢰 경보기가 있는 경우,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경보기로 낙뢰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피 장소로부터 이동을 개시한다.

② 낙뢰 경보기가 없는 경우,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번개가 안보인 후, 30분 이상 경과하고 나서, 대피 장소로부터 이동을 개시한다.



< 골프장에서 낙뢰 시 대피요령 홍보 포스터 예>

3 낙뢰 피해자의 구조

(1) 낙뢰의 피해자는 구호자가 손을 대어도 감전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구호행동을 취해야한다.

(2) 낙뢰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된 사람이 발생하면,

① 맨 먼저에 맥박과 호흡을 검사한다.

② 맥박과 호흡이 멈추어 있는 경우에도 절대로 단념해선 안 된다. 일본에서는 네 명 이상이나 소생한 적이 있으므로 구급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 소생으로 제일 소생하기 쉬운 것이 낙뢰에 맞았을 때인 것을 기억해 둔다.

③ 맥박과 호흡이 있어도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어깨아래에 높이 10 cm 정도의 물건을 대고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한 다음, 구급차를 기다린다.

④ 의식이 있는 경우

- 고막이 찢겨 있을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패닉에 빠지지 않게 진정시키고 구급차를 기다린다.

⑤ 몸에 화상을 찾아냈을 경우는 물로 차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도의 화상이다.

1-5. 가뭄 대책

가. 가뭄현황

1) 최근 2~3년 주기로 지역적인 봄 가뭄 상황 발생

2) '15년 봄 가뭄 발생 ⇨ 6.24일 강우로 가뭄 해갈

3) '15년 여름철 마른 장마로 보령댐 저수량 급감 ⇨ 8.18일 심각단계 진입

○ 서부권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 자율적 급수조정(절수 포함) 추진

나. 원인분석

1) 주로 봄 가뭄은 봄철 갈수기(3~6월)에 지역적으로 발생되어, 여름 장마(6월말)로 가뭄 해갈

○ 건조한 시베리아기단 영향으로 대기중 수분 함유량 적음

2) '15년 여름철 마른 장마는 장마전선이 주로 한반도 남부~북부지역에 머물며 비를 내리고, 중부(충남지역)지역은 빠르게 이동하면서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 극소 ⇨ 보령댐 저수량 급감

3) 중부권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없어, 절대적 강수량 부족 발생

⇨ 보령댐 저수량 부족으로 보령시 등 8개 시군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우려

다. 대책

1) 물 절약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추진

2) 긴급 누수저감사업 추진

3) 관정개발 등 대체수원 개발

4)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사업 추진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 한국수자원공사, '15.10~'16.2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현장의 대응기관을 통합 지원·조정(Support & Coordination)할 수 있도록 **충남재해대책본부 기능 강화, 공통기능**(13개)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 가뭄정도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충남재해대책본부 운영

○ 생활·공업·농업용수 가뭄대책 추진 부서간에 대응상황 공유
- 업무 세분화 및 자료 현행화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2/4분기	- 가뭄관련 교육, 홍보	

2) 재정사업

◇ 안정적인 생활·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6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등 5개사업 총 82,629백만원 투자

□ **사업내용**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10지구, 200억)
- '16년 2지구 준공(470ha), 2030년까지 18지구 완료

○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및 지표수 보강개발 등 (24지구, 66억)
- 매년 시군 대상지 선정, '16년도까지 3지구 준공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16,030백만원)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및 관리,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예비비적 성격)

○ 금강~예당지 도수로 연결 사업

- 금강의 여유수량을 예당지로 공급하여 농경지 7,887ha 수혜

  * 사업비 : 988억원, 사업내용 : 송수관로 31km, 양수장 1개소, 가압장 3개소 등

  * '16년 1월 사업 착공, 12월까지 공정율 40%달성 추진, '17년까지 준공 추진

○ 간월호~부남호 간 수계연결(장기과제)

- 사업비 : 120억원, 사업내용 : 송수관로 11km, 양수장 1개소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설계 및 발주	
2~3/4분기	- 사업 추진	
4/4분기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96,451	113,822	82,629				

3) 절수설비 설치 및 물 절약 홍보 등

◇ 절수설비 설치, 절수지원제 시행, 물절약 홍보추진

□ **주요내용**

○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수도법 제 15조)

- 신축 건물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기존 건축물 포함)
- 공중화장실 등 공공건축물에 우선 설치

○ 한시적 절수지원제 시행(한국수자원공사)

- 대상시군 : 보령댐 용수공급 8개 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 적용기간 : '15.9.25 ~ 가뭄해소 시까지
- 내　　용 : 전년 동월대비 절수량 1ton당 1,240원 지원

- 지원방법 : 수공(절수지원금) → 시군에 현금지급 → 절수 수용가의 당월 수도요금에 차감부과

○ 물 절약 홍보 지속 추진
- 15개 시·군 물 절약 현수막 게첨, 반상회 자료 제공
- SMS 전송 및 문자전광판 송출
- 명절, 축제, 물 대량 사용시설 등에 물 아껴쓰기 홍보
- 물 재이용 사업 추진 및 참여 유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홍보 - 절수지원제 시행	
2~4/4분기	- 물절약 홍보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가뭄발생 예상지역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보유중인 장비 점검·정비 실시

○ 시·도지사는 양수 장보유량이 정수에 미달 시 즉시 확보

□ **물 절약 대책추진**

○ 물 다량 사용업소 및 초·중·고·대학에 절수기 설치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물 다량 사용업소에 중수도 및 절수기 설치 의무화

□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상수원 상류지역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 업소 중점 단속

□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 추진**

○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다목적 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수립 추진 등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 예비용수 공급시설 및 관로 복선화 등

○ 가뭄 발생시 조경·소방·청소용수 등 활용토록 우수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천변저류지 등 확충 및 수자원 재활용 계획 수립

□ **도서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지방 상수도 확충**

○ 도서지역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한 빗물저장시설 확대설치, 물자급율 향상(재난관리기금 활용)

○ 도서지역 운반급수가 불가피환 지역에 대한 상시운반체계 구축

○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시설 확충

나) 대비단계

□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생활 · 공업용수 분야 〉

〈1단계〉

○ 1-1 단계(10% 감량 공급 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 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물관리정책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등)

○ 1-2 단계(10~30% 감량 공급 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 물 다량 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물관리정책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등)

-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의 절수 확대
- 공공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별 절수 적극 유도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 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 수원지(저수지, 지하수) 활용 조치

〈2단계〉 - (30~50% 감량 공급 시)

○ 인근 지자체간 긴급 급수지원

○ 물 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 실시

○ 식수용 관정 개발 확대, 민방위 비상 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 3-1 단계 (50~60% 감량 공급 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산업용수 공급단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 3-2 단계 (60%이상 감량 공급 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 급수 중단

○ 먹는 샘물 공급, 최소한의 식수 배급제 실시

○ 개인 관정 공동이용 등

〈 농업용수 분야 〉

가. 가뭄대비 준비단계

○ 기상전망,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논·밭 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평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청,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을 통한 상황 파악

○ 수리시설·양수 장비, 용·배수로 사전 점검, 용수확보에 주력

○ 수리불안전답 등 농업용수 부족 지를 파악하여 논 물가두기 추진

○ 가뭄대비 농작물관리 및 재배요령 홍보·지도

-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가뭄 상습 지 내만식성 품종 재배
- 퇴비, 볏짚 등 유기물 피복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 지도
- 용수확보 불가능지역은 건답직파 등 작부체계 개선 지도

○ 저수지 물넘이 돋우기, 간이물막이 등 농업용수 최대 확보 및 물관리 철저

○ 항구적인 농업용수대책 추진

- 논·밭 용수개발 및 기존시설보강, 지하수 개발 등 지속추진

나. 가뭄우려 단계

○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논·밭 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부진 및 부분적인 피해발생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시·도(시·군)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 가뭄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조적인 가뭄극복 운동 전개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 지방비 지원

○ 모내기 지연에 따른 못 자리 모 마름방지 및 절수형 영농추진

-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하고 비닐 깔기 등으로 물 손실 방지

○ 관정, 송수 호스 등 양수 장비를 이용,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암반관정, 간이용수원 개발 등 긴급용수 개발 계획 수립 추진

- 공사 중인 지구의 조기 부분급수면적 최대한 확보 및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 장비 배치 망 구성 및 인력지원 계획 수립

○ 지역단위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지원

- 시·도(행정·지도) 영농, 수리시설, 양수장비 등 기술지원

○ 가뭄지역은 논·밭 구분 없이 초동단계부터 급수 대책

다. 가뭄확산 단계

○ 논·밭 건조지역이 늘어나고 농작물의 시들음 현상 확산

- 건조 : 토양수분 함량 40%미만

○ 농작물의 파종 및 발아, 정식지연 지역이 확산되고 고사 등의 농작물 피해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시·도(시·군), 농업관련기관·단체의 가뭄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 가뭄극복을 위한 총동원 지원체제로 전환

○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 장비를 총동원하여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총력 지원

- 관계부처에 인력·장비 지원 및 일손 돕기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정업체 보유 장비 총동원 지원

○ 늦모내기 논 병해충 방제 및 비배수 관리 중점 지도

○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은 대파 지원

○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및 인근 군부대 장비인력 지원

- 영농·양수 장비, 수리시설 기술지원단 현지 지원

- 군부대 인력 및 중장비 가뭄지역 현지 지원

○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 장비를 가뭄지역에 전수 배치하여 다단급수, 양수저류 등 적극 추진

○ 간이용수원, 관정 등 용수원 개발 확대 지원

○ 가뭄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강화

○ 다목적 댐 용수를 농업용수로 방류 협조 요청

□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교육**

○ 자막방송 및 특집프로 제작 홍보

- 지역방송매체 및 CA-TV 등을 통한 절수운동 전개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가뭄발생 예상지역 관리**

가. 한해 장비 점검·정비 지원

○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양수 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나.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 분석

○ 논·밭의 토양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 상황 파악

○ 용수원 확대 개발(관정, 하상굴착, 간이보 등), 양수 장비 및 인력 총동원 급수 추진

다) 대응단계

□ 유관기관간 공조체계 가동으로 신속한 가뭄대책 시행

○ 평상시

- 관련 실과별로 상황을 유지하되 필요시 가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상황관리체계 구축 시행

○ 가뭄시작 단계

〈시·도〉

- 가뭄 현상이 2개 시·군·구(시·군·구수의 20%) 또는 2개 분야(생활·농업·공업용수) 이상 나타나고 가뭄 지속이 예상될 때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뭄대책 업무를 관장하되, 업무 비중이 높은 실·과에서 총괄 상황 관리하고, 관련 실·국에서 해당 분야 상황관리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각종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시행

〈시·군·구〉

- 가뭄 현상이 2개 읍·면·동(읍·면·동의 20%) 또는 2개 분야(생활·농업·공업용수) 이상 나타나고 가뭄지속이 예상될 때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뭄업무를 관장하되, 업무비중이 높은 실·과에서 총괄관리하고, 관련 실과별로 상황관리
- 지역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각종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시행

※ 가뭄현상과 자치단체 특성에 맞도록 상황관리체계 조정·시행

○ 가뭄 확산 단계

〈시·도〉

- 가뭄 현상이 5개시·군·구(시·군·구수의 30%) 이상 나타나거나 장기 기상 전망에 가뭄 지속이 예상될 때
- 가뭄대책 업무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각 실국별 상황관리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 지역관내 유관기관(기상대, 농진청, 농협, 농어촌공, 수공, 지방국토관리청, 한전 등) 및 군부대, 각종단체, 기업체 등과 가뭄극복 총력 지원체제 구축 시행

〈시·군·구〉

- 가뭄 현상이 5개 읍·면·동(읍·면·동의 30%) 이상 나타나거나 장기 기상 전망에 가뭄 지속이 예상될 때
- 가뭄대책 업무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분야별 관련 실과에서 상황관리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 지역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 각종단체, 기업체 등과 가뭄극복 총력지원체제 구축 시행

□ **절수운동 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자막방송 및 특집프로 제작·홍보 등 절수운동 전개

○ CA-TV 등을 통한 홍보 : 가뭄극복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가뭄 판단기준

가뭄 정도	상수도분야 (환경부)	댐 (용수공급제한) (국토교통부)	농작물/농업용수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마을상수도 급수제한	기본계획공급량의 80~90% 공급 - 생·공용수 실수요량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 공급	(관심단계) 논 저수율 70% 이상 밭 수분 61~80%
2단계	지방상수도 급수제한 (50%미만 감량 공급 시)	기본계획공급량의 60~80% 공급 - 생·공용수 실수요량 + 농업용수 공급 * 하천유지용수 감량 공급	(주의단계) 논 저수율 51~70% 밭 수분 41~60%
3단계	지방상수도 급수제한 (50%이상 감량 공급 시)	·기본계획공급량의 50~60% 공급 - 생·공용수 실수요량 공급 *농업, 하천유지용수 감량 공급	(경계·심각) 논 저수율 50% 이하 밭 수분 40% 이하
4단계	지방상수도 급수 중단	기본계획공급량의 50%이하 공급 - 댐의 사수용량 활용 공급 * 생·공, 농업, 하천유지용수 감량 공급	

라) 복구단계

□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한 복구**

□ **생활·농업·공업용수 분야별 비상급수 결과보고**

□ **가뭄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 **가뭄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 지원**

○ 이재민 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1-6. 지진 대책

가. 피해현황(없음)

나. 목표

구 분	'15년 발생건수	'16년 목표	비 고
인명피해	0	0	

다.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발생시 피해 저감

□ **사업 내용**

○ 내진보강대책 수립 근거 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 (도)소방서, 농업기술원, 어항시설, 항만시설 등 5종6,831백만원
- (시·군) 금산군, 태안군 등 2종 170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내진보강(내진성능평가) 사업발주	
2/4분기	내진보강(내진성능평가) 사업추진 점검	
3/4분기	내진보강(내진성능평가) 사업추진 점검	
4/4분기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정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31,323	3,319	7,001	7,001	7,001	7,001	
내진보강	27,629	2,369	6,315	6,315	6,315	6,315	
내진성능평가	3,694	950	686	686	686	686	

2) 사전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사전대응체계 구축·정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적극적인 도민홍보를 통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주요내용

○ 지진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한 '지진발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실시(중앙방침 이후 정비)

○ 위기대응 단계별 절차 우선 시행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등 실제와 같은 훈련실시(중앙↔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 지진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율 제고(현재 25% → 전국평균 40% 수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2/4분기	지진발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도상훈련 실시	
3/4분기	도민 홍보 책자 및 팜플릿 제작·배포	
4/4분기	주요공공시설 내진보강실태 점검, 지진대응요령 홍보강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 단계

(1) 중점 대응

○ 시설물의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 지진해일 피해우려지역 및 대피시설 정비

(2) 세부 활동 내용

○ 지진발생시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관리

- 지진재해대책법령 상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관리
- 내진설계 적용실태 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율 제고

○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완공된 기존시설물 및 신축 저층건축물에 대한 내진대책 추진

-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부처 주관 하에 연차적 내진보강 실시
-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나) 대비단계

(1) 중점 대응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대비 비상연락망 등 구축.점검

○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지진발생 대비 응급복구체계 구축.점검

(2) 세부 활동 내용

○ 유관기관 지진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연락처 정비

○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및 대피로 사전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동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 훈련 실시

○ 이재민 대피장소 지정, 사전점검

○ 인력 및 장비.물자의 비축 등 이재민 긴급구호체계

○ 비상급수, 생필품의 확보, 수송 및 공급체계

○ 복구 인력, 장비.자재의 지정.비축, 담당자별 행동요령 정비

다) 대응단계

(1) 중점 대응

○ 대규모 지진 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

(2) 세부 활동 내용

○ 지진 및 지진해일 특보의 유관기관 신속 통보

- SNS, 유·무선, FAX,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지진해일 발생시 피해예상 지역에 지진해일 경보 발령
- 상황전파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CBS(지진해일)·DMB 재난방송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활용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지진발생 피해 지역의 신속한 상황파악 및 보고
- 소방, 경찰, 군 헬기 동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활용, 피해범위 및 규모 예측
- 지진피해 규모에 따른 대응조치의 시행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가동
-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각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대처 시행 등 초동 조치 실시
- 현장지휘소의 신속 설치 및 각 기능별 활동 전개
-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 도로, 하천, 농업시설, 항만시설 등 대규모 주요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 대도민 홍보활동 전개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대도민담화문 발표
- 피해지역 실상 보도 및 복구를 위한 지역주민 동참 유도
- 필요시 비상홍보센터 운영 및 주기적 상황 발표
- 각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 요청(민방위경보통제실→방송사)

○ 도 및 시·군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라) 복구단계

(1) 중점 대응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2) 세부 활동 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편성·운영
- 도로, 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피해 조사
- 복구대책은 피해형태별로 수립, 지원하되 필요시 중앙 합동 복구지원단에 협조요청
- 체계적인 복구계획의 수립, 추진
- 개선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 피해의 사전 예방

- 복구사업은 계획수립시 방재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절차 등 제도 개선
- 예비비 형태의 복구예산제도의 개선 추진
- 복구사업 발주, 입찰 등 복구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용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보급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 활동
- 피해가옥, 가축 등의 잔해 처리
- 방역소독, 가스·전력·통신 및 상수도 등 라이프라인 시설 복구

○ 지진피해 원인분석 조사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지진피해조사단 편성·운영
- 지진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 지진재해 경감대책 마련
-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제시
- 피해 기록 및 평가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지진 발생시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일지 기록
- 사진·동영상 등으로 재해흔적 기록
- 지진대응 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1-7. 황사 대책

가. 피해현황

○ 최근 10년간('05~'14) 전국 연평균 황사일수(7.4일)는 과거 30년('81~'10) 평균(6.1일) 대비 증가하는 경향

○ '05~'11년까지 매년 고농도 황사 발생으로 3~5회 황사특보 발령

- 미세먼지(PM_{10}) 시간당 최고농도가 2천~3천$\mu g/m^3$에 달하거나('06.4, '07.4, '10.3) 지속시간이 82시간('11.5)에 달하는 매우 강한 황사 관측

<황사발생 및 특보발표 횟수, 전국>

(단위 : 횟수)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황사발생횟수	11	10	13	10	10	15	7	5	5	11
특보발령횟수	4	5	4	3	3	3	3	-	-	-

<황사발생일수>

(단위 : 일)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천안지역 ('05~'14년 평균)	0.3	0.1	1.6	-	1.0	-	-	-	0.1	0.1	0.5	0.8
서울지역 ('05~'14년 평균)	0.2	0.4	2.6	2.1	1.9	-	-	-	0.1	0.1	0.7	1.2
전국 30년 ('81~'10년 평균)	0.2	0.1	1.7	2.4	1.0	-	-	-	-	-	0.2	0.3

나. 원인분석

○ 중국, 몽골 등의 사막화 면적 확대 및 강수량 감소, 황사발생에 유리한 기류 형성 등 기상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다.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주요내용**

○ 황사 대응 매뉴얼 개선

- 기관 및 부서별 역할·임무 검토 및 비상연락 현행화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황사대응 매뉴얼 개정(안) 마련	8월
4/4분기	황사대응 매뉴얼 개정	12월

□ 법령 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2) 재정사업

◇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실시간 현황관리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추가 설치

□ 사업내용

○ 황사, 미세먼지 등 모니터링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 720백만원

-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에 1개소씩 연차별 설치

* 2017년 2개소(보령,태안), 2018년 2개소(당진,서천)

□ 추진일정

○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7~2018년 설치확보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720			360	360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720**			**360**	**360**		

3) 점검, 홍보 등

◇ 황사에 대한 관심을 높으나 황사 시 행동요령, 황사특보제 등 황사대책의 인지도는 낮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황사관련사항 공유 필요

□ 주요내용

○ 황사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

- 황사 시 행동요령 주민 홍보

  * 황사 경보상황 확인을 위한 스마트앱 설치 및 문자서비스 가입 지속 홍보, 미세먼지 경보제와 연계

- 분야별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른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확인 및 점검

※ 황사 예보 및 특보 등 발령기준

- 황사 예비특보기준

발령기준	옅은 황사	짙은 황사	매우 짙은 황사
농도(1시간평균)	400㎍/㎥이상	400~800㎍/㎥	800㎍/㎥이상

- 황사 특보기준

발령기준	황사 주의보	황사 경보
농도(1시간평균)	4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예상 시	8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예상 시

- 황사 재난사태 선포기준

· 황사농도 2,400㎍/㎥이상(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예상 시)
· 황사농도 1,600㎍/㎥이상(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예상 시)
*선포절차 : 중앙본부장→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중앙본부장 선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황사시 행동요령 등 홍보	연중
3/4분기	황사대응 매뉴얼 개정에 따른 분야별 의견수렴 및 피해예방 대책 보완	8월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황사 감시활동 등 강화**

○ 중국, 몽골 등의 사막화 면적 확대, 강수량 감소 등 국외 여건에 따라 발생함으로 지자체의 예방활동에 현실적 한계

○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연차별 추가확보(7개소 → 11개소)

○ 국내유발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및 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나) 대비단계

□ **정보공유 및 협조 · 지원체계 구축**

○ 기관별 황사발생 대응매뉴얼(행동)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황사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관리 강화(미세먼지 경보제와 연계한 황사경보제 운영관리,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황사발생에 따른 주민행동 요령(가정, 교육기관, 농가 등) 홍보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기상청 예비특보에 따른 황사 이동시간, 이동경로 및 지역영향 등 확인

○ 각 분야별 황사피해방지대책 추진(학교, 산업계 및 농업계 피해 예방 등- 실외경기 등 야외활동 자제, 농축산분야 관리요령)

○ 기상청 황사특보 발령에 따라 SMS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 관련 기관 및 도민에 전파(미세먼지 경보제와 연계한 황사 경보제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황사 피해상황, 현장조치 사항 등 확인(관계기관 신속한 보고, 시·군환경부서→도 환경관리과→환경부)

□ **재난대책본부 운영**

○ 초대형 황사 발생에 따른 중앙황사대책상황실의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운영

- 인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외활동 금지 대국민 홍보
- 해당 지역에 대한 학교 휴교
- 반도체 등 정밀산업, 도장 등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조업 일시 중단 등 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농축산물 관리대책 홍보,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최소화 추진
- 위급환자 구조·구급 등을 위한 긴급구조단 구성·운영

라) 복구단계

□ **위기경보 변경 · 해제**

○ 기상청의 황사특보 등 해제 시 SMS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 관련기관 및 도민에 전파(미세먼지 경보제와 연계한 황사 경보제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황사특보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금속 농도 분석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 **황사상황 종합정리 보고 및 후속조치**

○ 재난사태선포 종료 시 황사 피해 등에 대한 조치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환경부에 보고

○ 황사상황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전파

○ 황사 피해 농가 및 축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등), 도로 및 가로수에 대한 세척작업 인력·장비 지원 등 후속조치 실시

1-8. 녹조 대책

가. 원인분석

○ (금강) 가뭄의 영향으로 유량 감소로 인한 정체, 하천의 부영양화, 보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기상조건만 맞으면 특정지역에 녹조 현상 발생 가능성 상존

나.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환경부 개정 2016년 하반기 개정 예정)

- 하천까지 조류경보제도 및 조류제거 조치명령 대상 확대

○ 녹조 대응 매뉴얼 개선

- 기관 및 부서별 역할·임무 검토 및 비상연락 현행화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녹조대응 매뉴얼 개선(안) 마련	5월
4/4분기	녹조대응 매뉴얼 개정	12월

□ **법령 제 · 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류경보기준 변경, 조류경보제도 적용 대상 및 조류제거 조치명령 대상을 하천으로 확대

2) 재정사업

① 가축분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하천 수질개선

□ 사업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0,567백만원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지원[계속사업(3개소)의 공사비 : 10,567백만원]

  * '16년 완공사업(2개), '18년 완공사업(1개)

○ 신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의 증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60,102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 18,567백만원
-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 15,332백만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지원 : 25,909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4분기	사업예산 교부 및 집행현황 점검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비 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5,448	4,881	10,567			
공공하수처리시설	184,153	24,411	59,808	52,102	47,832	

3) 기타 시책

□ 주요내용

○ 오염지류 및 오염원 관리 철저

- 수계별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부 여부, 각종 수상시설물 점검 강화
- 금강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금강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유사시 적극 대응

- 조류 대발생시, 하천유지용수의 공급과 유속증가를 통해 조류증식 억제
- 시설여력을 고려하여 녹조발생기간(6~8월)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질을 강화하여 운영
- 수질관리 및 조류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조류발생시 하천(도내 대청호에서 금강하구언까지)은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단계별 대응

구 분	클로로필-a (㎎/㎥)	대 응 조 치
관 심	70~105	▪ 상황전파, 오염원 관리강화, 수질관리협의회 개최
주 의	105~140	▪ 방류수 수질강화, 정수장 관리강화 등
경 계	140~175	▪ 수질개선시나리오 마련, **비상방류**, 고도정수처리, 조류제거
심 각	175~	▪ 비상대책강구, **비상방류**, 고도정수처리, 조류제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3/4분기	각종 수상시설물, 하·폐수처리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5월~8월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녹조 예방 · 감시활동 강화**

○ 축산농가 밀집지역 주기적 점검 및 계도 활동

○ 유기물질, 총인, 총질소 다량배출사업장 목록화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조류우심구간 상류 부유쓰레기 제거 등 하천정화활동

나) 대비단계

□ **정보공유 및 협조 · 지원체계 구축**

○ 기관별 조류대발생 대응매뉴얼(행동)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녹조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

○ 녹조 유발 오염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수면관리자 등 유관기관과 녹조대응 비상체계 구축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소관수면에 대한 조류제거물질(황토 등) 살포 등 초동방제 실시

○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초동방제 공동대응

○ 녹조발생 범위 및 특이사항, 하류 취·정수장 현황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환경부 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

○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의 녹조제거

○ 피해 및 대응활동 등 파악(긴급구조)

○ 유관기관, 시·군 대응상황 확인, 핫라인 유지

○ 긴급구조기관 비상근무, 대응상황 확인, 협조 유지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장비 지원 요청

○ 자발적 민간 참여 지원 긴급지원체계 가동

○ 중앙 현장상황관리관, 전문 대응팀 업무 지원

○ 주요인사 피해현장 방문 시 브리핑

□ 상황판단회의

○ 조류 대발생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을 평가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개최

○ 위기평가회의 의제 : 위기상황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논의

- 위기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단,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유선 또는 참석자 중 상급자가 주관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음

라) 복구단계

□ 위기경보 변경 · 해제

○ 위기경보 변경이 필요하거나 녹조 방제가 완료되면 방제상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위기경보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

○ 녹조제거 조치 등 위기 대응상황을 분석 평가한 후 위기경보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

○ 위기경보가 변경되거나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전파

□ **녹조방제상황 종합정리 보고 및 후속조치**

○ 위기경보 발령이 해제되었을 때는 녹조방제 등 조치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환경부에 보고

○ 위기상황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전파

○ 위기상항 대응조치에 참여한 모든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대응결과를 분석한 후 매뉴얼 보완 등 후속조치 실시

1-9. 적조 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5		

주) 피해액은 2014년도 환산가격 기준임

2) 적조 발생 현황 및 지원 현황(5년간)

연도별 발생시기		발 생 해 역	적 조 생 물
2009	7.15 ~ 7.24	보령연안, 천수만, 서천해역	유해성(차토넬라)
	7.28 ~ 8.10	보령연안, 천수만	무해성
2010	7.27 ~ 7. 3	보령연안, 천수만	무해성
	8. 6 ~ 8.13	비인만해역	유해성(차토넬라)
2011	7. 5 ~ 7. 8	천수만	무해성
2012	9. 7 ~ 9.19	보령, 서천, 태안해역	유해성(코클로디니움)
2013	9.12 ~ 10.1	서천, 보령해역	유해성(코클로디니움)

나. 원인분석

○ 엘리뇨 등 수온상승으로 인한 바다 미생물 번식으로 발생

- 일조량, 수온, 염분 등 미생물의 대량번식에 알맞은 해양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크게 발생

다. 목표

○ 예찰활동 강화로 발생 시 적조 피해 최소화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양환경관리(유기물 유입 방지 등) 철저

구분	'12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0	0	
재산피해(억원)	5	0	△5

라. 개선방안

1) 기타 시책

◇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조에 대한 예방 철저 및 예찰활동 강화

□ 주요내용

○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13명

○ 적조대책반 구성 : 4개반 18명(총괄반장 : 수산과장)

○ 피해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 주력

- 적조상설 감시망 운영 : 3개반, 11개 지점(주2회, 발생시 매일)
- 적조명예감시원 위촉 지정 운영 : 30명

* 황토확보 : 8,041톤

계(톤)	보령	서산	홍성	서천	태안
8,041	2,500	196	100	295	4,950

- 개인장비 : 여과기, 산소공급기 등 2,478종

□ 적조발생시

○ 적조대책위원회 및 대책반 운영

○ 상황전파 및 단계별 조치

- 어업인에게 유무선전화, SNS, 속보 등을 활용하여 신속 전파
- 황토살포 등 적조발생 단계별 조치 매뉴얼 따라 대응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 적조발생시 적조대책위원회 및 대책반 운영 - 적조 상시 감시망 운영 - 양식생물 입식량 조사 - 황토 등 방제장비 점검	
3/4분기	- 적조 상시 감시망 운영 - 어장관리 관련 정보 등 제공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관심단계

□ 적조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

- 접수 : 해양수산부(중앙적조대책본부)
- 내용 : 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으로부터 위기경보 수준【위기경보-관심(Blue)】

○ 전파

- 대상 : 충남도(시·군), 수산관리소,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수산 관련 단체 등
- 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경보 수준 및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2) 대응조치

① 적조발생 해역에 대한 예찰 대응조치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파악(수산과학원, 충남도 수산관리소)

- 선박을 이용 현장의 적조시료 채집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선 적조 예찰해역 조사
- 국립수산과학원 종합상황실에서는 현장의 적조예찰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
- 해역별 적조 발생규모, 진행상황, 금후 전망 등을 예측
- 수산과학원 적조종합상황실에서는 유관기관 단체에 적조진행 통보체제 구축
- 수산과학원 적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보서 입력 및 속보 발령체제 운영

○ 단계별 조치계획 점검(수산과학원, 충남도 수산관리소)

- 유해성 적조 발생전 사전 정보수집
- 적조 출현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 적조주의보 발효시 기관별 조치사항 및 단계별 행동요령

② 양식어장 관련대응조치

○ 해상가두리양식장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제 사전 준비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현미경 등 적조예방 장비 점검
- 적조 구제 물질인 우량황토 사전 준비
- 적조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선박, 예비그물 등 준비

○ 육상수조식 해수어류양식장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제 사전 준비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예방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
- 양식장 배출구 주변에 황토 비치
- 예비 사육수 최대한 비축

나) 경계단계

1)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

- 접수 : 해양수산부(중앙적조대책반)
- 내용 :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위기경보 수준【위기경보-경계(Orange)】

※ 적조주의보 발표(유해성 적조생물 농도 300개체/ml이상)

○ 전파

- 대상 : 충남도(수산관리소),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수산관련 단체 등
- 내용 : 국립수산과학원「경계」수준 및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2) 대비점검

○ 중앙 및 지방적조대책본부 및 상황실 본격 운영 개시

- 대상기관 : 해수부, 수산과학원, 충남도(시·군), 수산업협동조합
- 근무요령 : 해양수산부 근무요령에 준함

【해양수산부 세부 근무요령】

< 근 무 요 령 >

○ 대 상 : 해수부, 수산과학원, 충남도(수산관리소)
○ 기 간 : 상황 통보일 ~ 상황 종료 통보시 까지
○ 근무방법
  - 주간사무실(평일) 비상근무(09:00~20:00), (주말) 비상근무(09:00~17:00)
  - 야간 비상연락 상시 유지(20:00~09:00)
  - 전국 관계기관은 일일 상황보고를 중앙적조대책본부로 16:00까지 보고(단, 수산과학원은 16:30까지 보고)
○ 근무인원 : 1일 2인 또는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근무

3) 대응조치

【적조발생 해역에 대한 선박예찰 대응조치】

○ 유해성 적조 진행상황 파악 및 신속전파(수산과학원, 충남도 수산관리소)

- 선박을 이용 현장의 적조시료 채집 및 분석(적조생물 농도 등)
- 현장의 선박에서 적조시료 분석결과를 상황실에 즉시 보고
- 수산과학원 시험선과 충남도 수산관리소 기술지도선간 적조 예찰 해역을 분담하여 조사 강화 및 정보교환
- 유관기관 항공예찰 결과를 예찰해역의 선박과 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 대응토록 조치
- 국립수산과학원 종합상황실에서는 현장의 적조예찰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발생규모, 진행상황, 금후 전망 등)

- 분석된 종합정보를 해양수산부, 충남도(수산관리소), 시·군,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인단체, 양식어가 등에 즉시 통보

【적조발생 해역에 대한 항공예찰 대응조치】

○ 유해성 적조 항공예찰 실시(수산과학원, 해경청, 충남도 수산관리소)

- 헬기를 이용 광역단위 항공예찰
- 항공예찰시 적조 주요 발생해역의 출동 선박과 신속한 정보 공유
- 수산과학원은 항공예찰 결과를 토대로 적조진행상황 등 종합적으로 분석

○ 단계별 조치계획 추진

- 유해성 적조 발생전 사전 정보수집
- 적조 출현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 적조주의보 발효시 기관별 조치사항 및 단계별 행동요령

【양식어장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조치】

○ 해상가두리양식장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비상체제 돌입
- 유관기관, 단체 적조 방제선 양식단지 집중 배치
- 양식장에 적조 유입시 방제선으로 황토 살포
- 어촌계단위 자율 방제단 현장 투입, 초동방제 강화
- 액화산소 공급시설, 콤프레샤, 현미경 등 적조예방 장비 가동
- 적조진행상황에 따라 입체적 대응 방제체제 확립

○ 육상해수양식장

- 적조발생 및 진행상황 정보수집, 대응체제 확립
- 양식장 주변의 적조시료를 수시로 채집, 검경하여 조치
- 적조경보기, 해수 여과시설,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등 적조

예방장비 가동

- 양식장 주,배출구 주변에 황토 비치 및 살포
- 야간에 고밀도 적조 양식장주변 접근시 가능하면 환수를 중단, 액화산소 등 비상체제 돌입
- 적조 내습시 먹이공급을 일시 중단

다) 대응단계

○ 적조 방제단 구성·운영

○ 행정선 및 어업지도선 동원 및 방제지원명령

※ 6척(도, 보령2, 서산1, 홍성1, 태안1)

○ 어선 동원(천수만내) - 수협

○ 종합상황실 운영(언론대응, 예찰추진, 피해파악 및 예찰 등)

○ 황토살포 명령 등(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결정)

□ 적조방제 실시

○ 황토 살포(8,080톤) - 바지선 임차 및 어선 등 활용

□ 양식어류 방류

○ 당해산 치어에 대한 방류(8cm내외/마리당 500원 내외)

※ 방류질병검사(수산관리소) 및 시군 담당자 입회 수량 확인 등

○ 먹이 공급 중단, 양식장 주변 산소공급, 적조분산조치

□ 폐사어 처리

< 처리근거 >

○ 폐사어 발생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적정 처리(2차오염 방지)

-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지정업체 처리(비료, 사료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

* 폐사어 해양 무단투기시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2항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처리절차 >

○ 폐사어 확인 : 피해지역 항·포구에 담당공무원 근무, 폐사어 확인

○ 소량폐사 : 피해합동조사 후 어업인들이 자체 수거하여 매몰 처리

○ 대량폐사 : 시군에서 군병력 동원 및 장비임차 수거, 운반하여 매몰 또는 비료공장 반입

□ **합동피해조사반 구성 운영**

○ 주　　관 : 시·군

○ 참여기관 : 수산과학원(서해연구소), 수산관리소, 수협, 어업인 등

○ 역　　할

- 피해발생 원인의 과학적 규명 및 피해 물량의 확정
- 피해발생시 신속 정확한 조사 및 폐사어 수거처리로 2차 오염방지
- 폐사체 신속처리 방안 강구(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계약 등)

라) 복구단계

< 피해복구 지원체제 확립 >

○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관계규정, 어업재해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 직접지원 : 치어 입식비, 양식생물 철거비
- 간접지원 :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 피해복구비 감액 지원 >

○ 행정기관의 권고, 지시사항 미 이행 경우 등

- 재해대책 명령서 발부 시 명시(시·군)

○ 육상양식장의 예방·관리 소홀로 피해 발생 경우

- 양식장 허가기준에 적조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 양식어가 어·패류 입식 및 출하신고 미 이행 시 지원 제외

1-10. 폭염 대책

가. 피해현황

1) 인명피해

(단위 : 명)

구분	합계	'11	'12	'13	'14	'15
온열질환자	225	25	78	45	18	59
사망자	7	2	4	-	-	1

2) 가축피해 : '14년 136,440, '15년 269,773마리 폐사

나. 원인분석

1) 무더위쉼터 운영 미흡 및 이용률 저조

- 전기료 부담 및 관리자 부재 등

2) 농촌지역 고령화 및 생계활동 통제 한계

- 온열질환자 장소별 발생 현황 중 논밭의 비중이 가장 큼

3)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 폭염 예방조치 소극적 대응

다. 목표

구분	'15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폭염피해 사망(명)	1	0	△1

라. 개선방안

1) 폭염 상황관리체제 구축·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T/F팀 구성·운영

○ 폭염특보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재난문자방송, CBS 등)

【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사항 】

사전대비	특보발령(주의보·경보)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SMS, 크로샷 DB)	○ 폭염특보 상황전파·전달 및 상황관리
○ 취약계층 파악 및 재난도우미 지정	○ 폭염 대책 추진 및 언론모니터링
○ 무더위쉼터 재정비, 지정·점검	○ 관계기관 폭염 대처상황 파악 및 지도
○ 폭염 특보기간 대국민 지속 홍보·교육실시	○ 일일 폭염 대처상황 보고 및 사례전파

2) 폭염대응 홍보 활동 강화

○ 폭염 특보시 마을앰프 활용 폭염주의 계도방송 실시

○ 현장방문 및 민방위 경보방송을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을이장, 담당직원 직접방문 홍보와 민방위 경보방송 적극 활용

○ 언론·방송사, 전광판, 인터넷 등 활용 국민행동요령 홍보

○ 폭염대책 추진계획 및 폭염 대처요령 등 언론보도·브리핑

○ 지자체별 지역주민대상 폭염대응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 등 교육홍보, 예방캠페인 및 간담회 실시

3) 폭염정보 전달 체계 구축

○ 주관부서 : 중앙 및 도, 시·군 폭염담당부서

○ 지원부서 : 도 폭염관련 실과 및 시군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지원 담당부서

○ 재난도우미의 비상연락망 DB 구축, 폭염특보시 또는 무더위 예상시 관련정보 신속 전파

- 크로샷 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DB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등 재난도우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활동(안부전화,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추진

< 크로샷 등 활용 폭염정보 전달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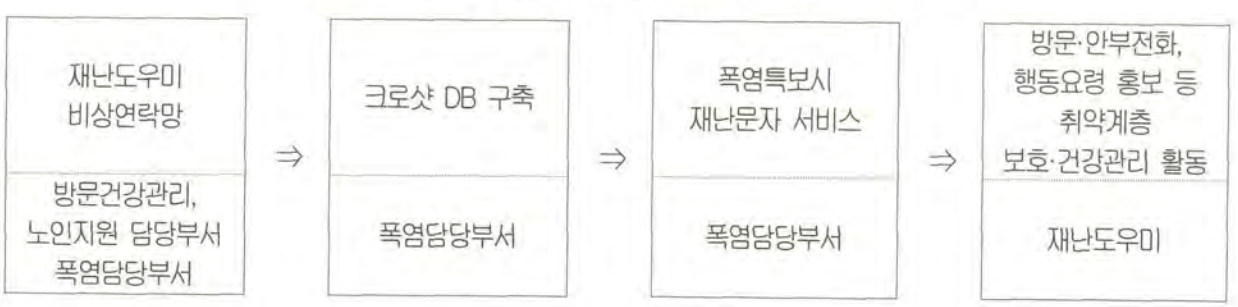

< 폭염특보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체계도 >



4)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관리

○ 주관부서 : 시·군 폭염 담당부서

○ 운영기간 : 2016. 6. 1. ~ 9. 30.

※ 단, 폭염 장기화로 운영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시 한시적 운영

○ 쉼터기능 :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건강관리

○ 지정기준

-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접근이 양호한 장소
- 에어컨이 갖춰진 시설에 한해 지정
-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정자, 공원, 종교시설(교회), 금융기관 등

※ 평상시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역사, 관공서 등 적극 지정

○ 운영·관리기준

- 관리책임자(3명) 지정,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 시·군 재난부서·사회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각 1명

☞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

-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관리책임자는 평시 주 1회 유선점검, 폭염발생시 즉시 현장 점검

  *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위 쉼터 5곳 이상 현장 점검

  ** 이·통장 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현장관리관을 지정하여 병행 점검 가능

- 시·군 담당부서장 및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 냉방기 가동여부 확인,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발생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쉼터 지정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점검내용 기록관리

- 지정결과는 도를 거쳐 국민안전처에 정기적으로 통보
- 시·군 재난관리시스템 무더위쉼터 입력·관리

○ 쉼터에는 냉방기기와 폭염발생시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비상시 응급조치를 위해 비상구급품 등 구비

- 무더위에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에어콘 등 냉방기를 갖추고 필요시 냉장고, 가구 등도 구비
-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야간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시 적극적으로 개방 운영
- 야간·주말·휴일은 폭염시 실제 개방가능한 경로당·마을회관 중심으로 지정, 운영·관리

○ 쉼터 냉방비용 예산 부족시 재해구호기금 적극 편성·활용

○ 쉼터의 위치·이용안내를 위해 각종매체를 활용 주기적 홍보

- 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반상회·리플렛·홈페이지 등

○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

○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활용·복지지원·건강관리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운영

5)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운영

○ 주관부서 : 시·군 폭염담당부서

○ 지원부서 : 시·군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지원 담당부서

○ 재난도우미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노인돌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
- 재난부서 지정도우미 : 폭염담당 부서 공무원,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지정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전담인력 운영 방법

-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중관리군, 정기적 관리군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인력 활용
- 재난부서 지정도우미는 읍·면·동 마을단위로 지정하되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취약계층과도 직접 연계

○ 재난도우미 역할

- 폭염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과 동행 폭염취약계층 방문 건강체크 또는 안부전화 등 건강관리·보호
- 무더위쉼터 위치·이용안내 활동,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홍보

6)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

○ 주관부서 : 도 및 시·군 폭염담당부서

○ 지원부서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부처

○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대(14:00~17:00) 휴식 유도

- 운영시기 :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시
- 대 상 : 65세이상 노인, 초·중·고 학생, 농민, 군인,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 운영방법

- 농사일, 체육활동, 야외작업,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토록 유도 및 권고(14:00~17:00 3회 이상)

-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의 휴식 유도를 위해 전단지 배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등 홍보 추진
- 건설·옥외현장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정부 및 시·군 발주 공사, 각종 정비사업 시행·담당부서는 관련 사업 추진시 폭염관리 지도 추진

7)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간담회 개최

○ 지원부서 : 시·군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지원 담당부서
○ 교육시기 : 6월중
○ 교육대상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재난부서 지정도우미 등
○ 교육방법 : 시·군별로 실시
○ 교육내용 : 폭염 행동요령,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처치요령

8)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지키기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주관부서 : 시·군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지원 담당부서
○ 홍보기간 : 7~8월말
○ 홍보방법
- 폭염특보와 관계없이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재난도우미를 활용, 마을단위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홍보내용 : 폭염 행동요령,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처치요령
○ 구급대원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구급대원의 "열 손상 환자 응급처치 원칙" 숙지 및 "정맥내 수액공급" 능력 향상
○ 폭염 관련 구급장비 확보 및 정비

9) 민간 전문기관 참여, 폭염 조사·분석 기능 강화

○ 폭염 피해발생(인명·농축산) 지역 현장조사, 피해원인 분석 실시 및 폭염대책 개선방안 도출
- 폭염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 재해경감대책협회의 가동
- 폭염 피해발생 지역에 대해 기상 및 환경특성 조사·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

마.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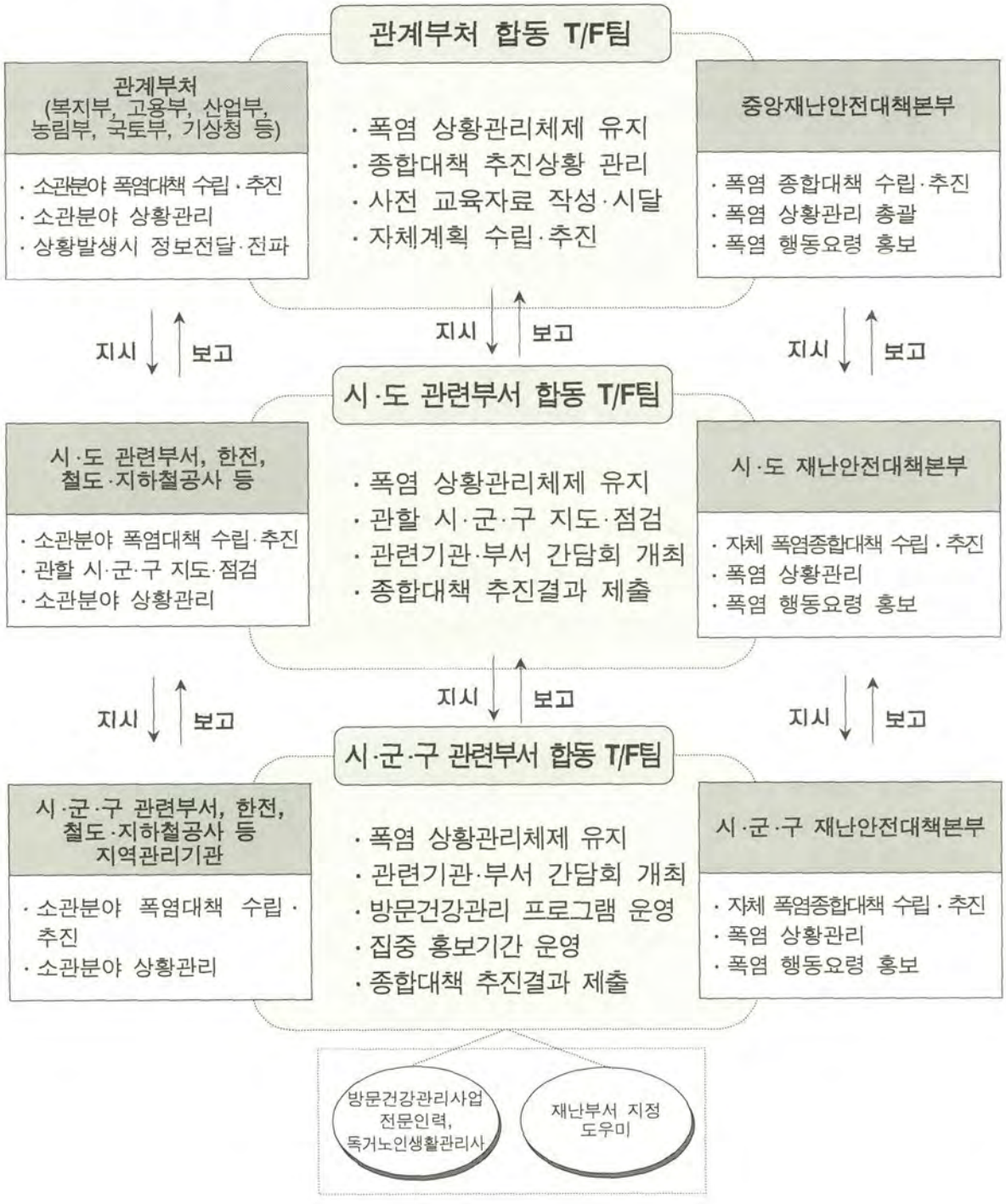

1-11. 산사태 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산사태	111	11	21	-	-	-	37	24	18	-	-

주) 피해액은 복구금액 기준임

나. 원인분석

○ 최근 10년간('05~'14년) 6.5ha → 5년간('10~'14년) 10.4ha → '14년 0ha

※ 13~15년 산사태 발생 없음

○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발생 규모가 시기별, 지역별 편중되는 경향

○ 상류에서 발생된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에서 토석류(土石流)로 확대되어 생활권지역에 대규모 재해를 유발시키는 사례 빈번

- 토석류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사방시설 확충의 필요성 증대

다. 목표

○ **산사태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조사 및 복구역량 강화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사방사업

◇ 산사태(토석류 포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사업 실행

□ 사업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우기전(6월말) 현장 점검·정비 및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 '15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우기전 지정·심의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 산사태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 인명피해 예방이 필요한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시설 우선 설치

* 사방댐/계류보전('16) : 30개소/40km

○ 산사태 현장 대응인력의 확충

- 산사태방지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5개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실시	1월 ~
2/4분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월 ~
2/4분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5월 ~
2/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5월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사방사업	111,606	19,381	19,133	24,364	24,364	24,364	

2) 기타 시책

가)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사방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및 철저한 사후관리 실행

□ 주요내용

○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는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점검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노후·파손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안전조치는 물론 사방댐 상·하류 지역에 골막이·사방댐 등 필요한 공작물을 추가 조성

○ 사방댐 안에 토석 등이 가득 쌓인 곳은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여 우기전 필요한 조치

- 사방댐 준설이 불요한 곳은 미실행 사유를 명시한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

○ 사방댐의 시설관리 이력사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 사방시설의 관리·점검 및 안전진단·안전조치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 실시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해제사항에 대한 적기 행정절차 추진
- 5년 이상 경과지에 대한 적기 현지조사로 해제여부 검토 후 신속조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사방댐 시설관리 이력사항 입력	1월~
1/4분기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2월~
2/4분기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4월~
3/4분기	사방댐 준설 필요성 조사 및 조치	8월~

나) 산사태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산사태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 추진으로 전문인력 양성

□ 주요내용

○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위주 담당자 교육 추진

- 산사태방지 담당자 교육

  * '16년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부처별 공동 재해예방 협업체계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5단, 40명) 직무교육(사방기술원)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거주민 대피 등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교육

-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실무교육

  *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요령, NDMS 입력, 복구사업 추진체계 등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산림교육원, 사방기술원)

  * 사방사업 설계·시공·감리 등 고급 전문가 양성

○ 산사태 예방·대응 연찬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 산사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방·대응 등 우수사례를 발굴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예방·대응 체계 확립(대피체계, 상황전파, 실제대피로, 피해예방 사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방지 담당자 위탁교육	3월 ~
2/4분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5월 ~
2/4분기	산사태 예방·대응 워크숍	5월 ~
4/4분기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12월 ~

다)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 하여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에게 산사태 발생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응단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기상상황전파, 피해발생 및 대응상황 등 홍보
- (조사·복구단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방향 등 홍보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일반국민 등 주요 타킷별 맞춤형 홍보

- TV,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등 제공

○ 산사태 방지 사진콘테스트 참여

- 우수사례 사진 공모를 통해 산사태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홍보에 활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	4월 ~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산사태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산사태예방 종합계획 수립

○ 지역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수립

- 지역 산사태예방 연도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실천과제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관리 및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 재해취약지역별 여름철 풍수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복구에 관한 사항 등

2) 산사태방지 담당자 교육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법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실시(5단, 20명)

- 운영기간 : 5.15 ~ 10. 15 * 4월말까지 현장예방단 선발 및 구성완료
-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응급조치, 유사시 주민대피 등 조치

3) 산사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실시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 주민대피, 평가·환류 등

나) 대비단계

□ **시 · 군 대비조치**

○ 풍수해.산사태(호우, 태풍)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숙지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현행화 및 매뉴얼 숙지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 고시, 현장점검 및 주민 비상연락망 정비, 대피장소 지정 · 주민홍보 실시

○ 산사태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한 방재물자(장비, 자재 등) 확보

○ 산사태 예방 · 대응 추진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예방대책 추진실태, 산사태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숙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숙지 등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연락처 현행화

- 대피요령, 대피장소 등 숙지 및 홍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협업체계 사전구축

* 지대본, 소방서,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등 긴급구조·구호 등 사고수습 대비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산사태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 강화

○ 위기경보 "경계" 수준(충남도 Ⅱ단계) 비상근무 실시(3명)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예측정보 수신 전파

2) 태풍·호우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태풍.호우 재난상황 모니터링

- 기상청의 기상정보(태풍 · 호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 태풍의 강도 · 크기 · 예상진로 및 집중호우 범위 · 예상강우량 등

○ 태풍·호우 재난상황(기상 · 피해상황, 조치사항 등) 보고 및 전파

- 상황보고 : 상황실장 → 국장, 부지사, 도지사, 산림청, 유관기관
- 상황전파 : 상황실 요원 → 시군 및 소속기관·단체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산사태 피해지 도 합동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도 재난대책본부 주관, 산사태 등 피해 현지조사 및 재원별 복구비 소요액 검토

* 근거법령 : 재난기본법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제59조(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 산사태전문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 인명 및 대규모 피해지 등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공법 제시

□ **복구사업관리**

1) 산사태복구 사업지시 및 복구비 지원

○ 도 재난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지시

- 생활권지역 등은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모든 피해지는 다음연도 우기전 항구복구 완료 추진

2) 산사태복구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산사태 전문가에 의한 현장 기술자문 등 견실복구 지원

3) 산사태대책상황실 설치·운영결과 평가.환류

○ 산사태 예방 ·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시행

2. 사회재난 관리대책

2-1. 대형화재 대책

가.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화재 발생현황('10년 ~ '14년)

구 분 /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	인 명 피 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연평균	2,867	104	19	86	21,785
합 계	14,334	521	93	428	108,926
2014	2,838	86	21	65	20,476
2013	2,657	96	26	70	24,569
2012	3,098	95	13	82	21,739
2011	2,917	116	15	101	16,026
2010	2,824	128	18	110	26,117

○ 계절별 화재 발생현황('10년 ~ '14년)

구 분	계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
발생건수 (비율)	14,334	4,556 (31.8%)	2,805 (19.6%)	2,877 (20.1%)	4,096 (28.6%)
인명피해 (비율)	521	156 (29.9%)	104 (19.9%)	103 (19.8%)	158 (30.3%)
사 망 (비율)	93	31 (33.3%)	10 (10.8%)	21 (22.6%)	31 (33.3%)
부 상 (비율)	428	125 (29.3%)	94 (21.9%)	82 (19.2%)	127 (27.7%)
재산피해 (백만원) (비율)	108,926	26,590 (24.4%)	24,968 (22.9%)	23,847 (21.9%)	33,521 (30.8%)

○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10년 ~ '14년)

구 분 / 화재원인	건 수 (비율)	인 명 피 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합 계	14,334	521	93	428	108,926
전기적	3,206 (22.4%)	40	6	34	26,512
기계적	1,452 (10.1%)	22	3	19	9,316
화학적	130 (0.9%)	1	0	1	1,161
가스누출	57 (0.4%)	32	3	29	748
교통사고	264 (1.8%)	9	0	9	1,990
부주의	6,780 (47.3%)	208	32	176	18,131
기타	323 (2.3%)	13	4	9	2,386
자연적	160 (1.1%)	0	0	0	979
방화(의심)	522 (3.6%)	81	18	63	3,157
미상	1,440 (10.0%)	115	27	88	44,542

나. 원인분석

○ **(총 괄)** 최근 5년간('10~'14) 화재는 총 14,334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521명(사망 93명, 부상 428명), 재산피해 1,089억원이 발생함.

○ **(계절별) 계절별** 화재 발생은 봄철 4,556건(31.8%)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겨울철 4,096건(28.6%), 가을철 2,877건(20.1%), 여름 2,805건(19.6%)의 순으로 나타나며,

○ **(인명피해)** 인명피해는 겨울철 158명(사망 31명, 부상 127명)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봄철 156명(사망 31명, 부상 125명), 여름철 104명(사망 10명, 부상 94명), 가을철 103명(사망 21명, 부상 82명) 순으로 나타남.

○ **(원인별)** 원인별 화재 발생은 부주의 6,780건(47.3%)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3,206건(22.4%), 기계적 1,452건(10.1%), 미상 1,440건(10.0%), 방화 522건(3.6%) 순으로 나타남.

다. 목표

구분	최근5년 평균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104명	99	5% ↓
재산피해(억원)	218억	207	5% ↓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주요업무 등)

가) 현장중심의 화재대응역량 강화

◇ 소방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현장 도착 기반조성과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및 현장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한 화재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소방차 '골든타임' 내 화재현장 도착율 향상 기반 조성

- 신개념의 합리적 소방차 골든타임 정책 추진

  * 소방차 골든타임을 '신고 ~ 현장도착' 시간으로 출동 소요시간을 관리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장애요인 해소를 통한 신속한 출동로 확보

  *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위반 차량 등 출동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정례화(분기 1회, 민방위훈련과 병행)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

- 화재대응역량 평가인증제 실시 및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교육 확대
-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강화

○ 대형화재 대비 소방작전전술 개발 및 팀 단위 운용능력 향상

- 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5월), 소방전술경연대회(10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신개념의 합리적 소방차 골든타임 정책 추진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교육 전국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1월 상반기 분기 1회
2/4분기	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	5월
3/4분기	화재대응역량 평가인증제	상·하반기
4/4분기	소방전술경연대회	10월

나) 문화재 화재진압 대응역량 강화

◇ 주요 목조문화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초기 대응시스템 구축과 자위소방 능력 제고 등 화재진압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유관기관 합동 화재예방 협의체』 구성 · 운영

- 소방서별 지방자치단체(문화재 · 산림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역량 강화방안, 소방차출동 진입로 확보,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 협의 및 추진 등

○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 추진

- 초기화재 진압훈련 실시 및 진압장비 · 소방시설 보강 독려

○ 화재진압대응 매뉴얼 작성 및 수정 · 보완

- 소방관서 주관, 문화재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참여

  * 문화재 도면 확보 및 소방차 진입여건, 건축물 증 · 개축 등 여건변화에 따른 진압작전 · 전술 수정보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유관기관 합동 『화재예방 협의체』 정비 화재진압대응 매뉴얼 정비	1~3월
2/4분기	유관기관 합동 화재진압훈련 실시(화재진압대응 매뉴얼 작성 대상)	반기 1회
3/4분기	소방차출동 진입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개선	연중
4/4분기	유관기관 합동 화재진압훈련 실시(화재진압대응 매뉴얼 작성 대상)	반기 1회

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 강화
◇ 허가관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영업주 변경신고시 교육이수 확인

□ 주요내용

○ 불특정 다수인을 관리하는 다중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는 2년 1회 소방안전교육
- 화재안전관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2년 1회) 과정 신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5년) / '16년 1월 시행

○ 변경된 다중이용업주의 영업시작 전 소방안전교육 시기 확보

- 허가관청의 영업주 변경신고 수리시 교육이수 확인 규정 신설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수교육 대상자 현황 작성 및 교육안내	1월
	편성된 교과과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실시	1월
	신규 다중이용업소 교육실시 및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1월
2/4분기~	허가관청 확인사항 입법안 작성 및 법률 개정추진	2월

□ 법령 제 · 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영업개시전 1회 → 2년에 1회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변경된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신고수리시 허가관청이 소방안전교육 이수 확인

라)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추진

◇ '14. 5. 28. 장성 요양병원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사망 21명, 부상 6명)
◇ 요양병원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15.1.8.시행)
◇ 소방시설 기준 강화 추진(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15.7.1.시행)

□ 주요내용

○ 요양병원은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발생 등의 경우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요양원과 동일한 수준의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토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5.7.1)

○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 2018. 6. 30(3년 유예)

- 요양병원 총 66개소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40개소 적용

* 설치비용(연면적 2천기준) SP 1억5천만원, 간이SP 1억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소급적용 대상 현황 파악 및 조사	2월
2/4분기	소방서 홈페이지 및 안내문 발송	5월
3/4분기	소급적용 요양병원 대상 현지 안내 및 지도	9월
4/4분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 현지지도	11월

□ 법령 제 · 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sp, 자탐, 자속)

2) 재정사업

◇ 소방청사 신,증축 및 소방차량 보강 등으로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소방장비(소방차량 등) 현대화

- 신규소방차량 배치 및 노후소방차량 교체

* 주력차 8종 :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굴절차, 구조차, 조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기반 조성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기초소방시설 보급
-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및 화재피해주민 주거복구비 지원

○ 대테러 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 현장대응 구조버스 보강 및 유해화학물 누출 대응장비 보강

○ 소방정보 통신시설 및 장비 현대화

-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고성능 카메라) 구성 및 설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소방장비 보유 실태 및 현황 조사	3월
2/4분기	소방장비 구입 및 설치계획 등 수립	5월
3/4분기	소방장비 등 현장배치 집행현황 파악	9월
4/4분기	예산집행 및 관리현황 일제조사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소방대응력 강화	60,098	15,225	10,412	10,932	11,478	12,051	

3)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을 통한 긴급구조 대응역량강화

◇ 재난발생 유형의 다양화 및 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현장지휘 및 대응력 강화

□ 주요내용

○ 재난현장 대응·수습체계 개선을 위한 표준편제(모델) 적용
- 긴급구조대응단계와 수습·복구 단계를 나누어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 편제 적용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 운용에 대한 통제단장 지휘·통제
-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 통제단 해제 및 소방서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제도 추진 및 구축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토록 근거법령 신설
- 평상 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 관리
- 재난 시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훈련 실시
- (종합훈련) 지역 유관기관 참여하는 종합 기동·시범훈련(본부·서 연1회)
- (불시훈련) 통제단 설치·운영절차 및 기능구현 훈련
- (도상훈련) 통제단장 주재로 가상상황 부여 및 즉응훈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현장 대응수습체계 표준모델 적용	1월
2/4분기	긴급대응협력관 제도 신설 법령 개정	6월
3/4분기	긴급구조 종합·불시훈련 실시	연중
4/4분기	긴급구조훈련 결과 분석	11~12월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대형화재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 재난 또는 재난대비 훈련시 긴급구조대응 임무부여 및 절차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효율적 긴급구조활동
-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기본계획, 기능별) 및 긴급대응계획

2) 신속한 상황처리 및 역할수행을 통한 각종 재난상황 대비

- 주요 재난유형 별 상황전파훈련 매뉴얼 정비(18종→19종)
- 시기별·계절별 특성에 맞는 상황전파 훈련 정례화
- 재난관련 기관(부서) 실무자 등 비상연락망 확인·정비

3)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계절별·시기별 등 소방대상물 특별조사
- 건물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실태 및 행태조사에 중점
-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확인

□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지원

1)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도상훈련 및 워크숍 추진
○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및 관계자 전문교육 추진
○ 동원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SNS활용 소통 추진

2) 소방응원협정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대응태세 구축

○ 대형화재시 민·관 자원동원 및 효과적 대응능력 확보
- 대규모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 유관기관 및 단체와 응원협정 체결
-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소방응원 출동체제 구축

3)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을 통한 긴급구조 대응역량강화

◇ 재난발생 유형의 다양화 및 현장 여건변화에 따른 현장지휘 및 대응력 강화

□ 주요내용

○ 재난현장 대응·수습체계 개선을 위한 표준편제(모델) 적용
- 긴급구조대응단계와 수습·복구 단계를 나누어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 편제 적용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 운용에 대한 통제단장 지휘·통제
-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 통제단 해제 및 소방서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제도 추진 및 구축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토록 근거법령 신설
- 평상 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 관리
- 재난 시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훈련 실시
- (종합훈련) 지역 유관기관 참여하는 종합 기동·시범훈련(본부·서 연1회)
- (불시훈련) 통제단 설치·운영절차 및 기능구현 훈련
- (도상훈련) 통제단장 주재로 가상상황 부여 및 즉응훈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현장 대응수습체계 표준모델 적용	1월
2/4분기	긴급대응협력관 제도 신설 법령 개정	6월
3/4분기	긴급구조 종합·불시훈련 실시	연중
4/4분기	긴급구조훈련 결과 분석	11~12월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대형화재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 재난 또는 재난대비 훈련시 긴급구조대응 임무부여 및 절차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효율적 긴급구조활동
-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기본계획, 기능별) 및 긴급대응계획

2) 신속한 상황처리 및 역할수행을 통한 각종 재난상황 대비

- 주요 재난유형 별 상황전파훈련 매뉴얼 정비(18종→19종)
- 시기별·계절별 특성에 맞는 상황전파 훈련 정례화
- 재난관련 기관(부서) 실무자 등 비상연락망 확인·정비

3) 대형화재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계절별·시기별 등 소방대상물 특별조사
- 건물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실태 및 행태조사에 중점
-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확인

□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지원**

1)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도상훈련 및 워크숍 추진
○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및 관계자 전문교육 추진
○ 동원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SNS활용 소통 추진

2) 소방응원협정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대응태세 구축

○ 대형화재시 민·관 자원동원 및 효과적 대응능력 확보
- 대규모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 유관기관 및 단체와 응원협정 체결
-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광역소방응원 출동체제 구축

나) 대비단계

□ 대형화재 예방 대응활동 강화

1) 긴급대응 · 출동태세 강화

○ 화재·구조·구급장비, 시설 등 정비·점검 철저

- 정비·점검대상 : 화재진압·구조·구급·통신·보호장비 등
- 정비·점검주기 : 일일·주간·특별점검
- 정비·점검내용 : 차량 및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 유무

○ 소방공무원 비상연락망 점검(비상소집훈련 실시)

○ 화재초기 총력대응태세 구축

- 화재대응긴급구조통제단운영등에관한지침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소방응원협정체계 정비·점검

○ 현장지휘 및 보고체제 확립(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

○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활동 강화 및 비상근무 실시

2)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취약시설 관리 철저

○ 소방특별조사, 특정관리대상점검 등과 연계한 안전점검 실시

○ 백화점·시장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3) 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점검

○ 상황관리체제 등 상시대비체계 점검·정비

○ 전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긴급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준비상태 점검

○ 긴급구조 대응체계 및 절차에 대한 연습 · 훈련 실시

○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 점검

다) 대응단계

□ 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및 운영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가. 개요(목적)

○ 화재유형의 다양화·대형화로 선제적 출동단계 체제로 효과적인 초동조치와 대형화재 사전 차단을 위한 충남소방본부의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광역대응

나. 주요내용

○ 화재출동대 편성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시스템 일원화
- 소방서 및 광역 단계별 화재 출동대 편성 일원화

○ 현장지휘관 비상발령 권한 부여
- 소방본부장(서장) 외 선착대장 이상 모든 지휘관 및 상황팀장

○ 소방환경에 부합한 탄력적인 대응시스템 선진화
- 종합방제센터의 관제기능 향상 및 상황요원 전문화

○ 현장지휘관 및 긴급구조통제단자의 지휘활동 지원 강화
- 현장지휘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휘대요원 및 통제반원 활용

다. 단계별 출동대 편성

구 분	소방서 대응			광역 대응		
출동단계명	1차 출동	2차 출동	3차 출동	광역 1호 (대응 1단계)	광역 2호 (대응 2단계)	광역 3호 (대응 3단계)
긴급구조 통제단	대비단계 (통제단 가동준비)		통제단 가동	광역 1호	광역 2호	광역 3호
대응소방력 기 준	2대 이상	5대 이상	10대 이상	광역 5대 이상	광역 10대 이상	광역 15대 이상

라. 종합방재센터 관제기능 강화(Control-Tower 역할 수행)

○ 모든 현장 출동대에 대한 정보수집·전파 기능 이외에 현장 지휘(지원) 및 조정·통제 등 총괄 수행

○ 시·도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및 능동적 상황 대응
- 주요재난 등 대형화재 시 관련기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2-2. 문화재화재 대책

가. 문화재 피해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1	0	0	0	0	0	0	0	0	1	0
화재	1	0	0	0	0	0	0	0	0	1	0
산불	0	0	0	0	0	0	0	0	0	0	0

나. 원인분석

1) 최근 10년간('05~'14)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전국적으로 총 41건(전소 2건, 일부소실 39건 등) 발생

- 道 내 발생현황은 2013년 아산외암마을(윤흥섭 가옥)안채 그을림, 2015년 덕산향교 출입문 그을림 등 2건임

2)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방화 및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산불은 담뱃불에 의한 비화로 발생함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문화재피해(건수)	0	0	0

*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 저감 등을 목표로 설정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현행 매뉴얼 보완 및 개정, 실효성 및 활용성 제고
◇ 재난 유형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주요내용

○ 문화재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정비

- 재난유형에 상관없이 문화재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매뉴얼 개선 및 협업체계 구축

* 도내 문화재 968개소(국가지정 234, 도지정 734) 매뉴얼 정비

○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문화재청, 도, 시군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가동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4/4분기	○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정비(상시)	1~12월

2) 재정사업

◇ 영상통합시스템 및 소방시설 설치, 전기시설 개선 등 방재시설 구축
◇ 방화관리자 용역 지원 및 안전경비 인력 배치·운영

□ 사업내용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방화, 도난, 훼손 등 초기 예방시스템 구축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논산 노강서원 강당 등 10개소
-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천안 직산향교 등 13개소

○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한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행위 근절

- 감시인력 배치 : 공주 마곡사 영산전 등 13개소 32명 배치

○ 중요목조문화재의 방화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지원

-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소방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37개소

* CCTV, 감지기 및 소방시설 등 점검 용역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추진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시·군 교부	1~3월
2/4분기	○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시·군 추진상황 점검(상반기)	4~6월
3/4분기	○ 안전경비 감시인력 교육 실시(연 2회)	7~9월
4/4분기	○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시·군 추진상황 점검(하반기)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2,823	2,363	2,440	2,560	2,680	2,780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3,415	555	600	680	760	820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2,000	400	400	400	400	400	
감시인력 배치	5,400	1,040	1,060	1,080	1,100	1,120	
방화관리 용역지원	2,008	368	380	400	420	440	

3) 교육·훈련, 점검 등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안전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문화재 현장의 방재설비 정상가동 여부 점검, 안전경비원 근무환경 및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 대상별 재난안전교육 실시

- 대　　상 : 문화재 담당직원(시 · 구), 문화재 경비인력 등
- 내　　용 : 소화기 · 소화전 사용요령 등 이론, 실습교육 병행
- 추진방법 : 소방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안전경비원 및 담당공무원 등 교육대상별로 연 1회 이상 맞춤형 교육 실시

○ 재난대응 체득화를 위한 훈련 강화

- 비상시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 재난대응훈련 실시

* 매뉴얼에 따른 재난대응훈련 연 2회(상 · 하반기) 이상 실시

○ 도내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안전점검 실시(분기별)

- 점검대상 : 총 269개소(국가지정 39개소, 도지정 230개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해빙기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1~3월
2/4분기	○ 풍수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 석가탄신일 대비 안전점검	4~6월
3/4분기	○ 가을철 화재 및 산불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7~9월
4/4분기	○ 동절기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10~12월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재난관리교육 및 홍보**

1)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교육

○ 문화재 재난관리 공무원, 문화재 관리자 등 재난발생시 문화재 유지관리 및 재난대비 교육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2) 재난발생 시 피해경감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지역 TV, 신문, 인터넷, 트위터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재난발생 상황과 재난발생시 문화재 소산 및 대피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

나) 대비단계

□ **재난대비 안전점검 강화**

1) 점검반 구성 및 점검실시

○ 사업추진 상황 및 부실시공 예방 등 현지 점검(상·하반기) 실시

○ 해빙기, 하절기, 가을철 및 동절기 등 년 4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방안 강구

⇨ (소방) 소방서, (전기) 전기안전공사, (가스) 가스안전공사 등

2) 분야별 점검사항

○ 안전관리분야

- 안전경비인력 및 관리인 순찰 등 근무관리실태
- 위기대응관리 및 CCTV 및 모니터 작동여부 확인 등

○ 소방 및 방재시설분야

- 소화기 비치 상태, 옥내·외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상태
-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기 등 경보설비 운영상태
- 자체소방안전관리 및 화기취급 등 유지관리상태 확인
- 공사현장 흡연금지 및 인화물질 제거 정비
- 무속 행위에 따른 화기물 감시 강화 등

○ 전기 및 가스시설분야
- 배분전반 및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 기타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및 손상여부 점검
- LPG용기 누설 여부, 가스누설 차단장치 등 가스시설 점검 등

○ 중점점검분야
- 문화재 및 보유시설물 부재 이격, 기울임, 균열, 파손 및 훼손
- 축대, 옹벽, 석축 등 파손, 손상, 균열발생과 배수시설 관리상태
- 절개지 낙석 및 침하 여부,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 건설공사장의 지반침하 및 사면붕괴, 흙막이 유지관리상태
- 산불대비 산림과의 이격거리 유지
- 목조건축물 지붕 누수 여부 점검 및 기와 고르기 정비
- 유물전시관, 전수회관과 주변시설의 취약부분 점검 등

□ 재난예방체계 구축

○ 사찰 등에 대한 자위 소방체계 구축

○ 목조문화재 방충, 방부 처리 및 방연제 도포

○ 수시 소화시설 점검 및 노후소화기 교체

○ 문화재 소유, 관리자에 대한 계도
- 소화기 비치,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관계기관,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숙지

○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소방서, 경찰서, 시·군 및 문화재청 간 유기적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중점관리 대상 선정 관리

○ 선정대상 시설

- 재해 우려가 큰 목조 문화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 노후한 문화재 및 다우, 다설 지역 소재 문화재
- 연례적 재난 발생지역에 속하는 문화재

○ 관리방법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관리책임자 지정, 수시 점검활동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대책에 반영
- 관련 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현황 파악 보고체계 유지
- 화재대응 매뉴얼 지속정비 및 시행

다) 대응단계

□ 사고발생 단계

1) 사고 초기상황 파악 및 응급대응 지시

○ 심각성, 피해확대 가능성 여부, 파급효과 등 파악

2) 재난대비 사전(장비, 자재) 실태 확인 및 필수요원 보강 근무 실시

□ 초기대응 단계

1) 문화재 붕괴 등 상황정보 인수 및 재난상황 추가 파악

○ 피해상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붕괴 주변 여건 등

2) 현장 지휘관 지정 및 현장 출동(현장 정보 등 파악)

○ 관할 소방서 현장 출동 전까지는 자위소방대장이 현장지휘관 역할 수행

○ 소방서 선착대 도착 후 소방관(소방서장)에게 현장 지휘권 인계

3) 상황판단회의 및 유관기관 등 대응상황 확인

○ 문화재 파괴, 반출 등 긴급한 조치사항 긴급결정

○ 화재대응 및 문화재 보호 우선순위 변경 등 대응방침 결정

○ 인명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 및 피해 방지 대책 강구

○ 기관별 역할·임무 분담 및 기타 화재대응 관련 주요 의사결정

4) 문화재 소산 및 보호조치 시행

○ **기본 방침**

- 문화재를 분류(지정, 비지정)하고 신속 안전하게 소산
  * 지정문화재, 경량 문화재 우선 소산
  * 소실 및 훼손될 우려가 높은 문화재부터 우선 소산
  * 유관기관 협조 하에 안전한 장소로 소산
- 소산이 불가능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 해체, 매몰 및 피복 등 시행
- 문화재 소실·훼손 및 도난방지 등 종합계획 수립

○ 유형별 소산대책

가. 건조물문화재, 동산문화재 소산

1) 건조물문화재 내 동산문화재의 소산 등을 위해 대피시설 사전확보
- 소산계획 수립 시 문화재의 훼손및도난방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

2) 문화재 소유(관리)자는 사전에 소산문화재 목록 작성비치 관리
- 지정구분 · 명칭 · 크기 · 재질 · 무게 · 소산장소 등 명시

3) 재난 피해 발생우려가 높을 경우 해당 문화재 소유(관리)자는 소산문화재 목록, 소산계획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안전한 장소로 소산

나. 천연기념물(도 기념물) 소산 - <종 지정 천연기념물(동물)>

1) 축양 천연기념물(제주마, 오골계 등)은 모든 개체를 안전시설에 소산
긴박할 경우에는 혈통 우수 소수개체(50개체이상) 선정
- 천연기념물 분포 위치도를 배포하여 문화재 보호 정보 공유

2) 우선 보호 천연기념물을 동물원 등 전문시설에 소산하고 불가능시에는 인근 축산장, 대학 등의 보유시설 등으로 소산
- 종 지정 천연기념물(동물)의 유관기관에 비상 소산 등 공조체계 유지
- 유관기관의 보유자원을 파악하여 유사시 활용방안 강구
-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여 신속한 협력체제 유지

3) 긴박한 경우 야생 생존가능 천연기념물은 적극 야생 방사

다. 사적, 명승 중요민속자료 등 문화재 소산

- 중요 건조물문화재 소산 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동 문화재지역의 실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 지역재난대책본부 운영

1) 문화재 붕괴 등 상황정보 인수 및 재난상황 추가 파악

○ 재난복구비용 검토 및 이재민 구호소 운영 등 확인

○ 자발적 민간참여 지원 및 긴급지원체계 가동

○ 피해사항 접수, 복구방법 및 규모설정

2) 화재상황 파악, 전파, 보고 및 현장관리

○ 진화인력 · 장비 투입상황, 화재확산 여부 등 파악

○ 문화재청 및 민간기관 전문대응팀 지원요청

○ 유관기관, 시군 비상근무실시 요청 및 지시

○ 재난방송 실시 및 재난상황 홍보 강화

3) VIP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준비(필요시)

○ 문화재 피해 및 진화상황, 향후 화재 진화계획 보고 등

라) 복구단계

□ **정확한 피해조사**

1)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현지 조사단 운영

○ 현지 조사단 구성

- 단 장 : 문화재과장
- 단 원 : 관계 전문가, 공무원(도, 시군), 유관기관 등

○ 현지 조사단 임무

-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문화재 피해상황, 진행상황 등을 현장 조사 후 상황반(문화재청, 도)에 신속 보고
- 자체 문화재 재난방재대(방호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점검·유지하고, 해당기관에 문화재 보호조치 지시
- 문화재 재난 방재대 편성, 구난 인력동원, 응급복구 및 보호조치, 문화재 대피경로 확보
- 도난방지 경계강화, 문화재소실 · 훼손 방지 및 문화재소산 지원

2) 피해 상황조사, 책임소재 분석,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 피해지역 소실 문화재 등에 대한 응급조치 추진

□ **원활한 재난 복구대책**

1)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 문화재 및 주변시설은 응급복구로 피해 확대를 방지조치 유지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기본원칙이므로 정밀조사를 통한 복구방안 강구

○ 도 재해대책본부, 문화재청 등에 문화재 보수예산에 대한 우선적 지원 요청(긴급보수비 등)

○ 재해복구 완료 시까지 각급 유관부서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 추진

2) 문화재 피해 우려 시 현지조사단 구성·파견(필요시)

○ 문화재청, 도청(문화재과) 등 해당부서 합동

○ 문화재 보호조치 지도 및 피해상황 조사

3) 사고범위의 신속한 확인 및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복구순위 선정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4) 피해시설 복구대책수립 및 원인 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

○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 **수습조치의 시행**

1)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처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2)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등 공급

3)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지원

2-3. 산불 대책

가.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단위 : 건, ha,백만원)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건수	157	26	27	13	6	12	7	14	15	16	21
면적	113.42	31.93	21.96	9.05	2.7	3.8	0.69	11.83	10.32	16.49	4.65
금액	1,924	75	37	25	18	9	4	479	398	598	281

나. 원인분석(최근 10년간)

○ 총 157건 113.32ha(연평균 15건, 11.3ha 산림피해)

○ 집중발생 시기

- 3~4월에 집중 발생 65%(103건), 피해면적 87%(99.19ha)

※ 특히 4월에 발생건수 42%(65건), 피해면적 55%(62.48ha)

- 정오·오후 시간에 집중발생(92%), 11~18시에 144건 발생

○ 산불발생 원인

- 입산자 실화(38%), 폐기물 소각(37%) 산불이 대부분 차지
-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주원인

다. 목표

○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산불진행 상황 파악
-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로부터의 피해 최소화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산불방지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초동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33종	16,142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산불지상진화 전문인력(750명) - 인건비, 보험료, 조장수당,출동차량,급식비 등	13종	7,497	
산불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산불전문인력 등 교육·훈련 실시 - 전문교육, 기본교육, 예방교육, 지상경연대회	91회	122	
산불감시원 운영	최일선에서 산불위험지 등 순찰 및 계도 (487명)	1종	4,419	
산불진화장비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 산불진화차, 감시카메라, 소화시설 등	17종	2,284	
산불임차헬기	공중에서 산불감시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권역별 배치 운영	2대	1,820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6기관) 산불방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 운영, 산불진화장비 등 구입	사전준비(1월)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2~3월)
2/4분기	산불방지대책 본부 및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불취약지 기동순찰, 산불예방 홍보 등	3~5월
3/4분기	기상여건에 따라 산불예방 업무 추진	7~9월
4/4분기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6기관), 산불방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 운영, 산불지상경연대회 개최, 산불인접시 인화물질 제거 등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산불예방 사업	79,968	15,400	16,142	16,142	16,142	16,142	

2) 교육·훈련, 홍보 등

◇ 산불방지 종사자의 진화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 **주요내용**

1 산불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산불방지 교육·훈련, 홍보강화

○ 교육대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담당공무원
유관기관(영림단, 군부대, 민간인 등)

- 전문교육(6시간) :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 기본교육(3시간) : 산불감시원, 영림단, 공무원 등
- 예방교육(2시간) : 지역주민, 농·산촌 주민, 유관기관·단체 등

○ 교육내용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중심으로 교육
(실제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정에 맞는 매뉴얼 교육)
- 산불방지 인력은 산불예방·진화 및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유관기관·단체 등의 산불예방·진화 보조업무 등에 관한 교육
- 농·산촌 주민 등 취약계층은 산불발생을 줄이는 목적의 교육

○ 산불방지 지상진화 경연대회

- 산불진화기계시스템의 운영 및 진화능력 향상을 기하고 정보교류의 기획 확대 제공
- 때 · 곳 : '16. 10~11월 중, 도내 일원

○ 교육 횟수 및 사업비 : 91회, 122백만원

○ 교육기관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설립허가 2015.1.15.)

〈 '15년 교육 및 훈련실적 〉

① 산불예방 교육(전문·기본·예방) : 126회, 3,076명

② 산불진화시범훈련 및 경영대회 개최(11.4)

- 보령댐 물빛공원, 470명(26개 기관·단체)

2 맞춤형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 활성화

○ 산불예방·대비 및 복구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에게 산불예방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대응단계) 산불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전파, 피해발생 및 대응상황 등 홍보
- (복구단계) 산불피해 현황조사 및 복구방향 등 홍보

○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TV,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기획홍보, 기고, 보도자료 등 배포
- 산불조심기간동안 기관별로 특색있게 캠페인 추진
  · 지역축제(특산물, 마라톤) 등 인파가 많은 곳을 대상지 선정
  ·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캠페인 전개
-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유관기관·단체 등 산불방지 홍보물 배부
  · 모자, 조끼, 삼각 깃발, 어깨띠 등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불방지 교육·훈련 위탁계획 수립 및 계약 교육 및 훈련 실시,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국산불방지관계관 회의 참석	위탁계약(1월)
2/4분기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3~5월
3/4분기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 산불전문조사반 교육	5~9월 6~7월
4/4분기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 산불지상경연대회 계획수립 및 개최 전국 산불방지 연찬회 참석	경연대회 (10~11월) 연찬회(11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산불재난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산불취약지 등 관리 철저

○ 산림 연접지역 및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사전제거(11~2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750명) 및 산불감시원(487명) 선발 운영

- 산불취약지 집중 순찰 및 계도, 단속

○ 산불취약지 지속관리 및 취약자 일제조사

○ 산불위험 예보제와 연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2) 산불취약지 등 현장 맞춤형 홍보 실시

○ 국민적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실시간 산불위험 예보제 운영
- 지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를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등

○ 산불위험 홍보 방송(보도·유선·마을방송) 및 홍보물 설치

나) 대비단계

1) 도 대비조치

○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달(시·군, 사업소)

○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시·군 대책본부 통제(216기관)

- 봄철 2.1~5.15(104일), 가을철 11.1~12.15(45일)

○ 산불위험시기별로 경보 발령(주의, 관심, 경계, 심각)

○ 산불방지협의회 운영 활성화(24명, 14개 기관 7개 단체)

-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진화대책 등 주요 추진대책 협의

○ 시·군 산림부서장 관계관 회의 및 영상회의 수시 개최

○ 산불위험시기 주말을 이용한 기동단속 및 임차헬기(2대)를 이용한 공중계도 및 감시활동 강화

2) 시 · 군 대비조치

○ 지역(시·군)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선발 배치
○ 산불발생 취약지 및 취약자 선정관리
○ 산불위험 요인(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사전 제거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고시
○ 소속공무원 취약시기 현장배치 및 예방활동 실시
○ 산불진화장비(산불진화차, 등짐펌프, 무인감시카메라, 개인진화장비) 등 정비 점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편성 운영(공무원, 진화대 등)
○ 유관기관·단체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설치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 운영 강화

○ 위기경보 "경계" 수준 비상근무 확대실시(소속직원 6분의1이상)
- 시·군 및 유관기관 등 발령 전파 및 협조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 공무원(산불종사원 포함) 담당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및 단속활동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허가 중지
- 시·군, 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상황 정보를 수집 보고 (도지사, 행정·정무 부지사, 환경녹지국장, 산림청 등)

2) 조기신고 및 신고체계 확립

○ 공중 및 지상을 연계한 감시체계 구축
- 임차헬기(2대) 및 무인감시카메라(59대)를 이용한 감시체계 구축
- 산불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인력의 현장집중 배치 체계강화

○ 주민,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에 의한 산불감시활동 강화
-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산회 등 시민단체 참여 유도

3)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재난 발생 시 산불사고수습본부 가동

- 산불재난 발생 시 초기 보고상황 및 자체위기평가 회의 개최
- 산불재난 위기대응·수습을 위한 위기경보 발령, 변경 및 해제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가동 및 수습상황 점검(연락관 파견 등)

○ 대형·야간산불 확산 시 현장지휘본부 설치 운영, 공중·지상통합 지휘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발생단계별, 규모별 산불진화책임자 지정 및 통합지휘권 부여

○ 산불 확산 시 지역주민 긴급대피 및 주요시설물·주민보호

- 주민 대피령 발령, 민간보호 및 지역 주민의 대피장소 홍보

〈산불발생 단계별 조치〉

◎ 산불발생초기 : 통합지휘본부장(시·군 산림부서장)

◎ 산불발생 중·소형(100ha미만)

- 통합지휘본부장(시장·군수), 보좌(시·군 산림부서장)

◎ 산불발생 대형(100ha이상, 24시간이상 지속된 산불)

- 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수행(환경녹지국장), 보좌(산림녹지과장)

4) 상황판단 회의(필요시 개최)

○ 현장 피해 대응·수습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계획 등 검토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산불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지원

○ 대형산불 발생지역은 도 및 산림청 관계관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

- 산불현장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 지원대책 마련
- 산불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2) 피해 유형별·임상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복구기술 적용

○ 자연적·인위적 방법을 병행, 피해 이전의 식생으로 복구

○ 산사태, 하천오염, 병해충 만연 등 2차 피해 방지에 역점

○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옥, 축사, 농림시설 등에 최우선 응급복구 지원

□ **복구사업관리**

1) 산불피해복구 현장자문단 구성 · 운영

○ 산불피해 복구 전문가에 의한 현장 기술자문 등 복구 지원

2)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설치·운영결과 평가·환류

○ 산불예방 ·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시행

2-4. 시설물재난 대책

가. 「시특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설물 현황

1) 1종 및 2종 시설물 현황

('15.09.30, 단위:개소)

계	종별		안전시설물			취약시설물		등급 미지정
	1종	2종	A급	B급	C급	D급	E급	
1,666	1,521	145	404	1,168	73	3	0	18

※ A급 : 최상의 상태,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급 : 보조부재가 손상된 보통의 상태, D급 :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급 : 사용금지, 개축이 필요한 상태, 등급미지정 : 준공 1년 미만 시설

○ 취약시설물(D,E급) 현황

('15.09.30, 단위:개소)

구분	계	교량	건축물	댐	하 천	항만 (저수지)	복개 구조물	옹벽	절토 사면
계	3	2	0	0	0	1	0	0	0
D급	3	2	0	0	0	1	0	0	0

○ 준공년도별 기반시설 현황

('15.09.30, 단위:개소)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사면
계										
2015년 9월	1,666	218	28	27	1	1,180	80	111	15	6
2014년 12월	1,571	202	24	27	1	1,136	56	107	12	6
2013년 12월	1,446	215	25	24	1	1,037	30	96	12	6
2012년 12월	1,452	196	19	22	1	1,082	22	98	9	3
2011년 12월	1,317	187	15	21	1	976	22	90	4	1
2010년 12월	1,214	186	17	20	1	887	8	87	7	1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85년 9월 30일 이전에 준공한 시설물로서 45개소이며, 전체 시설물의 2.7% 수준

	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사면
개소수	45	23	0	0	1	9	0	12	0	0
비중(%)	100%	51%	0%	0%	2%	20%	0%	27%	0%	0%

○ 「시특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1종 및 2종 시설물은 지속적인 대상시설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

* '13.12월 1,446개소 → '14.12월 1,571개소 → '15.9월 1,666개소

** 취약시설물(D,E등급) 현황 : '13.12월 3개소(0.14%) → '14.12월 3개소(0.2%) → '15.9월 3개소(0.18%)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현황

(단위: 개소, 동)

구 분	관리대상 시설수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3,915	3,888	1,812	1,723	353	27	24	3
시설물 분야	1,141	1,124	333	598	193	17	16	1
건축물 분야	2,774	2,764	1,479	1,125	160	10	8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3,915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은 27개소로 전체의 0.6% 수준으로 시설물 분야 10년 이상, 건축물 분야 15년 이상 경과년수 대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

나. 개선방안

1)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 및 담당부서 공무원, 공공/민간시설 안전관리자 대상안전 점검 및 관리요령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 재난취약시설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요령 교육

- 해빙기, 우기 대비, 동절기 대비 등 취약시기별 교육으로 안전 점검 및 관리능력 제고
- 교육내용
  - · 해빙기 : 해빙기 건설공사장과 시설물의 위험징후 및 대처방법 등 교육
  - · 우기 대비 : 건축물, 전기 등 분야별 시설물 안전교육
  - · 동절기 대비 : 건축물, 가스 등 분야별 시설물 안전교육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 시기별 취약시설 정기점검
  - · 해빙기 : 절개지, 축대·옹벽, 대형공사장, 공동주택 등
  - · 행락철 : 유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경기장, 관람집회시설 등
  - · 우기철 : 공사장, 교량, 축대 · 옹벽 등
  - · 동절기 : 노유자시설, 집회장, 판매시설, 경량철골 건축물 등
- 대형행사 및 재난위험시설 기획점검
  - ·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도민안전점검청구, 안전신문고 등으로 제보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취약시설 점검계획 수립 안전점검 착수(해빙기)	2월~3월
2/4분기	상반기 시설안전점검 실시(행락철, 우기철 대비)	4월~6월
3/4분기	하반기 시설안전점검 실시(여름철,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7월~9월
4/4분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10월~12월

2-5. 지반침하 대책

가. 피해현황

발생일	위 치	규모(m) [가로×세로×깊이]	비고
2014.07.2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영성지하차도 인근	1.5×2.0×10	

※ 인명 및 재산피해 미발생

나. 원인분석

1) 지반침하의 발생원인은 크게 신설공사 현장 주변 지반침하와 기존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침하로 구분됨

2)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의한 지반침하보다, 노후상하수도관 파손, 관로 등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발생됨

※ 2014년 지반침하 사고 중 59%가 상하수도관 손상이 원인임

다. 목표

구분	'14년 현황	'16년 목표	증 감
지하시설물 전산화	74.7%	84.3%	증 9.6%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국가적 **재난관리 강화**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사업 군(郡)지역 확대

- 도로굴착에 의한 지하시설물 파괴·훼손으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지역의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

* 2016년 사업지구 9개 시 · 군

보조사업(당진, 부여, 서천, 홍성, 태안) / 자체사업(천안, 공주, 아산, 서산)

○ 사업완료 시지역 7대 지하시설물 통합 DB 수정·갱신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로 구축·관리 중인 7대 지하시설물을 통합하여 안전강화 및 재난재해 예방에 공동 활용

  * 7개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활용

- 지하시설물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계 강화 및 자료수집·관리와 지하시설물 전산 DB 정확도와 최신성 유지 및 관리 등을 통한 지하공간 정보를 통한한 지도 구축

  * 구축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활용하여 사전점검 및 점검자료 활용

<충청남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

구분	사 업 량				비고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계	15,070.3	4,874.9	5,368.3	4,827.1	
2014년 까지	11,261.7	4,196.2	3,732.8	3,332.7	
2015년	650.2	127.4	338.4	184.4	
2016년	794.8	140.3	407.9	246.6	
2017년	629.3	107.4	307.0	214.9	
2018년 이후	1,734.3	303.6	582.2	848.5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고보조금 교부, 용역발주(신규지구 : 태안군)	1~3월
2~3/4분기	사업 착수(관련자료 수집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4월
4/4분기	통합지도 구축사업 완료,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9,186	1,149	1,352	2,021	2,332	2,332	

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

◇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조사지원

□ 사업내용

○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의 노후화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변 지반침하 가능성 진단·방지하기 위한 정밀조사 추진

* 충청남도 하수관로 연장 6,984㎞ 중 20년 이상 관로 19.28%(1,347㎞)
- 20~30년 하수관로 1,040㎞, 30년 이상 하수관로 307㎞

- 정밀조사 결과 개량이 필요한 관로는 **예산에 반영**하여 개보수, 교체 등 정비(결함 정도가 클 경우 즉시 긴급보수 중)

○ 사업추진현황 및 2016년 계획

- 2015년 사업추진 현황(10개 시·군 316㎞, 1,456백만원)
  *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태안
- 2016년 사업추진 계획(3개 시·군 68㎞, 330백만원)
  * 공주, 서산, 계룡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조사대상**
- 건설 후 20년 경과한 관로, 대형 공사 지역 인접 관로,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의 관로 등 지반침하 발생 또는 우려지역 관로

◇ **조사방법** : 육안조사(1m 이상), CCTV조사(1m미만)
- 관로 외부의 공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표투과 레이다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 GPR), 내시경조사, 시추공조사를 필요시 추가 시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4분기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 추진현황 점검	1~12월
2/4분기	정밀조사 결과, 교체·개보수 등 정비 필요관로 예산반영	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786	1,456	330	-	-	-	

2) 점검, 홍보 등

◇ 계절별 주요시가에 맞춰 지반침하에 대비한 각종 건설현장 및 기존지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홍보를 실시

□ **주요내용**

○ 지반침하 우려 계절별에 맞춰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 시행시기 : 3월(해빙기), 6월(우기대비), 수시점검(상·하수도관로 점검)
- 점검내용 : 공사장 주변지역의 지반침하·지하수 변위, 아파트 지하층 굴착, 터널 등 안전성 및 시공 상태, 가시설 토류벽, 대절토 비탈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
- 홍보방안 : 현장점검 및 수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홍보

*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특별관리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3월
2/4분기	우기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6월
3/4분기	기존지반시설(관로) 파손 등에 대한 수시점검	8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1)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활용

○ 지층구조 및 지반특성자료를 활용하여 지반안정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공간의 2차 피해 등에 대한 분석·예측이 가능

○ 활용한 위험지도 등을 바탕으로 지하안전관리를 수행

2) 지하공간 개발행위 안전관리 강화

○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를 하거나,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굴착공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 굴토심의 제도 도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은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굴토심의를 받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하굴착공사 감리 시 '토질 및 기초분야' 전문가가 상주 근무 검토

○ 각 지자체 별 안전관리자문단에 굴토분야(토질, 도로, 구조 등) 자문위원 보강하여 전문성 강화 검토

3) 지반과 시설물의 상시적 안전관리

○ 지반침하가 잦거나 지반여건 상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상시관리, 지반침하(함몰)취약지역 순찰·점검 강화

○ 도로침하(함몰) 발생 대상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에 대한 순찰(체크리스트를 참조)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

○ 관내 도로 중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고 지하철이 지나는 구간과 중첩되어 도로침하(함몰)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직접지반탐사(GPR)를 실시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를 의뢰하는 등 위험요소 제거

나) 대비단계

1)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지반침하(함몰)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지반침하(함몰)를 가정한 SMS 전송 및 상황전파훈해제 등 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확인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2) 교육 및 긴급복구 자재 구축

○ 전문가를 통한 예방·대비단계(취약지역 지정·관리 등 컨설팅), 대응·복구 단계(원인조사 및 복구자문 등 컨설팅)별 컨설팅 실시

○ 지반침하(함몰)사고 발생을 대비한 복구자재(soil cement), 장비 등 조달체계 구축

다) 대응단계

□ 지반침하(함몰) 발생 시 지자체 대응 절차

1) 상황접수·전파

○ 지반침하 발생정보의 접수
- 시민,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부터 SNS, FAX, 유선 등을 통해 접수
- 일반 시민들이 도로함몰 또는 징후 발견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홈페이지에 배너창 구축 등)

○ 복구지원팀 현장 조사/유관기관은 초기대응 지시

○ 초기 상황보고

○ 관계자 회의를 통해 피해예측 및 사고대응조직 운영방향 결정

2) 대응조직 구성·운영

○ 사고규모에 따라 재난상황실 또는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긴급대응조치를 위한 분야별 상황반 가동
- 필요시, 전문가 현장 확인 후 사고수습 지원

3) 대응조치

○ 초동조치 확인
- 응급조치 및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 현황 점검·확인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 체계 구축

○ 추가붕괴 등 2차사고방지대책 점검
- 추가붕괴 대비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확인
- 폭발 등에 대비 가스·위험물· 유독물 누출점검 및 안전조치 확인
- 시설관리기관(도로, 상수도 등)에게 피해확인 및 응급조치

○ 피해 및 사고수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시간 보고·전파
- 언론매체 등을 통해 피해상황과 사고수습 현황을 신속 전파

○ 사고수습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 긴급 통신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 피해주민 발생시 생활에 필요한 긴급지원계획 마련

○ 국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 사고로 인한 피해 수습상황과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홍보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등에 대한 안내

4) 사후관리

○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규모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 통계관리
- 일정기간 계측(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 확인토록 조치

○ 도로함몰 발생지도 DB구축
- 노선별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도로함몰 이력 정보를 DB로 구축

□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 규모별 상황관리

구 분	조 치 사 항
◆ 침하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 면적 4㎡ 미만 또는 깊이 2m 미만의 침하 발생으로 3명 미만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자체대응 - 지반침하 상황을 국토부.유관기관에 보고/전파하고, 인명구조. 안전조치 등 긴급대응 및 원인조사.예방대책 마련 ※ 필요시, 건설안전과에서 대내.외에 상황보고
◆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침하 발생으로 3명 미만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침하규모와 상관없이 3명 미만의 사망(실종)자 또는 3명 이상 10명 미만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상황을 전파/보고하고, 재난대응조직을 구성하여 긴급구조.수습.복구하고, 국토부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원 - (지자체 등)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전파/보고하고, 구조.언론대응 등 초동조치와 사고수습, 원인조사, 예방대책 마련 및 복구 시행 - (국토부) 현장상황을 전파/보고*하고, 지자체 등 조치사항 확인 및 현장지원반 파견등 사고수습 지원 및 원인.예방대책 확인 * 지자체 등과 Hot Line구축하고, 장.차관, 안전처,총리실, BH 등에 보고
◆ 침하규모와 상관없이 3명 이상의 사망(실종)자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상황전파/보고와 재난대응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사고대응을 총괄.조정 - (지자체 등)구조.피해 등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전파/보고하고, 긴급 구조.안전조치 등 초동대응과 사고수습 및 응급복구 시행 - (국토부) 현장상황을 전파/보고*하고, 지자체 등의 조치사항 확인 및 현장지원반 파견등 사고수습을 지원하고 사고대응에 대한 언론홍보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지자체 등과 Hot Line구축하고, 장.차관,안전처,총리실, BH 등에 보고

2) 사고대책본부 구성



○ 운영

- 각 반별 2교대 편성 24시간 운영 1일 4회(07:00, 11:00, 17:00, 24:00) 상황보고 하며, 피해 발생 시 마다 즉시 유선보고

○ 임무 및 역할

본부장	▪ 사고수습본부 상황종합 및 총괄 관리
총괄상황반	▪ 사고대응조직 구성.운영 등 상황실 총괄, 운영 ▪ 피해.수습상황 종합 및 보고, 전파 총괄 ▪ 사고수습 및 응급복구 지원 총괄 ▪ 피해.수습상황 종합 및 대내외 보고와 언론홍보 ▪ 사고현장 및 유관기관간 보고(전파)체계 구축 ▪ 긴급구조.안전조치 등 초동조치 확인 ▪ 전문가 자문단 구성(하수도/도로/토질/안전 분야)
복구반	▪ 교통통제 및 사고발생 현장 안전조치 ▪ 피해상황 조사 후 상황전파 ▪ 침하원인 파악(필요한 경우 전문가 현장 투입) ▪ 발생 원인 별 복구 작업 실시(지반보강, 관로교체, 되메우기 등) ▪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지원 및 협조 ▪ 피해시설물 및 응급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체계 구축 ▪ 사고현장 및 유관 기관 간 지원.협조 및 연락체계 유지 ▪ 복구완료 시 교통통제 해제 및 복구 작업 결과보고 ▪ 2차 피해 방지대책 실시 및 수습.복구
수색구조. 구급반	▪ 인명구조·구급, 화재진압 등 초기대응활동 전개 ▪ 긴급구조기관 · 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 연소확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 ▪ 화재취약지역 소방 순찰활동 강화 ▪ 제1,2 출입통제선 설치·운영
홍보반	▪ 재난 발생사항 등의 전파 (TV.라디오.CATV 등)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 현장 취재지원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라) 복구단계

1) 지반침하(함몰) 발생원인 및 피해조사 실시

○ 지반침하(함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반침하(함몰) 원인 전문 조사단 구성·운영

○ 상황 종료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되 누락지가 없도록 조사 철저

○ 신속한 피해조사 후 도로침하(함몰) 발생지도 DB구축

2) 지반침하(함몰) 발생지 항구적쩚체계적 복구계획 수립쩚시행

○ 지반침하(함몰) 발생 후 2차 피해 유발요소 점검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실시

○ 사상자 발생시 처리 등에 대한 대책 지원

○ 상황종료 후 침하(함몰) 발생지 정밀조사 분석 및 항구복구계획 수립

○ 언론보도·브리핑 자료(사고조사결과, 피해자 지원·보상 계획,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계획 등) 자료 작성

3) 지반침하(함몰) 대응의 평가·분석 실시

○ 지반침하(함몰)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평가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지반침하(함몰) 예방대책에 반영

○ 지반침하(함몰)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2-6. 저수지붕괴 대책

가. 저수지 시설현황

구 분	합 계	시·군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비 고
저 수 지	898개소	674개소	224개소	

나. 저수지 붕괴 원인분석

○ 저수지의 붕괴원인은 홍수시 댐의 월류, 경사면의 활동, 제체 및 기초지반 누수, 변형, 액상화 등이며, 누수에 의한 원인이 붕괴의 가장 큰 요인

다.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기능저하 및 노후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기능회복과 시설물 현대화로 재해예방

□ 사업내용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16년도 712억원)

-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D, E등급 및 개보수가 시급한 주요 시설물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신청 및 선정→사업시행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611,260**	**137,200**	**71,250**	**76,500**	**81,600**	**244,710**	
수리시설개보수	611,260	137,200	71,250	76,500	81,600	244,710	

2) 점검, 홍보 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 분기별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898개소)

○ 시군관리 저수지(총 674개소) 및 공사관리 저수지(총 224개소)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체계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 정밀안전진단실시
  - 안전점검결과 이상징후 발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완공후 10년이상 경과된 1종시설물은 매 5년 마다 1회 실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안전점검

- 농업용 주요수리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실시
  - 정기점검 : 매분기 1회 실시
  - 긴급점검 :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
-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 1종시설 :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실시
  - 2종시설 : 안전점검결과 결함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때 실시

○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 E등급 및 붕괴 등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 사용중단 및 접근금지 조치

→ 긴급 농림축산식품부 예비비 배정 요청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 저수지 붕괴 사전 대피 방송 및 요령 홍보

○ 재난 비상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경보 및 주민 대피 방송

○ 학교, 공공기관 등 안전한 대피소 모의 훈련 실시

○ 저수지 시설물 이상징후 발생 즉시 신고 요령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및 보고(도, 농식품부)	3, 6, 9, 12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준비단계

○ 중 점

- 저수지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노후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 추진

○ 세부 활동내용

- 시설관리자(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매 5년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
  -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 노후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시의 주민대피를 위한 유관기관 및 주민 등의 행동요령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 시설의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
  - · 안전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 일상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 정기점검 : 매년 영농기 이전 실시
    - * 긴급점검 : 시설의 노후·파손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실시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나) 우려단계

○ 중 점

- 재난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의 구축
- 태풍·호우 피해 대비태세 확립 및 비상대처훈련 정례화

○ 세부 활동내용

-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등 사전 대비 태세 유지
  - · 기상특보 등 정보전파 및 비상 상황근무, 필요시 담당자 현장배치
  - ·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하천관리청, 경찰,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 연락체계 점검
-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 등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처 현장훈련 실시
- 우기 대비 저수지 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정비

(가) 저수지 점검항목 및 조치사항(예시)

1) 물넘이(여수토) 방수로에 쌓인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홍수 방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측벽 등 균열부분 보강
2) 제방 비탈면의 변형과 사석이탈, 누수여부 등을 확인 점검·정비, 제방에 자라고 있는 다년생 식목 및 잡초 제거
3) 취수탑 등 취수시설의 개폐(開閉)상태, 수문 홈통에 이물질이 끼여 작동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 확인 및 조치
4) 수방자재 확보상황 점검
5) 홍수기는 저수지 수위를 사전에 낮추어 관리
6) 비상대처계획, 수문의 비상작동 가동 인력 현장배치계획 점검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현장 점검항목 및 조치사항(예시)

1) 공사용 자재는 침수피해 및 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준비
2) 토사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PP마대·말목 등 수방자재 등 사전 준비
3) 홍수 시 부유물(나무 등)이 임시 배수로 입구를 가로막지 않도록 정리
4) 우기 이전에 정비가 어려운 공사현장은 임시 배수로 설치, 절개지의 비탈면 비닐 덮기 등 응급조치 및 점검

-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이행
  · 재난위기상황 모니터 및 대책 추진
  · 재해취약시설 점검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유지

다) 확산단계

○ 중 점

-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의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 유지로 신속한 응급조치 시행

○ 세부 활동내용

- 집중호우 또는 태풍관련 특보상황의 신속한 전파
  · 인터넷, 유·무선, FAX, SM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저수지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및 순찰·점검 강화, 수문 조절
- 위험구역 설정, 주민대피, 교통통제 및 응급조치 등 신속한 초동조치

라) 복구단계

○ 중 점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집중호우 또는 태풍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 활동

○ 세부 활동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단 응급복구 지원
    * 피해규모가 클 경우 중앙합동 복구지원단 편성, 운영

· 체계적인 복구계획의 수립, 추진

* 개선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 피해의 사전 예방

* 다음해 우기까지 완공이 어려운 복구지역은 방재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 피해 기록 및 평가 후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 피해 발생시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 일지 기록

* 시뮬레이션 자료 및 재해흔적 유지(재해지도)

·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정리·보관, 전파

2-7. 댐붕괴 대책

가. 피해현황(없음)

나. 원인분석(없음)

다. 목표

구분	'15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0	0	-
재산피해(억원)	0	0	-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해당없음

2) 사전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댐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실무반 편성·운영 상황관리체제 확립

○ 댐 붕괴시 피해가 예상되는 하류지역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를 통한 피해발생 최소화

3) 댐 현황자료

구분	댐 명	위치
다목적댐	용담댐	· 좌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 우 : 상 동
	대청댐	· 좌 : 대전 대덕구 미호동 · 우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보령댐	· 좌 :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 우 : 충남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① 용담댐

용담댐은 전주권을 포함한 서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1991년 타당성조사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992년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건설됨.

<표 2.2-3> 용담댐 주요제원

구분	단위	내용
□ 유역		
- 하천명		금강
- 유역면적	㎢	930.0
- 연평균강우량	㎜	1,259.7
- 연평균유입량	백만㎥	769.5(24.4㎥/s)
□ 저수지		
- 최고수위(M.W.L)	EL.m	266.56
- 계획홍수위(F.W.L)	EL.m	265.5
- 상시만수위(H.W.L)	EL.m	263.5
- 홍수기제한수위(R.W.L)	EL.m	261.5
- 저수위(L.W.L)	EL.m	228.5
- 총 저수용량	백만㎥	815.0
- 홍수조절용량	백만㎥	137.0
- 유효저수용량	백만㎥	672.0
□ 본댐		
- 위치 : 좌안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우안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 댐마루고	EL.m	268.5
- 댐높이	m	70.0
- 댐길이	m	498.0
- 댐형식		C.F.R.D(Concrete Faced Rock fill Dam)
- 댐체적	천㎥	2,206.0
□ 여수로		
- 계획홍수량	㎥/s	5,500(200년빈도)
- 계획방류량	㎥/s	3,211
- 첨두방류량	㎥/s	6,800
- 일류부표고	EL.m	252.8
- 문비형식		Radial Gate(14.0m×13.43m×5련)

[출처] 댐운영 실무편람(2013. 8, 한국수자원공사), 「댐 붕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3, 한국수자원공사)
[주] 최고수위(M.W.L)는 설계당시 기준

② 대청댐

대청댐은 수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4대강 유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금강수계가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을 고도로 개발하여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1975년 3월에 착공하여 1980년 12월에 건설되었으며, 중력식 콘크리트댐과 사력댐으로 구성된 복합형 댐이다.

<표 2.2-4> 대청댐 주요제원

구분	단위	내용
□ 유역		
- 하천명		금강
- 유역면적	㎢	3,204.0
- 연평균강우량	㎜	1,230.0
- 연평균유입량	백만㎥	2,450.5(77.7㎥/s)
□ 저수지		
- 최고수위(M.W.L)	EL.m	81.65
- 계획홍수위(F.W.L)	EL.m	80.0
- 상시만수위(H.W.L)	EL.m	76.5
- 저수위(L.W.L)	EL.m	60.0
- 총 저수용량	백만㎥	1,490.0
- 홍수조절용량	백만㎥	250.0
- 유효저수용량	백만㎥	790.0
□ 본댐		
- 위치 : 좌안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우안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 댐마루고	EL.m	83.0
- 댐높이	m	72.0
- 댐길이	m	495.0
- 댐형식		C.G.D(Concrete Gravity Dam) E.C.R.D(Earth Core Rock fill Dam)
- 댐체적	천㎥	1,234.0
□ 여수로		
- 계획홍수량	㎥/s	9,500(100년빈도)
- 계획방류량	㎥/s	6,000
- 첨두방류량	㎥/s	10,452
- 일류부표고	EL.m	64.5
- 문비형식		Tainter Gate(13.0m×15.9m×6련)
□ 비상여수로		
- 첨두방류량	㎥/s	7,584
- 문비형식		개거식(12.0m×17.18m×5)

[출처] 댐운영 실무편람(2013. 8, 한국수자원공사), 「댐 붕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3, 한국수자원공사)
[주] 최고수위(M.W.L)는 설계당시 기준

③ 보령댐

보령댐은 용수원이 부족한 충청남도의 서부 및 서북부 권역에 대한 대천, 서산시를 포함한 2개시 9개 읍 1개 면의 생활용수와 태안 화력 보령 화력 및 보령 관창공단의 공업용수, 댐 하류 몽천촌 연안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92년 착공하여 2000년 7월에 건설되었다.

<표 2.2-7> 보령댐 주요제원

구분	단위	내용
□ 유역		
- 하천명		웅천천
- 유역면적	㎢	163.6
- 연평균강우량	㎜	1,245.0
- 연평균유입량	백만㎥	125.5(3.98㎥/s)
□ 저수지		
- 최고수위(M.W.L)	EL.m	76.3
- 계획홍수위(F.W.L)	EL.m	75.5
- 상시만수위(H.W.L)	EL.m	74.0
- 저수위(L.W.L)	EL.m	50.0
- 총 저수용량	백만㎥	116.9
- 홍수조절용량	백만㎥	10.0
- 유효저수용량	백만㎥	108.7
□ 본댐		
- 위치 : 좌안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우안		충남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 댐마루고	EL.m	79.0
- 댐높이	m	50.0
- 댐길이	m	291.0
- 댐형식		E.C.R.D(Earth Core Rockfill Dam)
- 댐체적	천㎥	1,116
□ 여수로		
- 계획홍수량	㎥/s	1,898(200년빈도)
- 계획방류량	㎥/s	1,154
- 첨두방류량	㎥/s	2,478
- 일류부표고	EL.m	64.0
- 문비형식		Radial Gate(8.0m×11.7m×3련)
□ 파라펫월		
- 규모		H=0.5m

[출처] 댐운영 실무편람(2013. 8, 한국수자원공사), 「댐 붕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3, 한국수자원공사)
[주] 최고수위(M.W.L)는 설계당시 기준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 단계

(1) 중점 대응

○ 댐 붕괴 재난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반 편성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 댐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추진

(2) 세부 활동 내용

○ 댐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점검·개선

○ 댐 붕괴에 대비한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

○ 주민안심, 유언비어 차단 등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의 개발

○ 댐 붕괴 피해대비 비상진료 물자·인력 지원대책 마련

< 댐 붕괴 위기경보 수준 >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였으나, 댐 관측 유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 지진발생 등으로 댐 제체 일부 손상 발생	징후활동 감시 및 협조체계 가동
주의 (Yellow)	○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댐 관측 유입량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 댐 제체 손상이 발생하여 누수량 급증 관측	
경계 (Orange)	○ 댐 최고수위에 도달하였거나 월류가 예상될 경우 ○ 댐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발생 - 댐 체 손상 및 명확한 누수 발생 - 여수로 이상(여수로가 막히거나 정상 방류 불가) ○ 기타 댐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발생	즉각 대응돌입
심각 (Red)	○ 댐 월류 발생 ○ 댐 제체 또는 여수로의 위험한 손상 발생 - 댐 붕괴 징후(지속적 침식, 사면붕괴, 기타) - 댐 및 양안에 과잉침윤과 하류측 기초부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는 확실한 균열 발생	

[주] 단, 발령기준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 상황은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토록 함

나) 대비단계

(1) 중점 대응

○ 댐 붕괴 발생대비 비상연락망 등 구축·점검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수준별 체계적 대비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점검

○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지속 전개

(2) 세부 활동 내용

○ 선제적 위기관리를 통한 도민 안심 달성

- 위기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소관 부서별 대응 업무 점검

○ 각종 매체를 통한 위기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홍보

- 공중파 등 매체 이용, 對도민 방송 홍보
- 위기단계별 홍보 업무 점검

○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 주관기관 중심의 상황판단회의 가동
- 위기수준별 대응책 수립

○ 유관기관 지진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연락처 정비

○ 댐 붕괴 긴급대피장소 및 대피로 사전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동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 훈련 실시

○ 이재민 대피장소 지정, 사전점검

○ 인력 및 장비·물자의 비축 등 이재민 긴급구호체계

○ 비상급수, 생필품의 확보, 수송 및 공급체계

○ 복구 인력, 장비·자재의 지정·비축, 담당자별 행동요령 정비

다) 대응단계

(1) 중점 대응

○ 댐 붕괴 시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 피해예측 및 감시 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도민보호 조치
○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의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2) 세부 활동 내용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각 유관기관간의 공조로 신속한 대처 시행 등 초동 조치 실시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 초동 대응조치 및 응급복구지원본부 설치 운용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 각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 피해 예상 지역 국민에 대한 대피 조치 및 홍보
-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지사) 대도민 담화문 발표
- 필요시 비상홍보센터 운영 및 주기적 상황 발표
- 각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 요청(민방위경보통제실→방송사)

라) 복구단계

(1) 중점 대응

○ 사고원인 및 피해사항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단 지원

○ 재해복구계획 수립·시행 및 신속한 재난쓰레기 처리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및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2) 세부 활동 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소관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편성·운영(중앙합동조사단 지원)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공급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생활필수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계 운영

- 객관적 피해조사 등을 근거로 복구지원 계획 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합동 복구지원단 운영
- 재난쓰레기 제거, 오염 농축수산물 처리

○ 피해지역 및 시설물 현황 조사 및 피해시설 긴급 및 항구복구

○ 언론 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

< 홍수예보 발령기준 >

구 분	발령기준	예보 발령자
홍 수 주 의 보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
홍 수 경 보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경보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 제	◦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 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 해제	

※ 홍수예보지점을 기준으로 상류 유역면적이 1,100㎢ 이하인 경우

-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 홍수주의보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 발령
-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 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수경보 해제

< 홍수예보 발령 및 전달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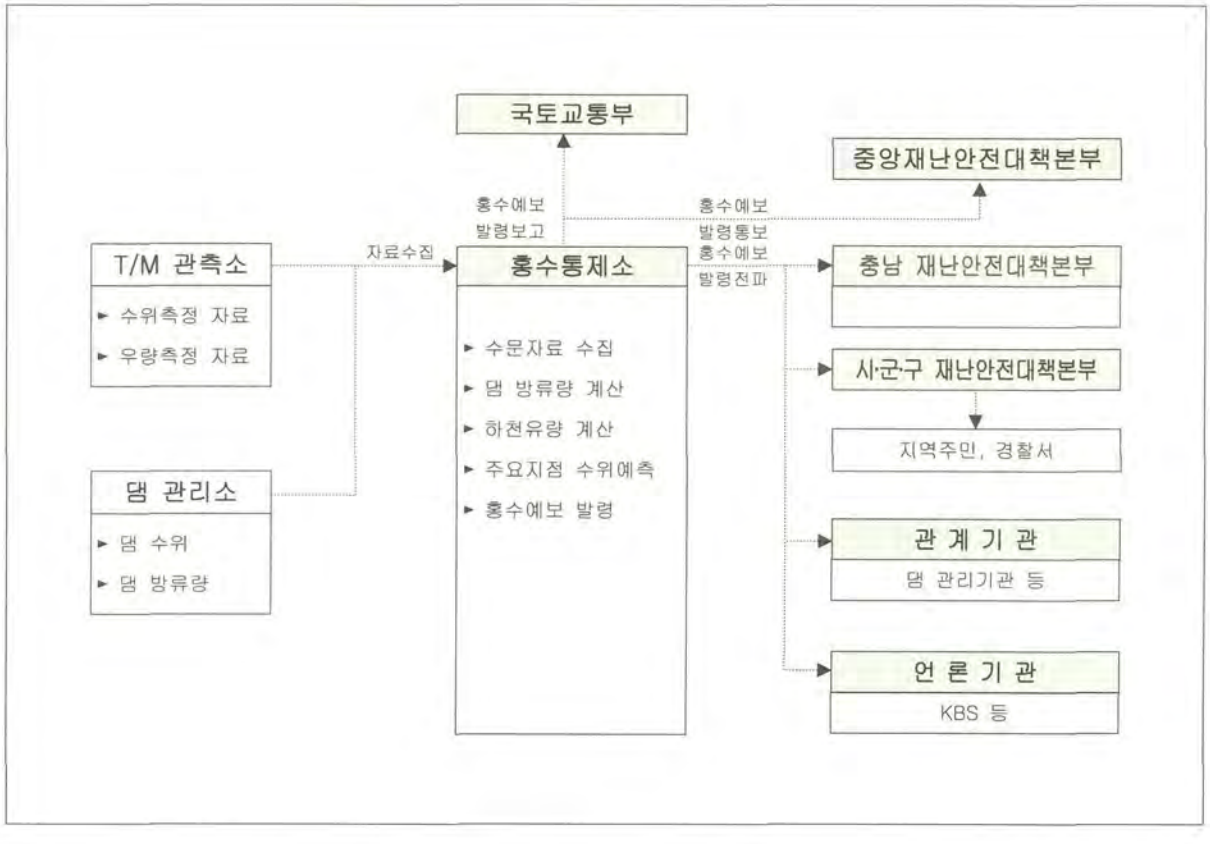

< 댐 붕괴 비상상황 관리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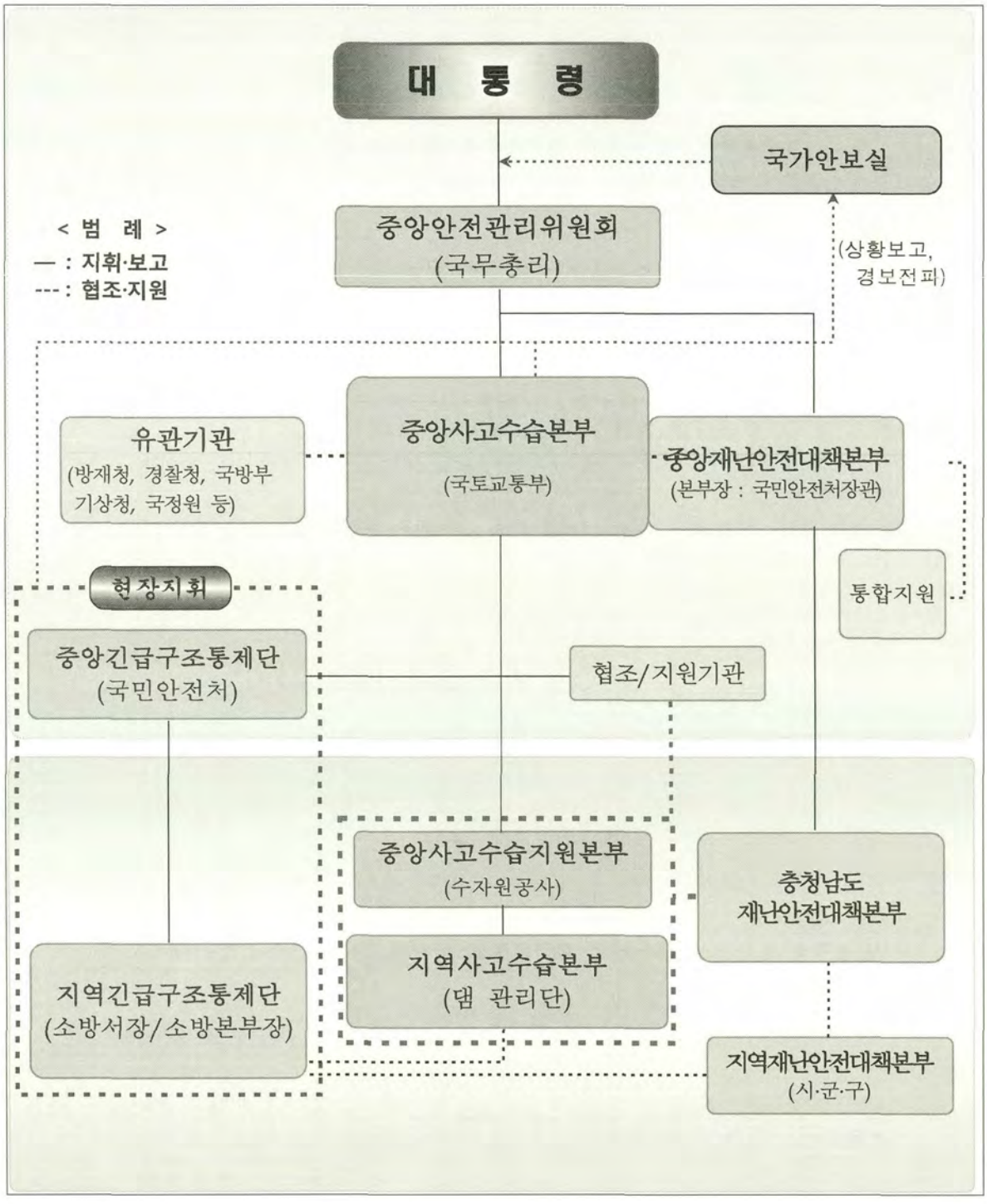

2-8 도로(육상화물운송) 대책

가. 피해현황

1) 수송동향(물적피해)

(톤/대수)

구분	업체명	수송상황	화물연대가입	계획량(1일)	피해액(백만원)		비고
					당일	누계	
합계			611/601		2,935	42,130	
보령	자원	정상	40/00	40대	30	120	
	보창	중단	40/40	40대	5	10	
서산	LG	일부	55/55	290대			
	롯데	일부	38/38	150대			
	삼성	일부	86/86	300대			
	석유	일부	0/30	30대			
	KCC	중단	28/28	300대	400	2,000	
	오일	중단	0/0	350대			경찰
	다이모스	정상	-	20대			500명
	파워텍	정상	-	30대			투입
당진	제철	중단	159/159	450대			
	스코	중단	44/44	250대			
	동부	중단	88/88	200대			
	환영	중단	13/13	100대			
서천	한솔	중단	20/20	120대	2,500	40,000	
태안	대상	정상	-	6대			

주) 피해액은 화물연대 장기 집회에 대한 20일 간 누계 피해액 기준임

나. 원인분석

1) 최근 유가하락에 운송료 인하문제로 화물 차주와 화주간 갈등 고조, 조합원 단결을 위한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 경제적 물동량이 많은 우리도 관내 피해액 421억원 발생

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경유가 보조, 운송료 현실화, 과적단속 개선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화물연대 전국적 집단 운송거부

- '03년(1차 5.2~5.15, 2차 8.21~9.5), '08년(6.13~6.19), '12년(6.25~6.29)

다. 목표

○ 집단 운송거부 명분을 최소화하여 화물연대 파업 사전 차단 및 조기 종결에 따른 국가 물류피해 최소화

구 분	10년 평균 피해	'16년 목표	증 감
재산피해(억원)	6.98억 달러	6.55억 달러	10년 평균의 5% 감소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화물연대와 지속적 실무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근로여건 개선 등 노력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상시 동향파악으로 집단운송거부 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

○ 지역별, 분야별 동향 파악 및 집행부 설득

- 화물연대 동향 파악, 개별컨테이너, 위·수탁 컨테이너 동향 파악
- 화물연대 집행부와 비공식적 만남으로 집단행동 자제 요청 및 요구사항 검토

○ 중점 보호시설 점검 및 보호대책 수립

- 파악된 중점시설(컨테이너 부두)에 보호대상 파악 경찰에 통보
- 경찰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유사시 즉각 보호 요청
- 대형견인차, 운전요원, 열쇠 복제 기술자 등에 대한 동원체계 강구
- 소속 공무원 현장 투입 활용방안 사전 강구

○ 분야별 비상수송대책 점검

- 비화물연대 차량중 이용가능 차량 확보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종별 현황 확인

○ 지방해양항만청과 협조체제 강화, 항만주변 동향파악 등

- 화물운송지원협의회 등 관계관 회의개최
- 기관별 대응책 협의 및 공유, 비상수송대책 본부 운영 등 협의

나) 대비단계

○ 충청남도 자체 비상수송대책 상황실(본부장 : 건설교통국장) 가동

- 주관 기관(충청남도),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충남지방경찰청·지방노동청·협회), 시·군 등과 네트워크 구성

○ 소속 공무원 현장 투입,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지속 파악 및 관계기관 전파

○ 충청남도 비상수송대책 방안 수립 및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 집단 운송거부 지역에서 정상운행중인 화물차 보호 요청

○ 불법 집단운송 거부 참가차량 견인조치 협조 요청(경찰청, 시·군)

○ 군 컨테이너 차량 등 장비투입 건의

○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집단에 대한 대화와 설득·조정, 제도개선방안 강구를 통한 갈등 해소

- 집단운송 거부자 대상 설득 전개
- 화주와 운수사업자간 화물운송료 분쟁 중재, 집단운송거부 자제 설득 등 논의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절차 시행 준비

다) 대응단계

○ 충청남도 주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기관별 비상수송대책방안 검토

○ 충청남도(도로교통과)주관, 관련 집단과 지속적인 대화 및 제도개선·불이익·인센티브 등 방안 수립, 제시

- 충청남도 화물운송지역협의회 가동 검토
- 화물운송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대화 및 갈등요인 조정

-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국토부와 협의 및 건의
- 운송 참여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 등 인센티브 방안 협의 및 건의

○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대체수송수단 확대 등

○ 지역내 분야별 상황분석 실시간 전파

○ 대체 수송 수단/인력 투입 확대 등 비상수송대책 강화/상황관리

- 관련단체와의 대화 및 운송복귀 설득, 비회원 차량 운송 참여 권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본격 시행 및 홍보
- 비 화물연대차량으로의 수송, 육상 운송물량 → 철도운송 전환
- 군 컨테이너 차량 및 인력 투입

라) 복구단계

○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진행상황 파악

○ 불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참여자 위법조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 사태발발 원인분석, 각종 제도개선 건의

○ 파견자 복귀 조치, 불법행위 업체 행정처분

○ 상황보고 및 행정기능 정상화 추진

충청남도 비상연락망

기 관 (단체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기관	소속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안전 정책과	041)-635-5533	041-635 -3079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심주택	041-635-4692
				천안시	교통과	한용석	041-521-3533
	비상수송 대책본부	041)-635-4691	041-635 -3070	공주시	교통과	박미선	041-840-8487
				보령시	도로교통과	김동우	041-930-4583
안전 행정부	국가기반 보호과	02)2100-1825	02)2100 -4094	아산시	교통행정과	최성록	041-536-2366
				서산시	교통과	김명희	041-660-2365
국토 교통부	물류 산업과	044)201-4023	044)201 -5601	논산시	도로교통과	장윤석	041-746-6283
				계룡시	건설교통과	이진표	042-840-2534
충남지방 경찰청	경비 교통과	041)336-2252		당진시	교통과	김문수	041-350-4524
				금산군	지역경제과	김학선	041-750-2676
육군제 2162부대		042)829-6114		부여군	경제교통과	이순훈	041-830-2393
				서천군	지역경제과	김태승	041-950-4127
대전고용 노동청	근로 감독과	042)480-6290		청양군	지역경제과	이병용	041-940-2423
				홍성군	건설교통과	이형복	041-630-1416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041)730-5800		예산군	건설교통과	김성진	041-339-7694
				태안군	건설교통과	조봉환	041-670-2805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041)-330-6600					
한국철도 공사대전 충남본부		041)253-4483	256-6668				

육상화물마비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 국토교통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물류정책관	국 장	김수곤	044-201-3991 010-8854-3172	
물류산업과	과 장	이주열	044-201-4016 010-6552-5590	
물류산업과	사무관	박현근	044-201-4018 010-6471-2462	
물류산업과	주무관	남계원	044-201-4019 010-2610-4380	

□ 육상화물운송마비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부 서 명	연 락 처		홈페이지
		전 화	FAX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타(행정관)	02) 770-2335	02) 770-4787	www.president.go.kr
대통령비서실	재난안전비서관실	02) 770-4260	02) 770-4798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 200-2229 044-200-2342	044) 200-2242 044-200-2367	www.pmo.go.kr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대응과	02) 2100-3119 02) 2100-0728	02) 2100-4094 02) 2100-5458	www.mospa.go.kr
국방부	군수관리관 재난관리지원과 재난상황실(합참)	02-748-5701 02) 748-5776 02) 748-3183	02) 748-5778 02) 748-5795	www.mnd.go.kr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홍보담당관 대변인실	044) 203-2290 044-203-2051 044-203-2030	044) 203-3458 044) 203-3444 044) 203-3443	www.mcst.go.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044) 203-5501 044) 203-4351 044) 203-4387	044) 203-4779 044) 203-4735 044) 203-4737	www.motie.go.kr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44) 202-7302	044) 202-8075	www.moel.go.kr
	노사협력정책과	044) 202-7589		
	노사관계지원과	044) 202-7630	044) 202-8077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비국)	02) 3150-2856	02) 3150-2661	www.police.go.kr
	정보국	02-3150-2080	02) 3150-3880	
	정보3과	02-3150-2483	02) 3150-3923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044-200-5700	044) 200-5729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4	044) 200-5769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02-2110-3005 02-2110-3280	02-2110-0333 02-3480-3555	

2-9. 철도교통사고 대책

가. 피해현황

1) 철도사고

(단위 : 건)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 계	3,488	529	455	429	408	382	317	277	250	232	209
열 차	56	6	7	6	7	3	4	2	6	6	9
건널목	192	37	26	24	24	20	17	14	10	13	7
사 상	3,218	484	421	398	376	357	294	257	231	211	189
기 타	22	2	1	1	1	2	2	4	3	2	4

※ 자료 :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2) 피해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인명피해	합계	4,076	522	443	431	410	395	350	275	318	244	688
	사망	1,461	216	190	192	159	161	135	124	108	96	80
	중상	1,276	174	153	145	167	134	136	87	87	90	103
	경상	1,339	132	100	94	84	100	79	64	123	58	505
재산피해		25,996	-	-	-	1,396	917	533	388	536	14,650	7,576

※ 자료 :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나. 원인분석

1) 사고증감 추이

- 열차사고로 최근 10년간('05~'14) 인명피해 4,076명(사망 1,461명, 중상 1,276명, 경상 1,339명), 재산피해 최근 7년간('08~'14) 260억원 발생

  * 열차, 건널목, 사상사고로 구성된 철도사고는 최근 10년간('05→'14) 연평균 약 9.7%씩 감소

  * 열차사고는 2005~2014간 총56건이 발생하여 연 평균 약 5.6건 발생

  * 건널목사고는 2005~2014년간 총 192건이 발생하여 연 평균 약 14.6%씩 감소

2) 사고감소 원인

- 복선화, 전철화, 자동화 등 지속적인 시설개량과 최첨단 차량의

도입, 유지보수 장비의 현대화 등 철도환경의 전반적 개선

- 철도종사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훈련 강화와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안전 홍보
- 건널목 입체화, 스크린 도어 및 선로변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확충에 기인
- 철도안전제도의 체계적인 제·정비와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의 시행 등 전반적인 철도안전 관리의 강화에 기인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688	-	
재산피해(억원)	76	-	

라. 개선방안

1) 교육·훈련, 홍보 등

◇ 철도 대형사고 발생 대비 주기적 교육 및 훈련

□ **주요내용**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철도 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 발생시 대비 현장 지휘체계 구축·유지
- 철도 대형사고 예방 감시·신고·전파체계 구축 등 비상연락 체계 강화

○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강화**

- 철도 관계자 대상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숙지 교육 실시
- 철도 사고 장소별·유형별 가상상황 설정, 도상 모의 훈련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고속철도 대형사고 요인 사전 제거

1) 안전시설 및 설비 개선·보완, 사고요인 사전 제거

○ 고속철도 대형 충돌사고 대비 기존선로 건널목 개선(평면식 건널목 → 고가 등 입체식 건널목)

○ 일반인 출입방지 안전펜스 등 선로보호 방호울타리 보강·설치

○ 침입자 감시를 위한 CCTV 및 안전감지장치 등 설치

○ 장대터널 화재사고 대비 배연설비 개선 및 보완

□ 고속철도 운행 관련 취약시설 집중관리

1) 교량·터널 등 고속철도 운행 관련 취약시설 집중 관리

○ 안전기준 준수여부 실태 점검, 취약점 발굴·개선

○ 교량·터널 등 취약시설을 특별 지정하여 정밀 안전진단 등 집중 관리

○ 대형사고 유형별 징후목록 유지 및 정기·수시 평가

□ 철도안전 감독관 안전점검체계 운영

1) 해외 고속철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기법 분석·활용

○ 해외 대형사고 사례 종합 분석 및 대응기법 연구

○ 해외 고속철도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각종 사고관련 매뉴얼 입수·활용

○ 일본·프랑스 등 각국의 고속철도 안전사고 대비 관련 매뉴얼 입수, 분석·활용

2) 위기관리 예방 홍보 및 소통 활동 강화

○ 참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참조하여 홍보 및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

나) 대비단계

□ 고속철도 유관기관간 공조 · 협조체계 구축 · 유지

1) 잦은 사고·장애 발생 관련 점검 실시

○ 잦은 사고·장애 발생 대상 차량기지, 노선 집중점검 실시

○ 중요 국가행사에 대비한 특별점검 실시

□ 대형사고 발생시 대비 인력 · 장비 · 물자 동원태세 구축

1) 긴급 구조·구난체계 구축

○ 장대터널·장대교량 등 적재적소에 승객 대피소 및 긴급 대피 이동로 확보·관리

○ 긴급 구조·구난차량 및 장비 진입로 확보

○ 사고 위치 추적 프로그램 개발, 신속한 출동체제 구축

2) 사고대비 인력·장비·물자 동원태세 구축

○ 부처·지자체 전담부서 지정 및 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초동조치 인력 확보 및 즉시 대응태세 구축

○ 유관기관간 지휘·협조 통신망 구축

○ 사상자 운반 및 긴급구조용 특수장비 확보

○ 비상복구 장비·자재 확보, 적재적소 배치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고속열차 우회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점검

□ 고속철도 대형사고 발생 대비 주기적 교육 및 훈련

1)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고속철도 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 발생시 대비 현장 지휘체계 구축·유지

○ 고속철도 대형사고 예방 감시·신고·전파체계 구축 등 비상연락 체계 강화

2)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강화

○ 고속철도 관계자 대상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숙지 교육 실시

○ 고속철도 사고 장소별·유형별 가상상황 설정, 도상 모의 훈련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 모의훈련 실시

○ 사고발생시 승객 대피요령·대응방법 등 언론매체 활용, 다양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다) 대응단계

□ 신속한 상황 파악 · 전파 및 재난관리체계 가동

1) 현장 안전조치

○ 사고열차 및 전후방 관계열차 비상정차, 2차사고 방지

○ 열차 화재발생시 자체 진압 및 119 신고

2)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사고형태·인명 피해규모 등 사고현장 상황 파악, 신속 보고·전파

○ 긴급 구조활동 관련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등 공조 체제 유지

○ 기관별 대응관리체계 가동 및 대응

□ 신속한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인명피해 최소화

1) 승객대피 유도, 상황 안내방송 및 긴급 구조활동 전개

○ 승객대피 유도, 상황 안내방송 및 민간 구조단체와 협조, 구조·구호 활동 전개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응급조치

○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및 고속열차 우회운행 등 비상 수송대책 시행

○ 열차 내 승객, 각 역사 내·외 여객에 대한 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 관련 도시철도기관에 열차사고 및 운행 상황,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방송 실시 협조요청

2) 현장대응지휘반 사고현장 출동, 초기대응반 임무 수행

○ 사고 피해 및 진압활동 등 초동 대응상황 확인·지도·지휘

○ 사고 피해 확대에 대비 신속한 판단 및 조치활동 지원

○ 위기평가회의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여부 등에 필요한 사고 상황 확산 정도의 정보 보고

○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및 유관·의료기관, 동원업체간 연락 및 사고수습 정보 제공

□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통합 지휘체계 운영

1)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대책기구 설치·운영

○ 사고의 규모 등을 감안,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지역사고수습본부 등 설치, 사고현장 실태 파악 및 대응체제 가동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집, 기관별 임무 협의·조정

2) 지방정부 위기관리 활동 대국민 홍보

○ 사고상황 등에 대한 정부 대응활동 브리핑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라) 복구단계

□ 복구 지원팀 구성,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1) 복구 지원팀 구성,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

○ 유관기관 긴급 대응반과 연계, 효과적 수습 및 복구대책 강구

○ 사고의 수습·복구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결과 종합 보고

○ 예비군·민방위·군 및 사회단체 등에 의한 복구활동 통합 지원체계 가동

□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1)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

○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 사고원인 분석·평가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주요사례 분석, 항구적 관리시스템 개발

2) 사상자 처리 및 장례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사상자 신원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치료·보상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3) 복구 진행상황 보도 및 홍보

○ 복구 및 사고 피해자 등 정부 지원계획

○ 고속철도 운영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 홍보

2-10. 해양선박(해수면 유 · 도선)사고 대책

가. 피해현황

○ 최근 5년간('11~'15) 충남 해역 해양선박사고 사고건수는 728건(어선451, 여객선6, 화물선15, 유조선5, 예부선34, 레저기구156, 기타61)으로 어선과 레저기구 사고가 83%이상을 차지

○ 또한, 인명피해는 총 109명으로 사망27명, 실종3명, 부상79명이 발생

1) 해양선박사고 건수

(단위 : 건)

구분 연도	해양사고 건수							
	계	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레저기구	기타
2011	126	96	1	4	0	2	11	12
2012	132	92	3	2	1	10	11	13
2013	109	67	1	3	3	7	24	4
2014	114	69	1	2	0	10	30	2
2015	247	127	0	4	1	5	80	30
계	728	451	6	15	5	34	156	61

2) 해양선박사고 척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해양사고 척수							
	계	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레저기구	기타
2011	147	116	1	5	0	2	11	12
2012	147	105	3	3	1	11	11	13
2013	119	77	1	3	3	7	24	4
2014	129	76	1	9	0	11	30	2
2015	249	128	0	4	1	5	80	31
계	791	502	6	24	5	36	156	62

3) 해양선박사고 인명피해

(단위 : 명)

구분 연도	해양사고 인명피해							
	계	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레저기구	기타
2011	20	18	0	0	0	0	2	0
2012	10	10	0	0	0	0	0	0
2013	20	17	0	0	0	0	2	1
2014	41	41	0	0	0	0	0	0
2015	18	17	0	0	1	0	0	0
계	109	103	0	0	1	0	4	1

나. 원인분석

○ 사고의 원인의 66.6%인 485건이 선박불량 및 개인부주의로 전체 사고원인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며, 운항과실(99건), 충돌(75건)이 23.9%를 차지(보령・태안・평택해경 통계자료 결과)

※ 개인부주의 사고 : 작업과실, 장비조작 미숙 등

다. 목표

구분	'15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선박(건)	247	200	△47
인명피해(명)	18	10	△8

※ 해양선박사고 예방대책 강화 및 어민 교육을 통한 개인 부주의 해양선박사고 감소를 목표로 설정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노후어선 감척 사업 추진

①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어업 쇠퇴에 따른 선령(船齡)이 노후된 어선 증가로 인한 기관·장비 등도 함께 노후화

○ 노후 된 어선의 조업 중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상존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위협

②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선령이 오래된 어선 등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안전관리 추진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안전 조업 등 경쟁력 강화

□ 세부추진계획

○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어선 감척 등 추진

○ 저효율 기관, 장비, 설비 등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비 내시	
2/4분기	사업 대상어선 감정평가	
3/4분기	보상어선 해체처리 및 장비 매각	
4/4분기	어선 등록 말소 및 어업 허가 폐지, 폐업지원 보상금 지급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7,125	3,512	3,613	3,613	3,613	3,613	
연안어선감척사업	**7,125**	**3,512**	**3,613**	**3,613**	**3,613**	**3,613**	

2)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교육·훈련·점검으로 해양사고 zero化 추진

□ 주요내용

○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추진으로 어선원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해양안전사고 감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한기 어업인과의 순회대화 실시
- 구명조끼(1,153개) 및 방수복(780벌) 등 보급 추진

○ 항만 內 운항질서 관리 강화 및 안전운항 위해요소 발굴·해소

- 관내 무역항 수상구역 단속 시행(1회/30백만원)
- 관련기관 및 어업인 단체에 개항 질서 준수 협조 홍보
- 관내 무역항 수상구역 단속을 위한 항만순찰선 준공

○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지도점검 및 전수조사 추진)

- 6개 시·군(1,054척) 우심 항·포구 6개소 선정, 합동점검(도+시·군)

○ 안전한 해양충남 구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4/2분기 한)

- 도, 시·군, 해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참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해양선박사고 관련 교육·훈련 및 점검 계획 수립	
2/4분기	안전한 해양충남 구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3/4분기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4/4분기	어한기 어업인과의 순회대화 실시 추진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해사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충남 해사안전시행계획 및 해양사고 종합대책 수립

○ 어선의 경우, 어선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가 수반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규모 해양오염 매뉴얼」을 병행해서 적용

□ 선박 지도 및 단속 강화

○ 여객선·어선·일반선박 등 안전관리 강화

- 해상 기상예보방송 정례화 및 기상악화 시 안전대피 지도
- 항해장비 및 기관설비 안전 점검 실시
- 입·출항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안전조치 이행실태 확인

□ 해양선박사고 교육·훈련 및 홍보

1) 유관기관(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조, 현장 체험형 교육실시

○ 이론중심 교육에서 전문강사를 활용한 체험·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실시

○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선원 대상 교육확대 추진

2) 해양 선박사고 계몽·홍보활동 전개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의식 고취

○ 선주, 선장에 대한 계몽활동 및 교육 지속 실시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해상사고 관련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및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자 접수·교육·배치, 수모품 수급·의료·보건·안전 등 전반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관리

□ 해양재난 대비 담당자 교육 및 훈련 실시

○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및 교육시스템 활용

○ 안전한 해양충남 구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도, 시·군, 해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참여

○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고사례 분석·학습 및 중앙부처 교육이수 시행

□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매뉴얼 수립·시행

○ 道「해양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보완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 시·군별 기 작성된 「해양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 및 보완

○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인대응수칙(SOP) 설치 및 관리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상황파악 및 전파

내용	추진부서	주관기관 조치사항
○ 메시지 접수	신고자 → 119상황실	
○ 상황접수	119상황실 → 해양정책과	
○ 상황전파 및 경비정 투입 및 긴급구조 요청	해양정책과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 (402-2000)	<해양수산부> 계통보고, 해양경비안전서에 구호 지시 수산청에 구호 지원 및 항행경보등 안전조치 지시 <해양경비안전서> 구호인력 및 경비정 출동 인근 해군함정, 어업지도선 및 조업어선에 구조 협조 <대산청(관제센터)> VHF 16 통신 전파 인근 선박 구조협조 요청
○ 상황전파 및 헬기 투입 요청	해양정책과 →119 헬기 (119, 5713)	
○ 상황전파	해양정책과 →보령시 상황실 (930-3906)	
○ 상황전파 및 인근 선박 전파 요청	해양정책과→대산수산청(660-7665) →어업정보통신국(675-1226)	
○ 상황전파 및 어업 지도선 출동 요청	해양정책과→수산과 어업지도선 (524-4135, 011-209-8906)	
○ 상황전파 및 병원선 출동 요청	해양정책과→보건정책과 병원선 (635-4291)	
○ 상황전파 및 어업지도선 출동 요청	해양정책과→보령시 수산과 (930-3921)	
○ 위기상황 전파 및 사고수습요청	해수부 종합상황실 (044-200-5731)	
○ 선박 승선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한국해운조합 보령지부 (930-5043)	
○ 사고내용 보고	접수자→과장→국장→기획관리실장→행정부지사→도지사	
○ 상황판단회의 개최 알림	청내방송 (도지사, 행정부지사, 해양수산국장, 해운항만과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련 실국장)	

※ 상황에 따라 해양정책과장(수상레저기구, 해운항만과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 선박사고 등), 해운항만과장(여객선, 급유선, 도선, 예선, 상선 등)

2) 구조·구난 초동대응

조치내용	관계기관(부서)	주관기관 조치사항
○ 위기경보(경계) 접수	중앙 → 도	
○ 위기상황판단회의 개최	도지사, 행정부지사, 해양수산국장, 재난안전실장, 해양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 및 관련 실국장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합동조사반운영 <대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해양경비안전서> 표류 및 실종자 구조 개시 방제선 출동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 출동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소집 (청내방송)	각 실·국	
○ 사고해역 선박 항행 통제 요청	대산해양교통관제센터 상황실 (041-660-7600)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항행장애물 조치 요청	해수부 종합상황실 (044-200-5731)	
○ 유류오염긴급방제 요청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 (041-402-2000)	
○ 유류오염 긴급방제 요청	해양환경관리공단 (041-664-9101)	
○ 유류오염 긴급방제 지원 요청	보령화력본부 (070-7511-2151)	
○ 관공선 현장 출동 확인 (긴급 구조·구난 지원)	도 어업지도선, 시·군 어업지도선	
○ 병원선 현장 출동 확인 (긴급 구조·구난 지원)	보건정책과 병원선 (365-4291)	
○ 소방헬기 현장 출동 확인 (긴급 구조·구난 지원)	119, 재난상황실 (119, 635-5713)	

※ 상황에 따라 해양정책과장(수상레저기구, 해운항만과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 선박사고 등), 해운항만과장(여객선, 급유선, 도선, 예선, 상선 등)

3) 현장대응 조치

<table>
<tr><th>조치내용</th><th colspan="2">추진부서</th><th>주관기관 조치사항</th></tr>
<tr><td>○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3개반)</td><td colspan="2">본부장 : 도지사
차장 : 행정부지사
통제관:해양수산국장,
담당관:해양정책과장</td><td rowspan="2"><해양수산부>
o 사고수습업무 추진
o 사고발생원인 조사
o 수색구조상황 언론 홍보

<해양경비안전서>
o 표류중인 22명 구조 및 육상으로 후송
- 부상자 긴급구조통제단에 인계
o 실종자 수색·구조작업
o 항행장애물 긴급 제거
o 유류오염 방제조치

<대산청>
o 해양경비안전서의 구조작업 등 지원
o 관계기관 인력/장비 동원 협조 요청
o 유류오염 방제조치 지원
o 항행장애물 회수추진
- 선사 협조, 조기회수</td></tr>
<tr><td>○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구조, 구급, 후송 등)</td><td colspan="2">통제단장 :소방본부장</td></tr>
<tr><td>○ 사고원인, 구조 및 사고 수습상황 정보수집
○ 외부기관 협력 총괄</td><td rowspan="3">상황총괄반</td><td>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수산과)</td></tr>
<tr><td>○ 대내외 보고자료 작성
○ 피해상황 및 중앙본부 지시사항 시·군 전파
○ 중앙재난대책본부 협력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td><td>안전정책과</td></tr>
<tr><td>○ 반별 추진상황 실시간 파악
○ 응급복구에 따른 예산확보
○ 주요인사 방문 의전
○ 조류,기상예보 확인 게재</td><td>기획관리실</td></tr>
<tr><td>○ 긴급구조통제단 연락
○ 도 차원의 긴급구호활동 (긴급구조통제단)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관할 시·군 보건소)</td><td>구조구급반</td><td>방호구조과</td></tr>
<tr><td>○ 대외홍보, 언론대응
○ 재난경보 발령·전파
○ 언론사 보도 지원
○ 보도자료 수집·분석
- 오보 해명자료 작성</td><td>공보지원반</td><td>홍보협력관</td></tr>
</table>

조치내용	추진부서		주관기관 조치사항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시군 응급복구상황 파악 ○ 이동용 통신시설 확보	비상지원반	안전정책과	<중앙해양심판원> o 사고발생원인 조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유류오염 방제조치
○ 관공선 지원 ○ 민간연락체계 준비 ○ 현장조치 및 사고해역 통제 지원 ○ 사고현장 동정 수시보고		수산과	
○ 근접부두 및 주변교통로 통제		건설교통국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지원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 병실, 영안실, 분향소 확보		복지보건국	
○ 해양오염방제 지원		환경녹지국	
○ 질서유지 및 수사지원		교육법무담당관	
○ 자원봉사 센타 설치 운영 ○ 피해가족 숙식 등 편의제공	자원봉사반	재난안전실	

※ 상황에 따라 해양정책과장(수상레저기구, 해운항만과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 선박사고 등), 해운항만과장(여객선, 급유선, 도선, 예선, 상선 등)

※ 상황판단 회의 구성 및 운영

○ 해양 선박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

[상황판단회의]

① 충청남도본부장·차장·제관·긴급구조통제단장·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집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

라) 복구단계

□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가동

○ 복구지원반 운영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 사후처리 지원(상황실, 인력, 차량, 장비 등 수습 완료시까지)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침몰·좌초 등에 따른 침선부표 설치 협조 및 신속한 수로정보 제공

- 항행장애물 조치 요청(해양수산부)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수반된 사고는 「대규모 해양오염 매뉴얼」에 의거하여 피해복구 진행

2-11. 내수면 유·도선사고 대책

가. 시설물 관리현황

1) 부여군 백마강선착장(구드래, 고란사, 규암) : 유선10척, 유선장3개소

○ 5톤이상 9척, 5통이하 1척, 연간 이용객 수 : 184천명

○ 운영 성수기 : 봄철(4~5월), 가을철(9~10월)

구분	선착장수	선 박 수(척)			규 모 별(척)						비고
					동 력 선				모터보트	무동력	
		계	유선	도선	소계	5t 미만	5-100t	101t 이상			
합 계	3	10	10	-	10	1	9	-	-	-	
부여군	3	10	10	-	10	1	9	-	-	-	

<5톤이상 유선 현황>

시 도	시 군	위 치	선 명	구 분	운항구간(해리)	톤 수	정 원	선 질
	계		9척		유선 9			
충 남	부여군	백마강	부여1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부여2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45	FRP
			부여5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부여7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부여9호	유선	고란사~규암(1.8)	7.3	12	FRP
			백마강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75	FRP
			서동2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45	목선
			선화1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45	목선
			선화2호	유선	고란사~규암(1.8)	24	45	목선

※ 출항·입항 기록관리 제외대상(시행령 제22조) : 승선신고서 미작성

- 관리대상⇒ 운항거리 2해리 이상, 운항시간 1시간 초과

나. 원인분석

1) 사고 유형은 추락, 충돌, 화재, 전복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주요 원인은 부주의(주의태만), 음주운항, 장비고장, 기상불량 등

2) 내수면에서 유·도선사고 발생하지 않음

다. 개선방안

1)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 유·도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활동으로 연간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추진

□ 주요내용

○ **유·도선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2월 중,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 지침해설, 관계규정, 안전운항 항법, 사고유형별 대처요령 등

○ **사업자·종사자 등 실무교육 실시**

- 4월 성수기전, 지자체 주관, 선원, 인명구조요원, 기타 종사자 등 전원
- 운항규칙, 수상교통, 응급처치, 심폐 소생술, 수난구조 등

○ **중앙합동 지도점검 실시**

- 연2회(4월, 10월) 민·관 합동 중앙 지도점검 실시
- 언론보도, 민원제기, 재난징후정보 제보 시 불시점검 실시

○ **시·군 주관 전수점검 실시**

- 3월 중 전수점검, 성수기간(4~10월) 중 월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전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군별로 점검반을 편성(현장 중점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자, 종사자 실무교육/유·도선 전수점검	1월 3월
2/4분기	중앙합동 지도점검 성수기간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유·도선 사고 대비 비상훈련	4월 4~6월 5월
3/4분기	성수기간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7~9월
4/4분기	중앙합동 지도 점검	10월

2) 재난관리 활동계획

◇ 유·도선 사고 규모(소형, 중형, 대형)별 주요상황에 따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현행화하여 각종 체계도 및 중수본·중대본 기능, 공통 기능(13개)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예방단계 >

○ 출·입항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이행 대책

- 운항거리 2해리(3.7㎞)이상, 운항시간 1시간 초과 선박

○ 현장 상주근무자 배치 현장활동 강화

- 4월~10월(7개월간), 주요 유·도선장은 매일 상주근무 실시

○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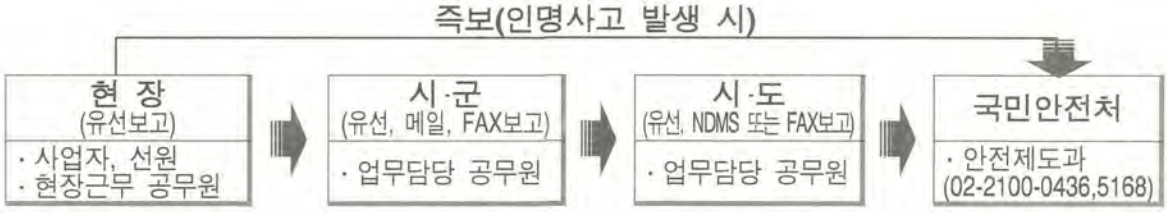

< 대비단계 >

○ 유·도선 성수기간(4월~10월) 설정

- 근무형태를 현장근무 형태로 전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 대응단계 >

○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우선 유선보고 후 사고상황을 정리, NDMS 또는 FAX 보고

※ 현장⇒시·군⇒시·도⇒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제도과)

○ 초동단계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사고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지자체) 주관], 사고 실태 파악, 행정부지사 등 간부 비상소집 및 역할분담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총괄·조정 및 지휘, 통제 등

-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제유지, 긴급구조 활동 현장지휘,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수습 조치 등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구 지원 및 요원 파견요청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등 조치

< 복구단계 >

○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피해 상황조사, 책임소재 분석,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 중앙수습지원단 편성·운영,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홍보·보도대책**

- 긴급구조 활동 상황 보도·안내,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공동 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예방·대비	○ 5톤이상 유·도선 중점 관리, 지도·점검 강화 ○ 교육, 출·입항기록관리, 현장근무자 배치 등 ○ 유·도선 성수기간 설정 운영(4월~10월) ○ 연간 활동계획, 사고대비 훈련, 매뉴얼 정비 등	연중 (4~10월 중점)
대응·수습	○ 사고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재난수습 주력, 인명피해 최소화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조기 배·보상대책 수립, 홍보, 환류	사고발생시

2-12.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책

가. 시설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평균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 계		-	-	-	-	-	-	-	-	-	-	-	13
사망 실종	소계	-	-	-	-	-	-	-	-	-	-	-	-
	사망	-	-	-	-	-	-	-	-	-	-	-	-
	실종	-	-	-	-	-	-	-	-	-	-	-	-
부상		-	13	-	-	-	-	-	-	-	-	-	13

나. 원인분석

1) 산업의 발달로 화학물질취급시설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빈도 증가

- 우리나라 화학 **산업단지**는 대부분 '90년 이전에 설계·설치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대형 화학사고 가능성 상존

- 주요 산단 내 석유·화학업종이 화학물질 전체 유통량의 72% 차지

2) 작업자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 준수 등 후진국형 화학사고 발생

* 금산 램 테크놀러지 무수불산 누출사고(8.24) 등

3) 졸음운전 등 운반차량 사고로 인한 누출사고 발생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13	10	△3
재산피해(억원)	0	0	0

라. 개선방안

1)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1)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경보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재난정보 자료 파악

- 사고발생 대비 정보공유가 필요한 관련기관 담당자 등 비상연락망 마련 및 주기적인 점검
- 과거 유사사례 사고 정보자료 파악

○ 재난(사고)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절차·체계 확인

○ 기관별 대응조직 구성·운영 체계 및 절차 점검

2) 화학물질 정보 통합관리 및 방제장비 파악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기관별 보유 화학물질 정보, 취급정보, 위해관리계획서 등 정보 최신화 공유

○ 유관기관 보유 대응장비 및 방제물품 현황, 취급업체 파악 및 공유

□ **사고 대응훈련 및 대 국민 홍보**

1) 화학사고 대응 교육 참여

○ 화학사고 대비 유형별 교육·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배양

-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시행 및 합동 모의훈련지원
- 재난안전교육원 등 사고 대응 행동요령 교육 참여

2) 화학물질 사고예방 홍보·계도 활동 전개

○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인근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교육

나) 대비단계

□ **비상사태 대비계획 마련**

1) 방재약품 판매업체 현황 파악

○ 사고대응 장비, 물자, 시설 및 인력 확인

○ 시설, 장비, 방제약품 확보

2) 비상상황 전파 및 연락체계 마련

○ 비상사태 시 주민, 근로자 등 보호대책 및 전파방법 마련

○ 사업장·현장 대응기관·행정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 확인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3) 비상상황 시 대비 훈련 실시

○ 정기·수시 재난사고 대응 교육 훈련 실시 및 참여

○ 사업장, 초동대응기관 등 연계 모의 훈련

○ 화학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관리·운영 및 개선

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차 위기상황 대비

○ 화학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확대 대비 방안 마련

○ 사고발생 주변지역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예·경보시설 및 재난방송 협조체계 구축

- 피해확산 차단 및 주민불안해소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 사업장, 대응기관을 연결하는 경보시스템 구축
- 언론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조치, 공중파 등 매체 이용 대국민 홍보방송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사고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시 상황보고 및 전파

- 환경녹지국장, 도지사·부지사,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 보고

* 선 구두 보고 후 메모보고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 13개 협업부서 상황전파·소집 및 비상단계 근무 준비

2) 현장수습조정관 현장 수습 파견

○ 사고 현장에서 대응·수습·복구 등의 활동업무 조정·지원

- 필요시 유관기관 대책회의 실시

○ 현장수습을 위한 정보수집 및 공유

- 현장수습 상황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전파
- 현장상황 파악, 위기경보수준 건의
- 현장수습 및 방제정보 유관기관 제공

□ 상황판단회의

1) 위기상황 평가 및 대응전략 검토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현장상황을 토대로 상황판단회의 진행

○ 긴급조치 필요사항 및 유사시 대응전략 검토

2) 회의결과 보고 및 조치

○ 「상황판단회의」 결과를 도지사·부지사 등 지휘부 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여부 보고

○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에 보고

○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인근 소방관서, 인근 환경관서, 인근 경찰관서) 등에 협조 요청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비상지원본부 설치 및 수습활동 지원

○ 현장지휘소 설치, 긴급구조 활동 지휘 및 통제(소방서장, 소방본부장)

○ 대피명령 등 주민(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

○ 방제·제독 활동 지원

○ 상황종료 결정(상황종료 유관기관 대책회의 실시)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위험지역 경계구역 선정(현장통제선 설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 부여

○ 인명구조, 환자후송 및 현장구호활동

○ 화재진압, 오염지역 방제활동 등 사고유형별 대응활동

○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방제활동

라) 복구단계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지역 잔류오염도 조사

○ 유관기관 합동 사고원인 조사

□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사고지역 복구

○ 금강유역환경청의 사고로 인한 인근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친 영향 조사 지원

※ 환경부 훈령(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 사고원인자 등 사고복구 조치

- 사고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장 복구계획서 제출 및 복구완료 확인

□ 사후관리 조치

○ 사업장은 복구결과 보고 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복구 완료 후 1년 동안 사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

2-13. 생물테러 대책

가. 현황

1) 2001년 미국의 탄저테러 발생 이후 최근까지 대내외적인 생물테러 위협요인 잠재

2) 교황방문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어 행사대비 안전태세 확립 필요성 증가

나.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생물테러 초기대응을 위한 모의테러 훈련과 이중감시체계를 통한 생물테러 발생 조기 인지

□ 사업내용

○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

- 생물테러 초동대응기관인 보건소 및 소방, 경찰, 군 등 유관기관의 모의테러 훈련을 통한 초기대응능력 강화

○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응급실 및 감염내과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축, 생물테러 의심 또는 환자 발생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감시체계 운영

  * 감시의료기관 : 단국대병원(응급실, 감염내과). 순천향천안병원(응급실, 감염내과), 서산중앙병원(응급실), 보령아산병원(응급실)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이중감시체계 운영	2월
2/4분기	이중감시체계 운영	4월
3/4분기	이중감시체계 운영, 생물테러 모의훈련 실시	
4/4분기	이중감시체계 운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74	14	15	15	15	15	

2) 교육, 홍보 등

◇ 생물테러 초동요원(도, 보건소, 경찰,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 및 일일보고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생물테러 초동요원 교육 및 일일보고 교육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 대비 대응에 대한 교육을 통한 생물테러 감염병별 조치사항 및 정보 교육
- 질병관리본부 일일보고 담당자에게 이중감시체계 및 생물테러 의심 신고에 대한 일일보고 요령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3/4분기	생물테러 초동요원 교육 및 일일보고 교육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생물테러 감시체계 및 비축물자 관리**

1) 생물테러 감시체계 운영

○ 생물테러 발생신고 및 응급실증후군 일일보고 운영

2) 생물테러 비축물자 관리

○ 개인보호장비(Level A. C),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 탐지키트 등 생물테러 비축물자 관리

나) 대비단계

□ 생물테러 감시체계 강화

1) 생물테러대책반 구성 운영

○ 생물테러 이상징후 인지 및 발생시 운영

-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4개팀으로 구성 운영
- 생물테러 관련상황 대처, 대량환자 또는 노출자 발생시 대응

2) 한시적 이중감시체계 의료기관 지정 운영

○ 이중감시체계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정

다) 대응단계

□ 의심사건 대응

1) 합동조사반과 초동조치팀 구성 및 출동

○ 합동조사반 : 군, 소방, 경찰, 지자체, 역학조사관, 민간 전문가 등

○ 초동조치팀 : 경찰, 소방, 보건

* 필요시(폭로자가 대량으로 발생시 등) 군 지원 요청

2) 초동조치

○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및 독소 다중 탐지키트 검사

○ 폭로자 파악 및 추후 관리

○ 폭로자 제독(소독) 및 항생제 투여(질병관리본부와 협의)

○ 필요시 임상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

○ 상황 접수 및 추진사항에 대한 즉시보고

3)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및 독소 다중 탐지키트 검사 후 조치

○ 음성판정시

- 정황조사결과 및 위협평가 결과에 따라 상황종료 여부결정 (테러정보통합센터)
-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정밀분석을 위하여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 보유기관으로 검체 이송

○ 양성판정시

- 생물안전특수연구시설 보유기관으로 검체 이송
- 현장지휘본부 설치
-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환자 및 폭로자, 의사환자 관리

라) 복구단계

□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1) 생물테러 위기대응 조치 평가 및 보완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2-14. 대규모 해양오염 대책

가.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충남)

1) 오염원별 현황

구 분		계	선박					육상	기타
			소 계	화물선	유조선	어 선	기타선		
5년 평균	건 수	6	6	1	1	3	1	0	0
	유출량(kℓ)	4.9	4.4	0.6	0.1	1.0	2.6	0.5	0.0
'10	건 수	7	6	2	2	1	1	1	
	유출량(kℓ)	6.9	6.9	2.82	0.31	0.01	3.80	0.04	
'11	건 수	8	8	2	1	3	2		
	유출량(kℓ)	9.7	9.7	0.31	0.18	0.25	9.00		
'12	건 수	2	1			1			1
	유출량(kℓ)	0.1	0.0			0.01			0.10
'13	건 수	11	11	1	1	8	1		
	유출량(kℓ)	3.7	3.7	0.02	0.01	3.36	0.35		
'14	건 수	4	3			2	1	1	
	유출량(kℓ)	3.9	1.5			1.43	0.09	2.40	

2) 규모별 현황

구 분		계	1kℓ미만	1kℓ이상 10kℓ미만	10kℓ이상 30kℓ미만	30kℓ이상 100kℓ미만	100kℓ이상
5년 평균	건 수	6	5	1	0	0	0
	유출량(kℓ)	4.9	0.6	4.3	0.0	0.0	0.0
'10	건 수	7	5	2			
	유출량(kℓ)	7.0	0.38	6.60			
'11	건 수	8	7	1			
	유출량(kℓ)	9.7	1.34	8.40			
'12	건 수	2	2				
	유출량(kℓ)	0.1	0.11				
'13	건 수	11	10	1			
	유출량(kℓ)	3.7	1.14	2.60			
'14	건 수	4	2	2			
	유출량(kℓ)	3.9	0.12	3.80			

3) 원인별 현황

구 분		계	해 난	부주의	고 의	파 손	기 타
5년 평균	건 수	6	1	4	0	2	0
	유출량(kℓ)	4.9	0.1	2.6	0.3	1.9	0.0
'10	건 수	7	1	4		2	
	유출량(kℓ)	7.0	0.01	0.37		6.60	
'11	건 수	8		5		3	
	유출량(kℓ)	9.7		9.39		0.35	
'12	건 수	2		1			1
	유출량(kℓ)	0.1		0.01			0.10
'13	건 수	11	2	6		3	
	유출량(kℓ)	3.7	0.62	0.49		2.63	
'14	건 수	4		3	1		
	유출량(kℓ)	3.9		2.52	1.40		

나. 원인분석

1) 최근 5년간('10~'14) 해양오염사고는 연 평균 6건 발생(유출량 4.9kℓ)

○ (오염원별) 어선에 의한 사고건수가 가장 많으나, 대부분 소량유출사고(건수 50%, 유출량 20%)

○ (유출량별) 1kℓ 미만의 소량 유출사고가 연평균 5건(83%)

○ (원인별) 사고건수는 부주의(67%), 유출량은 부주의(53%)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부주의 사고 : 작업과실, 장비조작 미숙, 유지관리 소홀 등

2) 사고원인 중 매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주의 사고에 대한 관리 필요

다. 목표

구분	최근 5년 평균	'16년 목표	증 감
부주의 오염사고 발생율	67% (19건)	57%	△10%

※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책 강화를 통한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감소'를 목표로 설정

라.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해양오염방지 지도 단속강화

1) 연안지역 유류·유독물 저장시설(해양시설) 지도단속 강화

○ 폐유수거시설 설치 및 위탁처리 의무화

○ 폐유 불법배출 및 바다 오염 행위 단속 강화

2) 어선, 선박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 항해장비 및 기관설비의 안전 점검

○ 해상기상 예보방송 정례화 및 기상악화시 안전대피 지도

□ 해안오염 방제장비 및 기자재의 확보

1) 시군별 중·소형 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및 기자재의 확보

○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 긴급 투입 가능한 방제기자재 우선 구매

○ 도서지역 방제자재 보급(유인도서 25개소 대상)

○ 방제기자재의 연안지역 읍·면 분산 비축방안 마련

○ 기타 방제작업에 필요한 물품의 확보

- 방제복(품질인증), 장화, 장갑, 뜰채, 갈고리, 이중포대 등

2) 해양경비안전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민간업체 등 협력으로 방제자재·장비 상시 비축

○ 신속한 해안오염 방제자재·장비, 인력 충원을 위한 연락망 구축

○ 해안 방제용 중장비, 오일펜스, 유흡착제 등 동원

□ 해안오염방제 교육·훈련 및 홍보

1)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시스템 활용

2) 관계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는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참여(해양경비안전서 주관)

○ 관계기관 및 단체, 기업의 방제동원 체제 유지

3) 해안오염방지 계몽·홍보활동 전개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 해안오염방지 계몽·홍보활동 전개

○ 해운 수산관계 종사자 계몽운동 지속적 실시

○ 바다정화 활동 전개 및 해양오염사진 전시회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의식 고취

○ 전문 방제교육을 통한 방제전문가 양성

- 국가긴급방제계획에 의한 부처별 임무, 방제방법 등 교육
- 방제 전문교육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참여, 교육 이수조치

○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 긴급 투입 가능한 방제기자재 우선 구매

나) 대비단계

□ 취약해역 특성에 적합한 방제대책 수립

○ 시·군별로 기 작성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수정·보완

○ 기존 해안 기름유출사고 문제점 개선위주의 방제대책 수립

- 악천후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해역 보호조치(오일펜스 설치)
-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07.12.7) 참조
- 태안군 해안방제조치의 모범사례를 적용한 해안방제대책 마련

○ 사고 규모별 방제 인력 확보대책 수립

- 대규모 사고 발생시
  · 방제대책본부(중앙)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인력동원으로 사고 수습
  ·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 접수, 배치, 안내 등 체계적 처리
- 중·소형사고 발생시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로 최대 활용 가능한 인력지원

○ 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 기관별 유류오염 방제장비 보유현황 및 공급업체 파악 유지

○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및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자 접수·교육·배치, 소모품수급·의료·보건·안전 등 전반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관리

□ 방제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가상한 단계별 조치 훈련 참여(해양경비안전서 주관)

- 관계기관의 일원으로 참여,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
-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연 1회 이상)

□ 방제 지원 및 협조체제 유지

○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적극 참여(해양경비안전서 주관)

○ 내수면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협력 강화

○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체계 정비 및 간담회·회의 등 협력체계 활성화

다) 대응단계

□ 상황별 대비체계

1) 상황전개에 따라 2단계로 구분운영

구 분	기 상 상 황
준비단계 (태풍특보)	태풍정보 등이 발표되어 유류오염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방제단계 (유류오염 사고발생)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2)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체제

〈단계별 근무체제〉

○ 준비단계 : 소속 사무실에서 상황유지(연락체계 유지)

○ 방제단계 : 유류오염 방제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합동 근무

단계별	본부장	차 장	통제관	담 당 관
준비단계	-	행 정 부지사	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과장
방제단계	도지사	행 정 부지사	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과장

○ 본부장은 관내 해안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전 직원에 대한 단계별 비상소집

□ 단계별 담당업무 및 근무방법

1) 준비단계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충청남도재난안전 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유류오염정보 관리팀(1인) - 해양정책과	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전달·처리 2. 유류오염사과 정보 수집·분석 3. 유류사고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4. 기타 유류오염 방제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 단 팀(1인) - 해양정책과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태풍의 진로 등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및 전파
유관부서지원팀 (6인) -수산과 -치수방재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행정과 -도민협력새마을과	〈태풍예보 관련부서-치수방재과〉 1. 태풍예보 관련 자료수집 전파 〈보건위생·환경관련부서-보건정책과, 환경관리과〉 1. 유류오염 발생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구축 2. 유류방제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관리관련 부서-사회복지과, 도민협력새마을과〉 1.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구축 〈수산 관련 부서-수산과〉 1. 수산 증 양식 시설·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원팀(2인)	〈해양경비안전서, 해양환경관리공단〉 1. 오염해역에 대한 오염방제계획 수립 2. 오염방제 기술지도

※ 근무방법 : 방제단계와 동일 적용

2) 방제단계

○ 조직 및 담당업무

실무반명	주 요 임 무	해당실과	협조 (관련 과·기관)	
①상황총괄반	< 재난총괄 업무 수행 >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재난예방, 대비, 대응 및 응급조치 등 지휘 ◦ 사고원인 파악 및 사고수습상황 정보수집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방사고수습본부 협력 총괄 ◦ 외부기관(해경, 해수부, 항만청, 해양환경공단 등)협력 총괄 ◦ 대내외 보고자료 작성(일일상황보고서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 운영	해양정책과	-	-
	◦ 피해정보 및 재난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 피해상황 및 중앙본부 지시사항 시·군 전파 ◦ 각 일선 지방행정기관 및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력 및 중앙부서 협력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대응업무	안전총괄과		
	◦ 반별 추진상황 실시간 연락체계 구성 ◦ 응급복구에 따른 예산확보 및 관련 중앙부처 협의 ◦ 주요인사 방문 의전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복무단속 ◦ 조류,기상예보 확인 및 사고 조치현황 홈페이지 게재	총무과		
②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 긴급생활안정지원체계 가동 - 부처별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시행 -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긴급지원 - 재해구호물자 응원 등 유관기관 상호협력 - 이재민 구호비용(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지출 - 피해지원 정책 종합홍보	사회복지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③재난현장환경정비반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 과거사례를 참고하여 재난폐기물 발생량 추정 - 대규모 재난폐기물 대비 장비동원체계 운영	환경관리과 해양정책과	금강유역환경청 육군제32사단	
④긴급통신지원반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재난발생시 통신시설 침수·파손 등 통신두절 대응 -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지원 -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전력공급대책 마련 -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응	정보화지원과		KT
⑤시설·응급복구반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정체결을 통한 응급복구 장비·물자 긴급투입, 복구 - 재난발생 즉시 관련기관에 동원 협조 - 피해 극심지역 부족장비 파악, 광역지원체계 운영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⑥에너지기능복구반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 에너지 기능 고장으로 인한 피해 예측 - 대규모 에너지 시설물 피해대비 응급복구체계 운영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 에너지 단절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	에너지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실무반명	주 요 임 무	해당실과	협조 (관련 과·기관)	
⑦재난수습 홍보반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재난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SNS 및 외부전광판,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위성중계차량 재난피해 예상지역 파견	홍보협력관	정보화지원과	KBS 대전방송총국
⑧물자관리및 자원지원반	<방제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 운영 - 협정체결한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의 응급복구장비·물자 긴급 투입 - 재난특성에 맞는 방제자재 지원 - 피해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사회재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치수방재과	예산담당관	
⑨교통대책반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 -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인력·장비 동원 - (도로) 낙석발생, 붕괴우려 급경사지, 침수우려 도로,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	도로교통과 해양정책과	충남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⑩의료방역반	<공중보건서비스, 감염병, 방역 서비스> - (의료)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 응급 의료물자 지원 - (감염병)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운영 - (방역) 방역물자 및 방역요원 지원	식품의약과 보건정책과 축산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대전충남수의사회
⑪자원봉사 지원반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활동지원> -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지원 -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도민협력새마을과	총무과	충남자원봉사센터
⑫사회질서 유지반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 재해발생지역 출입 및 교통통제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주민대피	자치행정과	충남지방경찰청 제32사단 충남교육청	자율방범연합대 해병전우회 대한적십자사
⑬수색구조 구급반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 대규모 피해지역 소방력전진배치 및 현장상황통제관 파견 - 인명피해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 응급후송 - 접근곤란지역 인명구조·대피, 사망·실종자 수색	119광역기동단	소방행정과 충남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 : 24시간 2교대 근무

○ 기타 지원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 유관기관 지원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 오염피해가 클 때 상시근무하되 오염정도에 따라 신축성 있게 별도 명령조정

□ 상황판단회의

1) 상황판단회의 구성 및 운영

○ 해양오염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

【상황판단회의】

① 충청남도본부장·차장·제관·긴급구조통제단장·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집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

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상황 공동관리체 운영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상황관리총괄	상황보고서 작성	1.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2.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3.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 수립 및 자료 작성 6. 재대본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영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사회재난과
	상황관리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재대본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재대본회의 개최 8.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9.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0.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1.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2.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13.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사회재난과 해양정책과
	행정지원	1.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2.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3.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총무과
긴급생활안정지원		1.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2.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3.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사회복지과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세무회계과)
재난현장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환경정책과 해양정책과
긴급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정보화지원과
시설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도로교통과, 건설정책과, 자연재난과, 수산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에 너 지 기 능 복 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 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 장비 · 자재 등 지원 4. 시 · 군 복구현황 파악	경제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재 난 수 습 홍 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 ·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 라디오 · CATV ·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 · 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 · 라디오 · 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시 · 군 공보담당관 관리 7.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홍보협력관
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교 통 대 책	1. 교통 두절구간 해상 실태 파악 보고 2.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의 료 · 방 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 · 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 · 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 운영 지도 · 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 위생관리 지도 · 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 운영	식품의약과
자 원 봉 사 관 리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2.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3.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도민협력 새마을과
사 회 질 서 유 지	1.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자치행정과
수 색 , 구 조 · 구 급	1.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2.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3.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5.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방호구조과
지 역 재 난 관리책임기관 등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라) 복구단계

□ 해안 부착유 수거

1) 해안환경 정화작업 실시

○ 암반해안

-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고압세척기와 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제로 수거

○ 자갈해안

-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저압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제로 수거하거나 바가지, 양동이 또는 유흡착제 흡착수거 및 갯닦기 작업 실시

○ 모래해안

- 덩어리 상태의 유출유와 오염된 모래는 삽으로 걷어 내거나,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수집 포장백에 담거나 임시 저장소로 운반한다. 이 경우 모래의 굵기에 따라 차량진입이 어렵거나 이로 인한 지표면 2차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차량진입을 금지하고 사람의 통로 설치 2차 오염을 방지하며, 많은 모래를 제거한 경우에는 깨끗한 모래로 보충

○ 갯벌과 습지대

- 오염해안 바깥쪽으로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 후 저압소화호스로 씻어내어 유회수기 및 유흡착제로 수거, 침하되는 지역은 청소작업으로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람의 진입을 금지하고 저압세척 실시

□ 회수된 기름 및 폐기물 저장·운반·처리 대책

○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이 2차 오염 또는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기름 묻은 쓰레기와 구분하여 처리 절차와 처리방법 강구

○ 유출유에 대한 회수능력과 상설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임시 저장시설 및 장소를 지정·운영

○ 회수유 및 폐기물 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업체에 적법처리 지도·단속

□ **오염사고 사후관리 대책**

1) 해양생태계 및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대책 강구

○ 해양생태계, 어장환경, 야생동물 및 수질 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과 피해조사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대책 강구

○ 오염사고의 방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방제와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추진

2) 유류오염 손해 배상 제도

○ 유류오염손해배상은 민사관계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 대상임

- 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주 및 보험자가 1차 배상책임, 부족분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기금에 피해 보상청구 가능(관련 근거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15. 대규모 수질오염 대책

가. 피해현황

○ 최근 2년간('14~'15년) 수질오염사고 46건 발생

(단위 : 건)

구분	합계	'14	'15
수질오염사고	46	27	19

나. 원인분석

○ '14년에 가장 많이 발생, 수질오염 신고 건수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

○ 수질오염사고 유형이 물고기 폐사, 농가 등 유류 유출, 소방수 유출, 유독물 유출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다양해짐

다.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주요내용**

○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 기관 및 부서별 역할·임무 검토 및 비상연락 현행화 등

○ 방제물품 · 장비 관리 지침 마련(환경부 2016년 하반기 예정)

- 오일펜스(붐) 등 방제물품 보유 및 관리기준 마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안) 마련	4월
4/4분기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12월

2) 재정사업

① 공단폐수처리시설

◇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하천 수질개선

□ 사업내용

○ 산업·농공단지 조성 증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8,270백만원

-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 계속사업(47개소)의 공사비 : 18,270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4분기	사업예산 교부 및 집행현황 점검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공단폐수처리시설	35,167	16,897	18,270	-	-	-	

② 수질오염사고 현장대응 방제훈련

◇ 오염사고를 가상한 훈련으로 신속한 방제·수습체계 확립 및 방제요원의 대응능력 배양

□ 훈련내용

○ 가상 수질오염사고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에 의한 실제 상황전개 및 방제훈련 실시 4백만원

- 주　　관 : 충청남도, 훈련기관 : 시·군
- 참　　여 : 15개 시·군, 금강유역환경청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4분기	수질오염사고 현장대응 방제훈련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공단폐수처리시설	20	4	4	4	4	4	

3) 기타 시책

□ **주요내용**

○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훈련

- 주요 상수원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기관별 사고 대응 역할에 따른 실제 훈련(연중 1회)

○ 수질오염사고 대응 워크숍(환경부)

- 도, 시·군 등 수질오염사고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하여 정책 추진방향, 사고대응 사례 등 정보 공유를 위한 場 마련

○ 수질오염사고 대응 교육(금강유역환경청)

- 도, 시·군 등 수질오염사고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 수질오염사고 대응 워크숍	6월
3/4분기	· 수질오염사고 대응 교육	연중
3/4분기	· 수질오염사고 대응 현장훈련	연중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 점검·관리

○ 수질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수질오염사고 감시 강화

□ 수질오염사고 대비·예방 강화

○ 유해물질의 하천유입 차단을 위한 임시저류시설 설치 예정지 사전지정·관리

○ 유류·유해물질 운반차량의 상수원 주변지역 통행제한을 위한 관리 강화

○ 유해물질 제조·유통·판매업소 현황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 사전 구축

○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대비 안전교육 및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자체 방제훈련 실시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수질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환경오염 방제 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현행화

□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 환경오염사고 예방 교육, 홍보 실시

○ 지역 내 언론기관 등과 유사시 홍보지원 협조체계 구축

나) 대비단계

□ 수질오염사고 현장 지휘체계 및 초등 대응태세 사전 구축

○ 오염사고 대응관련 현장 지휘체계 구축·운영

○ 사고현장 보고·파악 및 전파체계 구축

○ 현장 대응 및 수습역량 강화대책 강구

○ 수질오염사고 대응조직 구성 등 재난관리 대책강구

○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 예상 상황별 위기수준 평가 및 긴급 대응계획 준비

□ 환경오염사고 수습 방제장비 확보 및 동원태세 구축

○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및 약품을 기관별로 사전확보 · 비치

○ 군부대 · 소방서 · 경찰서 · 방제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인력 등 공조체제 구축

○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 약품 등 복구 장비 · 자재 확보, 적재적소 비치

□ 환경오염사고 수습 방제장비 확보 및 동원태세 구축

○ 수질관련 부서별 및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환경오염 방제 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현행화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피해 및 대응활동 등 파악(긴급구조)

○ 유관기관, 시·군 대응상황 확인, 핫라인 유지

○ 긴급구조기관 비상근무, 대응상황 확인, 협조 유지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장비 지원 요청

○ 자발적 민간 참여 지원 긴급지원체계 가동

○ 중앙 현장상황관리관, 전문 대응팀 업무 지원

○ 주요인사 피해현장 방문 시 브리핑

□ 상황판단회의

○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 단, 중·소규모 수질오염사고로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이 가능하고, 취·정수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기평가회의 의제 : 위기상황 평가 및 우선조치사항 논의

- 위기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단,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유선 또는 참석자 중 상급자가 주관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음

라) 복구단계

□ 위기경보 변경 · 해제

○ 위기경보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사고수습상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위기경보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

○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상황을 분석 평가한 후 위기경보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

○ 위기경보가 변경되거나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전파

□ 사고수습 종합정리 보고 및 후속조치

○ 위기경보 발령이 해제되었을 때는 사고수습 조치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환경부에 보고

○ 위기상황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전파

○ 위기상항 대응조치에 참여한 모든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대응결과를 분석한 후 매뉴얼 보완 등 후속조치 실시

2-16. 에너지(전기·가스·석유)사고 대책

가. 사고현황

년 도	'10	'11	'12	'13	'14	계
가스(건수)	264	209	145	134	126	878
전기(건수)	9,778	10,373	9,970	10,023	9,932	50,076
계	10,042	10,582	10,115	10,157	10,058	50,954

* 주요 가스 · 전기사고 : '01.7 수도권 집중호우 침수 감전사고 (19명 사망),
'11.7 : 우면산 산사태 및 침수 등으로 인한 가스공급차단 (1,048세대)
'11.7 : 경남 합천 집중호우로 인한 저장탱크 매몰 및 배관파손

나. 원인분석

1)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취급부주의가 320건(36.5%), 시설미비가 94건(10.8%), 기타 고의 및 다른 공사 관련사고이며,

2) 전기사고는 합선 27,041건(54.0%), 과부하 6,059건(12.1%), 감전 4,006건(8.0%)로 특히 우기 침하 · 붕괴에 따른 합선사고가 많이 발생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가스(건수)	878	800	△89
전기(건수)	9,932	9,000	△932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가) 에너지 수급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평소 재난관리 훈련시 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발생시에도 행동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

*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을 통해 실행력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에너지수급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초자료 조사	
2/4분기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필요사항 검토	
3/4분기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필요사항 검토	
4/4분기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실시	

2) 재정사업

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 가스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가스시설 개선

○ 사업기간 : 2차 5개년('16년~'20년)

○ 사 업 량 : 총 44,515가구 *매년 8,983가구

○ 총사업비 : 10,375백만원 *국비80%: 시군비20%

- 매년 2,075백만원(8,983가구) *가구당 231천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2,800	2,560	2,560	2,560	2,560	2,560
국 비	10,240	2,048	2,048	2,048	2,048	2,048
시군비	2,560	512	512	512	512	512

□ **추진계획**

○ 시·군별 사업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매년 3월)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2/4~3/4분기	사업추진	
4/4분기	사업준공	

3)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이한 주기별·계정별 점검 추진

□ 주요내용

○ 점검대상

-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정압기, 타공사 현장 등)
- LP가스 공급시설(충전·판매·집단공급·저장시설 등)
- 고압가스시설,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 전력시설 등
- 가로등 등 전기시설

○ 중점점검사항

- 시설·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결빙대비 안전관리실태
- 각종 안전장치 작동상태 및 위급시 응급조치 가능여부
- 안전관리자 근무여부 및 상황실 운영실태 등

○ 점검방법

- 기관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 취약시설 점검·유관기관 및 부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중복점검 지양
- 전기 및 가스시설 소유·관리자에 대하여 자체점검 독려

○ 점검결과

- 도출된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토록 조치
-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중요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
- 지적사항은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가스시설 점검	
2/4분기	우기대비 가스시설 점검	
3/4분기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 가스시설 점검	
4/4분기	동절기 가스시설 점검	

4) 재난관리 활동계획

<전기분야>

가. 현 황

○ 발전소(4)

대 상 시 설			소 재 지	인력 (명)	연 락 처
발전회사명	발전소명(연료)	설비용량 (MW)			
한 국 중부발전(주)	보령화력 (유연탄, 가스)	5,800	충남 보령시	864	070-7511-2391
	서천화력 (무연탄)	400	충남 서천군	231	070-7511-6111
한 국 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유연탄)	4,000	충남 태안군	717	070-5007-3155
한 국 동서발전(주)	당진화력 (유연탄)	4,000	충남 당진군	655	070-5000-2611

○ 송·변전시설(충남본부)

대 상 시 설			소 재 지	인력 (명)	연 락 처
지 사 명	선로길이 (C-m)	변 압 기 (Bank)			
충남본부	1,345	765KV 3 345KV 13 154KV 117	대전 동구 용전동	1,499	042-620-2360

○ 배전시설(충남본부)

대 상 시 설					소 재 지	인원 (명)	연 락 처
지 사 명	회선수	선로길이 (C-km)	지지물 (본)	변압기 (대)			
충남본부	457	47,933	966,006	164,066	대전 동구 용전동	1,499	042-620-2360

나. 재난대응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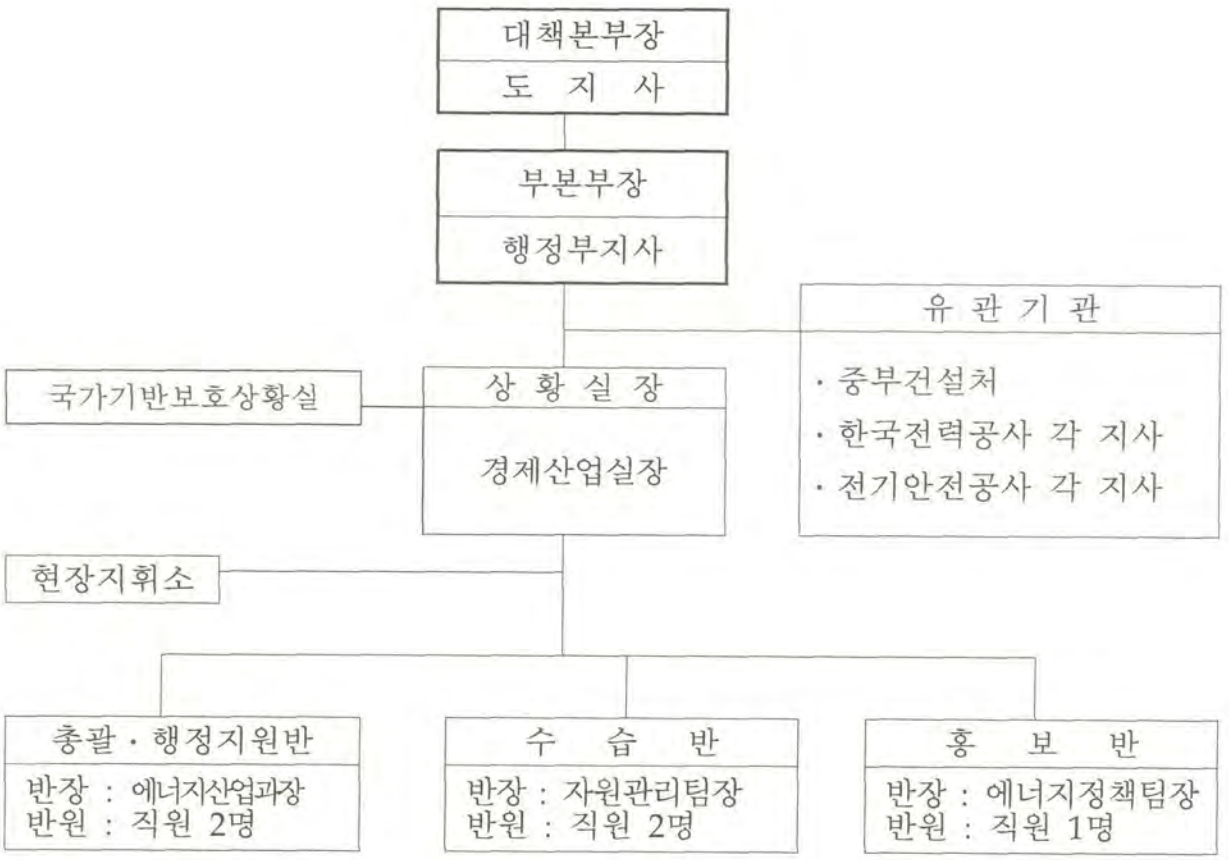

다. 유형별 · 단계별 · 항목별 대책

〈 위기 유형별 국가기반 재난 〉

○ 수요급증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 자연재해/인위재난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가) 예방단계

○ 전력수급 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시행

○ 세부 활동내용

-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추진
- 여름철 최대 수요에 대비한 전력수급 안정대책 수립·추진
-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적 문제에 의한 전력수급 위기 대비계획 수립·추진
- 발전 및 송전·변전 설비의 적기 건설 및 보강 추진
- 안정적 발전연료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조달계획 수립·추진
- 주요 시설 방호능력 보강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및 노사간 상시 대화채널 유지로 사회적 문제 최소화 추진
- 전력산업 설비에 대한 친환경적·친시민적 접근 및 추진
- 전력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력수급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산업통상 자원부 충청남도	○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비상 전력수급대책 수립 ○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 수립·시행 ○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 및 우수인력 확보·육성 ○ 비상시 인력동원체제 및 연락망 구축 ○ 주요시설 방호대책 강구 및 전력사업 홍보활동 ○ 전력설비 적기 건설 지원 및 안정적 연료수급 검토 ○ 전력수급 관련 기관·업체 준비상태 확인

구 분	임무 및 역할
한국전력공사	○ 송전·변전·배전 설비 건설·운영,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 시행
전력거래소	○ 장·단기 전력수요 예측,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전력계통 운영대책 수립 추진
발전회사	○ 발전설비 건설·운영, 장·단기 발전연료 조달방안 수립·시행

나) 대비단계

○ 전력수급 위기 관련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관별로 「위기상황 대응 예규」를 작성하는 등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경보 수준별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확대 억제

○ 세부 활동내용

-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징후별로 4단계로 구분하며, 위기경보 수준별로 구분하여 대응
- 단기 수요급증에 대비한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
- 정부 및 전력회사와 합동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정부기관 및 관련 회사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기관리
- 정부와 전력회사 합동으로 전력수급 상황실 운영
- 직접 부하제어 등 비상시 수요관리 대책 시행 및 전력공급 부족에 대비한 수급조절대책 수립
-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 위기경보 수준별로 필요시 일부 부하차단으로 위기확산을 방지하며, 이때 부하조정 대상자에 대한 부하조정 시행 안내
- 대주민 전기절약 홍보활동 및 정부시책 홍보활동 강화

○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 관심(Blue)

구 분	내 용
징 후	○ 대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예보 ○ 발전·전력 분야 파업 징후 ○ 예비전력 감소 징후(예비전력 : 3,000~4,000MW 수준) ※ 적정 공급 예비율 : 5,000~6,000MW(10~12%)
산업통상 자원부 충청남도	○ 위기상황 모니터 및 위기경보 발령 ○ 일일 전력수급 상황 점검 ○ 상황악화 대비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준비 ○ 주요시설 경비·방호실태 점검 ○ 상황악화 대비 인력동원 연락망 점검 ○ 전력수급 관련 기관·업체별 활동사항 확인·조치
한국전력공사	○ 전력수요관리 강화, 송전·변전 설비 운전점검 및 고장방지 활동 강화
전력거래소	○ 전력계통 운영실태 점검 강화, 중앙급전소 전산설비 운영상황 점검
발전회사	○ 발전설비 운전실태 점검 및 고장방지 활동 강화, 발전연료 재고·도입 실태 점검

- 주의(Yellow)

구 분	내 용
징 후	○ 대규모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발생 ○ 발전·전력 분야 지부별 파업 ○ 전력 수요의 지속적 상승 ○ 예비전력 감소(예비전력 : 2,000-3,000MW 수준)
산업통상 자원부 충청남도	○ 위기상황 모니터 및 위기경보 발령 ○ 전력수급 대책본부 운영 및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 상황악화 대비 공급능력 확충방안 강구·조치 ○ 주요시설 경비강화 및 상황악화 대비 인력동원 준비 ○ 전력수급 관련 기관·업체별 활동 확인·조치
한국전력공사	○ 전력수급 종합상황실 운영, 송전·배전 설비작업 최소화, 비상시 수요관리 시행 준비, 전기 절약 홍보 강화
전력거래소	○ 수급경보 3급 발령·전파, 전력설비 휴전 작업 승인 유보, 발전설비 출력 확보대책 시행
발전회사	○ 석탄 화력발전소 출력 상향운전 준비, 발전설비 작업 최소화

- 경계(Orange)

구 분	내 용
징 후	○ 태풍 · 호우 · 폭설 ·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발생 ○ 발전 · 전력 분야 파업 규모 확대 ○ 전력 수요의 급격한 상승 ○ 예비전력 지속 감소(예비전력 : 1,000~2,000MW 수준)
산업통상 자원부 충청남도	○ 위기상황 모니터 및 위기경보 발령 ○ 전력수급 조절계획 시행 준비 ○ 상황악화 대비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강화 ○ 주요시설 경비강화 및 상황악화 대비 인력동원 준비 ○ 전력수급 관련 기관 · 업체별 활동 사항 확인 · 조치
한국전력공사	○ 전력수급 종합상황실 운영, 전력설비 휴전 작업 시행중지, 배전용 변압기 수동운전 준비, 비상 수요관리 시행, 전기절약 홍보 강화
전력거래소	○ 수급경보 2급 발령 · 전파, 민간발전기 추가가동 가능량 확인, 부하조절 시행 준비
발전회사	○ 석탄화력 발전소 출력 상향운전, 발전설비 정비작업 작수시기 조정

- 심각(Red)

구 분	내 용
징 후	○ 자연재해 등에 의한 대규모 전력 · 발전 설비 고장 · 파괴 ○ 발전 · 전력 분야 총파업 징후 ○ 공급량을 초과하는 전력수요 징후 ○ 예비전력 감소 심각(예비전력 : 1,000MW 수준)
산업통상 자원부 충청남도	○ 위기상황 모니터 및 위기경보 발령 ○ 수급조절 계획 일부 시행 ○ 광역정전 발생시 긴급 복구대책 감독 ○ 주요시설 경비강화 및 상황고려 인력동원 시행 ○ 시간별 전력수급 상황 파악 및 대처 ○ 전력수급 관련 기관 · 업체별 활동 사항 확인 · 조치
한국전력공사	○ 부하차단 대상선로 및 시행시기 전파, 배전용 변압기 수동운전에 따른 최소 전압 유지, 부하차단 대상고객 홍보
전력거래소	○ 수급경보 1급 발령 · 전파, 광역정전 대비, 부하차단 대상물량 선별 및 시행시기 검토
발전회사	○ 운전중인 발전기 점검 강화, 광역 정전 발생대비 기동전원 확보 및 복구대책 확인

다) 대응단계

○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사전 지정된 배전선로의 부하를 교대로 차단하여 전체 전력계통의 붕괴를 방지

○ 위기유형을 신속히 식별하여 초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인적·물적 피해방지 및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

○ 세부 활동내용

- 위기상황 발생시 범국가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극복
- 광역정전 방지를 위해 사전 지정된 부하조절 우선순위에 따라 배전선로의 부하차단 시행
- 고장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원 지정업체 활용
-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전소 운전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및 투입으로 위기상황에 대응
- 부하조정기준에 따라 부하조정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하차단 지역에 대한 안내 실시
-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치안질서 유지 및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노력

○ 위기유형별 지식경제부(충청남도)의 역할

- 수요급증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 전력공급능력 확충 대책 시행 /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 냉방수요 감축대책 시행 / 광역정전 발생시 긴급복구 활동 지원
- 자연재해/인위재난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 재해지역 전력사업자를 통해 복구대책 수립 시행
  - 전력계통 안정대책 수립 시행 / 전력설비 고장 복구 시행
  - 광역정전 발생시 긴급복구 활동 지원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 고장계통 전력사업자를 통해 복구대책 수립 시행
  - 전력계통 안정대책 수립 시행
  - 전력설비 고장 복구 시행
  - 광역정전 발생시 긴급복구 활동 지원
- 파업 등 사회적 요인에 인한 전력공급 부족
  - 대체인력 확보 및 투입
  - 발전설비 운전인력 부족지역의 전력사업자를 통해 복구대책 수립 시행
  - 전력계통의 연계, 발전기 출력의 조절
  - 광역정전 발생시 긴급 복구활동 지원

라) 복구단계

○ 피해설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전력수급 위기기간 중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보완 및 피해 복구 조치

○ 세부 활동내용

- 위기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최선 대책 강구·시행
- 피해복구 및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예산 확보
- 전력수급 위기 대응조치 평가·보완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평가·보완
  - 적정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 평가·보완
  - 위기수준 및 수급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보완
- 위기상황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지속적인 전력소비 절약방안 강구·보완
- 인력 및 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보완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송전·변전 설비 보강 및 운용 점검

라.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계획

○ 각종 재난 발생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 확보된 자원동원 및 재난상황의 규모에 따라 타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 지원

-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인력·장비 등을 사전 확보

< 한국전력공사 충남본부 >

○ 인력보유현황 : 배전전기원(210명)

○ 협력업체 지원인력현황 : 배전(99명), 협력업체(34개)

○ 전공인력 동원가능인력(390명)

○ 한전복구장비 : 활선작업차(18대), 저압보수차(23대), 발전차(1대), 이동용변압기(78대), 협력업체 복구장비(34개업체), 크레인전주차(39대), 트럭(56대), 기타 작업차(65대)

< 중부건설처 >

○ 인력보유현황 : 송전 전기원(108명)

○ 협력업체 지원인력현황 : 송정(19명), 변전(13명), 협력업체(34개)

○ 전공인력 동원가능인력(18명)

○ 한전복구장비 : 이동변압(1대), 트럭(4대), 기타작업차(15대)

< 발 전 회 사 >

○ 중부발전(보령·서천화력)

- 오일펜스(1,000m), 유처리제(3,400L), 유흡착제(340kg), 가마니(250매), 모래주머니(450장), 크레인(1대), 지게차 (2대), 불도저(5대), 페이로더(1대), 노면청소차(1대), 소방차(1대), 트럭(2대), 포크레인(1대), 양수기(10대)

○ 서부발전(태안화력)

- 오일펜스(1,500m), 유처리제(1,080L), 유흡착제(450kg), 가마니(50매), 모래주머니(150장), 크레인(3대), 지게차(3대), 불도저(10대), 페이로더(1대), 폼트레일러(1대), 노면청소차(1대), 트럭(4대), 양수기(15대)

○ 동서발전(당진화력)

- 오일펜스(1,000m), 유처리제(792L), 유흡착제(270kg), 가마니(200매), 모래주머니(500개), 지게차(1대), 트럭(1대), 로우더(1대), 양수기(10대), 삽(50개), 곡괭이(12개), 새끼(10타래), 모래(4톤)

<석유분야>

가. 현 황

○ 생산시설(민간사업체 공장)

대상시설	소재지	생산능력 (천배럴)	생산실적 (천배럴)	시 장 점유율	근무 인원	연 락 처
현 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	142,350	121,316	13.6%	850	041-660-5223

※ 사업체별 시장점유율 및 생산량('15년 기준)

○ 노조 현황

회 사 명	소재지	가 입 단체명	결성 연도	위원장	회원수	연 락 처
현 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	한노총	'88. 3. 17.		720	041-660-5604

나. 재난대응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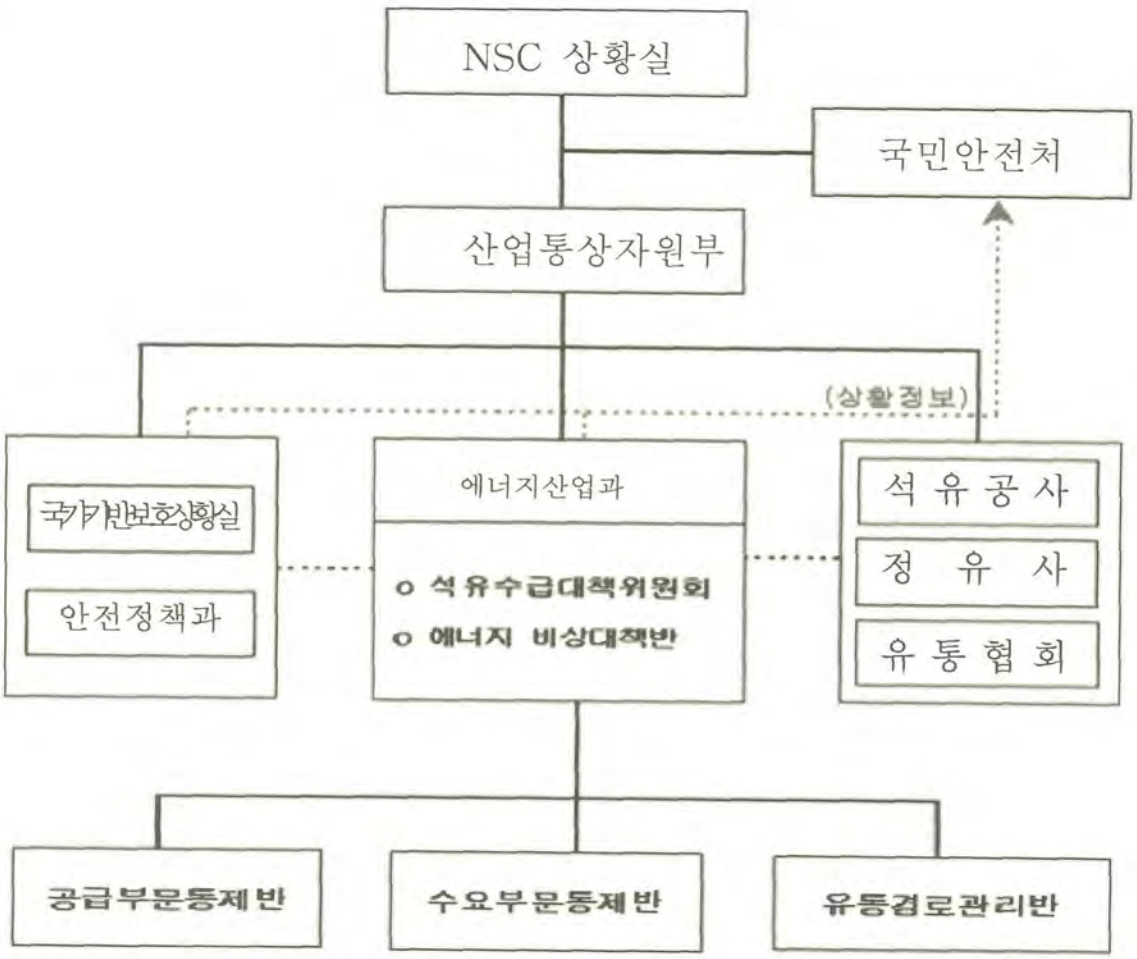

○ 위기관리 기구

구 분	기 능
석유비상대책회의	o 석유비상대책회의 - 에너지 비상대책 관련 정책 조율 ※에너지산업과장, 관련 실·과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에너지비상대책반	o 에너지비상대책반 - 에너지 절약대책 및 위기극복 대책 추진 - 종합적 에너지위기 대응 대책추진 - 국내외 석유시장/수급상황 모니터링

다. 유형별 · 단계별 · 항목별 대책

〈 위기유형별 국가기반재난 〉

○ 국제 원유가격 급등

○ 국제 원유공급 장애

가) 예방단계

○ 원유수급 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

○ 세부 활동내용

- 석유수요 절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석유 의존도 축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추진
-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 환경규제에 따른 에너지 가격상승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시행
- 에너지 안전관리 활동 및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기관별 임무 · 역할

구 분	내 용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 정책 총괄 및 위기대응 프로그램 총괄 ○ 대체 에너지 및 신 · 재생 에너지 개발 추진
한국석유공사	○ 경제정책과의 위기 대응책 협조
에너지공단	○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시행
에너지경제연구원	○ 위기대응 시스템 분석 및 정보제공

나) 대비단계

○ 원유수급 위기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위기경보 수준별로 적극적 대응

○ 세부 활동내용

- 원유수급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상황 대응 예규 검토
- 정유사 및 수입사의 원유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원유수급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
- 원유수급 위기 발생시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위기경보 수준별로 진행 상황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위기에 대응
- 대국민 에너지 절약 및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 관심(Blue)

구 분	내 용
징 후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정불안 징후 ○ 중국 등 경제성장국의 원유수요 증가 징후 ○ 국제 원유재고 감소 등 원유시장 불안 징후
에너지산업과 (주관부처)	○ 에너지 비상 대책반 가동 준비 ○ 자발적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준비 ○ 공공기간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준비 ○ 석유시장 전문가 협의회 구성(유가흐름 포착 노력) ※ 일정 규모의 유가 상승은 시장기능에 흡수
한국석공사	○ 석유가격 일일 보고제 가동준비

- 주의(Yellow)

구 분	내 용
징 후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원유 감산정책 발표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정불안 심화 ○ 중국 등 경제성장국의 원유수요 증가 가시화
에너지산업과 (주관부처)	○ 에너지비상대책반 가동 (일일보고체제 가동) ○ 부분적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 ○ 유가 상승분 흡수를 위한 유가대책 시행 ○ 자발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cash-back 제도 등) ○ 공공기간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 경계(Orange)

구 분	내 용
징 후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국가위기 발생 ○ 원유 수송선 및 원유 생산시설 대규모 테러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산 ○ 국제 원유가격의 점진적 상승 ○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량 대비 수요량 초과
에너지산업과 (주관부처)	○ 에너지비상대책반 / 석유시장 전문가 협의회 활동 강화 ○ 유가 안정대책 강화 ○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 단계 상승

- 심각(Red)

구 분	내 용
징 후	○ 중동지역 및 OPEC의 국가위기 장기화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원유 감산량 확대 ○ 오일쇼크에 대한 국제적 불안감 고조 ○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 징후 ○ 국제 원유시장의 수요량 대비 공급량 대량 부족
에너지산업과 (주관부처)	○ 전면적인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가로수 장식 강제 철거 - 백화점 등 영업시간 제한 - 유흥업소, 네온사인 사용 제한 등 ○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 강화

다) 대응단계

○ 원유수급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격급등 및 공급장애 등 위기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극적 대응

○ 범국가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원유수급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세부 활동내용

- 위기상황 발생시 범국가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극복
-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유수급 위기상황 극복
-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동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치안질서 유지 및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노력

라) 복구단계

○ 원유수급 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위기 진행기간 동안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세부 활동내용

- 원유수급 위기 진행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
-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대책 강구
- 피해복구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
- 위기 대응조치 평가 보완
  - 비상대응 조직 및 관련 실·과간 협조체제 검토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검토

라.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계획

○ 각종 재난 발생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 확보된 자원을 동원 신속 복구토록 하고, 재난상황의 규모에 따라 타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 지원

- 재난 발생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인력·장비 등을 사전 확보

○ 기타 기관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형 재난에 대비

○ 국가재난 사태 발생시 동원 가능 물자

구 분	대리점 (22개소)	주유소 (1,159개소)	일반판매소 (316개소)	부생판매소 (8개소)	이동차량 (2,007대)
저장능력(kℓ)	25,820	159,910	7,840	530	6,021

○ 1일 유류 소비량

구 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기 타
소비량(kℓ)	1,584	1,082	4,029	1,715	86

< 한국석유공사 >

○ 재난발생시 동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

- 인원(923명), 장비(소방차 2대, 진공펌프카 1대, 유처리제 61,608 L, 유흡착제 3,620 kg, 오일펜스 6,388m)

< 한국에너지공단 >

○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

- 시설 및 장비 : 포터크레인(1대), 지게차(1대), 비상출동차량(4대), 배수용 펌프(10대), 용접기(6대)

○ 인력

- 공단 본·지사 및 대전열병합사업본부 임·직원
- 열사용 기자재 및 부대시설 제조업체 종사자 직원
- 재난관리협조단체인 한국난방협회의 회원사 협조

<가스분야>

가. 현 황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사업소

업 체 명	소 재 지	근무인원	대표전화
충청지역본부	대전 중구 유등천로	112	042-229-3429
전북지역본부	전북 군산시 대야면	104	063-850-3829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공급가구	근무인원	대표전화
중부도시가스㈜	충남 아산시 음봉면	410,500	185	041-530-1900
㈜서해에너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	122,500	153	041-350-7700
㈜충남도시가스	대전 중구 중촌동	13,100	150	042-336-5205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기 관 명	소 재 지	근무인원	대표전화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계룡로	32	042-485-0019
충남북부지사	충남 천안시 청수로	34	041-561-0019

나. 재난대응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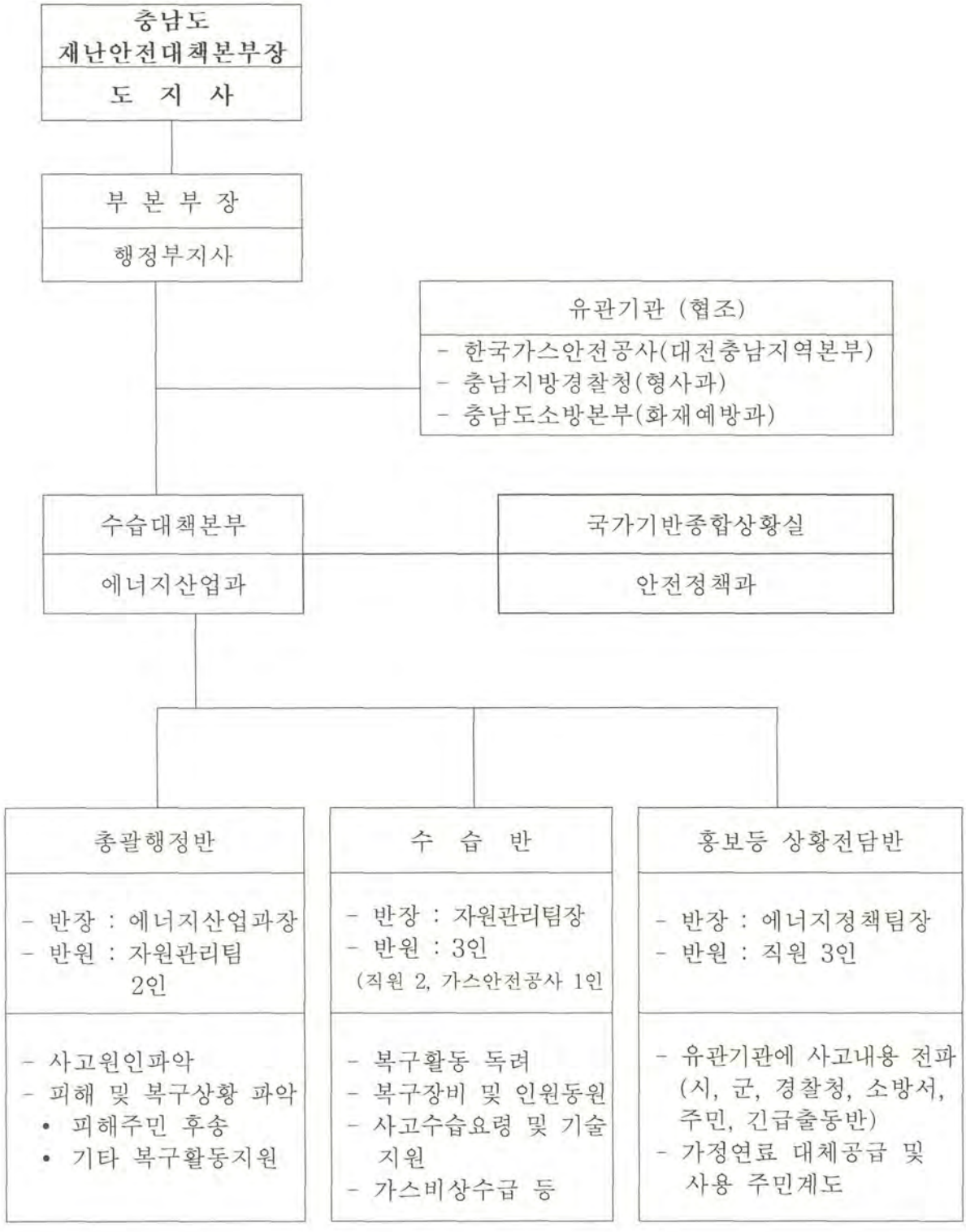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도 지 사
부 본 부 장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협조)
-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충남지방경찰청(형사과)
- 충남도소방본부(화재예방과)
수습대책본부
에너지산업과
국가기반종합상황실
안전정책과
총괄행정반
- 반장 : 에너지산업과장
- 반원 : 자원관리팀 2인
- 사고원인파악
- 피해 및 복구상황 파악
• 피해주민 후송
• 기타 복구활동지원
수 습 반
- 반장 : 자원관리팀장
- 반원 : 3인
(직원 2, 가스안전공사 1인
- 복구활동 독려
- 복구장비 및 인원동원
- 사고수습요령 및 기술 지원
- 가스비상수급 등
홍보등 상황전담반
- 반장 : 에너지정책팀장
- 반원 : 직원 3인
- 유관기관에 사고내용 전파 (시, 군, 경찰청, 소방서, 주민, 긴급출동반)
- 가정연료 대체공급 및 사용 주민계도

다. 단계별 · 항목별 대책

가) 예방단계

○ 도시가스 수급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세부 활동내용

- 공급기지, 배관 등 공급 인프라 점검체제 강화
  - 폐쇄회로 등을 통한 공급시설의 24시간 감시 및 1일 1회이상 순찰 실시
- 재난발생을 대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상황근무요원 및 비상출동대기조 편성 운영, 훈련 실시
- LNG 공급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대주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에너지의 안전관리 및 절약 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

나) 대비단계

○ 천연가스 수급 위기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 세부 활동내용

- 국내외 가스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가스배관 및 정압기 등의 공급시설 확충 지속 추진
-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 · 장기적 수급방안 검토
- 가스수급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별 대응 검토

다) 대응단계

○ 공급상 장애 발생으로 가스수급 위기가 도래될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으로 위기 극복 추진

○ 세부 활동내용

- 위기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극복
- 가스공급업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공급물량의 확보와 수요절감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위기상황 극복
- 가스공급 시스템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우회공급 등으로 위기상황 극복
- 위기유형에 따른 실질 대응조치는 수급차질 및 위기 지속기간 등을 고려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위기극복을 위한 전 도민 동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치안질서 유지 및 도민의 불안심리 해소 노력

라) 복구단계

○ 가스수급 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위기 진행기간 동안 시행한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세부 활동내용

- 위기 진행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 종합 및 계통 정상화대책 마련
- 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요예산 편성 검토
- 위기 대응조치 평가 보완
  - 비상대응조직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제 검토
  - 중장기 가스 수급대책 검토

라.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계획

○ 재난 발생시 업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동원가능 자원으로 신속히 복구하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 타기관에 복구지원 요청

- 재난 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인력·장비·자재 등을 사전 확보

○ 기타 기관도 재난 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 대형 재난에 대비

< 도시가스 공급업체 >

○ 인력동원 : 남부·북부권(170명), 서북부권(100명), 계룡권(150)

○ 안전장비 : 가스검지기, FID차량, 공기호흡기, 산소측정기 등

○ 복구장비 : 배관절단기, 용접기, 이동발전기, 크레인, 작업차량 등

< 한국가스공사 >

○ 인력동원 : 서해권(107명), 중부권(112명)

○ 안전장비 : 가스검지기, FID차량, 공기호흡기, 산소측정기 등

○ 복구장비 : 배관절단기, 용접기, 이동발전기, 크레인, 작업차량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인력동원

- 비상근무 제1호(소속직원의 1/3이상), 비상근무 제2호(소속직원의 1/5이상), 비상근무 제3호(소속직원의 1/6이상), 비상근무 제4호(소속직원의 1/10)
- 현장근무 : 관할 지역본부·지사별 사고조사반 1개팀 운영

○ 동원장비 : 가스검지기, 전자동산소인공소생기, 긴급출동차량 등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

기관	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8
	에너지안전과	044-203-5132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	041-635-3417
	안전정책과	041-635-2171
	재난종합상황실	041-635-5541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상황실	750-1300-1304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5-0019
	충남북부지사	041-561-0019
한국가스공사	본사 상황실	053-670-0350
	충청지역본부	042-229-3403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20-2360
한국전기안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280-3412
한국엘피가스산업협회	충남지회	041-534-3915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충남지회	041-333-1312
중부도시가스	상황실	041-530-1800
서해에너지	상황실	041-350-7700
충남도시가스	상황실	042-336-5201

2-17. 정보통신사고 대책

가. 발생원인 및 위기유형

발 생 원 인
o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o 사회재난 · 기술적 결함 :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장비(교환, 전송 등) 고장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오류 · 사회적 갈등 : 노사갈등으로 인한 불법파업 · 인위적 재난 : 대규모 정전, 테러,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송통신 기능 마비

위 기 유 형
o 방송 · 통신 서비스 중단

나. 전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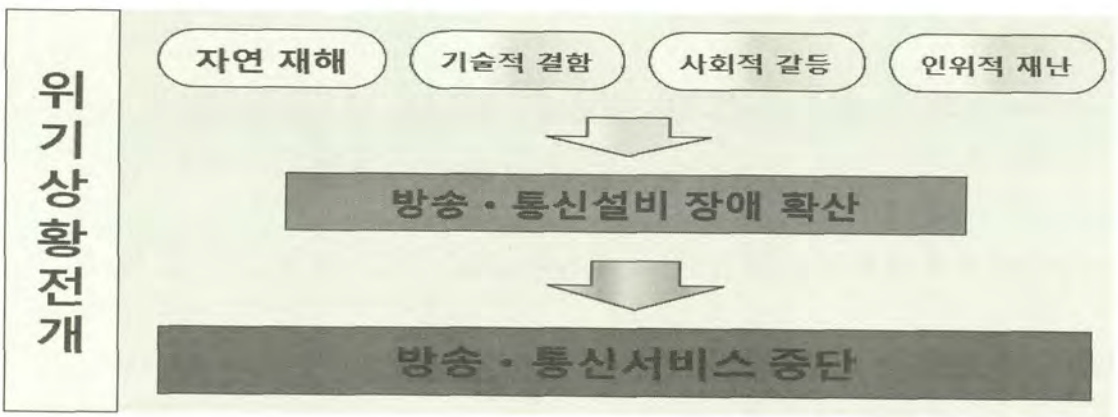

다. 목표

○ 방송 · 통신기능 마비사태 예방 및 억제
○ 위기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 수준의 방송 · 통신기능 유지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정보통신분야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정보통신 행동매뉴얼」 정비

○ 정비목적

- 유관기관 및 기관담당자 수시변동으로 연락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 행동매뉴얼」 현행화 필요

○ 작성내용

- 재난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 개인별 재난대응 임무 작성
- 유관기관 및 기관관리자 연락처 작성
- 재난 유형별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작성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조)」
- 미래창조과학부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국민행동요령 연계 등

2) 재정사업

□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 사업대상 : 15개 시·군 227개소

○ 사 업 비 : 4,238백만원(소방교부세 200, 도 1,919, 시·군 2,119)

○ 사업내용 : 마을별 재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휴대폰 등을 이용 언제 어디서나 비상 상황전파가 가능한 통합무선방송 시스템으로 개선 (※ '00. ~ '15.까지 / 1,306개소 완료)

○ 추진일정 (2016년)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결정	1~3월
2/4분기	• 설치공사(시·군)	3~11월
3/4분기	• 추진상황 점검	7월
4/4분기	• 추진상황 점검	10월

□ 중기재정 투자예산 ('15 ~ '19 / 5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합계	'15	'16	'17	'18	'19
재난안전 통합무선 방송시스템 설치사업	계	39,538	3,500	4,238	10,600	10,600	10,600
	투자금액	39,538	3,500	4,238	10,600	10,600	10,600
	설치개소	2,006	189	227	530	530	530

3) 긴급통신장비 정기점검

◇ 평소 서비스 지원 상태 확인 및 긴급 재난현장 투입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보통신 지원체계 확립

□ 긴급통신장비 보유 현황

장비명칭	규 격	수 량
위성전화기 (휴대형)	XT	3
위성전화기 (실내형)	SO-2510	1
TRS(통합망)	MTP850	10
비상발전기 (5KW/휘발유)	EU65is	2

- 정기점검 : 주 1회 실시

- 점검내용 : 긴급통신장비별 작동 상태, 수량, 보관상태 및 기능점검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4) 재난관리 활동계획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정보통신재난 취약시설 중점관리 •통신사업자별 안전계획수립점검실시 →취약점 즉시 보강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강화	•우회통신 경로 확보 •정보통신재난 상황연락체계 확립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동향파악 강화 및 분석(필요시 상황전파)	•통신재난상황반 구성·운영 •기관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 •상황판단회의 개최 •통합지원 지원체계 구축	•사군 통신사별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요청 •피해복구 우선순위 결정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계획 수립 •긴급복구대책반 편성·운영

2-18. 식·용수 대책

가. 목 적

1) 수질오염, 자연재해, 재난 및 테러,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식·용수 공급시스템의 파괴 및 마비, 식수전용저수지 손상 등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체계적 대응
2) 국가 위기사태 발생시 사전업무수행체계 구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복구로 발생 피해 및 주민불편의 최소화
3)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한 표준매뉴얼의 내용과 연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
4) 주관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나. 관련 근거

○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

○ 관련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수도법
4) 먹는물관리법
5) 하천법
6)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1)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056호, 2013.8.5.)

라. 적용 범위 및 교육·훈련, 재난관리 활동 등

1) 적용범위

○ 수도법 제3조 제7호에 의한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의한 지방상수도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

○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위기관리업무를 수행

○ 지방상수도는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위기관리업무를 수행

2) 위기대응 기관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광역상수도 사고 발생시
- 환경부 : 지방상수도 사고 및 식수전용 저수지 사고 발생시

○ 유관기관

-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 광역, 지방사고 발생유형에 따라 상호 유관기관으로 협조
- 정부유관기관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 도 : 실무기관인 시·군내 광역, 지방사고시 활동지원

○ 실무기관

- 시·군 : 지방상수도 사고 발생시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광역상수도 사고발생시

3) 위기형태

○ 급수중단 : 상수원 수질이상·오염, 수도시설·설비파괴, 식·용수 시스템 운영중단(가뭄, 전산시스템 마비, 장기간 가뭄)

○ 식수전용저수지 댐 손상

마. 개선방안

1)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취·정수장 시설물 보안상태 및 수질 이상징후 수시 확인을 통해 식용수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 노력

□ 주요내용

○ 2016년 분기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수질검사 실시

- 1,2,3,4분기별 검사대상 수질검사 실시로 적합·부적합·미검사 판단(안심등급, 사용중지 등)

○ 2016년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추진계획 수립·실시

- 검사기간 : '16. 2 ~ 12월(분기별 각 1회 실시)
- 검사대상 : 道내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
- 검사방법 : 도내 판매시설 등 먹는샘물 수거검사

* 역할분담 : 물관리정책과(시료수거), 보건행정연구원(시료검사)

○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자 등 관련자 기기조작 숙달 및 안전교육 지속 실시 이행으로 시설물 관리자의 관심사항 극대화

- 취수원 및 정수처리공정별 현장특성에 맞는 원활한 정수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

* 2016년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사업(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연계

-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공정운영, 전기·기계·통신 설비, 관로 운영 방안 등 정수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교육
- 보안시설 파손, 수질이상 징후 시 신고, 응급대응 조치사항 안내
- 식수 끓여먹기 등 음용수 안전행동요령 지속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수질검사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자 현장교육 식수 끓여먹기 등 음용수 안전행동요령 홍보	분기별 분기별 수시 상시
2/4분기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수질검사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자 현장교육 식수 끓여먹기 등 음용수 안전행동요령 홍보	분기별 분기별 수시 상시
3/4분기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수질검사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자 현장교육 식수 끓여먹기 등 음용수 안전행동요령 홍보	분기별 분기별 수시 상시
4/4분기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수질검사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자 현장교육 식수 끓여먹기 등 음용수 안전행동요령 홍보	분기별 분기별 수시 상시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식용수 분야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상수도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구조물의 균열 · 침하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 안전점검 실시

○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주요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 수시 확인

○ 처리시설 외곽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이상유무 조기 발견

○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 또는 인입선의 2중 설치

○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 사전 확보

나) 대비단계

□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위기상황 대비태세 확립

○ 위기징후 감시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 상수도시설 파손 및 수질오염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상황별 대응 절차, 비상연락망 상태 확인

○ 용수공급체계 동향파악

○ 관련 부처 간 정보공유 및 비상 대응체제 준비

□ 홍수 예 · 경보 및 수질이상·오염경보 시스템 운영체계 점검

○ 이상 강우 시 대비 방재근무 실시 및 수질 자동 측정시스템 감시 강화

○ 각종 경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준비

□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대비 안전대책 수립 시행**

○ 태풍·홍수 시 안전대책, 수질관리대책, 가뭄대책, 비상급수 및 대체급수대책

○ 취수장·정수장·가압장 등 안전관리대책

□ **시설·설비 파괴 방지를 위한 경비체계 점검**

○ 관련부처와 신속한 비상연락망 구성 및 주기적 점검

○ 취수·정수·송수·배수 수질 및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주변 경비

○ 시설 점검 및 순찰 강화

□ **국가기반재난 위기관리 능력 강화**

○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위기상황 대비태세 확립

○ 위기징후 감시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 기관장에 대한 위기관리 의식 제고

□ **해킹·바이러스침투/전산장애 등에 대한 대응책 강구**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상호 정보교환 및 대응절차, 협력체계 점검

○ 해킹·바이러스침투대비 전산시스템 주기적 점검

○ 전산장애·오류 발생시 예비 시스템 가동 및 데이터 백업

□ **국가기반재난 위기상황 대응체제 준비상태 확인**

○ 사고대책본부 상시 구성 및 준비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 위기발생시 투입할 인력, 장비, 물자 등 대체자원 준비

□ **긴급구조 및 구급체계**

○ 인명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어 119 등 긴급구조기관 협조요청

○ 재난현장 책임자 및 시설관리자는 재난발생에 대비한 상시 응급복구 및 수방장비 비축

다) 대응단계

□ **신속한 대응조치 및 응급복구**

○ 사고 발생지역 지방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대응

○ 신속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수립, 피해현황 집계 및 보고

○ 자연재해 사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 대체자원 및 대체인력 유관기관과 지원 협조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및 상황전파**

○ 자연재해 발생 및 위기상황 발생시 비상근무 실시

○ 댐 및 하류 하천 붕괴시 주민 대피사항 협의 조치

○ 위기상황 관련 부서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 **수자원시스템·설비·장비에 대한 보호 및 경비**

○ 주요 수자원 기반시설에 대한 방호·경비 강화

○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한 체계적·순차적 대응 실시

○ 위기상황 및 경비관련 부서 공동 대응

□ **대체자원 운용 및 비상·대체급수 지원**

○ 하천내 취수펌프장 가동 및 건설장비 동원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민·관·군 비상연락망 가동

○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시설, 소규모급수시설 등의 연계시설을 이용한 비상급수실시

○ 급수차, 물탱크, 탱크로리 등을 이용한 급수 제한지역에 최소한의 급수량 공급 실시

○ 먹는 샘물지원을 통한 음용수 공급 실시

라) 복구단계

□ **피해상황 및 복구방법에 대한 관련 부처와 긴밀 협조**

○ 경미사고는 지방사고대책본부에서 신속하게 자체복구 실시

○ 중대사고 발생시 관련 부처에 상황 협조로 신속한 복구

○ 전산시스템 장애시 관계 부처와 협조 조치

□ **사고대비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피해 복구 수행**

○ 사고 유형별 대응매뉴얼 준수하여 신속한 복구 실시

○ 재해대비 예산의 신속한 지원 및 투입 실시

○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의한 식·용수시설 파괴 시 관련부처에 신속한 상황전파·협조로 복구 실시

○ 피해복구 및 상황처리 완료시 관련 부처에 보고·협의

○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협의

○ 사고조치 및 복구의 적정성 평가 실시(Feed-Back)

3) 재난관리 활동 추진체계

□ 사고수습본부 체계도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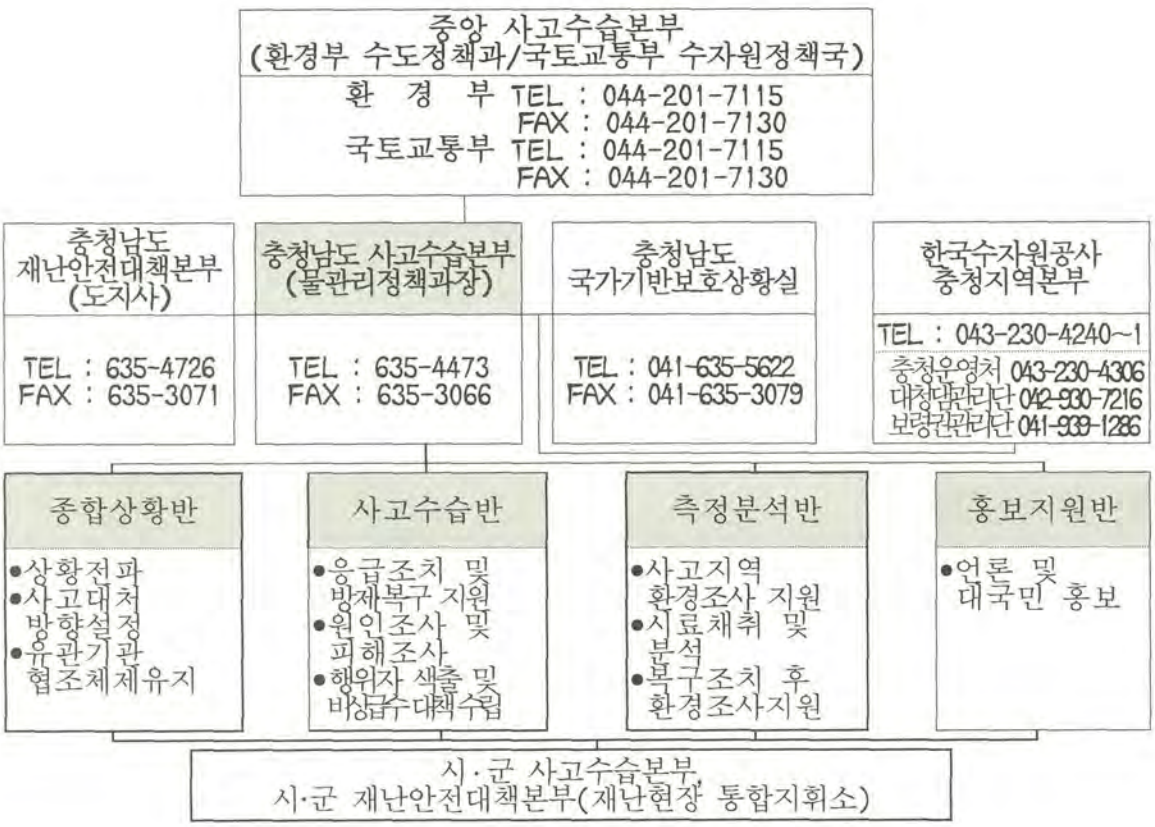

□ 기 능

○ 도 관내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 운영시기

○ 심각단계 이상 발령 시

○ 시·군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사고의 예방 또는 수습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시·군,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요청 시

□ 운영 및 근무체계

○ 도 본부장은 도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 정함

○ 도 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협의, 실무반의 운영,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정함

○ 위기경보 수준

등 급	내 용	비 고
관 심 (Blue)	○ 기상 예보 자연재해 징후 발견(태풍, 홍수, 지진, 이상기후, 가뭄 등) ○ 수도시설 운전요원 불법 단체행동 움직임 감지 ○ 테러 첩보의 접수 ○ 국내·외 전산망 전산장애/침해 징후 감지 ○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발생 위험 인지	모니터링, 징후활동 감시
주 의 (Yellow)	○ 단일 지역 수도시설 운전요원 불법 단체행동 시작 ○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 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일시적인 급수중단 발생 ○ 수질오염 상황판단기준 "II급 상황" 시	유관기관 전파, 협조체계 가동
경 계 (Orange)	○ 수도시설 운전요원 불법 행동 확대 ○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급수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수질오염 상황판단 기준 "I급 상황" 시	사고수습본부, 대비계획 점검
심 각 (Red)	○ 수도시설 운전요원 불법 행동 전면적 확대 ○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 또는 다수의 급수인구에 급수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수질오염 상황판단 기준 "급수 중지" 사태시	즉각대응 태세돌입

□ 실무반 편성 · 운영

실무반	구 성	역 할
종 합 상황반	물관리정책과 - 관심단계 : 2명 - 주의단계 이후 : 사고의 규모 및 시설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인원결정	·재난 및 발령된 위기경보의 접수·전파 ·모니터링 실시(재난현황/대응현황 파악) ·사고내용 및 유형, 조치·대응현황 파악/상황일지 작성 ·파악된 정보 및 현황 공유·전파·보고 ·직원 비상동원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시군 지원인력·장비(POOL) 현황파악 및 확보 ·동원인원에 대한 반별 임무 부여 ·발령된 위기경보의 전파 ·필요 시 대응체계 점검 ·유관기관 지원필요 시 요청
사 고 수습반	물관리정책과 - 관심단계 : 1명 - 주의단계 이후 : 사고의 규모 및 위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인원결정	·현장 및 필요 시 시·군상황반에 파견되어 재난상황 파악 및 원인 조사 지원 ·현장상황을 시간대별로 상황반에 보고
측 정 분석반	물관리정책과 : 경계단계이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 심각단계 시 - 관심단계 : 1명 - 주의단계 이후 : 사고의 규모 및 위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인원결정	·환경오염사고 및 시설파괴, 사이버테러로 인한 수질검사 결과 모니터링 ⇒ 수질에의 영향평가 협조요청 ☞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등 ·발생위기의 대응 및 복구 단계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모니터링 ⇒ 수질영향 점검 협조요청 ☞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등
홍 보 지원반	물관리정책과 : 경계단계이전 공보관 : 심각단계시 (파업의 경우 주의단계시) - 관심단계 : 1명 - 주의단계 이후 : 사고의 규모 및 위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인원결정	·현황 및 조치내용 등에 대한 대외홍보

□ 재난상황관리체계(현장) 구축

○ 도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수 있음

○ 비상지원본부 설치 경우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 · 운영할 수 있음

○ 도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 상황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음

○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와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상호 유기적 협조유지

○ 자연·사회재난발생시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

○ 도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도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 가능

○ 도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충청남도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현장에 파견 가능

○ 도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의 재난수습 지원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 도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대한적십자사충청남도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도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도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간에 각종 통신연결망 구축

○ 현장모니터요원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

□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 도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관리

○ 도본부장은 위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동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지원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근무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시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 체계구축 등 준비태세 유지

□ 상황단계별 편람작성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 작성하고 해당기관의 관장업무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 작성하여 사용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조치

○ 도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 작성

○ 도 본부장은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의뢰

2-19. 환경(폐기물) 대책

가. 개요(목적)

1) 재난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 수집·처리 지연이 주민의 생활환경의 불편 및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재난폐기물 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
   - 신속한 배출 및 임시 적환장 용량 등을 고려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방법에 맞추어 분리배출 방법을 간소화
   - 위험물(가스통, 유류, 화학물질 등)은 별도 분리배출하여 수집 운반 시 폭발 및 화재사고를 예방
   - 과거 재난 사례 및 피해 예상도를 고려하여 수집·운반경로는 복수로 마련하고 임시적환장 후보지와 연계하여 검토

     ※ 재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미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임시등록을 실시하여 원활한 수집운반이 되도록 조치
   - 광역적 처리체계 구축, 피해정보 수집체계 정비, 중앙행정 기관과의 연락체계 정비, 기초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 군부대 등의 인력·장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관련 민간단체 또는 지부 등을 통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
   - 재난폐기물은 단기간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인력·장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근 자치단체·군부대 또는 민간간에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
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인력 부족시 대책
   · 1단계 : 시·군 자체 보유차량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수집·운반업무 수행
   · 2단계 : 관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량 및 인력을 추가하여 수집·운반업무 수행(1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포함 업체 258, 차량 1,340

· 3단계 : 인근 시·군에 인원 및 장비 지원 협조 요청 및 군부대 차량 및 인력을 추가하여 수집·운반업무 수행
(1, 2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3)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 인력 부족 시 대책

· 1단계 : 시·군 자체인력, 관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직원,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하여 쓰레기 처리업무 수행

· 2단계 :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1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 매립 18개소(매립용량: 8,355천㎥),소각 11개소(시설용량 721톤/일)

· 3단계 : 인근 지자체의 협조가 가능할 경우 쓰레기 처리업무 위탁 수행
(1,2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4)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 매립시설, 소각시설 중 안전진단 등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항시 연락체계 수립

· 주요시설물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수시점검하고,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

·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

《 재난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 폐기물처리시설의 재난이 예상되는 사항 확인시 운영요원 또는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한 조치 이행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 등 정비 》

· 운영요원의 점검이 어려울 경우 조속히 전문인력(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신속한 보수·보강 시행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필요 예산 조기 확보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참고자료 도내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현황

① 매립시설 현황(지자체)

2015. 12. 30기준

구 분	소 재 지	규 모		설치승인	사용개시	비 고
		용량(㎥)	면적(㎡)			
계	18개소	8,475,494	804,781			
천안(1)	동남구 목천면 응원리 279-5	2,120,837	107,906	99.10.29	02.04.28	
공주(1)	검상동 산7-4	787,260	45,250	97.12.09	99.08.21	
보령(2)	남곡동 1140-6	739,056	61,261	96.01.24	99.08.28	
	오천면 원산도리 930-2	12,958	2,375	03.02.11	04.04.15	
아산(1)	신동길 212	207,095	20,462	15.02.12	15.06.15	
서산(3)	양대동 771	347,232	80,455	98.12.05	00.06.29	사용종료예정
	양대동 813	124,800	17,600	08.12.05.	12.03.07	지붕형
	대산읍 대죽리 715	182,,147	32,057	99.06.29	00.01.27	사용종료예정
논산(1)	은진면 시묘리 산4	600,894	54,300	95.04.18	01.12.22	
계룡(1)	두마면 입암리 516	171,575	13,872	97.05.28	00.02.01	
당진(1)	송산면 가곡리 499	1,285,656	165,205	97.07.26	00.04.25	
금산(1)	추부면 용지리 430	136,318	15,385	00.02.16	03.11.20	
부여(1)	세도면 수고리 611	539,100	51,713	94.05.21	97.06.07	
서천(1)	비인면 관리 547-1	292,400	28,264	92.02.15	93.12.30	
청양(1)	청양읍 벽천리 109-8	101,000	14,393	01.05.18	02.09.24	
홍성(1)	홍북면 중계리 525-8	338,498	49,464	94.11.15	98.06.10	
예산(1)	대흥면 대률리 산51-1	323,188	26,443	00.08.16	04.02.20	2단계사용
태안(1)	태안읍 삭선리 23-5	165,480	18,376	99.12.01	03.08.29	

② 매립시설 현황(민간)

구 분	소 재 지	규 모		설치승인	사용개시	비 고
		용량(천㎥)	면적(㎡)			
계	6개소	53,542	7,506,549			
서천(1)	서면 마량리 산17	6,341	638,515	88.06.03	89.09.01	승인2003-2(변경)
보령(2)	오천면 오포리 1147	7,796	800,700	96.05.15	97.04.07	승인2008-7(변경)
	주교면 고정리,송학리	13,314	1,724,664	99.05.21	01.01.22	승인2000-8(재발)
태안(2)	원북면 방갈리 산78-2	5,311	1,251,670	93.07.01	95.01.23	승인2000-5(재발)
	원북면 방갈리 산78-2	3,220	960,000	06.10.18	08.03.31	승인2006-2
당진(1)	석문면 교로길 30	17,560	2,131,000	96.10.08	99.05.28	승인2000-4(재발)

③ 소각시설 현황(지자체)

시·군	시설명	위 치	규모 (kg/h)	시설용량 (톤/일)	설 치 신고일	사 용 개시일	비고
합 계	13개소		47,488	1,127.2			
천안	환경에너지 사업소	서북구 백석동 531	13,334	320	'99.08.10	'01.11.10	
			10,417	250	'13.03.15	'15.09.15	
공주	공주매립장	검상동 326	2,083	50	'00.12.30	'01.05.25	
보령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남곡동 1140-6	2,083	50	'05.07.01	'06.08.31	
아산	환경과학공원	배미로 154	8,333	200	'08.10.15	'11.06.15	
논산	환경자원화센터	은진면 버들길 137	2,083	50	'04.06.15	'06.04.29	
계룡	계룡매립장	두마면 입암리 516	1,300	31.2	'05.03.23	'06.08.05	
서천	자원순환센터	비인면 관리 547-1	625	10	'02.07.08	'03.09.20	
			1,250	30	'13.12.13		
청양	환경사업소	청양읍 벽천리 109-8	938	15	'01.12.04	'04.02.04	
홍성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홍북면 중계리 525	1,500	36	'94.12.20	'97.11.27	가동 중지
예산	맑은물누리센터	대흥면 대률리 산51-1	1,667	40	'04.05.07	'05.12.13	
태안	환경관리 사업소	태안읍 삭선리 21-3	1,875	45	'00.01.22	'03.06.09	

소각시설 현황(민간)

업체명	위 치	규모 (kg/h)	설 치 신고일	사 용 개시일	비고
계	1개소	14,583			
동화기업(주)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181-40	14,583 (350톤/일)	'13.03.19	'13.08.26	승인 2013-2

다. 추진체계 및 일정

1)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긴급구조활동을 통합지휘·조정·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연락관 파견

>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구조 및 재난정보 관리
>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2) 표준현장지휘체계 운영

- 시　기

· 2개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 다수의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 운　영

· 표준지휘조직 편성·운영에 의한 현장대응

· 표준용어 및 표준작전 절차에 의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3) 통제선 설치·운영

- 제1출입통제선 : 긴급구조통제단장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 제2출입통제선 : 경찰관서장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 경계 및 비상단계 비상연락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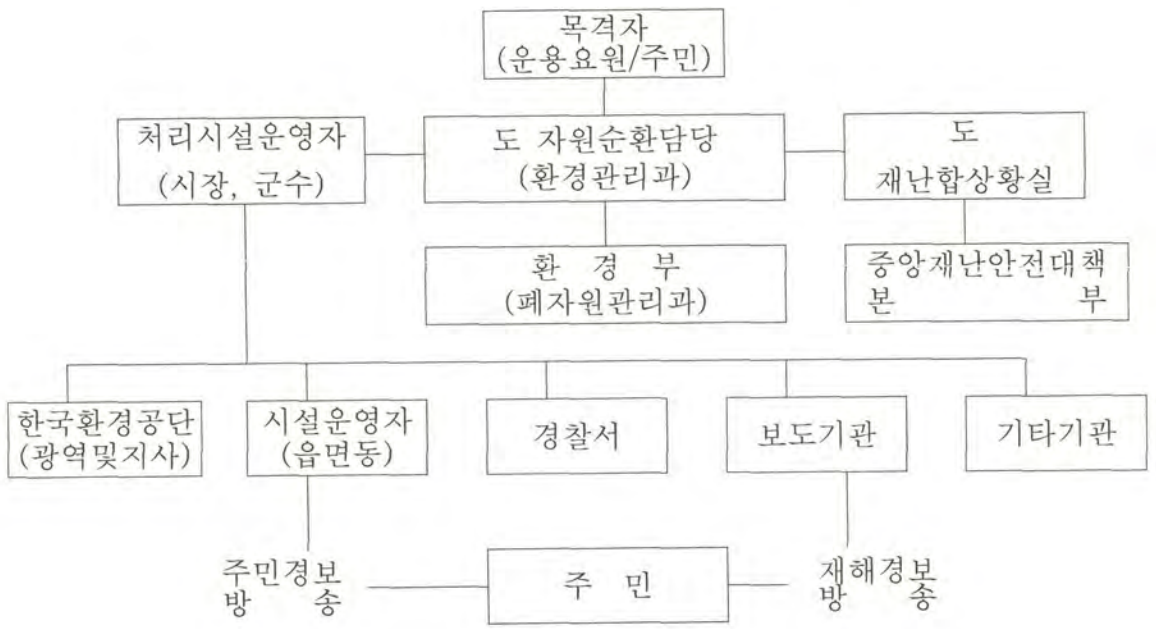

라. 개선방안

1)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 · 대비단계

1)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에 의한 대응체계 확인 · 점검 및 기상예보 등 재난방송 청취
2)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요시설 · 취약지역 상황파악 및 순찰강화
3) 폐기물 처리장비 점검 및 임시 적환장 활용부지 확보
4) 인접 시 · 군,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5)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 수행방법 정례적 교육

나) 대응단계

□ **주의단계**

1) 자체 재난경보 발령 및 재난대응 상황실 설치 · 운영
2) 환경미화원 및 폐기물처리 대행 업체와 재난 수습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3) 재난상황 일지 작성 등 기록 보존

□ **경보단계**

1) 자체 위기경보 발령
2) 재난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파악
3) 재난폐기물 수집운반계획 수립(임시 적환장, 수거처리장비 동원 등)
4) 인접 시 · 군,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금강청등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 심각단계

1) 재난폐기물 발생상황 확인

2) 처리업체 및 환경미화원과 가용장비 인력 총동원

3) 재난폐기물 운반처리

※ 현장에서 행정업무 담당자, 전문가, 처리업자, 자원봉사자 등이 동시에 작업을 하므로 작업의 효율과 안전 확보에 특히 유의

4) 임시 적환장 설치

5) 재난폐기물 수거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보고·전파체계 유지

6) 재난폐기물 자체처리불가 판단시 인근 기초자치단체 지원 요청

7) 방역관을 통한 폐기물 발생지역 및 임시 적환장 소독요청

8) 인력 부족시 자원봉사자 및 군부대 지원요청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

2) 필요시 사고수습상황 언론 브리핑 및 취재활동 지원

3)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비용 산출 및 집행

4) 폐기물처리시설의 피해복구비, 재난폐기물의 처리비를 국고보조의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에 신청

5) 재발생 가능성을 대비한 보완대책 수립

2-20. 감염병 대책

가. 피해현황

1) 인명피해

(단위 : 명)

구 분	연평균	합계	'12	'13	'14
사 망	369	1,106	391	340	375

나. 원인분석

1) 최근 3년간('12~'14) 감염성질환으로 연평균 사망 369명 인명피해 발생
2) 의과학의 발달, 공중위생환경의 개선 등으로 감염병 발생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신종감염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라인병, 치쿤니아열 등), 해외유입감염(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병풍토화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등의 증가로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의 부정기적 유행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375	354	△21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개정함

□ **주요내용**

○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정비 및 부서별 활동방향 규정

- 위기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내용 규정 및 협조 부서별 임무와 역할 명확화로 총괄·조정 기능 확립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충청남도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3월

2) 재정사업

◇ 예방중심의 국가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 인공면역력 증가 및 도민 건강에 기여

□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 실시

- 만12세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지원

  * '11년 9종 → '12년 10종 → '13년 11종 → '14년 13종 → '15년 14종

-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기관 확대 : 민간의료기관

○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 신종감염병 국내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 법정감염병 표본감시를 통한 감염병의 발생·유행 파악

  *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 C형간염, 성매개감염병, 해위유입기생충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안관감염병

- 발열성질환예방,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및 예방홍보

- 소독방역약품 비축으로 위기 발생시 지원

○ 결핵환자 치료 및 지원, 결핵환자 발견, 결핵관리 기반 강화

- 취약계층 결핵관리, 소집단유행관리,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저소득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등

○ 에이즈 및 성병 예방

- 도민 및 감염인 대상 교육·홍보, 감염인 의료비 지원, 성병진단 시약구입지원, 에이즈감염인 등록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가예방접종,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방역약품 구입 및 배부	
2/4분기	국가예방접종,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일본뇌염·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3/4분기	국가예방접종,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발열성질환 예방	
4/4분기	국가예방접종,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49,770	32,257	28,534	29,101	29,644	30,234	
국가예방접종	131,832	25,741	25,741	26,255	26,780	27,315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5,288	4,720	139	141	143	145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2,010	393	393	400	408	416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및 예방홍보	321	47	67	68	69	70	
국가결핵예방	8,994	1,097	1,935	1,973	1,975	2,014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325	259	259	264	269	274	

3) 교육, 홍보 등

◇ 올바른 손씻기 실천문화 정착 및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홍보

□ **주요내용**

○ 올바른 손씻기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 손씻기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변화 유도 및 손씻기 교육 실시

○ 어른부터 아이까지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손씻기 및 기침예절 교육 실시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1)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연중 비상근무 체계 유지
- 감염병신고망 구축: 의료기관 ↔ 보건소 ↔ 도 ↔ 질병관리본부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지정, 지역거점 병원 운영 지원
- 국가격리병상(1개소) : 단국대병원 35병상(음압 5, 일반 30)
- 지역거점병원(5개소) : 천안충무병원, 서산·홍성의료원,
보령아산병원, 예산종합병원

2) 감염병 연중 감시

○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구성· 운영 및 역학조사반 운영

○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31개소) 운영 : C형 간염 등 8종

○ 하절기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 감염예방 주의, 경보 발령
- 일본뇌염모기 밀도 조사 2개(논산, 당진) 지역 : 40회

-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사 : 6개 시군 해안 해수 오염 조사

○ 감염병 대응 현장 전문가 양성: 17명(도 및 시군보건소)

□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제고**

1) 예방접종 지원 내용

○ 어린이 예방 접종 : BCG, B형간염, DTaP, IPV, 수두 등 14종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인공면역력 증가

2)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 현황 : 도 및 시군 보건소 내 전담간호사 배치(17명)

○ 누락자 접종안내 및 병의원 접종정보 연계 등 접종률 제고

나) 대비단계

□ **방역대응태세 및 인프라 정비**

1) 시설,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 진단장비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 비축물자(예방, 치료약품, 개인보호구) 점검 및 활용 계획

2) 유관부서 및 기관 비상연락 인프라 정비

○ 유관부서 및 기관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정비

○ 감염병 자문위원 및 관련 민간단체(병협, 의협 등) 합동 대응 체계 가동

□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

○ 단계별 대처사항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지역방송, 마을방송 등 예방수칙 홍보 강화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다) 대응단계

□ 비상방역체계 강화

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 환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관리, 일일상황보고, 의심환자 및 환자 신고 · 이송 홍보

○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의료기관 협조, 응급의료 지원

2) 긴급방역조치 및 신속대응 추진

○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환자격리, 방역소독, 모니터링 강화

○ 비상방역대책반 및 역학조사팀 신속대응 조치

○ 응급의료시설, 의료시설, 격리시설, 환자이송 비상근무체계 유지

○ 민·관·군·경 협력, 방역인력보강, 장비 확보

○ 추가 백신접종 대비, 일제소독, 예찰 강화

○ 비축물자(예방 치료약품, 개인보호구 등) 지원

라) 복구단계

□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1)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평가 및 보완

○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 도민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모니터링

○ 방역 인프라 보완 및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

2-21. 가축전염병 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00	'03~'04	'06~'07	'08	'10~'11	'14	'15
합계	5,464	1,105	306	120	143	3,419	257	114
구제역	4,536	1,105	-	-	-	3,370	-	61
고병원성 AI	928	-	306	120	143	49	257	53

2) 살처분 가축

(단위 : 두,수)

구 분	합 계	'00	'03~'04	'06~'07	'08	'10~'11	'14	'15
합계	6,459,290	1,868	1,412,000	1,106,000	373,000	689,740	2,606,000	270,682
구제역	505,290	1,868	-	-	-	472,740	-	30,682
고병원성 AI	5,954,000	-	1,412,000	1,106,000	373,000	217,000	2,606,000	240,000

나. 원인분석

1) '00년 이후 구제역 및 AI로 총 6,459천두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총 5,464억원의 직·간접적 재산피해 발생

* 특히, 구제역으로 인하여 4,536억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

2) 구제역은 대부분 발생이 인근 시·도에서 유입, 2차 발생되었으며, 고병원성 AI의 경우 동절기 겨울철새에 의한 국내 바이러스 유입양상을 나타냄

다. 목표

구 분	'14~'15년 발생건수	'16년 목표	비 고
구제역	70건(6개시군)	비발생	백신항체형성률 향상 ('14년 : 50%⇨'16년 : 70%)
AI	6건(4개시군)	비발생	AI혈청검사 확대 ('14년 : 25천건⇨'16년 :65천건)

라. 개선방안

1) 방역체계 개선

◇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특성 상 '최초발생' 보다는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가능성에 중점을 둔 충남형 방역체계 가동

□ **주요내용**

○ (**사전검색**) **타 지역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역학농가에 대한 선제적 정밀검사 추진**

- (현행) 역학농가 이동제한 기간 경과 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으면 해제
- (개선) 역학농가 통보 시 선제적으로 정밀검사 실시하여 잠복감염 등 조기 검색

○ (**밀집사육지역 관리**) **축산 밀집지역에 대한 상시예찰 및 공동관리**

- 폐업보상 및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단지를 하나로 공동 관리
- 진출입로를 따로 구분하고, 입구에 소독초소를 운영(위험시기)

○ (**농가 책임성 강화**) **축산업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관습 탈피**

- 반복발생 농장 및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페널티 강화
  - ▸ 3진 아웃제 도입 : 3회 발생시 축산업허가 취소 등(축산법 개정 지속 건의)
  - ▸ 지역별, 테마별 맞춤형 방역점검을 통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농가경각심 고취

○ (**상시 소독관리 강화**) **위해요인 발생 시기가 아닌 정기적인 일제소독 실시 분위기 조성**

- (매일) 농협 공동방제단(47개반)동원, 소규모농가 상시 소독
- (매주) 일제소독의날(水)을 통해 관내 방역차량 총동원, 취약지역 등 정기소독

○ (**선진방역제도 조기정착**) **축산업허가제, 축산차량등록제, 축산물이력제 등**

-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제도 조기정착 추진
  - ▸ (허가제) 적정사육규모, 방역시설·교육 의무화 등 요건 철저 확인
  - ▸ (차량등록제) 전염병 예방, 신속차단을 위한 축산차량등록제 지속 추진
  - ▸ (이력제) 가축출생, 이동 등을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역 체계 확립

2) 재정사업

◇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마련으로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가축방역사업

- 총 5개 축종(소, 돼지, 개, 닭, 꿀벌) 25종의 가축전염병예방약 등 방역관련 사업 28종

* 사업량) 342,651천두 / 사업비) 23,884백만원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소, 돼지의 구제역 방어력 확보를 통해 재발방지 및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구입비용 지원

* 사업량) 5,664천두 / 사업비) 6,488백만원

○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

-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 살처분 후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

* 사업량) 3,344두(단가 4백만원으로 산정) / 사업비) 13,375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교부결정 및 송금	
2/4분기	사업추진상황 점검, 집행율 저조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업독려	
3/4분기	사업추진상황 점검, 집행율 저조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사업독려	
4/4분기	사업 완료 및 사업비 정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74,988	43,747	43,747	43,747	43,747	43,747	
가축방역사업	95,536	23,884	23,884	23,884	23,884	23,884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5,952	6,488	6,488	6,488	6,488	6,488	
살처분 보상금	53,000	13,375	13,375	13,375	13,375	13,375	

3)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초동대응능력 강화

◇ 구제역·AI 발생 대비 방역관련 기관·단체의 초동 대응능력 배양과 협력체계 검증, 방역대책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로 효율적 방역 추진

□ **주요내용**

○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검증을 위한 **방역워크숍 개최**

- 가축방역관련기관 담당관 소집, 방역교육 및 대책회의 · 토론 실시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결의식, 방역대책협의 및 분임토론
질병별 현장전문가 초빙을 통한 방역교육 실시 등

○ 질병별 **현장 가상방역(CPX)훈련**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 긴급행동지침(SOP) 내용, 체계숙달 등 초동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방역훈련 실시
-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 실시계획 : 공주시(구제역분야), 보령시(고병원성 AI 분야)

○ 방역기관 및 농가 방역관리실태 등 집중점검, 홍보강화

- 지역별, 테마별 맞춤형 방역점검을 통한 현장예방활동 강화

* 소독, 차단방역, 예방접종 등이 미흡한 농가 · 작업장 ⇨ 행정처분 철저

○ 현장중심 홍보활동(현수막, SMS 등) 및 언론매체(정기브리핑)를 통해 ···→**방역대책 집중홍보**

- 축산농가에 대한 AI·구제역 예방수칙 홍보강화 ···→**의심축 발생시 신고독려**

* 시·군 담당공무원, 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등을 활용 ⇨ '1:1' 홍보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가축방역 관련 교육 · 훈련 및 점검 계획 수립	
2/4분기	현장가상방역훈련(CPX) 실시, 주요전염병 방역실태 점검 실시	
3/4분기	가축방역워크숍 개최,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및 방역대책시행	
4/4분기	주요전염병 방역실태 점검 지속실시, 방역대책 홍보강화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협요소의 사전 발굴 등 예방체계 중점 구축·운영
◆ 가축질병 방역제도와 조치의 적극적 시행을 통한 위기발생의 원천 차단, 억제

(1) 중점 대응

○ 가축질병 사전 검색을 위한 지역 예찰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상시예찰 활동

○ 중앙부처(농식품부, 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생동향을 신속하게 파악, 대책 강구

○ 예방약품 비축·확보, 가축질병 검사장비·진단기술 확보

○ 축산농가에 대한 자율방역 의식을 향상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

○ 가축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세부 활동 내용

○ 농식품부 방역대책에 기초한 자체 방역대책 수립·시행
-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소 설치, 방역 동원장비, 매몰지 관리용 자재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등 사전 점검
- 사군의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및 매몰지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 관할구역 예찰활동(임상 및 실험실 검사) 강화
-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실시, 철새도래지 등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 예찰업무

○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 관내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및 예찰
-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자제 안내
-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 등의 예방수칙 및 소독 등 차단방역 교육·홍보

나) 대비단계

◆ 가축질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
◆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1) 중점 대응

○ 가축질병 위기 발생에 대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재정비 하고, 가축질병 종류별로 세부방역 요령 등을 검토·시행

○ 가축질병 위기에 대한 긴급행동지침(SOP)을 숙지하고, 사전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

○ 가축방역협의회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방역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방역체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점검

○ 양축농가 및 국민에 대한 방역교육, 방역시책 홍보활동

(2)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별 임무 숙지

○ 관심단계

구 분	내 용
징 후	o 주변국 발생(평시)
임무/역할	o 자체 방역대책 수립·시행 o 긴급상황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준비 및 자체점검 o 예찰활동 추진 o 축산농장·관련작업장의 소독시설 및 소독실시 여부 점검 o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예방수칙 교육·홍보

○ 주의단계

구 분	내 용
징 후	o 구제역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 ~다음해 5월) - 의사환축 발생 - 국내 발생 * 역학조사 실시후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격상 여부 검토 o 신종가축질병 - 국내 원인불명의 의사환축 발생
임무/역할	**【공통사항】** o 위기경보 "주의" 단계 전파 -농가 및 관련단체 등 상황 전파 o 가축질병 상황실 설치·운영(비상체계 가동) -관내 비상연락망, 매몰지 선정 등 자체점검 o 대책본부(발생 시) 및 상황실[모든 지자체] 설치 운영 o 긴급 방역대책 추진 -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조치, 환축발생 시 살처분 - 예찰활동 등 관내 방역활동 강화 o 해외 여행객·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및 축산농가 등 예방수칙 홍보 강화 o 중앙가축방역관 · 중앙역학조사반 · 기동방역기구 활동에 적극 협조 **【구제역】** o Standstill(일시정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o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홍보, 축사내 야생조류 침입 방지 조치(그물망 등) o 권역별 Standstill(일시정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소독실시 등 준비

○ 경계단계

구 분	내 용
징 후	o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 o 신종가축질병 - 국내 신종가축질병 발생
임무/역할	**【공통사항】** o "경계"단계 위기경보 전파(관련단체 등) - 농가 및 관련단체 등 상황 전파 o 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운영 o 긴급 방역대책 추진 - 해당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 예찰활동 등 관내 방역활동 강화 o 해외 여행객·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및 축산 농가 등 예방수칙 홍보 강화 o 중앙가축방역관·중앙역학조사반·기동방역기구 활동에 적극 협조 o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검토 **【구제역】** o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방안 등 검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o Standstill 적용 여부 등 검토(가축방역협의회 개최)

○ 심각단계

구 분	내 용
징 후	o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 백신 미접종 유형의 발생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o 신종가축질병 -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임무/역할	【공통사항】 o 가축질병 종식을 위한 비상방역체계 강화 등 총력 대응 - 중대본 설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o 통제초소 운영 확대 및 감수성 가축의 이동통제 강화 등 o 감염축 살처분·매몰 등 가축질병 오염원 근원적 제거 및 소독 실시 철저 o 모니터링 검사 등 예찰활동 총력 대응 o 축산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o Standstill(일시이동제한) 시행 시 이행 철저 o 살처분 동원인력에 대한 항바이러스 투여 협조(AI) o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및 방역 활동 실시 o 역학관련 농장·작업장·사람·차량 등에 대한 방역 등 후속조치사항 추진 철저 o 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등 방역조치 강화 o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검토

다) 대응단계

◆ 신속한 대응 조치에 의한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
◆ 가축질병 발생 초기에 방역체계를 총력 가동하여 조기 종식 추진

(1) 중점 대응

○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형태(전염병 종류)를 조기에 식별, 신속대응으로 추가확산차단 및 조기 근절 추진

○ 가축질병 위기 상황 발생원인 및 위기 형태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 대책 시행

○ 가축질병 발생지역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타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 방역 및 검사 인력 부족시 지원인력 확보 및 투입

○ 중앙부처 또는 민간 전문가를 방역 현장에 투입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지도·감독

○ 도민에 대한 홍보활동 및 불안심리 해소에 노력

(2) 세부 활동 내용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상황실 운영
- 발생지역별 방역지역 설정 및 감염축 살처분 등 오염원 근원적 제거, 통제초소 운영 등 구제역·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상황별 조치사항 시행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전문가 자문) 및 방역대책 강구 시달
-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지원대책 수립·시행
-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 신종 가축질병 발생시

- 위기상황 중앙부처 보고·유관기관 전파
- 정밀검사체제 가동을 통한 원인체 분석 및 원인체에 따른 방역대책 수립·시행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상황실 운영
-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지원대책 수립·시행
-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라) 복구단계

◆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 축산농가의 안정화 추진
◆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시행
◆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축소(진정) 및 종식 단계

○ 종식시 까지 가축전염병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지속 운영
- 추가발생이 없을 시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근무계획 수립 검토

○ 발생농가의 가축 재입식을 대비한 사전교육 및 특별관리 실시

○ 방역지역 및 비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

○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되어 농식품부에서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 · 전파 시 종식선언

□ 악성 가축전염병 종식 이후단계의 조치사항

○ 살처분 기축 등 피해농가에 대한 재활 및 관련 산업 피해복구 조기 완료 추진
- 생계비 지원, 살처분 보상비 지급 및 입식자금 등 재활 지원
- 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관련 작업장 등 관련 산업 경영안정 지원

○ 가축질병 예찰활동 및 근절 지속 확인
- 살처분 농가 재입식 시험 등 종합적인 예찰조사 실시

○ 가축질병 분야 위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 강구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실시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실태 수시 점검체계 확립을 위한 점검반 편성 · 운영
- 대규모 매몰지, 경사지, 하천변 저지대 등 취약매몰지 집중 관리

2-22. 수산생물 전염병 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4	'15
흰다리새우 전염성 근괴사증		-	3.6

나. 원인분석

1) '15년 첫 법정 2종 전염병인 전염성근괴사증 발생으로 총 4천5백 마리의 흰다리새우 종묘를 살처분하고 총 3.6억원의 직·간접적 재산피해 발생

2) 전염성근괴사증은 먹이생물(갯지렁이)이 및 자연수계에서 유입 양상을 나타냄

다. 목표

구 분	'14~'15년 발생건수	'16년 목표	비 고
흰다리새우 전염성근괴사증	3건(2개시군)	-	전염병예찰강화 및 방역관리 철저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주요내용**

◇ 현장의 대응기관을 통합 지원·조정(Support & Coordination)할 수 있도록 중앙본부(해수부, 수과원) **기능 강화,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작성 필요**

○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필요**

-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필요한 현장대응 실무매뉴얼 부재

○ **살처분 대상 질병 확대 재분류 및 보상비, 생계비 지원 필요**

- 살처분 보상비 현실화(피해규모 큰 전염병 등), 피해규모별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상비 및 생계유지비 지원 필요

○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위한 신고체계 구축**

- 신고포상금제도 등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필요

○ **현장 가상방역훈련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질병별 긴급행동지침제정, 초동능력 배양을 위한 가상방역훈련 실시
- 훈련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 **위해요인 발생 시기가 아닌 정기적인 일제소독 실시 분위기 조성**

- 일제소독의날(水)을 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양식어장 시설 및 장비 등 일제 소독

2) 재정사업

◇ 수산생물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양식어가 소득증대는 물론, 전염병 근절기반 마련으로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 수산생물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 해상가두리 양식어류의 기생충에 대한 방어력 확보를 통해 재발방지 및 양식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구충제 구입 지원

  * 사업량) 1식 / 사업비) 90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교부결정 및 송금	
2/4분기	상반기 사업추진 결과 보고 및 사업독려	
4/4분기	사업완료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 구제사업		76	90	90	90	90	

3) 교육, 홍보 등

◈ 효과적 방역교육을 통한 수산생물방역 체계구축 기여로 발생 최소화로 양식어가 소득증대는 물론, 전염병 근절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에의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 수산생물 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 수산생물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처분 등에 관한 사항 등

○ 도, 시·군간 협업으로 역할분담 및 정보교환 위한 예찰협의회 운영

○ 수산생물전염병 주 발생 시기 예방관리 홍보 및 방역관리 점검

○ 수산생물 방역조치 요령, 업무이해도 향상을 위한 시·군 업무담당자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충청남도 지역예찰협의회 계획수립 및 운영	
2/4분기	16년 수산생물방역교육 운영(2회/수산생물양식자 등)	
3/4분기	하절기 수산생물전염병 예방관리 홍보	
4/4분기	수산생물방역 업무담당자 교육(시·군 담당자)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수산생물전염병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수산생물질병관리 계획 수립

○ 질병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수산생물전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예찰반 편성 주기적 예찰

○ 중앙부처(해수부, 수산과학원, 수산관리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수산생물질병 발생동향 파악

2)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방역교육 실시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 수산생물질병 정보제공을 위한 방역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 수산생물양식자 및 종사자 등 전염병 예방 및 자율 방역 의식 향상을 위한 피해사례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 시·군 방역업무 담당자 질병 정보제공 및 방역조치 요령 안내

○ 시·군부터 도, 국가 간 협업으로 예찰수행 일원화 협의회 운영

- 예찰인력 정비, 업무정보 교환 및 국가방역시책 등 안내

3) 전염병 발생 사전차단 수산생물 병성감정 기관 운영

○ 방류수산종묘 전염병검사 및 질병발생 의심생물 병성감정 실시

- 첨단 검사 장비 및 새로운 진단기술 확보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1)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구성

○ 전염병 발생 의심신고와 효율적 예찰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 운영

- 수산생물양식자, 사료판매 등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구성

나) 대비단계

□ 긴급 방역조치 대비 지원체계 구축

1) 방역조치 물품 비축 및 방역체계 정비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시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 방역물품 구입

- 방역복, 소독발판, 분무기, 소독제 등 방역조치 물품 구비

○ 방역체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 점검

2) 전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 및 정기적 순회예찰 강화

○ 양식어가 자율소독·예방 위한 진단키트, 소독제 등 물품 지원

○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및 수산생물 양식 밀집지역 예찰강화

○ 자율적 방역 노력 강화를 위한 질병발생 동향 등 양식어가 정보제공

3) 전염병 발생 대비 이동병원 및 공수산질병관리사제도 운영

○ 질병 주요 발생시기 이동병원 운영을 통한 조기 진단 및 질병 확산 예방

○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을 통한 양식어가 모니터링 및 질병진단, 처방

4) 수산생물전염병 신고시스템 운영·홍보

○ 수산생물전자방역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염병의심 수산생물 신고 기관 및 방법, 시스템 활용법 홍보

다) 대응단계

□ 사전 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중점 대응

○ 수산생물방역관 및 예찰요원 등 방역조치 실시, 예찰 강화

* 필요시 비상근무체제 가동

○ 위기상황 발생 시 전염병 종류 조기 식별, 신속한 조기대응(방역조치) 및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확산 차단

○ 민·관 합동 위기상황 보고 및 방역대책 회의 진행

- 중앙부처, 시·군공무원, 양식어가, 외부전문가, 관련단체 등

2)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시 세부 활동 내용

- 제1종 전염병 :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
- 제2종 전염병 : 국내의 수산생물에서 발생 사례가 없는 전염병
- 제3종 전염병 :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전염병

구 분	전 염 병	방역조치
제1종 전염병	· 잉어봄바이러스병	· 살처분 · 격리, 이동제한 · 오염물건 소각
제2종 전염병	· 유행성궤양증후군 · 전염성연어빈혈증 ·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 · 가재전염병, · 노랑머리병, · 전염성근괴사증 · 흰꼬리병 ·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티 오사) ·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 ·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전염성피하 및 조혈기괴사증	· 격리, 이동제한 · 오염물건 소독
제3종 전염병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타우라증후군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 흰반점병	· 이동제한 · 오염시설, 물건소독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피해조사반 구성·운영을 통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살처분 보상비 및 생계유지비, 입식 등 재활지원
  * 해수부 긴급 지원비 확보

○ 전염병 발생어가 재입식, 소독 등 특별 방역관리 실시

○ 방역조치 지역 및 비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전염병 발생 종식 이후 관리**

○ 전염병 발생어가 방역조치 이후 임상관찰 및 병성감정 실시 후 이동제한 등의 조치 해제

○ 수산생물 사체 매몰 시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 및 점검 실시

○ 수산생물질병 예찰활동 및 근절 지속 확인

- 방역조치 어가 집중 예찰조사 실시

○ 수산생물질병 분야 위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방역관리 위한 대책강구

3. 안전관리 대책

3-1. 어린이놀이시설 대책

가. 시설 현황

(2015.11.25)

구 분	시설수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기 타
합계	2,270	372	1,287	517	94

※ 기타 :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놀이제공업소

나. 개선방안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안전점검 활동 강화 및 우수놀이시설의 정책적 장려를 통한 안전한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률 제고

*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실태 일제 점검

* 전수 자체점검, 지방-중앙,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

○ 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1~2월
2/4분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4~6월
3/4분기	•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9월
4/4분기	•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	11~12월

2) 재난관리 활동계획

< 예방단계 >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률 제고

-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시·군 및 시설 현장 확인점검

< 대비단계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2월~4월)을 통한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대응단계 >

○ 즉각적인 사고자 이송

- 병원 이송 치료 및 심리 안정

○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우선 유선보고 후 사고상황을 정리, NDMS 또는 FAX 보고

※ 현장⇒시 · 군⇒시 · 도⇒국민안전처

< 복구단계 >

○ 정확한 사고조사

- 사고 규모, 종류에 따른 상황조사, 책임소재 분석,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

- 사고 정보 분석에 따라 적절한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

3-2. 승강기사고 대책

가. 피해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11	'12	'13	'14
합계	18	3	6	4	3

나. 원인분석

- 승강기 사고원인*은 대부분 이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관리주체,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훈련 미흡

  * 사고원인(최근5년) : 이용자과실 80%, 관리부실 8%, 작업자과실 2%, 기타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3	2	△1

라. 시설현황

○ 설치대수 : 22,737대 ('15.6.30.기준)

구 분	합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소계	승객용	화물용	덤웨이터		
합 계	22,737	21,994	20,118	1,465	411	646	97

마. 개선방안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사고원인 조사·분석 강화 추진

○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추진

- 중대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능력 제고
- 승강기 갇힘 상황을 설정,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8개 시·군)

  * 시·군, 소방서,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관리업체, 지역주민 등

○ 연중 수시 특별안전점검 및 검사기관 지도감독 강화

- 15년이상 노후승강기(4천대)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 불합격 및 미수검 승강기에 대한 불법운행 일제점검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실시	1월 1~2월
2/4분기	•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노후승강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3~6월 5~6월
3/4분기	•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특별점검 실시	7~8월
4/4분기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10~11월

2)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관계기간 합동 훈련

□ 사업내용

○ '16년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8개 시·군)

- 시 기 : '16. 6월 중 실시
- 예산액 : 48,000천원(전액국비)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1~2월
2/4분기	• 시군별 자체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5~6월
3/4분기	• 훈련 완료실적 보고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18	70	48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118**	**70**	**48**				

3) 재난관리 활동계획

< 예방단계 >

○ 불합격 및 미수검 승강기에 대한 불법운행 일제점검

- 안전검사 이행 유도 및 독려로 승강기 안전성 확보

○ 승강기 관련업체 사후관리 실시

- 승강기 관련 업체의 적정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

< 대비단계 >

○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실시

- 중대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능력 제고
- 승강기 갇힘 상황을 설정,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8개 시군)

< 대응단계 >

○ 사고발생 승강기 파악 및 인명구조 활동 전개

- 병원 이송 치료 및 심리 안정

○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우선 유선보고 후 사고상황을 정리, NDMS 또는 FAX 보고

※ 현장⇒시·군⇒시·도⇒국민안전처

< 복구단계 >

○ 정확한 사고조사

- 사고 규모, 종류에 따른 상황조사, 책임소재 분석,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3-3. 등산(숲길)활동 대책

가. 산악사고 현황

1) 사고종별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개인(급·만성)질환	실족추락	암벽등반	일반조난	자살기도	기타
합계	698	81	92	1	137	9	378
'14년	342	39	38	1	81	5	178
'15년	356	42	54	-	56	4	200

2) 시기별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698	53	34	32	57	99	61	43	61	82	87	67	22
'14년	342	30	14	13	28	37	28	21	37	45	42	34	13
'15년	356	23	20	19	29	62	33	22	24	37	45	33	9

나. 원인분석

○ 최근 2년간('14~'15) 산악사고 698건 발생

○ 매년 봄 행락철(5월) 및 가을 단풍시기(9 ~ 10월)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급증(안개, 폭우, 산행요령 미 숙지 등)

다. 목표

○ 숲길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한 서비스 증진으로 만족도 제고

-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 제공
- 산악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안전산행 구현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관리청(시·군)은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숲길의 운영·관리 수행

□ 사업내용

○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등산로) 안전 인프라 구축

- 생활권 주변 등산로 이용객이 집중되어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 이정표 및 안내판, 안전로프 등 안전 · 편의시설 보수 · 확충

○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숲길(등산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숲길 및 숲길 주변의 환경보전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물 설치, 훼손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등산로 정비실적('04 ~ '14년) : 529km, 16,266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대상지 토지사용 승낙절차 이행 및 설계 추진	1 ~ 3월
2/4분기	이용객의 산행 안전 · 편의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가급적 상반기에 정비)	4 ~ 11월
3/4분기		
4/4분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7,193	3,392	2,521	3,600	3,760	3,920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10,822**	**2,022**	**2,120**	**2,120**	**2,280**	**2,280**	지특사업
소규모 등산로정비	**4,371**	**970**	**1.000**	**1,080**	**1,080**	**1,240**	도비사업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2,000**	**400**	**400**	**400**	**400**	**400**	지특사업

2) 교육·훈련, 홍보 등

◇ 지속적인 숲길 실태조사를 통한 DB구축 및 산행교육 강화 등으로 올바른 산행 유도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 숲길의 안전관리 점검과 병행한 실태조사 추진
-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접근방법, 숲길 관리상태 등 조사
- 이정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난청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 조사

* 난청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하여 정보제공(이동통신사 협조)

○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강화
-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숲길체험지도사 효율적 배치·운영 및 전문성 강화
-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홍보 등을 위해 숲길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 숲길체험지도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실시

* 교육기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매년 2 ~ 4월중)

○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숲길이용 문화 정착
-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지역 산악단체 적극 참여 활성화
-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숲길체험지도사 선발 및 위탁교육 실시	1 ~ 3월
2/4분기	숲길 안전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추진 우리 명산 클린경진 대회 활동 실시	4 ~ 12월
3/4분기		
4/4분기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숲길 안전사고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숲길 안전관리대책 수립

○ 숲길관리청(시 · 군)별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 수립 · 시행
- 숲길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주요 숲길 출입구에 산행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현수막 등 설치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번호판 설치 등

2) 현장 중심의 점검강화 및 안전시설물 확충

○ 이정표 및 안내판 등 숲길 안전 · 편의시설 보수 · 확충
-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이용자 정보 제공 및 안전조치 사항 기록 유지
-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안전관리 시설현황 자료에 따라 유지 · 보수
- 위험지역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산행사고 빈발 지역은 사고내용에 대한 안내판 및 간이 구급함 설치

3) 등산객 안전지킴이 활동 전개

○ 119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사고다발 숲길에서 예방활동 실시
-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봄 · 가을철 운영(배치장소 소방관서 선정)
- 사고다발 숲길 구간을 중점 유동순찰 및 산악사고 방지 홍보 등
- 상비의약품 제공, 응급환자 응급처지 및 이송, 희망자 혈압체크, 신체이상 징후자 등산자제 요청 등
- 상비 산악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 · 구급대원과 협조하여 안전 활동 지원 등

나) 대비단계

□ 숲길관리청(시 · 군) 대비조치

○ 산악사고 안전매뉴얼 숙지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현행화
- 이용자가 응급구조 요청이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지속적 홍보
  *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119상황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등 산악구조 요청 신고전화 홍보

○ 숲길체험지도사 선발 및 배치 · 운영
-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활동 계획수립 추진

○ 숲길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조끼, 모자 등 지원, 정기교육, 합동 캠페인 계획 마련

○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서 및 지역 산악단체 등과 협조체계 강화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숲길안전관리 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 강화

○ 위기경보 "경계" 수준 시 비상근무 실시
- 숲길관리청(시 · 군) 및 유관기관 등 발령 전파 및 협조
- 숲길관리청(시 · 군), 유관기관으로부터 피해상황 정보를 수집
-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안전상 숲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숲길 이용 통제

2) 긴급 응급복구를 위해 숲길정비 전문 작업단 운영

○ 숲길관리청별 숲길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작업단 조직 운영
- 산림조합, 산림사업 법인 등과 협약체결 등을 통한 조직 구성
- 전문 작업단을 보유한 법인체와 유지 · 보수 위탁사업 추진

3) 태풍·호우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태풍·호우 재난상황 모니터링

- 기상청의 기상정보(태풍 · 호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 태풍의 강도 · 크기 · 예상진로 및 집중호우 범위 · 예상강우량 등

○ 태풍·호우 재난상황(기상 · 피해상황, 조치사항 등) 보고 및 전파

□ 상황판단회의(필요시)

○ 지역별 태풍 · 호우상황 등에 따른 신속한 대처계획 검토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숲길 피해현황 등 조사 및 복구지원

○ 숲길 피해(사고) 현지조사 및 복구 등 지원대책 마련

○ 숲길 피해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2) 숲길 안전관리 긴급 복구반 편성 · 운영

○ 숲길체험지도사 등으로 구성하여 숲길 피해지 복구

○ 긴급 복구를 위한 복구자재, 장비, 차량 등 확보

□ 복구사업관리

1) 숲길 피해복구 사업지시 및 복구비 지원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모든 피해지는 항구복구 추진

2) 숲길 안전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위원회 구성 · 운영

○ 숲길관련 전문가 등에 의한 현장 기술자문 등 견실복구 지원

3) 숲길 안전관리 대책상황실 설치·운영결과 평가·환류

○ 숲길사고 등 예방 ·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 · 시행

3-4. 다중이용업소 대책

가. 업소현황

(2014.12.31.기준)

구분 / 계	유흥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PC방	게임 제공업	비디오 감상실	골프 연습장	학원	목욕장	신종	기타
6,757	1,200	1,904	357	1,315	477	579	157	13	237	26	95	46	351

* 신종 46 : 전화방 8, 수면방 4, 콜라텍 34
** 기타 351 : 고시원 266, 제과점 14, 산후조리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1, 복합영상물제공업 1 안마시술소 24, 영화상영관 17

나. 피해현황

○ 최근 3년간 화재 발생현황 및 피해현황('13년 ~ '15년)

구분 /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합 계	33	1	1	1	335,483
2015	7	0	0	0	65,232
2014	16	1	1	1	44,117
2013	10	0	0	0	226,134

○ 최근 3년간 업종별 화재발생 현황('13년 ~ '15년)

구분 / 건수	계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고시원	찜질방	고시원	비 고
발생건수	33	8	9	6	6	1	2	1	-

다. 개선방안

1) 집중적인 안전문화 홍보로 자율 안전관리 강화

□ 안전 픽토그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의식 정착

○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 디자인 개발 및 보급

* 그림문자 : 간단히 도식화 된 그림(문자)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비상구



소화기



소화전



피난시설

○ 다중이용업소 안전캠페인 및 위반행위 엄중단속

-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 비상구 등의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 엄중단속

- 시기별·계절별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시

*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등과 연계

○ 간담회, 안전분야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홍보 추진

- 직능단체(협회)를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당부
- 안전시설 등 업소별 안전분야 우수사례 전파(뉴스, 신문기사 병행)
- 주요 화재원인(전기적, 부주의 등) 재발방지 서한문 발송 등 홍보

2)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

□ 소방안전교육의 합리적 운영

○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 보강(신규·수시교육 외 보수교육 신설)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통교재 개발·보급(1월중)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내용 보완·보급

* 시·도 및 소방관서 등 홈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자료 게재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사이버 교육센터 지속운영

○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사전안내(1월중)

* 보수교육: 2년마다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16.1.21.시행)

* 다중이용업주 간담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실시

○ 교육장 관리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콘텐츠 업그레이드*

* 소방관서별 교육장 확보·유지관리 및 표준공통교재에 따른 콘텐츠 보강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자 등록 및 관리

□ 소방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추진

- 교육장, 강사,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실태조사(3월중)

○ 관련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등 협조

- 교육담당자 및 피교육자 의견청취(설문조사) 및 제도개선

3-5. 여름철 물놀이 대책

가. 피해현황

1) 인명피해

(단위 : 명)

구 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충남	38	8	11	7	1	6	2	3
전국	300	68	58	52	25	37	24	36

※ '15년 결과 : 강원(8), 경북(7), 경남(6), 경기·충남(3), 부산·충북·전북·전남(2), 울산(1)

2) 시·군별 현황

연도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38	1	2	11	0	1	2	0	2	7	1	4	0	2	0	5
2015	3								1	1						1
2014	2			1			1									
2013	6			2		1				1						2
2012	1			1												
2011	7								1		1	4		1		
2010	11		2	4			1			4						
2009	8	1		3						1				1		2

나. 원인분석

1) 원인별 : 수영미숙, 음주수영, 물놀이 금지지역, 안전부주의(구명조끼 미착용)

2) 장소별 : 해수욕장(보령·태안·서천) > 하천(금산) > 계곡 순

3) 시간(대)별 : 가장 무더운 12시부터 16시까지

다. 목표

○ 추진 목표 : 5명 이내로 최소화

※ 기본 이념 : 인명피해 ZERO화 추진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통합 지원·조정(Support & Coordination)할 수 있도록 **업무역할 명확화, 공통기능(13개)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전면 정비**

□ **주요내용**

○ 물놀이 안전에 대한 업무역할 명확화로 총괄·조정·협업체계 구축

* '16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국민안전처,'15.12)

- (사회재난과) 물놀이 안전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안전사고 통계 관리

* 내수면(하천·계곡) 지역만 관리하며,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는 관리함

- (해양정책과) 해수욕장·연안지역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등 총괄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시행('15.7)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부서 및 협업체계

- (국민안전처) 내수면(하천·계곡) 안전관리 및 통계총괄-안전점검과
  해수면(해수욕장·연안) 안전관리 및 보고-해상안전과
  * 보고(매일) : 해상안전과→안전점검과

(도) 내수면(하천·계곡) 안전관리 및 통계총괄-사회재난과
  해수면(해수욕장·연안) 안전관리 및 보고-해양정책과
  * 보고(매일) : 해양정책과→사회재난과, 재난상황실

- (시·군) 내수면(하천·계곡) 안전관리 및 통계총괄-안전총괄과
  해수면(해수욕장·연안) 안전관리 및 보고-관광과 등
  * 보고(매일) : 관광과 등→ 안전총괄과, 해양정책과(도)

-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서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물놀이 안전 업무역할 명확화 및 매뉴얼 정비구축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현황 전산관리 - (통합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 대국민 물놀이 정보 제공	1월 3월
2/4분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6월

□ **법령 제·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물놀이 지역지정, 안전관리요원배치, 예산 및 홍보 등

2)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물놀이 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로 인명피해 ZERO화 추진

□ 사업내용

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 사업내용 :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설치, 구명조끼 구입 등

* 사업 대상 : **내수면**지역 5개 시군 28개소(천안2,논산12,금산5,서천1,청양8)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②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안전관리요원 및 민간단체 운영 경비, 안전장비 운영

* 사업 대상 : 해수욕장 4개 시군 35개소(보령2,당진2,서천1,태안30)

· 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③ 연안해역 안전시설 확충사업

- 사업내용 : 위험안내표지판, 경광등전광판 설치 등

* 사업 대상 : 연안 7개 시군 (보령,서산,아산,당진,서천,홍성,태안)

·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1월
2/4분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내수면,해수욕장,연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편성·운영	2~3월 4~5월 6월
3/4분기	물놀이 안전관리 지도점검	7~8월
4/4분기	물놀이 안전관리 이행실태 분석·환류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5,195**	**1,077**	**1,055**	**1,021**	**1,021**	**1,021**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690**	176	154	120	120	120	사회재난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4,250**	850	850	850	850	850	해양정책과
연안해역 안전시설 확충사업	**255**	51	51	51	51	51	해양정책과

3) 재난관리 활동계획

◇ **내수면(하천 · 계곡) 물놀이 단계별 대응 추진**
- 사전대비(4.15~5.31), 안전관리대책(6.1~8.31), 특별대책(7.16~8.15)

1.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사전구축 및 대비 추진(2~6월)

○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사전대비

-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관리등급 부여)

> ※ **해수욕장과 해변(연안)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서 제외**하되, **물놀이 안전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안전사고 통계** 등은 **지속 관리**
> *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

- 본격적인 물놀이 시작 전 위험 요인 제거(평탄작업 등)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노후한 안전시설·장비 교체 및 보강

○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운영

- 상황관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및 지역별 전담관리제 시행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4~5월)

○ 안전시설 설치 지방비 확보 및 집행 계획 마련

- 안전시설(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안전선 등) 정비·확충

※ 분실, 훼손 등을 고려한 안전시설 사용기간 설정 및 소모품 관리 검토

- 안전시설·장비의 확충 및 배치·관리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 추진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 및 운영(5~8월)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5월) ※ 안전관리요원 자체예산 확보

- 유급,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6~8월)

-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에 심폐소생술, 구조요령, 장비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 배치(소방관서 협의)
- 물놀이 취약시간대(18시 이후)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탄력 근무

4. 대국민 홍보 강화(6~8월)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추진

-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통한 집중홍보, 시연회 및 캠페인 추진
- 교육기관을 통한 유지원, 초·중·고등학생 안전사고예방 사전교육
- 심폐소생술 등 현장체험장 운영(소방서 협조)

5. 단체장 관심도 제고(6~8월)

○ 국민안전처장관·차관 등 간부 공무원 현장 지도 실시

- '15년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군 및 관리지역 대상
- 기초자치단체장(부단체장 포함) 취약구역 현장 점검 실시

6.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제정 추진(연중)

○ 지자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7. 지자체 자율적 관리체계 유도(6~12월)

○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 안전하고 경관이 좋아 물놀이하기 좋은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 '14년 : 대천해수욕장, '15년 : 청양 까치네유원지(해수욕장 제외) 선정

○ 물놀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포상

- 지자체 및 민간구조자 등 물놀이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표창 추진

3-6. 내수면 수상레저 대책

가. 시설 현황

○ 수상레저기구

- 8개 시·군 16개 수상레저사업장 211대 등록(동력24, 무동력 187)

나. 개선방안

1)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사고예방 중심 현장위주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및 내수면의 효율적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 조성

○ **대국민 홍보 및 계도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개선**

- **(안전 홍보)** 구명조끼 착용, 원거리 신고, 출항 전 개인 안전점검(연료유, 배터리 점검 등) 확행 등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안내문 배포, 문자메시지 발송, 안전캠페인 등

- **(특별 단속)** 안전 위반행위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문화 조성

  * 중점 단속행위 : 무면허조종, 무등록사업, 음주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 요소 진단 및 주기적 점검**

- **(금지 구역)** 수상레저 활동수요 및 위험성 등 현장조사를 통한 금지구역 지정관리 및 노후·훼손된 공고판 등 정비·점검

- **(안전 점검)** 성수기 도래 전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기구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시행

- **(안전 교육)**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교육 등으로 안전의식 고취

  * 교육내용 :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금지사항, 운항규칙 등

○ **수상레저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

- **(실무 교육)** 수상레저담당자 워크숍 개최로 업무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

  * 수상레저관련 법령, 사업 및 기구등록 등 실무교육('16. 3월 / 11월)

- **(지도 방문)**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개선함으로써 내수면의 수상레저 활동 기반조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수상레저 안전관리 합동 워크숍 참석	'16. 3월
2/4분기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등 정비·점검	'16. 5월
3/4분기	· 시·군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방문	'16. 6월
4/4분기	·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무자 워크숍	'16. 10월

2) 재난관리 활동계획

< 예방단계 >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 정비점검**

- 수상레저 활동수요 및 위험성 등 현장조사를 통한 금지구역 지정 관리 및 노후·훼손된 공고판 등 정비

○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

- 성수기 도래 전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기구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시설물 안전점검 등 조치사항, 금지사항 및 운항규칙 등

< 대비단계 >

○ **성수기(7~8월) 수상레저사업장 상주근무자 배치 현장활동 강화**

- 근무형태를 현장근무 형태로 전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 대응단계 >

○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우선 유선보고 후 사고상황을 정리, NDMS 또는 FAX 보고

※ 현장⇒시·군⇒시·도⇒국민안전처

○ **초동단계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사고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지자체) 주관], 사고 실태 파악, 행정부지사 등 간부 비상소집 및 역할분담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총괄·조정 및 지휘, 통제 등
-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공조체제유지, 긴급구조 활동 현장지휘,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수습 조치 등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구 지원 및 요원 파견요청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등 조치

< 복구단계 >

○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피해 상황조사, 책임소재 분석, 향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 중앙수습지원단 편성·운영,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전 과정을 기록 관리,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홍보・보도대책**

- 긴급구조 활동 상황 보도·안내, 취재 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현장 대변인 지정・운영, 공동 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3-7. 도로교통사고 대책

가. 피해현황

1) 【교통사고 피해비용(2013년 기준)】

(단위 : 억원)

총계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소계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7,204	3,247	1,549	1,612	85	1	3,957

※ 자료 : '13.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 도로교통공단, 2014.

2) 인명피해

(단위 : 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교통사고 사망자 수	583	523	486	481	457	445	396	390	395	385

※교통사고 10년(05~14)평균 사망자 수 454명

나. 원인분석

1) 최근 10년간('05~'14)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4,541명(사망자 수), '13년 한해 재산피해 7,204억원 발생

2) 교통사고 피해는 도로 및 차량증가로 사고발생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

다. 목표

구 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385	341	11.4%

※ 교통사고 10년(05~14)평균 사망자 수 454명 × 감축목표율 25% = 113명(감축목표 사망자 수)
10년 평균 사망자수 454 - 감축목표 사망자수 113 = 2016년 사망자 감소목표 341명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가) 교통안전대책 추진

◇ 제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 제시로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

□ **주요내용**

○ 시·군의 교통안전 주요지표 제시와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로 도와 시·군간 교통안전대책의 통일성 유지

○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성과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 계획

※ 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제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	2월
2/4분기	제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	6월
3/4분기	제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	9월

2) 재정사업

가) 재정취약지역 교통안전대책 추진

◇ 2008년부터 교통안전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이 열악한 도내 전 시·군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재정 취약지역 교통안전대책 추진

- 사업목적 : 우리 도 전 시·군은 교통사고 발생율과 사망률이 높으나 재정 여건상 교통안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지원으로 사업 유도
- 사업대상 : 15개 전 시·군
- 사업내용 : 노인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도로표지판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정비
- 사 업 비 : 20,885백만원 (국비 3,900, 도비 12,885, 시·군비 4,100)

* 분담비율 : 국비 18.6%, 도비 61.7%, 시·군비 19.7%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정	1월
2/4분기	사업비 내시 조정, 집행 현황 점검	수시
3/4분기	집행 현황 점검	수시
4/4분기	예산 결산 및 편성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60,020	28,520	32,875	32,875	32,875	32,875	
교통안전대책 추진	160,020	28,520	32,875	32,875	32,875	32,875	

나) 위험도로 개선 사업 추진

◇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고, 도로구조 불량구간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내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246개소

○ 사업내용 :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 폭 화장, 4차로 중앙분리대 및 안전시설 확충 등

○ 사 업 비 : 273,600백만원 (국비 136,800, 지방비 136,800)

* 분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도비, 시·군비) 50%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정	1월
2/4분기	집행 현황 점검	수시
3/4분기	집행 현황 점검	수시
4/4분기	예산 결산 및 편성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4까지	'15	'16	'17이후	비 고*
계	273,600	153,200	6,238	6,236	107,92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73,600	153,200	6,238	6,236	107,926	

3) 교육, 점검, 홍보 등

◇ 사망 사고 유발 대형운수업체 안전점검 강화, 교통안전 교육기회 확대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 **주요내용**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진단(도로교통과,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20대 이상 보유사업자로 연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업체
- 교통안전 위험요인, 법령 위반·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연1회)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도로교통과,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분기별 사망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
- 점검대상별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후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 운수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사업용자동차 신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년1회 보수교육실시
- 미 이수자 현황파악 및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 **교통사고 발생은 사전 징후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예방에 주력토록 함**

○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 홍보 강화
- 전좌석 안전띠 착용 관련 캠페인, 교통안전 관련 기획보도 연중 실시
- 교통안전홍보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점검회의
- 행락철, 동절기 대비 교통안전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통안전정책 토론회 실시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교통관계자 및 유관기관 교통안전 합동 워크숍 실시
- 농촌지역 고령자 교통안전 마을방송 및 교통안전 캠페인 집중 실시
- 도민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 및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교육·훈련, 점검·홍보계획 수립	1월
2/4분기	교육·훈련 , 점검·홍보	수시
3/4분기	교육·훈련, 점검·홍보	수시
4/4분기	교육·훈련, 점검·홍보	수시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도로관리청)

○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시·군, 건설과)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개선사업(시·군, 건설과)

○ 음주, 과속, 신호위반 사고요인행위 단속(충남지방경찰청)

○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실시(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유관기관 등)

○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관리(도로교통과, 교통안전공단,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등

나) 대비단계

○ 교통안전 사업 지속 추진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진단(도로교통과,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20대 이상 보유사업자로 연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업체
- 교통안전 위험요인, 법령 위반·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연1회)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도로교통과,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분기별 사망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
- 점검대상별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후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보수교육(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년1회 보수교육실시
- 미 이수자 현황파악 및 미 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 교통사고 발생은 사전 징후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예방에 주력토록 함

다) 대응단계

○ 도로교통사고 피해규모별 사고 등급

구 분	피해 규모별
1급 교통사고	사망 15명 이상
2급 교통사고	**사망 10명 ~ 사망 14명**
3급 교통사고	사망 5명 ~ 사망 9명

※ 국토교통부「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 적용(중상 3명당 사망 1명으로 계산)

○ 사고대책본부 구성

구분	사고지원·대책본부 구성			본부장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시·군	
1급 교통사고	○	○	○	·국토교통부 - 교통물류실장 ·道 - 행정부지사 ·시·군 - 부시장·부군수
2급 교통사고	×	○	○	
3급 교통사고	×	×	○	

※ 주1. 국토교통부「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 적용
2. 2급 교통사고 이상 발생시 道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우선적으로 재난상황 인지가 가능한 道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대책본부 구성여부 판단

○ 단계 대응대책

1	사고접수 및 보고단계	➡	사고접수, 사고보고, 사고대책본부 설치 판단, 교통사고 상황평가 및 우선조치
⇩			
2	사고 초동조치 단계	➡	비상소집 및 현지출동, 사고대책본부 설치, 언론브리핑
⇩			
3	사고대응 단계	➡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고수습처리, 중간상황 보고, 장기대책준비
⇩			
4	사후처리 단계	➡	상황종료 회의, 최종상황 보고, 대응조직 해체, 사고개선대책 마련

○ 사고접수 및 보고 단계



- 사고 접수
  - 현장(시민·경찰관서·소방관서)에서 해당 부서(도로교통과) 또는 시군에 접수(시군은 접수 즉시 道에 보고)
  - 운송사업자 사고보고 접수(운전자 및 자동차 상황)
- 사고 상황 확인
  - 경찰관서, 소방관서, 보건소, 관할 병원 등
  - 상황관리 임시책임자(사무관) 지정(해당부서 장) 및 현장 출동
- 사고 상황 보고 및 전파
  - 국토교통부, 道, 국토관리청, 여객운수단체 등 유관기관
- 사고대책본부 설치(사고등급) 여부 판단
  - 사고처리 상황 판단회의 실시(사고대책본부 운영 여부 결정)
- 교통사고 상황평가 및 우선조치
  - 사고 상황 등을 검토하여 각급대책본부별 대응전략 수립
  - 사고 현황,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등 언론 보도문 작성

○ 사고 초동조치 단계

- 필수요원 비상소집
- 지역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경찰관서·소방관서·의료기관, 사업자 단체 등 유관 기관 협조
  - 각 지원관서별 역할분담 대응처리

○ 사고 대응 단계

- 유관기관 지원요청
  - 중앙지원본부에 대책본부 설치(1급 교통사고의 경우)
  - 중앙긴급구조 지원요청
  - 경찰관서, 소방관서, 의료기관 등 지원요청
  - 사고차량 관할관청 등 직원 파견
- 사고 수습처리
  - 사고 현장 정리(해당 시군 협조)
  - 피해자 피해상황 구체적 파악 및 피해자 가족 연락
  - 유가족 협상계획 및 보험내용, 방법과 규모 확인(사업자 및 보험회사 등)
  - 필요시 합동장례식 준비 및 지원 인력 배치(자치행정과)
- 중간 상황 보고
  - 현장 조치상황 경과보고(상위 단계 사고대책본부)
  - 사고현황 언론 브리핑(각급 대책본부장)
- 장기대책 준비
  - 장기 사고수습대책 수립
  - 유가족 협상진행 및 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상황 파악
  - 유가족 협상결과 및 보험내용, 보상방법·규모 등 언론브리핑

○ 사후처리단계

- 상황종료 검토회의
  - 지역사고대책본부장 주관 최종합동회의
  - 사고처리 상황종료 건의(상위 단계 대책본부)
- 최종상황 보고 및 전파
  - 사고수습 일지 정리 및 상황정리
  - 사고개요, 수습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전파
- 대응조직 해체·인계
  - 중앙사고지원본부 또는 지역사고대책본부 해체
  - 사고대책본부 운영상 미비점·개선점 분석
- 사고 개선대책 마련
  -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 개선대책 마련
  - 사고이력카드 작성
  - 운송사업체 및 운전자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

라) 복구단계

○ 도로 파손시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복구토록 하고 추후 필요시 구상권 등 청구

○ 사고 차량의 조속한 처리

3-8. 산업단지 대책

가. 산업단지 현황

('16. 1. 현재)

구 분		개 소	면 적(천㎡)	사업비(억원)
합계	계	144(3)	105,670	172,651
	완 료	111	52,764	54,566
	개발중	33(3)	52,906	118,085
국가 산단	소 계	5(1)	28,072	30,533
	완 료	3	12,589	8,408
	개발중	2(1)	15,483	22,125
일반 산단	소 계	47(2)	63,268	133,384
	완 료	23	26,751	38,771
	개발중	24(2)	36,517	94,613
도시 첨단	소 계	1	39	41
	완 료	1	39	41
농공 단지	소 계	91	14,291	8,693
	완 료	84	13,385	7,346
	개발중	7	906	1,347

나. 원인분석

1)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한 2014년 인적·물적피해 없었음
2) 재정이 취약한 노후농공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효과
3) 20년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다. 목표

구 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	-
재산피해(억원)	-	-	-

* 풍수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 등을 목표로 설정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가) 안전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보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평소 재난관리 훈련시 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 발생시에도 행동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

*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을 통해 실행력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업단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초자료 조사	
2/4분기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필요사항 검토	
3/4분기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필요사항 검토	
4/4분기	개인별 임무카드 및 시간대별 초동조치 매뉴얼 개정·보완 실시	

2) 재정사업

가)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지원

◇ 도내 농공단지가 92개소로 전국 최다 지정되었고, 20년 이상된 노후단지가 42개소(58%)로 기반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상수도관 교체, 배수로 정비 등

※ 농식품부 2011년부터 국비(지특)지원 : 국비 50%, 시군비 50%

○ 국비(지특)지원 사업 : 15개 단지 19개사업 5,150백만원

○ 도비지원 사업 : 29개 단지 47개 사업, 2,661백만원

- 오폐수처리시설 등 노후기반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2/4분기	사업추진	
3/4분기	사업추진	
4/4분기	사업준공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28,647	5,836	7,811	7,500	7,50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도비)	10,063	2,402	2,661	2,500	2,50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국비)	18,584	3,434	5,150	5,000	5,000		

3) 산업단지 관리점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및 관리상태의 점검을 통해 산업단지의 품질행상 및 애로사항 해소 등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산업단지 관련법 준수 및 승인조건 이행 등 추진현황 점검

- 산업단지 승인시 협의부서 및 사업시행자 조치계획 이행여부

○ 산업단지 개발관련 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이행여부

○ 환경·교통 등 사업승인 시 협의내용 이행실태 현지 확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 및 감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에 의한 교통영향분서 개선대책 이행여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산업단지 점검	
2/4분기	상반기 산업단지 관리점검	
3/4분기	장마철 산업단지 점검	
4/4분기	하반기 산업단지 관리점검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재난사고 예방제도 운영

1) 재난사고 종합계획 수립

○ 산업단지별 재난안전계획 수립

- 위기발생시 산업단지 실정에 맞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수립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체는 사업체별 안전관리계획수립

○ 재난사고시 개인별 역할 및 대피요령 숙지

2) 재난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 운영

○ 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 협의회 미구성 산업단지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 소규모 농공단지는 단지별 기업체 종사자와 연계한 연락체계 구축

3) 안전 취약 중점관리업체 지정 관리

○ 재난 안전 위험시설 조사·지정

○ 중점관리대상 업체 선정 관리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1)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산업단지별 또는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 산업단지 실정에 맞는 방재장비 확보
- 산업단지 실정에 맞는 방재 교육 등을 통한 방재인력 확보·구성

○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체는 사업체별 방재단 운영

2)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방재시스템 협조

○ 산업단지내 화학·고압가스·화재·산업재해를 전담하고 있는 서산방재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구축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1) 재난상황관리

○ 부서 : 안전총괄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감사관, 중앙) 국민안전처

○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 조정

- 재난상황 파악 · 전파 및 보고(도지사, 부지사, 재난담당부서, 중앙)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처계획 수립보고
-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 시 · 군지대본 대응태세 점검
- 지대본 가동시 업무 총괄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 재난대책본부장 특별지시 처리
- 재난사태 선포(필요시)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피해상황파악
- 상시모니터링, 각종 여론정보수집, 상황근무자관리

2) 긴급통신지원

○ 부서 : 정보화지원과, 중앙) 미래부, 경찰청 등

○ 재난현장 구조 · 수습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 시 통신두절
- 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 민간기업(KT 등) 협조요청

3) 시설 응급복구

○ 부서 : 응급복구 담당부서(치수, 도로, 건축, 산림, 환경, 농업, 문화재), 중앙) 국토부, 농식품부 등

○ 피해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4) 에너지기능복구

○ 부서 : 에너지산업과, 중앙) 산자부, 한전 등

○ 가스·전기·유류 등 에너지 공급시설 기능회복 지원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피해 발생지역 광역 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에너지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5) 교통대책

○ 부서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중앙) 국토부, 경찰청 등

○ 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

-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상황 파악 관리
-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두절 지역 출입통제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대체교통수단 투입
- 교통수단 증편, 연장 운영

6) 의료 및 방역 서비스

○ 부서 : 보건정책과, 저출산고령과, 중앙) 복지부, 농림부 등

○ 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 등
-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응급환자 수송헬기 지원,
- 군의관 응급환자 치료지원
- 침수지역 방역반 가동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7) 재난현장 환경정비

○ 부서 : 환경관리과, 해양정책과, 중앙) 환경부, 해수부 등
○ 재난현장 쓰레기 ·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현황 파악 관리
- 육상, 해상 쓰레기 처리
- 생활쓰레기 처리
- 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처리현황 관리
- 재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지도 확인

8) 자원봉사관리

○ 부서 : 도민협력새마을과, 중앙) 행자부 등
○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9) 사회질서유지

○ 부서 : 충남지방경찰청, 중앙) 경찰청 등
○ 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10) 수색,구조.구급

○ 부서 : 119광역기동단, 중앙) 국방부, 경찰청 등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등

-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긴급구조현장지휘소 설치)
-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치료 및 치료 전문병원 긴급후송
- 필요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등)

11) 재난수습홍보

○ 부서 : 홍보협력관, 중앙) 문체부, 방통위 등

○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해당부처와 공동대응)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1) 긴급 생활안정 지원

○ 부서 : 사회복지과, 세정과, 중앙) 복지부, 행자부 등

○ 재난발생지역 이재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 재해구호기금 활용, 이재민 구호 실시

- 임시주거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이재민 학교시설 이용시 장기수용
- 기부금품 모집승인 및 관리
- 의연금품 모집 허가
- 복지대상자여부 파악, 통보

2) 재난자원 지원

○ 안전총괄과 국방부, 조달청 등

○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 부족지역 파악·지원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
-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상황접수 및 전파

○ 초기상황 파악(원인, 피해내용, 현장조치사항 등)

○ 초기상황 판단(피해확대 가능성 파악)

○ 경제산업실장, 과장 유선보고 후 (부)지사 보고

○ 소관부서(과장, 팀장, 담당자) 문자 전송

- 사고유형별 재난시* 재난대응 소관부서로 연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 사고유형별 재난

○ 시군, 유관기관, 재난상황 전파(fax, NDMS 등)

※ 지사보고 : 초기 피해상황 보고는 소방본부 담당

2) 초기상황 확인(보고:투자입지과장)

○ 산업단지 주요시설 피해현황 및 현장 대처상황 파악

○ 시장·군수, 입주기업체협의회 유선통화, 추가상황파악

- (필요시)관계 시군 및 유관기관과 유선통화→추가상황 파악

○ 산업단지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에 긴급조치 및 대응지시
○ 상황전파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

□ 상황판단회의

1) 상황판단회의 주재

○ 현재까지 상황 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 현장상황지원관 파견 검토(필요시)
○ 산업단지 내 취약시설 · 지역 사전점검 지시
○ 긴급구조기관 대응상황 확인
○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판단

2)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필요시)

○ 유관기관 및 시·군·구 대처상황 점검
○ 현장대응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확인
○ 재난자원(인력 · 장비) 및 행 · 재정적 지원

□ 긴급구조 및 상황 공동관리체 운영

○ 추가 피해상황 파악
○ 현장 대처상황 및 주관기관 대응태세 파악
○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보고
- 피해 및 대응활동 등 파악(긴급구조)
-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 유관기관, 시군 대응상황 확인, 핫라인유지
○ 긴급구조기관 비상근무, 대응상황 확인, 협조 유지
○ 응급구호 및 이재민수용 준비 지시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장비 지원 요청
○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피해조사

○ 「재난합동조사반」 구성 운영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계속)
○ 단계별 유관기관 상황전파
○ 재난대처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2) 복구계획의 수립

○ (필요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응급복구 및 2차 피해우려지역 긴급조치
○ 복구현장 부족자원 파악 및 지원 요청
○ 응급복구 현황 및 최종 피해현황 파악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 대책 수립

□ 복구사업관리

1) 피해수습 지원

○ 특교세 지원 건의 검토
○ 피해 응급복구 추진 지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정조치 지시
○ 재난 피해 보상 대책 수립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방문 수행

3) 부족자원 지원 등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수시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조치
○ 중소기업지원자금 검토 및 지원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조치
○ 행정지원(안전자치행정국)
○ 재난복구 사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3-9. 농작업 사고대책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공동화에 따른 농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 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영농기계, 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농작업 중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농업분야 재해율(2013년) : 1.30% → 산업전체 재해율 0.59% 대비 2배 이상

가. 피해현황

1) 농업인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구 분	보험가입건수(A)	사 고 건 수			보험지급건수 (B)	사고율 (B/A)	비 고
		계	사 망	부 상			
2012	746,690 (140,718)	22,159 (2,901)	997 (...)	21,162 (...)	26,439 (3,420)	3.5 (2.5)	
2013	744,933 (140,496)	27,641 (3,290)	1,040 (137)	26,601 (3,153)	33,196 (4,024)	4.5 (2.9)	
2014	719,657 (136,541)	28,771 (3,465)	1,396 (232)	27,375 (3,233)	36,008 (4,404)	5.0 (3.2)	

※ ( ) : 충남, 자료 : 2015 농업재해보험연감 450쪽, 474쪽

2) 농기계 사고현황

구 분	보험가입건수 (A)	사 고 건 수	보험지급건수 (B)	사고율 (B/A)	비 고
2012	32,877 (5,391)	2,581 (497)	2,581 (497)	7.9 (9.2)	
2013	40,158 (6,531)	3,952 (711)	3,952 (711)	9.8 (10.9)	
2014	43,242 (6,810)	5,103 (911)	5,103 (911)	11.8 (13.4)	

※ ( ) : 충남, 자료 : 2015 농업재해보험연감 546쪽, 559쪽

나. 원인분석

1) 최근 3년간('12~'14) 농작업중 안전사고으로 인한 농업인 인명피해는 78,571명(충남 9,656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 2014년의 경우 안전사고 피해 28,771명중(충남 3,465명) 사망 1,396명(충남 232명), 부상 27,375명(충남 3,233)으로 사망사고율이 4.85%로 나타남

2) 또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2014년의 경우 전국 5,103건 중 충남은 17.8%인 9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13년 대비 증가율 28.1%)

3) 농기계의 경우 사고원인은 추락·전복, 접촉·충돌, 작업부주의 등 원인이 있으나 접촉과 충돌 사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농기계 사고 빈도는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순으로 나타남

< 농기계별·사고원인별 현황(2014년) >

구 분	계	추락·전복	접촉·충돌	작업부주의	기타
계	5,103 (911)	620 (121)	934 (167)	654 (119)	2,895 (504)
경 운 기	30	3	9	3	15
광역방제기	80	11	16	14	39
농업용동력운반차	24	6	9	2	7
농업용로더	6	-	1	1	4
베 일 러	34	2	1	5	26
승용관리기	4	-	1	-	3
승용이앙기	167	21	20	25	101
콤 바 인	791	85	125	100	481
트 랙 터	3,615	389	708	450	2,068
항공방제기	137	67	20	23	27
S S 분 무 기	146	20	18	25	83
기 타	69	16	6	6	41

※ ( ) : 충남, 자료 : 2015 농업재해보험연감 584쪽

다. 목 표

구 분	'14년	'15년	'16년 목표	비 고
농업인 안전사고(명)	4,376	3,108	피해 최소화	농기계사고 포함
농기계 안전관리교육	-	14,715명	15,200명	485명↑
농업인 교통안전교육	24,426	23,286명	25,000명	1,714명↑
농기계 안전장치 설치	1,200	1,200개	3,000개	1,800개↑
농기계 안전표지판 설치	2,361	3,442개	4,500개	1,058개↑
농업인안전공제보험가입율(%)	41.3	40.0	42.0	'16년 138,200명 가입목표

라. 개선방안

◇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작업 기계 안전관리교육 강화, 농작업 기계 등화장치 설치 등 사고예방 강화, 사후적 보장수단으로써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1) 농기계 안전관리교육 강화

◇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경각심 고취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방향**

○ 농기계 정비 점검, 활용 등 자가 수리 능력 향상

○ 마을단위 기계화 영농사 양성

○ 농기계 안전운전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로 농기계사고 사전예방

□ **추진목표**

○ 농업인 안전사고 인원 최소화

- '14) 4,376명 ⇒ '15) 3,108명 ⇒ '16) 피해 최소화

○ 농기계 안전관리 교육 확대

- '15) 14,715명 ⇒ '16) 15,200명(485명↑)

○ 농업인 교통안전교육 확대

- '14) 24,426명 ⇒ '15) 23,286명 ⇒ '16) 25,000명(1,714명↑)

□ **교육개요**

○ 과정/인원 : 22개 과정/ 540명

○ 교육 기간 : '16. 2~12월

○ 교육 방법 : 이론, 실습, 사례 중심 교육

○ 사 업 비 : 61백만원

○ 교육 내용 : 농기계 전문기술 및 안전운전 관리 등

□ 개선계획

○ 농업기술원 농산업 기계교육(22개 과정, 540명)과 연계하여 매 과정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농기계 안전운전, 농기계 교통안전 등 안전관리교육 확대 실시

○ 주요과정 : 농기계기술인력양성반(3과정, 100명), 농산업기계반(4과정, 80명), 농기계자가정비반(1과정, 20명), 도서현장교육반(3과정, 80명), 트랙터반(1과정, 25명), 귀농인농기계반(1과정, 25명), 소형농기계반(1과정, 25명), 여성농기계반(1과정, 30명), 농산업기계전문반(1과정, 25명) 등 확대 운영

○ 시·군 단위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 15개 시군별 농기계 현장애로해결 기술교육, 농기계순회교육 등과 병행하여 농기계안전교육 실시 ⇒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농기계 안전관리 교육 계획 및 실적>

구 분 (시군)	2016년 교육 계획	2015년 교육 실적			비 고
		계	남	여	
계	15,200	14,715	12,794	1,921	
천안	150	126	106	20	
공주	3,700	3,656	3,652	4	
보령	150	127	106	21	
아산	500	240	197	43	
서산	400	325	215	110	
논산	200	161	152	9	
계룡	900	809	762	47	
당진	200	164	156	8	
금산	300	241	201	40	
부여	100	113	50	63	
서천	200	195	169	26	
청양	200	169	135	34	
홍성	200	169	131	38	
예산	1,500	1,512	1,456	56	
태안	6,500	6,708	5,306	1,402	

○ 시·군 단위 교통안전교육 강화

- 15개 시군별 농기계 현장애로해결 기술교육, 농기계순회교육 등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 강화로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농업인 교통안전 교육 계획 및 실적>

구 분 (시군)	안전사고 예방교육			
	2016년 계획(명)	2015년 실적(명)		
		계	남	여
계	**25,000**	**23,286**	**18,901**	**4,385**
천안	500	493	411	82
공주	200	95	91	4
보령	300	212	179	33
아산	300	240	197	43
서산	1,500	1,363	923	440
논산	3,500	3,191	2,810	381
계룡	400	317	272	45
당진	5,000	5,710	4,230	1,480
금산	500	290	247	43
부여	800	760	685	75
서천	300	100	87	13
청양	1,900	1,756	1,418	338
홍성	1,200	1,039	911	128
예산	1,600	1,512	1,456	56
태안	7,000	6,208	4,984	1,224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교육계획 수립, 농기계기술인력양성반 등 4개 과정 운영	
2/4분기	트랙터반, 귀농인 농기계반 등 9개 과정 운영	
3/4분기	농산업기계반, 소형농기계반, 여성농기계반 등 3개 과정 운영	
4/4분기	콤바인반, 농산업기계반 등 6개 과정 운영 및 교육결과 분석	

2) 농기계 안전보호 장치(경광등) 설치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기계에 경광등, 안전표지판 등 안전 보호 장치를 설치(부착),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방향

○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번한 동력경운기, 트랙터 등에 등화장치, 안전표지판 등 부착

○ 안전장치 미 부착 대수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 공급 추진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농기 이전 공급·부착 완료

□ 추진목표

○ 농기계 안전장치(경광등) 설치 확대

- '14) 1,200개 ⇒ '15) 1,200개 ⇒ '16) 3,000개(1,800개↑)

○ 농기계 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 '14) 2,361개 ⇒ '15) 3,442개 ⇒ '16) 4,500개(1,058개↑)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경운기, 트랙터 등 주행농기계에 등화장치(경광등), 안전표지판 부착

○ 사업기간 : '16. 1~12월

○ 사업대상 : 등화장치 없거나 훼손된 경운기, 트랙터 보유 농가

○ 사 업 량 : 등화장치 3,000개, 안전표지판 3,500개 부착

↳ '15년) 등화장치 1,200개(85,200천원), 안전표지판 3,442개 부착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120, 도비 54, 시·군비 126)

※개당 1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국비40%, 도비 18%, 시·군비 42%

□ 시·군별 계획

<등화장치(경광등) 부착계획>

구 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 · 군비
계	**3,000**	**300,000**	**120,000**	**54,000**	**126,000**
천안	0	0	0	0	0
공주	40	4,000	1,600	720	1,680
보령	270	27,000	10,800	4,860	11,340
아산	100	10,000	4,000	1,800	4,200
서산	70	7,000	2,800	1,260	2,940
논산	60	6,000	2,400	1,080	2,520
계룡	0	0	0	0	0
당진	80	8,000	3,200	1,440	3,360
금산	50	5,000	2,000	900	2,100
부여	50	5,000	2,000	900	2,100
서천	60	6,000	2,400	1,080	2,520
청양	500	50,000	20,000	9,000	21,000
홍성	1270	127,000	50,800	22,860	53,340
예산	150	15,000	6,000	2,700	6,300
태안	300	30,000	12,000	5,400	12,600

<안전표지판 부착 계획 및 실적>

구 분	2016년 계획	2015년 실적	비 고
계	4,500	3,442	
천 안	200	-	
공 주	200	67	
보 령	1,100	1,000	
아 산	400	240	
서 산	700	758	
논 산	100	10	
계 룡	100	60	
당 진	150	81	
금 산	200	210	
부 여	100	-	
서 천	100	100	
청 양	300	230	
홍 성	300	200	
예 산	50	-	
태 안	500	486	

□ **사용지도**

○ 부착은 공급업체나 농기계서비스센터 등에서 견고하게 부착
○ 장치 부착 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안전장치의 조작방법이나 활용방법 사전 지도 철저
○ 야간 운행시 반드시 안전운행 장치 사용토록 사전 교육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 통보, 보조금 교부, 등화장치 부착	
2/4분기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3/4분기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4/4분기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실태 분석	

3)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활동 및 농기계 등 농작업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에 산재보험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농작업 사고로 인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농작업중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 **추진목표**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률 제고
- '14) 41.3% ⇒ '15) 40.0% ⇒ '16) 42.0%
※ 도 농업인 323,993명('14. 12. 31.) 기준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인원 확대
- '14) 135,917명 ⇒ '15) 131,800명 ⇒ '16) 138,200명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험기간 → 1년 / 납입주기 → 일시납 / 가입자격 → 농업인

○ 사 업 량 : 140천명('15년도 가입목표)

○ 사 업 비 : 16,800백만원(국비 8,400 도비 1,260, 시·군비 2,940, 기타 4,200)

↳ '15년) 11,000백만원(국비 5,500 도비 825, 시·군비 1,925, 기타 2,750)

○ 지원조건 : **보조 75% + 자부담 25%**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 국비(50%)는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 지원(75%)

○ 추진근거 :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추진현황>

연 도	사 업 계 획	가입인원(명)	수혜 현황	
			건 수	금액(백만원)
2011	156천명 / 12,085백만원	148,000	1,415	2,147
2012	150 / 11,246	146,570	3,468	5,884
2013	150 / 12,000	139,777	10,667	6,824
2014	150 / 12,000	135,917	3,682	5,858
2015	**150 / 11,000**	**131,800**	**3,108**	**4,673**

■ '15년 가입인원 131,800명 → 총보험료 10,189,894,450원

↳ **1인당 보험료 : 77,300원 → 농가 부담액(25%) : 19,300원**

■ 도 농업인 328,993명(전국 2,751,792명) * '14. 12. 31.기준

↳ **道 안전공제보험 가입률 : 40.06%** (조합원 거의 모두 가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가입안내 영상회의, 보조금 교부 등	
2/4분기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 독려 현지 확인	
3/4분기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 독려 현지 확인	
4/4분기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참고자료 >

2016년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보험료)				
		계	국 비 (50%)	도 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합 계	140,000	16,800,000	8,400,000	1,260,000	2,940,000	4,200,000
천안시	6,520	782,400	391,200	58,680	136,920	195,600
공주시	20,810	2,497,200	1,248,600	187,290	437,010	624,300
보령시	11,780	1,413,600	706,800	106,020	247,380	353,400
아산시	12,770	1,532,400	766,200	114,930	268,170	383,100
서산시	8,970	1,076,400	538,200	80,730	188,370	269,100
논산시	10,200	1,224,000	612,000	91,800	214,200	306,000
계룡시	410	49,200	24,600	3,690	8,610	12,300
당진시	11,440	1,372,800	686,400	102,960	240,240	343,200
금산군	9,730	1,167,600	583,800	87,570	204,330	291,900
부여군	7,960	955,200	477,600	71,640	167,160	238,800
서천군	6,030	723,600	361,800	54,270	126,630	180,900
청양군	4,400	528,000	264,000	39,600	92,400	132,000
홍성군	11,530	1,383,600	691,800	103,770	242,130	345,900
예산군	12,220	1,466,400	733,200	109,980	256,620	366,600
태안군	5,230	627,600	313,800	47,070	109,830	156,900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 및 대비 단계

□ 농기계 안전관리

○ 농기계 및 중장비 안전수칙 사전 숙지

- 사용전 농기계 사용법과 취급법 숙지
- 상해 방지용 모자와 작업에 맞는 옷 착용
- 엔진 뜨거운 상태 또는 운전중 급유 금지
- 농기계에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엔진 정지
- 운행 작업중 기계에 뛰어 오르거나 내리지 않음
- 음주후 또는 피로 누적시 농기계 운전 금지
- 작업전 해당 작업의 위험성 예측 및 대응
- 부득이 도로 주행시 도로교통법 준수
- 자격증 필요 기계(중장비)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

○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 예방

- 안전한 방법으로 논·밭 출입
- 농기계에 동승자 태우기 말기
- 안전장치는 반드시 제 위치에 부착
- 연료 급유시 화재에 주의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농작업 정보 제공
  -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 작동상태 수시 점검
- 농기계보관창고는 항상 밝고 청결하게 유지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 착용
- 농작업 전후 반드시 농기계 점검정비

○ 주요 농기계별 안전수칙 준수

■ **(경운기 · 관리기)** 이동시 작업기 동력 끊기, 회전부에 신체 접촉하지 않기, 내리막에 조향클러치는 반대로 주의하기

■ **(트랙터)** 승하차시 계단과 손잡이 이용, 안전 캡 또는 프레임 장착, 도로이동시 교통사고 주의, 안전속도 준수하기

■ **(콤바인)** 차량에 적재시 안전한 경사 확보, 막힘 현상 시 엔진 정지, 체인 · 양공기 등 검불은 수시 제거(화재 방지)

■ **(예초기)** 작업전 병 · 돌 제거, 보호장구 착용, 작업 주변 타인 접근 금지 등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 · 군 영상회의 개최, 현지 출장 농업인 가입 독려,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사항 설명 등 적극 추진

- 연초 가입 확대를 위해 새해영농교육 등 활용 적극 홍보
- 시 · 군에서는 사업시행기관(농협생명)과 긴밀히 협조, 보험 가입 안내

나) 대응 및 복구단계

□ **농기계 안전관리**

○ 사고 발생시 작업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및 후속 조치

■ 경미한 사고는 현장조치 및 응급치료

■ 중대형 사고 발생시 즉시 응급처지 우선 실시 후 119 연락 병원 후송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농작업 재해발생시 피해농업인이 신속하게 보험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적기 현장조사 추진 등 보험사(농협생명) 협력 요구

3-10. 어업작업 사고 대책

가. 피해현황

○ 최근 5년간('11~'15) 충남 해역 어선어업작업 중 사고건수는 451건으로 연간 평균 90.2건 발생

○ 또한 인명피해는 총 103명으로 사망25명, 실종3명, 부상75명이 발생

1) 어선조업사고 건수 및 척수, 인명피해

(단위 : 건, 척, 명)

구 분	어선 어업작업 사고건수, 사고척수, 인명피해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연평균)
사고건수	451	96	92	67	69	127	90.2건
사고척수	502	116	105	77	76	128	100.4척
인명피해	103	18	10	17	41	17	20.6명

*'15년 사고건수 증가원인 : 해양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경미한 사고도 적극 신고하여 건수가 증가한 측면 존재

나. 원인분석

○ 사고의 원인의 기관고장, 화재 등 어선불량이 약 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운항과실로 인한 충돌, 좌초 등이 약 30%를 차지

다. 목표

구분	'15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어선조업 중 사고(건)	127	114	△27건(10% 감소)
인명피해(명)	17	15	△2명(12% 감소)

※ 기관 및 무선설비 등 어선장비에 대한 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어업인 안전의식개선 교육을 통한 조업중 사고 감소를 목표로 설정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노후어선 감척 사업

①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어업 쇠퇴에 따른 선령(船齡)이 노후된 어선 증가로 인한 기관·장비 등도 함께 노후화

○ 노후 된 어선의 조업 중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상존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위협

②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선령이 오래된 어선 등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안전관리 추진

○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안전 조업 등 경쟁력 강화

□ 세부추진계획

○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어선 감척 등 추진

○ 저효율 기관, 장비, 설비 등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비 내시	
2/4분기	사업 대상어선 감정평가	
3/4분기	보상어선 해체처리 및 장비 매각	
4/4분기	어선 등록 말소 및 어업 허가 폐지, 폐업지원 보상금 지급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7,125	3,512	3,613	3,613	3,613	3,613	
연안어선감척사업	**7,125**	**3,512**	**3,613**	**3,613**	**3,613**	**3,613**	

2)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교육·훈련·점검으로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 주요내용

○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추진으로 어선원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해양안전사고 감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한기 어업인과의 순회대화 실시
- 구명조끼(1,153개) 및 방수복(780벌) 등 보급 추진

○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절기·동절기 어선안전점검 실시

- 연안 6개 시·군 주요 항·포구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 (해양수산부+도+시·군+수협+선박안전기술공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어선사고 관련 교육·훈련 및 점검 계획 수립	
2/4분기	어업인 후계자 교육 등 대 어업인 교육시 합동으로 안전교육 실시	
3/4분기	하절기 유관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4/4분기	동절기 유관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어선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충남 해사안전시행계획 및 해양사고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수립

○ 어선조업사고 예방의 경우, 어선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

□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단속 강화

○ 어선 안전관리 강화

- 해상 기상예보방송 정례화 및 기상악화 시 안전대피 지도
- 항해장비 및 기관설비 안전 점검 실시
- 입·출항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안전조치 이행실태 확인

□ 어선사고 교육·훈련 및 홍보

1) 유관기관(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합동, 찾아가는 현장 교육실시

○ 이론중심 교육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항포구의 조업현장 방문 교육 실시

2) 어선사고예방 계몽·홍보활동 전개

○ 신문 등 언론보도와 수협 어촌계를 활용하여 안전의식 고취

○ 선주, 선장에 대한 계몽활동 및 교육 지속 실시

나)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

○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어선사고 관련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

○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및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자 접수·교육·배치, 수모품 수급·의료·보건·안전 등 전반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관리

□ 어선재난 대비 담당자 교육 및 훈련 실시

○ 해양수산부 및 도 재난교육 적극이수 및 재난예방 합동회의 실시

○ 안전한 해양충남 구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도, 시군,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 참여

○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고사례 분석·학습 및 중앙부처 교육이수 시행

□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매뉴얼 수립·시행

○ 道「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보완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 시·군별 기 작성된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 및 보완

○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인대응수칙(SOP) 설치 및 관리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상황파악 및 전파

내용	추진부서	주관기관 조치사항
○ 메시지 접수	신고자 → 119상황실	
○ 상황접수	119상황실 → 해양정책과	
○ 상황전파 및 경비정 투입 및 긴급구조 요청	해양정책과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 (402-2000)	<해양수산부> 계통보고, 해양경비안전서에 구호 지시 수산청에 구호 지원 및 항행경보등 안전조치 지시 <해양경비안전서> 구호인력 및 경비정 출동 인근 해군함정, 어업지도선 및 조업어선에 구조 협조 <대산청(관제센터)> VHF 16 통신 전파 인근 선박 구조협조 요청
○ 상황전파 및 구조헬기 투입 요청	해양정책과 →119 헬기 (119, 5713)	
○ 상황전파	해양정책과 →보령시 상황실 (930-3906)	
○ 상황전파 및 인근 선박 전파 요청	해양정책과→대산수산청(660-7665) →어업정보통신국(675-1226)	
○ 상황전파 및 어업 지도선 출동 요청	해양정책과→수산과 어업지도선 (524-4135, 011-209-8906)	
○ 상황전파 및 병원선 출동 요청	해양정책과→보건정책과 병원선 (635-4291)	
○ 상황전파 및 어업지도선 출동 요청	해양정책과→보령시 수산과 (930-3921)	
○ 위기상황 전파 및 사고수습요청	해수부 종합상황실 (044-200-5731)	
○ 선박 승선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한국해운조합 보령지부 (930-5043)	
○ 사고내용 보고	접수자→과장→국장→기획관리실장→행정부지사→도지사	
○ 상황판단회의 개최 알림	청내방송 (도지사, 행정부지사, 해양수산국장, 해운항만과장, 안전정책과장 및 관련 실국장)	

2) 구조·구난 초동대응

조치내용	관계기관(부서)	주관기관 조치사항
○ 위기경보(경계) 접수	중앙 → 도	
○ 위기상황판단회의 개최	도지사, 행정부지사, 해양수산국장, 재난안전실장, 해양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 및 관련 실국장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합동조사반운영 <대산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 <해양경비안전서> 표류 및 실종자 구조 개시 방제선 출동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 출동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소집 (청내방송)	각 실·국	
○ 사고해역 선박 항행 통제 요청	대산해양교통관제센터 상황실 (041-660-7600)	
○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항행장애물 조치 요청	해수부 종합상황실 (044-200-5731)	
○ 유류오염긴급방제 요청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 (041-402-2000)	
○ 유류오염 긴급방제 요청	해양환경관리공단 (041-664-9101)	
○ 유류오염 긴급방제 지원 요청	보령화력본부 (070-7511-2151)	
○ 관공선 현장 출동 확인 (긴급 구조·구난 지원)	도 어업지도선, 시·군 어업지도선	
○ 병원선 현장 출동 확인 (긴급 구조·구난 지원)	보건정책과 병원선 (365-4291)	
○ 소방헬기 현장 출동 확인 (긴급 구조·구난 지원)	119, 재난상황실 (119, 635-5713)	

3) 현장대응 조치

<table>
<tr><th>조치내용</th><th colspan="2">추진부서</th><th>주관기관 조치사항</th></tr>
<tr><td>○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3개반)</td><td colspan="2">본부장 : 도지사
차장 : 행정부지사
통제관:해양수산국장,
담당관:해양정책과장</td><td rowspan="8"><해양수산부>
o 사고수습업무 추진
o 사고발생원인 조사
o 수색구조상황 언론 홍보

<해양경비안전서>
o 표류중인 22명 구조 및 육상으로 후송
- 부상자 긴급구조통제단에 인계
o 실종자 수색·구조작업
o 항행장애물 긴급 제거
o 유류오염 방제조치

<대산청>
o 해양경비안전서의 구조작업 등 지원
o 관계기관 인력/장비 동원 협조 요청
o 유류오염 방제조치 지원
o 항행장애물 회수추진
- 선사 협조, 조기회수</td></tr>
<tr><td>○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구조, 구급, 후송 등)</td><td colspan="2">통제단장 :소방본부장</td></tr>
<tr><td>○ 사고원인, 구조 및 사고 수습상황 정보수집
○ 외부기관 협력 총괄</td><td rowspan="3">상황총괄반</td><td>해양정책과
(수산과)</td></tr>
<tr><td>○ 대내외 보고자료 작성
○ 피해상황 및 중앙본부 지시사항 시·군 전파
○ 중앙재난대책본부 협력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td><td>안전정책과</td></tr>
<tr><td>○ 반별 추진상황 실시간 파악
○ 응급복구에 따른 예산확보
○ 주요인사 방문 의전
○ 조류,기상예보 확인 게재</td><td>기획관리실</td></tr>
<tr><td>○ 긴급구조통제단 연락
○ 도 차원의 긴급구호활동 (긴급구조통제단)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관할 시·군 보건소)</td><td>구조구급반</td><td>방호구조과</td></tr>
<tr><td>○ 대외홍보, 언론대응
○ 재난경보 발령·전파
○ 언론사 보도 지원
○ 보도자료 수집·분석
- 오보 해명자료 작성</td><td>공보지원반</td><td>홍보협력관</td></tr>
</table>

조치내용	추진부서		주관기관 조치사항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시군 응급복구상황 파악 ○ 이동용 통신시설 확보	비상지원반	안전정책과	<중앙해양심판원> o 사고발생원인 조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유류오염 방제조치
○ 관공선 지원 ○ 민간연락체계 준비 ○ 현장조치 및 사고해역 통제 지원 ○ 사고현장 동정 수시보고		수산과	
○ 근접부두 및 주변교통로 통제		건설교통국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지원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 병실, 영안실, 분향소 확보		복지보건국	
○ 해양오염방제 지원		환경녹지국	
○ 질서유지 및 수사지원		교육법무담당관	
○ 자원봉사 센타 설치 운영 ○ 피해가족 숙식 등 편의제공	자원봉사반	재난안전실	

※ 상황판단 회의 구성 및 운영

○ 해양 어선사고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구성·운영

[상황판단회의]

① 충청남도본부장·차장·제관·긴급구조통제단장·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집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

라) 복구단계

□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가동

○ 복구지원반 운영 및 복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 사후처리 지원(상황실, 인력, 차량, 장비 등 수습 완료시까지)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침몰·좌초 등에 따른 침선부표 설치 협조 및 신속한 수로정보 제공

- 항행장애물 조치 요청(해양수산부)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수반된 사고는 「대규모 해양오염 매뉴얼」에 의거하여 피해복구 진행

3-11. 도청사 대책

가. 청사 시설현황

1) 부지면적 : 136,464.10㎡

2) 건축규모 : 104,933.4㎡

○ 본 관 동 : 68,286.32㎡(지하2층, 지상7층)

○ 의 회 동 : 19,962.51㎡(지하2층, 지상5층)

○ 별 관 동 : 6,829.58㎡(지하2층, 지상3층)

○ 문예회관 : 9,672.64㎡(지하2층, 지상2층)

○ 부속건물 : 182.35㎡

※ **경비실(20.86), 종합안내소(5.0), 야외화장실(72.25), 옥외EV(83.74)-3개소**

나.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청사 시설의 분야별(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물) 정기 또는 수시 점검과 점검을 통해 보수 비용 등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 사업비 현황

○ 청사 유지관리비(201-01) 233,000천원

- 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10,000천원
- 청사 시설물 정밀점검 15,000천원
- 기타 점검 후 보수비용 및 유지관리 208,000천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청사 소방계획 수립	3월
4/4분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11월
4/4분기	시설물 정밀점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청사 유지관리비	1,194	161	233	200	200	200	200

2) 훈련, 점검 등

◇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진압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대형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 대피훈련 실시(소방교육 병행 가능)

□ 주요내용

○ 중점훈련 내용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 소방시설 및 장비의 사용요령 숙달
- 자위소방대 조직의 임무 및 활동요령 숙달
- 화재 초기진압 능력 배양 및 소방서와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

○ 주요훈련 계획
- 훈련일시 : 2015년 하반기
- 훈련대상 : 전 직원 및 입주기관 관계자
- 훈련진행 순서 : 화재발생 → 화재경보 → 119신고 → 자체인명 구조 및 초기진화 → 소방대 진입 → 화재진압 → 강평
- 훈련장소 : 충남도청 (본관⇔문예회관) 계류지
- 지원받을 소방력 : 소방차량 및 지도인원(홍성소방서와 협의)

3) 안전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1. 활동내용

(1) 청사 방화계획 수립,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계획 수립
- 청사 자위소방대 설치 운영
- 재난 유형에(화재, 지진) 맞는 교육 및 훈련계획

(2)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점검
- 각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기계, 가스) 일일점검 실시
- 취약 시기별 점검, 정밀점검, 종합점검 등
- 시설관리 용역 비상연락망 체계 점검

(3) 청사 시설물 보수. 보강 실시
- 청사 시설물 체계적 점검으로 도출된 문제점, 노후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실시 및 유지보수 계약 등 추진

(4) 유관기관 지원. 협조 체계 구축
- 한전, 홍성 수도사업소, 롯데건설 (열병합시설) : 단전, 단수 시 협조
- 관련실과(실무반), 유관부서 지원체계 구축

나) 대비단계

1. 활동내용

(1) 청사 상황 종합관리
- CCTV관제센터, 중앙제어실 상시가동(24시간)
- 위기 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실시
- 위기 수준에 따른 부서별 임무, 역할 조치계획

(2) 교육 및 훈련 실시
- 청사방화계획 등 재난대비에 따른 교육 실시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위치, 대피로, 대피장소 등)
- 모의 훈련 실시

(3)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가동
- 재난의 정보전달 체계 점검(상황 접수, 경보)
- 현장 응급의료등 지원체계 점검
- 재난(화재)의 진압·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점검

2. 재난관리체계 구축

(1) 일과시간 중

- 재난발생 및 징후 발견 시는 즉시 도 새마을회계과로 보고
- 안전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도지사에게 보고
  - 청사안전분야 : 새마을회계과(청사관리팀 041-635-2354)
    CCTV관제센타(041-635-3699)

(2) 일과시간 후

- 당직계통에 따라 보고하되 긴급사항은 충청남도 당직실 (☎ 041-635-2222, FAX 041-635-3000)로 즉보
- 도청 당직사령은 관련 실국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
- 청사관리팀, 시설용역관리 직원을 비상소집

(3) 상황전파(필요시 수시)

- 상황전파 : 종합상황실, 각실과 담당자, 입주 기관·단체, 유관기관
- 메모보고 :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국장 등

다) 대응단계

1. 활동내용

(1) 청사안전대책단, 재난안전대책본부(필요시) 지휘·통제

- 위기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위기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점검·시행

(2) 실무반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 비상시 행동요령 구내방송
- 징후에 위기 수준별 기관, 부서 임무 역할 수행
- 응급진료, 구호 및 인명구조 대책
- 효율적 화재 · 폭발사고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
-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긴급투입
- 부상자 후송을 위한 현장 응급후송체계 확립
- 위기 장기화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라) 복구단계

1. 활동내용

(1)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대체청사 확보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수립
-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매뉴얼 보완 등)
- 재난원인 철저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2) 효과적인 시설복구

-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복구는 단기적인 응급복구와 장기간을 요하는 복구로 구분·추진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 실시

(3)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위기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3-12. 공연장 대책

가. 공연장현황

1) 등록 공연장 현황(31개소)

(단위 : 개소)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36	13	1	1	9	1	1	1	1	1	1	1	1	2	1	1

나. 현황분석

1) 2015년 현재 충남도 등록 공연장은 31개소(공립 29, 민간2)로 아산 9개소, 천안 8개소로 전체 등록 공연장의 55% 2지역에 분포 되어 있음

* 시군의 등록공연장은 대부분이 문예회관의 공연장이고, 천안 아산의 경우에는 문화관련시설(여성회관, 문화원, 박물관 등)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신세계문화홀(천안), 현대자동차 문화관(아산) 등이 있음

2) 공연 시설물의 대형폭발, 대형화재 등으로 인명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재난 방지 계획이 필요함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	0	0
재산피해(억원)	-	0	0

라. 개선방안

1) 공연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 하여 공연장 안전문화 확산

□ 주요내용

○ 공연장 사고 예방·대비·대응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공연·행사 사전안내 입간판 설치 홍보, 차량 우회로 확보 등 공연에 따른 관중 집결 상황에 대한 예방 홍보
- (대비단계) 공연·행사 시작전 및 시작후 위기인지에 따른 주의 환기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등 홍보
- (조사·복구단계) 공연장 발생지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방향 홍보

○ 재난취약 공연장 주민, 일반국민 등 주요 타킷별 맞춤형 홍보

- TV,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등 제공

○ 산사태 방지 사진콘테스트 참여

- 우수사례 사진 공모를 통해 산사태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홍보에 활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안전점검	2.15~2.28
4/4분기	동절기 안전점검	12.15~12.30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1) 재난대비 안전점검 강화

■ 점검반 구성 및 점검실시

〈市·郡〉

- 등록공연장 정기점검 실시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방안 강구 (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 : 가스안전공사, 공연시설 : 운영기관, 기타 : 경찰서 등)

〈 道 〉

- 점검의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방안강구(소화시설 : 소방서, 전기분야 :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 : 가스안전공사, 기타 : 경찰서 등)

〈점검사항〉

- 등록공연장 안전관리 계획 점검
- 등록공연장 시설물,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교육
- 공연 시작 전, 관람객 입장, 행사 중 등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 공연 진행 중 시설물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 및 대기상태
- 관람석 출입구 개방여부 및 동선 확인
- 등록공연장 안내멘트에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비상구 안내
- 관람석 안내원 근무시 휴대용 손전등 지참여부
- 건조물 전기누전, 가스누설 점검 및 주변 전기선 정리
- 소화전 등 방화장비 작동상태 점검

2) 재난예방체계 구축

■ 등록공연장 등에 대한 자체 소방체계 구축

■ 수시 소화시설 점검 및 노후소화기 교체

■ 방화관리자에 대한 계도

- 소화기 비치,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관계기관,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숙지

■ 공연 주최자, 소방서, 경찰서, 시군간 유기적 비상연락 체계 유지

■ 한국도로공사, 가스안전·전기안전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용 장비·시설 등 자원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3) 중점관리 대상 선정 관리

■ 선정대상 시설 : 시·군 문예회관(14개소) 및 민간공연장(2개소)

- 공연시설물 중심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 중점관리

<관리방법>

- 중점관리대상 등록공연장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시 점검활동 (소유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대책에 반영
- 관련 자치단체와 정기적인 현황 파악 보고체계 유지

나) 대비·대응단계

1) 재난상황실 구성운영

- 재난상황실 구성

• 상황실장 : 문화정책과장, 반장 : 문화시설팀장, 반원 : 직원 2명

- 재난상황실 운영 : 대규모 행사 및 재난발생 우려시
- 기 능 : 문화체육관광부, 道, 시·군간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피해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피해상황 보고

다) 복구단계

1) 중점사항

- 인적재난 등 비상사태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람객 대피유도
- 道 재난상황실, 행사관계자, 유관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 내 진입차단 및 전문가 안전조치 실시
- 공연 중단 관련 항의 관람객 발생대비 사전조치(환불, 피해보상)
- 공연시설물 등 철저한 점검 및 재난발생시 사후조치 강구

2)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수립

○ 충청남도 세부추진 계획(업무소관부서)

○ 시군별 세부추진 및 점검(등록공연장 담당부서)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도로공사 등) 협조

3-13. 사회복지시설 대책

가. 시설현황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15. 11월말 기준)

구 분	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질환자	부랑인 (노숙인)
시설수	402	274	58	35	34	1
생활자	10,533	6,109	2,112	727	1,557	28

※ 주요 이용시설 현황 : 어린이집(1,993개소/68,530명), 경로당(5,596개소/93,985명), 사회복지관(17개소/108,043명)

나. 현황분석

○ 생활시설자들의 신체적 · 정신적 제약

-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정신질환자 등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이 장시간 생활·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

※ 서천 금매복지원 화재사고('02. 12월), 예산 성락원 정신질환자 난동사건('04. 9월)

○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소홀

- 시설의 노후화 및 전기배선의 불량, 축대 및 담장의 붕괴위험, 비상대피구 관리소홀, 쇠창살 및 철조망 설치 등 사고 위험요인이 높음

○ 안전관련 교육·훈련 부족, 안전설비 미비, 안전관리전문가의 부족

※ 정부-지자체-전문기관 합동점검('14.4.28~5.14) 결과

다. 개선방안

1) 재정사업

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 (증·개축비) 장애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설의 증·개축비 지원
- (시설 개보수비) 장애인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장비비) 장비 노후화에 대한 우선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확정내시 및 사업추진	2월
2/4분기	'17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수요조사	4월
3/4분기	'17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9월
4/4분기	'16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12월) '17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가내시 통보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7,045	3,447	3,398	3,400	3,400	3,400	

나]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 정신질환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지원

□ 사업내용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신축, 증·개축비) 입소·이용자 증가에 따라 생활실 및 재활공간 확충이 필요한 시설에 증·개축비 우선 지원

- (개보수비) 노후화 및 안전성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장비비) 노후화, 의료장비, 재활 장비 등 정신질환자 이용에 적합한 장비 우선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교부	
2/4분기	'17년 기능보강 대상 수요조사	
3/4분기	'17년 기능보강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4/4분기	'17년 기능보강 대상 가내시 통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정신보건시설확충	3,809	1,371	38	700	800	900	*시설안전 개선 우선지원

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증·개축 등 기능보강

□ 사업내용

○ (신축비)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주·야간보호 신축비 지원

○ (증·개축비) 치매어르신을 위한 별도 환경조성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개축비 지원

○ (개보수비) 노후화 등으로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개보수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대상 확정내시	2월
2/4분기	'17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대상 수요조사	4월
3/4분기	'17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9월
4/4분기	'1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12월) '17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대상 가내시 통보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2,828	5,120	4,208	4,500	4,500	4,500	

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요보호아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아동복지시설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 (증·개축)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시설이나,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증·개축 지원

- (개보수) 노후화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보수 지원

- (장비보강) 장비 노후화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확정내시	
2/4분기	'17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수요조사	
3/4분기	'17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4/4분기	'1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12월) '17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대상 가내시 통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680	3,330	1,140	1,100	1,100	1,100	

마] 어린이집 기능보강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 어린이집 환경개선

- (증·개축비)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 지원
- (시설 개보수비) 어린이집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장비비)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

○ 장애아시설 환경개선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대상 확정내시	
2/4분기	'17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대상 수요조사	
3/4분기	'17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점검	
4/4분기	'16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12월) '17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대상 가내시 통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7,228	2,268	1,240	1,240	1,240	1,240	

바] 경로당 기능보강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및 여가프로그램 공간 제공

□ 사업내용

○ (신축비) 경로당의 여가·건강 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한 노후경로당 신·증축비 지원

○ (개보수비) 어르신들에게 여가프로그램 공간 제공을 위해 리모델링,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경로당 기능보강 대상 확정내시 및 교부	
3/4분기	'17년 경로당 기능보강 대상 수요조사	
4/4분기	'17년 경로당 기능보강 가내시 통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경로당 기능보강	52,708	12,322	9,654	9,943	10,241	10,548	

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환경개선

- (시설 개보수비) 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장비비) 노후장비 및 시급성 등 고려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확정통보 및 내시 '16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3/4분기	'17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수요조사 및 확정통보	
4/4분기	'17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가내시 통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14	382	83	83	83	83	

2) 기타 시책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국가안전대진단 및 동·하절기 안전 점검 등 안전점검 내실화 및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대피훈련 등을 통한 안전매뉴얼 숙지로 안전사고 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

□ **주요내용**

1) 안전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적극 추진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및 사후관리 적극 실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연2회 동·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 동절기 폭설·혹한 및 하절기 태풍·집중호우 등과 같은 재해, 화재 등 대비 안전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보완조치

○ 시설안전공단 무상안전점검 지속 추진 및 결과 활용

- '15년부터 시설안전공단 무상안전점검 결과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 적극 활용

2) 교육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공통매뉴얼 및 시설물 안전교육 실시

※ '15. 4. 24(금) 14:00, 도청 문예회관, 200명, 한국시설안전공단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공통매뉴얼 사이버 교육수강

- 순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사이버 교육 수강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정규 교과로 편성

○ 모의대피훈련 동영상 보급을 통한 대피훈련 강화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의 대피훈련 동영상('15년 배포) 활용 토록 안내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안전관리 교육 · 홍보

○ 시설장 및 종사자, 입소자의 장기 안전교육으로 의식 개선

○ 재난발생시 피해경감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2) 안전관리 강화 조치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관리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

나) 대비단계

□ 긴급지원체계 구축

1) 초기상황 접수 및 전파

○ 심각성, 피해확대 가능 여부, 파급효과 등 현장 상황 파악

○ 응급대응 지시(시군)

2) 재난대비 자원의 지원 · 수용체계 확인

○ 긴급구조 관련 기관의 긴급연락망 구축

○ 긴급지원체계의 점검 및 확인

□ 긴급대피체계 구축

1) 종사자 및 입소자 대피계획 수립

○ 재난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였지만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없는 노유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등 재해 대피계획 수립

○ 재해 상황별, 지역별, 시간대별 대피 계획 수립

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확인

- 시군별 지정 임시주거시설 확인

※ 시군별 임시주거시설 현황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관리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확보

※ 전국재해구호협회 2~3명 기준 1동 지원

○ 이재민 구호물자 확보

○ 화장실, 간이 목욕실 등 부대시설 및 급수시설 확보

다) 대응단계

□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상황판단회의

○ 현재까지 상황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 현장상황지원과 파견 검토

○ 긴급구조기관 대응상황 확인

○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판단

○ 도와 시군의 역할 명정

2)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체계 확립

○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보고, 현장관리

○ 유관기관, 시군 대응상황 확인, 핫라인 유지

○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 장비 지원 요청

○ 이재민 구호활동(구호품관리 및 지급) 및 의료 활동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신속한 피해조사 · 원인분석

- 응급복구 현황 및 최종 피해현황 파악
- 복구현장 부족자원 파악 및 지원 요청

2) 원활한 재난복구 대책 수립 및 관리

-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 사전 건설업체 확보 및 수습조치
- 전기·통신시설의 응급복구
- 치료 및 보상 등 사후대책 수립

3-14. 자연휴양림시설 대책

가. 피해현황

1) 재산피해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분	합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건수	3						2		1		
재산	1,120						1,060		60		
인명	-	-	-	-	-	-	-	-	-	-	-

나. 원인분석

○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다소 발생(3건, 1,120백만원)하였으나, 태풍, 집중호우 등이 원인으로 연도별 피해격차 큼

○ 최근 10년간('05~'14) 인명피해 없음

- 그동안 자연휴양림내 시설들이 휴양위주(숲속의 집, 산책로, 등)로 안전위험이 적어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 수요의 다변화로 체험위주의 휴양인구가 증가하여, 다양한 체험시설(짚라인, 물놀이장 등)이 늘고 있어 체험시설에 맞춘 세부적인 안전관리강화 방안 필요

다. 목표 : 자연휴양림 안전사고 제로화

라. 개선방안

1) 제도개선

◇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마련('14.12.16)

□ 주요내용

○ 안전점검, 모의훈련 정례화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 안전점검 관리자를 지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4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재난·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정례화(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지침)>

-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매일 실시
-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과 모의훈련을 의무화하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의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연 1회 이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정기점검(매일, 월별)	매월
2/4분기	• 정기점검(매일, 월별) • 모의훈련 및 중안점검반 합동 안전점검	매월, 4월
3/4분기	• 정기점검(매일, 월별)	매월
4/4분기	• 모의훈련 및 중안점검반 합동 안전점검	매월, 10월

□ 법령 제 · 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자연휴양림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산림청 훈령 제1226호)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의무화, 안전점검계획 수립,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조치 및 보고 등

2) 재정사업

◇ 자연휴양림 시설물 정밀진단, 보완사업으로 노후시설 정비

□ 사업내용

○ 휴양림별 위험, 노후화정도에 따라 정밀실태 조사 추진

- '16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 2개소(개소당 85백만원)

  * '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2개소) : 부여 만수산, 금산 남이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통한 노후시설 정비

- 노후시설 보완, 안전시설(소화전, 안전펜스 등) 확충 : 11개소(49억)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계약의뢰	사전준비등 행정절차 이행(1~3월)
2/4분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및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	추진상황점검 (6월)
3/4분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	
4/4분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및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	추진상황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23,350	5,070	4,570	4,570	4,570	4,570	
자연휴양림보완사업	**22,500**	**4,900**	**4,400**	**4,400**	**4,400**	**4,400**	**11개소**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850**	**170**	**170**	**170**	**170**	**170**	**2개소**

3) 교육·훈련, 점검 등

◇ 자연휴양림 근무자를 대상으로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교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대상 재해발생대비 교육·훈련 실시

- 정기 교육 : 현장종합 안전대책,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요령 등
- 모의 훈련 : 자연휴양림별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비 훈련 실시

* 자연휴양림별 정기교육(연 2회), 모의 훈련(연 1회) 실시

<2015년도 정기 교육·모의 훈련 실적>

- 정기교육 : 11개 자연휴양림에서 총 31회 실시 (참여인원 : 461명)
- 모의훈련 : 11회 실시
  - 참여기관 : 소방서, 파출소,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
  - 참여인원 : 236명
  - 주요내용 : 가상 화재발생 대응 훈련, 산악사고 대응 긴급구조 훈련, 재난에 따른 부상자 후송 훈련 등

○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정례화

- 안전점검 관리자 지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4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재난·안전점검 실시 (매일점검, 월별점검, 반기점검, 특별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휴양림별 안전관련 정기교육·모의 훈련 안전점검(매일, 월별)	
2/4분기	휴양림별 안전관련 정기교육·모의 훈련 안전점검(매일, 월별, 반기점검, 행락철 특별점검)	행락철 특별점검(4월)
3/4분기	휴양림별 안전관련 정기교육·모의 훈련 안전점검(매일, 월별)	
4/4분기	휴양림별 안전관련 정기교육·모의 훈련 안전점검(매일, 월별, 반기점검, 동절기 특별점검)	동절기 특별점검(11월)

* 자연휴양림별 정기교육·모의훈련 계획 수립후 추진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대비단계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대응체계 수립 및 점검**

1)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수립

○ 안전관리 조직구성, 기관별 임무 부여 및 숙지

- 초동·대응·처리·사후 등 단계별 대응 방안 수립
- 위기대응 조직체계도 작성 및 개인별 임무 부여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성 및 협조체계 구축

2) 주요 시설별 안전점검 추진

○ 시설 안전 점검

- 대상 : 숲속의 집, 등산로,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편의시설, 방송시설, 제설장비, 매표 시설, 산림체험 시설 등
- 주기 : 일상점검 · 정기안전점검 · 계절별 안전점검 등

⇨ 휴양림 직원의 시설물점검방법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하고 전문분야는 외부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

○ 소방 시설 점검

- 소방시설 안전점검 시기

구분	자체점검	정밀종합점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자	방화관리자 또는 업무대행자	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내용 : 소화기 작동상태, 소화전 수량공급 및 밸브 개폐조작여부 비상구 개폐여부 및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이상유무 등

*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 연 1회 이상 소방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안전관리기관에 의뢰

○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점검

- 전기기설 : 차단기 작동여부, 전기사용량 측정 분석, 수변전설비 정밀점검, 분전반 선로의 누전여부 측정 등
- 가스시설 : 한국안전가스공사에 신청하여 정기검사 추진 등

3) 재해발생대비 교육 훈련 추진

○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대상 재해발생대비 교육·훈련 실시

- 정기 교육 : 현장종합 안전대책,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요령 등
- 모의 훈련 : 자연휴양림별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비 훈련 실시

* 자연휴양림별 정기교육(연 2회), 모의 훈련(연 1회) 실시

□ 자연재난 대응방안 및 계절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1) 자연재난 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 태풍·호우·폭설, 산불·화재, 산사태, 기타재해 등 유형별 대응방안 수립

- 위기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방안 수립

○ 환자발생시 조치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수립

2)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 마련

○ 봄 철 : 해빙기 안전점검, 황사 대처 요령 등

○ 여름철 : 물놀이 유의사항, 야영, 피서지 등에서 대피요령 등

○ 가을철 : 벌 쏘임, 뱀 물림, 유행성 출혈열 예방 등

○ 겨울철 : 혹한기 행동요령, 폭설시 운전요령, 난방기 안전수칙, 겨울철 산행요령 등

3) 응급처치 요령

○ 화상 대처, 골절 처치법, 부목법 등 환자 처치 요령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다) 대응단계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1) 비상사태 대비 근무체계 확립 등 운영·관리 강화

○ 태풍·호우·폭설, 산사태 등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강화
- 이용객, 야영객에게 현재상황 전파 및 추가입장 통제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응급조치, 대피소 안전점검 등

2) 순찰 강화 및 조기 상황전파 체계 확립

○ 방송시설, 인터폰, 무선 통신 등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사태 대비 감시활동 강화

- 소방서, 경찰서, 지역 주민 등

라)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1)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 지원

○ 도 및 산림청 관계관으로 합동조사반 편성하여 피해현황조사

- 휴양림별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 지원대책 마련
- 상황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 재난 상황별·지역별·유역별 특성에 맞는 복구기술 적용

□ 인명사고 수습

1) 유가족 연락

○ 유가족이 놀라지 않도록 침착하게 사고소식을 알리고 협조 당부

○ 사고 관련 최신정보 수시 제공

2) 유가족 지원

○ 사고처리 완료시까지 담당자 지정

- 유가족이 원하는 상황 파악 및 사고처리 협조 등

○ 유가족에 대한 편의시설, 사고관련정보, 보험처리 관계 등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제공하고 협조 요청

- 편의시설 : 휴게실, 차량탑승, 식당, 숙소 등

○ 사망자가 발생될 경우 처리 절차를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고 가능한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

○ 유가족 위문 및 편의제공을 위한 대기소 설치

3-15. 청소년시설 대책

가. 청소년시설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50	11	9	15	3	12
공공시설	26	11	9	4	1	1
민간시설	24	-	-	11	2	11

나. 적용대상

1) 각종 재난(화재·폭발, 태풍·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부터 청소년시설 종사자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대응 활동에 적용
2) 청소년시설(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등)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출,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현장에 배포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3)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응급처치 활동에 적용

다. 목표

1) 도내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 도·시군 및 시설 종사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2)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무요령 등을 기술하여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수련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 기여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 등 정신적·신체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인 문화·예술·체육·숙박 등 시설 건립 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사업내용

○ 공공 청소년시설 건립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 '16년도에 계속사업은 2개소로 청양군 청소년문화의집, 홍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이며, 신규건립 사업으로는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1개 지역 지원예정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617백만원(국비 1,100, 시·군비 2,517)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청소년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착공(실시설계)	1~3월
2/4분기	2017년도 신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수요조사	4~5월
3/4분기	사업추진 점검 및 독려, 2017년도 예산확보 등	8~9월
4/4분기	2016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마무리 및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8,767	3,617	3,500	3,750	3,850	4,050	
청소년시설 확충	18,767	3,617	3,500	3,750	3,850	4,050	

2) 교육 · 점검, 홍보 등

㉮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등 안전교육

◇ 지자체 청소년 수련시설 담당공무원 등의 수련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

□ **주요내용**

○ **교육주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안전센터 공동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협조

○ **교육대상** : 지자체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담당자 약 20명

* 도 및 시·군·별 담당공무원(1명),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담당자(2명) 참석(필수)

□ **교육내용**

○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의 역할 체계

○ 수련시설의 시설·안전·운영기준 및 점검요령 설명

* 비상대피 안내도, 소화기 배치 상태, 비상시 후송대책 등 핵심사항을 수요자 관점 및 사례 위주로 실시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요령

○ 수련시설 안전점검표에 따른 안전점검 실습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등 설명

○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 토론

○ 기타 애로사항 수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청소년수련시설 교육 수요조사	3월
2/4분기	지자체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담당자 교육	6월

㉲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

◇ 계절별 주요시기에 맞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홍보를 실시

□ 주요내용

○ 계절별에 맞춰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 시행시기 : 3월(해빙기), 6월(우기대비), 수시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일부 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부문
– 시설의 노후화 및 전기배선의 불량, 축대 및 담장의 붕괴위험, 절개지 관리, 비상대피구 관리소홀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음

○ 단체 수련활동에 따른 취약성 부문
– 대규모 인원 숙박 및 시설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대피 지연 가능성이 높음

○ 안전관리 전문가 부족, 안전관리 교육훈련 중점관리 필요

○ 방재시설·장비부족, 야간근무자 대비체계 미흡 등 지속관리

- 홍보방안 : 현장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 예방을 위한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3월
2/4분기	우기대비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6월
	수시점검	매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① 청소년시설과 활동프로그램의 상시적 안전관리

○ 청소년시설 및 시군담당 공무원 안전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기적 안전교육으로 의식 개선
- 재난발생시 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점검대상시설의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 실시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정기·수시 안전점검 : 매월 1회 이상

나) 대비단계

①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시설 붕괴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청소년시설 붕괴를 가정한 SMS 전송 및 상황전파해제 등 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 확인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갱신

② 교육,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복구 자재 구축

○ 전문가를 통한 예방 · 대비단계(취약지역 지정 · 관리 등 컨설팅), 대응 · 복구 단계(원인조사 및 복구자문 등 컨설팅)별 컨설팅 실시

○ 청소년시설 붕괴 사고 발생을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장비 등 조달체계 구축

○ 안전 취약 청소년시설 안전관리 강화 (도, 시·군)

- 전기누전, 합선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 예상요인 사전 차단

○ 종사자 비상대피계획 수립(시·군)

- 재난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였지만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없는 노유자(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을 피난 대책 수립

○ 자원의 지원·수용체계 확립

- 긴급구조 관련 기관의 긴급연락망 구축
- 긴급지원체계의 점검 및 확인

○ 전기·통신 시설의 긴급소통계획 수립

다) 대응단계

□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발생 시 지자체 대응 절차

① 상황접수 ·전파

○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등 발생정보의 접수

- 시민,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부터 SNS, FAX, 유선 등을 통해 접수
- 일반 시민들이 청소년시설 비상사태 발견 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홈페이지에 배너창 구축 등)

○ 복구지원팀 현장 조사/유관기관은 초기대응 지시

○ 초기 상황보고

○ 관계자 회의를 통해 피해예측 및 사고대응조직 운영방향 결정

② 대응조직 구성 · 운영

○ 사고규모에 따라 재난상황실 또는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긴급대응조치를 위한 분야별 상황반 가동
- 필요시, 전문가 현장 확인 후 사고수습 지원

③ 대응조치

○ 초동조치 확인

- 응급조치 및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 현황 점검 · 확인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 체계 구축

○ 추가붕괴 등 2차사고 방지대책 점검

- 추가붕괴 대비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확인
- 폭발 등에 대비 가스·위험물· 유독물 누출점검 및 안전조치 확인
- 시설관리기관(도로, 상수도 등)에게 피해확인 및 응급조치

○ 피해 및 사고수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시간 보고·전파

- 언론매체 등을 통해 피해상황과 사고수습 현황을 신속 전파

○ 사고수습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

- 유관기관 긴급 통신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 피해주민 발생시 생활에 필요한 긴급지원계획 마련

○ 국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 사고로 인한 피해 수습상황과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홍보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등에 대한 안내

④ 사후관리

○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규모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 통계관리

- 일정기간 계측(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 확인토록 조치

○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보고 채널 확보

- 재난상황파악 및 적기수습을 위한 신속한 보고와 역할 분담
- 시·군과 재난정보사항 수시보고 체계 유지

○ 이재민 구호활동(구호품관리 및 지급) 및 의료 활동

라) 복구단계

①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등 발생원인 및 피해조사 실시

○ 관련 전문가 등으로 원인 전문조사단 구성 · 운영

○ 상황 종료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되 누락지가 없도록 조사 철저

○ 신속한 피해조사 후 관련 DB구축

②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등 발생지 항구적·체계적 복구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발생 후 2차 피해 유발요소 점검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

○ 사상자 발생 시 처리 등에 대한 대책 지원

○ 상황종료 후 붕괴·화재 발생지 정밀조사 분석 및 항구복구계획 수립

○ 언론보도 · 브리핑 자료(사고조사결과, 피해자 지원 · 보상 계획, 재발방지대책 및 복구계획 등) 자료 작성

③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등 대응의 평가·분석 실시

○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평가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예방대책에 반영

○ 청소년시설 붕괴·화재 등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참고 1】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대책 요약

□ 청소년시설

구분	예 방	발 생	사 후 조 치
도	1. 청소년수련시설 및 시군담당 공무원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시설장 및 종사자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홍보활동 전개 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강화 - 요주의시설 안전점검(연 3회) -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지원 3. 사고대응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신속 전파·대응·복구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간급 연락망 구축 - 긴급 지원체계의 점검 및 확인	1. 재난 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지휘부 보고, 관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전파 ·시군구 상황 전파 2. 긴급구조 통제단(소방본부장) 운영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재난 등 경보발령 -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1. 사고수습 상황 종합 보고 2. 재난피해 확인 - 합동사고조사반 구성·운영 및 현지파견(도 지휘) 3. 사고 후 영향조사(시설 내 가스 유출 등 사고발생시) - 환경 오염도 조사 및 복구수준 결정 - 사고지역 복구 활용토록 영향조사 결과 시군제공 4.. 피해복구 통합 지원체계 가동 및 복구활동 지원
시군	1. 시설별 재난예방 대책 자체 계획 수립·이행, 지도점검 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강화 - 동절기·하절기·해빙기 년 3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지원 3. 사고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망 확립 - 이재민 수용시설 및 긴급 대피장소 지정·관리 4.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재난발생시 대피계획 수립 5. 응급복구 자재·장비 확보실태 점검	1.. 재난 상황 접수·확인, 보고·전파 - 재난상황 접수·현지확인 및 발생내용 지휘부 보고, 관련 유관기관 상황 전파 2. 동원명령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직원, 물자, 장비 등 동원 3. 사건현장 긴급구조 및 인명구조·보호 조치 - 긴급구조 및 인명구조·대피(대피방송 및 대피유도) 지원, 보호조치 - 시설 응급복구 - 환자 구호조치 및 수송	1. 사고수습 처리상황 전파 2. 재난피해 조사 및 집계 - 합동사고조사반 구성(도·시군), 피해현황 조사 및 집계 3. 응급복구 활동 - 각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투입 - 피해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및 장비지원 - 피해지역 방역실시 및 쓰레기 처리
청소년시설	1. 정기·수시 안전점검 실시 - 수시 자체 안전점검 및 동절기·하절기·해빙기 집중 안전점검 실시 2. 응급복구 자재·장비 확보 3. 시설종사자·입소자 합동 소방훈련 및 재난대책 훈련실시	1. 시설내 경보전파 및 초기대응 - 시설내 경보 신속 전파 - 보유장비로 초기대응 실시 - 시설내 이용자·투숙객(아동)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 우선 대피 유도	1. 재난피해 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 활동 - 시설내 물질적·인적 재난피해 현황 파악 - 시설내 장비동원 자체 응급복구 활동

3-16. 가정·성·학교폭력 대책

가. 피해현황

○ 성·가정폭력 검거·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가 정 폭 력			성 폭 력				학 교 폭 력			
	검거건수	검거인원	재범률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재범률	초	중	고	특수학교
2011년	119	93	12.9%	798	659	711	7.8%	5	125	59	
2012년	131	138	18.1%	840	700	849	6.2%	44	520	318	
2013년	492	492	4.6%	1,036	872	883	6.2%	173	522	321	1
2014년	591	687	6.9%	1,234	1,145	964	5.6%	199	451	277	2
2015.9월	778	861	0.9%	771	756	780	4.36%	150	390	230	-

※ 충남지방경찰청 제공(세종시 포함)

나. 원인분석

1) 최근 5년간('11~'15) 성·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총 5,629건(가정 1,768, 성 3,861), 검거인원은 5,797명(가정 1,899, 성 3,898)이며 매년 증가추세임
2) 도내 서북부(천안·아산·서산)지역의 유동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성폭력 위험지대로 부각, 전체 발생건수 중 높은 비중 차지
3) 증가이유를 성·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한 신고율과 적발율이 높아진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음
4) 증가이유를 성·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한 신고율과 적발율이 높아진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음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 현황	'16년 목표	증 감
검거인원(명)	1,651	1,568	△83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 여성폭력 관련 예방체계 내실화를 통한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
◇ 학교폭력이 피해·가해 학생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사업내용**

○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81개소 / 도내 초등학교의 20%)
-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주변의 위험·안전환경 요인을 조사하여 지도화 하는 체험활동으로 위험공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죄 대처능력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 3. ~ 12.
- 사 업 비 : 49,816천원(국비 24,908, 도비 12,454, 시군비 12,454)

○ 충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성폭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연 1회 이상, 실무사례협의회 연 2회 이상 개최
- 사 업 비 : 115,840천원(국비 57,920, 도비 30,770, 시군비 27,150)

○ 여성폭력 인식제고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20백만원)
- 일시 및 장소 : 10월경 / 장소 미정
-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사례 전시 및 전문상담, 예방홍보 등

※ 부대행사 : 폭력근절 캠페인, 폭력예방 퍼포먼스 등

○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생활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32백만원)
- 성·가정 폭력 다발 지역을 파악, 지역 활동가 등을 통하여 상담지원 및 안전귀가 지원, 사례 관리 등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체계 활성화
-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역량결집 및 기관별 역할 추진상황 점검

○ 학교주변 정화·감시운동 전개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12시군 18단체 840명/국21,000천원, 시군 21,000천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교부(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등)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1월 1월 2월
2/4분기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 개최(1차)	5월
3/4분기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카운슬링페스티벌 개최	10월
4/4분기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실무사례협의회 개최(2차) ◦ 지역연대 안정프로그램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10월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1,192	241	236	237	239	239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256	56	50	50	50	50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	582	115	116	117	117	117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카운슬링페스티벌	92	20	18	18	18	18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160	32	32	32	32	32	
학교폭력 지역위원회 운영	102	18	20	20	22	22	

2) 교육, 점검, 홍보 등

◇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사회조성

◇ 학교 예방교육 강화 및 전문가 및 또래간 상담, 협업기능 강화

□ **주요내용**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운영기관 2개소)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초등학교 4~6학년 / 연인원 12,000명)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교육으로 폭력피해 예방(연인원 300명)

○ 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행사 개최(12월중)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폭력예방을 위한 기념행사 추진
- 주요내용 : 피해사진 전시회, 여성폭력추방 서명운동 및 가두캠페인 전개 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연 2회)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폭력예방을 위한 기념행사 추진

※ 점검대상시설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

○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확대 및 보고대회, 토론회 개최

- 또래 상담자, 지도교사 200명 이상 육성 및 활성화 대회 개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성인권 교육대상 학교 및 운영관리기관 선정 ◦ 성인권 교육사업 운영계획서 여가부 제출 및 국도비조고금 교부	2월 2월
2/4분기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실시	5~6월
3/4분기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 중간보고 및 평가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실시	8월 7~11월
4/4분기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 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행사 개최	12월 12월

3)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성폭력·가정폭력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1)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계획 수립

○ 4대악에 해당하는 가정·성폭력을 예방하고 보호 지원해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임

○ 계획기간 : 2017 ~ 2021년(5개년 계획)

○ 소요예산 : 38백만원

○ 주요내용

- 충남의 여건과 현황분석, 실태조사 등 취약계층 안정망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방안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1) 충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지역사회 민·관 협력과 지원·정보교류 등을 통한 아동·여성보호 및 지역안전망 구축 운영

-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전문가, 폭력관련시설 등 대표로 구성(총 18명)
- 운영위원회 연 1회 이상, 실무사례협의회 연 2회 이상 개최

나) 대비단계

□ **여성·아동인권보호지원체계 구축**

○ 충남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지원(경찰, 상담원 등 야간근무)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진료실, 피해자대기실 등

※ 道, 충남지방경찰청, 단국대학교병원 3자 협약 운영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여성인권 보호

* **365일 / 24시간 3교대 운영**

○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 위기여성이 발생할 경우 임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 지정(4개소)

- 보호대상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자녀

다) 대응단계

□ 여성폭력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

1) 접수

○ 피해자 또는 가족 등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경우
○ 성폭력상담소 등 NGO를 통하여 접수한 경우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경우
○ 사건 접수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지원요청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2) 수사지원

○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응급키트 채취, 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등

3) 상담지원

○ 상담기록지(사례접수 및 경과기록) 작성
○ 피해자 지원 : 상담지원계획 수립, 경찰서 보호, 진료예약, 응급실 내원, 고소 및 수사관련 서비스 안내, 위기개입 상담 실시

4)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과 연계 무료 법률 구조 지원

5) 의료지원

○ 성폭력 증거물 채취, 의무기록 발급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

6)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

○ 의복비, 식비,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

7) 사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 피해자에게 알맞은 지원 수행, 보호시설 연계, 성·가정폭력 상담소 연계,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자원 연계

3-17. 자살예방 대책

가. 피해현황

○ '14년 자살사망자는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746명(인구 10만명당 36.5명)으로 1일 평균 2.0명이 자살로 사망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가 자살로 인한 사망

나. 원인분석

○ 자살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정신적 문제, 신체적 질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충남 성별연령별 자살원인 ('10~'13)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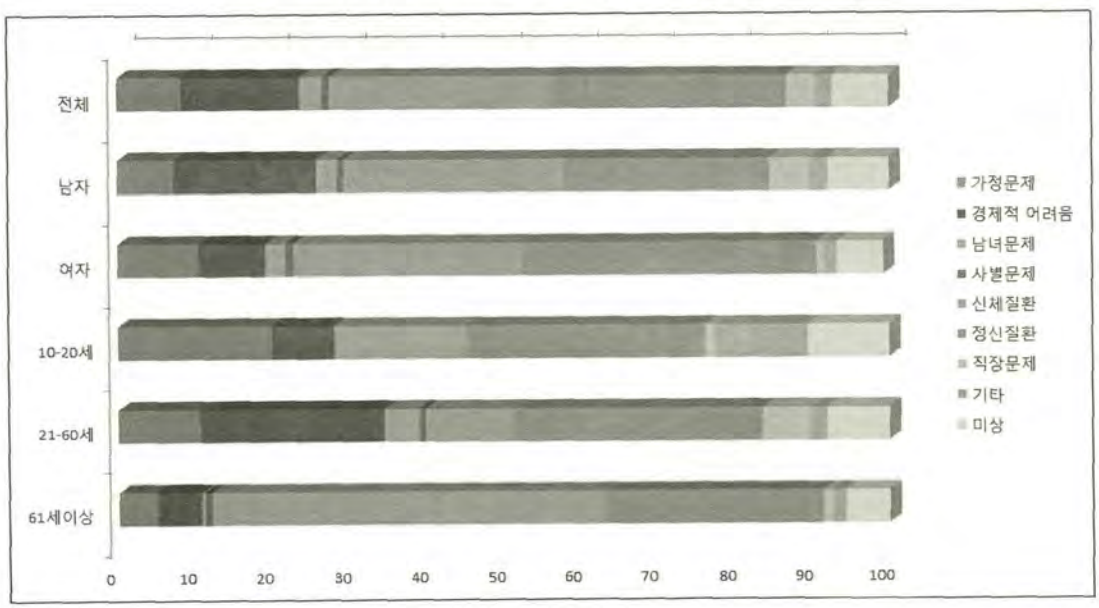

다. 목표

○ 관련 부서·전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충남자살률 감소

구분	'12~'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인명피해(명)	750	637	△113

라. 개선방안

1) 재정사업

가)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 전국민 생명존중 문화조성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및 지지 강화, 자살수단 통제

□ **주요내용**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 생명문화제 개최, 자살예방포럼, 정신건강주간 운영, 자살예방 도민 홍보 강화, 자살 인식도 조사 실시

○ 자살예방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 및 복지 정보 시스템 연계 활성화, 광역 및 시군 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위한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및 생명존중 그린마을 육성, 자살고위험군 음주 관리 강화 및 착화탄(번개탄) 관리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의약인단체 및 종교단체 MOU체결 ○한국자살예방협회 농약보관함 보급사업 MOU체결	1~3월
2/4분기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실시	4~12월
3/4분기	○생명사랑문화제 및 자살예방 포럼 개최	9월
연 중	○유관기관(분기별) 및 관련부서(월별) 실무회의 개최 ○자살인식도 조사(교육, 행사 시), 자살예방 홍보	연 중

나)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강화

◇ 노인, 중장년층, 자살시도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체계 구축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대응,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주요내용

○ 노인, 청장년, 청소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추진

○ 자살유가족 지원 및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확대 운영, 정신·신체 질환자 자살예방, 실직자·빈곤층 자살예방체계 마련

○ 자살위기전화(1577-0199) 운영 및 소방·경찰 등 긴급출동 연계 강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을 통한 자살 재시도율 감소 도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 아동·청소년 위기관리 및 생명사랑 교육 실시 ○ 청장년층 자살예방 지원(귀향 청장년층, 직작교육) ○ 노인층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자살유가족 지원 및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 자살위기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추진	연 중

다)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1차 의료기관 함께하는 자살예방 체계 구축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한 자살예방 인력 확충 및 근거기반 자살예방체계 마련

□ 주요내용

○ 다층·중층적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 체계 구축

- 일차적 발굴 : 지역주민, 이·통장, 자원봉사자 등
- 이차적 발굴 : 복지시설 종사자 및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
- 삼차적 발굴 :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등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 보건진료소장 중심의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 연계체계 구축 및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컨트롤 타워 역할 기능 확대

○ 방문보건간호사, 마을 통·반장, 종교인, 교사 등 다양한 직역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여 고위험군 조기발견·연계

○ 자살사망의 심층 원인 분석을 통한 근거중심 자살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 ○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 1차 의료기관 우울증 스크리닝(보건기관 우선 실시)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컨트롤타워 역할)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체계 구축 및 자살예방인력 확충 ○ 자살유가족 대상 심리부검체계 구축 사업 추진	연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5	'16	'17	'18	'19	비 고
계	28,540	5,700	5,710	5,710	5,710	5,710	
지역정신보건사업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비)	4,450	890	890	890	890	890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800	160	160	160	160	16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	2,750	550	550	550	550	55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지원	160	32	32	32	32	3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재개발 및 보급	140	20	30	30	30	3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상담, 검사 등)	1,500	300	300	300	300	300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3,840	768	768	768	768	768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14,900	2,980	2,980	2,980	2,980	2,980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1) 도민 생명존중 문화조성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 생명사랑문화제 개최, 자살예방포럼, 정신건강주간 운영

2) 사회적 연대 강화 및 자살수단 통제

○ 보건 및 복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민관협력체계 구축

○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및 생명존중 그린마을 육성

나) 대비단계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1)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 독거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

○ 다층·중층적 자사고위험군 조기발견체계 구축

- 일차적 발굴 : 지역주민, 이·통장, 자원봉사자 등
- 이차적 발굴 : 복지시설 종사자 및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
- 삼차적 발굴 :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등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다층적 자살위험자 발견망의 예>

2) 자살고위험군 개입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멘토링 사업 확대 운영

○ 정신·신체 질환자 자살예방, 실직자·빈곤층 자살예방체계 마련

다) 대응단계

□ 자살위기 대응

1) 자살위기 전화 운영(1577-0199)

○ 129(복지부콜센터), 1577-0199(정신건강상담전화)를 통한 자살위기 상황에 대한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강화

○ 3자 통화시스템(자살위기자, 119, 1577-0199) 운영으로 위기상황 긴급 대응

2) 긴급출동 및 연계

○ 112(경찰), 119(소방)에서 위기상담전화와 연계한 현장출동 및 긴급 구조 실시,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경찰(112) : 자살시도자 발견 및 신고 접수 시 센터로 의뢰
- 소방(119) : 자살시도자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병원 이송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천안자살예방센터) : 대상자 상담 및 해당기관 연계

라) 복구단계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응급실-정신과-정신건강증진센터-사회복지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① (병원) 응급처치 및 정신과 상담·치료, 동의서 안내 및 자살시도자 기초자료작성 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② (광역센터) 병원 및 기초센터 연계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자문 등 지원
  ③ (기초센터)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유가족 지원 및 필요시 사회복지기관 연계
  ④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연계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 응급실-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활성화를 위해 사례 연계비 지원(건당 2만원)

<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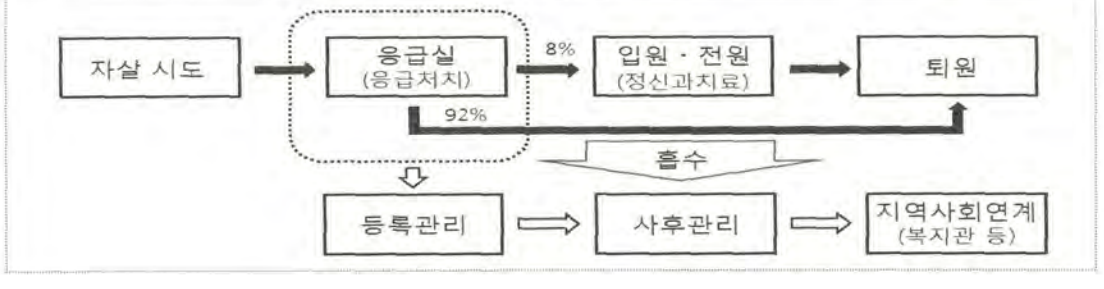

○ 저소득층 응급의료비 지원(사례관리 동의자)

- 응급실 내원 시도자 중 신체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

▸ 이송료(최대 10만원), 응급입원비(최대 50만원), 외래진료비(최대 30만원)

2) 자살유가족 관리

○ 경찰, 주민센터(사망신고), 응급의료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유가족 발굴 추진

-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 배포 및 정기 간담회 개최 등

○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단위로 자살 유가족 심리지원 실시 및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3-18. 식품안전사고 대책

가. 식품으로 인한 연도별 식중독환자 발생 현황

(발생건수/환자수)

연도	합계	시군별 식중독발생 현황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2015	5	5	0	3	2	0	0	0	0	0	1	1	0	0	0	3
	128	42	0	13	47	0	0	0	0	0	2	8	0	0	0	16
2014	14	5	0	0	2	3	1	0	0	0	0	0	0	1	0	2
	218	51	0	0	102	18	30	0	0	0	0	0	0	7	0	10
2013	6	3	0	0	0	2	0	0	0	0	0	0	0	1	0	0
	85	40	0	0	0	10	0	0	0	0	0	0	0	30	0	0

나. 원인분석

1) 최근 3년간('13~'15)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 발생은 25건 431명이 발생

2) 이는 1회 급식 인원이 많은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

다. 목표

구분	'14년 피해현황	'16년 목표	증 감
환자수	218명	208	△10

라. 개선방안

1)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으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 **주요내용**

○ 취약 시기별, 계절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동점검 강화

- 식중독 발생 비율이 높은 학교급식소 집중 지도점검

○ 주요 발생 원인 차단을 위한 계절별,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 예방교육

○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민관 식중독 예방 협의체 개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식중독예방 관리계획 수립	1~2월중
1,3/4분기	학교급식소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합동점검	3월, 8월
2/4분기	청소년 수련시설 및 도시락 제조업소 합동점검	4~5월중
2/4분기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4월
2/4분기	민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협의회 개최	4~5월중

2)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1) 식중독예방 관리계획 수립

○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관리계획 수립추진

-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 식중독 취약시설 지도점검
- 식중독 예방 및 홍보강화

2) 민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협의회 운영

○ 대전지방식약청,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참여 협의회 개최

- 식중독 발생 예방과 발생 저감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제 유지

3) 식중독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 주요 발생 원인 차단을 위한 계절별, 원인균별 맞춤형 예방 요령 등 집중 홍보

○ 능동적 실천 참여 유도로 영업주 자율적인 위생환경 개선 추진

나) 대비단계

1) 식중독 연중 비상근무 체계 확립

○ 식중독 발생시 신속정확한 보고 및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식중독 신고(보고)시 모바일 보고시스템 적극 활용

2)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4월)

○ 모바일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 활용 신속 보고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군, 보건소, 도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모의훈련

3) 근원적인 식중독 발생 차단을 위한 취약시설 등 지도점검 실시

○ 학교급식소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합동점검(3월,8월)

- 식중독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등 홍보활동 병행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시락제조업소 합동점검 (4월~5월)

-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강화

○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필요시 수시)

다) 대응단계

1) 설사(식중독)환자 발생시 위생방역부서 합동 역학 조사

○ 방역부서 : 조사총괄, 환자·조리종사자 및 노출자 검체 채취

- 역학조사결과, 식품위생 부서 통보 및 도에 결과보고

○ 위생부서 : 환경검체(보존식, 조리도구, 음용수 등) 채취

- 음식 조리과정 조사(구입, 전처리, 조리, 배식 등)
- 역학조사 결과 24시간 이내 식중독보고시스템 입력
- 환경검체 검사결과 및 위생점검보고서 방역부서에 통보

⇒ 신속한 원인규명 및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부서간 협력 강화

라) 복구단계

1)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

○ 환경검체 검사결과, 위생점검보고서, 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식중독 원인이 되는 원인균, 위생환경 등 분석 검토

- 추후 식중독 발생 확산방지 및 예방활동 및 행정처분 기본자료로 활용

2) 식중독 발생 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환경 및 인체검체 검사결과, 역학조사서 등 검토 후 식중독 발생 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Ⅲ. 재정투자계획

III 재정투자계획

1. 2016년도 총 소요예산 : 596,549백만원

2. 총 괄(국비 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전년대비 증감
계	622,931	543,860	△79,071
자연재난	291,465	310,666	19,201
사회재난	103,703	91,044	△12,659
안전관리	227,763	142,150	△85,613

3. 자 체(국비 보조사업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전년대비 증감
계	52,366	52,689	323
자연재난	6,973	5,743	△1,230
사회재난	16,897	17,876	979
안전관리	28,496	29,070	574

4. 재난유형별 세부사업 내역

1 총 괄(국비 보조사업)

① 자연재난

(단위: 백만원)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 계		291,465	180,476	27,788	83,201	310,666	208,862	43,538	70,999	
풍수해	소 계	258,250	151,740	23,309	83,201	234,971	135,431	28,541	70,999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8,900	36,950	6,085	25,865	44,977	22,489	6,746	15,74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640	3,320		3,320	4,236	2,118		2,118	
	소하천 정비사업	43,086	21,543		21,543	38,386	19,193		19,193	
	재난종합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	250	100		150	250	100		150	
	풍수해보험료 지원	400		120	280	400		120	280	국직지 가접원
	서민밀집지역 위험 개선사업	3,500	1,750	525	1,225					
	우수저류시설 설치	24,068	12,034		12,034	24,061	12,031		12,030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3,300	1,650	50	1,600	7,142	3,571	508	3,063	
	지방하천정비사업	82,899	55,000	13,419	14,480	87,140	55,000	18,031	14,109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					3,420	1,710		1,710	
	국가하천유지관리	5,826	5,826			5,826	5,826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19,381	13,567	3,110	2,704	19,133	13,393	3,136	2,604	
가뭄	소 계	15,009	13,307	1,702	0	15,629	9,420	6,209	0	
	한발대비용수개발	2,700	2,400	300		10,415	4,800	5,615		
	일반농산어촌개발 (소규모용수개발,지표수보강개발)	8,955	7,935	1,020		2,513	2,227	286		
	농촌용수개발 (다목적농촌용수개발)	3,354	2,972	382		2,701	2,393	308		
지진	소 계	0	0	0	0	950	950	0	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950	950			특교
농작물 피해	소 계	18,206	15,429	2,777	0	18,880	16,000	2,880	0	
	농작물재해보험	18,206	15,429	2,777		18,880	16,000	2,880		
녹조	소 계	0	0	0	0	52,969	47,061	5,908	0	
	가축분뇨공공처리					7,690	7,690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공공하수처리시설					12,724	10,504	2,220		
	농어촌마을하수도					19,822	18,134	1,688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127,33	10,733	2,000		

② 사회재난

(단위: 백만원)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 계		103,703	60,595	18,254	24,853	91,044	55,148	11,499	24,396	
화재 폭발	소 계	18,190	9,458	7,458	1,274	10,402	8,232	1,298	872	
	소방장비 현대화	2,274	1,137	1,137		5,340	5,340			
	노후소방장비 지원	9,850	4,925	4,925		500	500			
	화재대책활동 기반조성	70	49	21						
	대테러 및 특수소방 장비 보강	200	100	100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현대화					852	426	426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2,980	1,768	606	606	555	315	120	120	
	감시인력 배치	1,013	507	253	253	1,040	520	260	260	
	방화관리 용역지원	353	247	53	53	368	258	55	5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74	37	19	18	91	45	23	2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376	688	344	344	1,656	828	414	414	
산불	소 계	8,603	3,441	1,748	3,414	9,216	3,686	1,855	3,675	
	개인진화장비 등	449	180	89	180	352	141	70	141	
	산불전문진화대운영	6,979	2,791	1,420	2,768	7,471	2,988	1,518	2,965	
	산불진화차	549	219	118	212	459	183	83	193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626	251	121	254	934	374	184	376	
시설물 사 고	소 계	2,604	2,270	334		1,682	1,454	228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149	980	169		1,352	1,162	190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455	1,290	165		330	292	38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교통재난	소 계	4,287	3,584	351	351	4,287	3,584	351	351	
	근해 노후어선 감척사업	774	774			774	774			
	연안 노후어선 감척사업	3,513	2,810	351	351	3,513	2,810	351	351	
생물재난	소 계	14	7	3	4	15	8	3	4	
	생물테러 물자 비축 및 관리	14	7	3	4	15	8	3	4	
감염병	소 계	33,020	17,745	4,975	10,300	28,457	14,094	4,379	9,984	
	국가예방접종	25,741	12,871	3,827	9,043	25,741	12,871	3,827	9,043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4,720	3,784	650	286	139	133	6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및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393	134	96	163	393	134	96	163	
	국가결핵예방	1,907	841	338	728	1,925	841	386	698	
	에이즈 및 성병 예방	259	115	64	80	259	115	64	80	
가 축 전염병	소 계	36,985	24,090	3,385	9,510	36,985	24,090	3,385	9,510	
	가축방역사업	17,122	8,836	2,463	5,823	17,122	8,836	2,463	5,823	
	살처분보상금지원	13,375	10,700	535	2,140	13,375	10,700	535	2,140	
	구제역예방백신	6,488	4,554	387	1,547	6,488	4,554	387	1,547	

③ 안전관리

(단위: 백만원)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 계		227,763	205,562	9,749	12,352	142,150	119,595	7,553	15,002	
생활안전	소 계	206,179	194,320	5,580	6,279	117,568	107,438	4,382	5,748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2,022	1,011	202	809	2,340	1,170	234	936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400	200	40	160	400	200	40	160	
	자연휴양림보완사업	4,440	2,220	1,310	910	4,900	2,450	1,325	1,125	
	자연휴양림복합 재해대응사업	170	85	42	43	170	85	43	42	
	승강기 사고	70	35	-	35	48	48	-	-	
	물놀이	56	28	8	20	30	15	4.5	10.5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	1,620	810	243	567	1,620	810	243	567	
	가스사고	968	968			2,075	1,660		415	
	사회복지시설	15,486	8,016	3,735	3,735	9,984	5,000	2,492	2,492	
	예당지 물넘이 확장사업	17,237	17,237			17,000	17,00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6,710	156,710			71,000	71,000			
	삽교천방조제 배수갑문확장	7,000	7,000			8,000	8,000			
교통사고	소 계	13,340	7,254	3,119	2,867	14,642	7,321	2,121	5,2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288	644		644	1,400	700		7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46	323		323	1,000	500		500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3,000	1,500	1,000	500	4,200	2,100		2,100	
	생활권이면도로 개선	650	400		150	300	150		150	
	노인보호구역 개선	1,518	1,268		250	500	250		250	
	위험도로 개선 사업	6,238	3,119	2,119	1,000	7,242	3,621	2,121	1,500	
산업안전	소 계	3,434	1,717		1,717	5,150	2,575		2,575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 개선	3,434	1,717		1,717	5,150	2,575		2,575	
재난안전일반	소 계	180	90	46.75	43.25	160	80	46.75	33.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80	90	46.75	43.25	160	80	46.75	33.25	
자살예방	소 계	4,630	2,181	1,003.5	1,445.5	4,630	2,181	1,003.5	1,445.5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	550	250	90	210	550	250	90	21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지원	32	32			32	3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상담, 검사 등)	300	75	67.5	157.5	300	75	67.5	157.5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	768	384	384		768	384	384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2,980	1,440	462	1,078	2,980	1,440	462	1,078	

2 자 체(국비 보조사업 제외)

① 자연재난

(단위: 백만원)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총 계		6,973	4,070	2,903	5,743	3,395	2,348	
풍수해	소 계	6,973	4,070	2,903	5,708	3,375	2,333	
	재해위험지구 감시 CCTV 시스템 구축				225	225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1,000	1,000		748	748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22	22		
	하천기본계획 수립	1,500	1,500		1,380	1,380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4,473	1,570	2,903	3,333	1,000	2,333	
대설 한파	소 계	0	0	0	35	20	15	
	재난대응훈련 추진				35	20	15	

② 사회재난

(단위: 백만원)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총 계		16,897	5,757	11,140	17,876	6,639	11,237	
화재 폭발	소 계	3,231	3,031	200	4,120	3,920	200	
	화재조사전문화 추진	341	341		328	328		
	화재대책활동 기반조성	299	299		813	813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585	585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현대화	2,191	2,191		1,994	1,994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400	200	200	400	200	200	
산불	소 계	6,797	979	5,818	6,926	969	5,957	
	산불감시원	4,071	407	3,664	4,419	442	3,977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등	806	188	618	687	163	524	
	헬기임차 운영	1,920	384	1,536	1,820	364	1,456	
감염병	소 계	107	65	42	68	68	0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및 예방홍보	107	65	42	68	68	0	
가 축 전염병	소 계	6,762	1,682	5,080	6,762	1,682	5,080	
	가축방역사업	6,762	1,682	5,080	6,762	1,682	5,080	

③ 안전관리

(단위: 백만원)

분야	세 부 사 업	'15년 실적			'16년 계획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총 계		28,496	15,485.5	13,010.5	29,070	17,892.7	11,177.3	
생활안전	소 계	14,749	4,679.5	10,069.5	11,768	3,718.5	8,049.5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안전관리요원 배치)	120	36	84	120	36	84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850	425	425	850	425	425	
	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설치	51	25.5	25.5	51	25.5	25.5	
	사회복지시설	12,758	3,902	8,856	9,777	2,941	6,836	
	소규모 등산로 정비	970	291	679	970	291	679	
교통사고	소 계	9,995	9,640	355	13,285	12,885	400	
	횡단보도안전대기장치	510	255	255	600	300	300	
	지방도 유지관리	3,003	3,003		8,433	8,433		
	위험교량 개선	5,000	5,000		2,300	2,30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00	100	100	200	100	100	
	교통연수원 운영	1,270	1,270		1,650	1,650		
	교통안전관리 워크숍~홍보물	12	12		12	12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	-		90	90		
산업안전	소 계	2,402	721	1,681	2,661	838.2	1,822.8	
	산업단지	2,402	721	1,681	2,661	838.2	1,822.8	
자살예방	소 계	1,350	445	905	1,356	451	905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7	37		33	33		
	생명사랑행복마을 육성	233	70	163	233	70	163	
	자살자 유가족 관리사업 지원	10	3	7	10	3	7	
	지역정신보건사업(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비)	890	267	623	890	267	623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	160	48	112	160	48	11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재개발 및 보급	20	20		30	30		



Ⅳ.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Ⅳ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1. 업무 개요

○ 재난관리 기능

- 재난 발생시 피해지역의 안정을 도모코자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임무와 역할에 대해 구분한 업무

○ 재난관리 기능간 상호협력 체계

- 재난관리기능 간 재난상황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
- 재난관리기능별 명확한 임무와 역할 지정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각 기능별 책임 범위 설정 및 기능 간 충돌 방지
- 재난관리기능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2. 주요업무

업무·영역	주관부서	주 요 업 무	협력부서
① 상황관리 총괄	사회재난과 등 재난담당과	○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총무과 정보화지원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사회복지과	○ 피해주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지원	저출산 고령화정책과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관리과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해양정책과
④ 긴급통신 지원	정보화지원과	○ 통신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KT/한전
⑤ 시설응급복구	자연재난과외 시설관리 부서	○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도로교통과, 수산과 등
⑥ 에너지 기능복구	에너지산업과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⑦ 재난 수습 홍보	홍보협력관	○ 재난 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정보화지원과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예산담당관
⑨ 교통대책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 육상(육로,항공),해상교통수단 지원	수산과
⑩ 의료·방역	보건정책과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식품의약과 축산과
⑪ 자원봉사관리	도민협력새마을과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총무과
⑫ 사회질서유지	자치행정과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충남경찰청
⑬ 수색, 구조·구급	119광역기동단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화재대책과

3.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1 상황관리 총괄계획

1-1. 목 적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적극 보호

○ 재난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1-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등 재난담당과

○ 지원기관 : 각 실·과, 각 시·군, 유관기관

1-3. 관련 대응업무

1-3-1.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가. 목 적

○ 연중 무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 충청남도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다. 현 황

○ 운　　영 : 연중무휴, 2인1조, 3교대 근무원칙

○ 지휘·감독 : 재난담당국장

라. 주요임무

○ 재난상황 현황파악 및 보고 : 기상개황, 재난발생상황 등

○ 재난 및 기상특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 중요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 재난관련 정보수집 : 재난·강우량 정보 등 자료수집

1-3-2. 재난상황 정보 실시간 제공

가. 목 적

○ 재난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전광판, 인터넷 등을 통해 재난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

나. 시 기

○ 재난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기상 예비특보부터

다. 방 법

○ 휴대폰을 통한 재난정보 문자발송

- CBS : 국민안전처 ↔ 이동통신 사업자 협약체결

▸ 재난우려지역 전 휴대폰 가입자에게 문자정보 발송(국민안전처)

☞ CBS : Cell Broadcasting Service, 대량문자방송형서비스

○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한 재난상황 정보제공 : 각 시·군

1-3-3.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상시유지

가. 목 적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군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나. 협약기관 현황

○ 유관기관 : 23개 기관(협약서 별첨)

1-4-4.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시스템 관리

○ 국민안전처의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시스템」을 재난종합상황실 모니터에 연계하여 도내 주요 지역의 실시간 재난영상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대응지원

○ 추가 설치되는 시군의 재난감시 CCTV의 통합·연계화 추진

2 긴급생활 안정지원계획

2-1. 목 적

○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 상시대응체제 유지 및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

2-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사회복지과(041-635-4243)

○ 지원기관 :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양물류센터, 충남도교육청

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재해구호협회	차장	배천직	02-6093-9595	1969@relief.or.kr	
함양물류센터	차장	김정길	055-963-2307	jkkim0530@relief.or.kr	
대한적십자사	대리	박민규	042-220-0123	skmk0320@gmail.com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리	장성익	070-8897-0506	4898423@hanmail.net	
충청남도교육청	담당자	서문학	041-635-7943	kmcsmh@cnoe.or.kr	

2-4. 관련대응업무

가. 재해·구호팀의 역할 및 편성기준

1) 역 할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자 지원상황 관리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지역구호센터 운영상황 관리

○ 이재민수용 및 급식상황 관리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 생계구호 상황 관리

○ 이재민 구호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체계 유지

2)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	편성기준		근무 인원	근무편성
비 상 1단계	태풍	○ 태풍주의보·경보	1	- 사회복지과 1명 ※ 비상발령시부터 자체 근무
	호우	○ 호우주의보·경보		
비 상 2단계	태풍	○ 태풍주의보·경보	2	- 사회복지과 1명 ※ 비상발령시부터 자체 근무
	호우	○ 호우주의보·경보		
비 상 3단계	태풍	○ 태풍주의보·경보	3	- 사회복지과 2명 ※ 비상발령시부터 자체 근무
	호우	○ 호우주의보·경보		

나. 예방 및 대비

1) 상호협력체계 구축

○ 대 상 : 지자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민간구호단체

○ 내 용 : 이재민 급식제공, 세탁 및 주택복구 등 봉사활동 지원, 구호물자 배분·운송, 임시주거시설 및 의연금 지원

○ 방 법 : 민간 구호단체와의 사전 협약을 통한 인력풀 구성, 재해 발생시 협조요청. 구호지원기관 업무담당별 비상연락체계 구축

2) 기금운용

○ 설치년도 : 1983. 1. 1.(조례제정 1992. 12. 3.)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추진

3)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물자세트 비축·관리

재해구호물품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물	지원대상
일시구호세트 (1인 기준)	다목적보온덮개, 치약(20g), 칫솔(일회용), 비누(35g), 수건, 화장지(50매)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 한 자
응급구호세트 (기본용,1세대 2명)	이불 1장, 담요 1장, 칫솔(일회용)2개, 치약(175g) 1개, 세면비누(100g) 2개, 수건 2장, 화장지 2개, 베개 2개, 면장갑(반코팅) 2세트, 핸드폰충전기 2개, 바닥용 매트, 슬리퍼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개인용,1인기준)	(남) 간소복 1벌, 속내의 1벌, 면도기 1개, 양말 1켤레(4종) (여) 간소복 1벌, 속내의 2벌, 생리대 1조, 양말 2켤레(4종)	
재가구호세트 (4인1세대 기준)	휴대용가스렌지 1개, 코펠 1세트, 수저 4벌, 세탁비누 250g 1개, 세탁세제 1kg 1개, 주방세제 1kg 1통, 고무장갑 1켤레, 수세미 2개, 면장갑 1켤레(9종)	
개별구호물품	1) 일시구호세트용 : 1인당 생수 1병 2) 응급 기본용 : 1세대당 생수 2병 3) 재가구호세트용 : 1세대당 쌀 10kg,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부식류 1세트 4) 기타 : 즉석식품, 분유, 젖병, 기저귀, 모기약 등	일시,응급,재가 구호세트 지급 대상

※ 1. 개별구호물품은 필요에 따라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
- 응급구호물품 지급 시 재가구호세트의 물품 중 필요한 사항 지급 등
2. 주택침수, 반파 이상 재해 피해 시, 시·군 재해구호담당부서에서 지체 없이 해당(시·군 보관창고 보관 분) 구호품 지급

3 재난현장 환경정비계획

3-1. 목 적

○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정비하는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계획 수립

3-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환경관리과

○ 지원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소방본부, 육군 제32사단

3-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도 환경관리과	환경서기보	이용진	(041) 635-4452	lyj8185 @korea.kr	
금강유역환경청	행정주사	도태용	(042) 865-0766	dtyong61 @korea.kr	
도 소방본부	지방소방경	유병찬	(041) 635-5735	ybc6914 @korea.kr	
육군 제32사단	중위	박성택	(042) 829-6341	pst001 @army.mil	

3-4. 관련 대응업무

가. 홍수·태풍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조정

- 쓰레기 수집 및 재활용, 임시저장소 설치, 쓰레기 분리 /운반

다. 사고로 인한 각종 기름·화학물질·유해가스 등 유해물질의 수거 및 처리

라. 각종 쓰레기로 인한 전염병 등 2차 피해 예방

마. 일상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쓰레기처리 지시사항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수행

- 쓰레기 분리, 수거일자, 버리는 장소

바. 쓰레기 제거 과정과 관련된 일반 대중 건강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
사. 쓰레기 제거과정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
아. 특정 쓰레기에 대한 최종매립지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쓰레기 집하와 임시 저장소 사전 파악
- 야채, 음식, 동물 사체, 건축물 쓰레기, 타이어 등

3-5. 대응 대책

가. 종합상황반 편성·운용
- 긴급 출동 현황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 초동조치
- 폐기물 2차오염 및 인체유해 여부 확인, 사고 원인 분석
- 폐기물 수거를 위한 소요 인력, 장비 파악 및 유관 기관 전파
- 사고범위의 신속한 확인 및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나. 체계적 현장 대응(폐기물 수거처리반)
- 수거 인력 및 장비 단계적 투입 등 현장 수습
- 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긴급복구 협력업체, 수리업체를 활용한 신속한 복구 시행
- 복구기간 중 수용가에 계속적인 폐기물수집을 위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한 수집·운반·처리

다. 2차 오염 예방 등 지속관리(사후 관리 지원반)
- 필요시 수거장비 및 인력 지원
-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인 최소화 되도록 관리
- 수거지역의 폐기물로 인한 2차오염 예방 및 방역기관 협조체계 유지 오염지역에 주기적인 방역 관리

【수거처리반별 대응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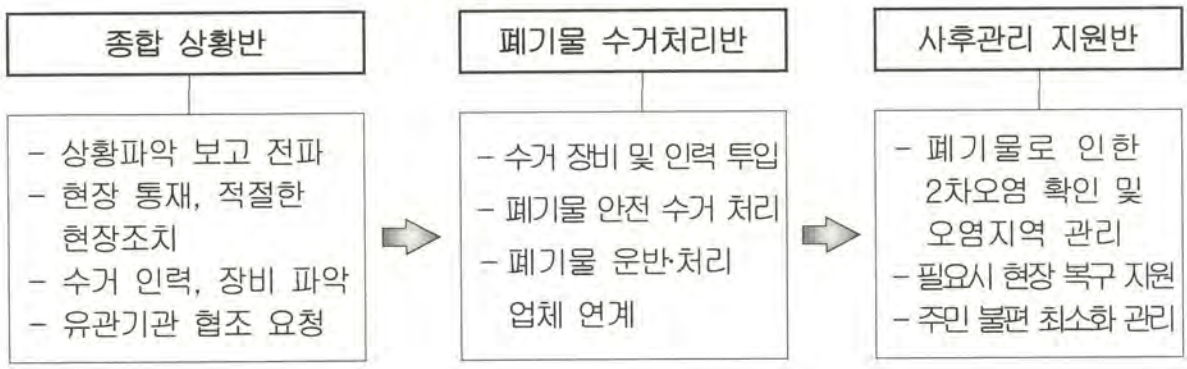

4 긴급통신지원 계획

4-1. 목 적

가. 각종 재난·재해발생시 국가기반체계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연중무휴 24시간 대국민 서비스체계 확보

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연 및 인적재해(태풍/집중호우/폭설, 한전정전)에 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위기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구축

4-2. 책임 및 협력기관

가. 책임기관 : 정보화지원과

나. 협력기관 : 시·군, ㈜KT,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4-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가. 도 정보통신담당자 비상연락망

담 당			업 무 분 장	연 락 처 휴 대 폰
소속	직 위	성 명		
정보화 지원과	과 장	조한영	정보통신재난 업무총괄	사) 041-635-2360 휴) 010-8144-2757
	팀 장	서연욱	정보통신재난상황 종합관리	사) 041-635-3705 휴) 010-2002-7907
	실 무	연만영	안전관리대책 강구 시설 피해복구 지원	사) 041-635-3723 휴) 010-2411-6317

나. 시·군 정보통신담당자 비상연락망

시·군명	부서명	직위	성 명	연 락 처		
				전 화(041)	팩스(041)	이메일
천안시	정보통신과	방통6	이윤희	521-2094 010-3265-0401	521-2099	lyh110710@korea.kr
공주시	미디어담당관	방통7	김응만	840-8120 010-7278-3233	840-2200	dragom@korea.kr
보령시	새마을정보과	방통8	김세연	930-3600 010-7724-6792	930-3823	tpdus302@korea.kr
아산시	정보통신과	방통6	김재현	540-2299 010-7254-1800	540-2198	vouch@korea.kr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	방통6	정만수	660-3333 010-5409-8104	660-2357	jung1785@korea.kr
논산시	자치행정과	방통7	최용현	746-5253 010-2426-7996	746-5219	o99o99@korea.kr
계룡시	자치행정과	방통7	박은민	042-840-2153 010-6426-0317	840-2112	march3388@korea.kr
당진시	홍보정보담당관	방통7	김준기	350-3301 010-4149-4744	350-3169	djc3200@korea.kr
금산군	기획감사실	방통6	김영문	750-2253 010-5408-4449	750-2699	geumsan@korea.kr
부여군	기획감사실	방통7	양회균	830-2100 010-3322-6672	830-2069	yang299@korea.kr
서천군	자치행정과	방통7	임무성	950-4052 010-9154-5490	950-4699	moosung@korea.kr
청양군	안전재난과	방통6	송교만	940-2200 010-2024-5354	940-2459	ksman@korea,kr
홍성군	행정지원과	방통6	김재헌	630-1634 010-8821-1458	630-1699	kljhg45@korea.kr
예산군	총무과	방통7	황선석	339-7243 010-5427-0012	339-7249	sshwang@korea.kr
태안군	행정지원과	방통6	김민석	670-2300 010-6750-3126	670-1500	intelsat@korea.kr

4-4. 국가정보통신망 정보통신사업자 재난대응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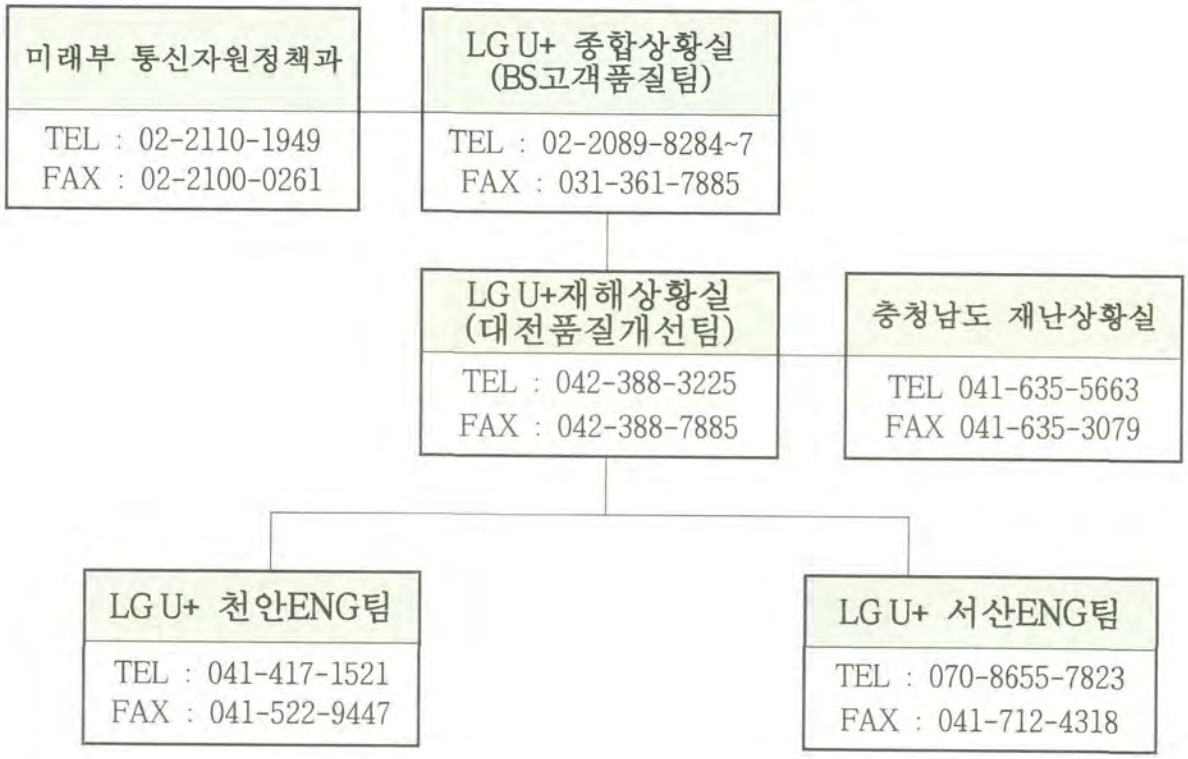

※ 재난담당 : LG U+ 서부고객지원팀(이선규부장, 010-8080-7584)

※ 노사담당 : LG U+ 서부공공고객팀(조남용부장, 010-8080-8091)

○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비상연락망

분 야	주무(지원)부서	연락전화번호		팩스번호
		과 장	담 당	
정보통신분야	정보화지원과	041-635-2360	041-635-3705	635-3049
시설분야 (지원부서)	KT 충남본부	042-478-7214	042-478-7791	478-7225
	LG U+ 천안지사	010-8080-8072	010-8080-8410	417-1505
	SK텔레콤 대전지사	-	010-5430-0030	-
	SK텔레콤 청사통신망	-	010-6480-4280	-

5 시설 응급복구계획

5-1. 목 적

○ 재난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 긴급복구를 위한 필요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초기대응 철저

5-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자연재난과 등 시설담당부서

○ 지원기관 : 시·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3. 관련 대응업무

가.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인력은 노동부에
  기타인력은 국방부(인근부대)에 지원요청

나.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주택이 반파되었을 경우 건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하되, 주택수리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다. 도로시설 긴급복구 방법

- 비축자재를 사용하는 긴급복구 방법
  · 강판교 가교
  · I 빔 조립식교각 가교

· 파형강관 가도
· 흄관 가도

- 비축자재를 사용치 않는 긴급복구 방법
  · 하상에 가도 설치
  · 교량 좌·우측에 인근도로와 연결하는 접속도로 설치
  · 기타 응급복구

라. 우회도로 유지관리

- (우회도로 지정) 긴급복구 대비하여 통행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최단거리로 복수로 지정 관리
- (우회도로 개수) 우회도로 노폭이 6m 이하로 협소하거나 횡단 구조물의 통과높이,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중장비의 통행이 어려운 개소에 대하여는 확장 및 개수계획을 수립, 평시사업으로 추진
- (교량 유지관리) 도로의 선형개량 및 개수공사로 인하여 동일 노선상에 별도의 교량이 신설될 경우 구도로 상의 이용 가능한 기존 교량은 이격거리 및 통과하중을 고려 비상시 우회도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 (도심지 통과 우회도로 개발) 주요 도심지를 통과하는 군 보급로는 별도로 지정 관리하며, 가급적 도시를 우회할 수 있는 순환도로를 개발
- (가도 및 세월교 설치) 비상시에 원거리 우회를 하지 않고 단거리 우회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 부근의 경작지, 하천변 등에 개수공사를 실시하면 우회할 수 있는 가도 설치계획 등을 동시 수립하고 필요시 영구적인 세월교 설치

6 에너지 기능복구계획

6-1. 목 적

○ 가스, 전기, 유류 등 도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6-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에너지산업과

○ 지원기관 : 한국전력공사충남본부,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6-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가. 에너지산업과

구 분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비고
전력분야	남승홍	공업주사	041-635-3416 010-5387-44228	
가스분야	김형수	공업주사	041-635-3417 010-8824-5043	
석유분야	김형수	공업주사	041-635-3417 010-8824-5043	

나. 유관기관

분야별	기 관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연 락 처
전 기	한국전력공사 충남본부 중부건설처	전남 나주 빛가림동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 서구 변동	안전재난관리팀 총무과 배전운영실 경영지원팀	061-3456-8825 042-608-2331 042-608-2168 042-717-4326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서천화력발전소	충남 보령시 대천동 충남 보령시 오천면 충남 서천군 서면	재난안전팀 안전품질팀 안전품질팀	070-7511-1815 070-7511-2391 070-7511-6030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재난관리팀 품질안전과	02-2161-1771 070-5007-3111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재난관리팀 재난안전팀	070-5000-1441 070-5000-2611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사	서울강동구 명일동 대전 동구 인동	안전관리팀 고객지원팀	02-4402-101 042-280-3400
	한전KPS(주)	경기 성남시	안전재난팀	031-710-4041
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 서구 탄방동	검사부	042-485-0019
유류	한국석유유통협회	대전 중구	사무국	042-223-1875
광산	대한석탄공사	경기 의정부시	비상계획관	031-828-0727
	한국광물자원공사	서울 동작구	비상계획팀	02-840-5726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 종로구	산지복원실	02-3702-6585
집단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 용인시	경영지원실	031-2604-300
승강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전 대덕구	관리부	042-633-0450

- 관련 산하 재난관리기관 상황실과 네트워크로 연계, 상호 정보공유
- 관련 기관간 연계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 지원

6-4. 전기분야

가. 현 황

○ 발전소(4)

대 상 시 설			소 재 지	인력 (명)	연 락 처
발전회사명	발전소명(연료)	설비용량 (MW)			
한 국 중부발전(주)	보령화력 (유연탄, 가스)	5,350	충남 보령시	864	070-7511-2391
	서천화력 (무연탄)	400	충남 서천군	231	070-7511-6030
한 국 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유연탄)	4,000	충남 태안군	717	070-5007-3111
한 국 동서발전(주)	당진화력 (유연탄)	4,000	충남 당진군	655	070-5000-2611

○ 송변전시설

대 상 시 설			소 재 지	인력 (명)	연 락 처
지 사 명	선로길이 (C-m)	변 압 기 (Bank)			
충남본부	1,345	765KV 3 345KV 13 154KV 117	대전 동구 용전동	1,499	042-608-2341

○ 배전시설

대 상 시 설					소 재 지	인원 (명)	연 락 처
지 사 명	회선수	선로길이 (C-km)	지지물 (본)	변압기 (대)			
충남본부	457	47,933	966,006	164,066	대전 동구 용전동	1,499	042-608-2341

나. 재난대응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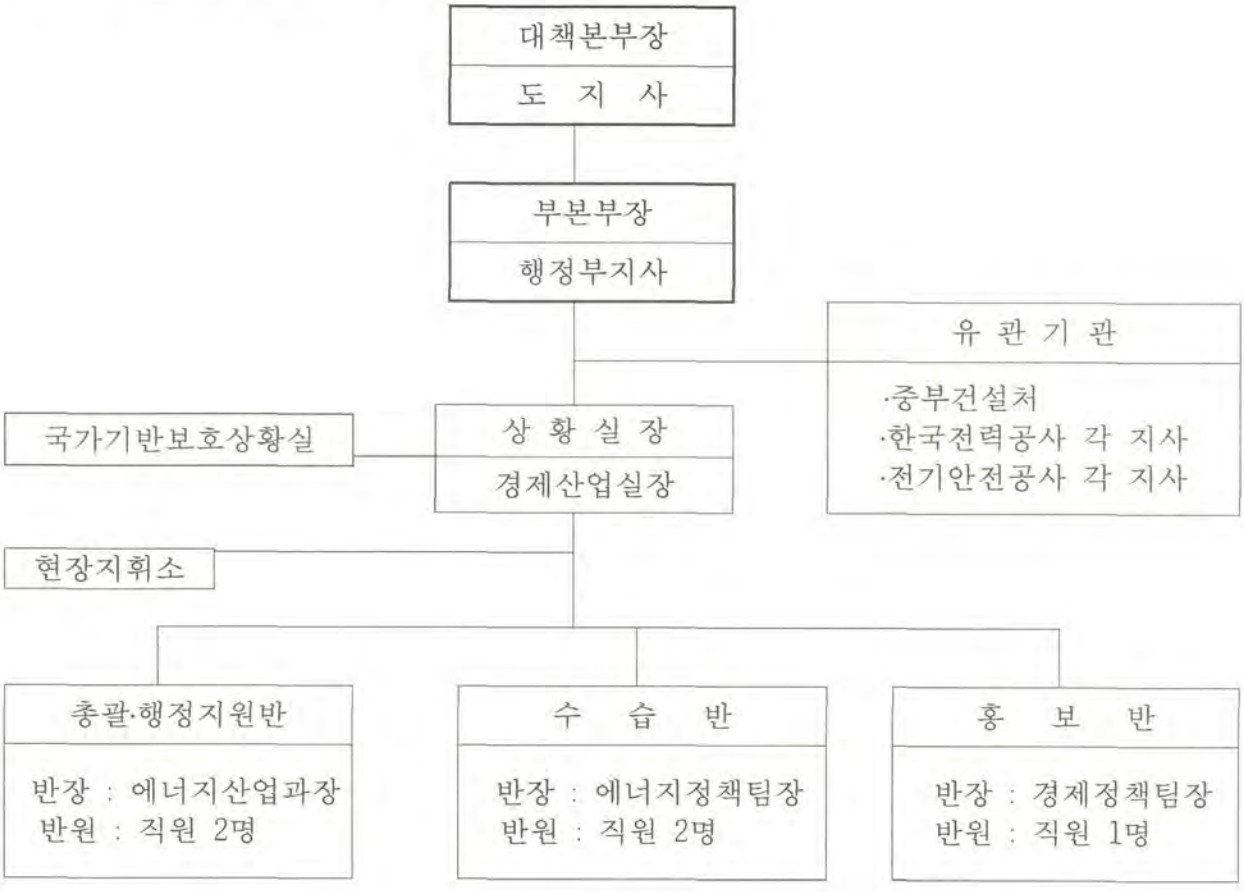

다.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계획

○ 각종 재난 발생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 확보된 자원 동원 및 재난상황의 규모에 따라 타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 지원

-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인력·장비 등을 사전 확보

< 한국전력공사 충남본부 >

○ 인력보유현황 : 배전전기원(210명)

○ 협력업체 지원인력현황 : 배전(99명), 협력업체(34개)

○ 전공인력 동원가능인력(390명)

○ 한전복구장비 : 활선작업차(18대), 저압보수차(23대), 발전차(1대), 이동용변압기(78대), 협력업체 복구장비(34개업체), 크레인전주차(39대), 트럭(56대), 기타 작업차(65대)

< 중부건설처 >

○ 인력보유현황 : 송전전기원(108명)

○ 협력업체 지원인력현황 : 송전(19명), 변전(13명), 협력업체(34개)

○ 전공인력 동원가능인력(18명)

○ 한전복구장비 : 이동변압(1대), 트럭(4대), 기타작업차(15대)

< 발 전 회 사 >

○ 중부발전(보령·서천화력)

- 오일펜스(1,000m), 유처리제(3,400L), 유흡착제(340kg), 가마니(250매), 모래주머니(450장), 크레인(1대), 지게차(2대), 불도저(5대), 페이로더(1대), 노면청소차(1대), 소방차(1대), 트럭(2대), 포크레인(1대), 양수기(10대)

○ 서부발전(태안화력)

- 오일펜스(1,500m), 유처리제(1,080L), 유흡착제(450kg), 가마니(50매), 모래주머니(150장), 크레인(3대), 지게차(3대), 불도저(10대), 페이로더(1대), 폼트레일러(1대), 노면청소차(1대), 트럭(4대), 양수기(15대)

○ 동서발전(당진화력)

- 오일펜스(1,000m), 유처리제(792L), 유흡착제(270kg), 가마니(200매), 모래주머니(500개), 지게차(1대), 트럭(1대), 로우더(1대), 양수기(10대), 삽(50개), 곡괭이(12개), 새끼(10타래), 모래(4톤)

6-5. 석유분야

가. 현 황

○ 생산시설(민간사업체 공장)

대상시설	소재지	생산능력 (천배럴)	생산실적 (천배럴)	시 장 점유율	근무 인원	연 락 처
현 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	142,350	121,316	13.6%	850	041-660-5223

※ 사업체별 시장점유율 및 생산량(' 13년 기준)

○ 위기관리 기구

구 분	기 능
석유비상대책회의	ㅇ 석유비상대책회의 - 에너지 비상대책 관련 정책 조율 ※에너지산업과장, 관련 실·과장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에너지비상대책반	ㅇ 에너지비상대책반 - 에너지 절약대책 및 위기극복 대책 추진 - 종합적 에너지위기 대응 대책추진 - 국내외 석유시장/수급상황 모니터링

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계획

○ 각종 재난 발생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사전 확보된 자원을 동원 신속 복구토록 하고, 재난상황의 규모에 따라 타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 지원

- 재난 발생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인력·장비 등을 사전 확보

○ 기타 기관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형 재난에 대비

○ 국가재난 사태 발생시 동원 가능 물자

구 분	대리점 (22개소)	주유소 (1,159개소)	일반판매소 (316개소)	부생판매소 (8개소)	이동차량 (2,007대)
저장능력(kl)	25,820	159,910	7,840	530	6,021

○ 1일 유류 소비량

구 분	휘발유	등 유	경 유	B-C유	기 타
소비량(kℓ)	1,584	1,082	4,029	1,715	86

<한국석유공사>

○ 재난발생시 동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

- 인원(923명), 장비(소방차 2대, 진공펌프카 1대, 유처리제 61,608 L, 유흡착제 3,620 kg, 오일펜스 6,388m)

<에너지관리공단>

○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

- 시설 및 장비 : 포터크레인(1대), 지게차(1대), 비상출동차량(4대), 배수용 펌프(10대), 용접기(6대)

○ 인력

- 공단 본·지사 및 대전열병합사업본부 임·직원
- 열사용 기자재 및 부대시설 제조업체 종사자 직원
- 재난관리협조단체인 한국난방협회의 회원사 협조

6-6. 가스분야

가. 현 황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사업소

업 체 명	소 재 지	근무인원	대표전화
충 청 지 사	대전 중구 중촌동	112	042-229-3611
전 북 지 사	전북 익산시 목천동	104	063-850-3800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공급가구	근무인원	대표전화
중부도시가스㈜	충남 아산시 음봉면	398,800	185	041-530-1900
㈜서해에너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	111,900	152	041-350-7700
㈜충남도시가스	대전 중구 중촌동	13,100	150	042-336-5205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기 관 명	소 재 지	근무인원	대표전화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계룡로	32	042-485-0019
충남북부지사	충남 천안시 청수로	34	041-561-0019

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동원 계획

○ 재난 발생시 업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동원가능 자원으로 신속히 복구하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 타기관에 복구지원 요청

- 재난 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인력·장비 · 자재 등을 사전 확보

○ 기타 기관도 재난 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 대형 재난에 대비

< 도시가스 공급업체 >

○ 인력동원 : 남부·북부권(170명), 서북부권(100명), 계룡권(150)

○ 안전장비 : 가스검지기, FID차량, 공기호흡기, 산소측정기 등

○ 복구장비 : 배관절단기, 용접기, 이동발전기, 크레인, 작업차량 등

< 한국가스공사 >

○ 인력동원 : 서해권(152명), 중부권(185명)

○ 안전장비 : 가스검지기, FID차량, 공기호흡기, 산소측정기 등

○ 복구장비 : 배관절단기, 용접기, 이동발전기, 크레인, 작업차량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 인력동원

- 비상근무 제 1호(소속직원의 1/3이상), 비상근무 제 2호(소속직원의 1/5이상), 비상근무 제 3호(소속직원의 1/6이상), 비상근무 제 4호 (소속직원의 1/10)

- 현장근무 : 관할 지역본부·지사별 사고조사반 1개팀 운영

○ 동원장비 : 가스검지기, 전자동산소인공소생기, 긴급출동 차량 등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

기관	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8
	에너지안전과	044-203-5132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	041-635-3417
	안전정책과	041-635-5533
	재난종합상황실	041-635-5541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상황실	750-1300-1304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5-0019
	충남북부지사	041-561-0019
한국가스공사	본사 상황실	053-670-0350
	충청지역본부	042-229-3403
한국엘피가스산업협회	충남지회	041-534-3915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충남지회	041-333-1312
중부도시가스	상황실	041-530-1800
서해에너지	상황실	041-350-7700
충남도시가스	상황실	042-336-5201

7 재난수습 홍보계획

7-1. 목 적

○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과 대처요령 홍보로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

7-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홍보협력관

○ 지원기관 : 각 시군, KBS 등 3개 방송사

7-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 급 (직 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홍보협력관	지방행정주사보	이상희	635-4916 010-6477-1125	sanghee206@korea.kr	
대전KBS	부장	박장훈	010-9011-5492	pjh@kbs.co.kr	
대전MBC	국장	서주석	010-5455-0081	jsseo2tjmbc.co.kr	
TJB	국장	조상완	010-2954-2272	swcho@tjb.co.kr	

7-4. 관련 대응업무

가. 재난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재난상황, 피해정도, 주민행동요령 등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

○ 신속한 재난상황 상황 실시간 보도자료 작성·배포

나. 언론사 브리핑 실시

○ 재난현장 취재지원을 위한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

○ 발표 창구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일원화

○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충남도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 해명자료 작성·발표

○ 상황별 예상이슈를 철저히 관리하여 돌발 상황으로 인해 일관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일관성과 일치된 목소리를 유지해 각 부서 간 이견이 노출 되지 않도록 내부 커뮤니케이션 유지

다.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등

○ TV 4사(KBS, MBC, TJB, CMB)를 활용한 자막방송 요청

○ 라디오 4사(CBS, TBN, 극동방송, 평화방송)를 활용한 방송 요청

방송사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KBS대전	대전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28(만년동 300)	042-470-7202	
대전MBC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61	042-330-3130	
TJB대전방송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31(도룡동4-18)	042-281-1303	
CBS대전	대전 중구 계백로 43(문화동 1-13)	042-259-8800	
대전극동방송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38-8(지족동 233-15)	042-828-9307	
대전평화방송	대전 중구 대종로 471(대흥동 189)	042-250-3200	
대전교통방송	대전 서구 신갈마로 17(내동 152-7)	042-532-3110	
CMB대전방송	대전 중구 대종로 584번길 20	1544-3434	

8 물자관리 및 자원 지원계획

8-1. 목 적

○ 재난 발생시 피해 지역에 부족자원(물자·장비) 등을 긴급 투입하여 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평시에는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재난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 관리하기 위하여 DRSS를 활용한 자원 현행화

8-2.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 책임기관 :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 지원기관 : 각 실·과, 각 시·군, 재난관리시스템 상 기술보유인원, 장비업체, 물자업체 등

8-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시도/시군구	부서	직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충남	사회재난과	행정7	김민경	사회재난	635-2182
	자연재난과	행정8	정태균	자연재난	635-4717
천안시	안전방재과	행정8	이은규	사회재난	521-5572
		시설8	김희종	자연재난	521-5577
공주시	안전관리과	공업8	임동건	사회자연재난	840-8669
보령시	안전재난과	행정6	김시철	사회자연재난	930-3496
아산시	안전총괄담당관	방재9	이규남	사회재난	540-2753
		시설7	한지웅	자연재난	540-2023
서산시	안전총괄과	행정9	윤미경	사회재난	660-2145
		시설8	오태석	자연재난	660-2631
논산시	안전총괄과	방재9	고낙준	사회자연재난	746-6424
계룡시	안전총괄과	행정6	남승희	사회자연재난	042-840-2232
당진시	안전행정과	행정8	유윤경	사회재난	350-3291
	건설방재과	시설9	강승규	자연재난	350-4671
금산군	안전총괄과	행정7	한진영	사회재난	750-2863
		공업7	길봉근	자연재난	750-2874
부여군	안전총괄과	시설9	박연식	사회자연재난	830-2460
서천군	안전총괄과	공업9	전우철	사회재난	950-4046
		시설7	석란아	자연재난	950-4734
청양군	안전재난과	행정6	이용희	사회재난	940-2436
		행정7	최병백	자연재난	940-2437
홍성군	안전총괄과	시설9	이대환	사회자연재난	630-1549
예산군	안전관리과	행정9	강유석	자연재난	339-7775
		방재9	이배훈	사회재난	339-7753
태안군	미래안전정책실	행정7	변예섭	사회재난	670-2721
		행정7	지청길	자연재난	670-2897

8-4. 관련대응업무

가. 평시

-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 재난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자원 비축 조치
- 상호협력 기능별로 필수장비 확보
- 장비동원 준비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사전 협약

나. 재난 발생시

-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유지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자원 입력 현행화

- 자재 : 실제 보유량과 입력량을 일치하고 입·출고 시 즉시 현행화 조치
- 장비 : 실제 소유자, 주소지, 야간에도 연락 가능한 핸드폰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동원가능 여부(협약 또는 동의) 등 현행화
- 시설 : 현장확인으로 비상 시 수용 가능한 인원 등 파악, 실제 소유자 파악 및 주야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 체계 유지

8-5. 재난대비 동원자원 현황

가. 인 력

○ 기술인력(해당분야 교수, 기술사, 연구사, 건축사 등 전문기술인)

(단위 : 개, 명)

시군명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원자력	삭궤도	유기장	기타
계	488	105	115	17	119	21	17	8	2	1	0	83

○ 기능인력(기능분야 종사자 및 기능인력 자격증 소지자)

(단위 : 개, 명)

시군명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승강기안전관리원	기타
계	894	142	42	61	0	0	97	2	347	31	32	1	139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단위 : 개, 명)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단체	519	193	2	7	12	20	42	82	15	13	13	120
인원	84,595	8,790	195	326	316	1,112	4,500	16,424	1,028	601	21,501	29,802

나. 장 비

○ 구조·구급(38종, 11,769)

구분	건식 잠수복	고무 보트	공기안전매트	공기 탱크	공압식 착암기	구급차	구명 부표	구명정	구명총	구조용 로프	구조용 에어백	구조용 조명등	다이빙 기구또는 악세사리
수량	127	49	10	60	5	231	79	4	31	132	6	351	18
구분	마스크 핀또는 스노클	매몰자탐지기	부력조절기	산소호흡기또는보조용품	소방용수지식공구	소방용호흡기구	소형 보트	수중 조명	습식 잠수복	싱커 드릴	유압식 착암기	잠수기	잠수용 신발
수량	19	4	91	160	1085	5617	4	87	294	1	5	277	3
구분	잠수용 호흡기	잭	전동드릴	조명차	코어 드릴	휴대용 착암기	8자하강기	교류아크용 접기	등강기	산소 수소용 접기	아이젠	양방향 라디오	-
수량	83	5	185	1	4	1	41	8	79	13	5	2594	-

○ 의료방역(5종 1,176점)

구분	소방화학차	오염제거기	자동심실제세동기또는하드패들	제독차	척추고정판
수량	10	201	953	1	11

○ 재난구호 및 복구(50종 3,590점)

구분	유개 트럭	화물 트럭	가변축전기 또는버랙터	가스발전기	고소작업차	고온펌프	공기압축기	공기 펌프	공압고성능절단기	구조공작차
수량	9	539	2	38	21	2	176	12	30	14
구분	궤도불도저	기어펌프	농업용트랙터	다단펌프	덤프트럭	도로관리용차량	디젤발전기	램펌프	로터리펌프	마그네트펌프
수량	5	1	57	1	95	19	30	63	9	7
구분	모노플렉스펌프	모래살포기	방사형압축기	배토기	백호	부스터펌프	수동식펌프	수중펌프	심정용펌프	엔진펌프
수량	4	229	1	29	120	2	3	607	8	218
구분	오수펌프	용접용발전기	원심펌프	자동펌프	전기톱	전진공동펌프	정량펌프	증기펌프	지게차	진공펌프
수량	7	2	80	470	100	1	3	3	34	18
구분	크레인붙이트럭	태양광발전장치	트랙로더	프론트엔드로더	플런저펌프	견인차	휴대용발전기	벌목톱	유압모터펌프	전동그라인더
수량	19	7	2	4	2	1	2	362	94	28

○ 재난현장 환경정비(8종 334점)

구분	가드레일 청소차	노면청소차	맨홀구조기구	살수차	쓰레기 수거용트럭	압력또는 증기청소기	오일분리기	하수구 청소차
수량	7	9	14	6	157	138	2	1

○ 기타(30종 4,891점)

구분	가스경보기	개인장비함	구조경보기	등짐펌프	방사선감지경보기	방사선측정기	배연차	소방물탱크차	소방용펌프	에어텐트
수량	12	55	505	2958	33	33	2	26	154	11
구분	연기감지기	오염관리선	유압구조장비세트	유압식트럭기중기	의료또는구조용헬리콥터	조립식구조물	지브크레인	차량차체용적재함	컨테이너	컨테이너하우스
수량	48	1	26	14	1	7	9	63	20	56
구분	탱크트럭	트랙터크레인	구조선	소방펌프차	순시선	오버헤드교반기	유조트럭	자력교반기	지휘차	트럭장착식제설기
수량	206	11	3	52	1	8	1	24	8	543

다. 자　재(67종 677,297점)

구분	방열복	소화용 기구	가스 마스크	안전 세척기	기름 제거제	무기수 산화물	보호용 작업복	살균제	오일펜스	위험물질 방어의류
수량	131	302	29,084	10	3,274	32,010	1,714	1,250	1,365	600
구분	유흡착매트	유흡착 삭스	활성탄	벌크컨테이너백	삽	플라스틱 포대	안전 표지판	폴리에틸렌수지	비식용 소금	염화칼슘
수량	10,631	1,502	141	11,511	1,144	490,543	28	1,318	3,333,000	6,264,247
구분	친환경 제설제 고상	고무호스	비닐호스	마스크 또는 보조용품	백신	분사기	안전안경	응급 의료용 처치키트	의료용살균소독제	인공호흡기또는호흡회로
수량	50,000	450	171	6,363	2,877	47	174	249	6,687	37
구분	흡입치료기 또는 액세서리	텐트	청소용 양동이 및물통	가마니	면포대	수술용 스페큘라	응급처치 용들 것 또는 액세서리	항공후송 용들것 또는 액세서리	금속드럼	리튬전지
수량	35	753	29	1,670	2,000	20	326	5	12	9
구분	물탱크	자동차용 전지	저장용 탱크	소방호스 또는노즐	공기,가스 탱크또는 실린더	기타조제 용약	구명조끼 또는 구조요원	구명환	나일론 로프	남성용 조끼
수량	21	10	3	841	33	1,340	729	132	1,316	13
구분	메가폰	배수로	제설함	출입통제테이프 또는체인	분리형 또는 바스켓형 들것	살충제	수동심폐 소생기	액체 질소통	약품탱크	연산 축전지
수량	841	22	44	1,387	32	2,298	63	4	22	77

라. 시　설

○ 수용시설

합계		학교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2,254	357,140	484	280,252	998	37,884	645	20,548	56	8,414	71	10,042
1	100	1	100	0	0	0	0	0	0	0	0

○ 의료시설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422	1,639	3,421	99	14,522	185
병원	234	1,145	2,490	59	9,088	90
보건소	116	243	333	13	164	6
기타	72	251	598	27	5,270	89

9 교통대책 계획

9-1. 목 적

○ 피해 발생시 피해 지역의 신속한 사고수습 및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 통제를 실시

9-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도로교통과

○ 지원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9-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도로교통과	주무관	윤승원	635-2831	yoond97@korea.kr	
	주무관	김현준	635-4691	khj8227@korea.kr	교통사고
	주무관	김금석	635-2833	miracle3651@korea.kr	도로복구
	주무관	김창만	635-4690	violet1012@korea.kr	철도사고
충남지방경찰청	경장	이경수	336-2561	figo4057@cnpolice.go.kr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차장	이병환	042) 630-7284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차장	윤정일	042) 607-5120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주무관	김진식	042) 670-3555	-	

9-4. 관련대응업무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

○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인력·장비 동원태세 점검

≪육상교통(도로)≫

○ 재해취약구간 모니터링

○ 도로 유실·침수·낙석 등에 따른 도로통제

○ 낙석발생, 붕괴우려 급경사지, 침수우려 도로 점검,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간판 등 통제장비 점검

○ 통제상황 홍보

○ 도로·교량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육상교통(철도)≫

○ 지하철 방화시설 및 수방자재 등 사전점검

○ 철도통제

○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해상교통≫

○ 항해선박 피항 유도 및 안전운행 계도

○ 연안여객선 통제

≪항공교통≫

○ 공항별 비상근무체계유지

○ 항공기 운항통제

○ 대체 육로교통 확보

10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계획

10-1 응급의료 지원계획

10-1-1. 목 적

보건의료분야의 재난 발생시 유관 지원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위기를 조기에 종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0-1-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식품의약과(의료), 보건정책과(감염병)

○ 지원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보건소,
1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10-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가. 보건소

구분	의료		감염병		비고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천안동남	정인식	(041) 521-5026	우태식	(041) 521-5082	
천안서북	이경준	(041) 521-5916	안하영	(041) 521-5919	
공주시	박경운	(041) 840-8773	이현주	(041) 840-8762	
보령시	김정호	(041) 930-4128	이강희	(041) 930-4129	
아산시	정낙헌	(041) 537-3416	김은희	(041) 537-3413	
서산시	한은숙	(041) 660-2696	박은미	(041) 661-6575	
논산시	김은주	(041) 746-8023	김원	(041) 746-8033	
계룡시	오명석	(042) 840-3521	오명석	(041) 840-3521	
당진시	황덕선	(041) 360-6022	심신택	(041) 360-6011	
금산군	김영란	(041) 750-4324	김성임	(041) 750-4324	
부여군	이영우	(041) 830-2485	유재정	(041) 830-2485	
서천군	김남호	(041) 950-6716	김남호	(041) 950-6716	
청양군	허경선	(041) 940-4521	이은걸	(041) 940-4523	
홍성군	이민환	(041) 630-9031	권윤경	(041) 630-9075	
예산군	송근수	(041) 339-8043	김지원	(041) 339-8044	
태안군	이광재	(041) 671-5221	이광재	(041) 671-5221	

나. 응급의료기관

번호	지정 구분	기관명	주소	병상수	총 병상
계		18개 기관		306	5,486
1	권역센터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33	811
2	지역센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35	885
3	〃	천안충무병원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27	360
4	〃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서산시 중앙로 149	21	205
5	〃	논산백제병원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22	647
6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20	412
7	지역기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537	14	205
8	〃	화인메트로병원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37	10	123
9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공주시 웅진로 130	10	233
10	〃	보령아산병원	보령시 죽성로 136	10	200
11	〃	아산충무병원	아산시 문화로 381	20	209
12	〃	미래한국병원	아산시 번영로 230번길 13	10	165
13	〃	서산중앙병원	서산시 수석산업로 5	15	282
14	〃	당진종합병원	당진시 반촌로5-15	20	288
15	〃	건양대학교부여병원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200	10	97
16	〃	청양군보건의료원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10	12
17	〃	예산명지병원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10	175
18	〃	태안군보건의료원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10	24

다. 이동응급의료차량 운영기관

구 분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권역응급 의료센터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041-550-6840

10-1-4. 관련 대응업무

- ○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및 추가적인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이동 응급의료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출동 지시
- ○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중증도별 응급환자를 분류 의료기관에 이송조치 등 응급의료 활동 전개
- ○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를 지휘하고 중증도분류반 등 각 팀에 필요한 의료인력, 시설, 의약품 조정 및 지원 등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적극 지원
-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등 비상근무체계 가동하고 병상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실시간 제공하며 이송된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수행
- ○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에서 수집된 병상정보를 응급의료소에 제공하여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
- ○ 기타 긴급구조통제단 및 119종합안전센터와 통신체계 유지
- ○ 침수, 해일 등 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차별화·집중화 감시체계 가동을 통해 피해 규모의 조기 파악 및 대응책 마련
- ○ 신속한 환자관리를 통한 도내 2차 전파 조기 차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의 조기 종결
- ○ 의료인력 · 시설 및 방역물자, 예방·치료약품 최대한 확보 · 투입하여 감염병 유행의 조기 차단
- ○ 음식과 물의 안전, 생물학적 문제 등 주민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재난대책본부와 조정하여 처리 우선순위 결정
- ○ 소규모 수인성 감염병 환자발생은 해당 시 · 군, 유행우려 인지 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 결과 일반적인 수인성 감염병의 양상과 다를경우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초등 대응조치 요청

10-2 가축질병 방역

10-2-1. 목 적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축산 피해 최소화 등 도민건강과 보건 위해사태를 차단하기 위함

10-2-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축산과

○ 지원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수의사회, 농협중앙회충남도본부

10-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축 산 과	수의7	서지훈	041)635-4111	seossa@korea.kr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6	이호성	031)463-4591	doitqt@korea.kr	
가축위생연구소	방역담당	허진회	041)635-7021	huejinh@korea.kr	
가축위생연구소공주지소	방역담당	심상원	041)635-7101	ssw2001@korea.kr	
가축위생연구소아산지소	방역담당	김성환	041)635-7131	dvm9091@korea.kr	
가축위생연구소당진지소	방역담당	공신국	041)635-7170	kinkong@korea.kr	
가축위생연구소부여지소	방역담당	박옥배	041)635-7191	bertoeco@korea.kr	
가축위생연구소태안지소	방역담당	신선아	041)635-7221	azumzzap@korea.kr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장	이재석	041)339-5602	slycock@naver.com	
농협중앙회충남도본부	차장	이광용	042)229-6243	dialee0203@naver.com	
충남수의사회	회장	전무형	042)256-5250	djcnvma@hanmail.net	

10-2-4. 관련 대응업무

○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신속 파악 및 대응

○ 예찰(임상 및 실험실 검사) 및 예찰협의회 운영 등 사전예방 활동 및 방역지도·홍보

○ 긴급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준비

-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초소 설치, 방역 동원장비, 매몰지 관리용 자재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동원인력 등 사전 점검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홍보

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계획

11-1. 목 적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시설, 장비, 물자 등에 대해 기관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임

⇨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11-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도민협력새마을과

○ 지원기관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시·군센터)

1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도민협력 새마을과	지방행정주사	유호열	635-3667	yhy1025@korea.kr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진홍	635-1365	cn1365@hanmail.net	

11-4. 관련 대응업무

○ 자원봉사자 모집(충남도자원봉사센터 및 재난수습홍보반 협의)

○ 자원봉사자 보험관리(시・군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임시자원봉사센터 지원)

○ 전국의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자 현장 안내(임시자원봉사센터 지원)

○ 자원봉사 인력의 숙식, 휴식 등을 위한 시설 지정 관리(시・군)

<재난상황발생 시 자원봉사 지원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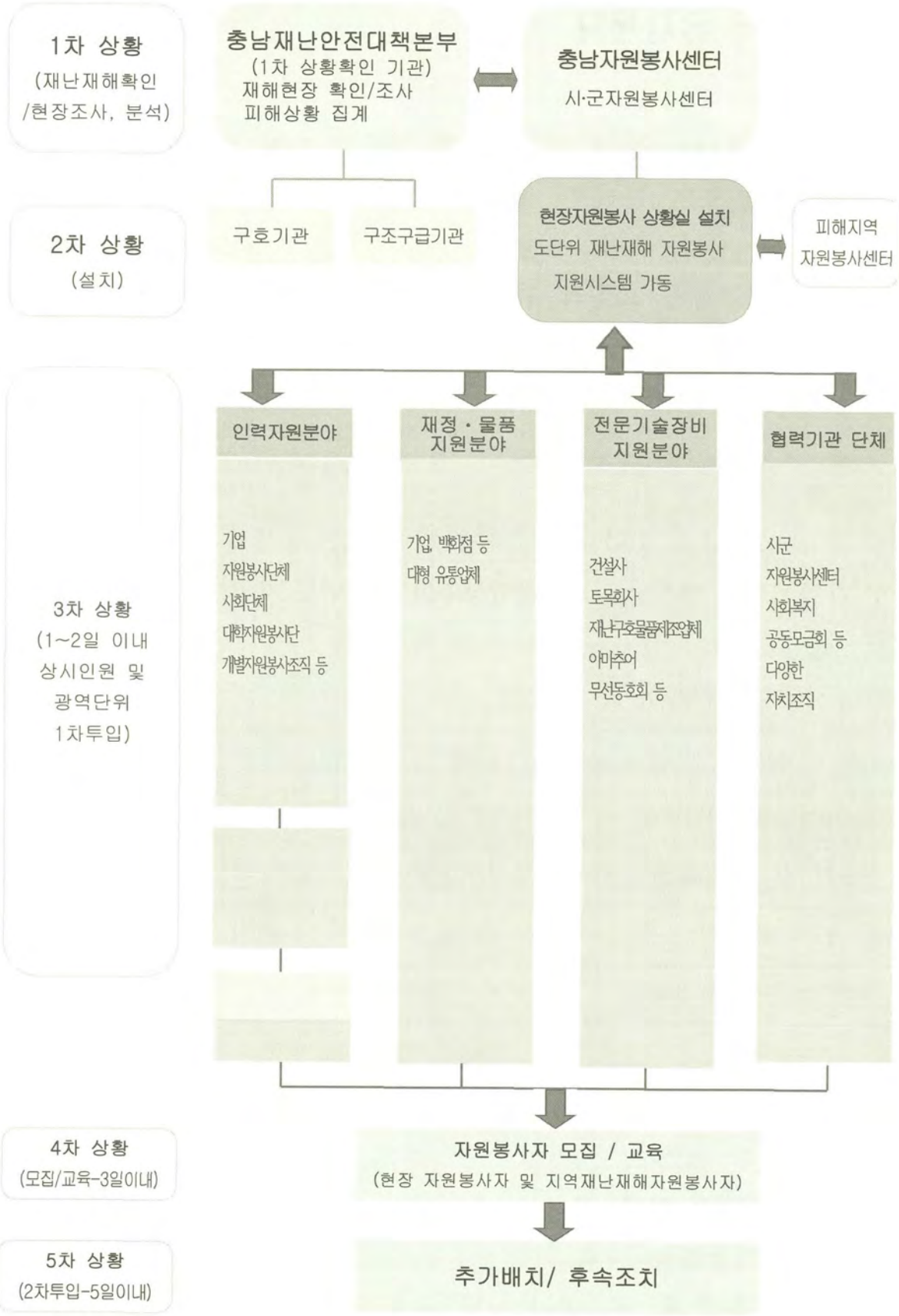
1차 상황
(재난재해확인
/현장조사, 분석)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상황확인 기관)
재해현장 확인/조사
피해상황 집계
충남자원봉사센터
시·군자원봉사센터
2차 상황
(설치)
구호기관
구조구급기관
현장자원봉사 상황실 설치
도단위 재난재해 자원봉사
지원시스템 가동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
3차 상황
(1~2일 이내
상시인원 및
광역단위
1차투입)
인력자원분야
재정·물품
지원분야
전문기술장비
지원분야
협력기관 단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
대학자원봉사단
개별자원봉사조직 등
기업,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건설사
토목회사
재난구호물품제조업체
아마추어
무선동호회 등
시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자치조직
4차 상황
(모집/교육-3일이내)
자원봉사자 모집 / 교육
(현장 자원봉사자 및 지역재난재해자원봉사자)
5차 상황
(2차투입-5일이내)
추가배치/ 후속조치

12 사회질서 유지계획

12-1. 목 적

○ 경찰은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즉시 필요한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조치 실시 및 원활한 응급조치를 위한 협조 지원

○ 현장접근 통제, 주변교통정리, 긴급차량통행로 확보, 사회질서유지 등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재난 발생시 경력·장비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제2의 피해 예방

12-2.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

○ 주 책임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및 시·군 경찰서

○ 지원기관 : 충청남도 재난종합상황실,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제32보병사단

1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 속	위 치	전 화 번 호
충남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041)336-2261
충청남도 재난종합상황실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41)635-4731
육군 제32보병사단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채나무길 71	(041) 829-6119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99	(041)837-7800

12-4. 관련 대응업무

12-4-1. 추진 전략

○ 재난 발생시 피해 지역에 대한 경력·장비 등 최대지원으로 신속한 대비·대응활동 지원

○ 경비·교통·수사 등 각 기능별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 대응능력 제고

12-4-2. 경찰 기본 임무

○ 재난발생시 지구대, 112타격대 등 전 가용경력 신속한 현장출동

○ 응급구조, 교통통제·관리, 주민대피, 질서유지 등 발생초기부터 적극적 역할 수행

○ 재난발생지역 범죄예방, 사고원인 조사, 항의방문·소요사태 등 집단행동 대비

【대응절차】

긴 급 상 황 응급구조단계 (발생직후 현장초동조치)		체계적 현장대응단계 (긴급구조현장이 정리되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상황)		사 후 처 리 및 현장복구 지원단계
-상황파악보고·전파 -긴급재난부대출동 (112타격대 등) -현장통제·긴급구호 주민대피 등 유효 적절한 현장조치 ※재난관리법체계에 의한 체계적구조「前단계」	⇒	-현장지휘본부 설치 -수사본부 설치·운용 -사고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	⇒	-범죄피의자 수사 검거·송치 등 -사고지역 범죄예방 -피해자 등 보상관련 집회시위 관리 -현장복구활동 지원

12-4-3. 재난상황반 편성·운용

○ 상황발생시 상황보고·전파, 유관기관 협조 등 초동조치

○ 치안상황실 중심으로 재난상황반 편성·운용, 24시간 상황유지

- 필요시 긴급종합상황반 편성·운용, 전 직원 비상연락 소집
- 자치단체·유관기관과 긴밀 협조체제 유지, 핫라인 구성 운용 등

○ 지역별 피해상황 취합, 경찰서⇒지방청⇒경찰청 신속 보고·전파

12-4-4. 발생 즉시 신속 출동·구조 활동 전개

○ 경력·장비 : 상황에 따라 단계별 출동
- 1단계 : 112순찰차, 112타격대, 교통순찰차 등
- 2단계 : 재난관리부대(1기동대, 1중대, 708전경대 등) 지원

○ 현장통제선 설치로 구조현장 질서 유지(1선:소방, 2선:경찰)
- 인명 구조 인원·장비 우선 통로 확보
- 불법 주·정차 정리, 라바콘·펜스 등으로 임시통행로 확보

○ 민·관·군 협조 총력구조 체제 유지
- 119 구급대, 민간 산악구조대, 잠수부협회, 민간동호인 등
- 군 부대에 헬기 등 필요한 구조장비 지원 요청

12-4-5. 피해(취약) 지역 시설 점검 및 순찰 강화

○ 가용경력·112순찰차 최대 동원, 관내 피해(취약) 지역 시설물 및 피해 확산 방지 순찰 강화

○ 재난 취약점 발견 시 건물주 및 관련기관 통보·신속한 조치 유도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찰강제권 적극 행사
- 112순찰차 등의 마이크·메가폰 이용, 위험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 유도

○ 교통 등 기능별 협조체계 구축
- 도로유실·침하 등 도로상황 파악, 교통통제
- 통제구역 입구 입간판, 바리게이트 설치 및 차량 우회
- 기상 및 소통상황 신속 홍보, 사고 예방 미연 방지
- 교통 혼잡 우려구간에 경찰관 배치, 소통 위주 근무
- 재난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파악, 교통통제 등 즉시 조치

12-4-6. 범인 조기 검거체제 구축

○ 의도적 인재 시 형기차 등을 현장으로 신속출동 조치

○ 상황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탐문·증거수집, 범인 조기검거 주력

○ 수사본부 신속히 구성, 합동수사 체계 확립

○ 증거인멸·훼손사례 없도록 소방서와 협조

12-4-7. 재난현장 생활안전·수사·정보·홍보 활동

○ 현장주변의 혼잡을 틈탄 강·절도 등 예방, 유류품 접수·인계

○ 사고원인 규명, 현장보존 및 범인검거, 사상자 신원확인

○ 주민 소요사태·각종 유언비어 차단, 유가족 동향 파악 및 피해자 등 항의방문·기습시위 관리

○ 경찰구조 및 대응 활동사항의 대국민 적극적·다각적 홍보

12-4-8. 효율적 지휘를 위한 현장지휘본부 설치·운용

○ 현장조치가 필요한 대규모 재난 시 적절한 장소에 지휘본부 설치

○ 정보 지원센터 설치·운용, 피해자 유가족 등 필요정보 제공

※ 대규모 피해발생시 지휘관 현장에서 지휘

13 수색, 구조 · 구급계획

13-1. 목 적

○ 수색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현장대응 절차제공

13-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119광역기동단

○ 지원기관 : 충남지방경철창외 19개 기관

13-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연 락 처	
				연락처	FAX
1	소방본부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119광역기동단	041-635-5732	041-635-7956
2	천안동남소방서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80	현장대응단	041-570-0301	041-552-0319
3	천안서북소방서	천안시 서북구 4산단 2길 32	현장대응단	041-360-0301	041-360-0309
4	공주소방서	공주시 봉황로 134	현장대응단	041-851-0302	041-851-0309
5	보령소방서	보령시 대천로 122	현장대응단	041-930-0301	041-930-0309
6	아산소방서	아산시 문화로 293	현장대응단	041-538-0301	041-542-0319
7	서산소방서	서산시 호수공원14로 26-4	현장대응단	041-689-0301	041-689-0309
8	논산소방서	논산시 대학로 17	현장대응단	041-730-0301	041-730-0429
9	당진소방서	당진시 당진읍 역천로 838	현장대응단	041-350-5301	041-350-5359
10	금산소방서	금산군 금산읍 삼풍로 2	화재대책과	041-750-1301	041-750-1309
11	부여소방서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17	화재대책과	041-830-0301	041-830-0309
12	서천소방서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37	화재대책과	041-955-0301	041-955-0309
13	홍성소방서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41	현장대응단	041-630-0301	041-630-0309
14	예산소방서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11	화재대책과	041-330-4301	041-330-4309
15	태안소방서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0	화재대책과	041-671-0301	041-671-0309
16	청양소방서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48	화재대책과	041-940-7301	041-940-7309
17	충남지방경찰청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경비교통과	041-336-2129	041-340-2904
18	태안해양 경비안전서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경비구난과	041-950-2442	041-950-2941
19	보령해양 경비안전서	보령시 보령북로 18	경비구난과	041-402-2342	041-402-2941

13-4. 관련 대응업무

13-4-1 조직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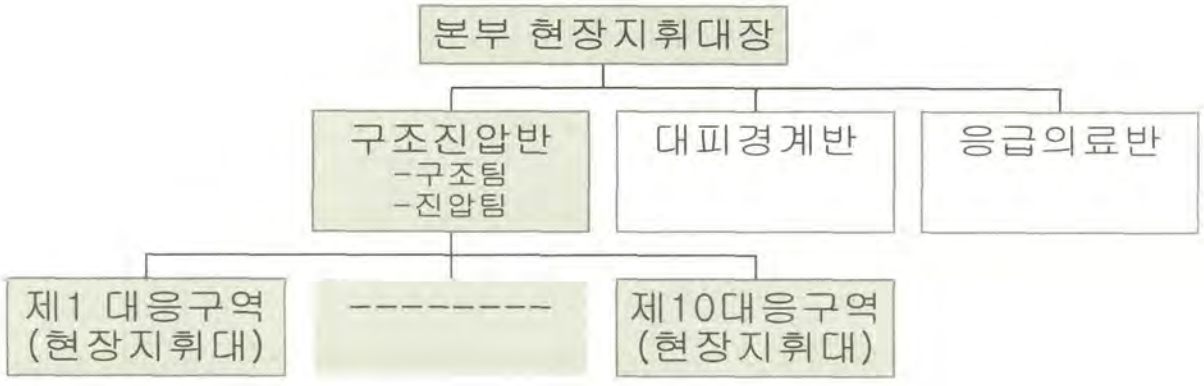

- ○ 재난 발생 초기 대응구역별 소방자원은 소방서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이 조정 통제한다.
- ○ 소방서의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은 모든 소방자원의 조정통제를 위해 24시간 교대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 대응단계2, 또는 3의 재난 발생시 2 이상의 소방서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을 통합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이 각 대응구역별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을 조정 통제한다.
- ○ 각 현장지휘대장 구조진압반장은 현장에서 가장 최신의 정확한 상황정보를 확보한다.
-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각급 119종합방재센터와 상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진행 중 혹은 계획 중인 대응활동, 배치되었거나 배치계획중인 소방자원(인력·장비)에 대하여 119종합방재센터(119상황실)에 보고한다.
-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시 추가 자원동원을 요청하여 재난지역의 전반적 소방자원을 배치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 기타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현장지휘SOP에 따른다.

○ 이 기능별계획을 운영하는 소방본부 구조진압반의 책임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지휘대장	소방본부 현장지휘대장	
구조진압반	소방본부 구조진압반	긴급구조지원기관 · 단체
구조팀	소방서 구조팀	
진압팀	소방서 진압팀	

○ 구조진압반 조직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단계 2, 3	
		A 조	B 조
구조진압반장	소방서 대응조사담당	소방본부 구조팀장	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구조팀	소방서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진압팀	소방서 진압대	진압대	진압대

○ 소방관서는 관할구역내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비상상황이 관할구역 경계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였다면 소방관서장은 소방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된다.

13-4-2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응단계 0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긴급구조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대응단계 1	일상적 사고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가 일상적인 소방력으로 대응한다.	
대응단계 2	중형재난	소방서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되고, 인근 소방서 구조진압반과 소방본부 구조진압반이 부분 가동된다.	재난사태 선포
대응단계 3	대형재난	소방본부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된다.	특별재난지역선포

13-4-3 임무수행

○ 경찰은 재난지역에 대한 접근통제의 책임을 지며 소방관서는 차량과 대원을 파견하여 경찰의 접근통제기능을 지원한다.

○ 경찰은 대피로를 따라 교통통제의 책임을 지며 소방관서는 경찰의 지원요청에 따라 교차로 등에 대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지원한다.

○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의 사용을 조정하고 선점하는데 주도적인 책임기관은 한국전력이다.

○ 소방관서는 인명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 통제할 책임이 있다.

○ 인명수색 및 구조를 위한 초기대응과 전문적 대응은 소방관서의 119구조대가 수행한다.

○ 이 계획에 참가하는 공인된 각 대별 기관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색대 : 소방서 자원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 위험에 처한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 구조대(소방서 구조대) : 구조장비를 사용하고 수동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등 특수한 상황의 전문적 구조를 담당한다.
- 구급대 : 소방서 소속 구급대와 기타 구급 지원기관 자원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소 자원으로 사고현장에서 사상자 분류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장비구조대 : 소방관서 소속 굴삭기 및 지원기관의 중장비로 구성된 특수자원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장해물 제거, 건축물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항공대 : 구조·구급 장비 운송 및 부상자 이동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비상발전기, 휴대용 조명등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관서는 재난현장의 초동대응기관으로 재난초기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가스안전공사의 긴급복구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차단한 가스밸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수의 소방서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경우 접근성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자원집결지 운영책임은 소방본부 자원지원부장에 있다.



V. 행정사항

Ⅴ 행정사항

1. 재난 유형별 관리부서 현황

구 분	재난 유형별 관리현황	관련부서	비고
자연재난 (11)	1. 풍수해	자연재난과	
	2. 해일	자연재난과	
	3. 대설 · 한파	자연재난과	
	4. 낙뢰	자연재난과	
	5. 가뭄	물관리정책과	
	6. 지진	자연재난과	
	7. 황사	환경관리과	
	8. 녹조	물관리정책과	
	9. 적조	수산과	
	10. 폭염	자연재난과	
	11. 산사태	산림녹지과	
사회재난 (22)	1. 대형화재	화재대책과	
	2. 문화재화재	문화재과	
	3. 산불	산림녹지과	
	4. 시설물재난	사회재난과	
	5. 지반침하	건설정책과	
	6. 저수지붕괴	농촌마을지원과	
	7. 댐붕괴	자연재난과	
	8. 도로(육상화물운송)	도로교통과	
	9. 철도교통사고	도로교통과	
	10. 해양선박(해수면 유 · 도선)사고	해운항만과	
	11. 내수면 유 · 도선사고	사회재난과	
	12.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관리과	
	13. 생물테러	보건정책과	
	14.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정책과	
	15. 대규모 수질오염	물관리정책과	
	16. 에너지(전기 · 가스 · 석유)사고	에너지산업과	
	17. 정보통신사고	정보화지원과	

구 분	재난 유형별 관리현황	관련부서	비고
	18. 식용수	물관리정책과	
	19. 환경(폐기물)	환경관리과	
	20. 감염병	보건정책과	
	21. 가축전염병	축산과	
	22. 수산생물 전염병	수산관리소	
안전관리 (18)	1. 어린이 놀이시설	사회재난과	
	2. 승강기사고	사회재난과	
	3. 등산활동	산림녹지과	
	4.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책과	
	5. 여름철 물놀이	사회재난과	
	6. 내수면 수상레저	사회재난과	
	7. 도로교통사고	도로교통과	
	8. 산업단지	투자입지과	
	9. 농작업사고	친환경농산과	
	10. 어업작업사고	수산과	
	11. 도청사	총무과	
	12. 공연장	문화정책과	
	1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과	
	14. 자연휴양림시설	산림녹지과	
	15. 청소년시설	여성가족정책관	
	16. 가정 · 성 · 학교폭력	여성가족정책관	
	17. 자살예방	보건정책과	
	18. 식품안전사고	식품의약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41)	1. 충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2.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3.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4. 충청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	
	5.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6.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7. 대전지방기상청	관측예보과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산업안전팀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산업안전팀	

구 분	재난 유형별 관리현황	관련부서	비고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12.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13.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난과	
	14. 태안령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난과	
	15.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구호복지과	
	16. 육군 제32사단	군수참모처	
	17.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 설 처	
	18.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사업총괄부	
	19.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배전운영부	
	20.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	고객지원부	
	21.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안전환경팀	
	22.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안전환경팀	
	23.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검 사 2 부	
	24. KT충남고객본부	네트워크 지원센터	
	25.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공 사 팀	
	26.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관 리 팀	
	27.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도 로 팀	
	2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	
	29. 국립공원관리공단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30.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3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부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리비축팀	
	33.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34. 수협중앙회 태안어업정보통신국	통 신 국	
	35.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사업지도과	
	36. KBS대전방송총국	총 무 부	
	37. 독립기념관	경영관리부	
	38.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기업지원팀	
	3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교통안전실	
	40. 충청남도개발공사	건축사업부	
	4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안전품질실	

2. 도·시군 안전관리부서 연락처

연번	시군명	주 소	해당부서	연락번호	우편번호
1	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안전정책과	041-635-5621	350-831
2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안전방재과	041-521-5589	331-701
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안전관리과	041-840-8653	314-702
4	보령시	보령시 성주산로 77	안전재난과	041-930-3497	355-701
5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안전총괄담당관	041-540-2118	336-701
6	서산시	서산시 관아문길 1	안전총괄과	041-660-2044	356-704
7	논산시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안전총괄과	041-746-6423	320-701
8	계룡시	계룡시 장안로 46	안전총괄과	042-840-2612	321-701
9	당진시	당진시 시청1로 1	안전총괄과	041-350-3290	343-804
10	금산군	군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안전총괄과	041-750-2864	312-701
11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안전총괄과	041-830-2457	323-701
12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안전총괄과	041-950-4046	326-701
13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안전재난과	041-940-2433	345-701
14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	안전총괄과	041-630-1548	350-704
1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안전관리과	041-339-7754	340-701
16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미래안전정책실	041-670-2721	357-701

3. 2016년도 재난대응훈련 계획

❖ 재난발생 시 민·관·군 총력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신속한 초동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훈련 실시

1 재난대응훈련 체계

훈련계획 수립 (사회재난과) ⇒ 훈련시행계획수립 (주관부서) ⇒ 훈련실시 (주관부서) ⇒ 평 가 (사회재난과) ⇒ 환 류 (주관부서)

2 월별 훈련 계획

❍ 재대본 훈련 또는 현장지휘(2~4월), 상황판단회의·재대본 훈련(5~11월)

월별	재난 유형	주관 부서	훈련유형
2월	사회복지시설 붕괴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재대본 훈련 (또는 현장지휘)
3월	고속철도 탈선	도로교통과	〃
4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경제정책과	〃
5월	식용수	물관리정책과	상황판단회의 (재대본 훈련)
6월	대규모 수질오염	물관리정책과	〃
7월	유해화학물질	환경관리과	〃
8월	을지훈련	전 실과	〃
9월	해양사고	해양정책과	〃
10월	체육시설 재난	체육진흥과	〃
11월	지역축제 재난	관광산업과	〃

4. 재난안전 충남구현 업무협약 체결 기관현황

번호	기 관 명	서 명 자	비 고
1	충청남도	도지사	
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3	육군제32사단장	사단장	
4	충청지방우정청	청장	
5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6	중부지방산림청	청장	
7	대전지방기상청	청장	
8	금강유역환경청	청장	
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장	
11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서장	
12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13	KBS대전방송총국	국장	
14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15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16	KT 충남고객본부	본부장	
17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본부장	
18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19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2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21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본부장	
22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단장	
23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지사장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지사장	

[참고용]

재난 안전 충남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본 협약서를 교환한다.

1. 본 협약에 참여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제 1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한다.
2. 본 협약에 참여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맡은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3. 본 협약에 참여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기관별 비상연락망 유지 등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4. 본 협약에 참여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자체 보유한 인력, 장비, 물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5. 본 협약에 참여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발생 시 상호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한다.
6. 본 협약에 참여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각각 실무책임관을 선임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7. 본 협약서는 2013년 7월 18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에 체결하고 24부를 작성, 서명하여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육군제32사단장		충청지방우정청장	이교승
충남지방경찰청장	박동영	중부지방산림청장	이문원
대전지방기상청장	서애숙	금강유역환경청장	박천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수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영철
태안해양경찰서장	황경헌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윤대순
KBS대전방송총국장	곽영지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진석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김승영	KT 충남고객본부장	김윤수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장	김광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희종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상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박완진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장	여준호	K-water 대청댐관리단장	이성권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장	이경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장	류보현

5. 행정사항

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각급 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본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나.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4에 따라 작성된 계획이며,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발생시 본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시설·장비·물자확보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재난사고 예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각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실무자는 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차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Ⅵ. 재난관리책임기관

목 차

1. 충청남도교육청 ····· 545
2. 충청남도지방경찰청 ····· 556
3. 중부지방산림청 ····· 564
4. 충청지방우정청 ····· 572
5. 금강유역환경청 ····· 577
6. 금강홍수통제소 ····· 579
7. 대전지방기상청 ····· 588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595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충남지사 ····· 598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전지역본부 ····· 601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06
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612
13. 보령해양경비안전서 ····· 616
14. 태안해양경비안전서 ····· 625
15. 대한적십자사대전세종충남지사 ····· 635
16. 육군 제32사단 ····· 647
17.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 ····· 653
18.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 ····· 656
19. 한국전력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658
20. 한국전기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663

21. 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 ····· 670
22. 한국가스공사전북지역본부 ····· 676
23.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688
24. KT 충남고객본부 ····· 701
25.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 ····· 706
26. 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 ····· 708
27. 한국도로공사대전충남본부 ····· 718
28.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본부 ····· 729
29.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731
30.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단 ····· 739
31. 한국농어촌공사충남본부 ····· 752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전충남본부 ····· 762
33.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 766
3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태안어업정보통신국 ····· 778
35. 산림조합중앙회충남지역본부 ····· 783
36. 한국방송공사대전방송총국 ····· 788
37. 독립기념관 ····· 792
38.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 799
3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 805
40. 충남개발공사 ····· 813
4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817

Ⅵ 재난관리책임기관

1. 충청남도교육청

▣ 재난 · 안전관리 체계



대책반 구성

조별	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행정지원반
1조 ~ 4조	반장 : 반장구성 반원 : 안전기획 1 재난관리 1 비상대비 1	반장 : 반장구성 반원 : 학생생활교육과 1 교육과정과 1 미래인재과 1 체육예술건강과 1	반장 : 반장구성 반원 : 시설기획 1 시설사업 1 시설관리 1 민자사업 1	반장 : 반장구성 반원 : 총무과 1 공보담당관 1 예산과 1 시설과 1
반장 구성	안전기획담당 재난관리담당 비상대비담당 재난별 담당부서 담당	인성인권담당→교육과정담당→과학영재정보담당→학교보건담당	시설사업1담당→시설사업2담당→시설관리담당→민자사업담당	총무담당→홍보담당→예산담당→시설기획담당

- 재해대책본부 설치장소, 구성형태, 운영방법, 구성인원 등은 상황판단회의 또는 교육감 주관 협의회에서 재난의 성격(자연, 생활재해)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
- 재난 대책반 근무(기준) : 4개조 24시간 교대근무
- 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 재난 유형별 책임 조직도

충남교육청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연락처

재난유형별	주요업무	전화번호		담당팀
		주간	FAX	
안전총괄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041-640-7910	041-631-9826	안전기획담당
	폭염, 황사 미세먼지, 오존, 에너지 (대규모 정전사태 등) 안전	041-640-7910	041-631-9826	안전기획담당
	화재, 풍수해(태풍, 호우, 설해), 지진, 건축물재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041-640-7931	041-631-9826	재난관리담당
	전통적 안보(북한군 침투 · 도발, 일반테러)	041-640-7920	041-631-9829	비상대비담당
유아특수복지과	유치원(급식 · 보건 · 환경위생, 원내 폭력 · 성폭력 · 아동학대 안전, 통학차량 안전, 생활 · 실종 · 유괴방지 안전, 화재 · 재난관리 등)	041-640-7610	041-631-7965	유아교육담당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보호 등	041-640-7620	041-631-7965	특수교육담당
	학교급식 안전	041-640-7630	041-631-7965	학교급식담당
미래인재과	실습선 안전, 특성화고 및 가정 · 가사실습실 안전	041-640-7420	041-631-7963	직업교육담당
	과학실험실 안전, 방사능 누출 사고대비 학생 안전	041-640-7410	041-631-7963	과학영재정보담당
	정보통신분야 안전	041-640-7450	041-631-7963	전산통계담당
학교정책과	자유학기제 안전	041-640-7131	041-631-7960	진로진학담당
	진로체험 안전	041-640-7132	041-631-7960	진로진학담당
체육인성건강과	학교보건 안전	041-640-7540	041-631-7964	학교보건담당
	운동부합숙소 안전	041-640-7510	041-631-7964	체육교육담당
	학생물놀이 안전, 도로 · 교통 안전, 수련원 안전지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안전, 기숙사 생활 안전	041-640-7520	041-631-7964	인성인권담당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학생자살 예방 등	041-640-7530	041-631-7964	학생생활문화담당
총무과	통신재난 안전, 교통수송분야 안전 등	041-640-8010	041-631-8633	총무담당
평생교육행정과	학원 및 교습소 안전, 학원 및 교습소 교육수송분야 안전 등	041-640-8210	041-631-8637	평생교육담당
시설과	대형공사장 안전 등	041-640-8420	041-631-8639	시설관리담당
CSO(부)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사무관	재난안전업무 총괄 ★ 041-640-7910(24시간)	041-640-7910	041-631-9826	안전기획
야간 · 휴일(당직실)	야간 및 휴일 재난 · 안전상황 보고사항 관리	041-640-7070~2	041-631-7845	당직실

※ 야간 및 휴일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당직실에 보고

충청남도교육청 당직자의 임무

1. 당직자는 재난안전사고 보고 접수 후, 본청 재난유형별담당부서 팀장 및 본청 CSO(부)에게 즉시 연락
2. 재난사고의 중요성에 따라 당직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름(본청 간부에게 보고 등)
3. 교육부 당직실에 보고

▣ 재난 단계별 대응 및 조치 사항

구 분	내 용
사전준비단계(관심)	○ 징후 감시활동
1단계 (주의)	○ 근무시간 중 : 주관 부서 책임으로 상황모니터링 ○ 근무시간 외(18:00~22:00) - 주관 부서 책임 하에 당직실과 연계하여 모니터 - 각급 기관(학교) : 자체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 주요 대처내용 - 각종 재난에 다른 변동 상황 파악 및 전파 - 비상연락망 점검 등 비상근무 태세 준비
2단계 (경계)	○ 담당부서 비상근무체제 돌입 - 근무시간 중 : 담당부서 비상근무태세 돌입 - 근무시간 외(18:00 ~ 익일 09:00) :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 각급 기관(학교) : 자체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 주요 대처내용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등·하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긴급대피, 홍보 등)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조치 - 본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검토 및 준비
3단계 (심각)	○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운영 - 대책본부 운영(09:00 ~ 익일 09:00, 24시간) - 대상 : 전 직원 -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 파견(요청 시) - 각급 기관(학교) : 자체 계획 및 규정에 의거 시행 ○ 주요 대처내용 - 재난유형별 조치매뉴얼에 의거 실시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조치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

가. 학교 내 감염병 감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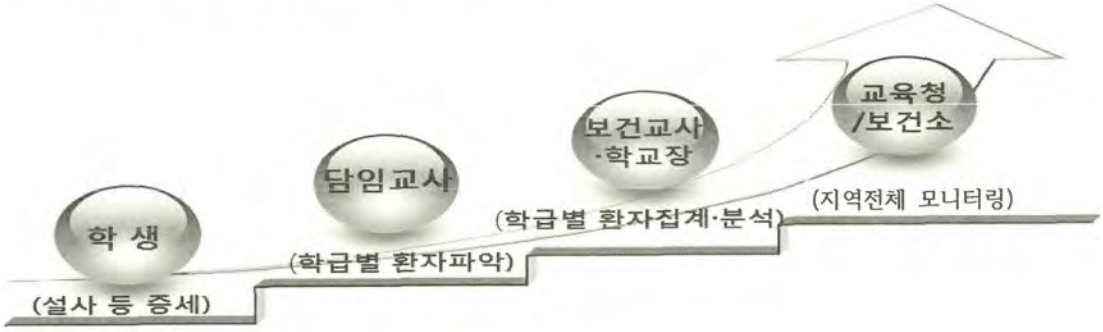

나. 기관 간 관리/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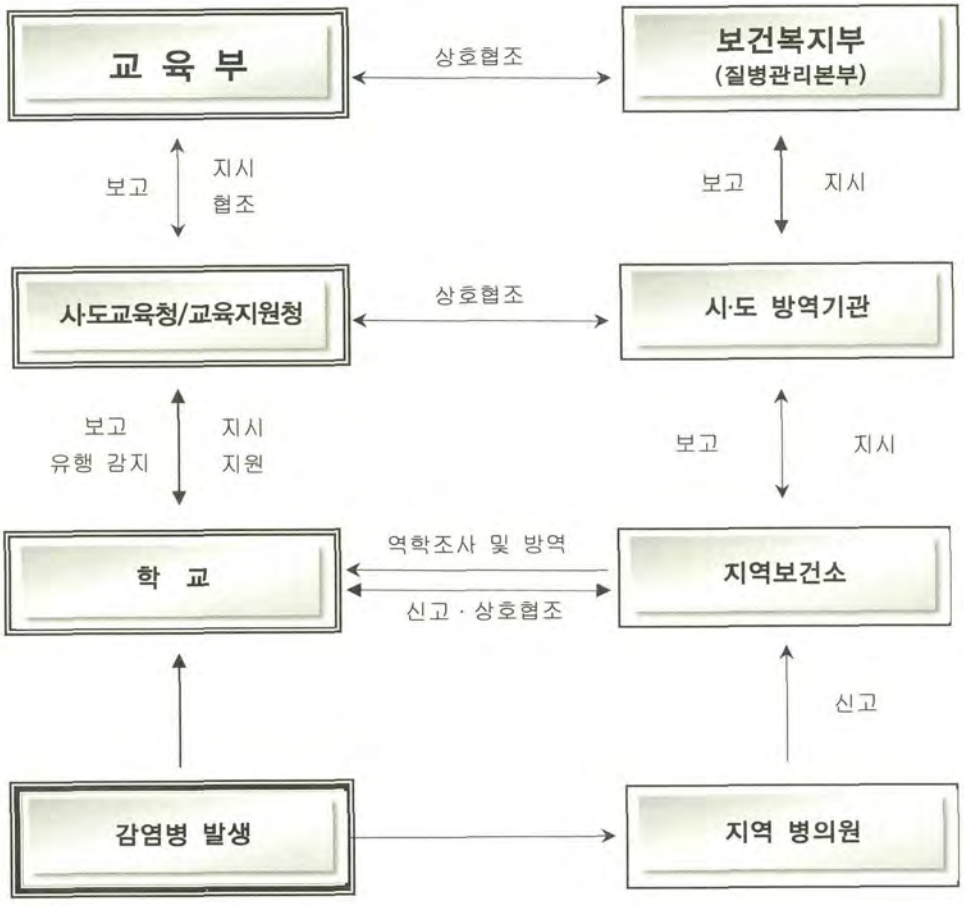

다. 감염병 대 유행 시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판단 기준	주요 조치 사항
관심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 관련정보 수집·전파 - 대응태세 점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홍보 및 예방 교육
주의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지침 시달 - 감염병 확산정보 전파 및 예방활동 강화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
경계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협조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감시 강화 지침 일제 시달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감염 의심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금지 - 방역기관 등 협의하에 휴교/휴업 결정
심각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유관기관 합동대응, 대국민담화 발표 등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정보 전파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확산 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 방역 실시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 - 각종 단체활동 일체 금지

라.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학교 및 교육청 임무 및 역할

단계	임무 및 역할	
1단계 관심(Blue)	교육청	▸ 관련정보 전파 등 예방활동 강화 ▸ 대응태세 점검
	학교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대응태세 점검 ▸ 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
2단계 주의(Yellow)	교육청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 감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학교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 (학생, 교직원) 보고 ▸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조치 ▸ 교내 감염학생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 ▸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등교 중지) 및 보호자에게 통보 ▸ 관리대장, 소독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 (체온계 등) 등 점검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중단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3단계 경계(Orange)	교육청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가동 ▸ 관련정보 전파 등 활동 강화 ▸ 각급학교 휴업기준 마련
	학교	▸ 방역기관 및 교육청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금지
4단계 심각(Red)	교육청	▸ 필요시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학교	▸ 방역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일제 휴업/휴교 조치 ▸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금지

※ 소속기관, 대학(교) 등은 위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

▣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체계

가. 황사 피해 예방 단계별·특보 발령 단계별 대응 체계

- 피해예방단계별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유치원, 교원으로 구분하여 황사 발생 전, 발생기간 중, 종료 후로 구분
- 특보발령단계별 : 황사주의보, 황사경보로 구분

※ 단계별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발령 단계		조 치 사 항
황사 예보 (강한 황사)		• 대책반 설치·운영(기상청 발표상황 수시 파악) • 비상연락망 가동 준비
황사특보	황사주의보	• 비상연락망 가동 • 실외·야외활동 자제 ※ 방진 마스크 등 착용 조치
	황사경보	• 대응조치 발령(교육감) : 지역 및 적용 학교 결정 -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

나. 황사 발령 시 적용범위 유형에 따른 조치 내역

단계별	기관별	행 동 요 령
황사 발생 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기상청 및 환경부의 기상예보 청취 및 분석 ○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신중 검토 ○ 시·도 또는 단위학교별 재량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등 결정·통보 ○ 황사기간 중 학생 대상 각종 대회 및 행사시기 조정 검토 ○ 조치결과를 교육부에 신속히 보고
	초·중등학교	○ 황사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학교별 학부모 대상 홍보 ○ 황사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유치원	○ 황사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유아들에게 알림 ○ 황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황사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교원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황사 발생 기간 중	시·도(지역) 교육청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 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초·중등학교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보건위생교육 철저 :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시 귀가 후 얼굴, 손 씻기 지도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유치원	○ 외출 시 마스크,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외출 후 자주 손 발 씻기 등 몸의 청결 유지, 옷세탁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부득이한 등교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교원	○ 정상근무 : 평상시처럼 근무 ○ 관할청의 휴업 및 휴교명령 시 근무 - 휴업일 : 정상 근무(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은 아님) - 휴교일 :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관리업무 등 수행
황사 종료 후	시·도(지역) 교육청	○ 황사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초·중등학교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유치원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유치원 대청소 실시
	교원	○ 피해 교직원 및 학생 파악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 폭염 발생 시 대응 체계

가. 폭염 피해 예방 단계별·특보 발령 단계별 대응 체계

- 피해예방단계별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초·중등학교, 유치원, 교원으로 구분하여 폭염 발생 전, 발생기간 중, 종료 후로 구분
- 특보발령단계별 :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구분

※ 단계별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발령 단계		조 치 사 항
폭염 특보	폭염주의보	○ 비상연락망 가동 ○ 단축수업 검토 ○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활동 자제 ○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폭염경보	○ 휴교 조치 검토 ○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 ○ 대응조치 발령(교육감) : 지역 및 적용 학교 결정 -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교 등 상황에 따른 조치

< 폭염특보 발령기준 >

◈ **주의보** :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 보** :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나. 폭염 발령 시 적용범위 유형에 따른 조치 내역

단계별	기관별	행 동 요 령
폭염 발생 전	시·도(지역) 교육청	○ 기상예보 청취 및 분석 ○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신중히 검토 ○ 시·도 또는 단위학교별 재량휴업, 단축수업 등 결정·통보 ○ 폭염기간 중 학생 대상 각종 대회 및 행사시기 조정 검토 ○ 조치결과를 교육부에 신속히 보고
	초·중등학교	○ 폭염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폭염 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유치원	○ 폭염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원아들에게 알림 ○ 폭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폭염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교원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 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폭염 발생 기간 중	시·도(지역) 교육청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 건강 피해 상황,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 정상수업 진행 여부 결정·통보
	초·중등학교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야외 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폭염 예방교육 철저 -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 하고 꼭 물병 휴대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폭염 발생 기간 중	유치원	○ 외출 시 물병,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부득이하게 등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교원	○ 정상근무 : 평상시처럼 근무 ○ 관할청의 휴업 및 휴교명령 시 - 휴업일: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학교의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은 정상적으로 근무 - 휴교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관리업무 등 수행
폭염 종료 후	시·도(지역) 교육청	○ 폭염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초·중등학교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학교 시설 설비 점검
	유치원	○ 현기증, 탈수, 열사병, 두통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유치원 대청소 실시
	교원	○ 피해 교직원 및 학생 파악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강진단

▣ 학교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

가. 평상시 학교 식중독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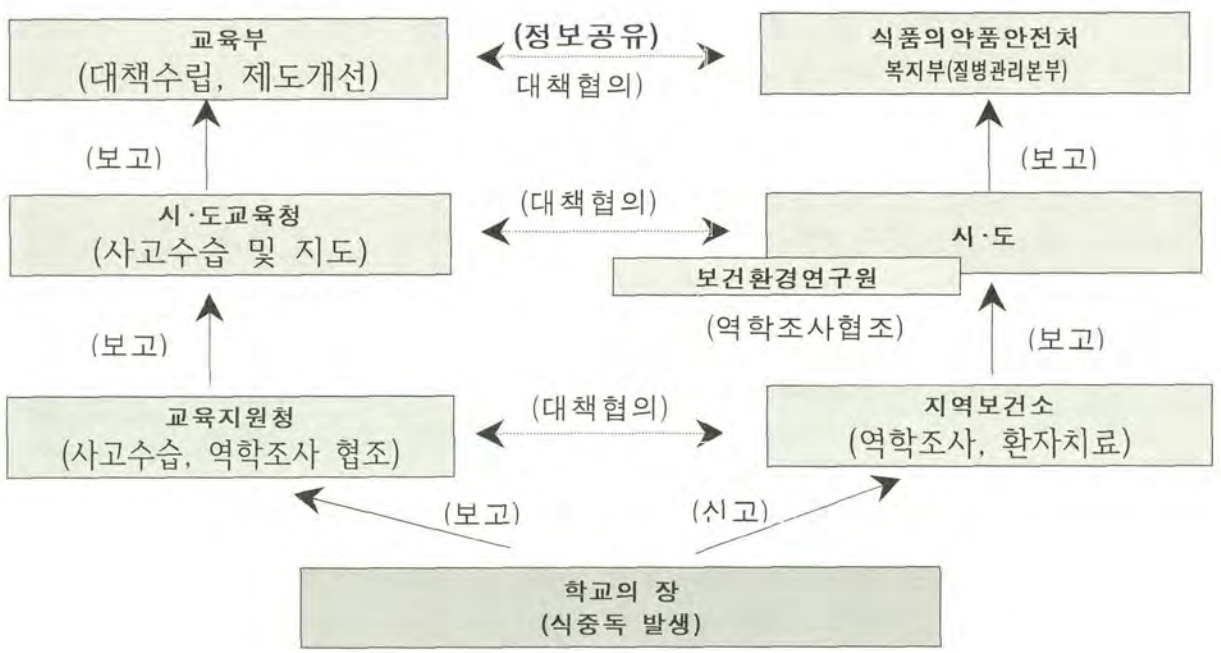

나. 학교 식중독 발생 확산 시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관 심(Blue)	주 의(Yellow)
판단 기준	• 식중독지수 : 10~34 •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 식중독지수 : 35~50 •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보도 •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조치 사항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과부/교육청) ▸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학교)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과부/교육청) ▸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학교)
구분	경 계(Orange)	심 각(Red)
판단 기준	• 식중독지수 : 51~85 •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 이상 발생 •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 식중독지수 : 85이상 • 집단급식소에서 100명 이상 식중독 발생 • 단위학교 학생의 30% 이상 설사환자 발생 •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조치 사항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과부/교육청) ▸ 체험학습 억제, 급식 중단, 대책반 운영(학교)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과부/교육청) ▸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학교)

▣ 유관기관 연락처

유 관 기 관	전 화 번 호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041-635-4743
충청남도소방본부	041-635-5541, 56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424
육군 제2162부대	042-829-611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041-112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042-620-2360
(주) KT 충남본부	042-478-8299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280-3412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042-229-3400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042-630-7262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042-220-0100
KBS대전방송총국	042-470-7400
대전MBC	042-330-3421
TJB	080-987-5555

2. 충청남도지방경찰청

1. 교통안전 분야

1-1. 교통관리대책

가.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대표적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

○ 생활속 법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신호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단속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블랙박스 공익신고 활성화'

○ 교통법규 위반 다발지역 및 교통사고가 잦은 곳 중심으로 신호등 위치를 앞쪽으로 조정, 법규 수용도 제고

나.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

○ 상설적 신속대응팀 운영

구분 / 계	핵심교차로	상습 112 신고장소	주말·휴일
103	38	42	23

○ 비상설적 신속대응팀 운용

- 계절적 · 장소적 교통수요에 따라 권역별 신속대응팀 운용 신속대응팀 현황

구분 / 계	교 통 요 원			교 통 장 비			
	계	교통	지역경찰	계	순찰차	싸이카	이륜차
계	616	100	516	272	163	31	78

○ 교통협력단체(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 및 기동대 활용, 교통안전활동 가시화로 교통법규준수 사회적 분위기 조성

1-2. 교통안전대책

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지속추진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 ○ 교육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 ○ 유치원·초등학교 교육시설 방문 홍보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분기 2회 이상) 실시
- ○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

  ※ 30km/h 초과 어린이보호구역('14.12월말 기준) : 총 1,066개소 중 19개소

나.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활동
- ○ 노인운전자(70세 이상)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 검사 활성화(월1회→월2회)
- ○ 농촌지역 경운기 등 농기계 후부 반사판 부착 사업 지속 추진
- ○ 노인 이륜차 운전자 상대 안전모 등 교통안전 용품 지급
- ○ 농기계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

  ※ 이장단 협조, 1일 1회 이상 마을방송 홍보 실시
-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14년 125개소) 및 주 1회 이상 보호구역 법규위반 계도·단속 실시
- ○ 노인이동 잦은 장소 및 농촌지역 안전시설 보강
- ○ 「1警·1老」제도 활성화, 찾아가는 노인안전교육(월 2회) 실시 및 노인교통사고 위험지도·안전용품(야광지팡이 등) 제작·배포

다. 교통시설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시설의 확충

- ○ 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규제 완화
- ○ 좌회전·유턴 허용 확대 및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
- ○ 도심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
- ○ 「교통규제 개선 T/F팀」 구성 및 통합포털 내 「교통규제 개선방(가칭)」 신설

1-3.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수습대책

가. 신속한 지휘 및 보고체제 확립

○ 현장 조치 및 보고

- 교통두절·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보고(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 접수 즉시 현장지휘체제 구축(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관계부처 상황전파

- 교통두절, 대형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 교통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강구

나. 사상자 구호 등 초동조치

○ 사상자 신속 구호 조치

- 순찰차, 싸이카, 엠브란스, 견인차량 등 긴급 동원 투입

○ 상황에 따른 헬기 지원체제 구축

○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구난·구급차량 등에 대한 소통로 확보

다. 상황에 따른 보도기관 통보 및 교통통제 범위 조절

○ 홍보활동 강화

- 방송매체를 이용 신속한 상황 전파
- 사고 발생지역 운행 자제 협조

○ 상황변화에 따라 경력·장비 증감 지원, 교통통제 범위 조절

라. 강설, 폭우 등 교통두절시 신속한 교통통제 실시

○ 교통경찰관 배치 차량통제 및 긴급수송차량 안내

○ 원거리 차단, 우회 조치로 교통혼잡 해소 및 접근 통제

○ 교통통제구간 진입로에 교통통제 및 두절구간·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2. 재난관리 분야

2-1. 예방대책

가.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재해정보 수집

○ 재해위험지역·경계구역 설정 현황 등 파악, 순찰 실시

○ 위험요인 발견시 건물주, 유관기관 등 통보·조치유도

나. 비상연락체계 점검

○ 지휘관·참모 및 재난 관련 경찰의 비상연락망 확인·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상황실에 비치

다. 재난관리부대·외근경찰관 구조·구급훈련 실시

○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활용도 높은 실습 위주 교육 실시

- 재난관리부대는 산악·수상 구조훈련 등 구조지원 위주 훈련
- 외근경찰관은 응급처치법, 구조호흡 등 초동조치 위주 훈련

※ 재난관리부대 현황 : 112 타격대 15개, 상설중대 3개

2-2. 대비대책

가. 재난상황실 운영(기상특보 발효 등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높을때)

○ 112종합상황실 중심 재난상황실 편성, 기상정보 및 특보 전파·확인

○ 상황발생시 상황보고·전파, 유관기관 협조 등 초동조치 실시

나. 피해우려지역 중점순찰·점검

○ 112·교통순찰차 등 외근요원 피해예방 순찰·점검 강화

○ 피해우려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및 우회조치

○ 매몰·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반복 순찰 및 경고방송 실시

다. 재난대비 출동태세 및 장비 점검

○ 재난관리부대 즉응태세 유지

○ 출동요소별 보유 장비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 등 숙지

라. 비상근무 및 비상소집 준비

○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 시 가용 경찰관에 대한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방안 검토, 준비

2-3. 재난 대응대책

가.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태풍·집중호우 등 상황발생시)

○ 지휘관·참모 비상연락체제 확립

○ 재난상황반 운영 강화, 24시간 상황유지

※ 지휘보고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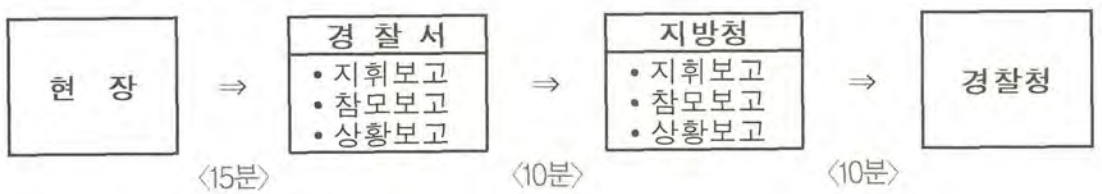

나. 현장지휘본부를 통한 현장관리 및 지휘체제 확립

○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지휘본부 설치

○ 정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유가족 등 필요정보 제공

【경찰 현장지휘본부 체계도】



다. 피해우려지역 집중순찰을 통한 인명구조 및 피해예방

○ 지구대·교통 등 외근요원 취약개소 집중배치

○ 계곡범람·산사태 등 피해우려지역 야영객·주민 대피유도

○ 피해지역·구간은 폴리스라인 설정, 출입 통제 철저

라. 교통통제 및 관리

○ 침수·유실·두절 등 도로상황 파악·교통통제

○ 원거리부터 통제 안내 입간판, 바리케이드 설치 및 차량우회

마. 경찰의 경고 및 대피요구 불응시 경찰강제권 적극 행사

○ 경찰의 대피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동법 제41조

○ 경고에 불응시 강제대피 실시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

2-4. 재난 복구지원 대책

가. 피해지역 경력투입·복구지원 및 추가 피해방지

○ 치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력·장비 지원, 복구작업 실시

○ 피해지역 도로·시설 등에 대한 집중 순찰, 추가 피해방지

나. 피해지역에 교통관리 및 방범활동

○ 긴급구호물자 수송차량 수송로 확보(긴급차량 우선통행)

○ 상가·주택 등 빈집털이·지원물자 절도 등 범죄예방, 치안유지

다. 피해주민 여론 및 동향파악

○ 정부정책수립 및 조기수습에 필요한 관련정보 수집

○ 주민동향 파악을 통한 집단적 항의시위 등 대비

3. 4대 사회악 근절 등 사회안전 분야

3-1. 성폭력 근절 대책

가. 성범죄자 재범 억제를 위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일제점검 및 등록대상자를 총괄담당, 고·저위험군으로 분류 관리

나. 성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발견을 위한 협업체계 정착

○ 아동·장애인·노인 단체와 핫-라인 구축, 범죄취약 시설·학교·가정 정기 방문·점검 및 교육·홍보

다. 학교 내·외부 안전체계 강화, 성폭력 안전지대로 관리

○ 학교안전 실무협의회 및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의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예방·홍보 등 협력

라. 주요 사건·사례 위주의 스토리텔링 방식 홍보·캠페인 등 전개

마. 전문 기관·단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보호지원관 ↔ 지역 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까지 공백없는 보호·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구분	심리 상담·치료	법률 지원	의료·경제·주거	기 타
전문기관(제도)	- 성폭력상담소 - 굿네이버스 - 스마일 센터	- 무료 법률상담 - 국선변호인 지정 -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성폭력피해자 쉼터 - 치료동행서비스	- 보호시설(일반/장애인/친족성폭력피해자) - 공공후견지원서비스

3-2.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가. 학교폭력 정보 체계적 관리,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나. 폭력서클 단속 및 고위험 학생 밀착 관리,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재정립·전문성 강화 등 전담체계 내실화

라. 117 홍보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마. '청소년 경찰학교' 활용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교육 실효성 제고

3-3. 가정폭력 근절 대책

가. 가정폭력 수사를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이관, 가정폭력 엄정 대응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체계 전문성 제고

○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적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 협업 시스템 마련

○ 관련 기관과 협의, 가정폭력전담경찰관 대상 '상담·사후관리 기법' 등 직무교육 및 가정폭력 상담사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다. 가정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현장출동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조치 결과를 전담경찰이 실시간 확인 후 신속한 모니터링

○ 시스템 개선에 따른 관련 매뉴얼 재정비, 현장 교육 및 확인·점검

3-4. 불량식품 근절 대책

○ 4대사회악 근절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을 보다 내실화 · 고도화

- '3대 주력테마' 중심 불량식품 사범 강력 단속 전개

* ① 노인 상대 '떴다방' ② 수산물 분야 ③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 불량식품 수사 전문성 강화

- 불량식품수사실무과정 등 경찰교육기관 활용, 전문성 강화

4. 행정사항

□ 담당부서

분 야	부 서	전화번호	비고
교통안전	교통안전계	336-2752	
재난관리	작전의경계	336-2561	
성폭력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대)	336-1676	
학교폭력	여성청소년과	336-2249	
가정폭력	여성청소년과	336-2248	
불량식품	수사2계	336-2267	

3. 중부지방산림청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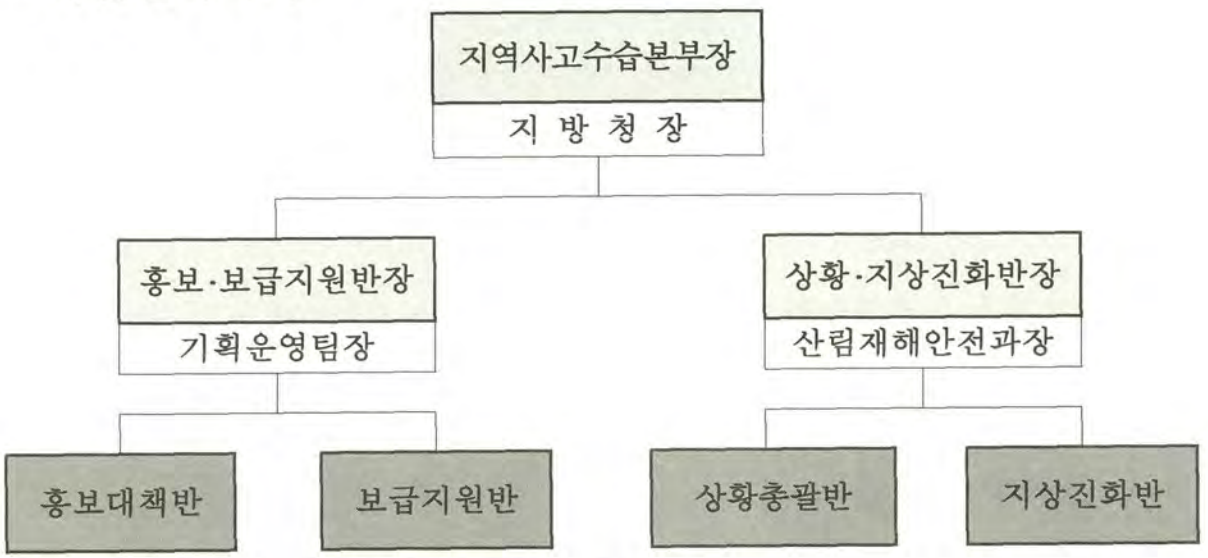

※ 종합상황실 운영 : 041-850-4021~4

Ⅰ 산림재해 (산불)대책

① 예방대책

1.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

❑ 산불위험이 높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1 ~ 5.15까지 (3.5개월), 가을철 11.1 ~ 12.15까지 (1.5개월) 설정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설 연휴 및 정월대보름을 고려하여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종합상황실」 구성

○ 지방청 및 관리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종합상황실)**」설치 운영

- 운영시간 : 상황실 근무는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근무자 중 1명이 상황실 전화를 착신하여 재택근무하면서 상황 유지

※ 주간에 발생한 산불이 야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자는 익일 09:00까지 산불상황 관리

※ 야간 산불 발생시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불비상근무 24시간 운영

❑ 주요 시기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산불 대비 철저

○ 봄철 휴일 장기화로 인한 동시다발 · 대형산불 발생위험 증가

- 설연휴(2.6~10), 정월대보름(2.22), 석가탄신일 연휴(5.14~15) 등 봄철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짐에 따라 등산 · 휴양객 증가가 예상되어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운영 및 감시인력 집중 배치

○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3.20 ~ 4.20) 및 시기별 예방활동 강화

※ (2월)정월대보름, (4월)청명·한식, (5월)석가탄신일, 산나물 채취, 입산자 증가

1 대비대책

1. 초기 대응력 극대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감시활동 강화

❑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산불조심기간은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봄철 : 2. 1~5. 15, 가을철 : 11.1~12.15(산림보호법 제31조 영 제22조)

○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에 운영

- 기간 : 3월 초순~4월 중순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　　치 : 지방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

○ 운영시간 : 09:00~21:00(산불 발생시에는 완전 진화시까지)

❑ 대형 산불위험 시기 유관기관과 합동 운영

○ 산림청 중심으로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운영

- 기상여건 및 산불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또는 단축

○ 산불발생시에는 소속기관에 상황전파, 공중진화, 통합지휘본부장(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임무를 부여

- 관할지역의 헬기지휘는 센터장으로 일원화(헬기 비행지시 권한 부여)
- 지휘본부의 중복 인력과 장비에 대한 효율적 배치·운영 등

3 대응대책

1. 산불발생상황 보고체계

❑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및 산불발생상황 보고체계 구축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요원은 반드시 산불 신고 단말기로 신고

- (종전) 산불신고 접수(전화) → 산불담당자(관리소) 현장 확인 → 지방청(헬기지원 요청)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개선) 산불신고 접수(신고단말기, 스마트폰 앱) → 국유림관리소, 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헬기요청(시·군, 관리소 → 시도, 지방청) 및 출동지시(산림청)는 기존 방식 유지

○ 단말기가 없는 지역에서 신고 접수시 관리소장,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에 즉시 전파

- (감시원 등) 관리소 → 지방청 → 산림청 산불종합상황실
- 관리소는 산불신고 접수 즉시 발생 상황 유선 보고

❑ IT 산불방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현장대응력 제고

○ 산불방지관리시스템 활용능력 향상 및 운영체계 정착

- 산불발생시 발화지 주변 급수지 등 신속한 진화자원 파악 및 대체로 현장중심 맞춤형 초동진화 유도

2. 통합지휘본부장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 및 유관기관 공조강화

❑ 통합지휘본부장(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발생 초반부터 현장을 지휘하고,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국유림관리소장은「산림보호법」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으로 임명

○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지휘본부장 임무 매뉴얼' 에 따라 현장지휘

○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 참여유도

○ 대형산불로 확산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권을 인수, 통합지휘

구분	피해 면적	통합지휘권자	위임할 수 있는 경우
중소형	100ha 미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 ·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시
대 형	100ha 이상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둘 이상의 시·군·구에 발생된 산불,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소형 산불, 관할지역 중 두군데 이상 대형산불 발생시
(기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된 산불	산림청장	**시·도지사** ※중·소형 산불, 전국 또는 관할 구역안에서 동시다발 발생시

❑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 운영

○ 통합지휘본부는 지휘본부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

- 산불현장 조망 및 접근이 양호한 곳에 유관기관 진화자원의 책임관계자가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

- 차량 등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차,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 선정

○ 통합지휘본부는 산불상황 여건을 감안하여 임무별로 편성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

○ 현장에는 통합지휘에 필요한 장비 및 산불지휘차량을 비치하고,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 통합지휘본부 운용물품을 확보하여 진화지휘차량에 사전에 탑재완료하고, 산불신고 접수와 동시에 지휘차량을 현장에 이동 조치

❑ **정확한 언론 정보 제공을 위한「산불상황 보도요원」지정 · 운영**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상황보도요원 지정을 통해 언론보도를 일원화하고, 유관기관의 언론보도 통제 등을 강화

- 지정된 보도요원은 산불현장에서 모든 산불상황 단계별로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전파 등

4 복구대책

❑ **산불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습지원체제 마련**

○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시·도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옥, 축사, 농림시설 등에 최우선 응급복구

○ 산불진화와 동시에 산림피해조사 및 항구복구계획을 추진

❑ **정확한 산불피해 상황파악 및 항구복구계획 수립**

○ 조 사 반 : 2개반(피해상황조사반, 복구계획 조사반)

○ 조사내용 : 산림피해면적, 입목시설물(피해액 산출), 응급복구 대상 등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정밀조사

○ 조사기간 : 피해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

❑ 피해 유형별·임상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복구기술 적용

○ 자연적·인위적 방법을 병행, 피해이전의 식생으로 복구

○ 산사태, 하천오염, 산림병해충 만연 등 2차 피해방지에 역점

Ⅱ 산림재해 〔산사태〕 대책

1 예방대책

❑ 산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 사방시설지

- 최근 산사태·임도피해 복구사업지는 우기 전 점검 및 수해예방 조치
- 기 시설 사방댐은 잠재토석이나 유목발생 위험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댐 본체 및 측벽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방지 내의 붕괴지 발생현황, 사방지 주변지역의 개발·훼손 등에 따른 사방시설과의 관계, 진입로(훼손) 여부 등

○ 임도시설지 및 형질변경지

- 임도내 재해우려지역은 비닐피복, 배수로정비 등 사전예방조치
- 옆도랑·배수관·암거 등이 메워져 있거나 유목 등이 걸려있는 곳은 정비 · 보수

○ 각종 산림사업장 안전조치

- 숲가꾸기 사업장내 산물 유실 방지조치
- 사업장내 장비, 인부막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수방자재 비축

○ 재난방지 시설물 점검·보완

- 사방댐, 사방사업지 등 재난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 만적된 사방댐에 대한 준설 및 보수 등 시설물 보완 조치

❑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적극적 관리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하여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은 연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후 필요시 예방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및 교육 홍보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사항 DB 구축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응 우선 추진

2 대비대책

❑ 산림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설치기관 :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4개 국유림관리소

○ 운영기간 : 5. 15. ~ 10. 15(5개월간)

○ 주요 임무

- 지역 산사태방지 장·단기 대책의 수립·시행
- 풍수해·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시행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현행화 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위주의 현장관리 집중 추진
-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 및 산림시설 점검 추진 등

3 대응 및 복구대책

❑ 재난상황 파악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직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보고

- 산림재해감시원 등의 산림사업지 순찰
- 산림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비상연락체계 및 보고체계 유지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 상황 전파 및 행동요령에 따른 조치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발령상황 전파

○ 위험지역 점검강화 및 주민대피 조치

○ 등산객 입산통제 및 산간계곡 행락객 등 대피 조치

○ 피해발생 대비 응급복구자재, 중장비 점검 및 확보

❑ 산림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 인명구조

- 유사시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되 오지대 등 육로후송이 어려울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조치

○ 피해상황 보고

- 피해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NDMS) 또는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에 신속정확하게 전산입력

○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 산사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우려지 등은 응급복구 실시

Ⅲ 비상연락체계

1 주요지휘관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전화 번호		
			사무실	핸드폰	FAX
중부지방산림청	지방청장	남송희	850-4001	010-9330-4707	850-4009
	기획운영팀장	최태환	850-4011	010-8453-4141	852-6137
	산림재해안전과장	황성태	850-4020	011-9217-5658	852-4025
	산림경영과장	김동성	850-4040	010-8818-9326	852-6138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리소장	이규명	830-5001	010-4253-2322	835-1974

2 업무담당자

분 야	담 당			연 락 처			비 고
	소 속	직 급	성 명	사무실	핸드폰	FAX	
산 불	산림재해안전과	임업주사	최형규	850-4021	010-5468-4238	850-4025	
	부여관리소	임업주사	윤효진	830-5020	010-3689-7532	835-1980	
산사태	산림재해안전과	임업주사	김판중	850-4028	010-2354-6828	850-4034	
	부여관리소	임업주사	윤효진	830-5020	010-3689-7532	835-1980	

4. 충청지방우정청

1. 목표

가. 우정분야 국가안전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재난·안전관리 대응태세 확립

나. 예상되는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통한 선진 안전문화 정착

다. 현장중심의 재난 대비 활동을 통한 안전 생활화 실천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재난발생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자연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한 국가적 방재시스템 고도화가 요구됨

나. 기후 변화 및 산업성장으로 인해 매년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적 전기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정전에 의한 전국적 규모의 재난이 예상 됨

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대피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및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라. 우정시설물(우체국 및 집중국 421개소, 우정수련원 4개소)이 도시, 농어촌 등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일부는 노후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재난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3. 추진방향

가. 재해·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하고 노후시설물의 보수 및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나.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 구축

다. 국유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라. 지속적 훈련 및 점검활동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4.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업무 수행체계

○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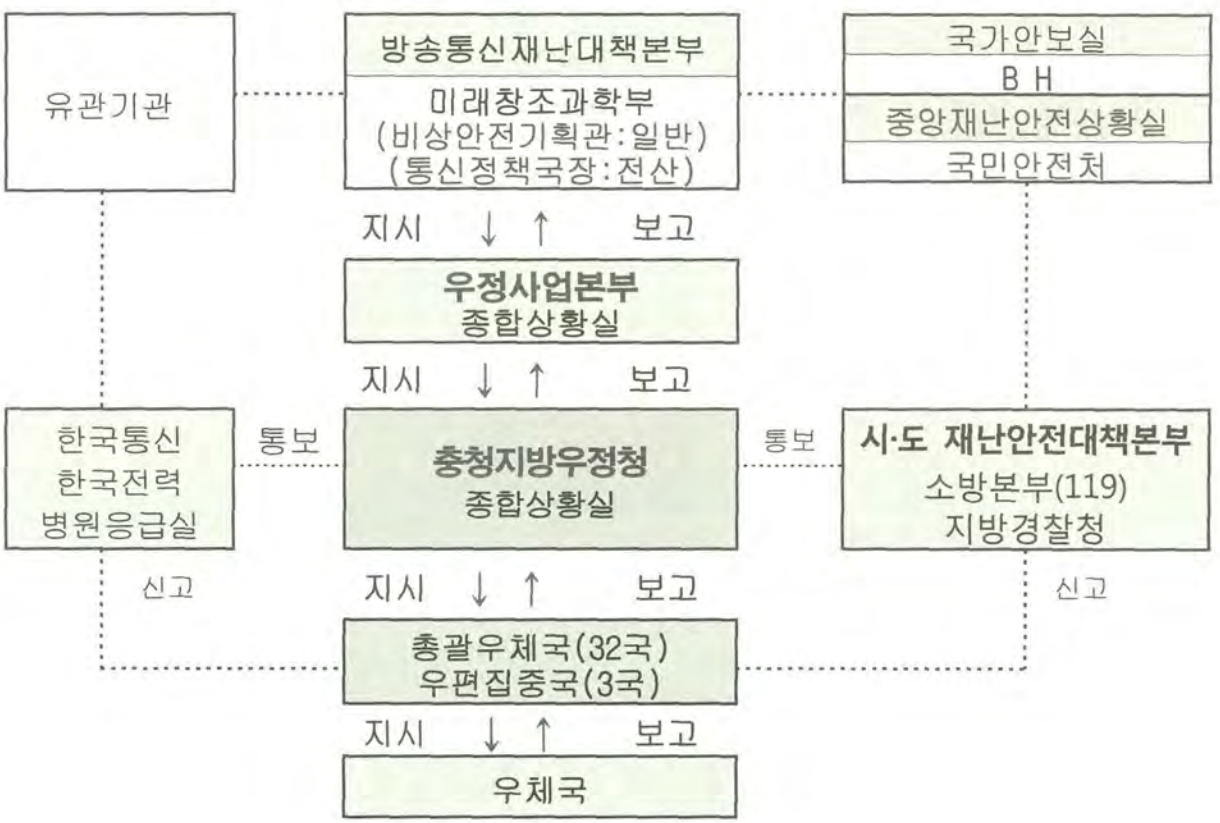

○ 주요임무

-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우정관서의 재난관리 체제 구축
- 우정분야의 재난예방대책 추진
- 우정분야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의 관리·보고 및 피해의 복구·수습 지휘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수행체계

○ 체계도



※ [붙임 1] 충청지방우정청 "재난대책상황실" 구성 현황

○ 분야별 임무

구분		소관부서	인원	임무
상황반	행정	운영지원과, 인력계획과	각 조별 6급 1명 7급 2명	o 재난상황의 접수, 전파 및 종합 o 국사, 우편·금융장비 등 피해상황 실시간 파악 o 기상특보 전파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o 우본, 유관기관(지자체) 협력체계 유지 o 방재물자 확보 및 재해지역 적시 보급·통제 o 종합상황실 운영요원 관리
	홍보	운영지원과, 인력계획과	각 조별 6급 1명 7급 1명	o 재해관련 언론보도 대응 o 유관언론사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o 대국민 홍보대책 강구 및 활동 등
수습반	국사 (전산) 시설	우정계획과, 회계정보과, 운영지원과, 예금영업팀	각 조별 6급 2명 7급 3명	o 국사, 전기·통신·전산시설 등 피해 복구대책 마련 o 국사시설 피해에 대한 현장 복구 활동 전개 o 소속국 복구현장 실태파악 및 지원 o 2차 피해예상 시설물에 대한 집중 관리 o 전산망 장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
	우편 소통	우편물류과 우편영업과	각 조별 6급 2명 7급 2명	o 재난 발생에 따른 우편 소통 및 배달대책 마련 o 운송망 장애에 따른 우회운송로 확보 o 우편물 접수 및 배달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o 외근직원(집배원) 안전대책 수립 시행 등

다. 재난 상황관리체계

○ 재난상황실(반) 운영 전 상황보고체계

【일과시간 중】

- 재난발생 및 징후 발견자는 우정청 운영지원과로 보고(신고)하고 운영지원과는 신속히 주무부서로 후속조치 요구

구분	우편분야	물류분야	예금분야	보험분야	금융전산분야	총괄기획
주무부서	우편영업과	우편물류과	예금영업팀	보험영업과	운영지원과, 예금영업팀	운영지원과

【일과시간 후】

- 당직계통에 따라 우정청 당직실로 보고
  (☎ 042-611-1249 / FAX 042-611-1241)로 즉보
- 우정청 당직장은 청장, 주무부서와 운영지원과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분야별 핵심요원을 비상소집

※ 분야별 주무부서 및 지원부서 연락처

분 야	주무부서	연락 전화번호 (지역번호: 042)			팩스 번호
		과 장	담당(1)	담당(2)	
우정분야	우편영업과	611-1131	611-1132	611-1133	611-1139
	우편물류과	611-1151	611-1152	611-1153	611-1161
금융분야	예금영업팀	611-1311	611-1312	611-1313	611-1319
	보험영업과	611-1321	611-1322	611-1323	
총괄기획 (지원)	운영지원과	611-1221	611-1213	611-1215	611-1240
	우정계획과	611-1111	611-1113	611-1115	611-1129

○ 재난상황실 구성 · 운영

- 운영기간: 청장지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시 (국가위기경보「경계(Orange)」단계 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운영 이전까지
- 장　　소: 소회의실(8층)
- 상황실 구성: 충청지방우정청 재난대책 상황실 구성(붙임1)

○ 기관별 상황관리체제 구축

- 각 기관별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히 복구 · 수습 될 수 있도록 자체실정에 맞는 상황관리체제 구축
- 지휘책임자(기관장) 및 분야별로 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고지하고 항상 비상소집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
- 가능하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
-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될 수 있도록 전화 및 FAX번호를 당직실에 비치
  - 주　간: 분야별 주무부서
  - 야　간: 직 상급기관 당직실
- 보고내용: 피해 및 복구상황, 응급조치사항, 전망 등

5. 금강유역환경청

1. 재난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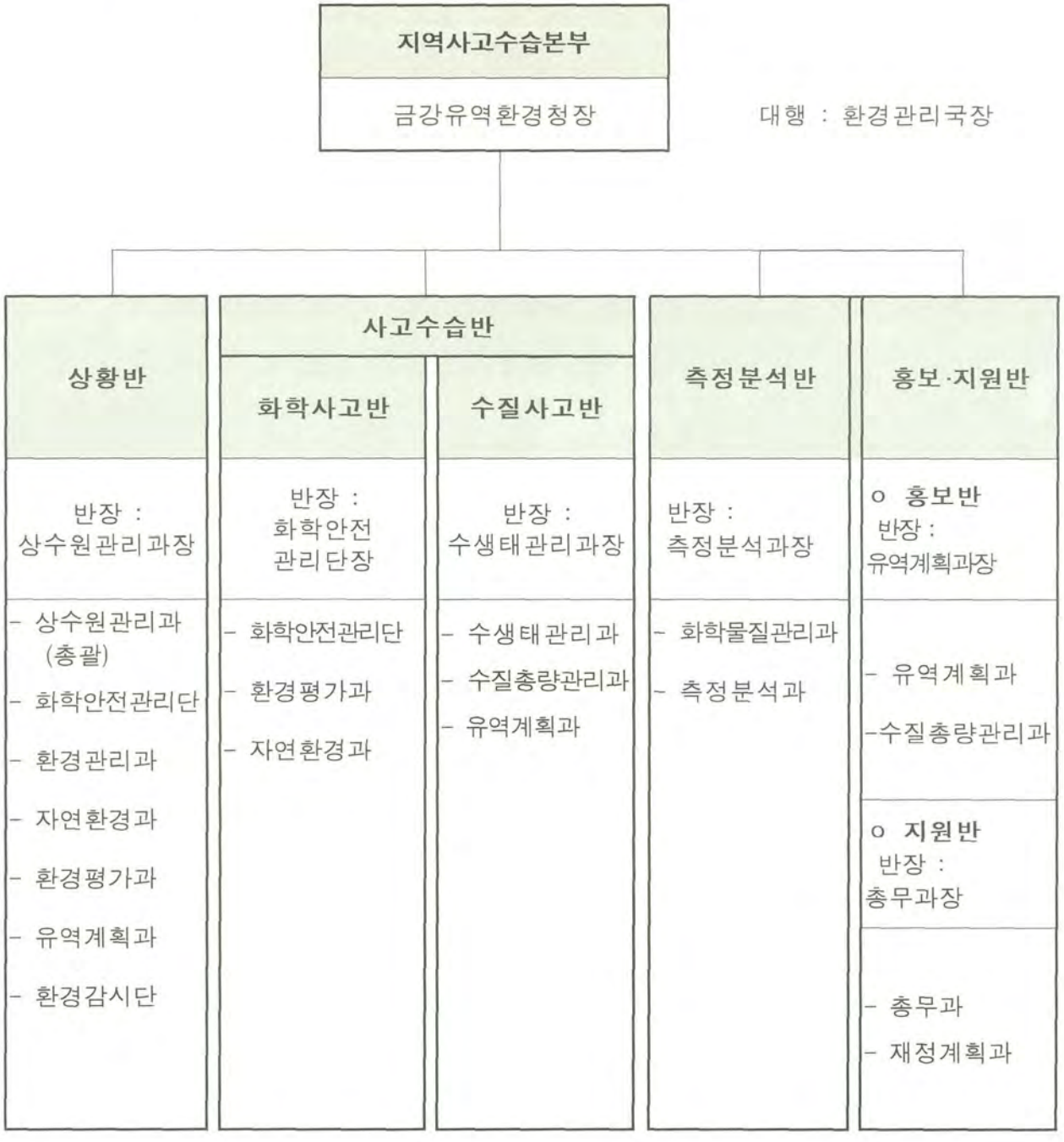

2. 주요 재난유형

재난유형	즉시보고 기준	보고(요망)기관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 등에 따른 취·정수 중단 사고	- 오염물질 유입 등에 따른 취수중단 사고 - 사고 등으로 인한 정수장 가동중단 및 수돗물 공급중단 사고	시·도, 수도사업소, 유역(지방)환경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폭설 등으로 인하여 시설전체가 가동 중단된 경우	- 하수처리시설 전체가 가동 중단되어 하수를 유입하지 못하거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하는 경우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 방류수역 유관기관
대규모 수질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	- 취·정수장 인근 하천에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페놀, 1-4 다이옥산 등) 유출사고 - 상수원 등 주변도로에서의 차량 추락·전복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시·도, 시·군·구 (상황실)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의한 사고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도, 시·군·구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붕괴 및 침출수 누출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물 피해 (화재, 붕괴 등)	시·도,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

3.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총 괄	상수원 관리과	과 장	이대휘	재난업무 총괄 안전관리 실무위원	042-685-0780
		담당자	하버들	재난업무 실무	042-865-0786 (010-2368-7721)
수질오염 사고	수생태 관리과	과 장	김종석	수질오염사고방재 총괄	042-865-0850
		담당자	한상준	수질오염사고방재 실무	042-865-0851 (010-3456-9821
화학물질 사고	화학안전 관리단	단 장	고종희	화학물질사고 총괄	042-865-0760
		담당자	우제환	화학물질사고 실무	042-865-0766 (010-2492-1014)
야 간	당직실	당직장		야간 재난업무 접수, 전파	042-865-0700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사무실	팩스	핸드폰	
상수원관리과	하버들	865-0786	865-0789	010-2368-7721	habadul86@korea.kr

6. 금강홍수통제소

Ⅰ 총 괄

1 목 표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의 체계적 개선

○ 재난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으로 위기대응 능력 제고

2 여건 전망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복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

○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홍수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음

3 지형특성

○ 금강유역은 대부분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어 첨두홍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수위가 장시간 지속될 위험이 있음

○ 유역 전체적으로 평균경사가 15.3%로 완만하나 갑천의 경우 31.6% 하천으로 유출수가 급격하게 집중될 수 있음

4 추진방향

○ **예방위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홍수예보시설(수문조사시설, 전산장비,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점검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 업무 수행**

- 재난상황 단계별 근무체제 구축 및 운영
- 과거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재난대응 능력 제고

○ **홍수발생을 최소화하는 홍수조절 시행**

- 댐수위 및 방류량 관리와 금강 다기능보 운영 관리 철저

Ⅱ 재난관리 대책

1 예방 대책

○ 정확한 수문조사를 위한 홍수예보시설의 유지관리

- 홍수예보시설 점검 및 평가
  - 수문조사시설 점검 : 정기점검(2회/년) 및 임시점검(필요시) 실시
  - 전산기 및 각종 통신장비 점검 : 일일점검 및 정비실시
- 수문조사시설 일상정비 및 보수
  - 정기 및 임시점검 시 불량개소에 대한 신속한 보수실시
  - 통신장비 및 전산기 가동상태 일일점검 및 정비 실시

○ 홍수예보시설의 기술적 장애 및 시설손괴에 따른 복구대책

조사반 파견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조사반 파견(시설, 통신직)
⇩	
응급조치	자체 조치 가능시 복구(예비품 사용 및 기계조작), 시설 파손으로 인한 관측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주요 물품 이동
⇩	
피해조사 및 상황보고	관측장비 파손정도 및 작동상태 등 구체적인 피해사항, 응급조치 사항 보고
⇩	
운영정상화 및 복구계획 수립	조사내용을 토대로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 정상화 및 복구계획 수립
⇩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요청	본부 및 유관기관에 복구를 위한 필요사항 및 지원 요청 (필요시)
⇩	
복구시행	자료수집 결측에 따른 결측치 보정방법을 적용하여 결측자료 보완 - 수위 선형외삽법, 비선형외삽법 - 우량 : R.D.S, 역거리법

○ 홍수정보 제공

- 해당 시설물의 표고와 인근 수위관측소 수위 등 조사를 통해 강우 또는 댐 방류 시 침수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홍수정보를 제공
- 유관기관 수해예방 업무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후 특정수위를 정하고 그 수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 각 기관의 수해예방 업무담당자와 하천 인근 공사담당자

2 홍수예보 체제의 구축

○ 홍수대책상황실(경계 및 심각 단계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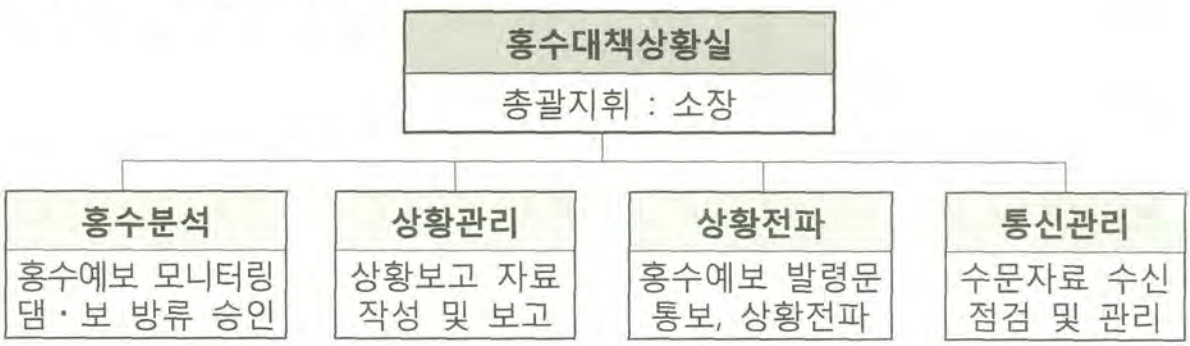

○ 반별 세부임무

구 분	반별 세부임무
홍수분석	. 수문자료 모니터링(홍수예보, 홍수정보제공관련 수문자료 오.결측 확인) . 댐.보, 저수지 방류계획 확인 . 예상강수량 파악 및 홍수위 예측, 예보 발령 . 댐.보 방류 승인 . 언론취재 응대
상황관리	. 상황보고 자료 작성 및 보고(본부) . 전화응대(단순 수위자료 및 홍수예보 발령상황 문의) . 상황전파 지원
상황전파	. 홍수예보 발령문 통보 (팩스 및 문자 통보, 크로샷 전송 확인 및 미수신기관 재발송) . 발령상황 등록 및 전파(홍수정보제공시스템 등)
통신관리	. 수문자료 정상수신 확인 및 비상시 점검 . 홍수예보지점 하천화상감시시스템(CCTV) 화면 설정 및 조작 . 상황전파 지원

○ 단계별 상황관리

관심 (사전 대비)	호우, 태풍	○ 호우.태풍 예비특보 발효 ○ 1개 시.군 이상 호우특보 발령 ○ 호우.태풍 특보가 없는 상황에서 댐.보 수문방류 승인 요청
	댐붕괴	○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하였으나 댐 관측 유입량이 감소 ○ 지진으로 댐 제체 일부손상발생이 예상
주의 (비상 1단계)	호우, 태풍	○ 해당유역 3개 시.군 이상 호우특보 발령 ○ 홍수영향유역의 5개 시.군 이상 호우특보 발령 ○ 대전광역시에 호우특보 발령 ○ 태풍주의보 발령 ○ 호우특보가 있는 상황에서 댐.보 수문방류 승인 요청
	댐붕괴	○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댐관측 유입량이 상승 ○ 댐 제체 일부 손상이 발생하여 누수량급증
경계 (비상 2단계)	호우, 태풍	○ 홍수예보(주의보.경보) 발령이 예상 ○ 태풍경보 발령
	댐붕괴	○ 댐 수위가 최고수위에 도달하거나 월류 예상 ○ 댐 제체 손상발생으로 명확한 누수 발생 ○ 여수로 손상으로 정상방류가 불가한 상황 발생
심각 (비상 3단계)	호우, 태풍	○ 홍수예보 발령
	댐붕괴	○ 댐 월류 발생 ○ 댐 본체의 과잉침윤과 하류측 기초부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는 확실한 균열 발생

○ 홍수예보의 발령

- 각 기준에 따라 홍수예보 발령 및 신속한 상황 전파

구 분	기 준
홍수주의보	. 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	. 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 육박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전환 및 해제	. 주의보에서 경보, 경보에서 주의보로 전환 및 주의보 수위이하로 수위가 내려갈 경우 해제

* 주의보수위
- 계획홍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5년 평균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60%에 해당하는 수위

** 경 보 수 위
- 계획홍수량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5년 평균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80%에 해당하는 수위

3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홍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 인터넷 팩스, SMS문자, ARS(041-854-7700~1)자동응답 시스템 활용

○ 수문조사자료는 유관기관이 재난예방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홈페이지 및 수문자료 공유시스템 활용)

○ 과거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

4 홍수조절 시행

○ 댐수위 및 방류량 관리
- 댐의 유입량, 저수량, 방류량, 수위 등을 실시간 전송받아 긴급사태에 대비
- 기상 악화 예상으로 댐수위 조절 필요시 사전 예비방류 검토 및 방류
- 하류지역 홍수피해 우려 시 댐 방류량 조절
- 홍수기간(6.21~9.20)중 제한수위를 유지토록 유도

구 분	계획홍수위 (EL.m)	상시만수위 (EL.m)	홍수기제한수위 (EL.m)	홍수조절용량 (백만㎥)
대청댐	80.0	76.5	-	250
용담댐	265.5	263.5	261.5	137
보령댐	75.5	74.0	-	10

○ 금강 다기능보 운영 관리
- 보의 유입량, 방류량, 수위 등을 실시간 전송받아 긴급사태에 대비
- 보 상한수위 초과가 예상될 때 수문방류 검토 및 승인
- 다기능보 기준수위

구 분	계획홍수위 (EL.m)	상한수위 (EL.m)	관리수위 (EL.m)	하한수위 (EL.m)
세종보	23.43	12.30	11.80	8.20
공주보	17.72	9.25	8.75	2.60
백제보	12.62	4.70	4.20	1.00

· 상한수위 : 홍수시 가동보 수문 개방의 기준이 되는 수위
· 관리수위 :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고정보 상단의 수위
· 하한수위 :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

Ⅲ 참고사항

1 홍수예보 발령전달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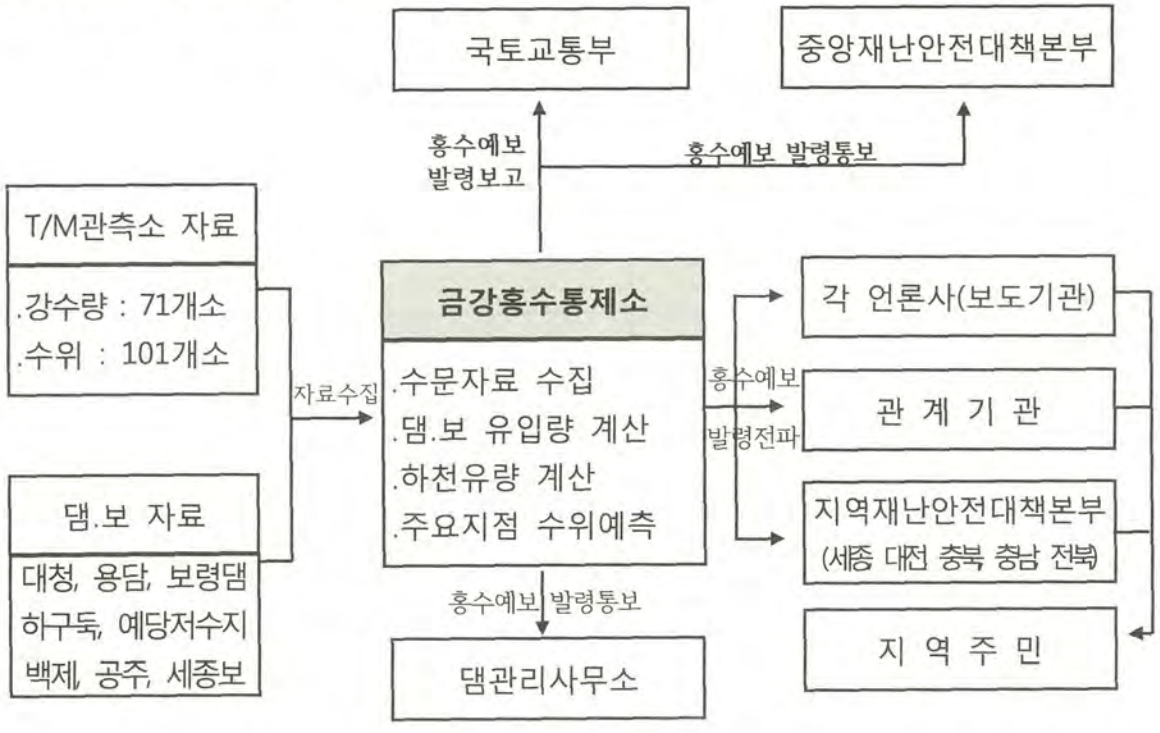

2 댐·보 방류 통보 및 보고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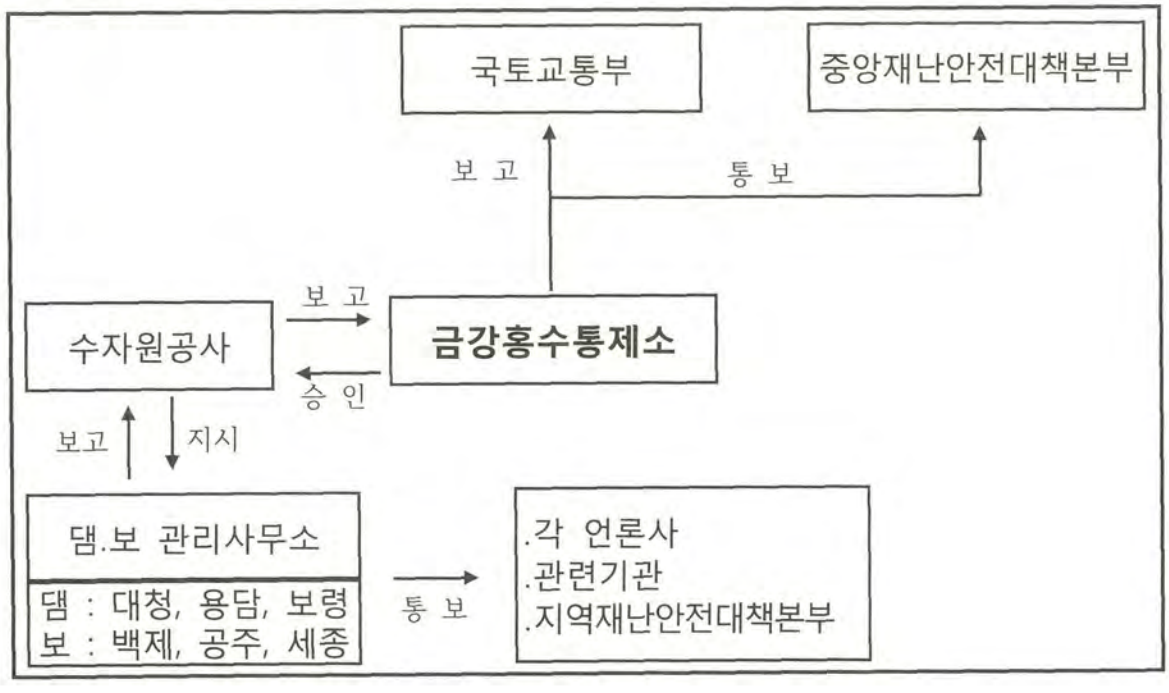

3 홍수취약지역 현황

하천명	취약시설물	취약사항	인근관측소수위
금강	세월교	시설물 표고 100.2EL.m (용담댐 50cms 방류시 통행불가)	양강교 3.2m
금강	인삼골 캠핑장	시설물 표고 129.3EL.m	제원 3.2m
금강	합강공원 캠핑장	시설물 표고 17.0EL.m	부강 2.7m
금강	부용가교	대청댐 2000cms 방류시 통행불가	부강 2.7m
금강	동강리 오토캠핑장	시설물 표고 9.8EL.m	진두 7.6m
금강	금강소수력보 하상주차장	시설물 표고 100.2EL.m (용담댐 50cms 방류시 통행불가)	양강교 3.2m
금강	하상주차장.공원 곰나루 공연장(공주보 좌안)	시설물 표고 12.0EL.m	공주 6.3m
금강	도룡가동보	시설물 표고 31.2EL.m	회덕 2.7m
논산천	병암, 신기 유원지	시설물 표고 48.8EL.m	양촌 3.8m
대동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표고 50.4EL.m	철갑교 0.8m
대전천	하상도로	시설물 표고 50.3EL.m	인동 2.6m
대천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표고 4.8EL.m	대천 1.7m
무심천	하상도로	시설물 표고 38.0EL.m	청주 1.6m
미호천	여천보	시설물 표고 38.5EL.m	오창 38.5m
미호천	작천보	시설물 표고 35.3EL.m	북일 5.2m
보강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표고 50.7EL.m	증평 1.9m
보청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표고 151.1EL.m	이평교 1.8m
영동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표고 121.5EL.m	계산 2.1m
갑천	흑석 유원지	시설물 표고 50.7EL.m	가수원 2.8m
유등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표고 54.0EL.m	복수 2.1m
곡교천	하상주차장.공원	시설물 표고 9.8EL.m	충무교 2.8m
곡교천	실옥보	시설물 표고 9.8EL.m	충무교 2.8m
무한천	하상주차장.공원	시설물 표고 8.9EL.m	원평 3.9m

4 유관기관 연락처

ㅇ 관계기관 및 지자체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전화	044) 201-3628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 863-0367
	팩스	044) 201-5558		팩스	042) 863-3108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전화	044) 201-361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	042) 270-3119
	팩스	044) 201-5556		팩스	042) 270-597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	02) 2100-3119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	041) 635-4743
	팩스	02) 2100-5590		팩스	041) 635-00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화	042) 670-3324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	043) 220-2681
	팩스	042) 670-3487		팩스	043) 220-438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화	063) 850-9329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	063) 280-2995
	팩스	063) 850-9458		팩스	063) 280-3919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전화	041) 730-597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	044) 300-5119
	팩스	041) 730-5994		팩스	044) 300-5359
금강유역환경청	전화	042) 865-0786	전주기상대	전화	063) 282-0372
	팩스	042) 865-0789		팩스	063) 231-0037

ㅇ 경찰청, 소방본부

대전지방경찰청	전화	042) 609-2361	대전소방본부	전화	042) 270-6106
	팩스	042) 609-5124		팩스	042) 270-6189
세종경찰서	전화	044) 330-0361	세종소방본부	전화	044) 300-8156
	팩스	044) 333-0333		팩스	044) 863-0119
충남지방경찰청	전화	041) 336-2561	충남소방본부	전화	041) 635-5545
	팩스	041) 336-2961		팩스	041) 635-5549
충북지방경찰청	전화	043) 240-2229	충북소방본부	전화	043) 220-4945
	팩스	043) 240-2342		팩스	043) 220-4949
전북지방경찰청	전화	063) 280-8361	전북소방본부	전화	063) 280-3880
	팩스	063) 225-5097		팩스	063) 280-3879

ㅇ 댐, 보, 저수지 운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전화	042) 629-3486	한국농어촌공사 금강하구둑(금강사업단)	전화	063) 450-9933
	팩스	042) 629-3419		팩스	063) 450-9929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전화	042) 930-7211	한국농어촌공사 삽교방조제(당진지사)	전화	041) 351-9171
	팩스	042) 930-7218		팩스	041) 351-9149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	전화	063) 430-4212	한국농어촌공사 예당저수지(예산지사)	전화	041) 330-3542
	팩스	063) 430-4276		팩스	041) 330-3549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전화	041) 939-1221	한국농어촌공사 탑정저수지(논산지사)	전화	041) 730-2131
	팩스	041) 939-1231		팩스	041) 730-2152
한국수자원공사 금강통합물관리센터	전화	041) 830-0620~1	한국수자원공사 백제보사업소	전화	041) 830-0620
	팩스	041) 830-0629		팩스	041) 830-0629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사업소	전화	041) 851-0611~2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사업소	전화	044) 861-3411
	팩스	041) 851-0622		팩스	044) 861-3421

ㅇ 언론기관

대전KBS	전화	042) 470-7400	전주KBS(보도국)	전화	063) 270-7421
	팩스	042) 470-7199		팩스	063) 270-7199
대전MBC(보도국)	전화	042) 330-3420	전주MBC(보도국)	전화	063) 220-8103
	팩스	042) 330-3703		팩스	063) 226-1365
대전TJB(보도국)	전화	042) 281-1261	YTN(대전)	전화	042) 226-8351
	팩스	042) 285-8822		팩스	042) 226-8357
청주KBS	전화	043) 260-7400	교통방송(대전)	전화	042) 600-1334
	팩스	043) 260-7199		팩스	042) 600-1529
청주MBC(보도국)	전화	043) 229-7181	연합뉴스(대전)	전화	042) 521-9700
	팩스	043) 239-7802		팩스	042) 521-9703

7. 대전지방기상청

1. 일반현황

가. 조 직



나. 주요기능

- ○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보의 생산·통보
- ○ 동네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동네예보의 생산
- ○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 ○ 관할 지역의 기상관측 및 통계업무
- ○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 업무
-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후자료의 생산·통계
- ○ 지역 장기예보, 계절기상 정보 생산·관리 및 통보
-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2. 재난·안전관리체계

가. 목 표

○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기상감시 및 예측역량 강화

○ 특이기상 예측능력 향상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위험기상 감시와 예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경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나. 여건 및 전망

○ 이상기후와 기후급변에 따라 호우, 태풍, 대설 등 과거 사례와 다르게 발생하는 양상

○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과 기상정보 전파 매체의 다양화

다. 추진방향

○ 예방위주의 방재업무 대비태세 확립

–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 및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능력 강화

– 호우·대설 등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망 강화

○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기상감시 및 예측역량 강화

○ 지진·지진해일, 화산 관련 조기감지 및 체계적 대응기반 구축

라. 주요재난유형

○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 및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

○ 산불재난/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및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등

2. 재난대응체계

가. 대전지방기상청 방재기상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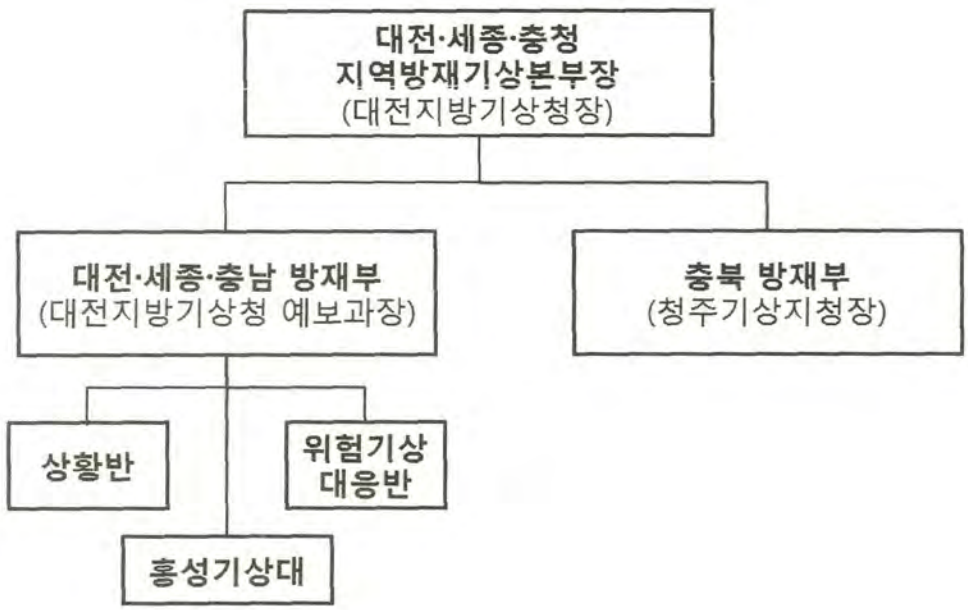

나. 재난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총괄	예보과	과장	권오웅	· 방재기상업무 총괄	042-863-0367
위험기상 대응반	예보과	예보 팀장	당직 예보관	· 관할지역 예보 및 특·정보 생산 및 통보 · 관할구역 방재기상업무수행	042-861-3692 (팩스:042-863-0369)
상황반	예보과	사무관	임장수	· 위험기상 브리핑	042-863-0367
		주무관	박미영	· 위험기상 업무담당자	070-7850-4141

다. 방재기상조직의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내 용
방재기상본부	· 소속기관을 포함한 방재기상업무의 총괄 · 방재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특별관측의 지시 ·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 위험기상 대응의 지휘 통제
위험기상대응반	· 기상 예보·특보업무 등 현업 업무 수행 · 지상、고층、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총괄 · 극값 및 특이기상 보고 · 131 기동기상지원 업무 · 긴급방송요청 및 위험기상 상황에 대한 언론 및 대국민 기상상담 · 위험기상 예상·발생 시 휴대폰문자서비스 제공 · 상황반에게 비상근무 상황 전파 · 휴일·야간에 비상근무자 도착 시까지 상황반 임무를 대신 수행 · 장비장애 모니터링·응급처치·긴급보고 · 국민, 유관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상황반	· 기상재해관련자료 수집 및 상황보고 · 대전·세종·충청지역방재기상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 비상근무 명령서 작성 · 소속기관의 비상근무현황 파악 및 비상근무자 복무관리 · 비상근무 수행사항 보고서 작성 ·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 위험기상대응반 업무 지원

라. 단계별 비상근무 운영

○ 태풍·호우 등 위험기상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경계근무, 비상근무2급, 비상근무1급

○ 위험기상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전 대응활동 강화

– 예상되는 위험기상 분석 및 재해유형, 상황시나리오 검토

– 보도자료, 131기동기상지원, 긴급방송 요청 등을 통해 언론 및 유관기관에 전파

– 유관기관 방재활동 지원

○ 대전방재지진상황반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일정 강도 이상의 유감지진 발생 시 지진상황반 구성·운영

※ 지진속보 대상 중, 많은 사람이 느낀 유감지진(국내 내륙 3.5, 해역 4.0이상)

–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 유관기관에 대응

[방재기상 비상근무단계]

구분	경계근무	비상2급	비상1급
태풍 비상	태풍의 중심이 12시간 이내에 비상구역으로 이동이 예상 될 때	태풍이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해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태풍이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육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호우 비상	관할구역에 12시간 이내에 호우특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12시간 이내에 호우경보와 큰 비 피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대설 비상	관할구역에 12시간 이내에 대설특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12시간 이내에 대설경보와 큰 눈 피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황사 비상	관할구역에 12시간 이내에 황사특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황사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12시간 이내에 황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황사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위험기상 비상	관할구역에 12시간 이내에 복합적 위험기상으로 재난이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복합적 위험기상으로 중대한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복합적 위험기상으로 광역적이고 심각한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해일 특보의 발효기준]

시·군명	검조소명 (국립해양조사원)	기준값(cm)		관할 예보관서
		주의보	경보	
당진시	대산	921	941	대전지방기상청
서산시				
태안군	안흥	769	789	
홍성군	보령	844	864	
보령시				
서천군	장항	808	828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목표

가.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나.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사업장 내 대규모 인적사고 방지

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대비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유지 등 긴밀한 협조체계 확립

2. 추진방향

가. 대규모 인적사고 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 구축

다. 지속적 훈련 및 점검활동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3.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업무 수행체계

○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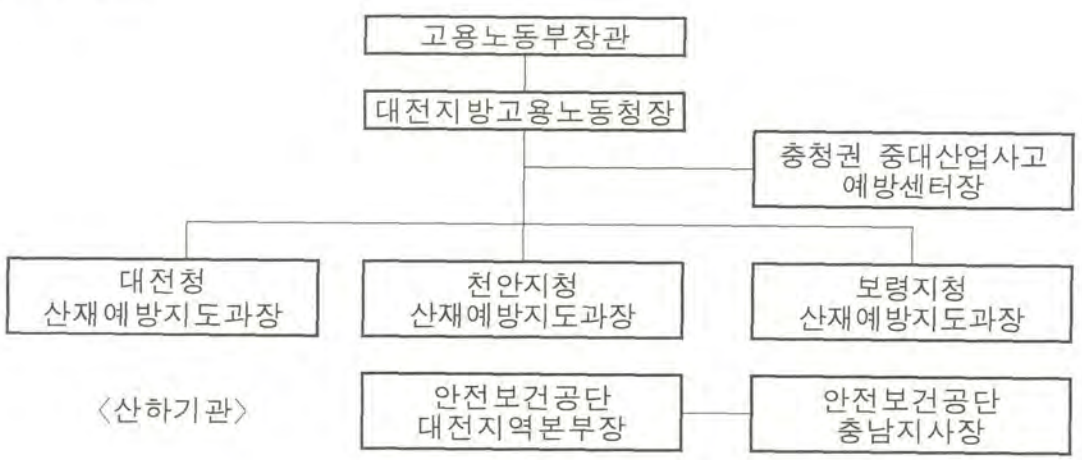

○ 주요 재난유형(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재난)

- 동일한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수가 사상한 경우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화재·폭발사고로 인한 인적재난(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관)

나. 지역사고수습본부 수행체계

○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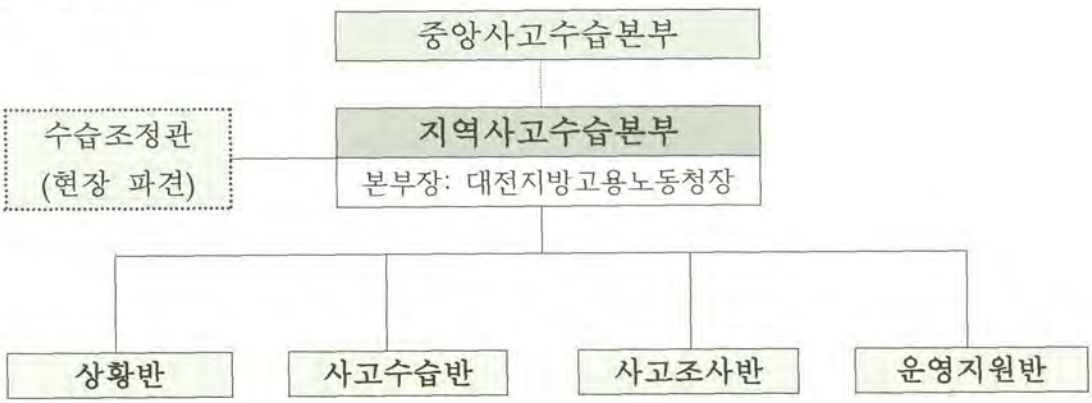

○ 분야별 임무

구 분	기 능
상황반	o 사고수습 총괄 지휘 및 본부장 보좌 o 사고 수습상황 보고 o 각 실무반 활동상황 지원 o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소와 연락체계 유지
사고수습반	o 사상자 구호 및 수습활동 지원 o 현장 복구 기술지원 대책 강구 o 사고 후 영향 조사방안 강구 o 피재자 보상 등 사후대책 강구 o 관계기관 수습지원에 따른 합동 수습
사고조사반	o 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
운영지원반	o 수습본부 행정지원 및 근무요원 복리후생 지원 o 보도자료 배포·브리핑 등 위기관리 언론 브리핑
수습조정관	o 사고 현장 수습 등의 활동 업무를 조정·지원

다. 재난 상황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관서명	관할구역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외
		사무실	팩스	당직실
대전청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042-480-6301~11 담당자: 이승환 (HP: 010-4234-2077) (E-mail: sheynn0219@moel.go.kr)	042-480-6299	042-484-6295
천안지청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041-560-2838, 65 담당자: 김영남 (HP: 010-6636-8878) (E-mail: kemco6@moel.go.kr)	041-560-2870	041-560-2800
보령지청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1-930-6146~9 담당자: 유훈종 (HP: 010-8431-4871) (E-mail: bum9475@moel.go.kr)	041-931-3930	041-934-0009
충청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충남지역 전체	041-661-5831~5 담당자: 고상호 (HP: 010-2661-0969) (E-mail: sangho7122@moel.go.kr)	041-661-5859	041-661-5831~5

※ 사고발생지역 관할 청·지청이 사고조사 및 유관기관 전파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충남지사

1. 재난관리 대상 및 임무 역할

재난관리대상	매뉴얼 상 임무와 역할
○ 산업재해, 유해화학사고 등	○ 산업재해 수습 및 원인규명 등 - 공정안전점검, 근로감독지원, 특별안전진단 지원 등

2. 사고발생 대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관할구역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외
	사무실	팩스	당직실
천안	041-570-3442 담당자: 김기성 (HP: 010-4420-8559) (E-mail: kpnet87@kosha.or.kr)	041-579-8907	041-570-3440
아산	041-570-3443 담당자: 김길태 (HP: 010-2433-4915) (E-mail: anysafe@kosha.or.kr)		
당진·예산	041-570-3444 담당자: 최승호 (HP: 010-5469-2473) (E-mail: ccchoi945@kosha.or.kr)		

3. 위기대응조직 각 반별 임무 및 수행절차

○ 위기대응조직 기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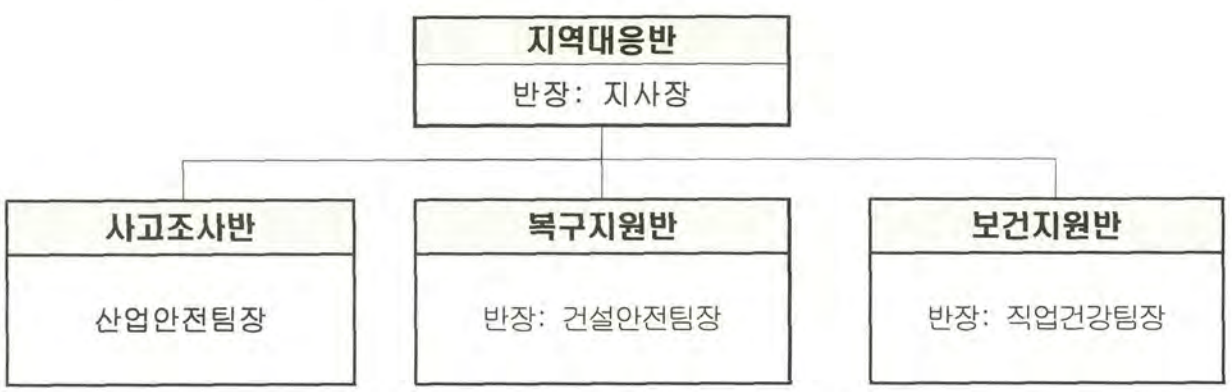

○ 위기대응조직의 각 반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주요 임무 및 역할	비고
지역대응반	o 현장 대응반 구성 및 총괄 지휘 o 고용부 지청,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유지 o 위기수준 격상 및 종료 건의	
사고조사반	o 위기발생 상황 파악 o 위기 원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 o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조	
복구지원반	o 위기지역 복구 지원 o 위기지역 2차 피해 발생우려 설비 등 긴급점검 지원 o 위기지역 내 오염물 수거 및 폐기 지원 o 위기지역 안전보건 정보제공 및 상담 등	
보건지원반	o 위기장소 작업환경 측정지원 o 피해지역 근로자 검진 지원 o 근로자, 주민의 건강·보건 자료 지원	

4. 방재물자 현황

구 분	내 용
인 력	. 충남지사 직원(28명)
장 비 (6종)	. 산소농도측정기 1대, 혼합가스(산소포함) 농도측정기 3대, 환기팬 4대, 공기호흡기 2셋트, 송기마스트(에어라인마스크) 3셋트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전지역본부

Ⅰ. 일반현황

1. 목 적

❍ 자연재난(태풍·호우 등) 및 인적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및 비상근무 행동지침을 전파함으로서 근로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기본방침

사전 예방활동 ⇒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 비상근무체제 가동 및 대응체계 강화 ⇒ 2차 재해예방 활동 등 적극 대응

❍ 재난발생 대비 사전 예방활동 철저
❍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근무체제 가동 및 대응체계 강화
❍ 대형사고 발생시 즉시보고체계 및 실시간 상황보고시스템 구축
❍ 피해사업장에 대한 복구지원 활동 등 적극대응

3. 재난 유형별 공단 비상대응

재난 및 사고유형	적용 주요기관	공단의 비상대응	공단의 기본 임무 및 역할
자연재난 경보발령	공단 본부, 일선기관	비상근무체제 가동 (24시간 상황근무)	- 비상 상황근무 - 피해파악, 필요시 복구지원
중대사고	공단 본부, 일선기관	비상근무체제 가동, 위기대응조직 운영	- 비상 상황근무 - 사고조사 및 수습지원 -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전파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공단 본부, 일선기관, 고용부 등	비상근무체제 가동, 위기대응조직 운영	- 비상 상황근무 - 사고조사, 복구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고용부)의 수습에 주도적 지원
지진 및 지진해일	공단 본부, 일선기관, 고용부, 소방청 등	비상근무체제 가동, 위기대응조직 운영	- 비상 상황근무 - 피해예측, 복구지원(융자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공단 본부, 일선기관, 고용부, 환경부 등	비상근무체제 가동, 위기대응조직 운영	- 비상 상황근무 - 사고조사, 피해예측, 복구지원

4. 비상근무의 구분

구 분	자연재난	인적사고
대 상	경보 발령시부터 해제시까지(기상청 특보) · 태풍,호우,홍수,대설,강풍 등 경보발령시 - 도서 및 산간지역 발령시 등은 제외 ·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발령으로 인해 사업장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대사고 및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시 · 중대산업사고 :전문기술총괄실(중대산업사고 담당부서) · 제조업 등 사고: 산업안전실(안전담당부서) · 건설업 사고: 건설재해예방실(건설담당부서) · 보건분야 사고 : 직업건강실(직업건강담당부서) · 서비스업 등 사고 : 서비스재해예방팀(서비스담당부서)
반 구성	본부 : 상황총괄반 일선기관 : 지역대응반	본 부 : 상황총괄반, 홍보반, 운영지원반, 사고수습지원반 일선기관 : 지역대응반, 사고조사반, 복구지원반, 보건지원반
상황전파	SMS문자발송 및 유선전파 등	SMS문자발송 및 유선전파 등
근무인원	본부 1명, 지사 1명	2명이상 원칙(해당 주관부서장이 조정가능)
근무장소	본 부 : 전문기술총괄실 지역본부/지사 : 안전업무담당부서	본 부 : 해당 실 지역본부/지사 : 해당 주관부서
비상 근무시간	평일야간 : 18:00~22:00 ※ 평일 근무시간에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업무 수행 ※ 휴일에는 기본적으로 당직근무자가 상황파악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휴일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주관부서장/일선기관장 판단하에 조속히 비상근무 시행 ※ 비상 근무시간 이후: 전화 착신전환 등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당직자가 수행	

II. 상시 위기대응

1. 상시 위기대응 태세 확보

○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주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MSDS 요약자료 확보

- 위기상황 발생시 공단 전산망을 활용, 작업환경측정(작업환경실태조사)결과표 및 특수건강검진결과 자료를 확보, 취급 및 노출되는 유해위험물질 파악

- 파악된 자료를 유관기관(측정 및 검진)과 비교검토를 통해 신뢰성 자료 확인 및 확보

- 공단 홈페이지 화학물질정보(공단-MSDS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색/출력비치, 관련 유관기관(노동부 및 소방서 등)과 공유

○ 사고대응반에 호흡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방안

- 대전지역본부에 개인보호구 필터(유기용제, 산류 등)를 상시 비치하며, 적정보호구를 보급

- 긴박한 사고에 대응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유출·노출 화학물질의 종류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송기마스크(에어라인) 또는 공기호흡기를 사용

- 불산 등과 같이 피부흡수 물질인 경우 호흡보호구 뿐만 아니라 보호장갑, 전신을 감싸는 보호복을 동시 보급함.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호흡보호구 선정 기술지침(KOSHA Guide(H-150-2014))」 참조

○ 비상시 위기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현황

계	기술사	기 사								석.박사
		소계	전기	기계	화공	위생	건설	안전	기타	
64	21	32	3	6	2	4	5	8	4	11

※ 석·박사 인력은 기술인력과 중복집계함

2. 사고발생 대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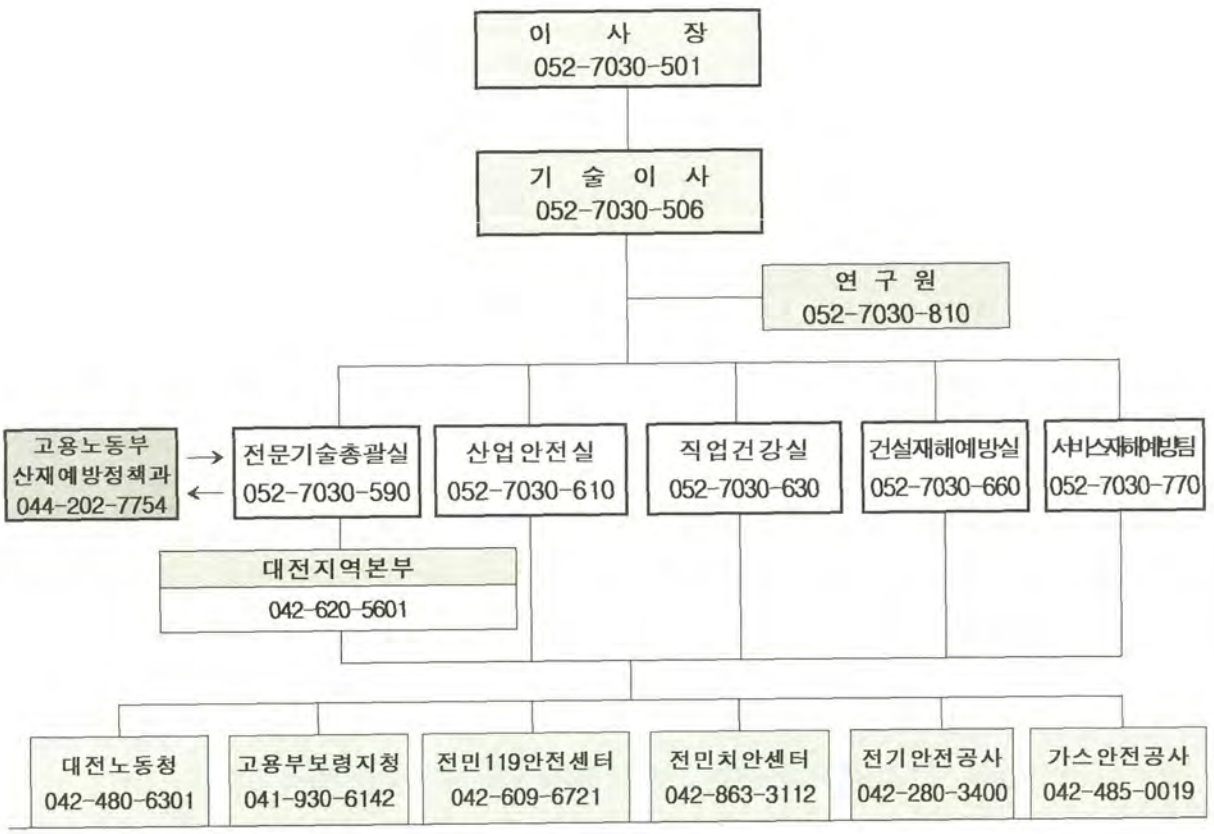

3. 위기대응조직 각 반별 임무 및 수행절차

○ 위기대응조직 기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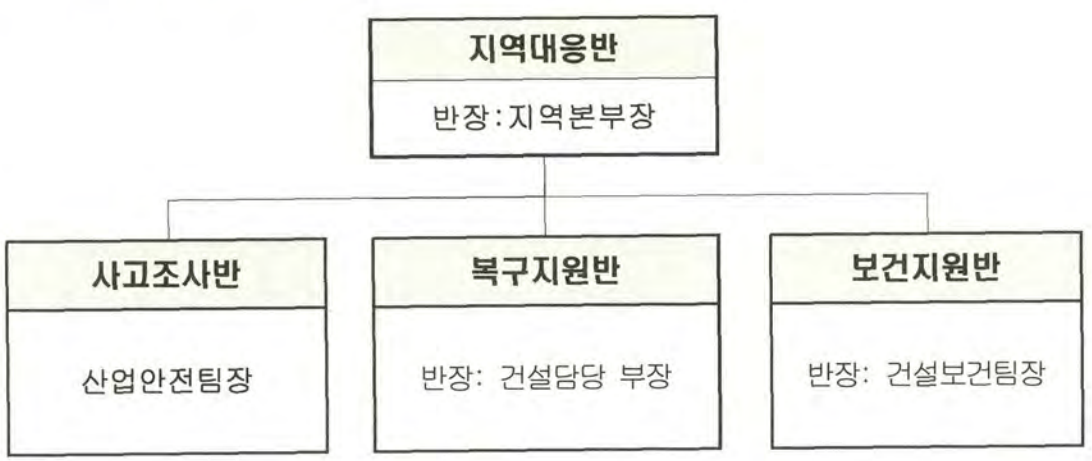

○ 위기대응조직의 각 반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주요 임무 및 역할	비고
지역대응반	o 현장 대응반 구성 및 총괄 지휘 o 고용부 지청,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유지 o 위기수준 격상 및 종료 건의	
사고조사반	o 위기발생 상황 파악 o 위기 원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 o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조	
복구지원반	o 위기지역 복구 지원 o 위기지역 2차 피해 발생우려 설비 등 긴급점검 지원 o 위기지역 내 오염물 수거 및 폐기 지원 o 위기지역 안전보건 정보제공 및 상담 등	
보건지원반	o 위기장소 작업환경 측정지원 o 피해지역 근로자 검진 지원 o 근로자, 주민의 건강·보건 자료 지원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목 표

가. 선제적 재난관리 및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전의 체계적 개선

나. 재난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복구대책 수립으로 위기대응 능력 제고

※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규정

2. 여건 전망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

○ 기후변화는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 부상

- 산업발전과 에너지소비의 증대로 인한 탄소 배출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킴

○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설,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

- 지속적 예방활동으로 풍수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피해액은 증가할 것임

나.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면서 생활안전관련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기술발전과 편익욕구 증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이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면서 재난안전관리 수요 증대

다.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 지속적 예방 노력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에 대한 욕구와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음

라.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재난 및 안전관리가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3. 추진방향

가. 예방위주의 안전점검 실시 및 선제적 재난 관리

나. 신속·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확립

다. 초기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라. 항구적인 재난복구책 강구

4. 재난.안전관리체계 등

가. 재난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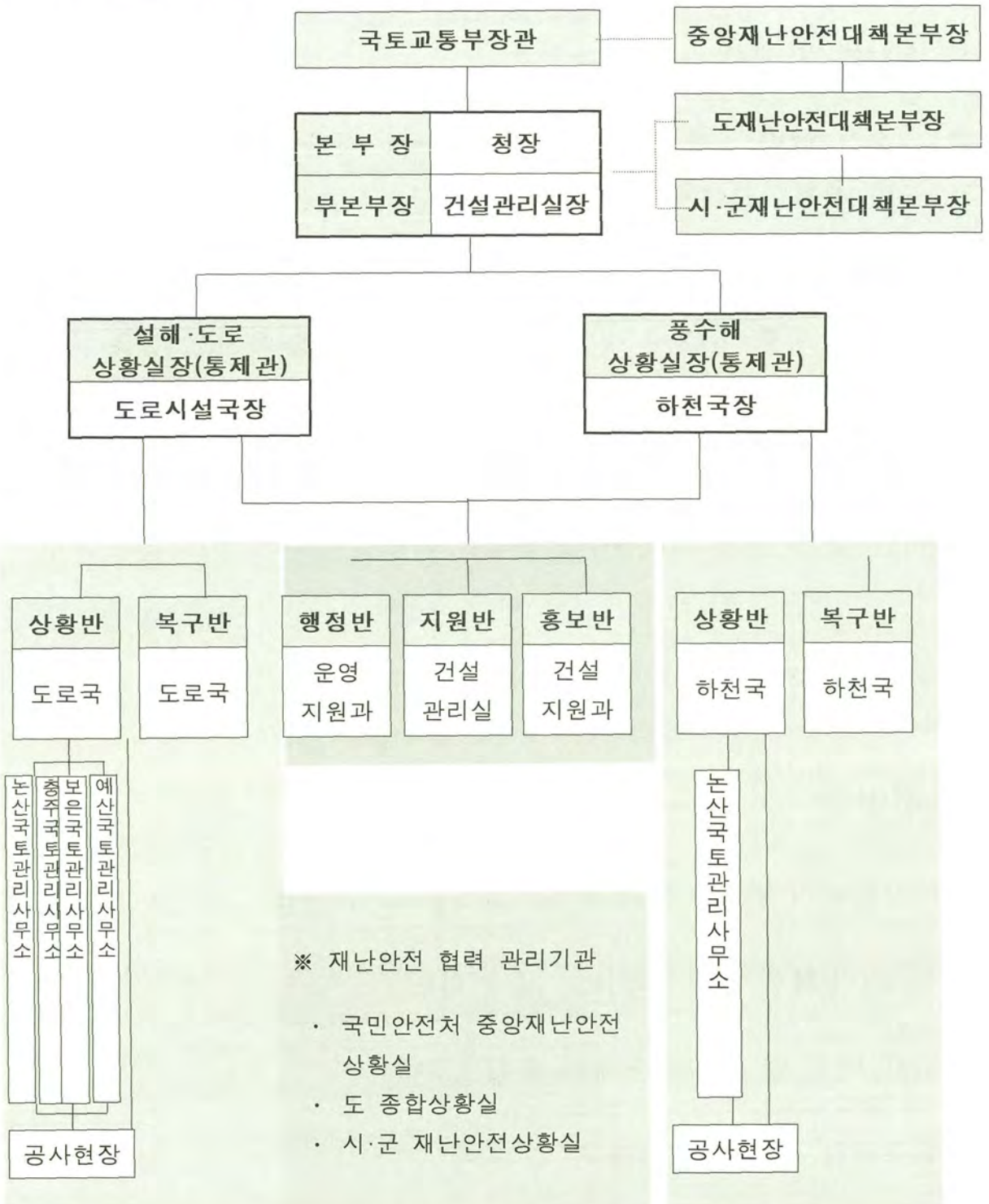

* 재난 유형, 규모, 대처 방안 등을 감안하여 재난 분야별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상황실 설치 및 상황관리 전담요원 배치현황

- 위　　치 : 재난담당부서별 상황실 운영
- 근 무 자 : 재난 유형, 규모, 대처 방안 등에 해당 반원 등으로 구성
- 근무방법 : 수개조로 나누어 24시간 교대근무

○ 정보수집 및 보고(통보)방법 등

- 정보수집 : 소속기관(국토사무소) 보고, 자체 정보수집 등
- 보고(통보)방법 : FAX 또는 E-mail

나. 재난관리 담당부서 현황

재난 분야	담 당			업무분장	연락처
	부 서	직 위	성 명		
총괄	건설관리실	시설주사 (시설주사보)	신명섭 (이순호)	재난관리담당	☏ 042-670-3421 HP 010-5451-6960 (010-5487-4217) FAX: 042-670-3488
수해	하천공사과	시설주사보	서동원	수해담당	☏ 042-670-3324 HP 010-3639-1328 FAX: 042-670-3487
설해	도로계획과	시설서기	양승윤	제설담당	☏ 042-670-3517 HP 010-8874-2915 FAX: 042-670-3484
도로	도로공사과	시설서기	김남연	터널사고, 지진 등 담당	☏ 042-670-3555 HP 010-7113-9291 FAX: 042-670-3485
야간	당직실	-	근무자	당직자	☏ 042-670-3261 FAX: 042-670-3489

○ 수해대비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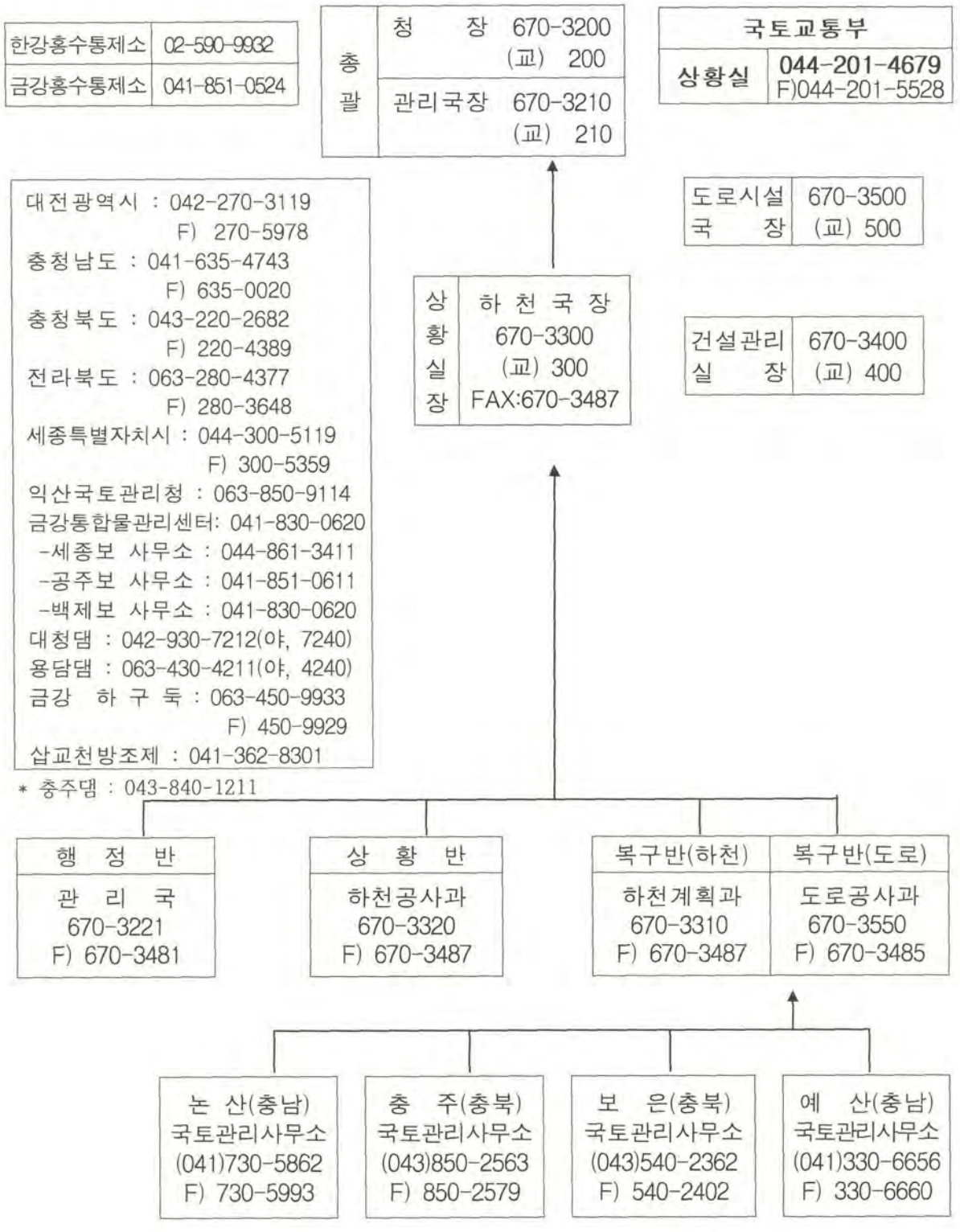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32
금강홍수통제소 041-851-0524
총괄
청 장 670-3200 (교) 200
관리국장 670-3210 (교) 210
국토교통부
상황실 044-201-4679 F)044-201-5528
대전광역시 : 042-270-3119 F) 270-5978
충청남도 : 041-635-4743 F) 635-0020
충청북도 : 043-220-2682 F) 220-4389
전라북도 : 063-280-4377 F) 280-3648
세종특별자치시 : 044-300-5119 F) 300-5359
익산국토관리청 : 063-850-9114
금강통합물관리센터: 041-830-0620
-세종보 사무소 : 044-861-3411
-공주보 사무소 : 041-851-0611
-백제보 사무소 : 041-830-0620
대청댐 : 042-930-7212(야, 7240)
용담댐 : 063-430-4211(야, 4240)
금강 하구둑 : 063-450-9933 F) 450-9929
삽교천방조제 : 041-362-8301
* 충주댐 : 043-840-1211
상황실장 하천국장 670-3300 (교) 300 FAX:670-3487
도로시설국장 670-3500 (교) 500
건설관리실장 670-3400 (교) 400
행정반 관리국 670-3221 F) 670-3481
상황반 하천공사과 670-3320 F) 670-3487
복구반(하천) 하천계획과 670-3310 F) 670-3487
복구반(도로) 도로공사과 670-3550 F) 670-3485
논산(충남) 국토관리사무소 (041)730-5862 F) 730-5993
충주(충북) 국토관리사무소 (043)850-2563 F) 850-2579
보은(충북) 국토관리사무소 (043)540-2362 F) 540-2402
예산(충남) 국토관리사무소 (041)330-6656 F) 330-6660

○ 설해대비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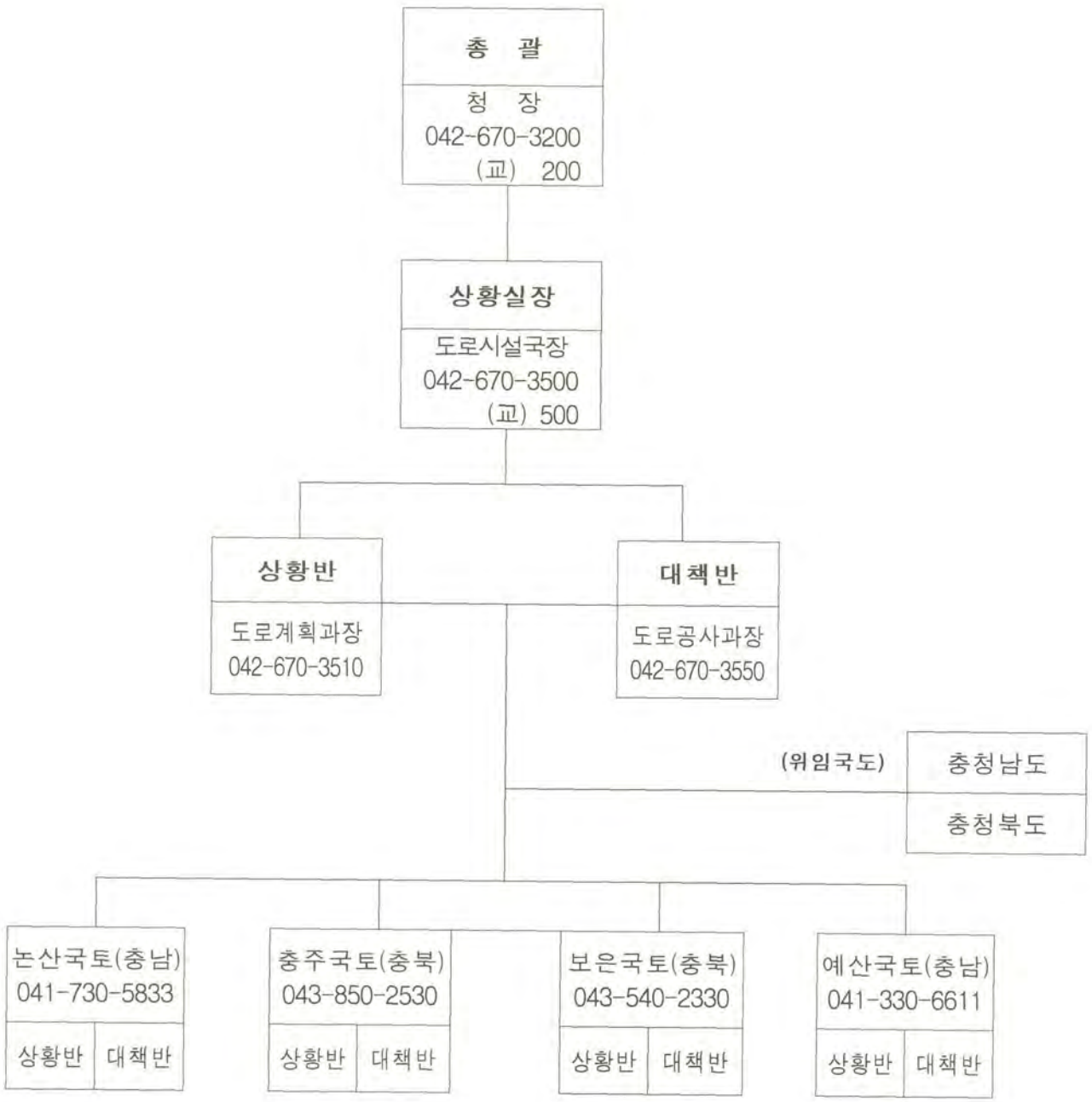

※ 국토관리사무소별 관리지역

○ 논산국토 :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세종시, 청양군, 금산군, 서천군(4시 4군)

○ 예산국토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서천군(5시 4군)

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장 총 괄

1. 목 표

○ 선제적 재난관리 및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의 체계적 개선

○ 재난발생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복구대책 수립으로 위기대응 능력 제고

2. 재난·안전관리체계

가. 조직 및 기능

○ 재난관리부서 기구표



○ 담당업무 분장내역

분야	담당			업무분장	연락처
	소속	직위	성명		
총괄	운영지원과	주무관	양경석	재난관리 업무총괄	041-660-7616
		주무관	안익균		
재난 및 안전관리	항만공사과	과장	전경철	자연재난 업무총괄	041-660-7698
		주무관	이병식		
	선원해사안전과	과장	오영훈	인적재난 업무총괄	041-660-7635
		주무관	최준호		
	항만물류과	과장	정재호	국가기반재난 업무총괄	041-660-7651
		주무관	임종균		

○ 단계별 근무인원 및 상황실 설치(자연재난 분야)

- 위　　치 : 청내 회의실 활용
- 근 무 자 : 재난 유형, 규모, 대처 방안 등에 해당 팀원 등으로 구성
- 근무방법 : 수개조로 나누어 24시간 교대근무
- 단계별 근무인원

구 분		인 원	지방사고수습본부 근무요원	
			총 괄 반	분야별 실무반
준비단계	상 시 대비체제	1명	상황관리체제 유지(항만공사과 1명)	
	사 전 대비체제	8명	**2명** 반 장 1명 6급이하 1명	**6명** 6급이하 각 1명
비상단계		14명	**2명** 반 장 1명 6급이하 1명	**12명** 반 장 각 1명 6급이하 각 1명

나. 국가기반재난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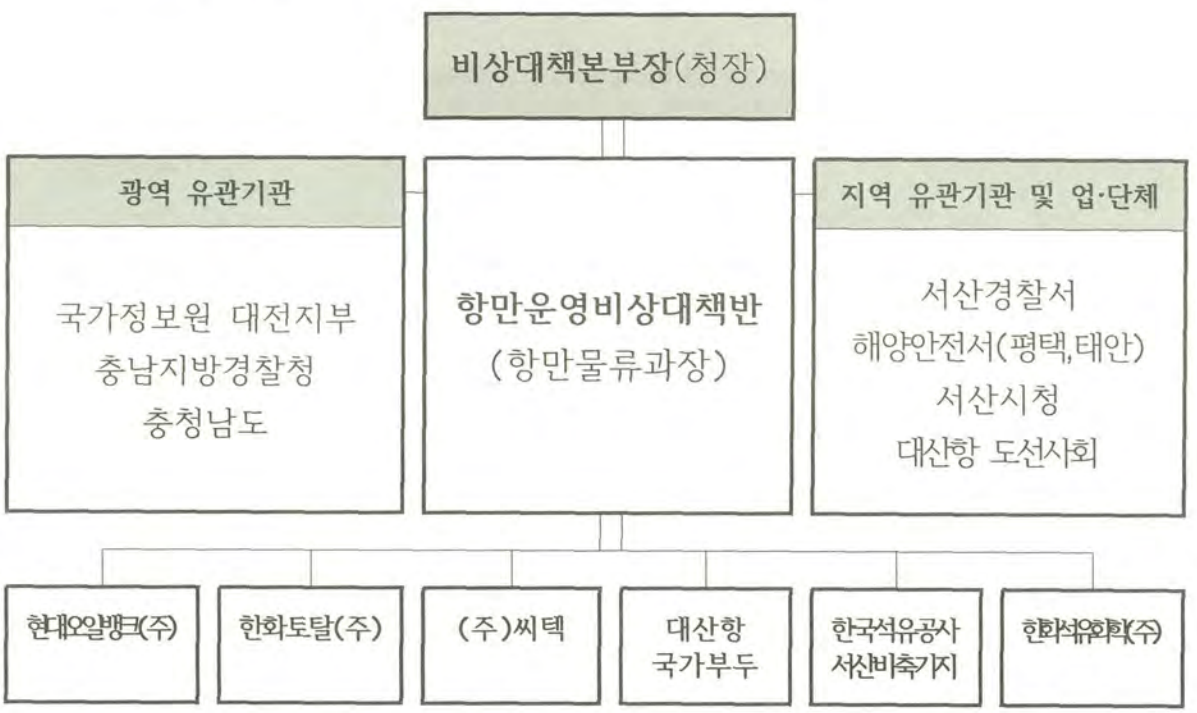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1. 재난관리대책

구 분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풍수해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비 ·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유지 ·행동매뉴얼 수립	·여름철 재난예방 대책수립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관리 ·여름,겨울 재난대책 기간 운영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별 반별 조치 ·시설물 응급복구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실태점검 ·인력. 상비지원 및 자원동원체계 가동 등
해 상	·선박과 해양안전시설 해상교통환경, 안전강화 ·해양안전 정보제공 ·항공에 의한 화재, 시설피해예방 등	·해상교통 제어기능 강화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 ·항공기 폭발,화재 등에 의한 대책강구	·체계적 구조활동 ·사고수습상황실 운영 제설순위 결정 ·인명 긴급구조 활동 등	·해양사고 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지 진·해 일	·신속한 상황전파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위기매뉴얼 정비 등	·예.경보 정보 시스템정비 ·항만시설물 내진 보강 등	·주요시설물 응급조치 ·2차 재난방지대책 강구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민간참여지원 등

2.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가. 항만

분야별	지 정 기 준	대상시설 범위 (지정시설)
교통수송 (항만)	○ 인력수송과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데 필요한 교통·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무역항 (대산항)

나. 국가기반체계 보호자원관리

분 야	시설별 지정	유형별	대체 인력 및 장비	비 고
교통수송(항만)	대산항	화물연대 파업	대한통운(주)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13대	업체별 자체 계획 수립·운영
		항만근로자 파업	각 하역사 자체인력 운영	"
		선원 집단 거부시	각 업체별 자체 인력 운영	"

다. 국가기반체계 상황관리

(1) 국가기반체계 위기경보수준

수 준	내 용	주요 임무
관심 (Blue)	○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 ○ 정부.화주 등을 상대로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 국지적 집회가 빈발하고 대규모 투쟁집회 예고	- 징후활동 감시 및 전파
주의 (Yellow)	○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투쟁집회를 개최하기로 공식 결정 ○ 전국적 파업에 동조하려는 움직임 등 즉각적인 파업분위기 고조 ○ 제시한 기한 내 대 정부 요구사항 수용 거부 시 집단행동 돌입을 공식예고하고 대 정부 압박 가시화	- 대산청 비상대책본부 가동 및 현황 점검
경계 (Orange)	○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투쟁집회 개최 및 집단행동 독려, 피해가 가시화 되는 등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 ○ 국지적 집단행동 돌입	- 비상항만대책 시행 및 대국민 홍보
심각 (Red)	○ 전국범위의 집단행동으로 사태 확산 ○ 불법행위 빈발로 물류기능의 마비를 시도하여 대산항 물류운송에 심각한 피해 발생 ○ 다른 조직과의 연대 집단행동 돌입	- 선박 입출항 조정 및 연안운송 활용 등 비상 항만운영 시행 - 항만보안강화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13.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제 1 장 총 괄

1. 목 표

1-1. 일반사항

가. 법적근거 및 성격

1) 근 거

○ 「수난구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성 격

○ 수난구호법(제5조)에 따라 해수면에서 수난구호 관련 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광역·지방구조본부 설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의거 긴급구조기관 및 동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

나. 대응방침

○ 사고 발생초기 신속한 구조 세력투입으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예방

○ 특수재난(화재선박, HNS) 대응력 강화

- 다양한 특수 임무에 대한 대응절차 정립 및 초동대응 강화

○ 다중이용선박 근접 안전관리로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 유관기관·민간 협력 대응

- 민·관 합동훈련 실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협조체계 강화

1-2. 비전과 목표

비전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목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국민 생명·재산 보호」

추진 과제

현장대응 역량강화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역할 강화(동·서해지역대 조기정착) ②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특화된 전문 구조인력 양성 ③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합동 훈련 강화 ④ 해양응급의료시스템 운영 및 응급구조사 양성 ⑤ 해상교통관제사 사고 대응 역량 강화
장비 및 시스템 보강	① 수색구조장비 도입 등 구조 인프라 확충 ②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청사 및 교육·훈련 시설 확보 ③ 휴대폰 난청해역 해소를 통한 연안해역 안전망 강화 ④ 해양긴급신고 전화 통합에 따른 시스템 개선 ⑤ 차세대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 구축 ⑥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확대 구축 운영
제도·매뉴얼 정비	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 신설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안정적 운영 ③ (중특단) 해양사고 유형별 특수구조매뉴얼 제정 ④ '해수욕장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정착 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⑥ 항만 및 연안 VTS 통합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민관 및 국제 협력 체계 확립	① 민간구조 활성화 및 지원 확대 ② 민간잠수사 신체검사 지원 및 동원체계 확립 ③ 국제수색구조 합동훈련 및 협력 체계 강화 ④ 유·도선 우수사업장 선정 및 명예안전관리자 위촉
현장 중심 사고 예방 활동 강화	① 사고다발해역 분석을 통한 해양안전사고 예방 활동 ②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③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④ 수상레저 안전관리 활동 강화

2. 추진 방향

1 현장 구조 역량 강화

□ **유관기관·단체간 해상재난 대비·대응 협력체제 강화**

- ○ 수난구호대책회의를 통한 재난 유관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 ○ 민·관·군 합동훈련시 유관기관(여객선사 등) 및 민간(어선 등) 참여 유도
- ○ 지역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 및 소관사항 재정비

□ **민간해양구조대 구조 활동 및 조난선 예인서비스 활성화**

- ○ 관내 민간해양구조대원 총 85척
- ○ 수난구호법 의거 해양경비안전관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출동한 민간해양구조대에 대한 각 종 수당 및 유류 실비 지급

□ **다중이용 선박(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 ○ 여객선 및 유·도선 긴급구조장비 도면 확보 안전센터, 경비함정 숙지
- ○ 안전센터↔상황센터↔경비함정 간 3단계 모니터링 연계/안전관리
- ○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대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철저
- ○ 안개·황사로 인한 저시정 등 기상불량시 출항통제 강화

□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 출항선박 무중신호장비, 항해·기관·통신·구명장구 등 안전점검 철저 홍보
- ○ 저시정관련 기상 특보시 선박통제 철저, 어업정보통신국 및 해상교통 문자방송 활용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 ○ 출동함정 경비중 저시정 발견시 인근 조업 및 항행선박 상대, 안전 항해 계도 활동



제 2 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 체계

1. 종합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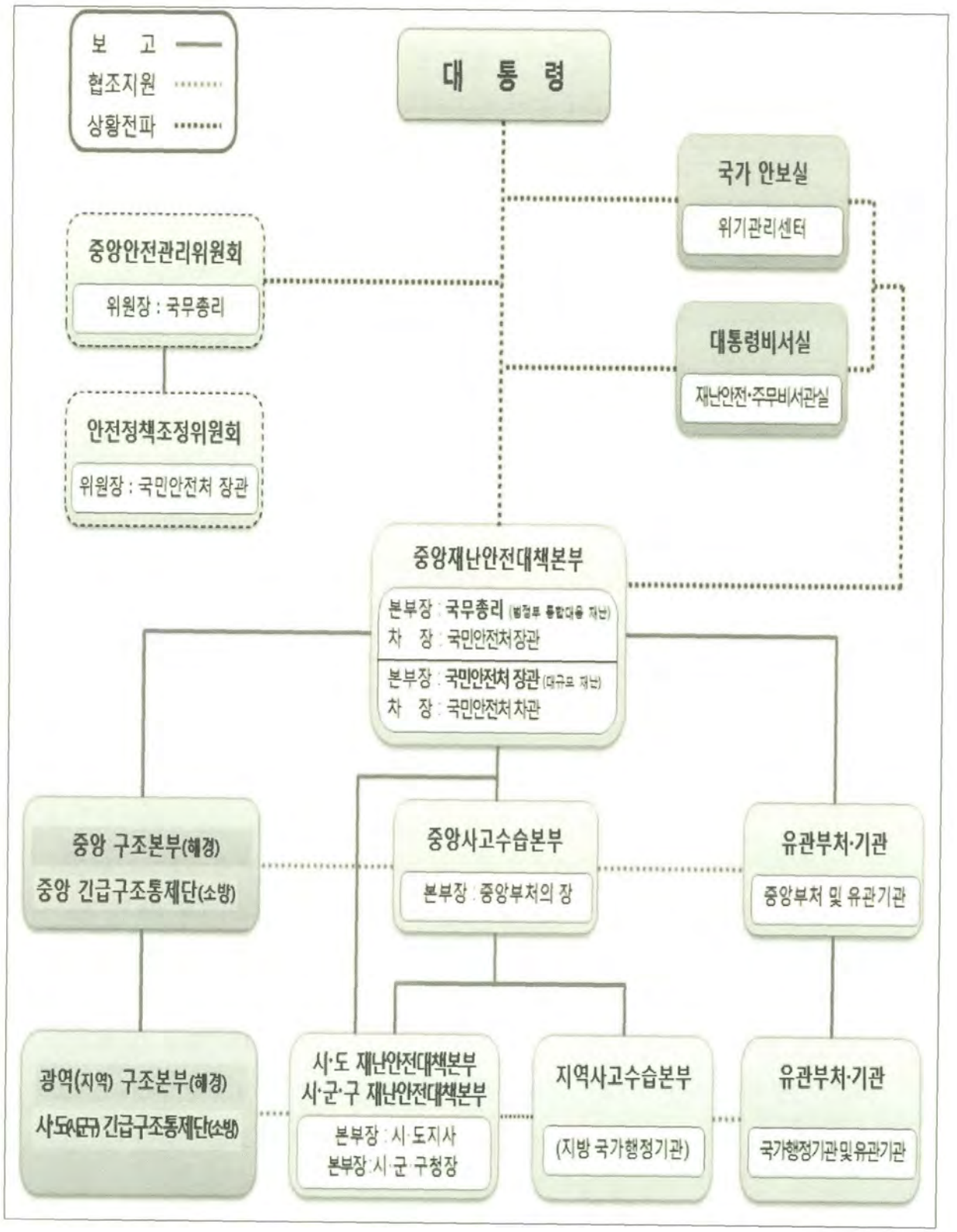

1-1. 위기관리 기구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정보 상황 모니터링 ○ BH내 위기 상황 전파 ○ 범정부적인 위기대응체계 가동 확인 ○ 초기상황 대통령 보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재난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분야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지역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 ○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중앙구조본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 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 ○ 해양사고 구조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구 분	임무와 역할
광역구조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 ○ 선박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수사대책본부 운영
지역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상 긴급구조 현장 활동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 ○ 해당 관할 해역 재난 구조·피해 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 수행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 장관)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 ○ 해양 선박사고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 선체인양 등 환경 원상복구 대책 강구(보상관련) ○ 선박사고 원인규명 특별조사반 운영 ○ 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
지역사고수습본부 (지방해양수산청장)	○ 해당 관할 해역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 수행 등

2. 지역·광역 구조본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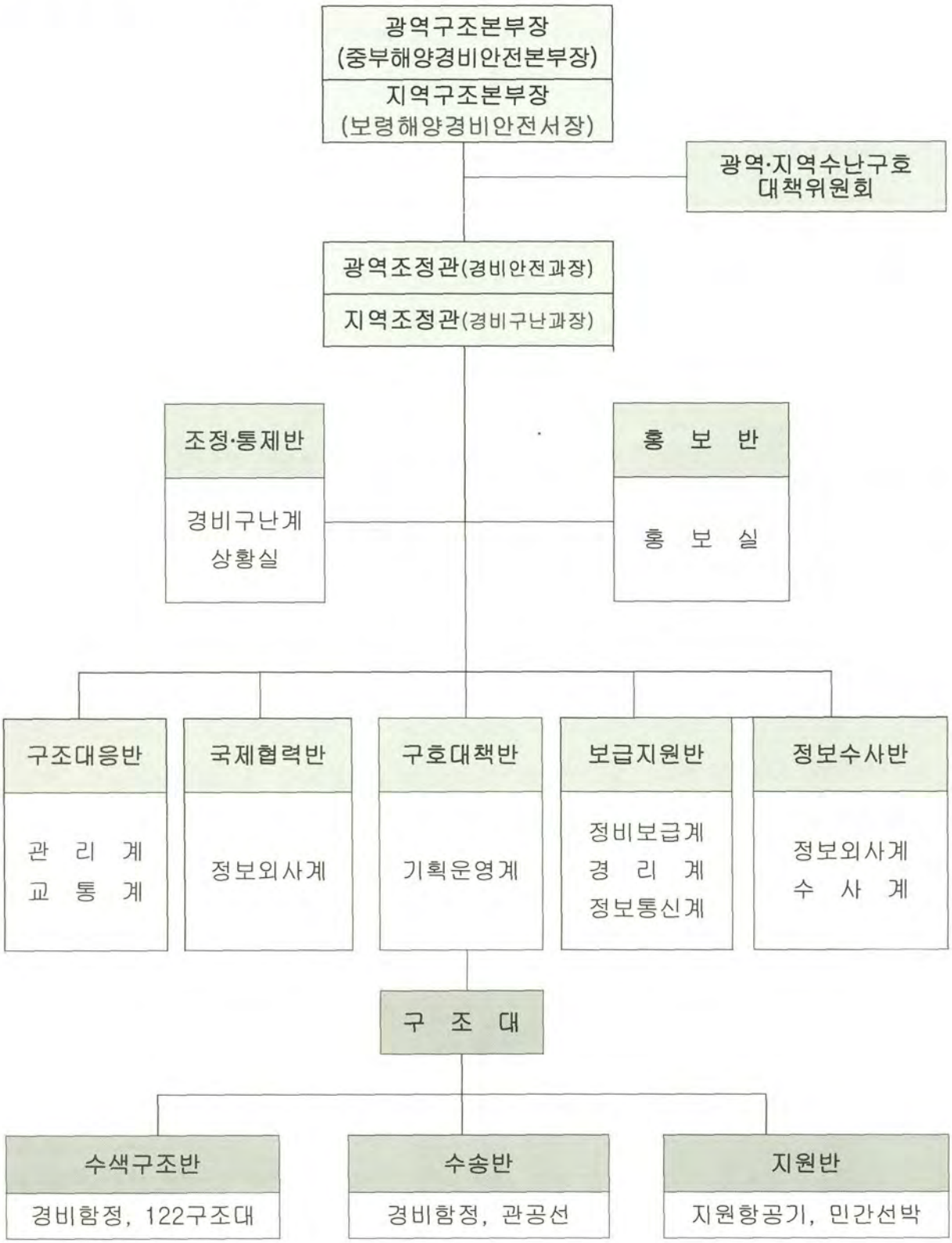

2-1. 부서별 임무

부 서 별		임무 및 역할
광역·지역 구조본부장		○ 관할해역 긴급구조 총괄지휘·조정·통제
총 괄 지휘부 (광역조정관, 지역담당관)	조정·통제반	○ 구조대응 상황 분석·판단 ○ 구조대응 상황 조정·통제 ○ 대응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관련기관 상황보고·통보
	홍보반	○ 대중매체 홍보 - 기자브리핑, 기자안내, 자료제공, 보도안 작성 ○ 매스컴 보도 추세분석, 여론수집 적극대응 ○ 현장상황 촬영 기록 보존
구조 대응반		○ 조정·통제팀 지원 ○ 유관기관 및 민간구조지원 세력 동원 및 관리
국제 협력반		○ 외국적 사고선박 선주, 보험사 등 정보파악 ○ 외국인 구조자, 사상자 파악 ○ 외국구조대 진·출입시 통관 등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구호 대책반		○ 유족·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편의 도모 ○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에 대한 조치 - 수송방안, 병원지정, 수용, 가료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보급 지원반		○ 구조장비 등 현장 보급 추진 ○ 차량배치, 인원·장비수송 ○ 피복, 급식, 연료, 유류, 소모품 확보지원 ○ 전진 장비품 보급기지 운용
정보·수사반		○ 여론수집 → 홍보반에 제공 ○ 사망·실종자 유족·관련자 안내, 협조 ○ 왜곡, 유언비어 정보수집 및 확인 ○ 구조상황 유족·관계인 등에 설명 이해 ○ 미담사례 발굴(구조일지, 수기, 경험담 등) ○ 사건수사, 원인규명 - 정책·시책개선사항 조사, 발굴

3. 주요 대응 절차

상 황 전 파

○ 주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지역구조본부)
○ 내용 : 사고발생 위치, 상황, 피해 내용 등
○ 경로 : 사고인지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 국가안보실, 유관기관

* 외국기관, 선박·항공기, 민간 등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최초 인지한 기관은 지체없이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관련 상황을 전파



초 동 조 치

○ 주관 : 중앙·지역구조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 내용 : 사고 주변해역에 전개된 구조함정 현장 출동, 관련국 구조책임기관에 신속한 구조 지원 요청
○ 경로 : 중앙구조본부 → 유관기관, 외국 구조책임기관(외교부 지원)



대 응 활 동

○ 주관 : 중앙·지역구조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 내용 : 수색 및 인명구조, 구조함정 파견, 구조자/사망자 등 이송
○ 경로 : 중앙구조본부 ↔ 유관기관, 외국 구조기관(주변국영해)

* 우리 구조함정/항공기의 영해진입 협조 요청 병행 실시



사 후 관 리

○ 주관 : 해양수산부
○ 내용 : 사고원인 규명,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가족 처리 (장례, 치료, 보상) 등
○ 경로 : 해양수산부 ↔ 선사/항공사/유가족 등

* 필요시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및 파견

14.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제 1 장 총 괄

1. 목 표

1-1. 일반사항

나. 법적근거 및 성격

1) 근 거

○ 「수난구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성 격

○ 수난구호법(제5조)에 따라 해수면에서 수난구호 관련 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광역·지방구조본부 설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의거 긴급구조기관 및 동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

나. 대응방침

○ 사고 발생초기 신속한 구조 세력투입으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예방

○ 특수재난(화재선박, HNS) 대응력 강화

- 다양한 특수 임무에 대한 대응절차 정립 및 초동대응 강화

○ 다중이용선박 근접 안전관리로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 유관기관·민간 협력 대응

- 민·관 합동훈련 실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협조체계 강화

1-2. 비전과 목표

비 전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목 표 1시간 내 현장 도착「골든타임 확보」

4 대 추 진 전 략

1 현장 구조역량 강화

① 구조 교육·훈련 강화 ② 다중이용선박 선체 구조 숙지
③ 현장근무자 구조능력 향상

2 원격응급의료시스템 및 응급 구조 전문성 향상

① 응급처치 역량 강화 ② 해양원격의료시스템 운용법 교육 및 응급구조사 양성

3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① 다중이용선박 근접 호송 ② 해상 기상정보 분석 활용

4 민·관 및 협력 구조체계 확립

① 민간·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② 122구조대 구조역량 강화

2. 추진 방향

1 현장 구조 역량 강화

□ 구조·교육 훈련 강화

○ 경비함정 출동 기간 중 1회 이상 인명구조 훈련 실시

- 표류자 위주 인명구조 방식 → 직접구조, 등선·퇴선유도 훈련으로 전환

○ 본부, 지방본부, 해경서별 민·관·군 참가 **실전형 훈련** 실시

- 국가 구조자원을 최대 동원하여 여객선 침몰 등 대규모 해양사고 상황 가정
- 민간의 대응역량 향상을 제고하고, 민·관·군 합동세력 지휘체계

□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선체 구조 숙지

○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해양사고 발생시 해당 선박의 전반적 구조, 각 종 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을 미리 숙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활동 전개

- 관내 다중이용선박 선체 도면 경비함정, 상황센터, 구조대 배치

□ 현장 근무자 구조 능력 향상

○ 안전센터 기능을 치안·선박통제에서 **구조·안전** 중심으로 전환

- 연안 주요 3대 사고(익수, 고립, 추락) 중심 현장 훈련 강화

2 원격응급의료시스템 및 응급 구조 전문성 향상

□ 응급처치 역량 강화

○ 지방본부 주관 및 소속서 전문강사 초빙 경찰관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 관할 자치단체 협조, 전문의료기관 전문의 초청 이론과 실습 병행 실시

- 민간해양구조대 구조전문성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순회교육 실시
- 원격응급의료시스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배치

□ 해양원격의료시스템 운용법 교육 및 응급구조사 양성

○ 해상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해상 특수성으로 인해 후송에 장시간 소요,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한 전문의 초기 응급처치

-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한 분기별 소집 교육 실시

○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설치 함정 응급구조사 배치

-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응급구조 전문성 향상

3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선박 근접 안전관리 호송

○ 다중이용선박이 관할 경비구역 통과시, 해당 선박 인근을 중심으로 경비

□ 해상 기상정보 분석 활용

○ 기상 특보 발효시, 유관기관(대산 VTS,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항행 선박 안전계도 방송 협조 요청

○ 농무 등 국지성 안개 다발 지역 분석으로 사고발생 우려해역 경비 함정 중점 배치

4 민·관 협력 구조체계 확립

□ 민·관 협력에 의한 수난구호체계 강화

-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지원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활성화 지속 추진

- 민간구조 활성화를 통한 민·관 해난구조협력체제 강화

※ 관할 지자체(자원봉사센터) 협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무상 보험가입,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 추진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122해양경찰구조대간 합동훈련 실시로 해양 수색구조 전문성 강화 및 정보 교류

○ 122구조대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실전적 구조전술 교육·훈련을 통한 필요역량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

제 2 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 체계

1. 종합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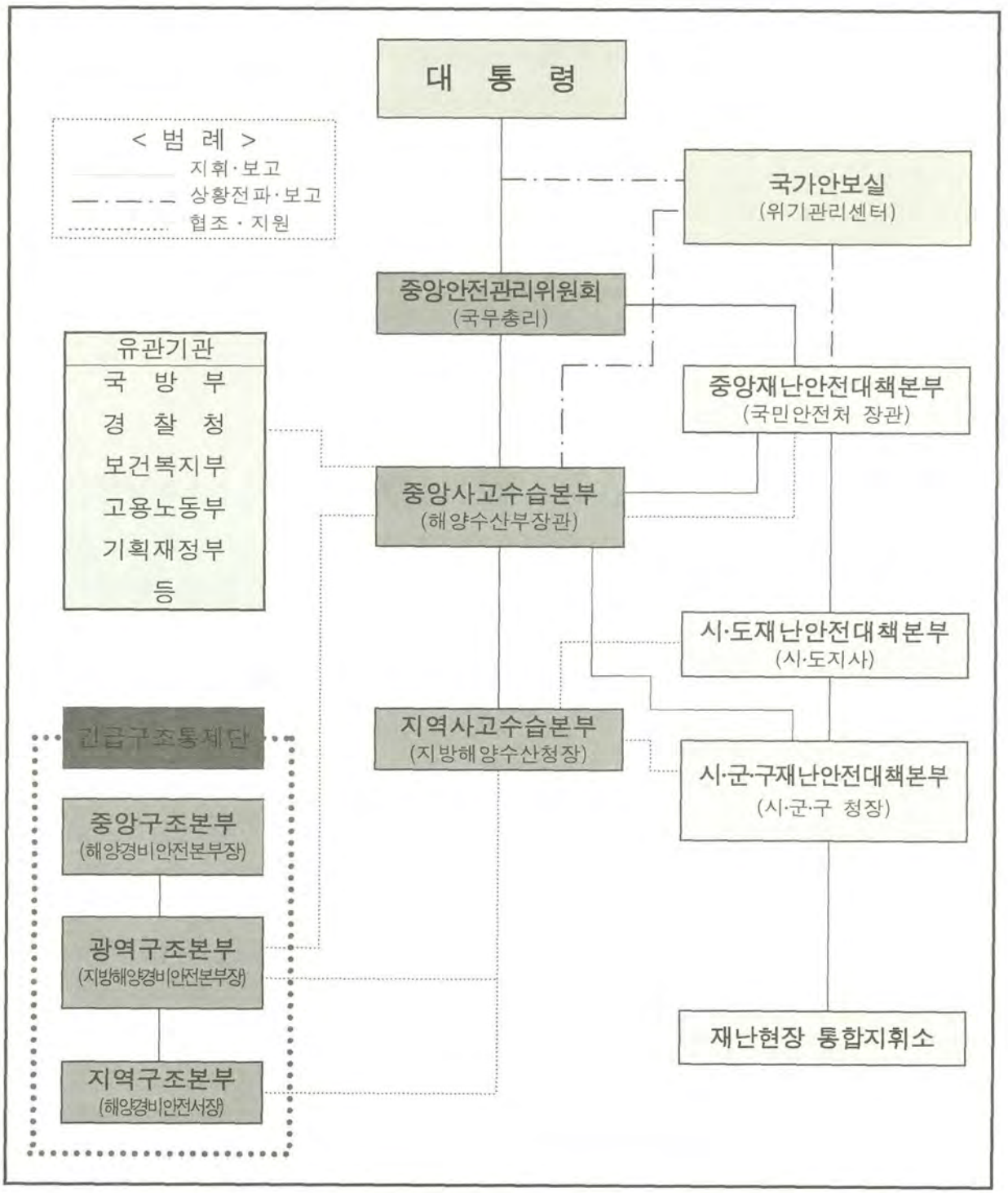

1-1. 위기관리 기구 임무 및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정보 상황 모니터링 ○ BH내 위기 상황 전파 ○ 범정부적인 위기대응체계 가동 확인 ○ 초기상황 대통령 보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 재난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분야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지역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 ○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중앙구조본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 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 ○ 해양사고 구조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구 분	임무와 역할
광역구조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 ○ 선박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수사대책본부 운영
지역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상 긴급구조 현장 활동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 ○ 해당 관할 해역 재난 구조·피해 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 수행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 장관)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사고수습 ○ 해양 선박사고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 선체인양 등 환경 원상복구 대책 강구(보상관련) ○ 선박사고 원인규명 특별조사반 운영 ○ 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
지역사고수습본부 (지방해양수산청장)	○ 해당 관할 해역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 수행 등

2. 지역·광역 구조본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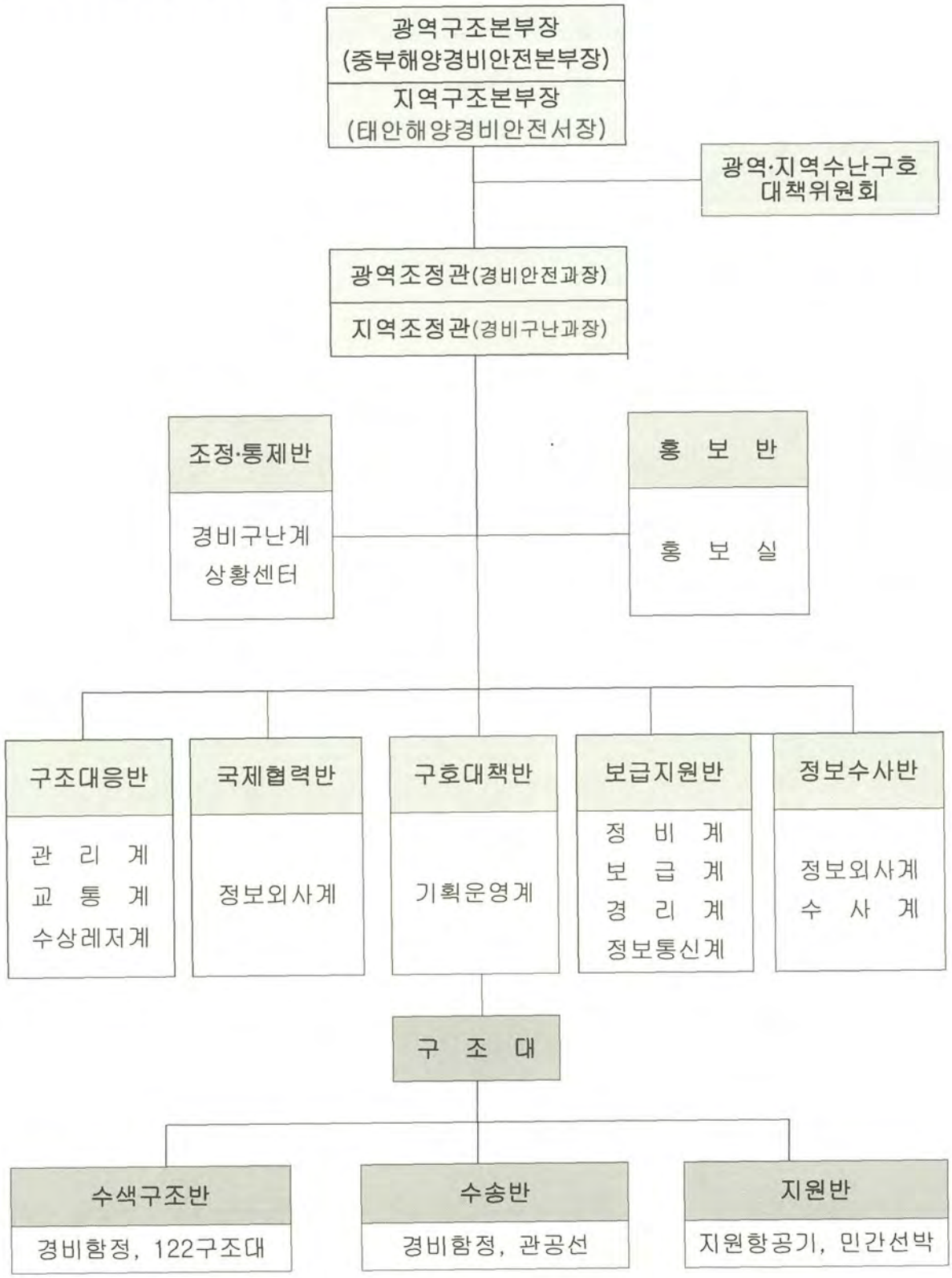

2-1. 부서별 임무

부 서 별		임무 및 역할
광역·지역 구조본부장		○ 관할해역 긴급구조 총괄지휘·조정·통제
총 괄 지휘부 (광역조정관, 지역담당관)	조정·통제반	○ 구조대응 상황 분석·판단 ○ 구조대응 상황 조정·통제 ○ 대응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관련기관 상황보고·통보
	홍보반	○ 대중매체 홍보 - 기자브리핑, 기자안내, 자료제공, 보도안 작성 ○ 매스컴 보도 추세분석, 여론수집 적극대응 ○ 현장상황 촬영 기록 보존
구조 대응반		○ 조정·통제팀 지원 ○ 유관기관 및 민간구조지원 세력 동원 및 관리
국제 협력반		○ 외국적 사고선박 선주, 보험사 등 정보파악 ○ 외국인 구조자, 사상자 파악 ○ 외국구조대 진·출입시 통관 등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구호 대책반		○ 유족·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편의 도모 ○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에 대한 조치 - 수송방안, 병원지정, 수용, 가료 -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보급 지원반		○ 구조장비 등 현장 보급 추진 ○ 차량배치, 인원·장비수송 ○ 피복, 급식, 연료, 유류, 소모품 확보지원 ○ 전진 장비품 보급기지 운용
정보·수사반		○ 여론수집 → 홍보반에 제공 ○ 사망·실종자 유족·관련자 안내, 협조 ○ 왜곡, 유언비어 정보수집 및 확인 ○ 구조상황 유족·관계인 등에 설명 이해 ○ 미담사례 발굴(구조일지, 수기, 경험담 등) ○ 사건수사, 원인규명 - 정책·시책개선사항 조사, 발굴

3. 주요 대응 절차

상 황 전 파

○ 주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지역구조본부)
○ 내용 : 사고발생 위치, 상황, 피해 내용 등
○ 경로 : 사고인지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 국가안보실, 유관기관

* 외국기관, 선박·항공기, 민간 등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최초 인지한 기관은 지체없이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관련 상황을 전파



초 동 조 치

○ 주관 : 중앙·지역구조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 내용 : 사고 주변해역에 전개된 구조함정 현장 출동, 관련국 구조책임기관에 신속한 구조 지원 요청
○ 경로 : 중앙구조본부 → 유관기관, 외국 구조책임기관(외교부 지원)



대 응 활 동

○ 주관 : 중앙·지역구조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 내용 : 수색 및 인명구조, 구조함정 파견, 구조자/사망자 등 이송
○ 경로 : 중앙구조본부 ↔ 유관기관, 외국 구조기관(주변국영해)

* 우리 구조함정/항공기의 영해진입 협조 요청 병행 실시



사 후 관 리

○ 주관 : 해양수산부
○ 내용 : 사고원인 규명,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가족 처리 (장례, 치료, 보상) 등
○ 경로 : 해양수산부 ↔ 선사/항공사/유가족 등

* 필요시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및 파견

15.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1. 조직 및 기능

가. 유관기관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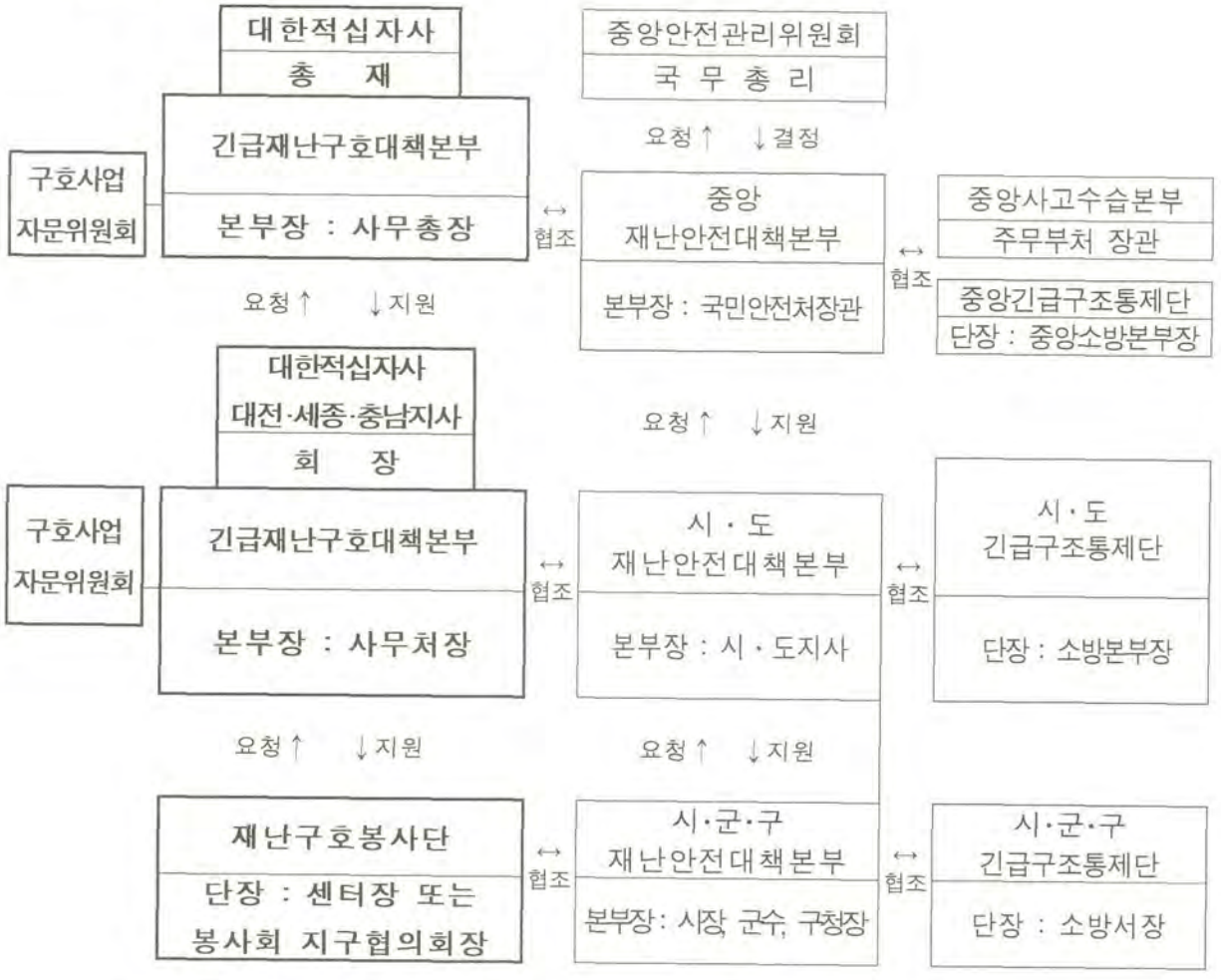

※ 설치 및 운영근거

-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 구호운영규정 제13조
- ○ 재 난 구 호 봉 사 단 : 구호운영규정 제14조

※ 기능

-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 ○ 구호품 지원, 급식제공 및 초기 복구지원 등의 긴급재난구호활동은 기본 3~7일까지 운영(운영 일정은 현장사정 등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동원가능 자원

[본·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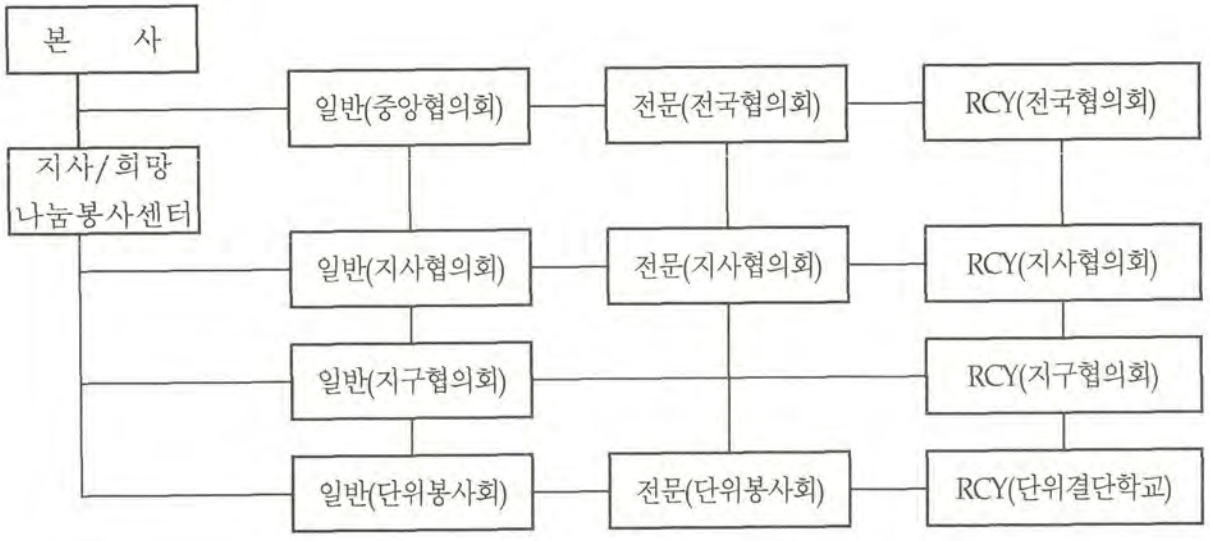

[병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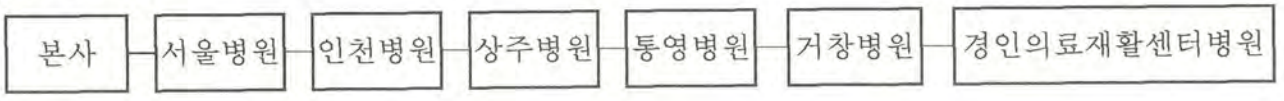

[혈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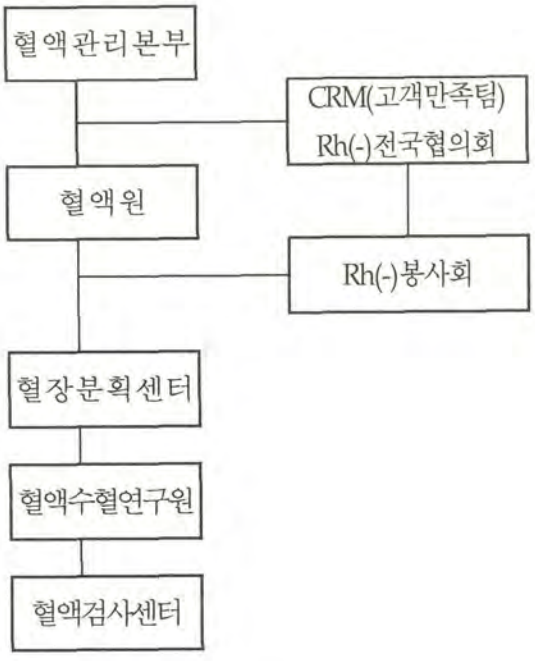

다. 단계별 구호운영 계획

단계별	활 동
예 방 (평상시)	• 재난예방을 위한 모니터 활동 • 안전문화 활동 전개 •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 이수
대 비 (평상시)	• 일상적 재난 대비 업무 수행 • 재난대비 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수행 • 구호품 및 구호장비 확보관리 • 유관기관 연계 예방, 대비활동 전개 • 기상정보 수집 및 재난대응 준비
대응·복구 (1 단계 - 소규모재난)	• 지역별로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로 소규모 재난(화재, 풍수해 등)은 지사나 희망나눔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 전개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 가동됨
대응·복구 (2 단계 - 중형재난)	• 기초자치단체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지사 차원의 부분적 지원활동이 필요한 중형재난(2개 이상의 구 또는 군 지역에 걸쳐 재난발생) • 재난징후가 있거나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대응반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조사 및 정보수집 후 지사 상황실에 보고 • 지사에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현장에 재난구호봉사단을 설치 운영 • 재난구호 통신망 가동(재난대응봉사회) • 필요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실에 연락관 파견 • 본사는 재난구호 주관 부서에서 재난대응 현황을 관리
대응·복구 (3 단계 - 대형재난)	• 지사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지사 차원의 전면적 지원 활동이 필요하며 본사 및 인접지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재난(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재난) • 재난징후가 있거나 재난발생시 긴급재난대응반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조사 및 정보수집 후 지사 상황실에 보고 • 지사에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각 재난현장에 재난구호봉사단을 설치 운영 • 재난구호 통신망 가동(재난대응봉사회) • 재난피해가 없는 인접지사에 구호요원 및 장비 지원 요청 • 필요 시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상황실에 연락관 파견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협약 기관(기업) 등과의 통합구호 시스템 운영 검토 및 추진 • 본사는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및 긴급재난대응반을 설치 운영

2. 재난구호활동 세부계획

가. 단계별 운영범위(4단계)

단계별	재난규모	활 동
예방·대비 (평상시)	일상적 대비 업무수행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수행
대응·복구 (1 단계)	일상적 사고	재난구호봉사단 : 상황에 따라 운영
대응·복구 (2 단계)	중형재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 부분적으로 운영
대응·복구 (3 단계)	대형재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 전면운영

나. 구호활동 보고

○ 재난구호활동의 정확한 보고는 재난정보의 근원이며 각종 재난 구호업무 계획, 수행 및 관리의 근거이므로 집단수용 등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발생보고	보고시기	○ 발생 즉시(유선 또는 문서)
	보고내용	○ 재난발생 일시 · 장소, 재난종류 · 피해상황, 이재민 가구 · 인원수, 조치사항 및 구호활동계획, 장비 · 인원 동원내역, 기타 필요사항
일일보고	보고시기	○ 정기보고 : 매일 08:30, 15:00(유선), 20:00(문서) ○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발생 시
	보고내용	○ 재난구호활동 내용(구호물품 지급, 구호급식 내용, 장비 · 활동 인원, 활동내용 홍보사항 등) ○ 재난상황 전개 및 주요조치, 지원사항 등 재난정보
최종보고	보고시기	○ 재난구호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내용	○ 재난구호활동 종합정리(구호활동 내용, 타 기관 지원, 구호성금품 접수 및 사용, 주요 홍보내용 포함)

○ 또한 지역적으로 화재, 풍 · 수해 등 구호를 필요로 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한적십자사구호운영규정 제38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고한다.

다. 조직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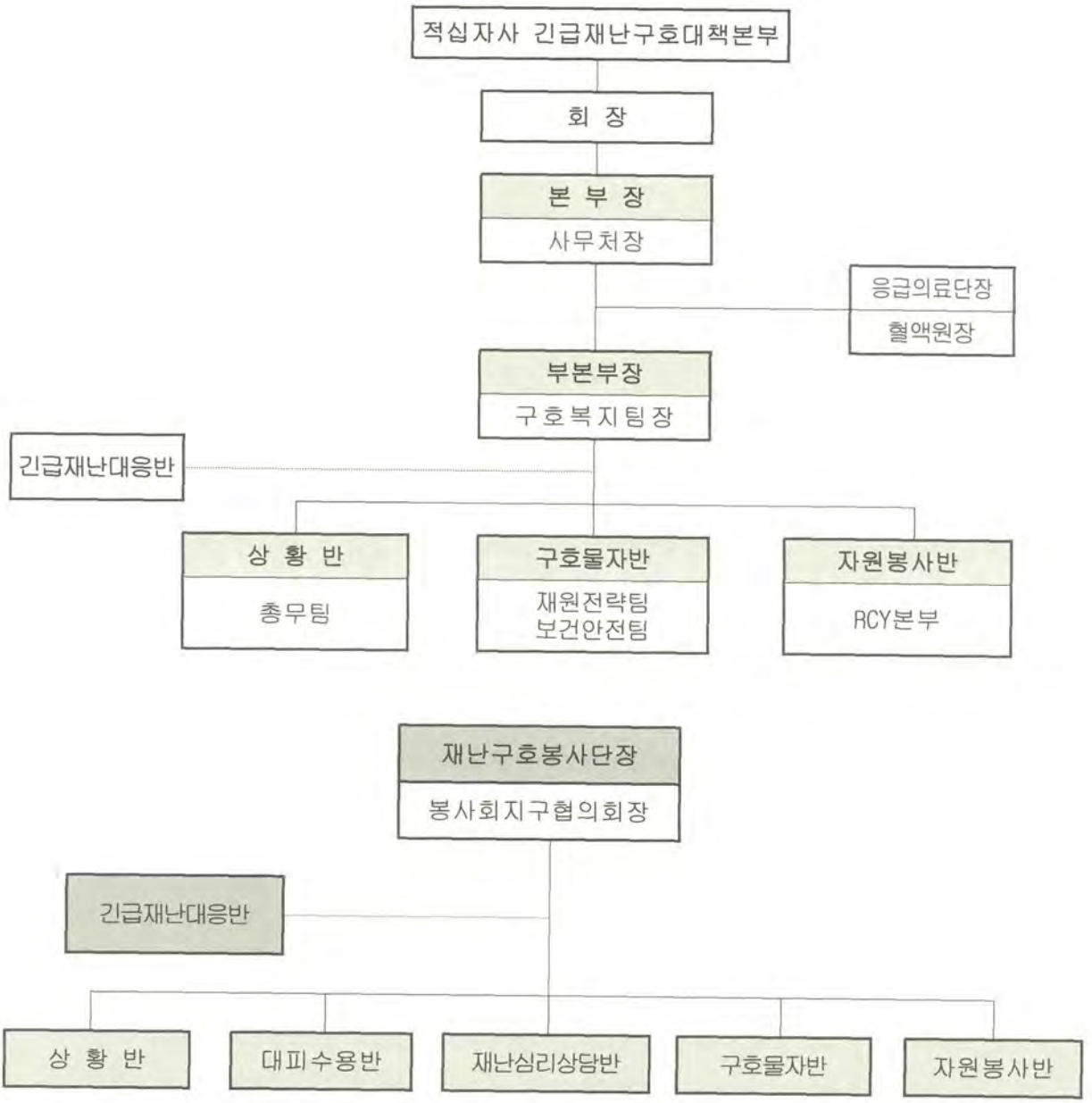

【안전관리계획 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 락 처
	소 속	직 위	성 명		
총 괄	구호복지팀	팀장	유만종	구호활동 총괄	010-3116-3072
담당자	구호복지팀	대리	박민규	구호활동 지원	010-8971-3849
(야)	당직자			상황접수 및 전파	042-220-0100

라. 임무수행(역할)

1)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구 분	임 무
본 부 장	• 재난구호 활동의 총괄 지휘, 통제
부 본 부 장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 • 재난상황에 따른 구호대책 강구 및 조치 • 유관기관 협력 모색 및 각 반 지휘, 통제
응급의료단장	• 응급의료, 보건 및 혈액수급 등에 관한 지원
상 황 반	• 재난 상황파악, 각 반 업무조정 • 재난현황 접수, 기록 및 재난구호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각종 재난관련문서 기록 및 보관 • 재난구호활동 실적 유관기관 통보 • 재난구호활동 취재 및 언론기관 홍보, 대응 • 재난현장 사진 · 비디오 촬영 및 보존
구호물자반	• 재난구호품 보유현황 파악 및 부족분 공급 조정 • 의연금품 접수, 지급 및 기록, 관리 • 긴급 구호품 구입 요청, 보급 및 수송체계 확보 • 구호장비, 소모품 등 현장 물자조달 및 관리 • 이동구호봉사센터차량 등 구호업무 차량운영 • 재난구호 활동비용 조치
자원봉사반	• 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파견(상황연락) • 대형재난 또는 구호활동의 장기화 등 지원대기 • 본 · 지사, 재난현장, 유관기관간 유 · 무선 통신망 확보 · 운영 • 재난현장 구호요원 배치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협약업체 등 연계 인력 관리 • 기타 타 반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재난구호봉사단(현장)

구 분	임 무
재난구호봉사단장	• 유관기관 협력 모색 및 각 반 지휘, 통제
상 황 반	• 재난상황판단 및 각 반 업무조정 • 지사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에 재난상황 보고 • 재난구호활동 기록, 확인 및 구호활동 비용 조치 • 유관기관 협조 • 재난구호활동 취재 및 언론기관 홍보, 대응 • 재난현장 사진 · 비디오 촬영 및 보존
대피수용반	• 이재민 · 구호요원 등 재난현장 무료 급식 및 세탁 (주 · 부식 조달, 조리, 배식 및 정리) • 이재민 등록, 관리 및 가족찾기 지원 • 집단대피소 관리 및 탁아소 운영
재난심리 상 담 반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현장 응급의료요원 배치 및 지원 • 이재민 심리적 지원(한국심리학회 DRN 요원 활동)
자원봉사반	•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상담 • 재난현장 구호요원(직원, 전문봉사원) 배치 • 재난현장 봉사원 모집 · 등록 · 교육 · 배치 및 관리 • 부족 인력 지원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협약업체 등 연계 인력 관리
구호물자반	• 구호장비, 소모품 등 현장 소요물자 조달 및 관리 • 의연금품 접수, 관리 및 지급 • 재난 구호품 전달 및 관리 • 긴급 구호물품 수송지원

마. 운영절차

1)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가) 운영시기

○ 호우경보 발령 시(6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의 호우와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령하는 경보)

○ 태풍경보 발령 시(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속 21m/s이상 또는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기상청이 발령하는 경보)

○ 기타 중(대)형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나) 운영방법

○ 지사에서는 호우·태풍경보 발령과 동시에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최초운영 일시를 본사에 보고

※ 호우·태풍주의보 및 기상특보 발령 시 설치 준비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는 직원 및 봉사원으로 편성하며 인원은 재난의 규모와 각 지사의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 운영시간 : 09:00 ~ 익일 09:00 (근무종료 30분전 합동근무)

2) 재난구호봉사단 운영

가) 운영시기 : 재난발생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전 재난현장에 설치

나) 운영방법

○ 재난구호봉사단장은 직원(희망나눔봉사센터장) 및 봉사원(지구협의회장,재난구호요원강사)으로 편성 하며 각 반에는 직원 또는 재난구호 유경험자의 봉사원을 적절히 편성

○ 재난구호봉사단 각 반의 인원은 재난의 규모와 각 지사의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 재난구호봉사단장은 효율적인 긴급구호활동을 위하여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협약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재난 및 구호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호계획을 수립

3) 기타사항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의 제반사항(자료 포함)은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대외 홍보자료로 사용

○ 병·혈액원(원장)은 지사와 협력하여 응급의료, 보건 및 혈액수급 지원

○ 정부의 중앙(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실에 게시

○ 구호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구호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호물자 확보, 긴급 수송 등의 구호실시계획 수립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보고)

○ 근무직원 및 봉사원은 구호요원복(조끼 또는 방한복), 봉사원복 착용

바. 대한적십자사 아마추어무선봉사회 무선망

○ 재난 시 긴급구호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적십자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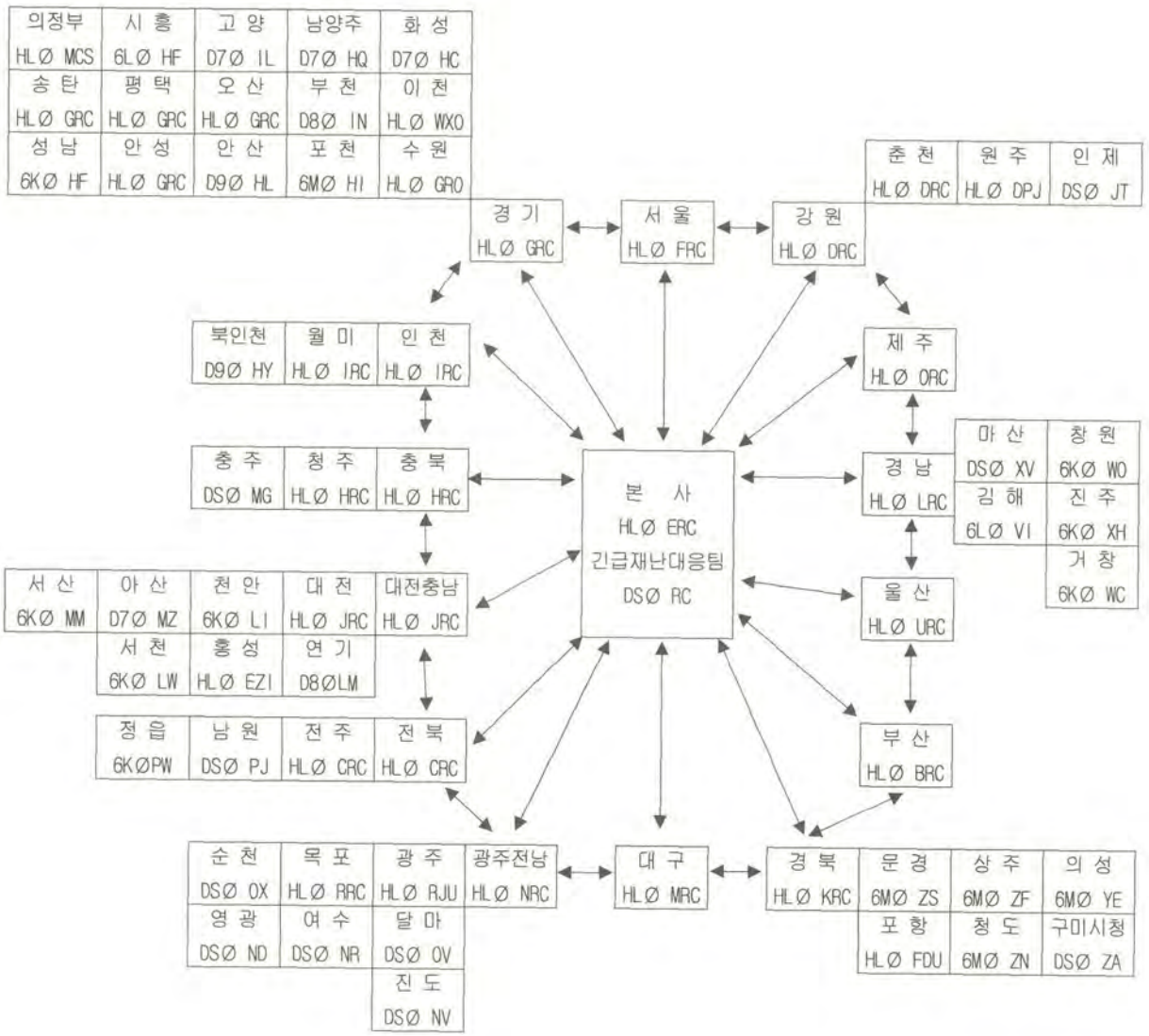

◆ 비상시 운용주파수 ◆			
내 용	H F	V H F	U H F
교신(훈련·비상시)주파수	7.060㎒	145.140㎒	438.140㎒
R·P·T 교신주파수		145.140㎒	438.140㎒
업무용 지정주파수		151.7625㎒	441.8125㎒ 445.1000㎒ 446.8125㎒

3. 긴급재난대응반 운영 계획

가. 단계별 가동범위(초동)

단계별	재난규모	활 동
대응·복구 (2 단계)	중형재난	긴급재난대응반 부분적으로 가동
대응·복구 (3 단계)	대형재난	긴급재난대응반 완전 가동

나. 조직구성(시·군·구 여건에 따라 1~4개반 조직)

조직구성(인원)	구성 및 업무내용
행정요원(1-2) 통신요원(1) 홍보요원(1) 응급처치(1)	- 직원, 봉사원, 지역관계자로 구성 - 피해조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재난정보 전달 및 구호활동 홍보

다. 업무내용

○ 재난현장 피해조사 및 보고
○ 재난구호봉사단 설치를 위한 지원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지원
○ 현장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지원

라. 임무수행

○ 각종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를 통하여 긴급재난구호활동이 신속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역별(시·군·구) 봉사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체계로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및 재난구호봉사단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체계임

마. 운영요령

○ 운영시기 : 재난징후 발생 및 재난발생 즉시
○ 각 재난구역(시·군·구)을 책임단위로 운영하며 재난초기의 임무를 수행
○ 긴급재난대응반장은 재난구호요원 강사과정(or 상급과정) 이수자 또는 봉사회 지구협의회 전·현직 임원 중 선정
○ 긴급재난대응반 업무 종료 후 재난구호봉사단에 편성되어 재난구호활동 전개

4. 구호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단위	수량	비고(규격)
구호차량	계	대	10	
	이동통신차	대	1	
	이동구호본부차(컨테이너)	대		
	이동급식차	대	3	5ton
	이동세탁차	대	1	1ton
	승합차	대	1	12인승
	버스	대	1	35인승
	화물차	대	3	1ton
무전기	계	대	10	
	고정식	대	3	
	이동식	대	2	
	업무용	대	5	
천막		동	6	5~10인
발전기		대	5	3kw, 5kw
전기온수기		대	2	
인명구조낭		대		

5. 재난구호물자 분산비축현황

구분 / 지사&지구명	비축장소	비축량		연락처
		화재구호품	응급구호품	
대전·세종·충남 지사(대전)	대전·세종·충남지사 구호창고	300가구분	500가구분	042-220-0123
세종특별자치시	지구 구호창고 (컨테이너)	10가구분	-	044-868-7112
천 안	천안희망나눔봉사센터	〃	-	041-576-2266
공 주	공주희망나눔봉사센터	〃	-	041-854-1210
보 령	보령희망나눔봉사센터	〃	-	041-936-1452
아 산	지구협의회 사무실	〃	-	041-547-1030
서 산	지구협의회 사무실	〃	-	041-668-2228
논 산	논산희망나눔봉사센터	〃	-	041-732-9599
계 룡	지구협의회 사무실	〃	-	042-220-0123
당 진	당진희망나눔봉사센터	〃	-	041-356-9504
금 산	지구협의회 사무실	〃	-	070-7766-9304
부 여	지구협의회 사무실	〃	-	041-835-7006
서 천	지구협의회 사무실	〃	-	041-952-5659
청 양	청양군청 내 창고	〃	-	041-944-1119
홍 성	홍성희망나눔봉사센터	〃	-	041-631-3525
예 산	지구협의회 사무실	〃	-	041-334-2831
태 안	지구협의회 창고	〃	-	041-672-3854
계		460가구분	500가구분	

16. 육군 제32사단

1.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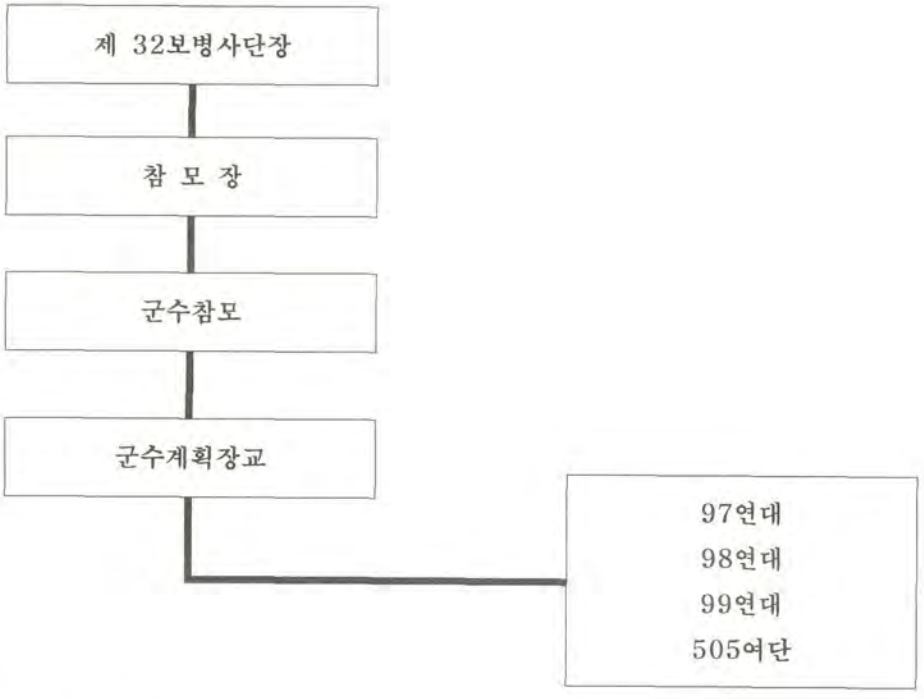

2. 주요 재난유형

구 분	하계	동계	기타
계	3개 유형	2개 유형	7개 유형
재난유형	태풍·집중호우, 폭염 및 전력난, 너울성 파도	대설, 한파	지진(해일), 산불, 감염병, 대기오염, 탄약고 폭발 및 화재, 유류고 화재, 주둔지 건물 화재 및 붕괴

3. 재난대응체계

가. 초기대응 체계

구 분	최 초	위기조치기구 소집시	재난상황으로 전환시
기 구	지휘통제실	긴급조치조, 초기대응반, 위기조치반	재난대책본부
책임관	지휘통제실장 (당직사령)	위기조치기구 장	재난대책본부 장

나. 재난대책본부 운용

1) 재난대책본부 단계 적용

구분	0단계	1단계	2단계 이상
책임부서	군수처 또는 재난유형별 책임부서	작전처(지휘통제실)	군수처 또는 재난유형별 책임부서
시기	사전 예방조치 필요시	기상특보 '주의보' 발령시 또는 정부 위기경보 '주의' 및 '경계'시	기상특보 '경보' 발령시 또는 정부 위기경보 '심각'시

2) 재난대책본부 편성

가) 0단계 : 재난대비 사전조치(2단계 선소집)

나) 1단계 : 지휘통제실 구성요원 + 재난담당관(군수계획장교) 증원

다) 2단계 : 군수참모 등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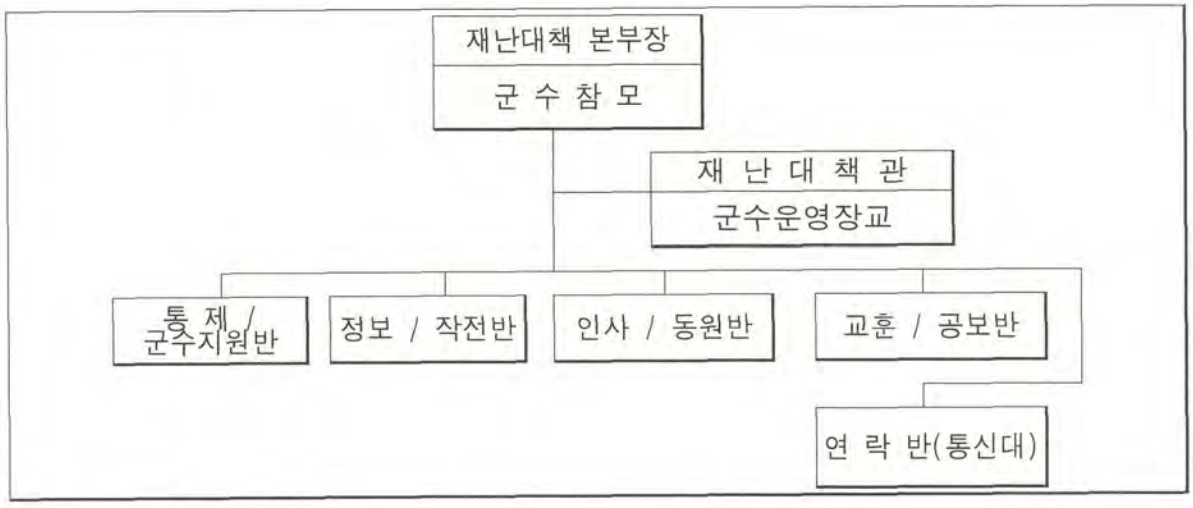

라) 3단계 : 참모장 등 28명(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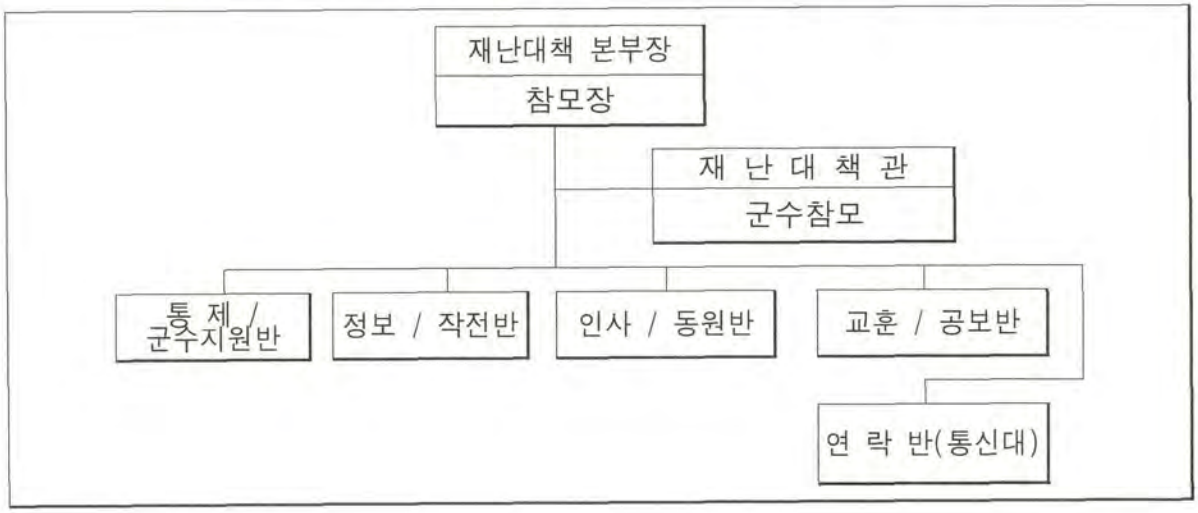

3) 재난대책본부 각 반의 임무

구 분	수 행 임 무
재난 대책관	·각반의 근무요원 통제 및 협조, 전반적인 업무통제 - 편성인원 상호 업무협조 및 조정 - 각 반·군별 재난대책 상황파악 지시 및 보고 접수 ·재난대책단계 변경시 보고, 예하부대 확인 ·재난관련 상황보고 접수 및 처리, 관계부서와 협조 ·재난대책 상황보고서 검토 ·재난대책 본부장 보좌, 지시사항 조치 ·각 반별 상황일지, 전문, 존안자료 중간결재(일부 전결)
통제반	·재난대책본부 각 기능반 업무 총괄 ·재난대책본부 편성인원 소집통보 및 확인, 업무협조 ·지휘관 지시 및 강조사항 작성 및 하달 ·재난 긴급조치 및 복구활동 통제 ·피해 예상지역 병력·장비 대피 확인 및 통제 ·재난대책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전문접수 및 등재, 결재, 관련 실무자에게 통보 ·피해통제보고서 종합작성 ·피해복구 현황 및 진도 파악, 기능별 통보, 보고서 작성 종합 ·피해지역 통신망 유지(유.무선, FAX) ·재난대책 상황보고 현황 최신화(모니터, 상황판) ·재난 상황일지 기록유지, 재난관리에 관한 상황접수 및 보고(통보, 지시) * 예하부대 상황파악 종합 및 보고 ·유관기관 연락장교 파견(필요시)
정보/작전반	·기상특보 및 전문접수, 전파(태풍진로, 속도, 위험반경 수시 통보) ·야외 훈련부대 안전조치 확인(복귀, 대피, 현위치 안전조치) ·매복·수색정찰 등 계획 조정 및 통제 ·경계초소 조정, 증가초소 운영 조정 및 통제 ·긴급 항공기 요청 및 구호에 관한 상급부대 건의 / 통제 * 응급구조 및 병력. 물자 수송 및 보도용. 산불진화헬기 지원 및 통제 ·피해예상지역 병력 및 장비 대피 통제 ·피해 복구시 부대 운영지침 하달, 이재민 현황 파악 ·복구간 대민지원 업무수행(병력지원 및 부대운영) ·정작 상황일지 작성, 전문지시, 보고 및 결재 ·정보작전반 업무종합, 통제반에 통보

구 분	수 행 임 무
인사지원/ 동원반	·구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건의 ·사망자 영현처리, 사고자 후송업무 파악 및 보고 ·피해지역 방역 및 의료지원 활동 지시 및 통제 ·재난대책지역 군기·군법 질서유지, 교통통제, 이재민 지원 업무 수행 ·휴양소 등 복지시설 관리 통제 ·장병휴가 복귀 및 외출· 외박 지침 하달, 유동병력 통제 ·인명피해 파악 및 수해의연금 모금 업무 ·재난관련 각종 사고예방 활동 ·인사분야 상황파악 및 최신화(모니터, 상황판, 서면보고) ·인사 상황일지, 전문 지시, 보고 및 결재(대책본부장) ·인사지원반 업무종합, 통제반에 통보 ·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재난지역 대민지원에 따른 예비군 동원(상급부대 연계) ·예비군 훈련장 및 예비군 시설 안전대책 강구
군수지원반	·장비, 물자, 탄약 피해시 긴급 및 정상복구 지원 ·시설 및 통신시설 피해시 긴급정비 및 피해복구 지원 ·응급복구 물자, 장비지원 판단 및 지원 ·재난복구 증식비 지원, 이재민 지원업무 수행 ·대피지역, 고립지역 병력 급식 및 물자지원 조치 ·수송지원 소요파악 및 조치 ·재난구조부대 운영 준비 및 지시(일반 및 전문 구조부대) ·군수상황 파악 및 최신화(모니터, 상황판, 서면보고) ·군수 상황일지, 전문지시, 접수 보고 및 결재(대책본부장) ·군수지원반 업무종합, 통제반에 통보
교훈/공보반	·교육훈련 통제지침 하달(직할부대 관련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피해예방활동, 실적 및 조치사항 홍보 ·피해복구 및 대민 피해지역 지원사항 홍보 ·언론보도 내용 확인 및 조정 협조 ·공보분야 상황파악 및 보고 확인 ·상황일지, 전문 보고 및 결재(재난대책본부장) ·공보반 업무종합, 통제반에 통보

4. 민간재난시 軍 지원분야

구 분	재 난 유 형(20개)	지원분야
재난 분야 (14개)	① 태풍·호우	• 민가, 도로, 건물 등 복구지원(병력, 공병장비) • 농작물 피해 복구(비닐하우스 등), 의무지원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② 대설	• 민가, 도로, 건물 등 제설지원 • 농작물 피해 복구(비닐하우스 등) • 농촌 고립마을 지원(의무, 유류, 라면, 식수 등)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③ 지진(해일 포함)	• 민가, 도로, 건물 등 복구지원(병력, 공병장비) • 의무지원, 임시 숙영지 제공 등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④ 산불 재난	• 산불진화(병력), 의무지원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⑤ 감염병	• 의료진 지원(군의관 및 간호장교)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⑥ 고속철도 대형사고	• 의무지원(AMB) 헌병(교통통제)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⑦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⑧ 해양 환경오염(적조포함)	• 방제 작업 지원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⑨ 수질 환경오염	
	⑩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 화생방 부대(정찰, 탐지, 제독 등)지원 • 의무지원(AMB) 헌병(교통통제)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⑪ 댐 붕괴	• 침수 우려지역 주민대피(병력, 차량지원) • 의무지원(AMB) 헌병(교통통제)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⑫ 지하철 대형사고	• 의무지원(AMB) 헌병(교통통제)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⑬ 공동구 재난	
	⑭ 가축질병	• 통제초소 지원, 살처분 보조 지원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핵심 기반 분야 (6개)	⑮ 전력 분야(전기, 가스, 수도포함)	• 에너지 절약 적극동참
	⑯ 식·용수 분야(가뭄 포함)	• 급수지원, 농작물 조기수확 지원 등
	⑰ 원전안전 분야	• 화생방 부대(정찰, 탐지, 제독 등)지원 • 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병력, 차량지원) • 의무지원(AMB) 헌병(교통통제) • 기타 지자체 요구사항 중 능력 범위내 지원
	⑱ 육상 화물운송 분야	• 기능인력 지원(철도, 지하철, 화물, 발전공)
	⑲ 보건의료 분야	• 의료진 지원(군의관 및 간호장교)
	⑳ 정보통신(파업, 테러) 분야	• 파업(정보통신 병력 및 장비·물자지원) • 테러(전투병력 지원)

5.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야	담당			업무분장	연락처 (핸드폰)
	소속	직위	성명		
총괄	군수 참모처	참모	정태균	•재난 2단계 시 재난대책 본부장	010-5085 -1442
주	군수 참모처	군수계획	황수승	•재난대책 본부장 보좌, 상황보고, 접수, 관계부서 협조	010-5088 -3479
야	당직근무자			•상황전파 및 보고 •재난대책 요원 소집 전파	042-829 -0301

17.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1. 일반현황

○ 관할구역 :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일원

* **주요간선 : 경부선 159.8Km** (성환 ~ 추풍령), **호남선 61.8Km** (대전조차장 ~ 강경)

충북선 75.0Km (조치원 ~ 주덕), **장항선131.0Km** (천안 ~ 장항)

경부고속선 137.7Km (천안아산 ~김천[구미])

호남고속선 66.3Km (오송 ~ 익산)

○ 조직 및 종사원수 : 1본부, 7처, 37개역, 19개사업소,

종사원수 : 2,200명



2. 재난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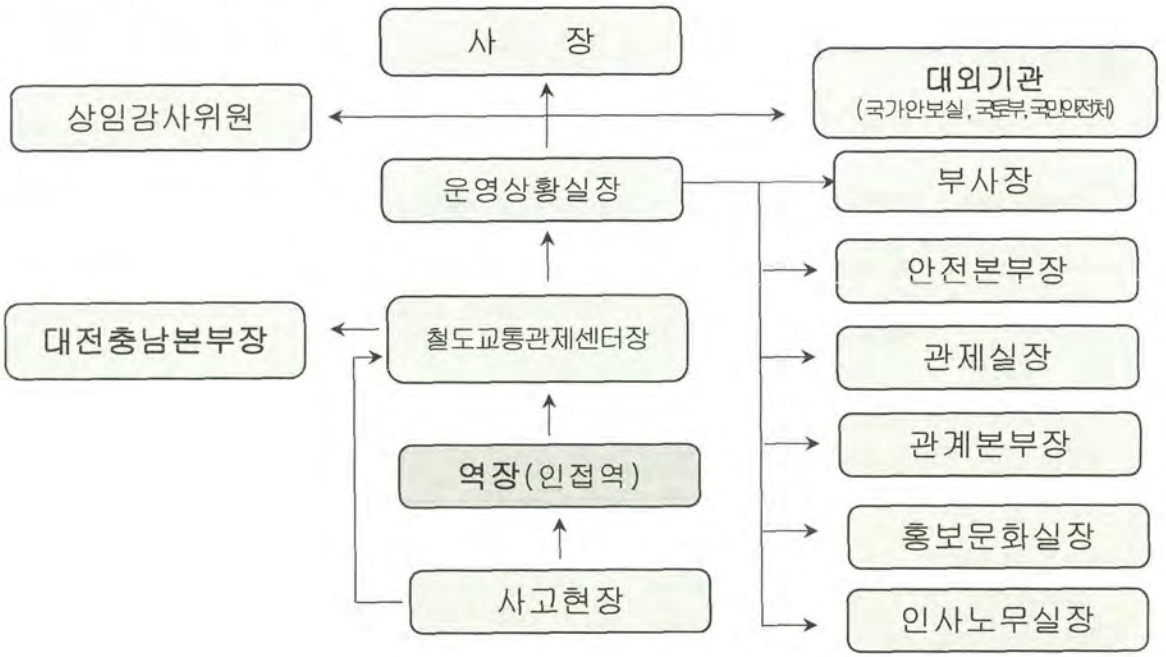

3. 대전충남본부 재해대책본부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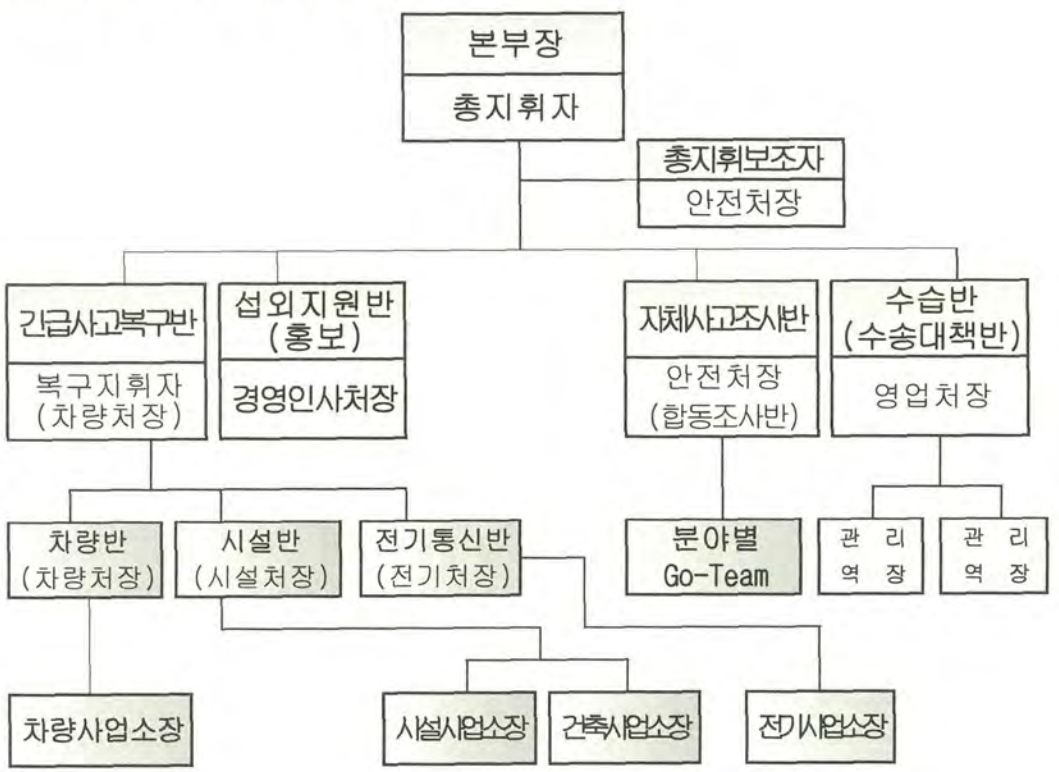

○ 재해대책본부 분야별 임무

구 분	임 무
본부장	복구 총지휘 및 총괄
총지휘보조자	총지휘자 보좌 등
복구지휘자	각 분야별 반장과 협의하여 총괄 복구지휘 등
섭외지원반장	사상자 구호 및 대외기관에 대한 섭외업무 등
수습반장	여객 유도안내 및 연계수송 등 교통대책 강구 등
수송반장	열차운행상황 파악 및 열차승무원 운용 조정 등
사고조사반장	사고의 원인조사 업무 등

○ 주요재난유형

- 자연재난 :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 철도교통사고 : 열차사고 등

○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자연재난	시설처	처원	김홍주	재해대책 관련 업무	042-259-2469
철도사고	안전처	처원	송영철	철도사고 비상대응	042-259-2223
테러 및 소방	경영인사처	처원	최상용	테러 및 소방	042-259-2185

4. 재난관리대책

○재해대책본부 상시 운영

- 해빙기 : 매년 3월16일부터 5월14일(2개월)
- 여름철 :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5개월)
- 가을철 : 매년 10월16일부터 11월30일(1.5개월)
- 겨울철 :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3.5개월)

○ 업무담당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사무실	팩스	핸드폰	
시설처	김홍주	042-259-2469	042-259-2357		

18.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1. 재난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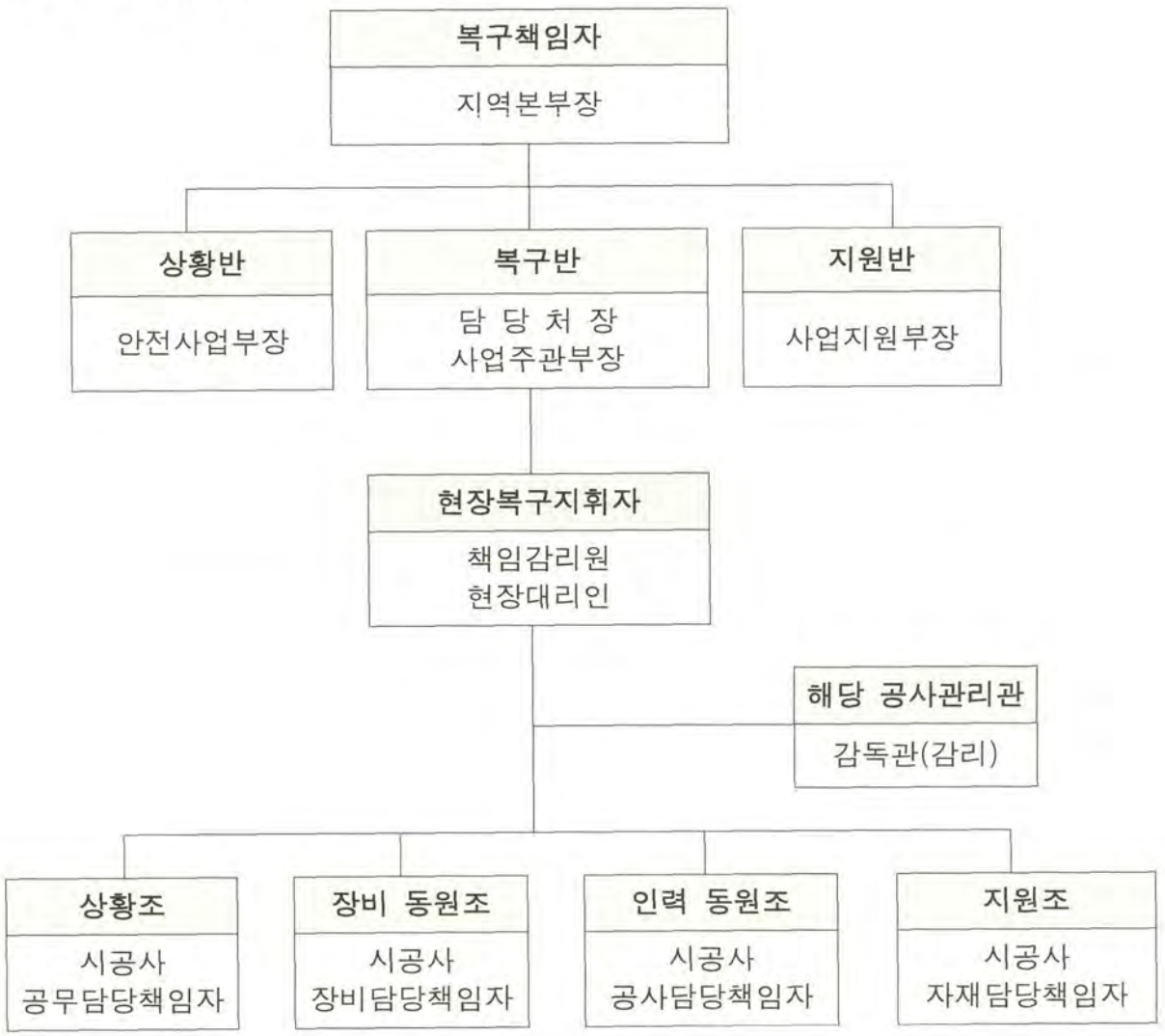

2. 주요 재난유형

- 철도건설 안전사고
  · 추락사고, 붕괴사고, 낙하사고, 전도사고, 협착사고, 충돌사고, 비산사고, 감전사고, 화재사고 등
- 열차운행 장애
  · 차량탈선, 선로장애, 급전장애, 신호장애 등

3.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총괄	안전사업부	차장	김범기	재난관리	042-607-5125 010-8785-0312 (kbg0022@kr.or.kr)
야간	충청본부		순환근무		042-607-5201 042-607-5200

4. 재난관리대책

○ 조직구성 및 임무

반 별	책임자	임 무
지역복구반장	본 부 장	- 지역복구반 총괄지휘
상 황 반	안전사업부장	- 지역복구반 업무총괄 ·비상연락체계 구축 ·대내외 보고자료 작성 ·기상상황 등 대외 상황 파악 ·각반 활동 종합 - 사고상황파악 및 피해집계 ·사고현장 실시간 상황파악 및 집계 ·복구예정시간 파악 *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복 구 반	건설기술처장 (사업주관부장)	- 복구지휘 총괄 ·복구계획 수립 ·실시간 복구상황 파악 - 복구 자재, 장비 및 인원 확보 - 수습 또는 복구에 대한 보고와 정보 제공
지 원 반	재산지원처장	- 수습복구에 대한 타기관 협의 및 구호활동 지원 * 재난대책본부 운영업무 지원

19. 한국전력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1. 재난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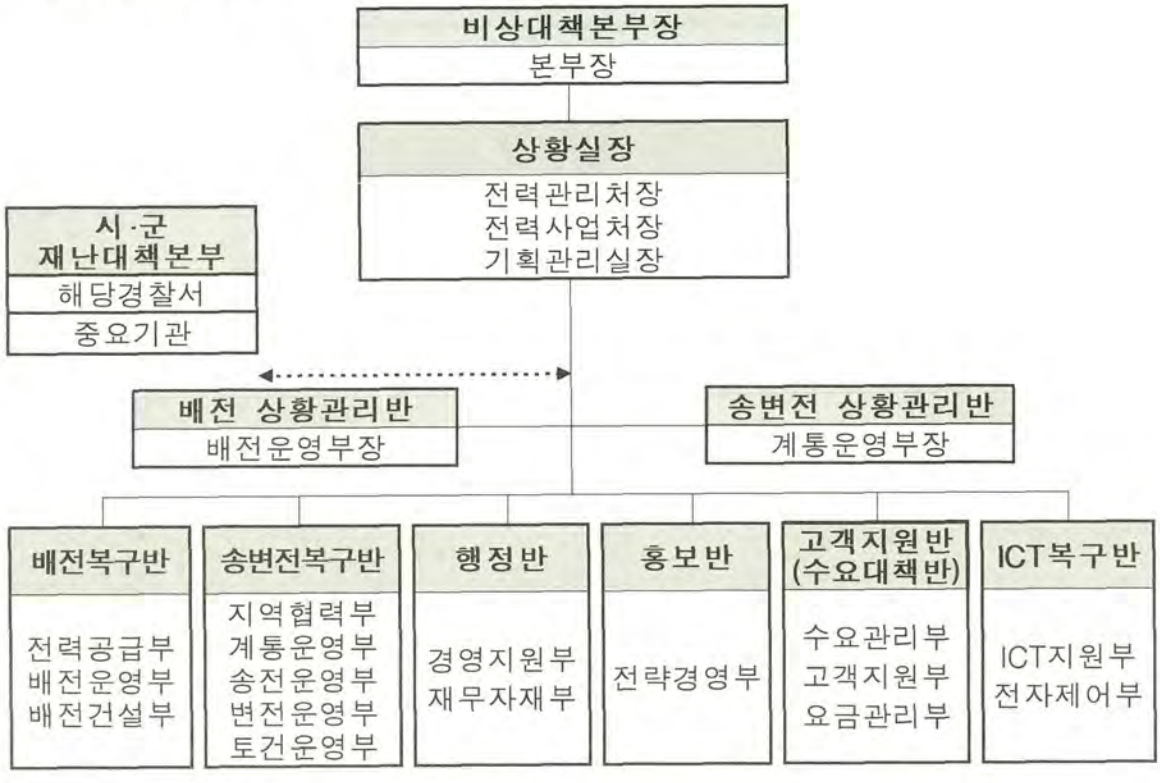

2. 주요 재난유형

- 자연재난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 사이버테러 및 전력수요 급증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3.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총 괄	경영지원부	차장	변민석	재난총괄 관리	620-2323 010-9428-8142
야 간	당직상황실	차장	책임자	종합 상황관리 및 계통보고	620-2303
		직원	근무자	종합 상황관리 및 계통보고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사무실	팩스	핸드폰	
경영지원부	이근희	620-2335	620-2107	010-4036-9922	kep92@kepco.co.kr

4. 재난안전관리 목표

각종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파업 등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비축시설의 기능마비를 대비하여 최소기능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 도모.

☞ 사전교육 · 훈련 및 홍보 등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전력사고의 최소화

5. 재난관리 세부대책

1) 예방 대책

가. 특정기간 및 계절별 취약시기 재난안전관리 활동 강화

○ 특정시기(명절 및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별 설비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 시행

- 시기별 재난 · 안전 취약요인 및 기상전망 분석
- 취약개소 및 설비 집중점검을 통한 재난 설비피해 예방
- 사전대비 전담 T/F팀 구성 · 운영

○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설비안전기반 확보

- 월별 및 설비별 중점 추진사항 선정 · 운영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 765kV 변전소 2개소, 국가산업단지 및 발전소 연계변전소 14개소

○ 변동사항 관리 및 주기적 점검 후 점검결과 정부시스템 입력

2) 대비 대책

가. 상황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관리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관기관 직통전화(Hot-line), 부서간 상황전파체계 관리

○ 설비관리부서 고장담당자, 당직근무자 보고체계 교육

- 정부 보고대상*사고발생 시 재난부서 즉시 보고체계 정비

* 1,000세대 1시간 이상 정전, 지장전력 30MW 30분 이상, 설비화재, 감전사고 언론보도, 사회적 물의 야기 사고 등

나. 긴급복구자원 관리

○ 응급복구 인원 및 장비(협력회사 포함), 자재, 긴급통신수단 관리

다. 재난대응 훈련 실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 위기유형별 대응훈련 시행(분기 1회 이상)

- 전력수요 급증, 자연재난, 전력계통 고장, 사이버 테러 등
- 매뉴얼 개정 등 훈련결과 피드백 시행으로 훈련실효성 제고

라.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보완 지속 시행

- 위기대응 조직, 상황보고체계 및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적정성 검토
- 실제 재난활동 및 훈련결과 반영 수시 개정

마. 재난관련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재난대응관리시스템(DAMS), 국민안전처 상황전파시스템(NDMS) 등

- DAMS 내 관리자료*수시 업데이트

  * 매뉴얼 / 비상조직도 / 개인별 임무 / 복구인력 / 선로정보 / 비상자재 등

- NDMS 상시 로그온 상태 유지(주간 재난담당자, 야간 당직실)

3) 대응 대책

가. 상황판단회의 개최

○ 태풍특보 발표 시 본사 주관 시행(화상회의 / 본부 참여)

- 기상상황 분석 및 단계별 대응전략 발표·토의

나. 비상발령 및 상황실 가동

○ 상황에 맞는 비상단계 발령 및 비상근무조 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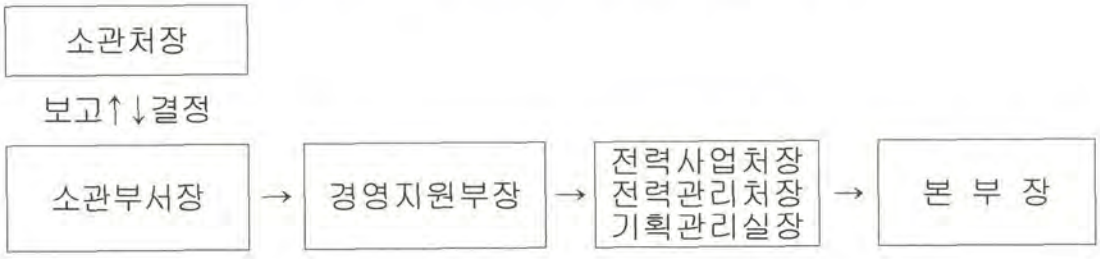

○ 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한 본부 위기대응조직 가동

- 비상대책본부장 : 대전충남본부장 / 상황실장 : 처장급
- 3개조 63명(1조 21명) 상황실 교대근무 시행

다. 상황보고·전파 / 응급복구 및 복구지원체계 가동

○ 재난상황 보고(본사, 지자체) 및 유관기관 전파·협의 시행

○ 사업소별 응급복구인력 투입, 복구활동 시행(직원 및 협력회사)

- 유사시 인근 사업소간 인력 보강
- 순시 및 고객안내 지원인력(본부) 대규모 피해사업소 투입

○ 응급복구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활동 추진

구 분	시 설 별
제1순위	배수펌프장, 상수도시설 등 필수시설
제2순위	이재민 수용시설, 병원 등 기간산업시설
제3순위	주거시설, 일반산업시설

○ 고립·도서지역 등 장기 미송전 개소 응급조치 계획 수립·시행

라. 대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자료 준비(절전 및 정전안내 등)

4) 복구 대책

가. 피해시설 본복구 계획수립·시행

○ 설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로 정밀순시 시행

○ 순시 결과 바탕으로 각 설비 주관부서별 본복구 계획 수립·시행

○ 본복구 공사에 대한 실적관리 자체 진도 보고

나. 전력설비 고장상황 시 세부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다. 평가 및 환류

○ 대응활동 미흡사항 정리 매뉴얼 반영 및 재난대응 실적관리

라. 본사 및 지자체·유관기관 최종 복구완료 상황보고·전파

6.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상황	일시	대응활동
관심	재해발생	D-5,4	○ 재난징후 감시 및 정보수집 보고 ○ 전력설비 순시점검 및 고장예방활동 강화
주의	사업소 방향이동	D-3,2	○ 재해취약설비 긴급점검 및 안전조치 시행 ○ 비상계획 수립 및 인력·자재·장비 점검 ○ SOP 점검 및 전력계통 최적화 유지
경계	사업소 인접	D-1	○ 비상근무체제 돌입 ○ 정전민감(직거래) 고객 SMS 안내 ○ 현장 안전순시 강화 및 피해예상지역 인력 전진배치
심각	사업소 내습 재해발생	D+0	[상황발생 및 긴급복구 1단계] ○ 순시조 투입 정전 및 설비피해 신속파악 ○ 복구계획 조정 및 사업소간 지원시행으로 체계적 복구 ○ 복구 장기화 및 고립지역 복구계획 수립 ○ 송변전설비 고장구간분리 및 현장긴급조치
심각	재해발생	D+1	[긴급복구 2단계] ○ 전력간선계통 가복구 및 정전 90% 복구 ○ 고압분기, 저압고장 복구 주력 ○ 복구장기화대비 추가인원 동원 및 고립지역 비상전력 공급 ○ 송변전설비 긴급복구 세부계획 수립
심각	재해발생	D+2	[긴급복구 3단계(복구 장기화)] ○ 저압고장 복구 완료 및 추가고장발생 고객 복구 시행 ○ 설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로 순시 시행 ○ 정전 장기화 고객 확인 및 임시전력 공급
해제	재해원인 소멸	D+3	[상황종료단계] ○ 비상경보 해제 및 상황종료

7. 추진 계획

추 진 내 용			일 정	비고
특정시기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설 연휴기간		'16. 2. 6 ~ 2. 10	
	추석 연휴기간		'16. 9. 14 ~ 9. 18	
	봄철(해빙기)		'16. 3월 ~ 5월	
	여름철		'16. 6월 ~ 8월	
	겨울철		'16. 11월 ~ '17. 2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매월 4일	
재난대응 모의훈련			1회/분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정기점검		수시조사	'16. 1월 ~ 12월(연중)	
		일제조사	'16. 9월 ~ 11월	
전력수급 대책상황실 운영			하계, 동계	

20. 한국전기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Ⅰ 개 요

1 목 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

○ 재난안전관리업무 강화를 통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책 지원

○ 업무수행 중 공사 직원, 장비, 물자 또는 설비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인명 및 재산피해사고) 예방

2 근 거

□ 안전관리규정 제3장(재난·안전관리) 제6조(안전관리 기본계획)

○ (지역본부) 연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지 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소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 적극 추진

Ⅱ 안전관리 체계 및 임무

1 안전관리 체계

□ 사업소

○ 안전관리책임자 : 지역본부장

○ 안전관리자 : 지역본부 부장 및 지사장

2 안전관리 임무

□ 사업소

○ 안전관리자(지사장) :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

Ⅲ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

1. 안전관리 교육 및 활동

1 안전관리 교육

□ 안전교육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목표	·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공사의 업무능률 저해요인 해소로 신뢰도 증진
교육내용	· 안전의식의 생활화, 직원 및 고객의 전기안전사고 예방 · 차량안전운전 및 안전장구 비치상태 등 안전 관련사항 · 각종 안전장구의 취급요령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 등
교육시간	· 횟수 : 월 1회 이상 · 시간 : 월간 누계 1시간 이상

2 안전관리 활동

□ 안전장구휴대 및 이상 유무 확인

< 안전장구의 종류 >

❖ 안전모, 안전화(절연화), 고압고무장갑, 주상안전대, 작업장 구획표지 용구, 검전기(저압, 고압 및 특고압), 단락접지용구, 활선접근경보기, COS 조작봉, DS 조작봉 등

○ 안전장구 사용의무

- 작업자는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장구를 휴대, 착용 또는 부착하여야 함

○ 안전장구의 휴대 및 이상 유무 확인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연중 안전장구 휴대와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안전순시 및 안전지적서 발행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불시에 안전순시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요인 발견시 현지주의 및 현지시정 조치하고 안전지적서 발행

- 직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안전장구 착용 및 활용상태 확인 등

구 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비 고
안전순시 횟수	분기 1회 이상	월 1회 이상	휴일·야간작업 현장확인시 안전순시 병행

□ 안전회의

구 분	주 기	대 상	토의사항
안전관리책임자 (본부장)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자 (지사장)	·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 및 훈련 ·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의 교육 ·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지사장)	월 1회 이상	부서별	

□ 기타사항

○ **(작업전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전에 안전에 관한 회합을 하고 작업수행시의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주의를 환기

○ **(위험예지훈련)** 작업상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확인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월 1회 이상 실시

○ **(작업지시서 발행)** 전기설비의 검사·점검·진단 등 제반 현장업무 수행시

- 3인 이상이 공동 작업을 할 경우
- 3인 미만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에 작업할 경우
  (단, 긴급히 실시하는 고충처리 작업은 생략)

2.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책 지원

□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 시기적절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을 통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

< 취약시기별 중점추진 사항 >

취약시기	예방분야	중점 추진사항
해빙기 (2~3월)	설비·붕괴	· 지반침하 등 붕괴로 인한 전기설비 사고예방 점검 · 취약시설 중점검검 및 부적합 전기설비 개·보수
여름철 (6~8월)	감전·정전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취약시설과 예방시설 점검 · 가로등·신호등 등 감전사고 취약설비 점검 · 수해지역의 특별봉사 활동 실시
겨울철 (11~익년2월)	대형화재	· 전열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활동 ·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명절(설, 추석)	대형화재	· 전통시장·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 국가 주요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 주요 행사별 맞춤형 전기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출동 및 조치
-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점검 등 적극 지원

□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자체 전기안전점검의 날 시행 및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거리캠페인 추진

- 재난상황 발생시 개인 임무·행동요령(매뉴얼, 지침) 교육 및 안전교육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내고향집 전기안전 지킴이'** 엽서 적극 활용
- 행사시 본부장(지사장) 반드시 참여**(연 6회 이상)**

○ **(체험관 운영)** 대국민 전기안전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전기안전 체험형 부스'** 운영

- 전기안전체험을 위한 누전차단기 동작 시연 및 체험
- 전기안전 교육 및 홍보 동영상 상영, 포스터(사진) 전시
- 전기안전 만화책 등 홍보물품 증정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및 교육·훈련 강화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완수

○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매뉴얼 실효성 검증

- 재난유형별(풍수해, 지진, 다중밀집시설) 도상·실제 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자체·지자체 합동 훈련 실시 등

□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법제화에 따라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 재난관리 교육 의무이수 세부기준 >

구 분	교육시기	교육기간	과정별 교육시간
관리자 전문교육	· 신규교육 : 1년 이내 · 정기교육 : 매 2년마다	3일 이내	1일 이상 (7H)
실무자 전문교육			2일 이상 (14H)
전문교육 대행기관	국민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속의 교육기관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 안전관리대행 고객 중 전기설비용량 300kW이상 다중이용시설

- 위험등급에 따라 재난위험시설(A·B·C)과 중점관리대상시설(D·E) 지정
- 일제조사 : 매년 9월 ~ 11월 중 연 1회 실시

- 수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
- 관리방법 : '기술진단업무 표준매뉴얼' 에 따라 점검 실시 후 위험등급에 따라 반드시 중앙안전관리시스템 입력

* 시스템 입력 기준 : A·B·C등급(반기 1회), D등급(월 1회), E등급(월 2회)

3. 사회취약계층 전기안전 지원

□ 취약계층 시설개선 사업

○ **(저소득서민층)** 저소득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20년 이상)의 전기설비 개선
- 지자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연계, 협업 추진
- '15년도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추진 당위성 확보로 기금예산 반영 추진

○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중 노후로 화재 위험성이 노출된 시설 개선

○ **(국가유공자독거노인)** MOU를 체결한 기관과 협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독거노인 가정 노후 전기설비 개선(전기안전119 사업과 연계)

* MOU체결 현황 : 보건복지부('13.5.8), 국가보훈처('13.8.29), 보훈공단('11.12.2)

□ '전기안전 보안관 제도' 수혜 도서 확대 추진

○ **(명예 보안관 도입)** 도서 내 전기공사업체나 전기기술자 부재 도서를 대상으로 '15년 시범사업 추진

* 인천·광주전남·충남지역 관내 시범운영 / 10개 도서 5,867호

사업소	島嶼	사업소	島嶼
인천지역본부	자월·대청도(1,320호)	충남서부지사	원산·삽시도(779호)
전남서부지사	신의·장산도(1,806호)	서산태안지사	근흥면 가의도리등(68호)
전남남부지사	금당도(546호)	군산지사	선유·어청도(499호)
경남남부지사	사량도(917호)		

○ **(전기안전 보안관)** 전국 유인 도서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

* 수혜 도서 : ('12년) 11개/22,181호 → ('13년) 14개/26,068호 → ('14년) 18개/29,305호

□ 전기안전119 활성화

○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불편 최소화 및 전기재해 예방

○ 전기안전119 앱(App) 중점 홍보

□ 내 고향집 전기안전 지킴이 엽서 활성화

○ **(국 민)** 고향집 전기사용 불편사항 확인 후 엽서 작성·발송

○ **(KESCO)** 접수 확인 후 고향집을 방문,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 전개

4. 전기재해 감축

□ 전기화재 목표 관리

○ **(지표관리)** 고객호수 백만 호 당 전기화재 목표건수 부여

○ **(간담회 개최)** 객관적인 화재통계를 위한 소방간담회 개최

○ **(신호예보제)** 전기화재 감소를 위한 사업소별 전기화재 발생현황 전파

- 매월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e-SMS 전송 및 KESCO-Damoa 베너 게시

양호 	목표달성 가능, 목표건수 대비 실적율 95%이하
보통 	목표달성 불안, 목표건수 대비 실적율 96~100%
주의 	목표달성 어려움, 목표건수 대비 실적율 101%이상

21. 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

제 1 절 개 요

1. 목 적

재난 발생시 대응조치에 필요한 재난대책 업무의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고수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재난의 대상 및 범위

가. 대　　상 : 관내의 천연가스 시설 및 건축물, 매설배관 등

나. 범　　위

- ㅇ **자연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지진, 가뭄, 황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ㅇ **사회 재난** :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ㅇ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노사분규 포함)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추진전략

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및 계획수립, 시행

나. 본사, 사업소 및 유관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체제 구축

다. 쟁위행위 등 종사자 집단업무 거부에 따른 가스공급 대책 수립 및 대체인력 확보

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확산시 업무지속계획을 강구하여 업무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 가스공급 시행

제 2 절 재난관리체계

1. 재난발생시 보고체계

가. 주간

재난발생시 보고체계(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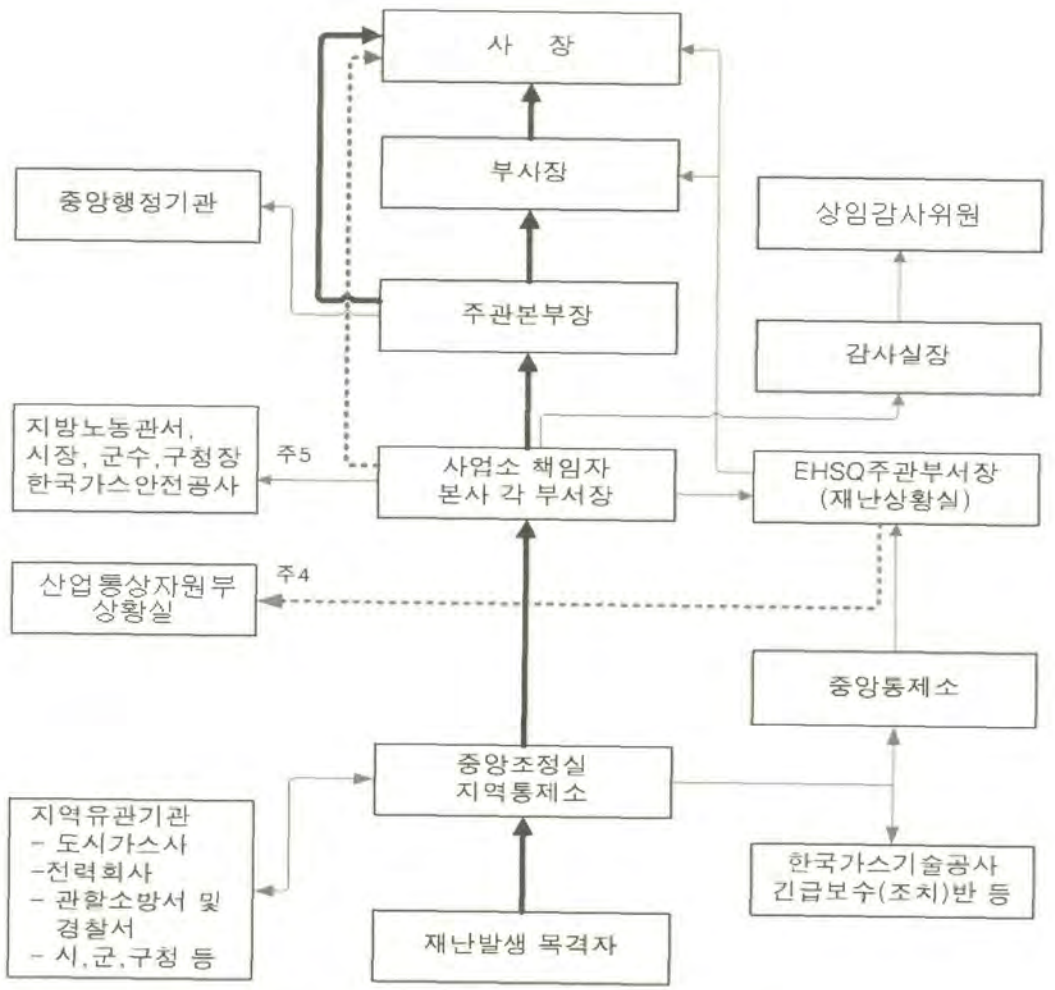

※주 1. ⟶: 즉보[재난(1,2급사고 포함) 발생 및 목격시 보고 (평일, 휴일, 주야간 공통)]
2. ⋯⋯▶: 위급상황시
3. ⟶: 상황보고 또는 선파
4. ⋯⋯▶산업통상자원부보고 요령에 따름 (평일주간EHSQ주관부서 휴일/야간 : 본사당직실
5. 중내재해(지방노동관서), 재난(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스 관련사고(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한다.
6. 보고 체계중 보고 받은자가 부재시는 직상위자에게 보고한다.
7. 건설사무소, 연구개발원 및 D/S사고는 사업소 EHSQ담당부서(평일), 당직실(휴일/야간)로 보고
8. 계통사고고중 대량 가스누출, 화재 및 시설의 심각한 훼손 등 재난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본 보고체계 적용

나. 야간 및 휴일

재난발생시 보고체계(야간/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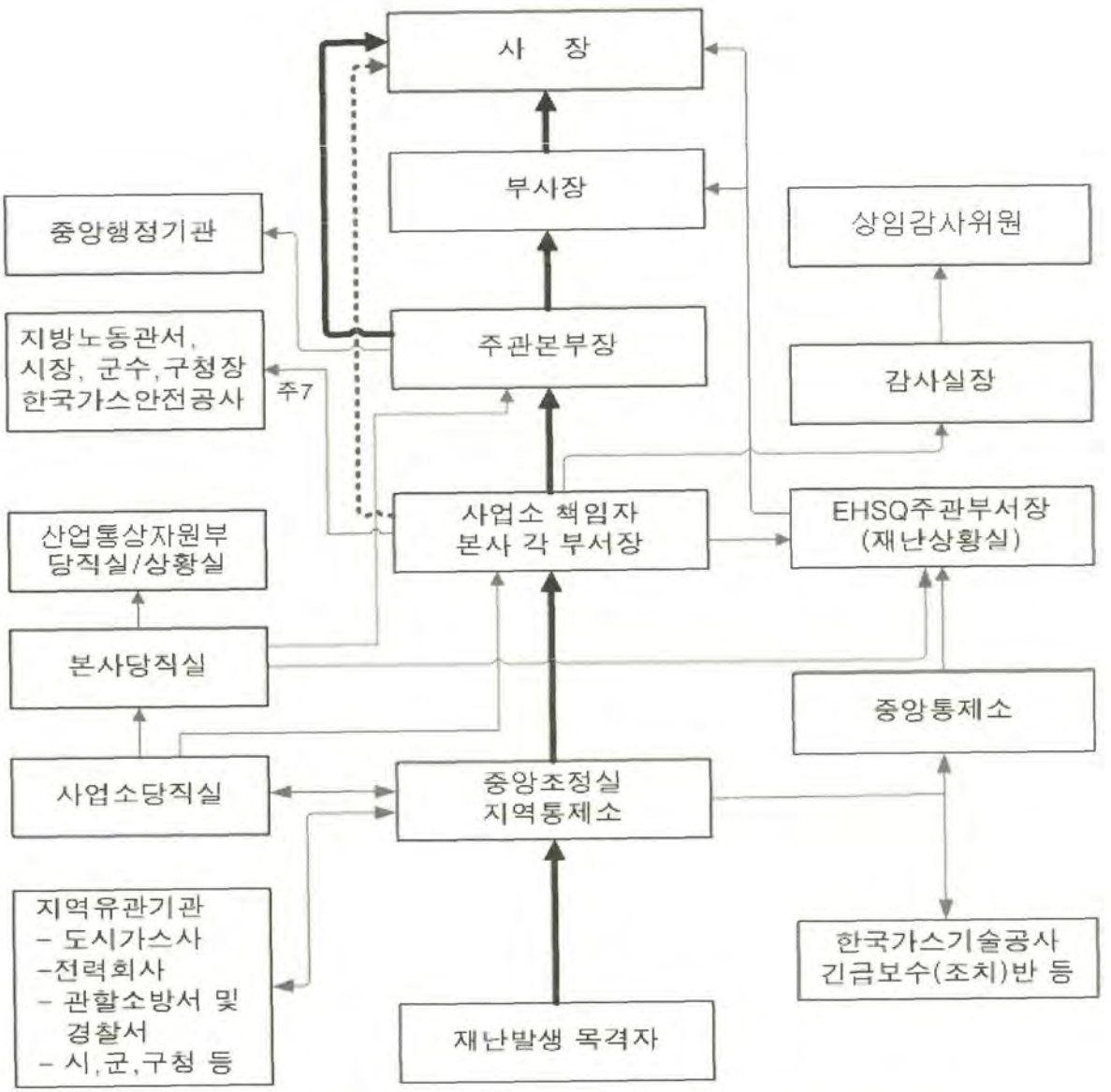

※주 1. ➡ : 즉보[재난(1,2급사고 포함) 발생 및 목격시 보고 (평일, 휴일, 주야간 공통)]

2. ⋯⋯▶ : 위급상황시

3. ——▶ : 상황보고 또는 전파

4. ------▶산업통상자원부보고 요령에 따름 (평일주간 EHSQ주관부서 휴일/야간 : 본사당직실

5. 중대재해(지방노동관서), 재난(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스 관련사고(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한다.

6. 보고 체계중 보고 받은자가 부재시는 직상위자에게 보고한다.

7. 건설사무소, 연구개발원 및 D/S시고는 사업소 EHSQ담당부서(평일), 당직실(휴일/야간)로 보고

8. 계통사고고중 대량 가스누출, 화재 및 시설의 심각한 훼손 등 재난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본 보고체계 적용

2. 재난관리 조직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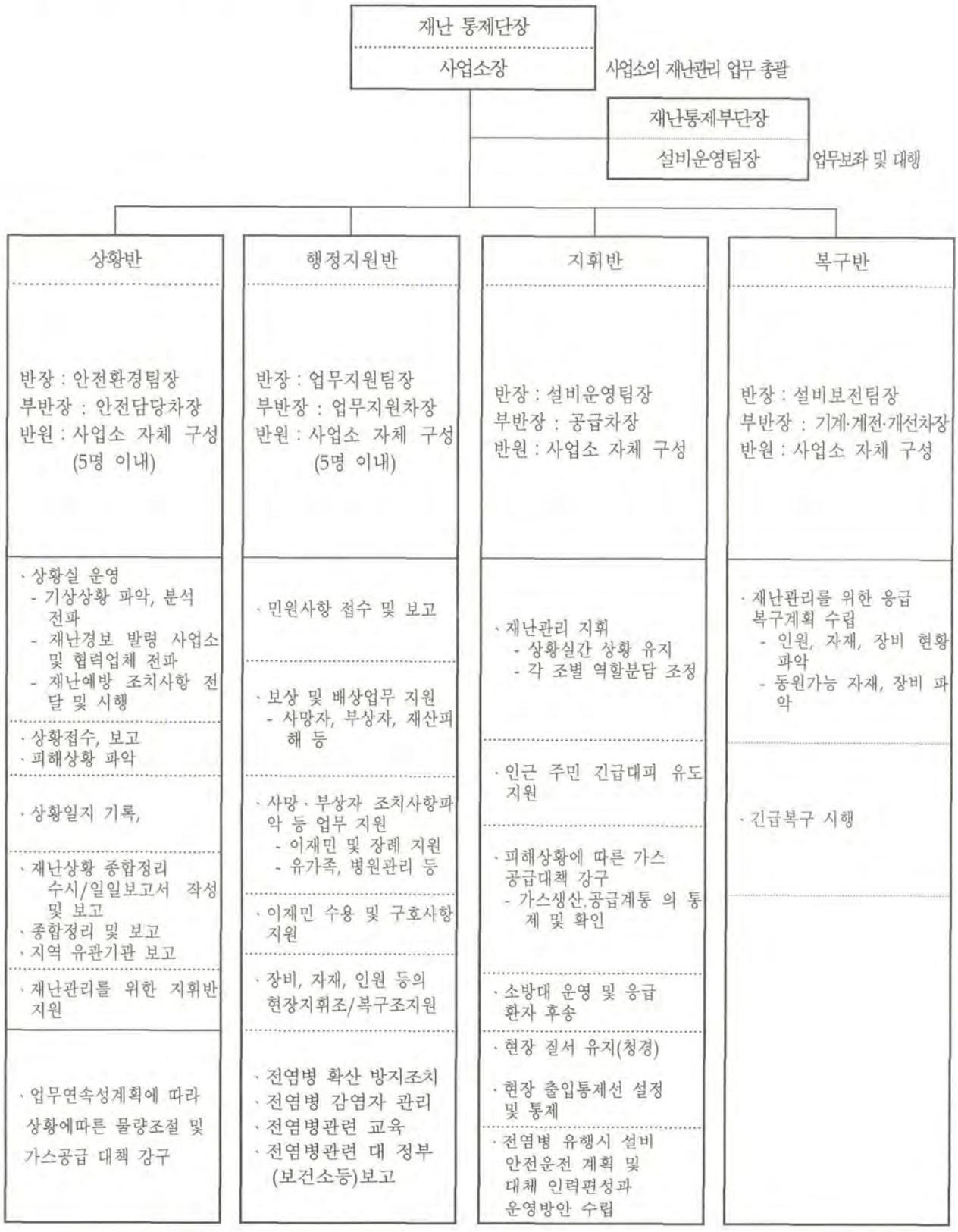
재난 통제단장
사업소장
사업소의 재난관리 업무 총괄
재난통제부단장
설비운영팀장
업무보좌 및 대행
상황반
반장 : 안전환경팀장
부반장 : 안전담당차장
반원 : 사업소 자체 구성 (5명 이내)
· 상황실 운영
- 기상상황 파악, 분석 전파
- 재난경보 발령 사업소 및 협력업체 전파
- 재난예방 조치사항 전달 및 시행
· 상황접수, 보고
· 피해상황 파악
· 상황일지 기록,
· 재난상황 종합정리 수시/일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종합정리 및 보고
· 지역 유관기관 보고
· 재난관리를 위한 지휘반 지원
· 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상황에따른 물량조절 및 가스공급 대책 강구
행정지원반
반장 : 업무지원팀장
부반장 : 업무지원차장
반원 : 사업소 자체 구성 (5명 이내)
· 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 보상 및 배상업무 지원
-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등
· 사망·부상자 조치사항파악 등 업무 지원
- 이재민 및 장례 지원
- 유가족, 병원관리 등
· 이재민 수용 및 구호사항 지원
· 장비, 자재, 인원 등의 현장지휘조/복구조지원
· 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 전염병 감염자 관리
· 전염병관련 교육
· 전염병관련 대 정부 (보건소등)보고
지휘반
반장 : 설비운영팀장
부반장 : 공급차장
반원 : 사업소 자체 구성
· 재난관리 지휘
- 상황실간 상황 유지
- 각 조별 역할분담 조정
· 인근 주민 긴급대피 유도 지원
· 피해상황에 따른 가스 공급대책 강구
- 가스생산.공급계통 의 통제 및 확인
· 소방대 운영 및 응급 환자 후송
· 현장 질서 유지(청경)
· 현장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 전염병 유행시 설비 안전운전 계획 및 대체 인력편성과 운영방안 수립
복구반
반장 : 설비보전팀장
부반장 : 기계·계전·개선차장
반원 : 사업소 자체 구성
· 재난관리를 위한 응급 복구계획 수립
- 인원, 자재, 장비 현황 파악
- 동원가능 자재, 장비 파악
· 긴급복구 시행

제 3 절 재난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능력 및 공급방안 검토

- 매월 또는 계절별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천연가스 및 에너지 절약 등 대국민 가스홍보활동 강화

나. 대비대책

○ 가스공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비상시를 대비한 상황별 대응시나리오 검토 및 교육

○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가상사고 훈련 실시

○ 재난에 대비한 긴급 복구 장비 및 자재의 확보, 점검 실시

다. 대응대책

○ 상황실 및 재난통제단 운영

○ 위기상황 발생시 본사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 및 극복

○ 주배관에서의 가스공급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우회공급 등으로 위기상황 극복

○ 위기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조치는 공급차질 및 위기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후 결정

라. 복구대책

○ 상황실 및 재난통제단 운영

○ 피해설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계통정상화 대책마련

- 가스공급 위기 대응조치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인력 및 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등

○ 재난시 발생한 피해사례 종합 및 정상화대책 마련

○ 위기상황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제 4 절 비상연락망

분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핸드폰)
	소속	직위	성명		
총괄	안전환경팀	부장	이종만	재난관리 업무 총괄	042-229-3580 (010-5242-8599)
담당	〃	대리	유현경	재난관리 업무 담당 (yhk0319@kogas.or.kr)	042-229-3587 (010-5162-5256)
야간	설비운영팀	-	통제소	가스설비 감시.통제	042-229-3501 ~ 3
	충청지역본부	-	당직실	야간 본부장 업무대행	042-229-3500

22. 한국가스공사전북지역본부

1. 재난관리 체계

1) 조직 : 5팀 1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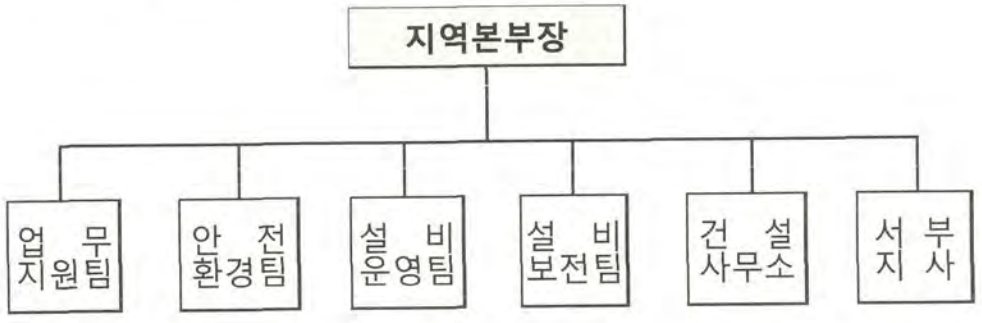

2) 인력현황

('15. 03월 기준)

현원	1, 2급	3급		4 ~ 7급		별정직
		사무	기술	사무	기술	
130	6	2	16	6	97	3

※ 가스시설물 상시감시체제 유지를 위한 교대근무자 65명 포함

3) 공급관리소

시설명	주 소(도로명)	전화번호	도시가스사
부곡 G/S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4길 72 한국가스공사 부곡관리소 우)343-827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5	041) 357-0557	GS EPS, 서해
당진 V/S	충남 당진시 정미면 상구실로 132-18 한국가스공사 당진관리소 우)343-862 충남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347-16	041) 355-5590	-
서산 G/S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서령로 529 한국가스공사 서산관리소 우)356-843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691-1	041) 664-2755	서해
해미 V/S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3길 5 한국가스공사 해미관리소 우)356-824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145	041) 688-9792	-
홍성 G/S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105 한국가스공사 홍성관리소 우)350-80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598-2	041) 633-7709	서해

시설명	주 소(도로명)	전화번호	도시가스사
광천 V/S	충남 홍성군 은화면 은하로 184번길 85 한국가스공사 광천관리소 우)350-883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777	041) 642-3082	-
보령 G/S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토정로 1047-200 한국가스공사 보령관리소 우)355-921 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245-2	041) 931-0681	보령복합 화력
대천 G/S	충남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관창공단길 251 한국가스공사 대천관리소 우)355-922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5	041) 931-0682	중부
웅천 V/S	충남 보령시 웅천읍 정굴길 18-25 한국가스공사 웅천관리소 우)355-851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1-8	041) 931-4145	-
비인 V/S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충서로 69 한국가스공사 비인관리소 우)355-863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286-2	041) 931-4146	-
서천 G/S	충남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195 한국가스공사 서천관리소 우)325-827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309	041) 953-4405	중부
논산 G/S	충남 논산시 지산길 44-6 한국가스공사 논산관리소 우)320-090 충남 논산시 지산동 887-4	041) 735-2208	중부
성동 B/V	충남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226-3	041) 932-0681	-
부여 V/S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13 외	041) 832-2610	중부

2. 재난 예방계획

가. 예방점검 활동

점 검 명	점 검 자	점검주기	비 고
안전점검의 날 점검 (매월 4일)	· KOGAS : 전 직원 · KGT : 전 직원	1회/월	o 공급관리소 : 23개소 o 배관망 : 398.3km o 사옥(서부지사 포함)
계절별(특별)안전점검 (혹한기, 동절기 등)	특별안전점검반	1회/년	상 동
법정선임자 점검	안전관리자	1회/월	상 동
가스배관망 순찰점검	가스기술 배관순찰	2회/일	대형 타공사 현장은 직원 상주

나. 직원 안전의식 제고

1) 안전교육 및 훈련

교육과정	대 상	주 기	비 고
EHSQ 교육	전 직원 및 협력업체	1회/월	사고사례 등 전파교육은 발생시 별도 시행

2) 자체안전교육

교육과정	대 상	주 기	비 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전 직원	1회/월	안전점검의 날
교대근무자 안전교육	교대근무자	격월	직무교육 시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각 부서장	1회/연	외부교육 일정
외부작업자 안전교육	공사 작업자	수 시	작업 실시 전

3) 재난훈련 실시

- ㅇ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 안산소방서 (년1회)
- ㅇ 불시 전화응소(1회/분기) 및 가상사고 훈련 (3회/연)
- ㅇ 재난통제단 반별 모의훈련 (분기1회)

4) 안전 홍보를 통한 가스안전문화 생활 정착 유도

- ㅇ 분기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주요장소 안전거리 캠페인 활동

3. 재난대비 대책

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1)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 조기수습복구 등을 위한 관리체제의 확립
(전담인력 등 근무인원, 유관기관 전파체제 등)

2) 재난 단계별 상황근무 체제 운영

관 심	가스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주 의	태풍주의보 및 대설, 호우, 한파경보 등 발령 시

경 계	배관노출 등으로 조직적인 재난대비가 필요한 경우

심 각	공사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3) 재난단계별 근무요령

ㅇ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포함

재난관리 체제	발령 권자	재 난 상 황	근 무 요 령
관심 (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별도의 경보를 발령하지 않으나 EHSQ 주관부서장, 사업소EHSQ 담당부서장이 아래에 준하는 상황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태풍 등 기상예보 시 ○국제적 행사의 국내 개최 및 국가 주요 행사시 - 월드컵, 올림픽, 선거, G20 회의 등 ○지진발생으로 공사 시설물에 피해 발생 우려시 - 생산 및 공급설비에 설치된 지진감지시스템 지시치가 (15gal)기록시	○기상예보 주시 ○재난관리 조직 및 체제 정비 - 비상연락망, 핫라인, 재난복구장비 점검 등 ○주의(Yellow)체제 전환 준비
주의 (Yellow)	부사장 사업소장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형태 발령권자가 아래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태풍주의보 및 강풍·풍랑경보, 대설경보, 호우경보, 한파경보 , 폭염경보 등 발령시 ○지진발생으로 공사 시설물에 소규모 피해 발생시 - 생산 및 공급설비에 설치된 지진감지시스템 지시치가 25gal이상 기록시 - 지진발생으로 공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수습이 가능시 ○가스설비 또는 시설과 인접된 구조물, 타공사 구조물 ,타 공사 현장의 붕괴로 방치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량(200L 미만)의 위험, 유해물질, 환경오염 물질의 누출 및 배출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상 관계자료 수집 및 게시 - 중앙통제소, 지역통제소 및 중앙조정실 근무자 ○재난대비 상황감시 및 검토 - 정부지시 및 필요시 야간·휴일상황감시자배치(EHSQ주관부서,사업소EHSQ담당부서) - 정부 등 유관기관 연계근무(필요시) ○상황실 운영을 위한 장비, 비품, 및 소모품 등 점검 ○비상대기조(KGT) 편성 ○취약지역 점검 및 순찰 강화 ○경계(Orange)체제

<table>
<tr><th>재난관리
체제</th><th>발령
권자</th><th colspan="2">재 난 상 황</th><th>근 무 요 령</th></tr>
<tr><td rowspan="2">경계
(Orange)</td><td rowspan="2">부사장
사업소장</td><td colspan="2">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 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재난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발령권자가 아래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td><td></td></tr>
<tr><td colspan="2">❍지진(지진해일)발생으로 공사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가 확산의 우려가 있을시
- 내진설계 운전기준지진(OBE) 98gal 이상규모의 지진 발생시
- (지진)해일경보발령 및 해일내습이 확실시 될때
❍태풍경보(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또는 호우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홍수경보, 해일경보(폭풍 또는 해저 지진으로 피해 예상시) 발령시
❍설비가동 중단으로 수요처 (발전소, 도시가스사 등)에 가스공급이 중단된 경우 또는 공급중단으로 인해 수요처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된 경우
❍대량(200L 이상) 위험, 유해 물질, 환경오염물질 누출 및 배출등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업소 관할지역의 자연 재해로 인한 배관노출시
❍폭발테러 정보를 입수하여 조직적인 재난대비 필요시 등</td><td>❍상황실 운영
- 사업소 : 본사지시 및 사업소 자체적인 경계(Orange)체제 발령시 운영하며, 사업소 EHSQ 담당부서를 포함 각 부서의 인원으로 구성 (5인 이내)

❍사업소 재난통제단 가동 (필요시)

❍재난위기대책위원회 심의 확정시 재난대책 본부 운영
-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직원요청 및 가동
- 유관기관 통보 및 지원 요청
- 유관기관 및 사업소 통신시설 정비

❍심각(Red) 체제로의 전환 대비 전환 준비</td></tr>
<tr><td rowspan="2">심각
(Red)</td><td rowspan="2">부사장
사업소장</td><td colspan="2">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재난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발령권자가 아래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공사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td><td></td></tr>
<tr><td colspan="2">❍지진(지진해일)발생으로 공사시설물의 대량파손 및 가스시설 파손으로 가스 대량 누설시 등
- 2개 이상 지역통제 권역 에서 내진설계 운전기준 지진(OBE) 98gal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 하거나, 내진설계 안전 정지 지진(SSE) 196gal 이상규모 지진발생시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 누출로 인하여 인명 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된 사고
❍LNG, NG 등의 누출로 인해 대형화재, 폭발이 발생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테러등으로 인한 공사 시설 물의 대량 파손 및 가스 시설 파손으로 가스 대량 누설시</td><td>❍재난대책본부/해당 사업소 재난통제단 운영
- 24시간(교대) 근무실시
*한국가스기술공사 : 동일
- 재난상황 점검, 복구계획 수립
- 재난상황 또는 응급조치 상황 등 피해 및 대외 홍보 자료 작성</td></tr>
</table>

4) 재난통제단 구성 및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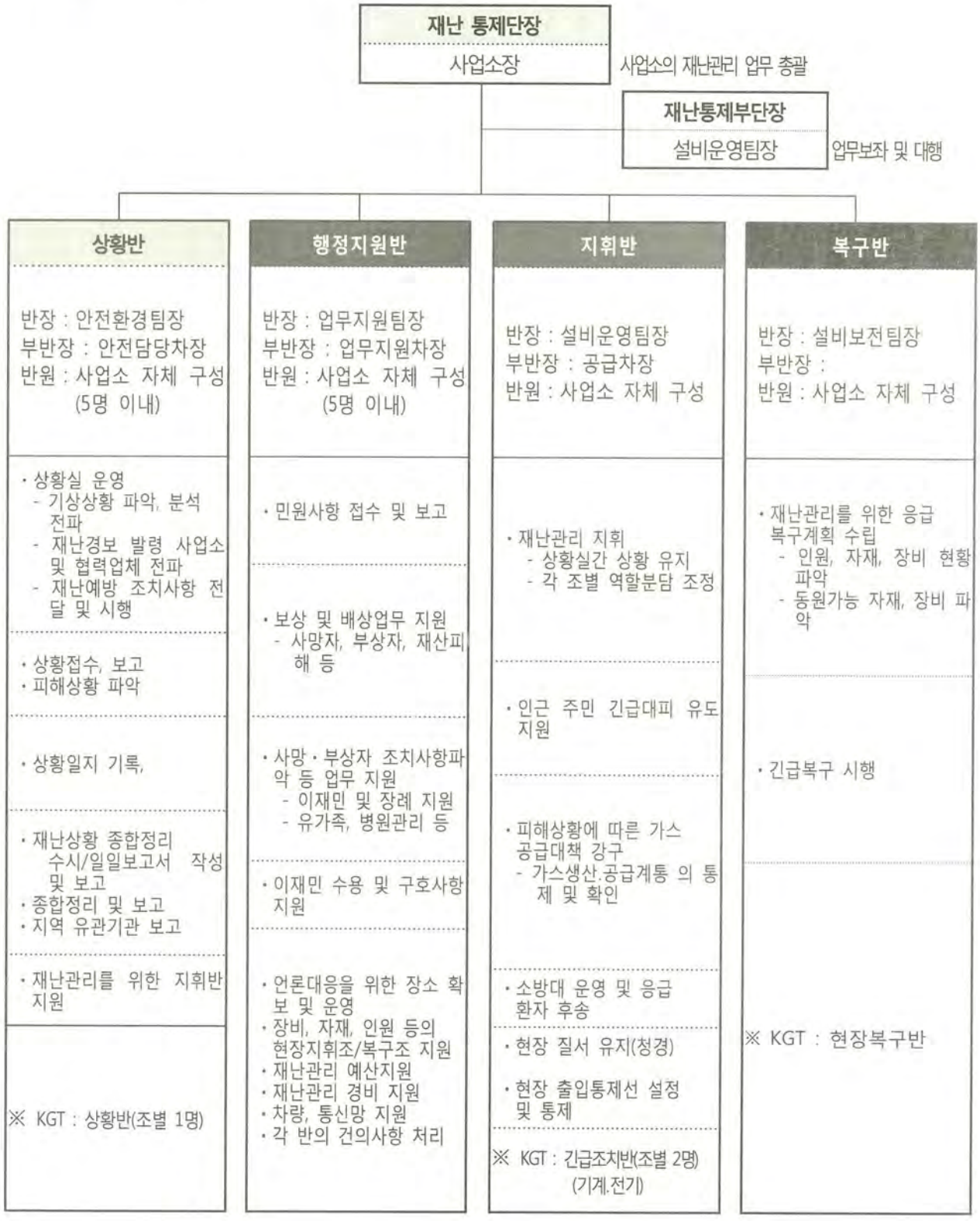

구 분	임무 및 역할	1조	2조	3조
재난통제단장	ㅇ현장 재난상황 수습.통제 및 복구 총괄 지휘	신옥철		
재난통제부단장	ㅇ통제단장 보좌 및 부재 시 업무대행	류재필		
상황반 (상황실)	ㅇ상황반장 : 상황반업무 총괄관리	이 혁	이덕영	박종수
	ㅇ상황실 운영 - 기상상황 파악, 분석, 전파 - 재난경보 발령, 본사 상황반 및 지역 유관기관 전파 - 재난예방 조치사항 전달 및 시행	김현지	서유진 이승래	김현수
	ㅇ상황접수·보고 ㅇ피해상황 파악 ㅇ재난상황 종합정리 - 수시/일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종합정리 및 보고 - 지역 유관기관 보고	박진철 안현수 (KGT)	한영철 최대명 (KGT)	김상만 주상욱 (KGT)
	ㅇ재난관리를 위한 지휘반 지원	염시경	백성완	양화영
행정 지원반 (현장)	ㅇ행정지원반장 : 현장 행정지원업무 총괄	서경래	도승일	조빈영
	ㅇ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ㅇ보상 및 배상업무 지원 -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등 ㅇ이재민 수용 및 구호사항 지원	박종구	노성환	이형재
	ㅇ언론대응을 위한 장소 확보 및 운영 ㅇ장비, 자재, 인원 등의 현장지휘조/복구조 지원 ㅇ재난관리 예산지원/경비지원 ㅇ차량, 통신망 지원 ㅇ각 반의 건의사항 처리	이승철	이성희	김창경

구 분		임무 및 역할	1조	2조	3조
지휘반 (현장)		ㅇ지휘반장 : 가스공급계통 통제·확인 및 재난관리 총괄 지휘	류재필	두병오	정진관
		ㅇ재난관리 지휘 - 각 조별 역할분담 조정 ㅇ인근 주민 긴급대피 유도 지원	유주상	이채환	김명준
		ㅇ피해상황에 따른 가스 공급대책 강구 - 가스생산.공급계통 의 통제 및 확인 ㅇ소방대 운영 및 응급 환자 후송	오종락 이재박	이경용	김현훈 황교신
		ㅇ안전 통제조 - 복구작업 안전관리, - 상황실간 상황 유지	배정현 이명환	유한식 박상민	이충훈 윤재화
		ㅇ긴급조치반(KGT) - 현장 출입통제 - 인원 및 차량 통제	권승주 최광규	김선철 김광식	김영호 허주행
복 구 반 (현장)	복구반장	ㅇ현장재난 복구 총괄	이광훈	이현정	김현식
	복구조 (기계분야)	ㅇ재난관리를 위한 응급 복구계획 수립 - 인원, 자재, 장비 현황 파악 - 동원가능 자재, 장비 파악 ㅇ긴급복구 시행	한선욱 이동군	이종만	김현찬
	복구조 (계전분야)	ㅇ재난관리를 위한 응급 복구계획 수립 - 인원, 자재, 장비 현황 파악 - 동원가능 자재, 장비 파악 ㅇ긴급복구 시행	오승아	우상국	최문호
	복구조 (관로분야)	ㅇ재난관리를 위한 응급 복구계획 수립 - 인원, 자재, 장비 현황 파악 - 동원가능 자재, 장비 파악 ㅇ긴급복구 시행	이재복	송인상	정원종
	복구조 (KGT 가전팀)	ㅇ현장복구반(KGT)	KGT복구반		

□ 현장복구반(KGT) 조직 및 임무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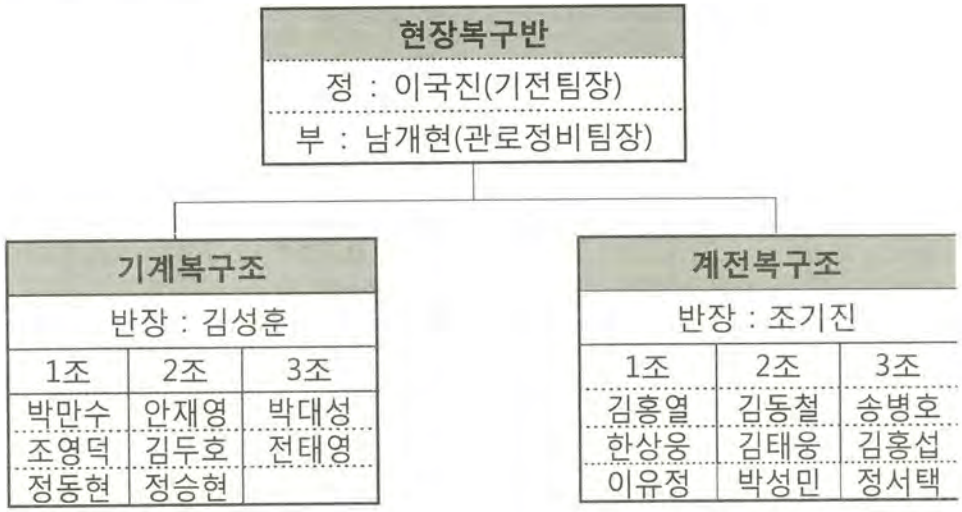

◎ 임 무

○ 재난발생 예상 시 재난복구 장비 일제 점검 실시

○ 긴급 복구 계획 수립
- 화재진압 완료 후 세부 피해범위 조사 실시
  . 자재 재사용 여부 또는 취외 여부 결정
  . 자재 재고 상황 파악
- 긴급 복구 대비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재 및 인력 동원 방안 검토
  . 필요자재 부족 시 타 사업소 긴급 요청 실시
  . 복구인력(용접사, 배관공, 전.계장공 등) 부족 시 외부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인력 지원 요청
- 긴급 복구 실시
  . 파급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긴급 복구 실시
  . 사고현장 안정화 시 세부 복구계획 수립하여 완전복구 대책 수립

○ 피해지역 완전 복구 대책 수립 및 실시
- 완전 복구 계획 수립 (긴급 복구 완료 후)
- 완전 복구 설계 및 시공

4. 재난(가스공급 중단)대비 장비 동원 계획

○ 장비

최소기능유지 소요자원								
공기 호흡기	배관 탐지기	가스 검지기	산소 측정기	용접기	발전기	양수기	에어 콤프레샤	계
1	1	1	1	1	1	1	1	8

5. 재난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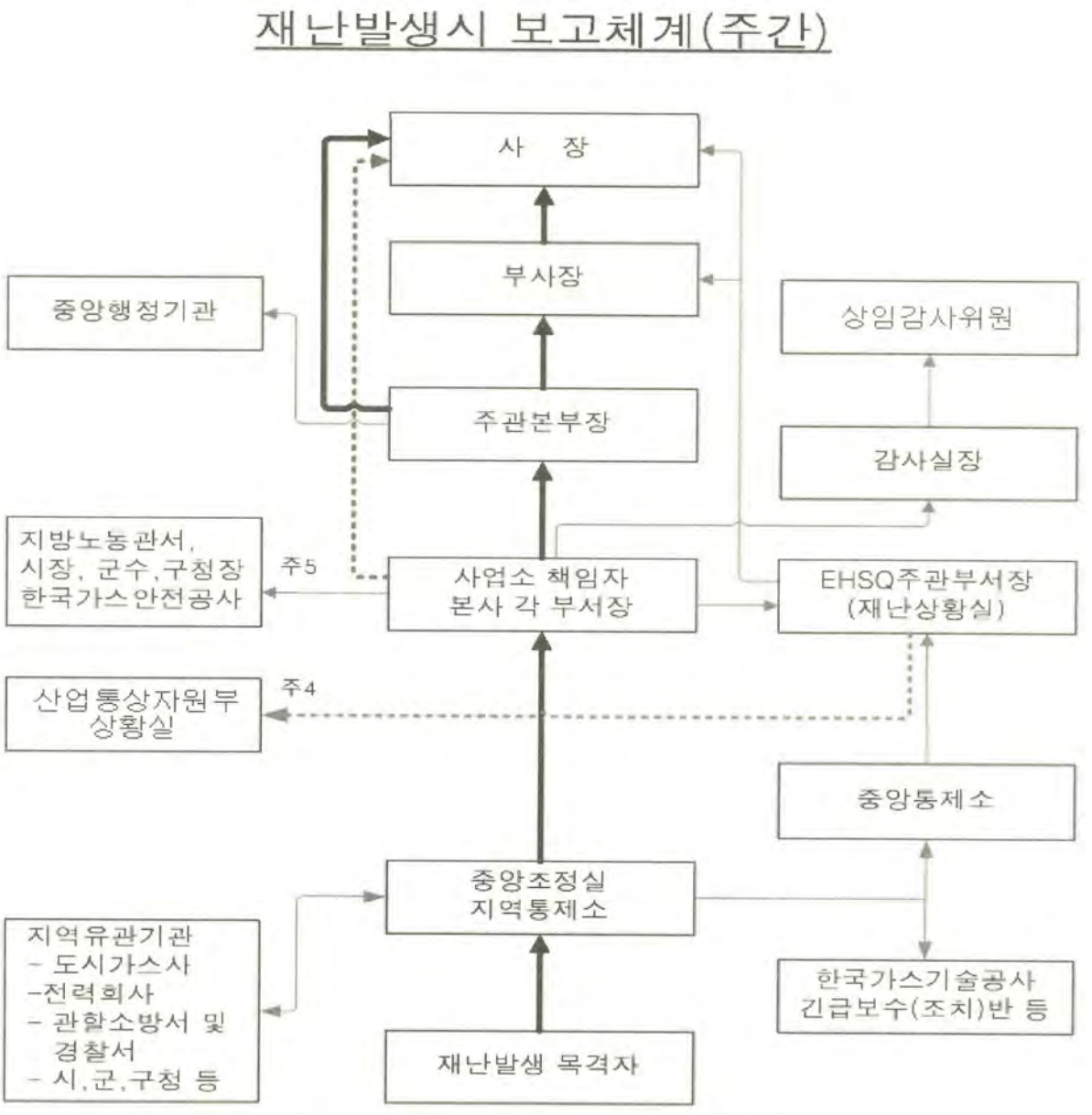

※주 1. ——▶ : 즉보[재난(1,2급사고 포함) 발생 및 목격시 보고 (평일, 휴일, 주야간 공통)]
2. ------▶ : 위급상황시
3. ——▶ : 상황보고 또는 선파
4. ------▶산업통상자원부보고 요령에 따름 (평일주간EHSQ주관부서 휴일/야간 : 본사당직실
5. 중내재해(지방노동관서), 재난(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스 관련사고(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한다.
6. 보고 체계중 보고 받은자가 부재시는 직상위자에게 보고한다.
7. 건설사무소, 연구개발원 및 D/S사고는 사업소 EHSQ담당부서(평일), 당직실(휴일/야간)로 보고
8. 계통사고고중 대량 가스누출, 화재 및 시설의 심각한 훼손 등 재난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본 보고체계 적용

재난발생시 보고체계(야간/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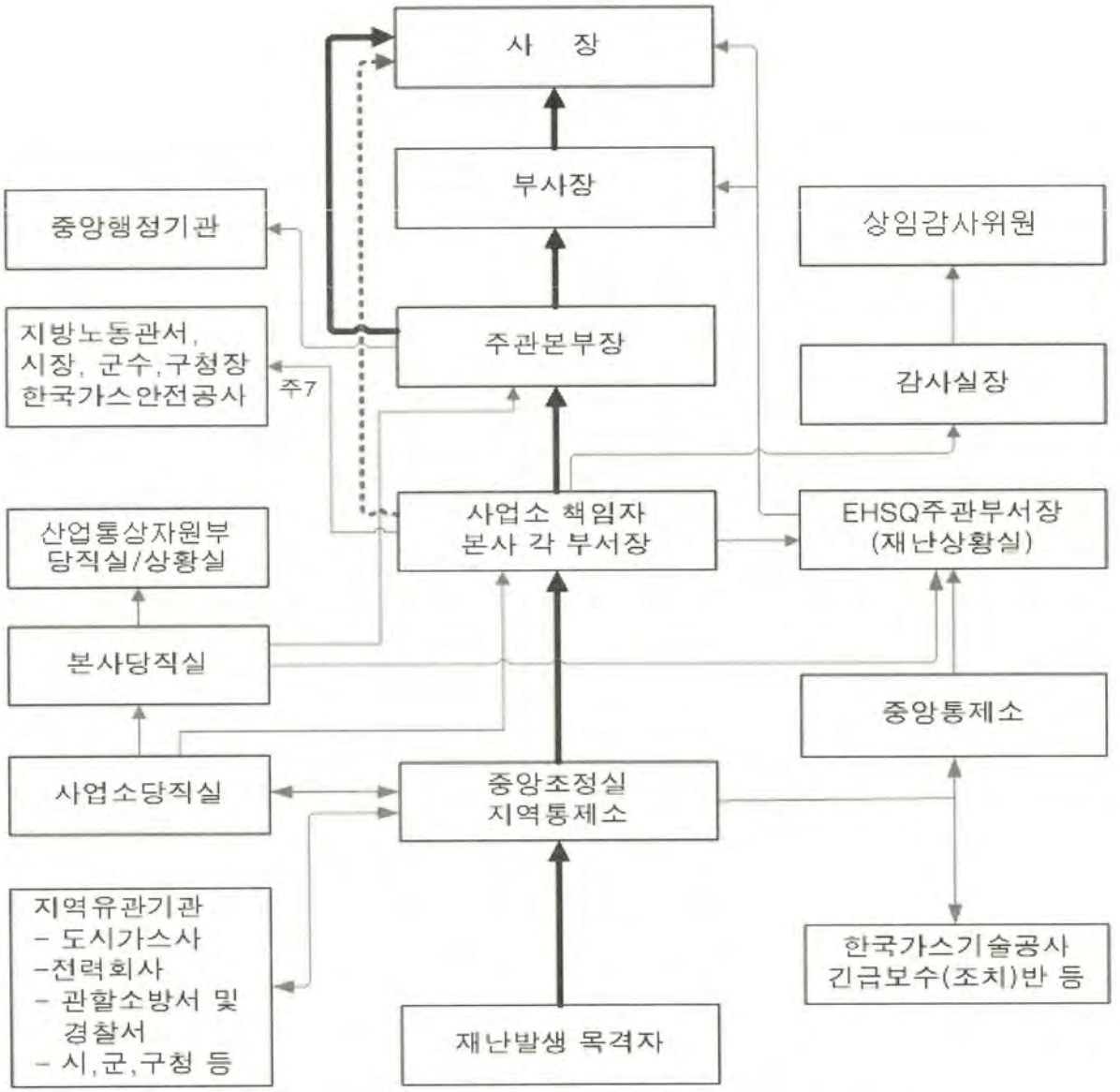

※주 1. ➡: 즉보[재난(1,2급사고 포함) 발생 및 목격시 보고 (평일, 휴일, 주야간 공통)]
2. ⇢: 위급상황시
3. ➡: 상황보고 또는 전파
4. ⇢산업통상자원부보고 요령에 따름 (평일주간 EHSQ주관부서 휴일/야간 : 본사당직실
5. 중대재해(지방노동관서), 재난(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스 관련사고(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한다.
6. 보고 체계중 보고 받은자가 부재시는 직상위자에게 보고한다.
7. 건설사무소, 연구개발원 및 D/S시고는 사업소 EHSQ담당부서(평일), 당직실(휴일/야간)로 보고
8. 계통사고고중 대량 가스누출, 화재 및 시설의 심각한 훼손 등 재난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본 보고체계 적용

※ 비상연락망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	주소
	직위	성명			
안전환경팀	팀장	이 혁	063)850-3850	063)850-3869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대리	박종수	063)850-3865		

23. 한국가스안전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Ⅰ. 계획의 기본방향

1. 목 적

○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사고발생시 대형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가스시설 지정·관리 등 각종 안전관리활동 추진을 통해 인위재난을 예방하고

○ 지진, 수해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체계 구축 등 효율적·체계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추진방침

○ 안전관리 저변확대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교육·홍보 추진
○ 대형시설물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신속한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추진

3.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 인력 및 조직

○ 인 력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비고
					행정	기술	행정	기술			
현 원	34	1	1	1	1	8	-	16	3	3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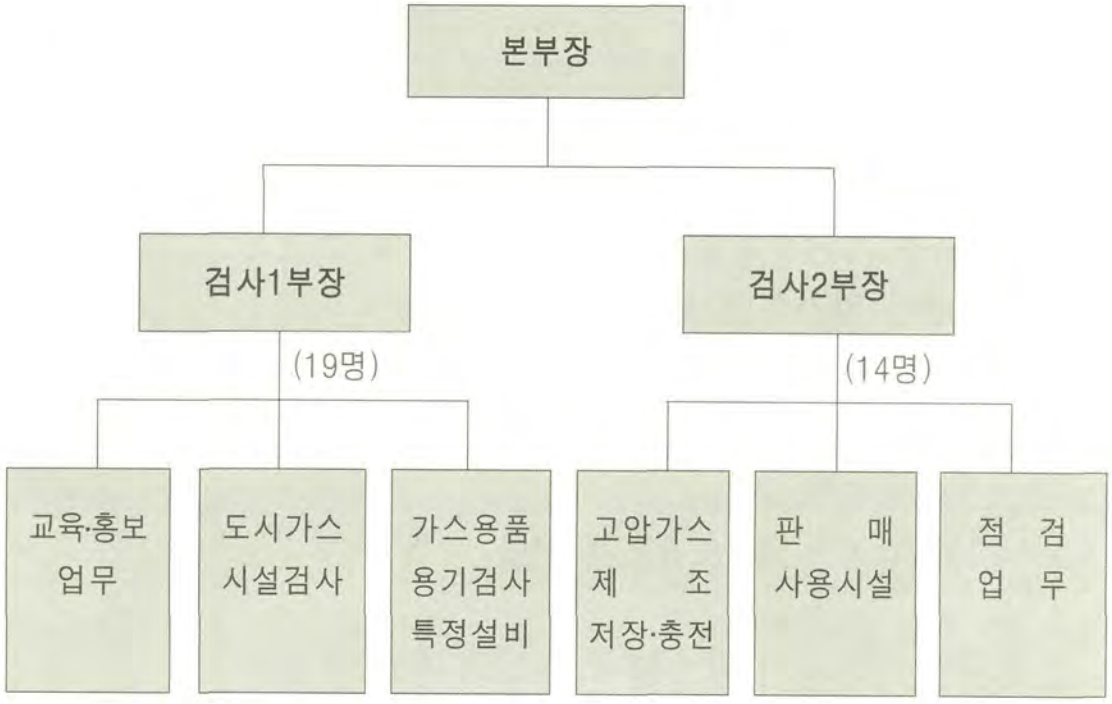

□ 주요업무

○ 법정고유업무

- 가스안전전문교육·홍보,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 수집·제공사업
- 자율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등

○ 위탁업무

- 가스시설 중간검사, 완성검사, 시공감리 및 정기검사
-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및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등

○ 기 타

- 재난관리업무, 취약시설·주요시기별 안전점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민층)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Ⅱ.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제1절. 가스재난대책

1. 재난예방대책

가. 안전관리 저변확대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 가스안전 점검의날 행사 추진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 시기별 맞춤 홍보

- 시기 : 매월 4일
- 주관 : 공사 및 유관단체 연합 시행

□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 매스컴을 통한 홍보(T/V, 라디오, 신문·잡지, 유선T/V)

○ 대중광고물, 유인물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 이동용 홍보용 차량 등을 이용한 순회계몽교육

○ 거리캠페인, 시(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가스안전 홍보

○ 법정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자 가스안전교육 실시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수시·일제조사 및 지정

○ 조사시기

- 수시조사: 매분기별 정기·수시검사 및 특별점검시
- 일제조사: 매년 9월 ~ 10월

○ 조사방법 : 서류검사를 실시하여 신규조사시설을 파악하고, 최근 실시한 법정검사(정기, 자율검사) 및 특별점검(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결과를 조사결과로 갈음

○ 지정통보 : 대상시설 추가지정 또는 변경(위험⇔중점관리대상)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업소 및 지자체에 지정사실을 통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단위: 개소)

총계	고 압 가 스				LPG충전	도시가스 충전소
	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62	-	1	-	17	39	5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 점검종류 및 주기

점검부분	재난위험시설 (D,E등급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A,B,C등급 시설)	
정기점검	월1회 이상	A, B등급	반기1회 이상
		C 등급	분기1회 이상
수시점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		

○ 점검방법

- 정기점검: 시설 및 등급에서 규정한 기일내에 점검을 실시하되 법정검사(완성, 정기,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자율검사)와 병행 실시
- 수시점검: 안전관리상 필요시에 실시하되 취약시설·특별점검(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과 병행 실시

○ 점검내용

- 해당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안전점검결과 사후 조치사항

- 점검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토록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통보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기타 안전조치에 관련된 사항

다. 취약시기 시설 안전점검 및 법정검사 실시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계절적 취약요인 사전점검 실시

[해빙기점검]

· 추진기간: 3월 ~ 4월

· 점검내용: 지반의 부등침하 등으로 위해요인 점검

· 점검대상: 타공사현장, 도시가스공급시설, LP가스저장시설 등

[우기대비점검]

· 추진기간: 6월 ~ 8월

· 점검내용: 집중호우, 침수로 인한 지반손실 등 위해요인 점검

· 점검대상: 도시가스정압기, LPG충전소 등 지하설치 가스공급시설

[동절기점검]

· 추진기간: 11월 ~ 익년 2월

· 점검내용: 가스사용량 급증 및 결빙에 따른 위해요인 점검

· 점검대상: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및 시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가스공급자·사용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 명절·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안전의식 해이 등으로 인한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설날·추석 및 연말연시에 주요 가스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취약시설 점검 실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재난관리시설 등 가스사고에 취약한 가스시설에 대한 사고예방차원의 안전점검 추진

○ 지자체 별 주요 지역문화축제 현장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시공 방법 및 안전관리 표준안 제시 와 안전점검 실시

□ 법정검사 실시

○ 가스시설 부실시공 원천 봉쇄 및 안전유지·보수에 대한 확인 등 법정 완성·정기검사 실시(대전 · 충남 · 세종시 관내 14개 시 · 군 · 구)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조기정착 추진

구분	계	고압가스	LP가스	도시가스	가스용품
시설수	14,690	1,264	8,865	4,546	15

○ LPG판매업소의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이행실태 지도·단속, 부적합 LP가스소비시설 개선 독려 및 우수판매업소 인증 등을 통한 LP가스소비시설의 안전관리 향상 도모

2. 재난대비대책

가. 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

○ 종합상황실 운영

- 평시 상황근무: 주간 1인 이상 상황근무, 야간 본사 통합 운영
- 비상시 상황근무

종 류	내 용	근무인원	비고
비상근무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소속직원의 1/3이상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노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직원의 1/5이상	
비상근무 제3호	가스사고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영향을 끼쳐 상황실 근무자로서 처리가 불가능한 이유	소속직원의 1/6이상	
비상근무 제4호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1/10이상	

○ 사고조사반 운영
- 가스시설에서 발생된 재난에 대한 신속·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 및 2차출동반 구성, 24시간 운영

○ 비상연락체계 구축
- SMS를 통한 직원 비상연락체계 구축(크로샷)
-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도시가스사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가용인력·장비 동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및 조기수습

동 원 인 력		동 원 장 비	
초동출동	총출동	장 비 명	수 량
2명	26명	긴급출동장비 용기검사장비 제품검사장비 시설검사장비 기타	30종 94점

다. 재난대응능력 배양

□ 유관기관과 긴급구조 합동훈련 참여

○ 가스폭발,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 긴급구조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상호공조체계 구축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 및 사고 수습체계 확립
- 회 수 : 합동훈련(연2회 이상) 및 자체훈련(연2회 이상)
- 내 용 :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실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여)

□ 긴급구조요원 교육 참석

○ 교육대상 :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관리자 및 현장 활동요원

○ 교육내용 : 재난대응행정실무,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등

□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지원

○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참여를 통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향상 기여

○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내용

-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지역문화축제현장 안전관리대책 심의
-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

3. 재난대응대책

가. 사고대책본부 구성

○ 사고대책본부의 주요업무

-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점검 등 피해범위 최소화 대책 및 재난의 효율적 수습 지원계획 수립
- 지자체, 유관기관과 연계한 임시가스시설 보급·설치 등

※ 대규모 재난 시에는 본사 단위의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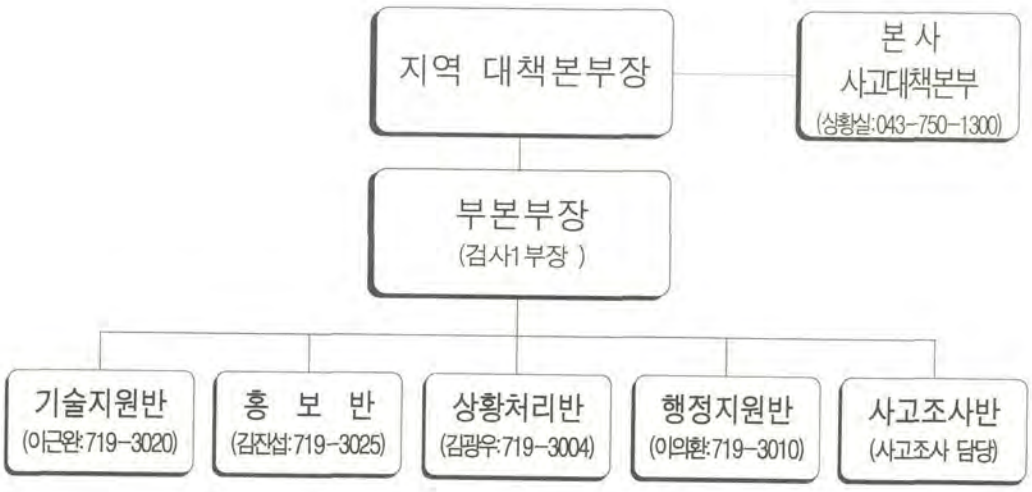

○ 구성 및 반별 주요임무

구분	기술지원반	홍 보 반	상황처리반	행정지원반	사고조사반
주간	○ 정 : 검사2부장 ○ 반원 : 3인 이상	○ 정 : 검사1부장 ○ 반원 : 3인 이상	○ 정 : 검사2부장 ○ 반원 : 3인 이상	○ 정 : 검사1부장 ○ 반원 : 3인 이상	○정: 사고조사담당부장 ○부: 사고조사반장 ○반원 : 3인 이상
야간	○ 정 : 검사1부장 ○ 반원 : 3인 이상	○ 정 : 홍보담당직원 ○ 반원 : 3인 이상	○ 정 : 기술서무직원 ○ 반원 : 3인 이상	○ 정 : 행정서무직원 ○ 반원 : 3인 이상	
주요 임무	○ 대책본부 운영 총괄 ○ 사고대책 기술지원 ○ 응급복구 대책수립	○ 언론보도자료 제공 ○ 대민홍보 관련사항 ○ 방송출연 관련사항	○ 사고상황 파악/작성 ○ 상황 유지/관리 ○ 대외(상급)기관대응	○ 대책본부 인력 동원 ○ 대책본부 물자 동원 ○ 근무자 복리후생지원	○ 사고현장 상황관리 ○ 사고원인/피해 조사 ○ 현장 기술지원
비고	○ 사건의 종류 등에 따라 담당부장과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인력 등 변경 가능 ○ 홍보반과 행정지원반은 정은 검사1부장, 부는 각각 홍보담당, 행정서무 외 2인 이상이 담당함				

나. 재난상황의 접수·전파

○ 상황전파

- 우리공사 본사 및 관할지역 지자체에 재난상황 전파
-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전파

○ 보고구분 :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보고내용

- 재난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역
- 응급조치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

○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 소관시설에 관한 재난발생시 피해상황 기록· 보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다. 가스공급자와 연계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 유지

○ LP가스사용시설: LPG판매업소 등 주요공급자

○ 도시가스시설: 관할 도시가스사

- 충남도시가스(주):042)336-5555, 중부도시가스(주):041)530-1900
  충청에너지서비스(주):043)265-2323

라. 긴급구조 대응 체계 구축

○ 위기대응실무매뉴얼 비치, 교육 등을 통한 대응태세 확립
- 화학유해물질, 풍수해, 지진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분야

○ 가스분야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2차재해 예방 활동 등 긴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 연락관 지정 및 대형재난 발생시 인력파견·지원
- 현장지휘소 운영지원(필요시)
  · 응급조치 후 주변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가스시설 설치계획 수립
  · 재난 발생시설(지역) 시설복구 지원 및 가스안전조치요령 홍보 등

4. 재난복구대책

가. 복구지원 대책 수립

○ 지자체, 가스업계와 연계한 복구지원 예산·물자 확보대책 강구
- 피해규모에 따른 복구지원 예산·물자 확보
  · 특별재난 발생시: 정부 지원계획(국고 및 지방비)에 따라 복구지원
  · 소규모 재난 발생시: 공사예산 및 가스공급자·용품제조사 지원 범위 내에서 복구지원

○ 긴급구조기관 현장지휘소 설치 시 연락관 파견
- 피해시설 점검(진단) 및 주변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가스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필요한 인원·장비·물자 등 조달·배치

나. 피해현장 복구 추진

○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본 복구활동 추진
- 제1순위 : 공공기관 등 필수시설
- 제2순위 : 이재민수용시설, 병원, 기간 산업시설 등 주요시설
- 제3순위 : 주거시설, 일반산업시설

○ 피해규모에 따른 현장 복구 실시

- 특정제조, LPG충전소 등 대형가스시설은 본사 차원으로 항구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제공
- 소규모가스시설은 지역별로 현장복구 인력·장비 지원
  · 시설복구반: 우리공사, 가스공급자 인력으로 편성(2인1조)
  · 용품수리반: 우리공사, 가스기기제조자 A/S인력으로 편성

○ 복구지원반 주요업무

- 시설복구반 : 가스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점검 및 기술지원, 가스안전사용요령 교육, 홍보물 배포 및 배관고정 등 가스시설 수리·보수
- 용품수리반 : 가스용품 A/S 및 부품교체 등

제2절. 풍수해 대책

1. 예방대책

□ 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매년 6월 ~ 7월

○ 점검대상

-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및 연약지반 내 설치된 가스시설
- 도시가스배관, LPG충전시설 등 지하설치 가스시설 등

○ 점검방법: 정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 업체별 자체점검, 공사단독 점검 등

□ 수해 시 긴급대응요령 현장교육 실시

○ 가스안전관리자 및 가스사용자

□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가스시설 안전관리 요령 홍보

○ TV, 라디오 및 아파트 구내방송, 지자체 소식지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

○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추진

- LPG충전시설 등 대형시설 및 재래시장 등 취약시설 등에 대해 사업자, 사용자와 공동안전관리 활동 전개

○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 행사 추진

- 지자체, 가스공급자 등과 합동으로 매월 4일 『가스안전 점검의날』 행사를 개최, 자율안전관리 정착 도모

○ 방재의 날 행사 추진

-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관련행사 실시
- 시기: 매년 5월 25일 전후

2. 대비대책

가. 유관기관 협조·지원체제 구축

○ 긴급점검 및 복구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재난발생시 체계적·효율적인 긴급복구를 위해 가스관련 업계와 긴급복구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

> ※ 구 성
> 한국LP가스산업협회 대전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대전협회, 충남도시가스(주), 중부도시가스(주) 등

- 피해규모에 따라 협조·지원범위 등 복구지원대책 등 협의

~~ 이하는 가스재난대책과 동일 ~~

3. 대응·복구대책

- 이하는 가스재난대책과 동일 -

제3절. 지진대책

1. 대비(예방)대책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과 연계한 대응태세 유지

○ 핫라인, 유선 및 크로샷(SMS)를 통해 지진발생지역 인근 지역본부 및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 LPG충전시설 등)에 수신내용 통보

○ 재난상황 파악·유지

구 분	상황실 근무인원	상황파악 및 보고	비 고
본 사	○근무인원은 비상시 상황근무체계와 동일	○지역본부, 재해대책본부를 통한 피해·조치상황 파악 ○TV 등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상황파악	주요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지역본부 (지사)	○근무인원은 비상시 상황근무체계와 동일	○본사보고 - 일일 및 수시보고	〃

□ 재난대비훈련·교육 실시

○ 재난대비 합동훈련 추진

- 지진대비, 긴급구조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상호공조체계 구축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 및 사고수습체계 확립

· 회 수 : 합동훈련(연2회 이상) 및 자체훈련(필요시)

· 내 용 :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실시

2. 대응 · 복구대책 : 가스재난대책과 동일

24. kT 충남고객본부

1. 목 적

○ 자연/사회적 재난 및 대형장애로 인한 서비스 피해 사전 예방

○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 복구로 통신서비스 피해 최소화

2. 통신재난유형

○ 자연재난(재해) : 태풍, 홍수, 호우, 낙뢰, 폭설, 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통신 피해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사고 등의 피해 및 통신 등 국가기반 체계 마비

○ 대형장애 : 통신시설 물리적/기능적 결함(고장 등)으로 서비스 장애

3. 통신재난대비 위기대응 사전 준비

구분	주요내용
풍수해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지진.지진해일	지진.지진해일 발생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통신구/공동구	통신구/공동구 재해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호폭주	설비 여유율을 초과하는 호폭주 발생에 의한 통신장애
대규모 정전	대규모 정전(Black Out)대비 단계별 안정운용대책

○ 통신시설 재난대응체계 실무매뉴얼, 현장매뉴얼 보완 / 현행화

○ 시설물 보호.점검 : 건축물, 통신구 33개소

○ 취약시기별 통신시설 안전점검 : 통신구 227개소, 공동구 21개소, 건물 및 구축물 : 3,384개소

○ 주요통신망 안전성 확보 : 주요기간망 이원화 등, 사각지대 대책 강구 등

○ 통신재난대비 신속한 복구 능력향상 : 모의훈련, 재난대비 안전교육 등

4. 통신재난 대응·복구체제 확립

□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1) 목 적

○ 재난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장애시 전사적인 사항이므로 관련부서 간 사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체제를 확립 하고자 함.

(2) 조직구성도



(3) 부서별 임무

구 분	소관부서	임무
종합상황반	• 네트워크관제센터(관제계획팀 등)	• 대책본부 조직운용 및 상황실 운영, 피해 및 복구상황 종합보고 • 재해정보 수집 및 예방대책수립총괄, 재해관련기관 직원파견 조치 등
통신복구반	• 네트워크전략본부,(소관담당) • 네트워크운용본부(소관담당) • 현장기술지원단(소관담당)	• 통신시설 투자/운용 관련 긴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 • 분야별 상황파악 및 현장복구 지휘/통제망 구성 통신지원 • 피해복구 종합대책(물자, 인력 등) 수립 및 복구 지원반 운영 등
	• 지역 고객본부 • 네트워크운용본부	• 긴급 복구팀 편성/운영 및 피해상황 보고, 피해시설 가복구 • 지자체 인력지원, 정보공유 및 이재민 대피소 고객지원(무료전화 등)
건물복구반	• 재무실 투자사업담당 • kt estate, 지역자산센터	• 건물 피해현황 조사, 건물 안전진단, 건물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
물자조달반	• 구매협력실(구매지원센터 지역LC)	• 복구소요자재 조달 및 지원
고객지원반	• Custemer기획본부 • 기업고객본부 • 공공고객본부	• 고객서비스 피해시설 파악 및 불편 최소화 조치, 민원대응(고객센터) • 개통/복구 가능인력 및 협력사 투입 고객피해시설 복구
안전관리반	•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 재해/재난시 인력관리 : 복지후생, 산재업무 처리 • 산업안전 재해예방 Safety 메시지 운영.발송 등
예산지원반	• 재무실 가치경영담당, 투자사업담당 • 네트워크전략본부 네트워크전략담당	• 피해지역 자금지원 계획 수립 : 피해지역 통신시설, 건물복구비 등 • 피해지역의 재해복구비(통신시설 등) 지원
언론대응 홍보반	• 홍보실 (소관 담당)	• 언론 보도자료 제공, 언론기관 현장취재 및 보도 대응 • 재난피해 복구상황 대외협력 및 공조(정부 및 대외기관) 등
우회소통반	• 네트워크관제센터(소관 팀)	• 통신소통상태 파악 및 폭주해소대책, 긴급소통 종합대책 수립 • 통신서비스별 (무선, 유선 등) 우회소통 종합대책 시행

□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복구 우선순위

우선순위	세 부 내 용
1순위	ㅇ국가안보(국가지도, 경호, 정보) 통신 및 긴급구조기관 통신
	ㅇ군사 및 치안통신, 민방위전달 경보통신, 전파관리통신
	ㅇ금융 및 증권업체 전산망
	ㅇ기관장이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고객의 통신
2순위	ㅇ공중통신, 항해안전, 기상, 전력, 수송관리, 언론기관
	ㅇ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신
	ㅇ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 연합기관 통신
3순위	ㅇ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 통신
	ㅇ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 통신

□ 정부기관 통신시설 지정관리

구분	시설	관련법(령)	대응총괄(관리주체)	정부관련지침(사내)
중요통신시설 (미래부)	3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네트워크관제센터 (운용시설관리책임자)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국가기반시설 (국민안전처/미래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네트워크관제센터 (시설관리책임자)	없음
국가보안목표시설 (국정원/미래부)	20	보안업무규정 통합 방위법 대통령 훈령 제28호	경영지원실 (사옥관리책임자)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보안업무규정(보안매뉴얼)
국가중요시설 (국방부/경찰청)	20	보안업무규정 통합 방위법 대통령 훈령 제28호	경영지원실 (사옥관리책임자)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 보안업무규정(보안매뉴얼)
건축1,2종시설물 (국토교통부)	18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무실, Kt estate (지역자산센터)	사옥관리지침

※ 중요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통신시설 조사결과 미래부 통보
※ 지정, 해제, 등급 조정은 미래부 심의, 확정 승인을 받아 결정

5. 재해/재난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분야	담 당			업무분장	연락처
	소 속	호 칭	성 명		
총괄	충남고객본부 CS 운영부 CS 품질개선팀	과장	박종혁	재난관련 총괄담당	010-3456-1312
선로	충남고객본부 CS 운영부 선로시설팀	과장	김용재	선로분야 지원총괄	042-478-7793 (010-3452-7511)
전용	충남고객본부 CS 운영부 CS 품질개선팀	과장	송윤향	전용분야 지원총괄	010-2778-3000
개통/AS	충남고객본부 CS 지원부 CS 품질개선팀	과장	이성복	개통 AS 분야 지원총괄	010-3450-3396
전송	충청네트워크운용본부 운용계획부	차장	이승우	기술분야 지원총괄	042-478-7063 (010-6750-8672)
무선	충청네트워크운용본부 충청엔지니어링센터 무선시설팀	과장	신창수	무선분야 지원담당	010-7254-1189

6.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1) 운영 체계

○ 평상시 : 네트워크관제센터(과천)24 시간 운영[KT 종합상황실 기능수행]

- 지역/현업기관은 집중운용센터에서 수합 → 네트워크관제센터 총괄

○ 상황발생시 : 규모에 따라 본부(전국) 및 재난대책 지역상황실 구성, 운영

- 재해대책 기간 중(매년 6.15 ~ 10.15)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통신시설 피해발생 예측시
- 국가비상사태, 화재, 테러 등으로 재난발생시
- 연말연시 및 연휴기간(설, 추석 등) 특별소통대책 시
- 전국규모의 주요 행사통신 지원 시
- 기타 시설피해발생시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2) 상황근무 체제(위기대응 단계별 상황관리 기준)

보수준	판단기준	조치사항
관심(Blue)	ㅇ기상특보(주의보) 발령 ㅇ이상징후 포착 등	ㅇ대상지역 상황실 운영 ㅇ실시간 상황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
주의(Yellow)	ㅇ재해/재난 리스크 예상시 ㅇ기상특보(주의보 또는 경보) 발표시 ㅇ 24 시간 이내 태풍내습 예측시 ※ 재해대책기간(6.15~10.15) 상시	ㅇ종합/지역상황실 운영 ㅇ네트워크관제 활동 강화 - 대상지역 감시 강화 ㅇ협조체계 가동
경계(Orange)	ㅇ재해/재난으로 일부 통신서비스 기능저하 발생시 ㅇ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통신시설 장애발생시	ㅇ종합/지역상황실을 재난대책본부로 전환,운영 - 근무인원 편성 및 관련 부서 연락체계 유지 ㅇ지역별,서비스별 소통계획 수립 및 시행 - 통신 고립지역, 소통상태 파악 - 긴급 우회소통, 전송로 절체 등
심각(Red)	ㅇ전국 규모의 통신시설피해 발생시 ㅇ발전소 고장 등 전력수급 문제로 전국적 통신시설 전원장애 발생시	ㅇ재난대책본부 운영 확대 - 홍보, 대외 등 관련 실/본부 합동근무 ㅇ기본 통신서비스 우선 긴급복구 시행 - 긴급복구 자원(장비/인력) 투입 ㅇ즉각 대응태세 돌입

25.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

1. 재난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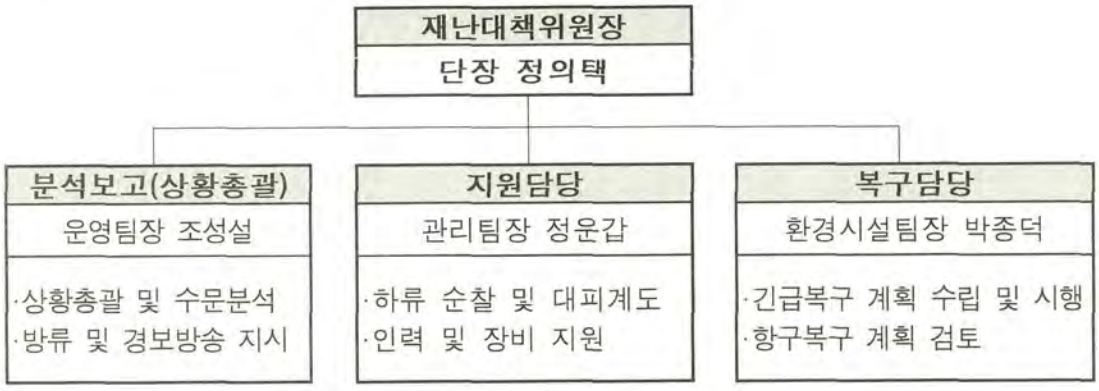

2. 주요재난유형

- 풍수해, 가뭄, 지진, 시설사고(누수, 사면붕괴), 수질사고, 설비사고(수문 작동불능)

3.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풍수해, 가뭄	운영팀	차장	강권수	비상소집, 응급복구, 운영계획 수립 등	042 930 7211
		과장	정창식		042 930 7212
지 진 시설사고 (누수, 사면붕괴)		차장	권준호	비상소집, 응급복구, 보강계획 수립 등	042 930 7213
		과장	민경록		042 930 7214
		대리	전경진		042 930 7219
수질사고		차장	송호영	비상소집, 오염원 제거, 수질개선계획 수립 등	042 930 7215
		대리	박별님		042 930 7216
설비사고 (수문 작동불능)	환경 시설팀	차장	이붕용	(발전) 응급복구, 개선계획 수립 등	042 930 7221
		차장	황진열		042 930 7222
		차장	곽해춘	(설비) 응급복구, 개선계획 수립 등	042 930 7233
		과장	박성순		042 930 7234

4. 재난관리 대책(조직 구성 및 임무)

구 분		책임자	부서	주요임무
비상대책반	비상대책반장	단장	-	- 사고대응 Control Tower 역할수행
	상황반	운영팀장	운영과 환경과	- 재난대응 상황 총괄
				- 상황보고 및 전파
				- 재난대책근무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 비상연락망 운영, 피해상황 수집 및 보고
				- 수문자료 수집
				- 저수지 운영 분석 및 홍수조절 의사결정
				- 유관기관 정보교환
	복구반	환경시설 팀장	전기설비과 기계설비과 시설과 통신과	- 발전설비 점검 및 응급복구
				- 수문설비 점검 및 응급복구
				- 통신설비 점검 및 응급복구
				- 실시간수문자료시스템 유지관리
	지원반	관리팀장	경영과 고객지원과	-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언론보도 현황 분석
				- 필요시, 상황반 및 복구반 지원
				- 현장순찰

26. 한국수자원공사보령권관리단

1. 보령권 관리단 임무

(1) 충남 서부지역의 3개시 5개군 및 2개 화력발전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댐 하류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댐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홍수조절용량 10백만톤)

(3)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4)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21개소 및 장항하수처리장 운영관리

2. 일반현황

가. 송수관로 현황

□ 관로 총연장 : 194km

구 간	도수관로	서천관로	홍성관로	서산관로	대산관로	예산관로	청양관로	한전우선시행관로	
								당진관로	태안관로
위 치	보령댐~정수장	정수장~서천관말	정수장~홍성(가)	홍성(가)~서산(가)	서산(가)~대산관말	홍성(가)~예산관말	청양분기~청양관말	서산(가)~당진관말	서산(가)~태안관말
거 리	1,768m	12,166m	38,680m	39,990m	1,023m	17,022m	27,941m	21,157m	22,236m
관 경	1650mm ~ 2500mm	600mm ~ 500mm	1650mm ~ 1500m	1350mm ~ 1100m	700mm	600mm ~ 500mm	450mm ~ 200mm	800mm	800mm
관종류	SP	DCIP	SP	SP	SP	DCIP	DCIP	SP	SP

나.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체제 구축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No	기 관 명	전화번호	fax 번호	비 고
1	금강홍수통제소	042-851-0510	041-853-1078	중앙정부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치수)	042)670-3311~8	042-670-3487	
3	충청남도재대본(상황실)	042)220-3648 042)220-3655	042-220-3649	지자체
4	보령시(재난안전과 치수담당)	041-930-3864	041-930-3667	
5	서천군(재난안전과)	041-950-4491	041-950-4696	
6	서면	041-950-6564	041-950-6579	
7	웅천읍	041-933-2301	041-930-3713	
8	주산면	041-933-6301	041-930-3721	
9	한국농어촌공사 부사방조제(남포지소)	041-933-2114	041-936-3927	유관기관
10	한국철도공사 시설팀	041-629-2471~2	041-551-6533	
11	보령소방서 상황실	041-930-0421~4	041-930-0429	
12	웅천119안전센터	041-933-2119	041-932-5119	
13	보령경찰서(상황실)	041-933-1236	041-932-1121	
14	제8361대대	041-934-1113(교환대) 041-936-8301(지통실)	041-932-6115	
15	대전 KBS(안내)	042)470-7400	042-470-7199	보도기관
16	대전 MBC(보도국)	042)330-3414	042-330-3703	
17	대전 TJB(제보)	042)281-1261	042-285-8822	

3. 유형별·단계별 대책

초동대응절차

	구분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현장관리단장	보고	국토부 보고	국토부 보고	국토부 보고	국토부 보고
	①	초동전파 (지자체 및 유관기관) * SMS, 유선	자체 위기수준 보고 위기경보 전파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 (지자체, 유관기관) * SMS, FAX, 유선	-
	②	-	-	비상용수공급방안 검토 착수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준비 사고 예상파급영향 분석 비상용수공급방안 검토
	③	비상소집발령	비상대책반(현장) 운영	비상대책본부(본사) 운영	-
	④	-	-	현장 긴급출동	-

유형 : 식용수	실무기관 : K-water	관리번호 : 01
관련 매뉴얼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K-water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식용수분야 대응 표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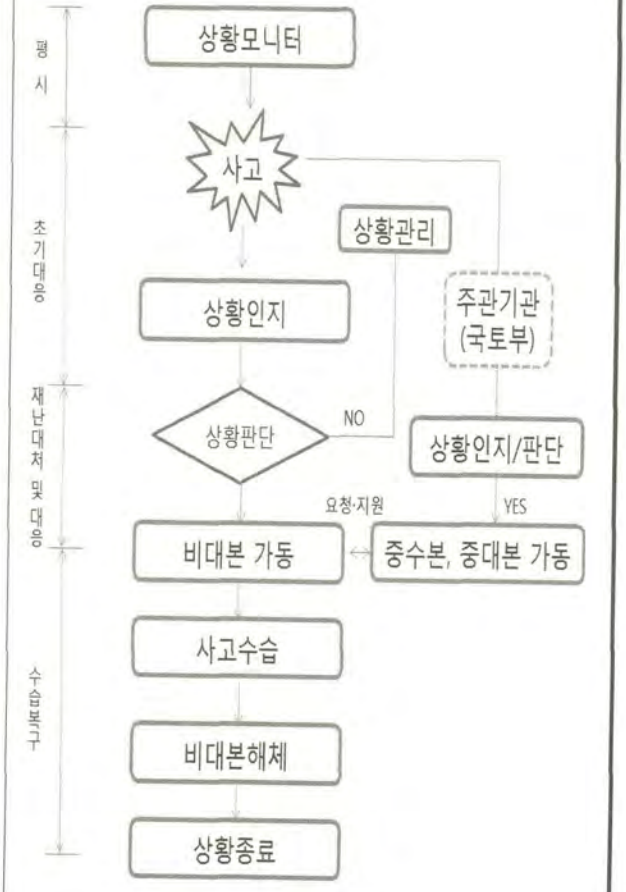

유형 : 댐붕괴	주관부서 : 물관리센터(홍수) 댐유역관리처(지진)	관리번호 : 02
관련 매뉴얼	○「댐붕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 국토부, 산자부	○「댐붕괴」대응 실무매뉴얼 : 국토부, 산자부, 수자원공사,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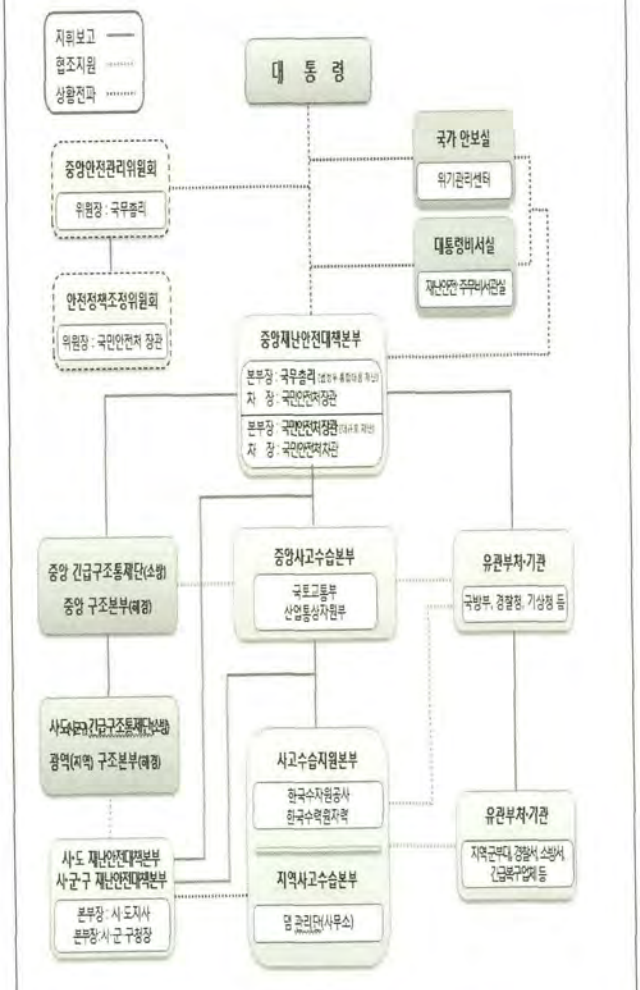

댐붕괴 대응 표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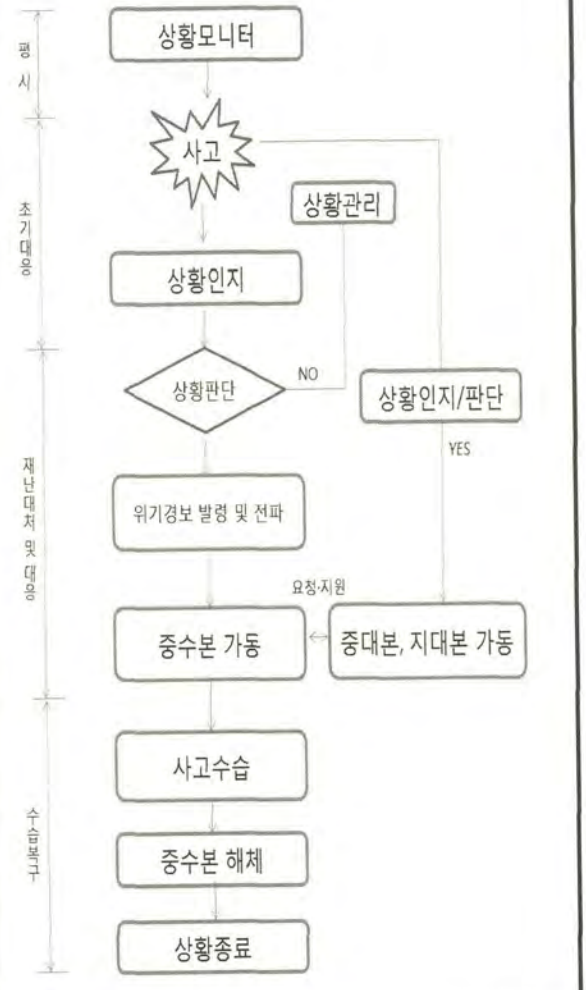

구분	중 점 사 항
예방	■ 실시간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보고 시스템 구축 ■ 위기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시행 ■ 위기 관리 활동 단계별 위기관리 능력 강화 ■ 위기 발생 사전 억제 및 차단 활동 강화
대비	■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공유체제 점검 ■ 수질이상/오염 경보 시스템 운영 체계 점검 ■ 시설/설비 파괴 방지를 위한 경비체계 점검 ■ 해킹/바이러스 침투/전산 장애 등에 대한 대비 조치 ■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조정 대화협의체 준비 ■ 위기상황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 준비 상태 확인
대응	■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신속한 대응 조치 및 응급복구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및 상황 전파 ■ 매뉴얼에 의거 위기 유형별 대응 절차 적용 ■ 시스템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보호 및 경비 ■ 대체자원 운용 및 비상/대체급수 지원
복구	■ 각종 시스템을 위기발생 전 상태로 복원 ■ 위기 상황별 복구체계 신속 가동 및 복구 활동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 및 보완

첨부1 댐 홍수예경보 전달계통도

□ 보령권관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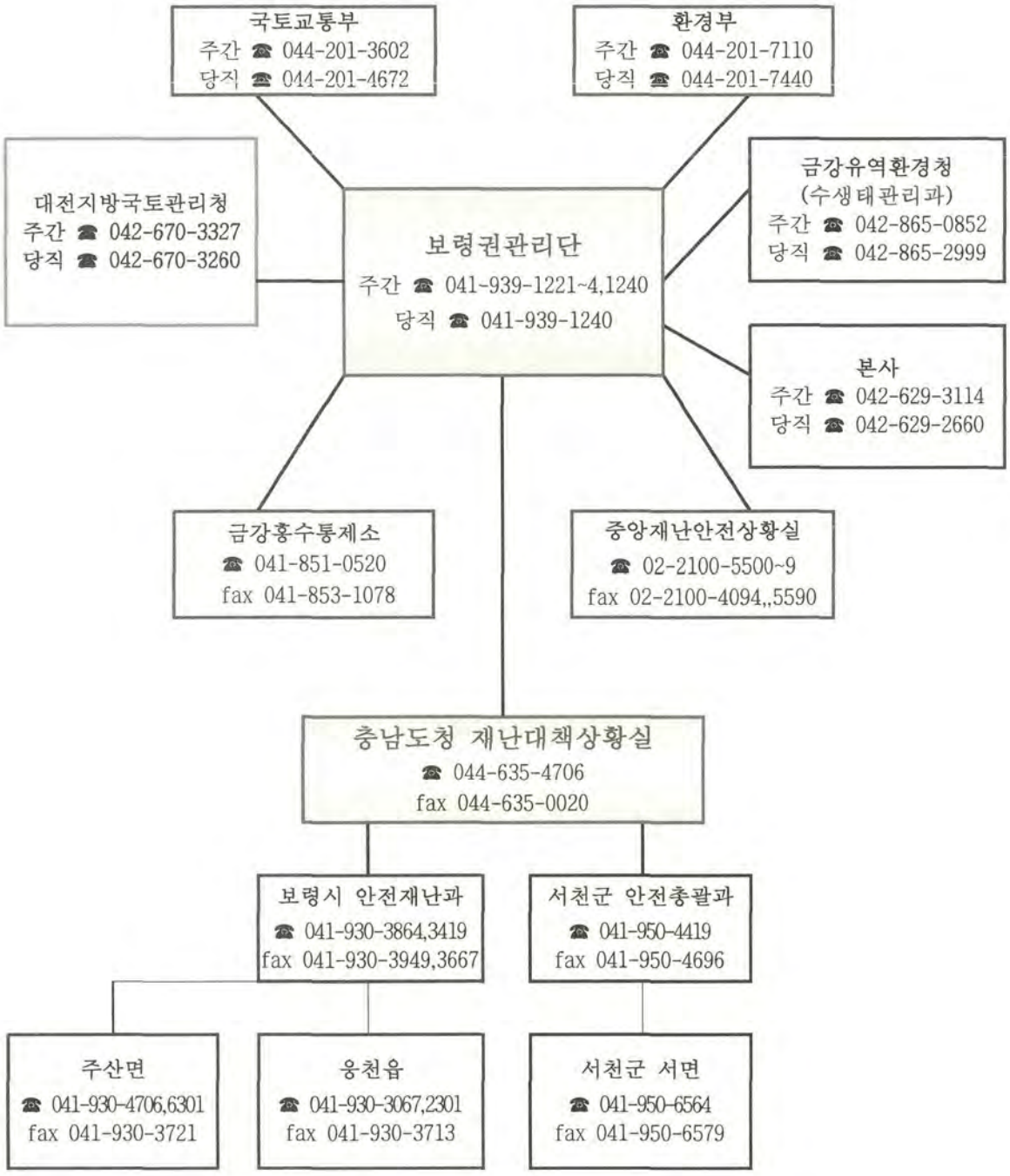

첨부2 관할 지역 및 비축자재 장비현황

□ 관할지역 현황

부 서 명	관 할 지 역
보령권관리단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 지역별 공급현황

수 용 가	일평균 공급량(㎥/일)	
	2013년	2014년
서 산 시	48,171	50,100
태 안 군	20,514	20,700
태안화력	18,136	18,200
당 진 시	16,768	16,800
당진화력	11,532	11,300
보 령 시	28,941	29,100
홍 성 군	29,103	31,700
서 천 군	11,254	11,300
예 산 군	5,371	5,200
청 양 군	3,358	3,400
총 계	193,148	197,800

□ 비축자재 및 장비 보유현황

구 분	P.P마대 (포)	비 닐 (롤)	말 목 (본)	모래주머니 (개)	삽 (정)	괭 이 (정)	발전기 (대)	펌 프 (대)	양수기 (대)
보 령 권	0	0	0	0	5	5	2	0	4

□ 급수 차량 및 급수탱크

구 분	연락처	급수차량(대)	급수탱크(개)	비 고
보 령 권	041-939-1211	1(1t)	-	

□ 수도관 예비자재

(단위 : 본)

구 분	직 관	이형관	밸 브	이음관
보 령 권	-	-	4	7

첨부3 비상연락망

□ 보령권관리단 (댐 하류 주민대표)

구 분	침수예상지역	연락기관			
		소속	성명	전화번호	비 고
주민대표	화평리	화평1리	백운호	010-3428-0941	
		화령2리	김진옥	011-464-6520	
	노천리	노천1리	김복기	010-9052-6921	
		노천2리	이병엽	011-209-4608	
	성동리	성동1리	오병양	011-672-5017	
		성동2리	임수재	011-249-3809	
		성동3리	임완빈	011-9650-1601	
		대천1리	이태영	010-9560-5252	
		대천2리	주현민	010-2420-5577	
		대창1리	김한철	011-406-2271	
		대창2리	이봉춘	010-4343-2189	
		대창3리	김명열	010-8486-2612	
		대창4리	황무성	011-394-6089	
		대창5리	최대규	011-5447-3450	
		대창6리	황정연	011-434-7224	
		대창7리	강흥구	010-5435-2377	
		대창8리	정봉영	010-5425-2259	
		대창9리	이효복	010-3917-1187	
	동오리	동오 1리	강세구	010-5504-6476	
		동오 2리	이종천	010-7367-4886	
유관기관	경작지	농촌공사 부사방조제	이관희	010-3294-4285	

□ 보령권관리단 (수용가)

기관명			일계약량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보령시			25700	수도사업소	김용문	041-930-3020	
서산시			49710	수도과	안종훈	041-660-3366	
서천군			11100	맑은물사업소	홍경숙	041-950-6806	
예산군			4580	상하수도사업소	이상민	041-339-8314	
태안군			20800	상하수도사업소	이길진	041-670-2536	
홍성군			21200	환경수도과	임호빈	041-630-9714	
청양군			2452	환경보호과	이문규	041-940-2527	
당진시	농어촌공사		500	상하수도사업소	안병환	041-360-6470	중복제외 (아산권)
	석문국가산단		323	상하수도사업소	안병환	041-360-6470	중복제외 (아산권)
	행정배수지		13000	상하수도사업소	안병환	041-360-6470	중복제외 (아산권)
	교로3리		400	급수조합	강병학	010-4038-1429	
	삼봉4리		400	급수조합	김영배	041-353-0707	
	용두리		40	급수조합	이재순	010-8973-8049	
	초락도리		150	급수조합	홍동표	010-2684-0835	
	통정리		110	급수조합	심현종	011-218-9069	
	한국제분		150	상하수도사업소	안병환	041-360-6470	중복제외 (아산권)
	교로2리	교로2리	130	급수조합	이진섭	010-5473-0765	
		왜목마을	130	급수조합	이진섭	010-5473-0765	중복제외 (교로2리)
	삼봉1리		70	상하수도사업소	안병환	041-360-6470	중복제외 (아산권)
	공설운동장		80	상하수도사업소	안병환	041-360-6470	중복제외 (아산권)
	산내들아파트		130	상하수도사업소	안병환	041-360-6470	중복제외 (아산권)
한국동서발전사택			100	상하수도사업소	이기풍	010-8762-5207	제외 (공공기관)
한국동서발전(주)			9500	화학팀	이민구	070-5000-2642	제외 (공공기관)
한국서부발전(주)			17000	기술화공팀	이욱	070-5007-3556	제외 (공공기관)
현대도시개발(주)			300	기술지원팀	김태헌	041-674-6042	
한국중부발전(주)			500	공사관리팀	서영학	070-7511-8161	제외 (공공기관)

27. 한국도로공사대전충남본부

Ⅰ. 재난관리 개 요

1. 목 적

고속도로 상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한국도로공사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법적근거

가. 작성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
○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 및 공사 위기대응 매뉴얼
○ 위기대응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나. 적용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다. 적용범위

○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한국도로공사 부서별 대비.대응 활동에 적용
○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 적용

3. 고속도로 재난 유형

구분		재난의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자 연 재 난		태풍.호우	도로, 구조물	비탈면 붕괴, 터널.교량 붕괴, 도로유실 등
		대 설	도 로	교통제한, 교통사고 등
		지 진	도로, 구조물	터널, 교량, 비탈면, 도로파괴 등
			건 물	사옥, 휴게소, 주유소, 영업소 등
		안 개	도 로	교통제한, 교통사고 등
사 회 재 난	인적 재난	화 재	비탈면	산불
			터 널	터널 내부
			교 량	교량 상하부
			건 물	사옥, 휴게소, 영업소
			도 로	차량화재
		교통사고	도 로 터 널	버스, 대형차량 사고 등 유류, 유해화학물 유출 등
		붕괴.폭발 (테 러)	도 로	차량폭발
			구조물	교량, 터널 등의 폭발.붕괴
			건 물	휴게소, 영업소, 사옥 등의 폭발.붕괴
		건 설 현장사고	건설현장	시공중 붕괴, 낙반 등
		사이버테러	통신시스템	통신마비
		해외재난	인 명	대상국가 위험(부도,전쟁 등)에 따른 파견 직원 사고 및 대상사업 철수
	국가 기반 시설	화재.테러 통신시스템	건 물	화재, 테러 등으로 인한 재난지휘 업무 마비

II. 조직 및 체계

1. 기본방향

목 적

자연 및 인적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고속도로 기능유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본 방침

◎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 사고 발생시 피해상황 신속파악 및 전파
◎ 재난대책 인원.장비 동원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관리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작업 시행
◎ 영업 및 홍보대책 수립
◎ 대외기관 협조체제 구축



고속도로의 기능유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재난대책기구

가. 재난대책기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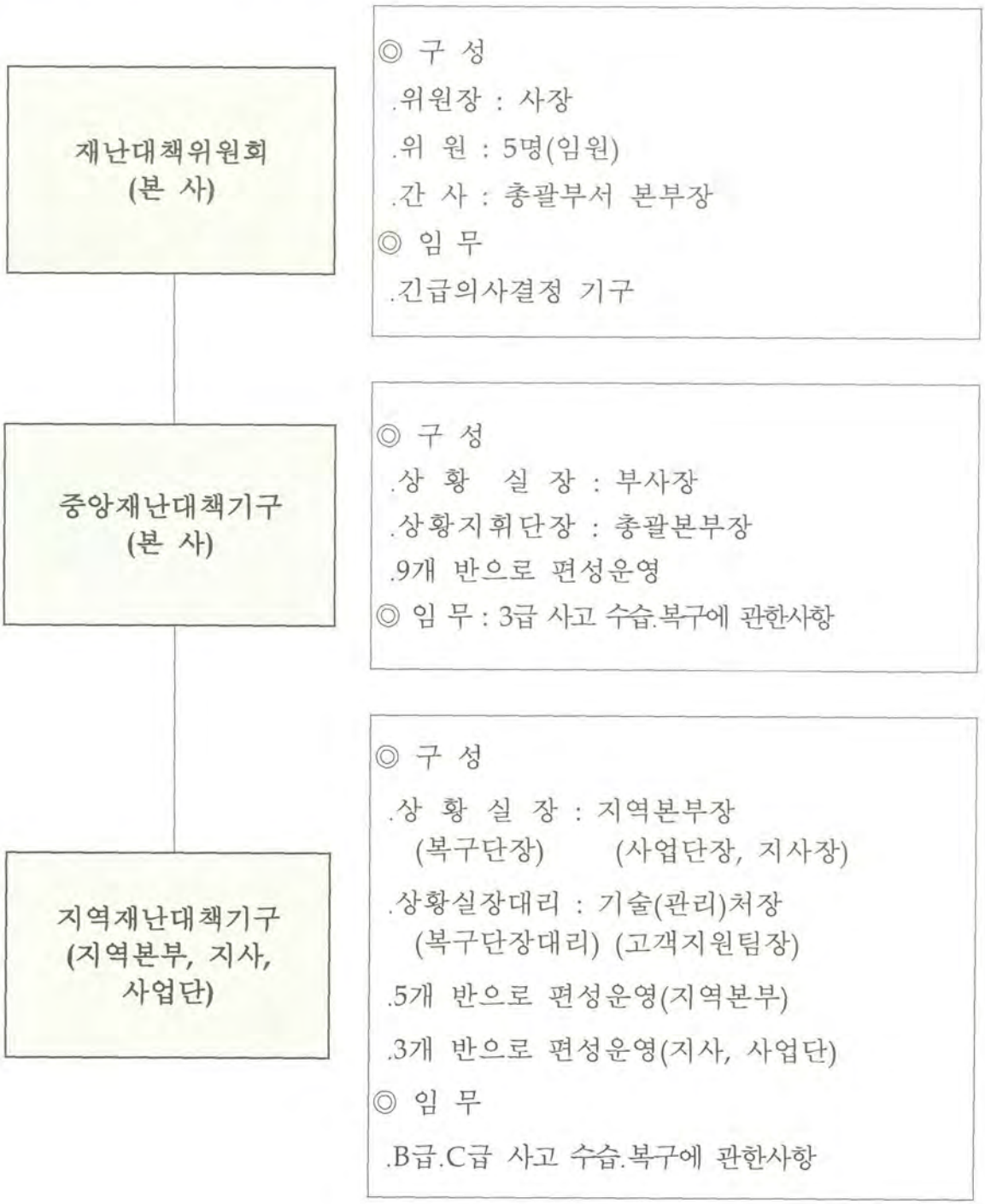

나. 재난대책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o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고피해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음

o 운영장소 : 본사 및 산하기관 재난대책상황실

o 사고의 범위

고속도로 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회사차원의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

등급	피해 범위		조치사항
A급	인명	.20명 이상 사고 (사망자 포함)	- **본사차원의 사고수습.복구 추진** **(중앙 및 지역재난대책기구 설치 운영)** - 중앙재난상황실장의 현장지휘로 긴급구조 활동 전개 -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 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
	교통 통제	.일방향 8시간 이상, 양방향 4시간 이상 전면통제 예상시	
B급	인명	.10~20명 미만 사고 (사망자 포함)	- **지역본부 차원의 사고 수습.복구 추진** **(지역재난대책기구 설치 운영)** - **본사 : "경계"단계 운영** - 지역본부 지역재난상황실장의 현장지휘로 긴급 구조활동 전개 - 지역본부 지역재난상황실장은 필요 시 중앙재난대책기구 설치 건의
	교통 통제	.일방향 4시간 이상, 양방향 2시간 이상 전면통제 예상시	
C급	인명	.10명 미만 사고 (사망자 포함)	- **지사, 건설사업단 차원의 사고수습.복구** **(지역재난대책기구 설치 운영)** - **지역본부 : "경계"단계 운영** - 자체 기관장의 현장지휘로 긴급 구조활동 전개
	교통 통제	.일방향 4시간 미만, 양방향 2시간 미만 전면통제 예상시	

※ 1) 피해규모가 적을 경우 재난상황실 구성.운영없이 본사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사고 수습.종결 후 총괄부서에 처리결과 보고

2) 터널사고의 경우(인명피해) : 1급 10명 미만, 2급 15명 미만, 3급 15명 이상의 사망자

다. 조직도(지역본부)

o 체 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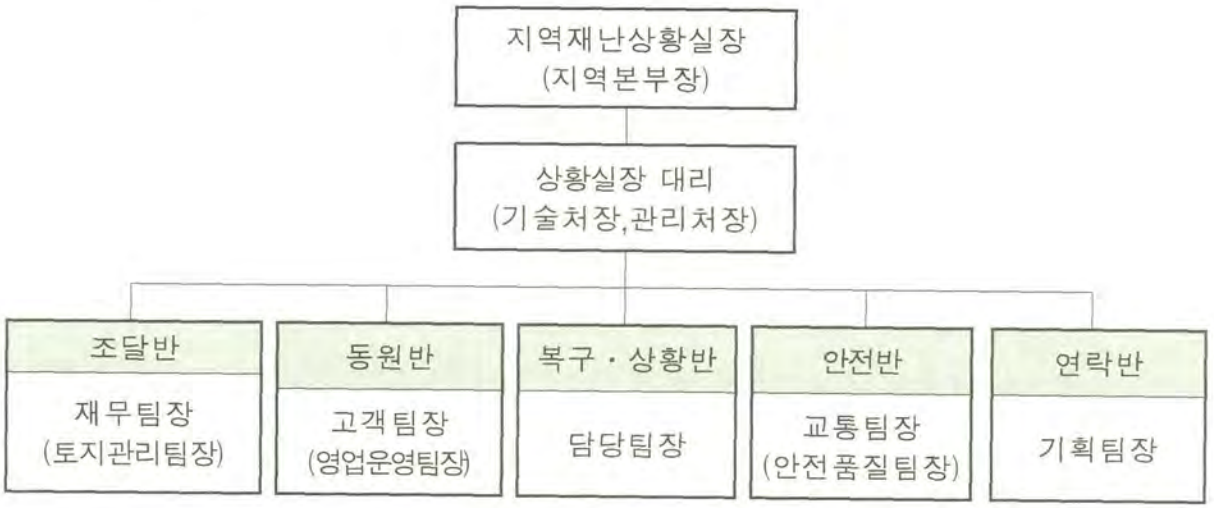

o 임 무

구 분	책 임 자	임 무
지역재난상황실장	지역본부장	· 사고대책 업무 총괄지휘
상황실장 대리	기술처장 (관리처장)	· 사고처리 및 복구작업 지휘·감독 · 피해, 복구상황파악 및 보고
조 달 반	재무팀장 (토지관리팀장)	· 자재조달 및 자금조치에 관한 사항
동 원 반	고객팀장 (영업운영팀장)	· 인원 및 장비 동원 · 대내외 홍보관련 사항 총괄 · 사상자 구호 및 구호물품 분배 주관 · 통행료 업무에 관련된 사항
복구·상황반	도로팀장	· 재해·재난 관련 사고대책 관장
	구조물팀장	· 구조물공사 인적재난 사고 대책 관장
	시설팀장	· 건축, 시설공사 인적재난 사고 대책 관장
	기획팀장	· 지역본부, 지사의 화재 및 폭발 등 각종 인적재난 사고대책 관장
	영업운영팀장	· 영업소 인적재난 사고 대책 관장
	고객팀장	· 휴게시설 인적재난 사고 대책 관장
안 전 반	교통팀장 (안전품질팀장)	·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 (교통제한 및 우회 등) · 사고 복구작업에 따른 장비 동원 · 안전사고 대책 수립 및 조치
연 락 반	기획팀장	· 안전반 지원(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견인 등)

III. 위기경보체계와 비상근무 시행

가. 위기경보체계

구 분	내 용	비 고
관 심 (Blue)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주 의 (Yellow)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경 계 (Orange)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 각 (Red)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나. 비상근무기간

o 풍 수 해 : 당해연도 5월 15일 ~ 동년 10월 15일(5개월간)

o 설 해 : 당해연도 11월 15일 ~ 익년 3월 15일(4개월간)

o 안개대비 : 당해연도 3월 15일 ~ 동년 5월 15일(3개월간)

다. 비상근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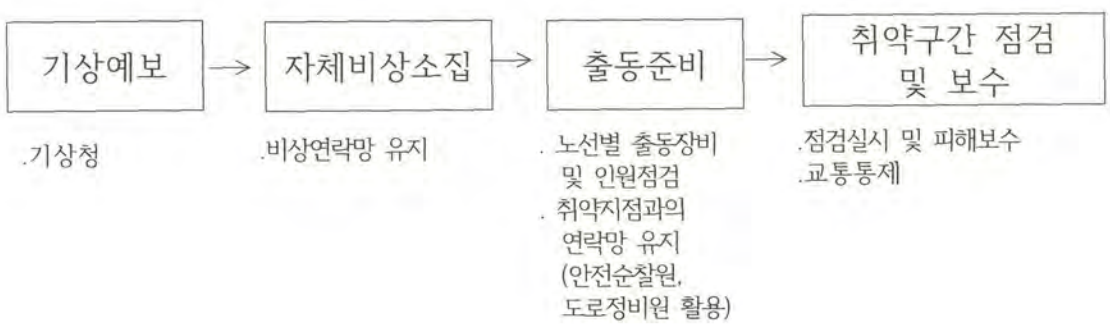

2. 사고접수 및 상황전파

Ⅰ. 사고발견자가 신고한 상황을 접수한다.

◈ 신고를 받은 지사는 즉시 지역본부로, 지역본부는 본사로 보고한다.

◈ 사업단의 경우는 즉시 본사로 신속하게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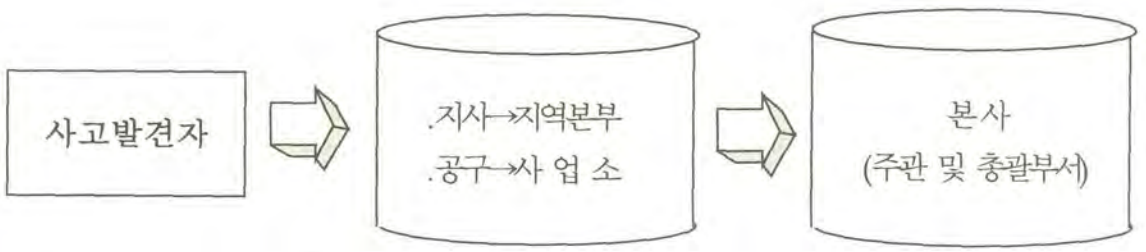

신고접수 요령

◎ 신고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정, 방향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출동시 가장 빠르게 도달 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확인한다.

◎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상황(교통상황, 피해규모, 응급조치 할 사항 등)을 정중하게 문의 후 간결.명료하게 기재한다.

Ⅱ. 지휘체계를 통한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단체에 통보한다.

◈ 지사, 지역본부, 사업단에서는 자체보고 및 경찰서.소방서 등 긴급 구난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본사 및 유관기관에 보고(통보)하며, 즉시 사고범위에 따라 재난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 현장상황 및 영상확보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한다.

3.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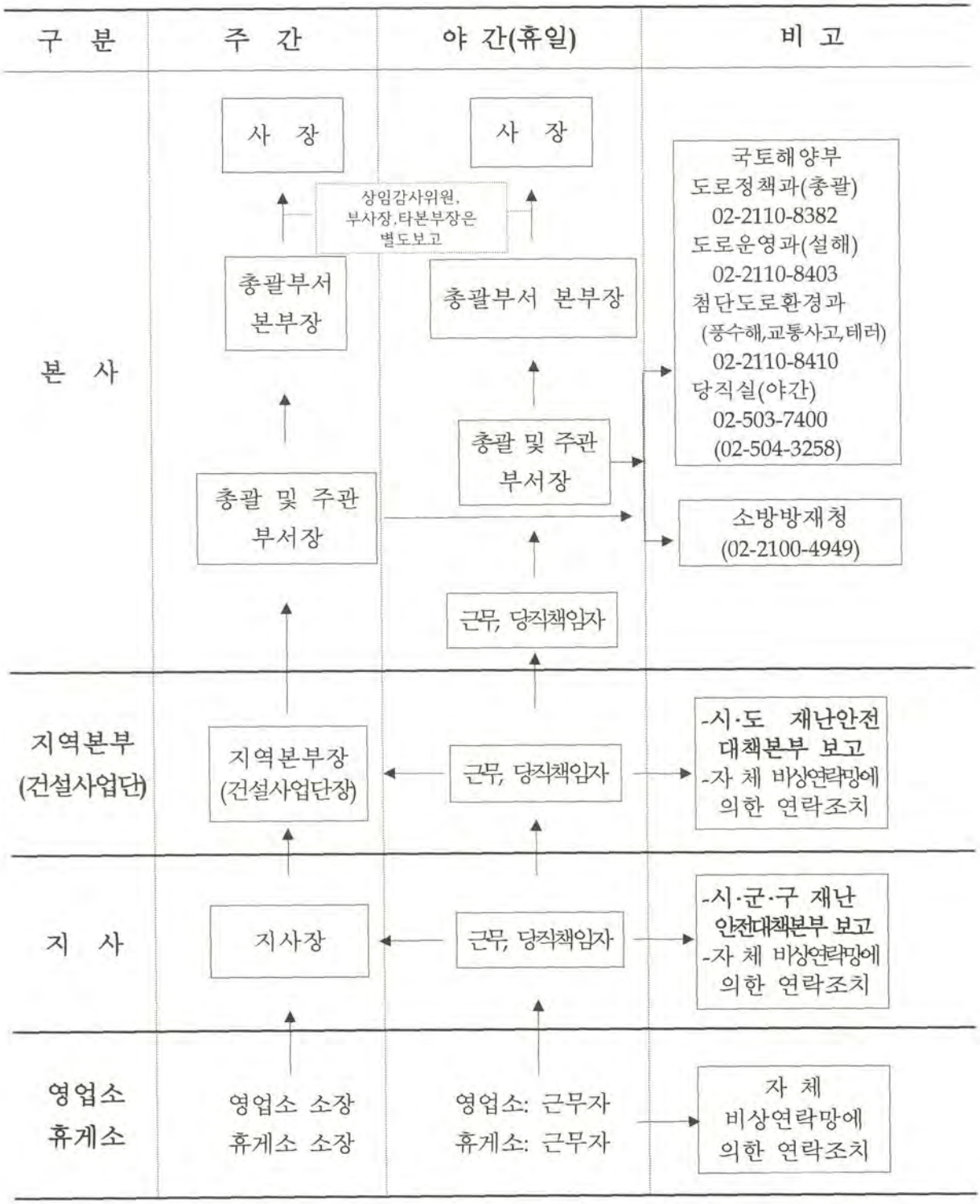

※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 Tel 031-710-7240~1 / Fax 031-710-7209

※ 재난대책(본사)상황실 : Tel 054-811-1194~8 / Fax 054-811-1199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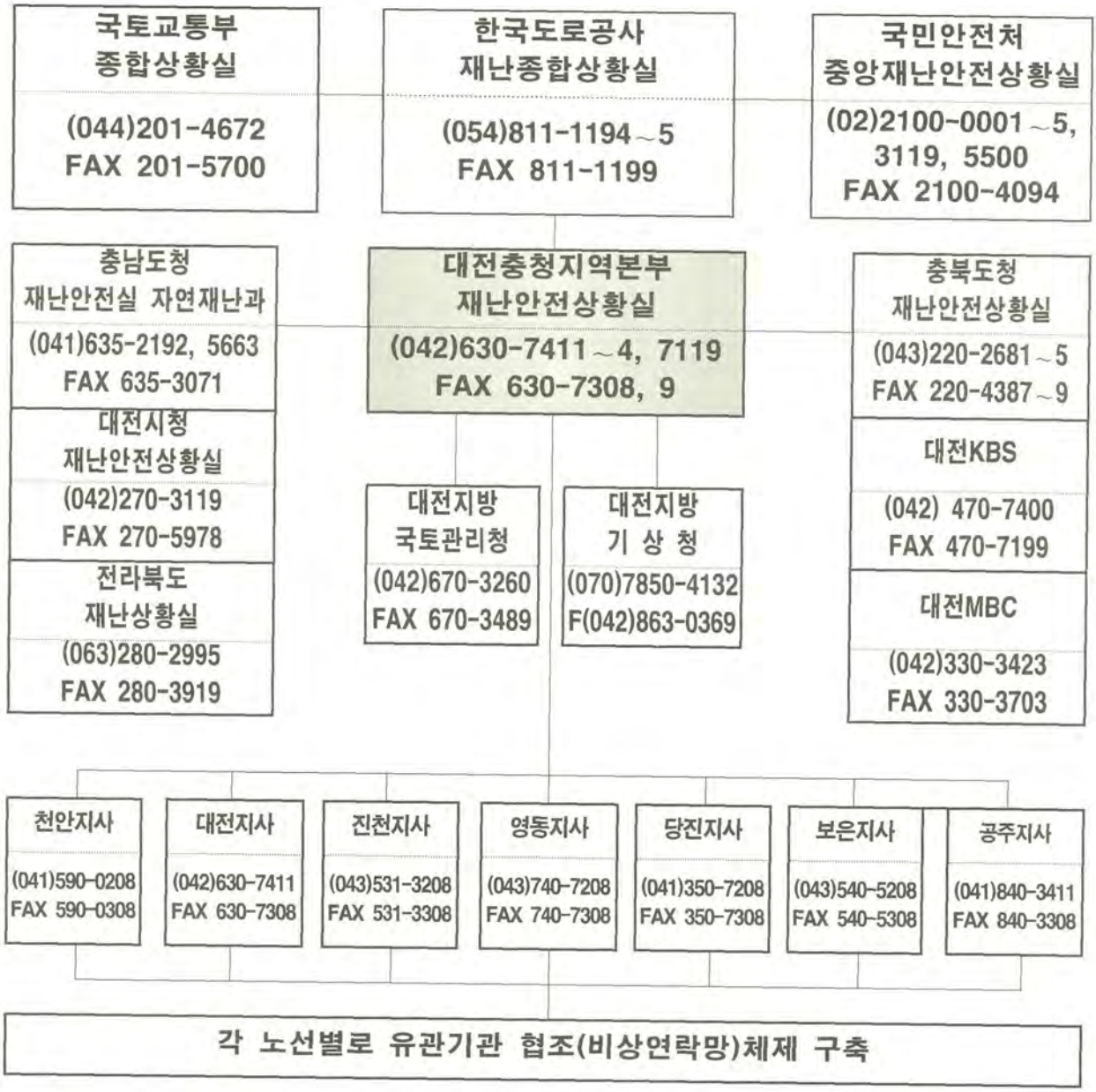

고속도로 순찰대 제1지구대 (용인시 기흥구)	고속도로 순찰대 제2지구대 (공주시 유구읍)	고속도로 순찰대 제3지구대 (경북 칠곡군)	고속도로 순찰대 제10지구대 (청주시 청원구)	고속도로 순찰대 제12지구대 (김제시 성덕면)
서해안선 278.72~284.70k 경부선 358.10~360.44k	당진대전선 0~91.58k 경부선 213.01~358.10k 호남지선 34.38k~53.97k 통영대전선 207.73~215.25k 대전남부선 0~13.28k	청주상주선 43.63~79.42k	청주상주선 0~43.63k 중부선 247.36~323.86k	서해안선 224.12~278.72k
(031)262-3949	(041)841-9112	(054)972-5274	(043)216-9912~3 043-240-2256	(063)542-1132

※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도로분야	도로팀	과장	김주현	설해, 풍수해 등	042-630-7263 (010-3417-3870)
구조물분야	구조물팀	과장	안영찬	교량붕괴, 화재 등	042-630-7464 (010-5487-3734)
시설분야	시설팀	과장	오성택	터널화재 등	042-630-7279 (010-2856-5821)
교통분야	교통팀	과장	박광희	교통사고 등 재난	042-630-7285 (010-3443-6445)

28.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본부

1. 재난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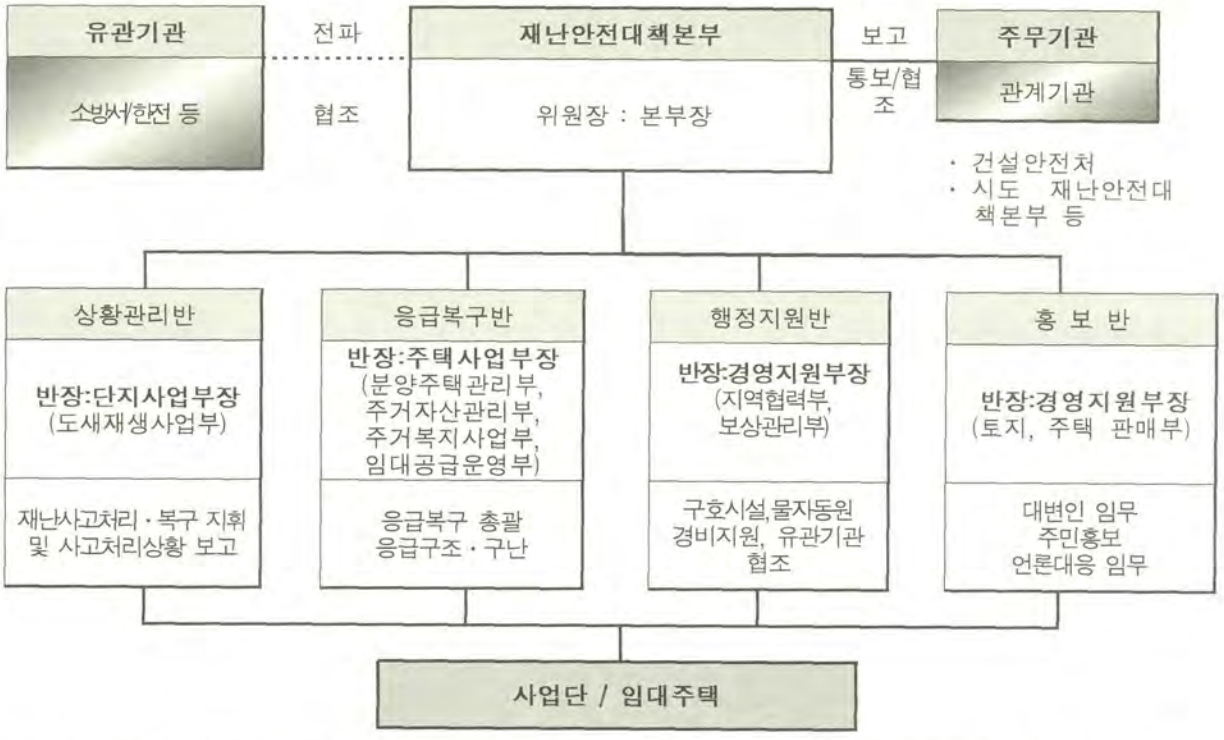

※ 각 사업단별(아산, 내포, 대덕과학벨트, 장항, 당진)로 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일한 4개의 반을 편성하여 재난에 대처

2. 주요 재난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재난유형	안전관리대책	
	예방	대비
풍수해 대응	-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 - 풍수해저감을 위한 연구 및 정보체계 구축	- 응급대응체제 정비 - 방재훈련 실시 - 기상특보별 비상근무 실시 - 유발재난 및 2차재난 방지대책수립 -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의 확보
건설현장 안전	- 재난취약시기 점검강화 -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구축운용 -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건설현장 안전교육 강화
임대주택단지 재난관리	- 안전·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 임대주택 안전점검(일일, 월간, 정기) - 방재관리 기본계획 수립	- 상황보고체제 구축 운영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안전 및 방재교육 실시 - 주요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3.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야	담 당			업무분장	연 락 처
	소속	직위	성명		
단지조성	단지사업부	부장	이종우	단지조성현장 재난관리	042)470-0311
주택건설	주택사업부	부장	이길로	주택건설현장 재난관리	042)470-0650
자산관리	주거자산관리부	부장	이정원	자산(아파트) 재난관리	042)470-0460
본부사옥	경영지원부	부장	박대현	본부사옥 재난관리	042)470-0120
야간	당직근무자			재난 실무반에 비상연락	**042)470-0117**

29.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1. 목 표

○ 각종 재난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최소화를 통한 대국민 안전복지 향상

2. 추진방향

○ 예방위주의 재난대응체제 구축
○ 사전 물자확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응급대응체계 확립
○ 재난 예·경보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경보체계 및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
○ 신속한 피해조사, 항구복구 및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개량 복구계획 수립 시행

3. 기관별 역할과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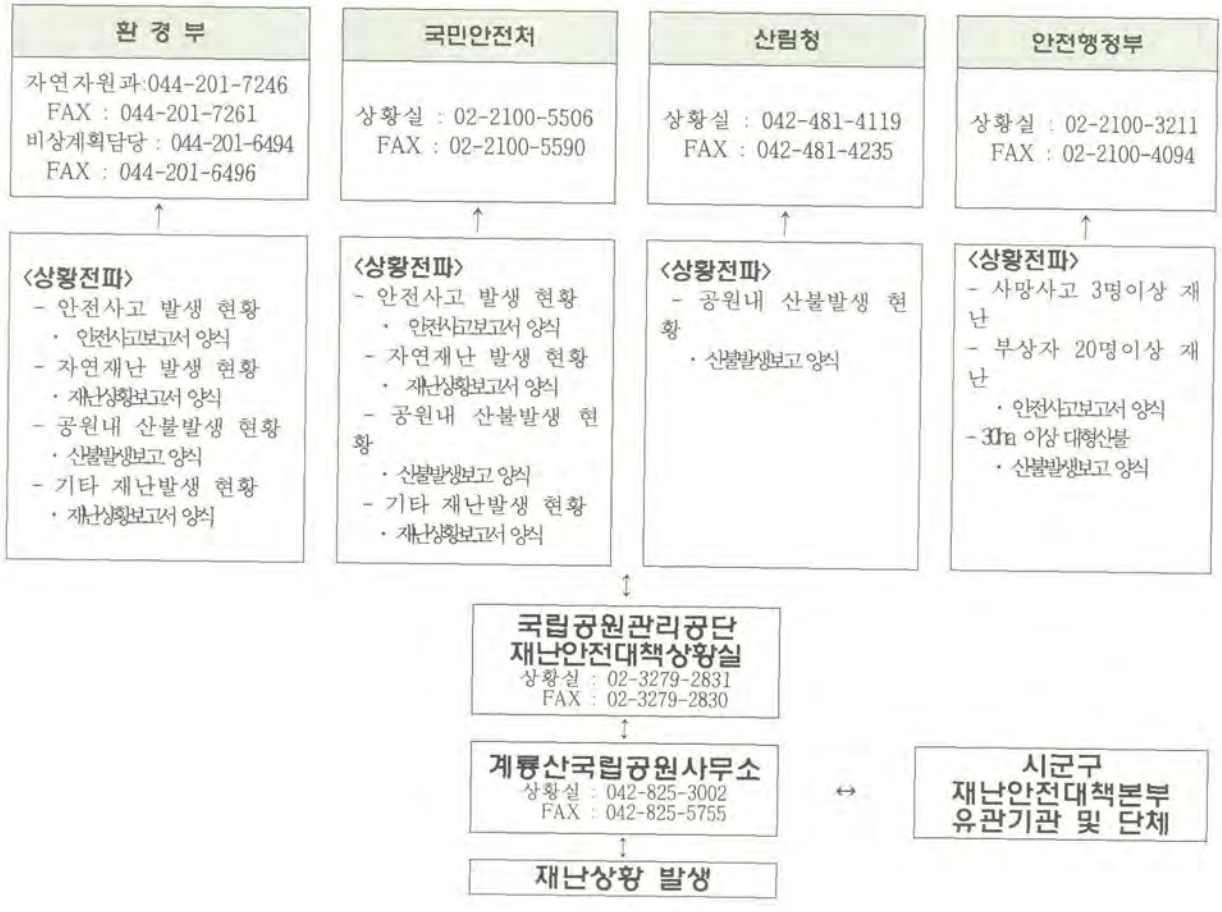

4. 계룡산사무소 재난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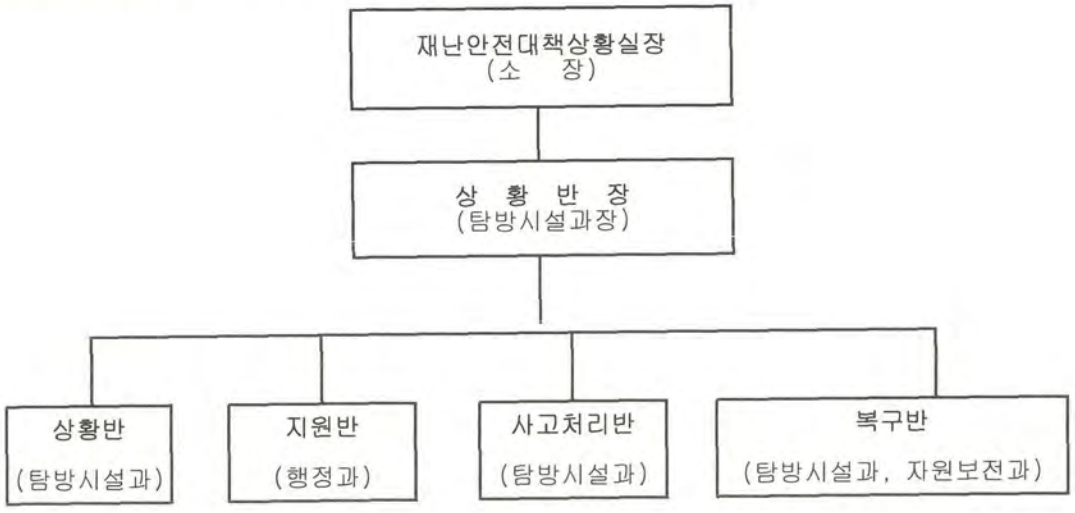

사무소 재난안전대책 조직 반별 임무

반 별	담당자	임 무
재난안전대책상황실장	소장	· 사무소 상황업무 총괄

상황반	지원반	사고처리반	복구반
· 탐방시설과장 (현장 출동 시 보전과장이 임무수행) · 재난담당직원 1명	· 행정과장 · 직원 1명	· 탐방시설과장 및 과원 · 구조인력(가용가능인력)	· 자원보전과장 · 보전과 1명 · 시설과 1명
· 상황실 운영 · 보고서 작성 · 재난상황분석 · 피해상황파악 · 피해정보수집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긴급사항관리(추가사고 등) 및 보고	· 직원 동원 및 현장배치 · 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장비 파악 · 주요인사 의전 및 보고자료 작성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언론 취재 지원	· 탐방객 구조 활동 · 탐방객 통제 활동 · 사고 예방 활동 · 사망 및 부상자 현황 파악 및 구조기관 이송 · 현장 구조 상황실 설치 및 운영	· 시설물 및 생태계 피해 현황 조사 ·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 시설 및 생태계 피해 현황 조사 및 복구

※ 재난 상황 및 사무소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가능한 해당 체계 유지)

5. 계룡산사무소 안전관리 구조체계

계룡산국립공원 안전관리 구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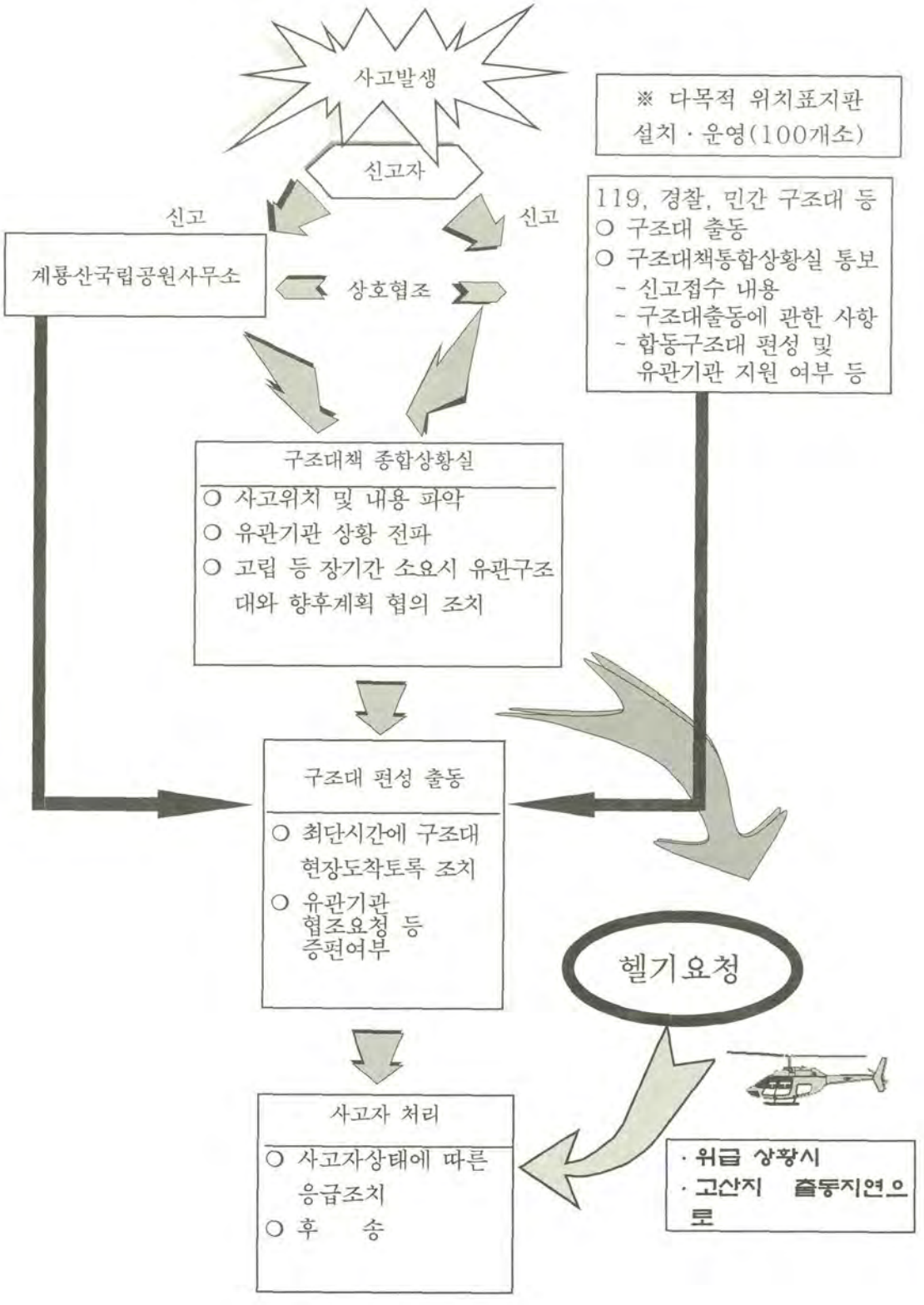

5.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계룡산사무소 재난대책상황실 근무조 운영 계획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자연재난대책기간[1]</th><th colspan="3">그 외 기간</th></tr>
<tr><th>상시[2]
대비단계</th><th>사전대비[3]
(주의)단계</th><th>비상[4]
(경보)단계</th><th>상시
대비단계</th><th>사전대비
(주의)단계</th><th>비상
(경보)단계</th></tr>
<tr><td colspan="2" rowspan="3">본부</td><td>주간</td><td colspan="3">안전방재처+전담근무 1인</td><td colspan="3">안전방재처+전담근무 1인</td></tr>
<tr><td rowspan="2">야간,
휴일</td><td colspan="3">전담근무 1인 + 당직자 1인</td><td colspan="3">전담근무 1인</td></tr>
<tr><td></td><td>안전방재처
1인
(이상)</td><td>안전방재처 2인
(이상)</td><td></td><td>안전방재처 1인
(이상)</td><td>안전방재처 2인
(이상)</td></tr>
<tr><td rowspan="4">사무소</td><td rowspan="2">본소</td><td>주간</td><td colspan="3">탐방시설과/안전방재과</td><td colspan="3">탐방시설과/안전방재과</td></tr>
<tr><td>야간</td><td>당직자 1</td><td>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이상)</td><td>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탐방시설과 1
(안전방재과)
(이상)</td><td>-</td><td>상황근무자 2
(이상)</td><td>상황근무자 2
탐방시설과 1
(안전방재과)
(이상)</td></tr>
<tr><td rowspan="2">분소</td><td>주간</td><td colspan="3">분 소</td><td colspan="3">분 소</td></tr>
<tr><td>야간</td><td>당직자
또는
재택자</td><td>당직자 1</td><td>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이상)</td><td>-</td><td>당직자 1</td><td>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이상)</td></tr>
</table>

○ 상황실 구성인원은 최소인원으로서 상황에 따라 확대 시행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의 경우 <u>야간근무자는 상황실 근무</u>

○ 분소 재택근무자는 주의보 발효(호우,대설,태풍) 시 사무소 복귀하여 임무수행

❑ 사무소 재난안전대책 상황보고 체계

○ 사전대비체계 주의보 발표 및 비상단계(**기상특보시**)

○ 1일 5회(05:00, 10:00, 17:00, 22:00, 01:00) 및 기상특보 변경 시

- 기타 상황 발생 시 수시보고

---

1)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매년 5월 15일~10월 15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매년 12월 1일~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가 없는 평상시

3)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태풍, 호우, 대설 주의보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4)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태풍, 호우, 대설 경보 발령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의 단계

6. 기상특보 발효시 통제 대책

❑ 기상특보 발표시 단계별 통제계획

통제 준비단계	통제 단계	해제 단계
□ 대설 예비 특보 발표 ○ 홈페이지 및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한 선제적 홍보시행 ○ 각종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탐방객 안내 실시	□ 기상특보 발표 시 또는 재난발생 예상 시 ○ 홈페이지, 문자전광판 활용 탐방객 안내 ○ 경보시설 활용 탐방객 안내 시행 ○ 각 탐방로 입구 안내간판 설치 ※ 기상여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통제시기 조정	□ 개방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후 개방 실시 ○ 적설량 20cm이상 시 탐방로 안전점검 실시 후 개방

❑ 기상특보 발표시 직원배치 및 탐방객 통제계획

통제구간(시점~종점)	탐방객 통제 위치	직원배치	휴대장비
12개 구간	10 개소	10	
동학사~남매탑	세진정 앞	국립공원지킴이 1 (재난구조대 및 지킴이)	무전기 1 유도봉 1 안내판 1
동학사~관음봉	구야영장	국립공원지킴이 1 (재난구조대 및 지킴이)	
천정~남매탑	천정탐방지원센타	근무계획 별도수립	
상신~금잔디고개	상신탐방지원센터	근무계획 별도수립	
지석골~작은배재	지석골공원지킴터	국립공원지킴이 1 (재난구조대 및 지킴이)	
병사골~장군봉구간	병사골공원지킴터	근무계획 별도수립	
갑사~금잔디고개~남매탑	갑사 : 대성암입구	근무계획 별도수립	
갑사~연천봉			
신원사~연천봉~관음봉	신원사탐방지원센타		
수통골통제소~도덕봉~금수봉 수통골주차장(1,2)~빈계산	수통골탐방지원센타 빈계산공원지킴터(1,2)	근무계획 별도수립	

7.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가용인력 확보

구분	유관기관	민간단체	비고
계	140명	39명	
계룡산	- 119안전센터: 14명 - 반포파출소(치안센터포함): 10명 - 반포면사무소: 19명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34명 - 청양산림항공 : 17명 - 공주시 : 56명	민간산악구조대 : 18명 동학사의용소방대: 21명	

❑ 계룡산사무소 및 유관기관 합동 구조대 편성현황

사무소	계		공단		119구조대		민간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대	인원
계룡산	3	42	1	10	1	14	1	18

❑ 긴급구조 및 재난발생시 주요헬기 요청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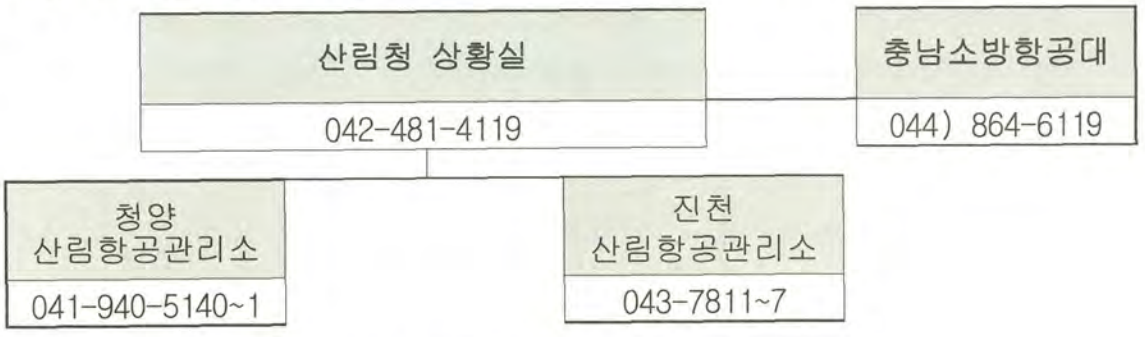

❑ 계룡산사무소 헬리포트 현황

사 무 소	헬 기 장 명	위 치	좌 표
계룡산	계	4개소	
	동학사주차장	동학사 입구	127° 14′ 24″
			36° 12′ 17″
	금잔디고개	금잔디고개	127° 12′ 30″
			36° 21′ 38″
	연천봉	연천봉 아래	127° 11′ 40″
			36° 20′ 47″
	갑사주차장	갑사입구	127° 10′ 50″
			36° 22′ 10″

8. 재난취약지구 관리강화

❑ 자체지정지구 현황 : 4개소

지 구 명	구 간	거리(km)	위험요인	책임담당자	비 고
동학사지구	동학사계곡~은선폭포	1.5	안전사고	지역담당자	
갑사지구	용문폭포~남매탑	2.0		지역담당자	
신원사지구	신원사~연천봉	2.7		지역담당자	
수통골지구	수통골주차장~수통폭포	1.3		지역담당자	

○ 지정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 관리방법

- 재난대책기간중 월 1회 점검
- 기상특보시 탐방객 통제 및 순찰 강화, 시설물점검
- 재해위험지구 안내표지판 수시점검 : 4개소

❑ 계룡산국립공원 급경사지 현황 : 6개소

지구명	위 치	주 이용시기	책임담당자	위험요인
동학사 지구	사무소옆 학바위 일원	연중	지역담당자	낙석붕괴
	구야영장 상단 600m	〃	〃	
	구야영장 상단 800m	〃	〃	
	은선폭포 하단 200m	〃	〃	
	관음봉 하단 200m	〃	〃	
갑사지구	용문폭포 일원 및 석축점검	〃	〃	

❑ 기상 특보 등 기상악화시마다 현장 책임자 현장순찰 사항 기록·관리

○ 사전대비기간 재해위험 안내표지판 및 통제시설 점검

○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 기록 관리

○ 월 1회 이상 재난취약지구 순찰 후 결과보고 작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계룡산국립공원 재난대책상황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대책상황실	
계룡산사무소	042-825-3002~3	전화	02-3279-2831
갑사분소	041-857-5178	팩스	02-3279-2830
수통골분소	042-825-3006	환경부 상황실	
중앙재난 종합상황실		전화(야간)	044-201-6494(7440)
전화	02-2100-5500	팩스(야간)	044-201-6496(7442)
팩스	02-2100-5590	소방서	
충청남도 재난대책본부		공주소방서	041-851-0421~4
충남도청	041-635-4743	논산소방서	041-730-0423~4
공주시청	041-840-2222	계룡소방서	042-841-0119
논산시청	041-746-6400	대전북부소방서	042-609-6662
계룡시청	042-840-2222	동학사119안전센터	042-825-0119
대전유성구청	042-611-2517	계룡119안전센터	041-857-2119
산림청		충남소방본부	041-635-3119
산림청 본부	042-481-4151	사찰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24	동학사	042-825-2570
긴급헬기 요청기관		갑사	041-857-8981
공단본부 항공대	02-2665-6411	신원사	041-852-4230
산림청항공본부상황실	042-481-4119	등운암	041-856-1770
청양산림항공	041-940-5140~1	상원암	042-825-6011
진천산림항공	043-530-7811~7	신흥암	041-857-5143
익산산림항공	063-260-4504	심우정사	010-6733-7856
경찰서		기타	
공주경찰서	041-852-7000	육군본부상황실	042-550-0300~1
동학사치안센터	042-825-4112	계룡대 근무지원단	042-870-7323
계룡지구대	042-841-8112	반포면사무소	041-840-2755
대전유성지구대	042-822-0112	계룡면사무소	041-840-8850
반포파출소	041-857-7112	이남훈 산악구조대장	010-5456-0584

○ 계룡산사무소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	일반 5급	서재우	042-825-3002~3 010-9040-1261	jp8800@knps.or.kr	

30.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2 추진계획

예 방 대 책

1. 일일재난상황 예보 시행

□ 특보발표현황, 주요 점검 및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일일예보 시행

본 부		사 무 소
○ 매일 10:00, 15:00 사무소 전파 ※ 기상특보 및 특이상황 발생시 수시 전파	⇒	○ **사무소는 게시판 및 공람 등을 통해 직원에게 전파** ※ 특보 등 재난상황 해당 사무소는 재난 대응 태세 유지 및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자연재난정보 조기수집 및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 본부 재난안전대책상황실과 사무소 간 재해상황 실시간 공유
※ 재난 초기단계부터 모니터링 강화, 비상근무 사전예고 등 재난 대응체제 돌입

2. 재난으로 인한 재난취약지구 관리

□ 고립예상지역 및 탐방로 등 재해 취약구간 지정관리

□ 관리내용
○ 재난으로 인한 고립이 예상되거나 재해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예비특보시부터 탐방객 입산통제
○ 조난.고립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은 탐방객 행동요령 안내판 설치, 대피지역 지정.안내 및 안전로프 등 사전설치
○ 재난으로 인한 고립예상지역 및 구호물품 확보
※ 국립공원내 긴급환자 수송 및 고립자 구조,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 공원진입도로 안전대책

□ 차량통제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 사전대비 지침)

○ 통제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위해 해당 경찰관서와 사전 협조체계 구축(사무소 여건에 맞게 시행)

○ 공원 진입도로 통제 홍보 및 입간판 설치 등

※ 지방도, 국도 등에서 공원 진입도로 진입 전 통제여부 사전홍보 시행

4. 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이행 철저

□ 탐방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 시설물은 사전정비 또는 임시폐쇄

□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탐방로, 교량 등) 매립 예상시 식별표시 부착

○ 장대, 깃발 , 로프 등 표식이 가능한 표지판 부착

□ 매분기별 1회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위험시설은 탐방객 통제 및 안내간판 설치

5.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 물자 확보.비치

- 방재물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공간에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며 자재 목록을 비치하여 관리

6.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및 재해대책 홍보 강화

□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 상황전파시스템 관리.점검 및 운영매뉴얼 상황실 비치

- 유관기관 상황전파

○ 문자전광판(5개소) 및 AWS(3개소) 매월 1회이상 자체 점검 실시

구분	계	설치 위치					비 고
		본소	원북	소근	남면	안면도	
문자전광판	5	1	1	-	1	2	
AWS	3	-	1	-	-	2	

○ 장비연결 및 가동상태, 통신회선 등 시스템 가동상태 수시 점검 실시

○ 신속한 재난정보 전파를 위한 표준문안 정비

○ 업무담당자 부재 대비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담당자 복수지정

□ 문자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설해대책 홍보

○ 문자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산행안전정보 제공

- 기상 특보 시 국립공원 출입통제 안내

·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통제구간 및 현재 날씨 안내

· 주요 탐방로 입구 안내간판 및 문자전광판 활용 홍보

구 분	홍보사항	비고
예비특보	· 홈페이지 및 각 사무소 SNS활용한 사전 홍보 - 현재 기상상황, 향후 기상전망, 통제 상황 등 · 문자전광판을 이용한 기상상황 홍보	
경보.주의보	· 홈페이지 및 각 사무소 SNS활용한 특보 및 통제 상황 홍보 · 문자전광판을 이용한 특보상황 홍보 · 각 탐방로 입구 입간판을 이용한 통제 안내간판 설치 ·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이용한 실시간 홍보 시행 · CB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대 비 대 책

1. 기상특보시 단계별 안전대책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기 상(피해) 상 황</th><th>안 전 대 책</th></tr>
<tr><td rowspan="4">주의보
발효시</td><td colspan="3">○ 호우, 태풍, 대설주의보 발표시
○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등
기타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td><td rowspan="4">- 비상근무실시 : 사무소 2인,
분소 1인 이상 적정인원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 통신망 확인
- 기상상황 파악 및 전파
- 해변 출입금지 및
탐방객 대피유도, 야영금지
- 사고 위험지구 담당자 책임 순찰
- 각종 공원시설물 점검
- 위험지역 제설작업 실시</td></tr>
<tr><td rowspan="3">특
보
기
준</td><td colspan="2">○ 태풍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td></tr>
<tr><td colspan="2">○ 호우
-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td></tr>
<tr><td colspan="2">○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td></tr>
<tr><td rowspan="4">경보발효시</td><td colspan="3">○ 호우, 태풍, 대설경보 발표시
○ 자연재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td><td rowspan="4">- 비상근무실시 : 사무소 3인
분소 2인 이상 적정인원
- 안전관리대책 강화조치
.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순찰 강화
. 담당자 상주배치
- 탐방객 안전지대 대피 및 귀가조치
- 해변 출입금지 및 야영금지
- 교통두절지역 제설작업(유관기관협조)
-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
-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td></tr>
<tr><td rowspan="3">특
보
기
준</td><td colspan="2">○ 태풍
- 태풍으로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table>
<tr><th></th><th>3급</th><th>2급</th><th>1급</th></tr>
<tr><td>바 람 (m/s)</td><td>17～24</td><td>25～32</td><td>33 이상</td></tr>
<tr><td>비(mm)</td><td>100～249</td><td>250～399</td><td>400 이상</td></tr>
</table></td></tr>
<tr><td colspan="2">○ 호우
- 12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때</td></tr>
<tr><td colspan="2">○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 산지의 경우 30㎝</td></tr>
<tr><td>피해발생
또는
예견시</td><td colspan="3">○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td><td>- 비상근무실시(전 직원)
- 해변 출입통제 강화
- 피해지역 구조활동 실시
- 피해상황 접수 및 보고
- 피해시설 및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td></tr>
</table>

2.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확립

□ 국립공원 안전사고 구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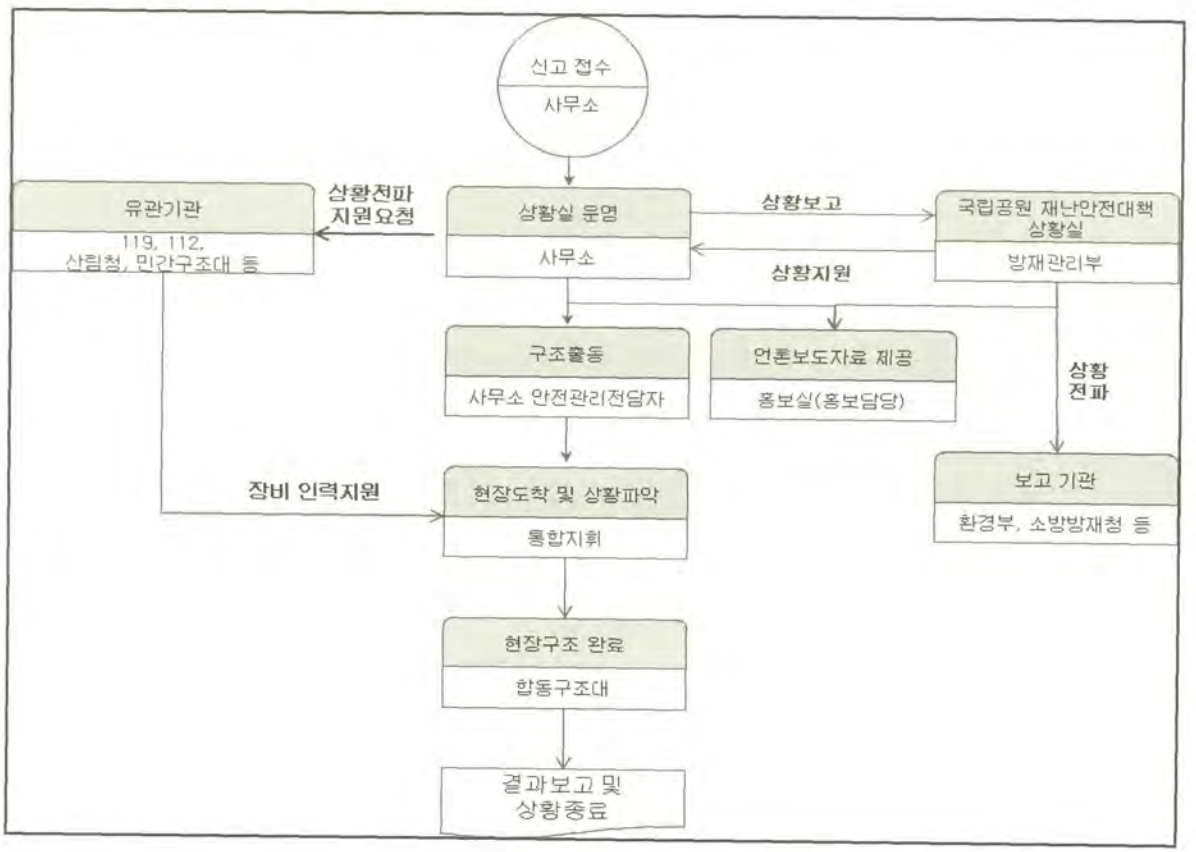

3. 방재장비 전진배치

○ 사무소 여건에 따라 청소차 · 산불진화차량 · 봉고트럭, 트랙터 등 전진배치

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및 가용인력·장비 공유

○ 유관기관(마을주민 포함) 비상연락망 정비

○ 사무소, 119구조대 및 민간구조대,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재정비 및 구조대 편성

- 기관별 구조용 장비 보유 현황 파악 및 재난상황발생 시 공유
- 지역적십자사 등과 협의 구호물자 사전파악

○ 유인도서 관할지자체와 연계한 비상망구축

- 국립공원 자체 자원보호단 및 지역 이장, 반장 연락망 재정비

○ 긴급구조 대비 헬기 보유기관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헬리포트지점 관리

- 헬기 요청기관 현황

기 관 명	전화번호	관할지역	비 고
태안소방서	041-671-0303 041-671-0421	내륙지역	
해양경비안전서	041-950-2342 041-950-2442	해 수 면	
청양 산림항공관리소	041-940-5104	충청남도	태안군

- 헬리포트 현황

헬기장명	위 치	좌 표	비 고
학암포주차장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N 37° 75'58" E 129° 02'46"	
몽산포주차장	태안군 남면 신장리	N 35° 25'52" E 136° 03'97"	
백화산 헬리포트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N 36° 46'05" E 126° 17'56"	공군부대 관리

5.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한 겨울철 재난대책 모의훈련 실시

□ 재난으로 인한 탐방객 고립, 차량통제 등 재난상황 가정

○ 유관기관 합동 구조 훈련 및 사무소 자체 훈련 실시

대 응 대 책

1. 재해 대응 표준절차

	본 부	사무소
기상예비 특보발표	. 재난상황일일예보 지속 시행 . 각 공원사무소 재난예.경보시설 및 취약지구 점검 조치 . 비상근무자 연락 등 사전 조치 . 야영장, 대피소 등 탐방객 안전조치 파악 . 재난취약지구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활동 안내 . 중점추진 대책 마련	. 재난 예.경보시설 정상가동 . 방재장비 즉시 사용가능토록 배치 . 재난취약지구 사전 점검 및 위험구간 폐쇄 조치 등 시행 . 비상근무자에게 사전 상황전파 . 기상상황 모니터링 지속 . 자동우량경보시설, 문자전광판을 활용한 탐방객 계도 . 탐방객 대피 조치 ※ 필요시 상황실 가동
기상 특보 발표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가동 .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실시 . 각 사무소 탐방로 통제 및 비상근무 현황 파악 . 각 사무소 상황파악 및 피해여부 확인 . 유관기관 상황전파 (환경부, 국민안전처)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가동 . 비상근무자 소집 . 주요 탐방로 통제 및 탐방객 대피 조치 . 자동우량경보시설, 문자전광판,홈페이지, SNS등을 이용한 홍보 . 유관기관 협조체계 활용(인력,물자 등) ※ 대피소 이용객은 특보 해제후 안전하산 유도
상황판단회의 (대규모재난상황우려)	. 지원사항 판단 및 대응방안 결정 등 . 국립공원재난조직 운영 (각 반장 및 반원 비상근무) . 상황유지 및 유관기관 전파 . 언론보도 등 홍보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인력, 장비 협조 . 사무소 재난조직 가동 . 현장상황실 가동여부 판단 . 언론보도 등 홍보

2.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단계별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상시 대비 체계	사전 대비 체계
○ 특별한 재난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중 주의보 또는 특보 발효 예상 3시간 전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 가동이 필요한 단계**
비상 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 상황실 근무조 편성 및 운영

구 분			자연재난대책기간			그 외 기간		
			상시 대비단계	사전대비 (주의)단계	비상 (경보)단계	상시 대비단계	사전대비 (주의)단계	비상 (경보)단계
사무소	본소	주간	탐방시설과			탐방시설과		
		야간	당직자 1	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이상)	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탐방시설과 1 (이상)	당직자 1	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이상)	당직자 1 상황근무자 1 탐방시설과 1 (이상)
	분소	주간	분 소			분 소		
		야간	-	상황근무자 1 (이상)	상황근무자 2 (이상)	-	상황근무자 1 (이상)	상황근무자 2 (이상)

○ 사무소 재난안전대책 상황보고

- 재난안전 추진 일일보고(16시) / 공유폴더 192.168.2.248:8000/login
- 사전대비체계 주의보 발표 및 비상단계(기상 특보 시)
- 상황유지 및 대처가 가능한 인원으로 비상근무계획을 편성.운영
  (예비특보 시는 운영책임자 판단 하에 근무 조정)
- 기상특보 시 단계별 안전대책 이행
- 주의보 및 경보 단계의 경우, 야간근무자는 상황실에서 근무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근무기록 유지

⇒ 근무사항(근무인원, 보고사항, 조치사항 등) 기록 유지 철저 (업무일지 등)

□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

○ 사무소 단계별 상황판단 회의

단계별	특보 또는 재난상황	회의주체	참석대상	비고
Ⅰ단계	•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발표시	상황반장	구조구급반	
Ⅱ단계	• 기상특보 경보 발표시	상황실장	상황반장 구조구급반 사고처리반	
Ⅲ단계	• 기상특보로 인한 인명피해 • 자체복구 불가능 시설물피해	상황실장	상황반장 4개 지원반	

※ 대형재난 : 재난상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명이상, 부상자가 20명이상 발생한 재난

□ 상황판단회의 절차

현재 기상상황 보고	▸ 기상상황, 향후 태풍 예상 진로 등 - 특보발표 공원별 기상상황 분석
현황분석	▸ 탐방로 및 다중이용시설(야영장, 대피소 등) 통제·대피 현황 ▸ 현 비상근무인원 및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확인
피해사항분석 및 전망	▸ 현재까지의 피해상황 분석, 향후 피해전망 등
주요사항 논의/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 지원사항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후속조치 이행	▸ 비상근무 실시(상황실 운영) ▸ 해당사무소 인력 및 장비 사전점검 ▸ 해당 회의내용 사무소 및 유관기관 전파

3. 탐방객 단계별 통제

통제 준비단계	통제 단계	해제 단계
□ **재난 예비 특보 발표** ○ 홈페이지 및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한 선제적 홍보시행 ○ 각종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탐방객 안내 실시	□ **기상특보 발표 시 또는 재난발생 예상 시** ○ 홈페이지, 문자전광판 활용 탐방객 안내 ○ 경보시설 활용 탐방객 안내 시행 ○ 각 탐방로 입구 안내간판 설치 ※ 사무소 기상여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통제시기 조정	□ **개방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후 개방 실시** ○ 적설량 20cm이상 시 탐방로 안전점검 실시 후 개방

4. 현장순찰 중 재난위험징후 포착시

□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심각한 재난 전조 시 **"선 조치 후 보고"**

현장 확인	긴급 조치 시행	보고 및 후속 조치
□ **현장 확인** ○ 순찰 시 현장에서 **심각한 재난전조 확인** ※ 낙석, 산사태, 하천범람, 지반유실 등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재난전조	□ 탐방객 **통제 즉각 시행** (우회탐방로 유도 및 통제선 설치 등) □ 응급복구 가능요소는 현장에서 상황판단하여 응급복구 시행 **"선조치 후 보고시행"**	□ 보고 및 후속조치 ○ 해당지역 위험성 공지 및 복구 인력 파견 요청 ○ 위험요소 제거시 까지 탐방객 통제 계속 시행

5. 사고 발생 시 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

□ 재난 및 인명피해 발생 등 현장지원본부 필요시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

□ 비상지원본부 설치 절차

상황판단회의 개최	▸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여부 판단
⇩	
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 (총 책임자 : 소장)	▸재난관리 조직반별 인력편성 ※ 재난관리매뉴얼에 의거한 반별 임무부여 및 인력편성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 설치 ※ 현장접근 및 각종 통신 이용이 용이한 곳
⇩	
현장 비상지원본부 운영	▸ 본부 및 사무소, 현장 비상지원본부 Hot-Line 구축 ▸ 유관기관 등 지원 필요사항 요구 등 조치 및 상황 전파
⇩	
현장 비상지원본부 철수	▸ 재난상황 종료 시 ▸ 현장에서 상황판단회의 개최 후 철수여부 결정

※ 비상지원본부 설치 시에는 사무소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은 시설과장이 운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통보 및 협의 조치

보고 단계	구조·구급 활동	출입통제 시행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 **중간보고** · 상황수습에 따른 조치 사항 수시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이 수습되거나 종료 되었을때 보고 ※ 모든 보고는 상황전파메신저·전화·팩스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119 구조대 등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 협조요청 - 유관기관 및 민간구조대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한 구조활동 시행 - 긴급구조기관의 구조활동시 위치파악 등 적극 협조	- **피해지역 출입통제** · 피해를 입은 계곡 및 탐방로 출입통제 시행 · 입간판 설치 등 탐방객 안내 시행

6. 재난 사고 대응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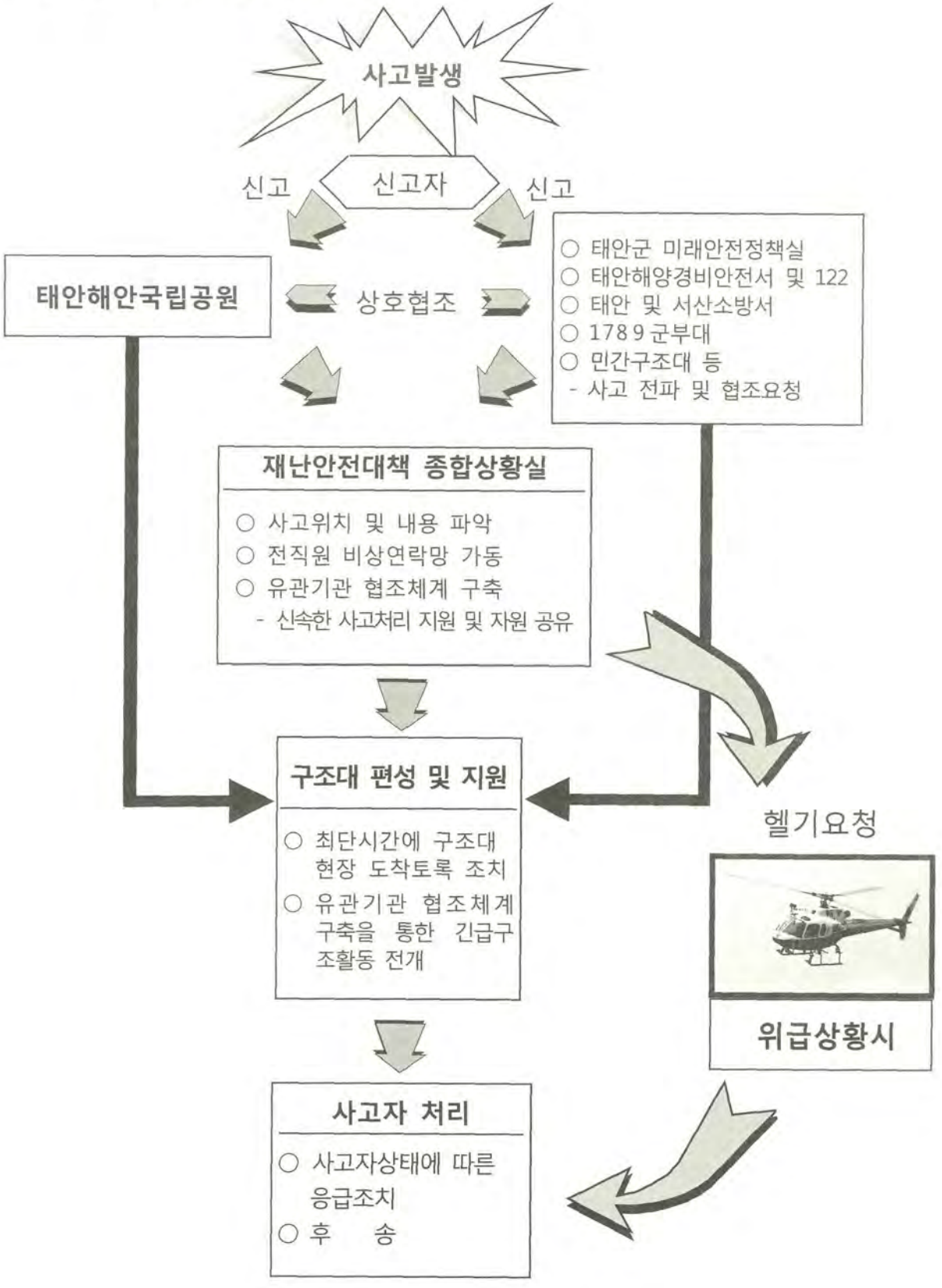
사고발생
신고
신고자
신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상호협조
○ 태안군 미래안전정책실
○ 태안해양경비안전서 및 122
○ 태안 및 서산소방서
○ 1789군부대
○ 민간구조대 등
- 사고 전파 및 협조요청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 사고위치 및 내용 파악
○ 전직원 비상연락망 가동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신속한 사고처리 지원 및 자원 공유
구조대 편성 및 지원
○ 최단시간에 구조대 현장 도착토록 조치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활동 전개
헬기요청
위급상황시
사고자 처리
○ 사고자상태에 따른 응급조치
○ 후 송

7. 재난사고 반별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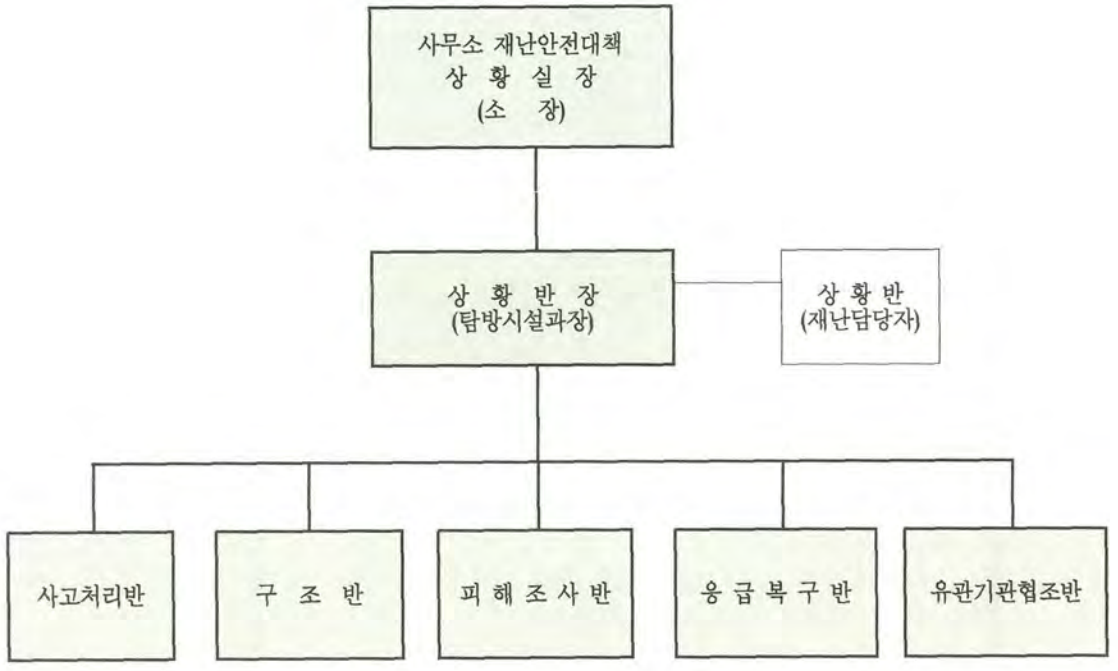

반 별	임 무
사 고 처 리 반	- 재난으로 인한 사고 접수 및 보고 - 인명피해 발생 현황 조사 및 보고 - 기타 구조반 활동 지원
구 조 반	- 탐방객 통제, 대피, 구호활동 및 보고 - 안전사고 예방 활동
피 해 조 사 반	- 피해 현황 조사 복구상황 보고 -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기타 응급복구반 활동 지원
응 급 복 구 반	- 응급복구 계획 및 복구 활동 - 피해지역 통제 활동 등 - 기타 피해조사반 지원
유관기관협조반	- 재난관련사항 유관기관 협조 - 119구조대 및 유관기관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복 구 대 책

1.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조사

□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한 지역별 책임자 현장점검 실시

2. 피해조사 [2015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참고]

□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조사단 편성·운영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 분석

○ 재난복구계획(안) 작성

-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복구 계획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피해지구의 피해원인을 정밀분석, 방지대책 실시

○ 피해내역이 재난복구비용(국고지원) 지원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재해대장 작성, 지자체 통보 등 관련절차 이행

○ 복구 기본방향 결정

- 피해상황,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 필요시 NGO,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

○ 복구사업 시행

- 피해 복구시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예견되는 주요시설과 신설 또는 개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조물 등은 복구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복구 실시
-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재발 방지
- 대규모 공사와 주요 구조물의 복구공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를 확대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부실공사 방지
- 사업시행 시 경관 및 생태계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

31. 한국농어촌공사충남본부

1. 재난대책상황실 단계별 근무반 편성기준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별 근무체제】

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주요 조치사항
관심 (Blue)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호우** 빈발 시기	○ 징후 감시활동 ○ 일상근무 상황
주의 (Yellow)	○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기상상황 모니터링 ○ 비상연락망 점검 ○ 시설물 정상 가동여부 확인
경계 (Orange)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비상단계 돌입 ○ 기상상황 전파 ○ 시설관리자 정위치
심각 (Red)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긴급복구동원업체 등 복구협력업체 대기 조치 ○ 수방자재 및 장비 운반차량 대기 조치

2) 단계별 근무 체제

구 분	본 사	지역본부.지사.사업단
관심 (Blue)	○ **상황실 운영**(휴일포함 09시~18시) ○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징후 감시 활동	○ **부서장 판단 필요시 상황실 운영** ○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징후 감시 활동
주의 (Yellow)	○ **상황실 운영**(09시~익일09시 까지 24시간 근무) - 호우(태풍)주의보 발표 시(제주제외) * 경영진, 농식품부, 중대본의 지시	○ **상황실 운영**(09시~익일09시 까지 24시간 근무) - 호우(태풍) 주의보 발표 시 * 경영진, 농식품부, 중대본의 지시
경계 (Orange)	○ **상황실 운영**(09시~익일09시 까지 24시간 근무) - 호우(태풍)경보가 2개 "도"지역 이상 발표 시 (주의보는 3개 "도"지역 이상) - 대규모(전국적) 재난발생 가능성이 우려될 때 * 경영진, 농식품부, 중대본의 지시	○ **상황실 운영**(09시~익일09시 까지 24시간 근무) - 호우(태풍) 경보 발령 시 * 경영진, 농식품부, 중대본의 지시
심각 (Red)	○ **상황실 운영**(09시~익일09시 까지 24시간 근무) - 호우.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호우.태풍에 의한 대규모(전국적)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경영진, 농식품부, 중대본의 지시 ○ **비상근무 강화(근무자 증원)**	○ **상황실 운영**(09시~익일09시 까지 24시간 근무) - 호우.태풍에 의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경영진, 농식품부, 중대본의 지시 ○ **비상근무 강화(근무자 증원)**

【가뭄 위기경보 단계별 근무체제】

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주요 조치사항
관심 (Blue)	○ 농업적 가뭄발생 시기(4월~9월)	○ 기상상황, 저수율 모니터링 ○ 용수확보대책 수립 ○ 절수영농계획 수립 ○ 가뭄대책장비 점검
주의 (Yellow)	○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60%이상 7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60%이상 70%미만인 때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인력 동원계획 수립 ○ 가뭄대책장비 동원계획 수립 ○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
경계 (Orange)	○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0%이상 6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이상 60%미만인 때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용수확보대책 추진 ○ 관련기관 협조체제 강화 ○ 가뭄대책장비 및 인력동원
심각 (Red)	○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미만인 때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 강화(근무자 증원)** ○ 급수대책 총력체제 돌입 ○ 절약급수 및 비상급수 추진 ○ 가뭄극복 3대운동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위기경보 수준 확정시 변경

2) 단계별 근무 체제

구 분	본 사	지역본부.지사.사업단
관심 (Blue)	○ 기상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모니터링 및 징후감시 활동 ○ 용수확보대책 수립 ○ 가뭄대책장비 점검	○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징후감시 활동 ○ 용수확보대책 수립 ○ 가뭄대책장비 점검
주의 (Yellow)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1개 시.도 이상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60%이상 7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60%이상 70%미만인 때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영진의 지시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해당 시.도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60%이상 7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60%이상 70%미만인 때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영진의 지시
경계 (Orange)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1개 시.도 이상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0%이상 6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이상 60%미만인 때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영진의 지시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해당 시.도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0%이상 6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이상 60%미만인 때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영진의 지시
심각 (Red)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1개 시.도 이상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미만인 때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영진의 지시 ○ **비상근무 강화(근무자 증원)**	○ **재난(가뭄)대책상황실 운영** - 해당 시.도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0%미만이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미만인 때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영진의 지시 ○ **비상근무 강화(근무자 증원)**

2. 단계별 근무인원

○ 위기경보 수준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단계)로 구분, 비상근무 편성.운영

구 분	부 서	근 무 자		근무 인원	전체 (명)
		책 임 자	근무자(명)		
관심 (Blue)	계			**4**	**28**
	지 역 본 부	재난대책상황실 부실장	2급 1, 3~5급 1	2	2
	지 사	〃	2급 1, 3~5급 1	2	13×2=26
주의 (Yellow)	계			**6**	**42**
	지 역 본 부	재난(가뭄)대책상황실 부실장 정부 순환근무	2급 1, 3~5급 2	3	3
	지 사	〃	2급 1, 3~5급 2	3	13×3=39
경계 (Orange)	계			**10**	**70**
	지 역 본 부	재난(가뭄)대책상황 실장 정.부 순환근무	1급 1, 2급 1, 3~5급 3	5	5
	지 사	〃	1급 1, 2급 1, 3~5급 3	5	13×5=65
심각 (Red)	계			**10**	**70**
	지 역 본 부	재난(가뭄)대책상황 실장 정.부 순환근무	1급 1, 2급 1, 3~5급 3	5	5
	지 사	〃	1급 1, 2급 1, 3~5급 3	5	13×5=65

※ 단계별 근무인원이 부족한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상황근무자 탄력적 조정·운영

3. 근무방법

○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근무

○ 운영기간 : **2016. 4.01.~10.31(6개월)**

○ 근무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익일 09:00 (가뭄상황 준비단계시 재택 당직자에게 위임)

※ 비상근무여건, 풍.수해상황 및 가뭄 등 업무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책임자가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 **교대요령**

- 전일의 업무현황 및 조치사항 일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재난대책상황실장에게 보고**
- 전일의 근무책임자는 업무현황 및 조치사항 일체를 **다음 근무책임자**에게 **철저히 인수.인계**
- 가뭄상황 시 주간은 가뭄대책 담당직원이 상황관리하고 야간은 당직(재택)이 상황을 관리하여 익일 담당자에게 인계
- 교대시간 및 상황근무시 30분 전까지 차기근무자는 정위치 할 것
- 근무자 변동이 있을 경우 비상근무 변경신고서에 의거 승인후 근무

○ **인수인계 사항**

- 수문 및 기상상황,피해 및 복구상황
- 보고.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 비상근무자 명단 및 근무시간, 비상근무일지 작성

※ 재난대책 휴일 및 야간근무자는 "유지관리 특별근무 관리기준"에 의하여 휴일.특별근무 실비를 지급

○ **기 타**

- 강우자료는 방재기상정보웹포탈(https://afso.kma.go.kr) 및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http://bangjae.chungnam.go.kr)의 강우현황에 따라 작성
- 주요저수율 현황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자료로 작성
- 대처상황 : **림스(RIMS)**재해관리에 입력된 자료
- 국민안전처 상황전파시스템 (http://side.safeworld.go.kr)

재난대책상황실 비상근무편성표

관 심, 주 의 단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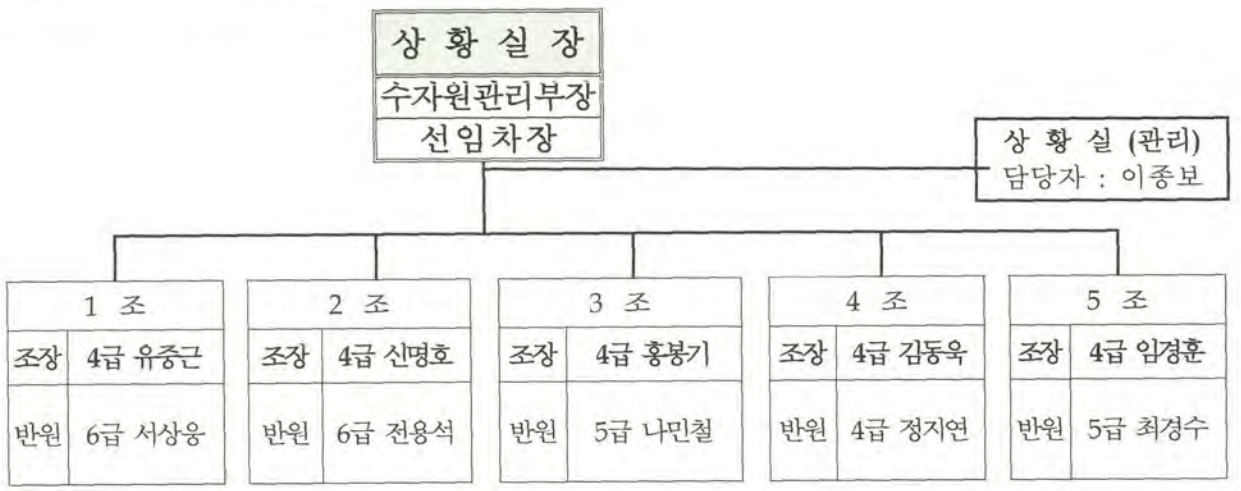

※ 관심단계는 일상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상황실장 판단하에 실시

※ 상황실장 교대는 선임차장이 하고, 주의단계(호우주의보 등) 이상이 3일 이상 계속될 경우 상황실장은 농지은행부장, 사업계획부장, 기반관리부장, 지하수지질부장, 기전기술부장 순으로 교대근무 한다.

경 계, 심 각 단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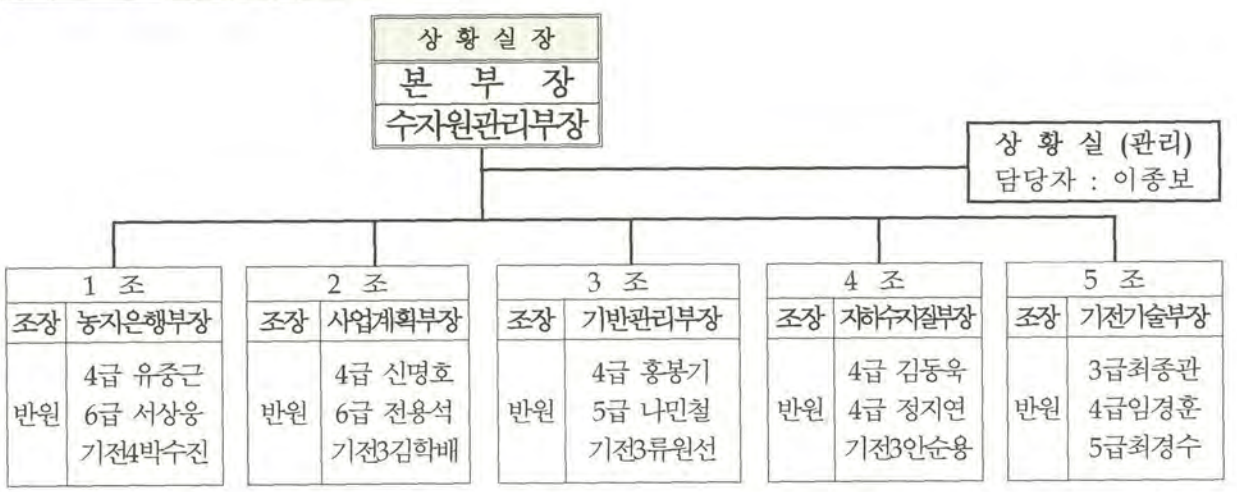

※ 상황실장은 본부장과 수자원관리부장이 교대로 근무

충남지역본부 상황실

1 재난관리 체계

가. 재해보고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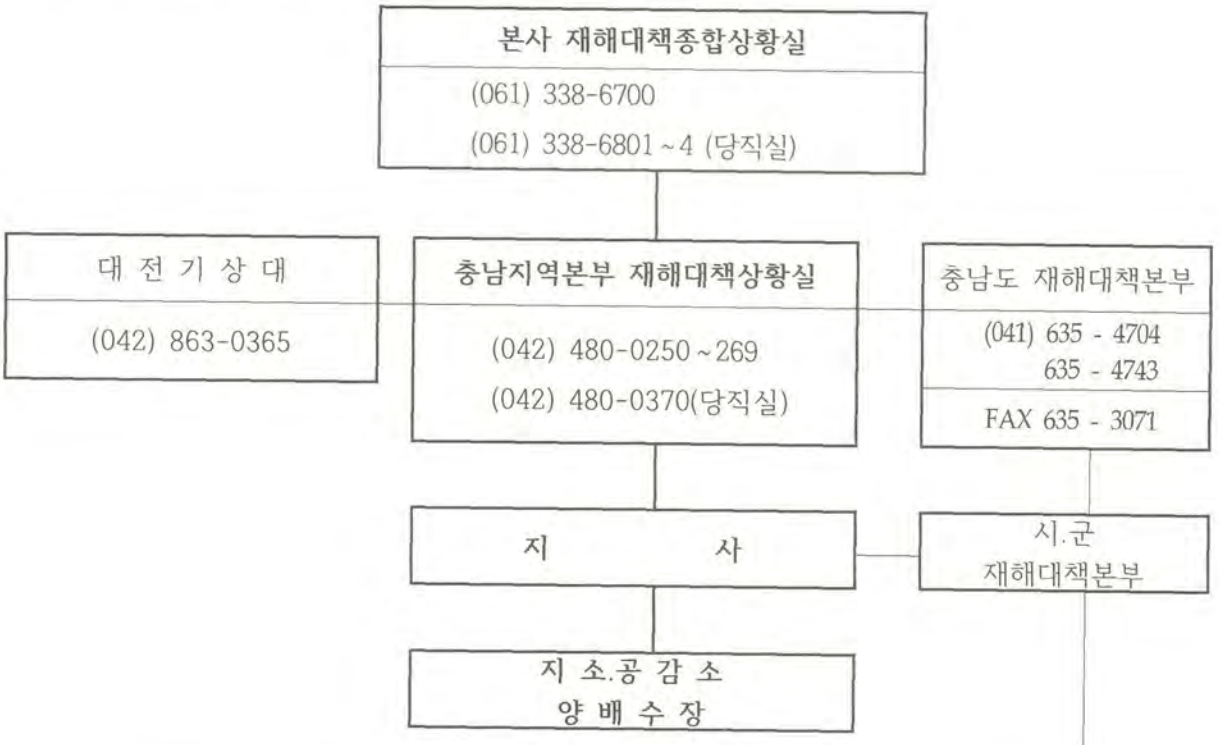

시.군	전화(041)	시.군	전화(041)	시.도	전화(042)	시.도	전화(044)
천안시	521-5572	금산군	751-2865	대전시	270-3119	세종시	300-3611
공주시	840-8649	부여군	830-2424	대전서구	611-6151		
보령시	930-3906	서천군	950-4419	대전유성구	611-5811		
아산시	540-2023	청양군	940 -2433				
서산시	660-2516	홍성군	630-1548				
논산시	730-3480	예산군	339-7753				
당진시	350-4551	태안군	670-2801				

나. 재해대책상황실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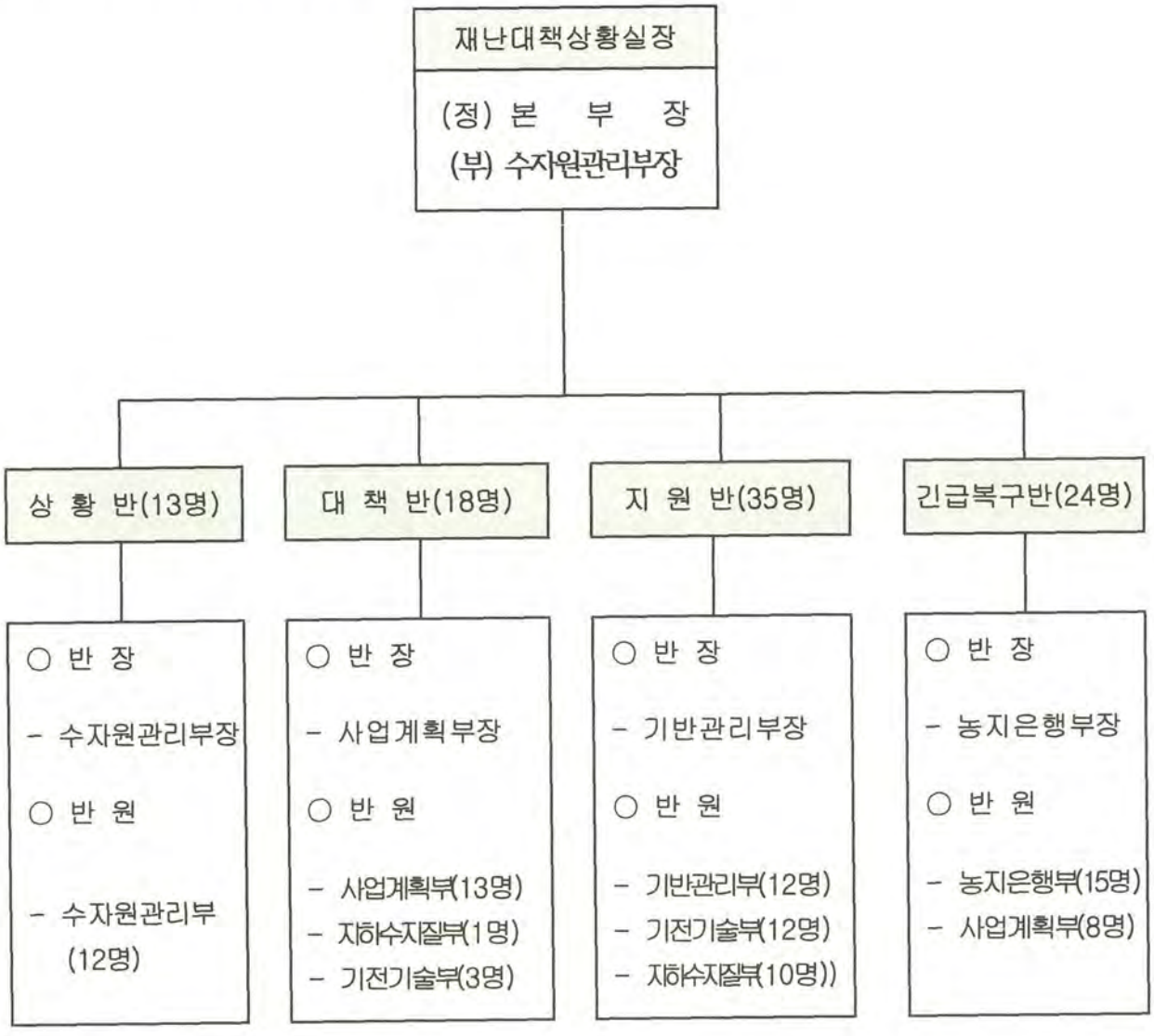

상 황 반

○ 재해대책 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와 사무개선에 관한사항

○ 유관기관 통신망 구성 및 유지에 관한사항

○ 예.경보 긴급대치 및 수난구조의 연락사항

○ 비상연락망도 운영에 관한사항

○ 기상개황 및 전망 수문자료 수집분석,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협조에 관한사항

○ 피해상황의 파악 및 보고

대 책 반

○ 응급복구, 응급조치, 공사명령등의 지시감독에 관한 사항
○ 피해조사 및 보고에 관한사항
○ 항구복구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복구작업 시행에 관한사항
○ 복구조치 및 현황파악에 관한사항
○ 복구예산 편성에 관한사항
○ 자재차량 인원동원에 관한사항
○ 홍수 방재 자재 확보 계획의 수립 및 배정과 수송에 관한사항

지 원 반

○ 유출분석, 홍수추적 및 예비 방류에 관한사항
○ 홍수조절 및 문비조작에 관한사항
○ 수문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사항
○ 저수지, 양.배수장 관리 및 재해업무 대책에 관한사항
○ 주요시설 및 관리현황 점검 및 대장작성에 관한사항
○ 유관기관의 재해대책 기술지원에 관한사항

2.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 락 처 (핸드폰)
	소 속	직위	성 명		
총괄	수자원관리부	부장	김영호	수자원관리부 총괄	042-480-0250 010-3738-8403
부원	〃	차장	이종보	재난대책업무 및 상황실 운영	042-480-0254 010-7184-7337
		사원	전용석	〃	042-480-0255 010-8801-7872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전충남본부

1. 재난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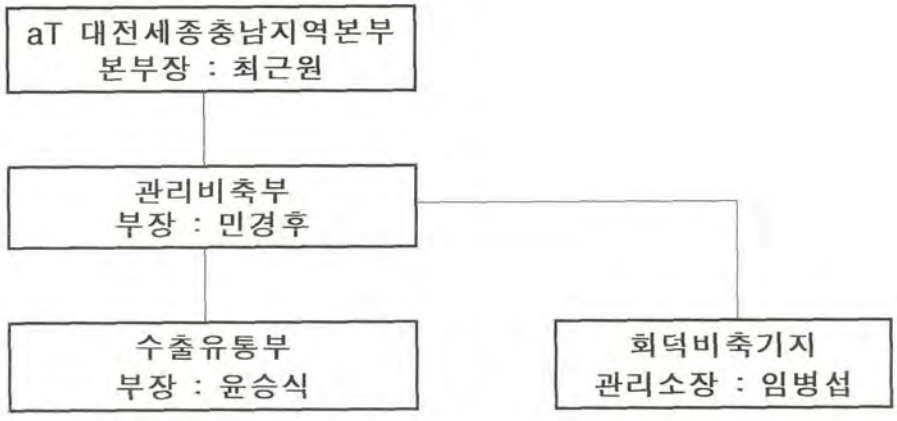

2. 주요 재난유형

- 풍수해, 지진, 설해, 가뭄, 황사, 폭염 등
-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

3.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총 괄	대전세종충남	본부장	최근원	지역본부업무 총괄	010-5685-2267
야 간	관리비축부	부 장	민경후	관리비축업무 총괄	010-4335-6713
	수출유통부	부 장	윤승식	수출유통업무 총괄	010-2774-9389
	회덕비축기지	소 장	임병섭	회덕비축기지업무 총괄	010-9005-9162
	관리비축부	과 장	박소연	사옥관리업무	010-6378-1678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사무실	팩스	핸드폰	
관리비축부	김새로나	389-5009	488-8546	010-4543-8851	menefertari@at.or.kr

4. 재해대책상황실 편성표

□ 총 괄 : aT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최근원

○ 현장관리 : 비축관리부장 민경후

○ 구성 및 임무 : 4개조 10개반 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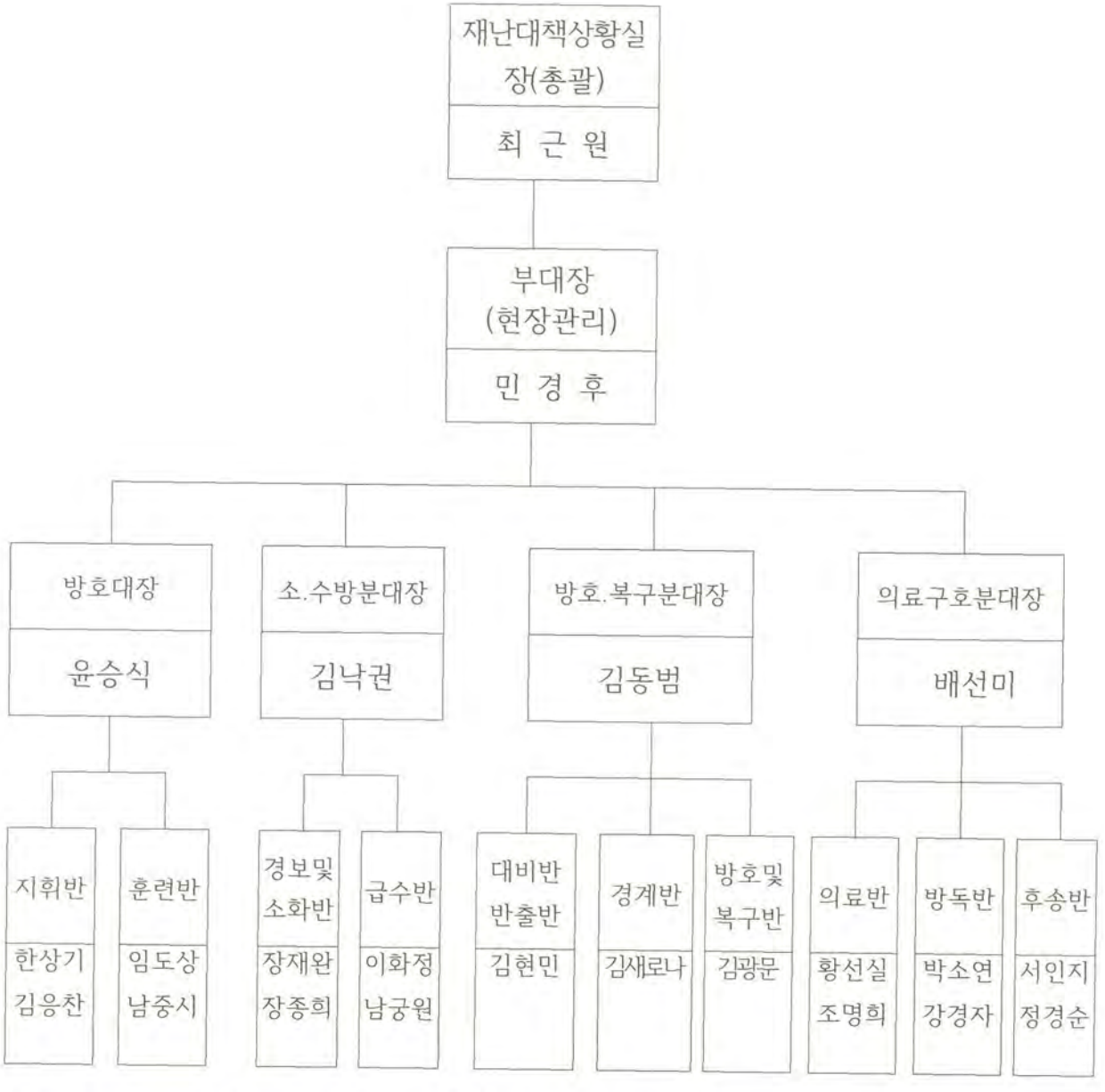

※ 총 23명(경비원, 미화원, 파견 포함) / 소수조직 중복편성 가능(무순) / 인사이동시 성명 교체

5. 소방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3,499.4㎡)

○ 주요시설 : aT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임대사무실 등

나. 상주인원 : 90명

○ aT 23명, 입주업체 68명

다. 소방시설 현황

시설종류	시설수	시설종류	시설수
소화기	40개	옥내 소화전	7개
감지기	97개	스프링클러 헤드	107개

라. 비상계단 및 대피소 현황

○ 비상계단 2개, 비상구 15개

○ 대피소 : 2개(지상, 옥상)

6.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신 고

○ 비상경보장치 가동, 소방서 신고(경비실 구내 1112, 소방서 119)

○ 내부계통 보고 또는 경비실, 기계실에 통보, 직원들에게 신속 전파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 소화 작업

■ 대 피

○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직원 분산 대피 유도

○ 대피 시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

○ 화재와 연기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으며 대피

■ 초기 소화

○ 발화초기에는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 화재를 신속히 진화

○ 화재원인을 확인하여 진압하며 연기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

○ 소화에 실패한 경우 연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출입문을 닫고 대피

■ 건물에 갇혔을 때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양말을 물에 적셔 문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숨을 짧게 쉰다

○ 실내에 물을 뿌리고 두꺼운 천이나 담요를 물에 적셔 화상을 입기 쉬운 다리, 손, 얼굴 등 노출된 부분을 감추어야 한다.

○ 문의 손잡이 등이 뜨거울 경우 문을 열면 매우 위험함

7. 부상자 관리 및 업무 행동요령

【경미한 부상】

① 부상 내용 확인 및 부상자와 동행(직원 1명)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

②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성명·연락처 등 파악

③ 본부 가입보험사(화재 : 수협보험, 가스 : 농협손해보험(주))에 사고 내용 즉시 통보

※ 연락처 : 수협보험 1588-1515, 농협손해보험(주) 1644-9000

④ 부상자의 치료비 발생 상황 확인 및 영수증 접수

⑤ 가입보험사에 결과 통보(* 치료영수증 첨부)

⑥ 보험사에서 치료비 수령 및 부상자에게 지급 조치

【중상 등의 경우】

① 사고 내용 확인 및 부상자와 동행(직원 1명)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

※ 을지대학병원 응급실(042-259-1119)로 후송(일반적으로 소방서 구조대원이 후송)

② 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성명·연락처 등 파악

③ 사옥 가입보험사에 사고 내용 즉시 통보

※ 연락처 : 02-3702-5823

④ 사고 원인 파악 및 사고 증빙물(사진, CCTV 등) 확보

⑤ 부상자에 대한 병원 방문 위로

※ 사회적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관리

33.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Ⅰ. 기본방향

- ❍ 농업인에 대한 재해예방 행동요령 계도 및 안전관리 홍보실시
- ❍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체제로 신속히 전환, 재난발생에 적극 대응
- ❍ 해외 가축전염병에 대한 동향파악을 강화 및 국내유입차단을 위해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시스템 구축 및 교육, 홍보강화
- ❍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 할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지원복구체제 전환으로 인적.물적 피해 및 농업인 불편 최소화

Ⅱ. 재난안전관리 추진사항

- ❍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대책 추진
- ❍ 재난발생 시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매월 4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점검 실시/각 계통사무소
- ❍ 영농지원상황실 설치 . 운영체계 정착 (지역본부 및 전계통사무소)

평상 시	**영농지원상황실**
	· 평일 : 정상근무 (업무시간 중) · 토요일 및 휴일 : 09:00- 일몰 시 까지
재해 시	**<재해대책상황실>**
	· 재해우려 및 발생시 [기상특보 발표시(예비특보 발효 포함)] - 상황 종료 시 까지 비상근무

Ⅲ.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1.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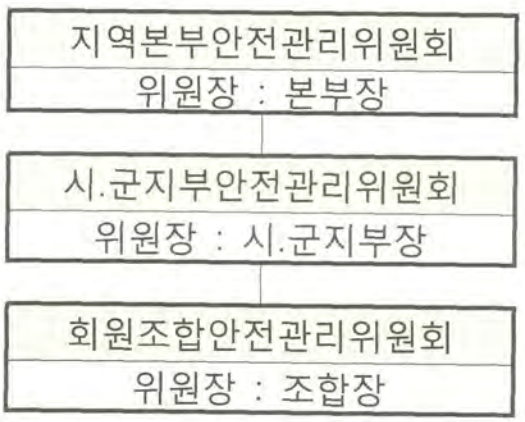

분 과 위 원 회

- ○ 풍수해(가뭄, 폭염, 쓰나미) 재난대책위원회 : 농촌지원단장
- ○ 전기, 유류,가스 재난대책위원회 : 경영지원단장
- ○ 건축물, 시설물 재난대책위원회 : 경영지원단장
- ○ 가축질병 재난대책위원회 : 축산사업단장
- ○ 지역본부 시위관련 안전관리위원회 : 시위관련 업무 단장
- ○ 기타 안전사고예방 대책위원회 : 경영지원단장

2. 안전관리위원회

가. 구 성

- ❍ 위원장 : 본부장
- ❍ 간 사 : 경영지원단장
- ❍ 위 원 : 경제사업부장, 경영지원부장, 농촌지원단장, 축산사업단장, 관련부서 단장

나. 운영방법

- ❍ 대규모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 우려 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

다. 기　능

- ❍ 각 계통사무소별 재난·재해 및 사고예방대책 사전수립 및 추진
- ❍ 소관 재난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집행
- ❍ 재난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관리
- ❍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재난현장 복구지원
- ❍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협조체제 유지

【실무반 편성】

구　분	관련부서	임　　무
상황반장	?총괄팀장	?・상황 총괄 및 보고, 부실별 업무조정
계획통제반	농촌지원단 경영지원단	?・재해상황 파악 및 정보수집 / 상황보고 ?・재해대책 수립 및 대비책 강구, 조치총괄 ?・위원회운영 및 개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예산행정반	경영지원단 경제지원단 축산사업단	?・재해대책추진에 따른 각종지도,지원수행 ?・계통사무소별 문서전달(유선, FAX 등) ?・위원회운영 행정조치
자 재 반	경제지원단	?・재해지역 피해자에 대한 기자재공급 ?・피해자재 및 생활물자 이재처리
유 통 반	경제지원단 연합사업단	?・피해농산물 유통대책 수립지원 ?・재난 응급복구 물자, 자재 비축 관리
금 융 반	상호금융 지원단	?・각종재해대책 자금지원 및 사후처리 ?・재해농가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 및 연기

【실무반편성 운영지침】

·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재해 장기화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 근무조 편성 : 2개조로 편성, 주·야간 2교대 근무실시

※ 주간 근무조:08:00 ~ 20:00, 야간 근무조:20:00 ~ 익일08:00

Ⅳ.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

1. 풍수해 대책

가. 예방대책

□ **재난관리교육·훈련 및 홍보**

- ❍ 농업재해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비 교육
- ❍ 우기 전 배수시설 중점점검·정비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
- ❍ 농업인의 재해예방대책 행동요령 계도 및 점검 강화
- ❍ 재해취약시설 및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점검 강화

□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 영농기전 수리시설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상황 점검 조치
-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 재해취약시설 및 저지대 상습 침수 농경지 개보수사업 우선추진

□ **재난의 근원적인 예방대책 강구**

-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및 시설지도
- ❍ 수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나. 대비대책

□ **자재의 비축·수급과 장비 및 시설의 확보**

- ❍ 수방자재 확보·비축 및 단계별 동원장비 투입계획 수립
- ❍ 재난발생에 대비한 상시 응급복구 및 수방장비 비축
- ❍ 인근 공사장 장비, 인력, 자재를 최대한 조기 지원
- ❍ 유관기관, 단체, 인근 군부대 등과 협조체제 유지

□ **기상상황 신속입수, 전파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 ❍ 농업인에 대한 풍수해 예방대책 홍보 등
- ❍ 전 계통사무소 비상근무체제 정비(지역본부, 시군지부 등)
-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관리지도 홍보 강화

□ **시설물 관리 및 대비 강화 및 대피계획 수립**

❍ 집중호우 등 위기상황 대비책 강구

❍ 시설물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및 점검·정비 등 수리시설 관리 강화

❍ 인근 시·군 및 경찰,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 유지

다. 대응대책

□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체계 확립**

❍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각 계통사무소 비상근무 실시 및 재해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단계별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재해발생시 지자체 및 계통사무소간 상황파악 유지와 정보교환

□ **재난정보의 수집 및 공유**

❍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간 재난정보 긴급수집·공유

❍ 피해 확산방지 및 응급조치를 위한 초동 대응팀 파견

라. 복구대책

□ **피해확산 방지 조치**

❍ 침수 농작물 물빼기 및 병충해 긴급방제

❍ 소생불가 및 유실, 매몰지역 복구 후 대파대책 강구

□ **응급복구 지원**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민·관·군 협조 일손 돕기 적극지원

❍ 재해대책 자금 및 재해복구자금 긴급지원

- 피해상황 파악 후 재해복구자금 긴급지원
- 재해농강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 등 필요조치 강구

❍ 임직원 성금모금 추진(계통사무소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

마. 농업분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참고)

□ **농경지**

❍ 기상정보 및 재해요인 정밀분석으로 사전점검 추진

- 재해상습지에 대한 각종 기상요소별 피해상황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 지역별 특별 관리대책 수립시행

❍ 재해 유형별 종합대책 추진

- 위험지역은 안내판 등 경고문을 설치하여 인명사고 예방

❍ 일손돕기 추진

- 지형 또는 시설물 구조상 중장비로 작업이 어려운 곳은 지자체 등과 협조를 통하여 피해시설 신속히 복구
- 농경지와 저수지 및 담수호 주변 쓰레기 처리
-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 유지

❍ 인력 및 장비 동원

-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통사무소 장비 등 적극지원

□ **원예작물 및 비닐하우스**

❍ 수해대책

- 피해우려지역 점검 등 순찰강화
- 수확기에 도달한 고추 등 조기수확 및 지주보강과 결속 보완
- 세력이 약한 어린나무, 열매가 많이 달린 가지는 지주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 폭우로 인한 쓰러짐 방지
- 침·관수 지역은 조기 배수, 작물의 잎줄기에 묻은 흙앙금 등 불순물 세척
- 배수 후 표토를 긁어주어 토양의 공기유통을 촉진
-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 실시

❍ 풍해대책

- 풍해 상습지역 방풍림, 방풍벽 설치, 지주 재배작물은 지주대 보강
- 과실 낙과방지제 살포 및 낙과 시 상처방지를 위해 짚 등으로 표토 피복
-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은 가능한 조기 수확

□ **가축.축사 및 초지관리**

❍ 축사 및 잠사

- 축사주위, 방목장, 분뇨처리장 등 배수로 정비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 10일분 이상 사전에 비축
- 가마니, 마대, 모래, 새끼 등 사전에 준비하여 대책강구

❍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
- 재해예방대책 지도 및 홍보
  · 매몰 등 피해예상 지역은 배수로 정비 등 예방조치 계획을 통보
-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등의 신속한 지원
  · 재파종 대상지역은 소요종자를 알선하고 파종지도

2. 가축질병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 민간 가축방역체계 구축, 가축질병 예방대책 수립·시행

❍ 가축 질병 사전 검색을 위한 행정기관 중앙·지역 예찰 협의회 참여 및 협조 등 예찰활동 강화

❍ 가축질병별 긴급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발생상황별 신속한 방역 대응조치 체계 구축

❍ 축산농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가축질병 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나. 대비대책

❍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재출현 또는 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 수행

❍ 발생 상황별 진행상황에 따라, 시군지부, 지역축협 방역조직의 효율적 가동으로 적절한 방역추진 대응

❍ 지역축협에서 시군 가축방역협의회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일선 계통 사무소의 주요 조치사항 점검 및 개선책 강구

❍ 발생상황별로 양축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정부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다. 대응대책

- ❍ 전 계통사무소의 전사적인 위기상황 대처로 가축질병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을 도모
- ❍ 위기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위기 유형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확산차단 및 조기근절
- ❍ 각 계통사무소 가축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강화
- ❍ 가축질병 분야 위기 상황 발생원인 및 위기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조치 추진 및 정부협조
- ❍ 위기극복을 위한 전 국민 동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국민 불안 심리 해소 노력

라. 복구대책

-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기기간 중 발생한 사례 종합 및 평가
- ❍ 살 처분 농가에 대한 재황을 위한 지도 지원
- ❍ 가축질병 예찰활동 지속 실시 및 농가지도
- ❍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역대책 강구

3. 금융안전사고 예방대책

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기본방향**

- ❍ 금융점포 자체경비체제를 강화하여 영업점 및 주변에서의 피탈사고와 도난사고를 방지하여 고객과 농협의 생명과 재산보호
- ❍ 금융점포 현황 ('15.02.28기준)

구 분	농협은행	농·축협	계
점포수	65	144	211
비율(%)	31	69	100

□ 추진전략

- ❍ 사고예방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준칙, 지도문서 등) 준수
- ❍ 경비전문 인력 운용, 방범시설 및 방범 장비의 완벽한 보강
- ❍ 내실 있는 「금융점포 강·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 실시
- ❍ 금융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자위방범체제 확립
- ❍ 자금 현 수송 시 현송전문회사 적극 이용
- ❍ 사건 사고 발생 시 시군지부 단위 신속한 수습 조치 및 보고
- ❍ 규정에 의한 신상필벌 원칙 준수

나. 금융안전사고예방대책

□ **기본방향** : 금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금융점포자위방범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인과 고객으로 부터 신뢰받는 새농협 구현

□ 추진전략

구 분	주 요 추 진 내 용
경비전문 인력운용	?○ 사무소단위 경비전문 인력 직무(집합)교육 실시
	?○ 소수인원 근무점포 경비원 배치 특별 추진
방범시설 장비개선	?○ 무인 기계경비회사 책임경비체제 구축
	?○ 방범장비(연막분무기, 캐치넷 등) 보유
	?○ CCTV 예산 지원으로 노후기기 전면교체 및 통합 ????(영업점, 365자동코너) 유지보수체계 도입
자금현송 방범강화	?○ 자금 현송전문회사 이용 확대 ?○ 자금 현송안전가방 확보(직원 현송업무 수행시)
교육홍보 지도점검	?○ 금융점포 자체경비실태 지도·점검 ?○ 사고예방 비디오 영상물 및 포스터 제작 지원
기 타	?○ 「금융점포 강·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 내실화 ?○ 점외 365자동코너의 일괄 외주관리 확대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방범 협조체제 구축

다. 분야별 추진사항

□ 자체경비강화대책 추진

❍ 경비전문 인력확보 운영 : 금융점포당 경비인력 1명이상 확보 제도화
- 경비원 근무수칙 준수 및 교육실시

❍ 방범시설 및 장비보강

□ 경비회사 무인기계경비업무 관리 철저

❍ 무인기계 경비 비무장(NO SET)발생방지 철저

※ 비무장(NO SET) : 담당자의 경비장비 오작동 및 노세트로 인하여 경비 구역 내부에 범인의 무단출입 또는 범죄행위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로서 365자동코너 및 금고실 노세트 예방을 위하여 연동세트장치 설치

❍ 경비회사 무인기계 경비 관리감독 철저
- 사무소장 : 수시확인감독 및 책임자를 지정 업무수행토록 조치
- 기계경비관리 책임자 : 자기카드, 출입문 열쇠의 관리철저

❍ 면식범에 의한 사고예방 대책강구
- 무인기계 경비세트 후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 휴일 출입계획은 경비회사에 사전 연락
- 담당자 신상변동사항 발생 즉시 경비회사에 통보조치

□ 자금 현 수송 간 금융안전사고예방

❍ 자금 현 수송은 현송전문회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함

❍ 자체 현송 시는 현송인원 준수, 현송안전가방 사용, 방범장 비휴대, 자체 차량이용 등의 현송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

□ "금융점포 강.절도 사고예방의 날 행사" 실시 철저

❍ 행사일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행사내용
- 창구사고예방 모의훈련 실시
- 자체점검표에 의거 방범시설 및 장비 점검
- 금융안전 사고예방 관련 직원 교육 실시
- 행사실시 전일에 계통사무소장 및 조합 본소 전무 핸드폰에 행사 실시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취약시기 자체경비강화 및 비상 신고체제 확립**

❍ 취약시기(설, 추석, 연말연시, 휴가철 등) 경비강화

❍ 비상 신고체제 확립

- 비상벨, 리모콘 등의 항시 최적 상태유지(평시 점검확인)
- 전 직원 휴대폰에 112 및 인근경찰관서 전화번호 단축번호에 입력 활용
- 비상벨 위치 숙지 및 모의훈련을 통한 직원 개인별 임무숙지
- 일과시간 이후 경비당번의 착신통화 전환 장치 운용 철저

□ **금융안전 사고예방업무 점검 및 상.벌 실시**

❍ 취약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정기, 불시, 방문점검 실시

❍ 금융안전 지도·점검센터(F·S·T·C)전화점검 실시

❍ 금융안전사고예방 유공 외부인사·내부직원 표창(매년)

❍ 금융안전 사고예방 이행소홀 직원의 『주의촉구』 조치

(참조1)

충남지역본부 종합상황실 설치 · 운영체계

가.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나. 운영방법

❍ 대규모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 우려 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구성하여 운영

3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태안어업정보통신국

1. 재난관리체계



2.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가. 조직 및 운영

○ 태안어업정보통신국

- 상황실 무휴 운영(단, 주간국은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의 지시가 있을 때 무휴 운영)

○ 회원조합

-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의 지시가 있을 때 상황실 운영

나. 기 능

○ 수산양식물 및 어업관련 시설 등 피해실태 파악·보고

○ 피해지역 초동대처

○ 출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수산시설물 피해예방지도

○ 기상 특보사항 어업인 신속 전파

○ 기상 특보시 출어선 안전조업 및 대피지도

○ 수산시설 안전관리 철저로 피해 예방지도

다. 근무조 편성

○ 기상악화 시 상황실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편성 강화

라. 근무방법

(1) 근무 교대시는 다음 사항을 책임자간 인계인수

○ 피해상황 및 응급 복구사항

○ 해난사고 및 구조상황

○ 기상특보 및 현지기상, 기타 주요 조치사항 등

(2) 지역 재해대책상황실의 지휘감독은 회원조합(조합장), 통신국(통신국장)

3. 재난상황 보고

가. 어선대피

○ 통신국장은 기상특보 발효시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의 대피지시에 의거 대피대상 출어선을 단계별로 대피시키고, 대피현황을 4시간마다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은 필요시 추가 보고

나. 재난예방활동

○ 회원조합장 및 통신국장은 태풍내습시 단계별 조치사항중 비상근무자 및 재난예방독려반 활동현황을 단계별 특보 발령후 3시간 이내에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에게 보고

○ 일일 활동현황은 05:00, 15:00를 기준하여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에게 보고 및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은 이를 취합,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피해보고

(1) 회원조합장은 관내 조합원 피해발생 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시·군·구) 에 신고토록 지도하고, 관내 피해현황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군·구)에 통보하여 피해집계에 반영 조치하고, 관할 통신국에 통보

(2) 통신국장은 관내 피해현황을 취합하여 중앙회 재해대책 상황실장에게 보고

(3) 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장은 피해발생 전역의 피해현황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4) 피해보고 요령

(가) 발생보고

○ 보고시기 : 즉시

○ 보고내용 : 피해현황

(나) 일일보고

○ 보고시기 :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15:00기준

○ 보고내용 : 피해현황

(다) 최종보고

○ 보고시기 : 재난원인 종료 후 2일 이내

○ 보고내용 : 피해현황

(라) 확정보고

○ 보고시기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액 최종 확정시

○ 보고내용 : 확정 피해현황

4. 재난예방대책의 종류

가.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 및 관리

(1) 일제점검(별지 마) 및 위험시설 지정 : 2~4월

○ 시설별로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점검을 실시

(2) 시설물 보수·보강 시행 : 4~12월

나. 하절기 재난(태풍·호우) 예방대책

(1) 사전 대비기간(3월~5월) 및 재해기간(5.15~10.15)설정 운영

(2) 해상기상 상시파악 및 상황실 무휴(주간국 제외)운영

(3) 재난예방독려반 편성 운영

다. 백중사리 예방대책

(1) 사전대비 점검기간 : 8. 18 ~ 9. 7(음력 7. 15일 이전 10일간)

(2) 어항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예찰

(3)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사전 확보

라. 동절기 재난(풍랑·대설·한파 등) 예방대책

(1) 재난대책기간 설정운영 : 12. 1~다음해 3. 15

(2) 어선통제기준 상향조정 홍보 : 주의보시(15톤미만→30톤미만 출항통제)

* 현지기상이 풍랑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3)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의 설해(雪害)·동해(凍害)경감대책 강구 추진

마. 지진해일(쓰나미)대비 훈련

(1)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해일발생을 가상한 훈련실시

(2) 본회(안전관리실) 및 조합 주관 실제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구조·구난, 화재진압, 응급의료, 응급 복구훈련 등

(3) 지진해일 대응활동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정보와 연계 대응

비 상 연 락 망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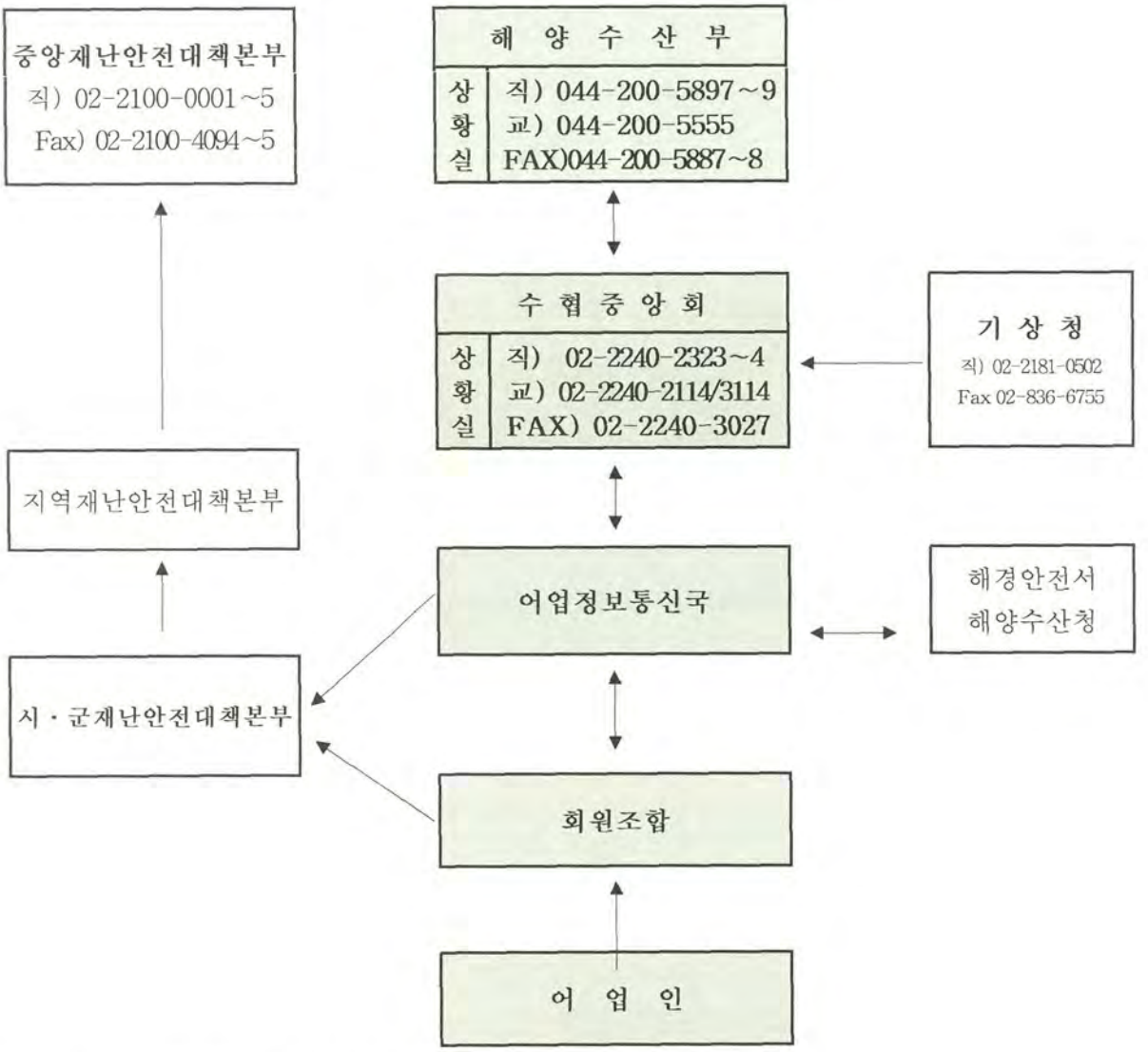

4.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분야	담 당			업무분장	연락처 (핸드폰)
	소속	직위	성명		
총괄	태안어업 정보통신국	통신국장	김량훈	· 재난 상황 관리 업무 총괄	041-675-1226 010-9610-5920
야		담당자	서경필	· 수산재난피해사항 파악 및 접수·전파 · 수산재난발생현황 접수·전파 및 각종 상황처리	041-675-1226 010-3297-0321
		당직근무자		· 유관기관 업무연락	041-675-1226

35. 산림조합중앙회충남지역본부

1. 재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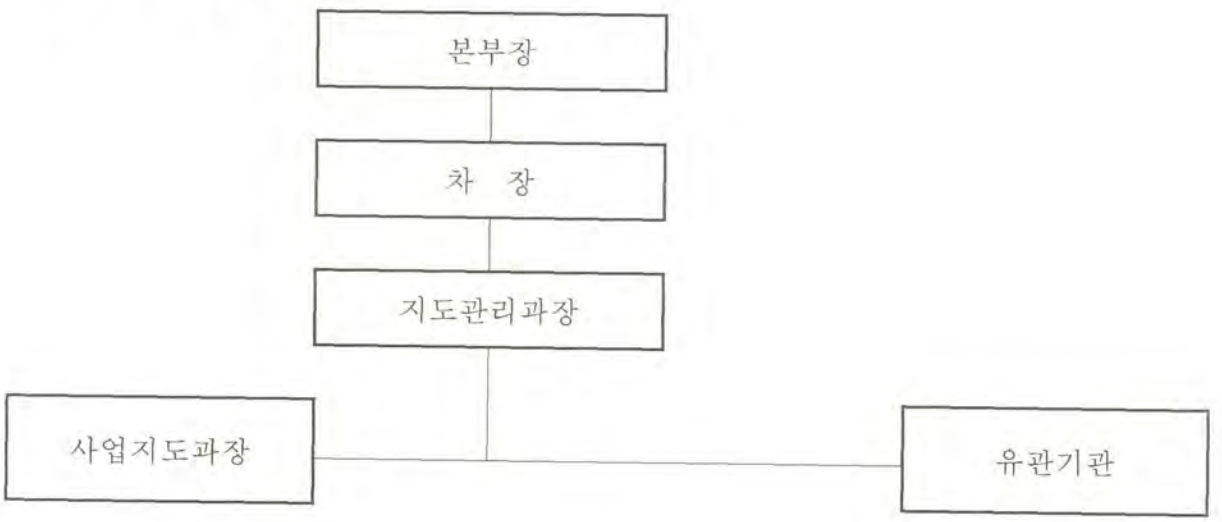

2. 주요 재난유형

가. 산림재해 예방대책

(1) 단기 응급대책

○ 장마기 이전에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우회수로, 마대쌓기, 비닐피복등 사전보완 조치

- '10 ~ '15까지 기설임도 및 ' 2015임도시설지 피해발생 예상임도 주변
- 산림훼손지, 급경사지등 피해발생 예상지
- 임도 주위에 있는 농경지, 가옥등 연접된 절개지
- 도로, 철도 주변의 절개지 및 임목벌채지, 산불피해지
- 묘포시설지

○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사전 안전교육실시

- 산사태 발생시 대피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 응급조치요령 및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복구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마대, 비닐, 작업도구 등)

○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조직 및 수시점검

○ 기 생산된 임산물을 조기 반출하여 피해 사전예방

(2) 항구대책

○ 기 지정된 산사태위험지는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중점관리

○ 산사태 위험지의 일제조사 실시 누락지 는 집중 호우전 예방작업 실시

○ 유관기관과 협의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예방작업 지원

○ 산사태 위험지중 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도 유관기관과 협의 집중호우시 이주대책 지원

○ 임도시설, 묘포지에 대해 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안전대책 강구

○ 임도시설시 절·성토사면 피복공사 철저 이행으로 토사유출 방지

나. 산림재해 발생시 복구대책

(1) 응급복구대책

○ 피해발생 우려 주민의 안전지대 대피지도

○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신속하게 보고 후 그 사항을 산림조합중앙회 및 중부지방산림청과 시·군(산림녹지과)에도 보고

○ 피해보고와 동시 응급복구를 요하는 장소에는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우선복구 실시

- 산사태(사방사업 포함) : 우회수로, 비닐피복 흙마대 쌓기, 통나무 울짱얽기 등
- 임도 : 우회배수로 설치, 측구정비, 암거의 유수 장애물 제거 (나무가지, 토사, 돌등) 노면의 매몰 토사정리, 편책공

○ 피해액은 재해피해액 산정기준단가에 의거 정확히 산출

○ 응급복구를 위한 보유장비 지원

- 임도, 휴양시설,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시 응급복구·대민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체계에 따라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장비를 지원받아 조치

구 분	복 구 지 원 명 령 기 준
민유림 지역	시장·군수 지원요구 → 지역본부장 지원지시 → 중앙회장보고
국유림 지역	국유림관리소장 지원요구 → 사업소장 지원지시 → 중앙회장 보고

※ 장비보유현황(충남지역)

기 관 별	장 비 보 유 현 황		지원가능 지 역	비 고
	굴삭기	덤프트럭등		
계	6	35		
천안조합		4	천안	
공주조합		5	공주	
보령조합	1	2	보령	
아산조합		4	아산	
서산조합	1	3	서산	
논산·계룡조합		2	논산·계룡	
당진조합			당진	
금산조합	1	1	금산	
부여조합		2	부여	
서천조합			서천	
청양조합	1	6	청양	
홍성조합		2	홍성	
예산조합	1	2	예산	
태안조합	1	2	태안	

※ 위 이외의 지역 응급복구시 인근 해당지역 산림조합장비 지원

(2) 항구복구대책

가) 산사태 피해

○ 전국 산림조합이 보유한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복구

- 가옥, 학교등 인명피해 지역

- 도로, 철도등 공공시설 피해지역
- 하천, 제방, 농경지등 기타지역

○ 지정 발주관서와 협의하여 복구사업 장비 및 인력 지원

○ 복구사업은 최단기간내 완료

나) 기타피해

○ 사무실 및 통신시설의 우선복구

○ 묘포지의 침수지역은 조기배수 및 병충해 발생에 대비한 응급방제 작업실시

다. 방재대책을 위한 행동계획

(1) 산사태 위험지역은 기상예보에 따라 산사태 발생 예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조치

가) 발령권자 : 시장, 군수

나) 예보의 종류

구 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해 제
연속강우량	100~200㎜미만	200㎜이상	재해우려가 없거나 재해발생 사유가 소멸된 경우
시 우 량	20~ 30㎜미만	30㎜이상	
일 강 우 량	80~150㎜미만	150㎜이상	

다) 신호의 방법

○ 주의보 및 해제신호

○ 확성기, 전화, 구두 또는 게시공고

○ 경보(경계) 신호

싸이렌으로 5초 간격을 두고 15초씩 10회 경음

○ 라디오, TV, 신문에서 호우주의보(경보) 및 폭풍우, 태풍주의보(경보) 보도시 산사태주의보(경보)로 가름

(2) 예보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가) 산사태 주의보시

○ 소속직원 교대 비상근무

○ 산사태 위험지 주민에게 신속한 대피 지원

○ 위험지에 따른 우회배수로, 비닐피복등 필요한 대응조치

○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제 작업도구 사전확보

○ 대피장소 마련

나) 산사태 경보시

○ 소속직원 교대 비상근무

○ 산사태 위험지 주민에게 신속한 통보

○ 위험지의 순시강화

○ 피해권내 주민대피 조치

○ 응급복구 준비

※ 강우가 그친 후로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까지 산사태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어 있으니 주민대피등 행동요령에 참고

3.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업 무 분 장	연 락 처
	소 속	직 위	성 명		
총 괄		차장	김창수	- 산림재난 총괄	010-4414-3515
주	지도관리과	과장	김준성	- 유관기관 업무연락	011-9807-1158
야	사업지도과	과장	신광일	- 산림재난 관련	010-5209-7999
		과장	김현호	- 산림재난 관련	010-6317-0205

36.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총국

1. 목적

○ 재난방송은 긴급 재난·재해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에 기여

2. 방침

가. KBS재해방송은 TV·라디오 방송을 모두 포괄하며 1TV와 1라디오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방송을 원칙으로 하며 단, 피해가 국지적으로 판단될 경우 총국 단위의 자체 재해방송도 실시

나. KBS재해방송은 공공기관의 방재 담당부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도국장이 편성제작국장과 협의하여 결정 및 지휘

다. 재해방송은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와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3. 재난방송의 절차

가. 일과시간 내의 재난방송은 보도국장이 편성제작국장과 협의하고 총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나. 일과시간 외에는 재난방송단장(보도국장) 또는 보도 당직책임자가 결정한 사항을 당해선임자가 TV와 라디오MD에게 통보

다. MD는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즉시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취함과 동시에 지휘 계통을 밟아 보고한 후 방송 여부를 통보받음

라. 전항에 의한 조치가 완료되면 재난방송단장의 지휘 아래 재난방송을 실시

마. 재난방송이 끝나면 재난방송 보도책임자는 방송 종료 사항을 MD에게 통보하여 정규방송이 송출되도록 조치

4. 재난방송의 채널 운용

가. 재난방송의 채널은 1TV와 1라디오를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즉각적인 운용이 불가능 할때에는 자막과 아나운서 멘트로 재난상황을 전달

나. 재난의 정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고 매우 긴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2TV와 2라디오, 1FM, 2FM 등으로 순차적으로 병행하여 실시

5. 재난방송의 절차

가. 재난방송의 편성은 편성제작국장 책임하에 실시

나. 재난방송에 관한 편성회의는 편성제작국장 주관하에 실시

다. 재난방송 편성회의 결정사항은 선 시행, 후 보고 형식을 취함

라. 재난방송 편성회의에서는 프로그램의 형식, 내용, 진행 요령, 제작비 규모 등을 정할수 있음

마. 편성회의 결정사항은 제작 관련부서에서 즉시 시행하고, 실시결과는 편성제작국에서 보관 유지

6. 재난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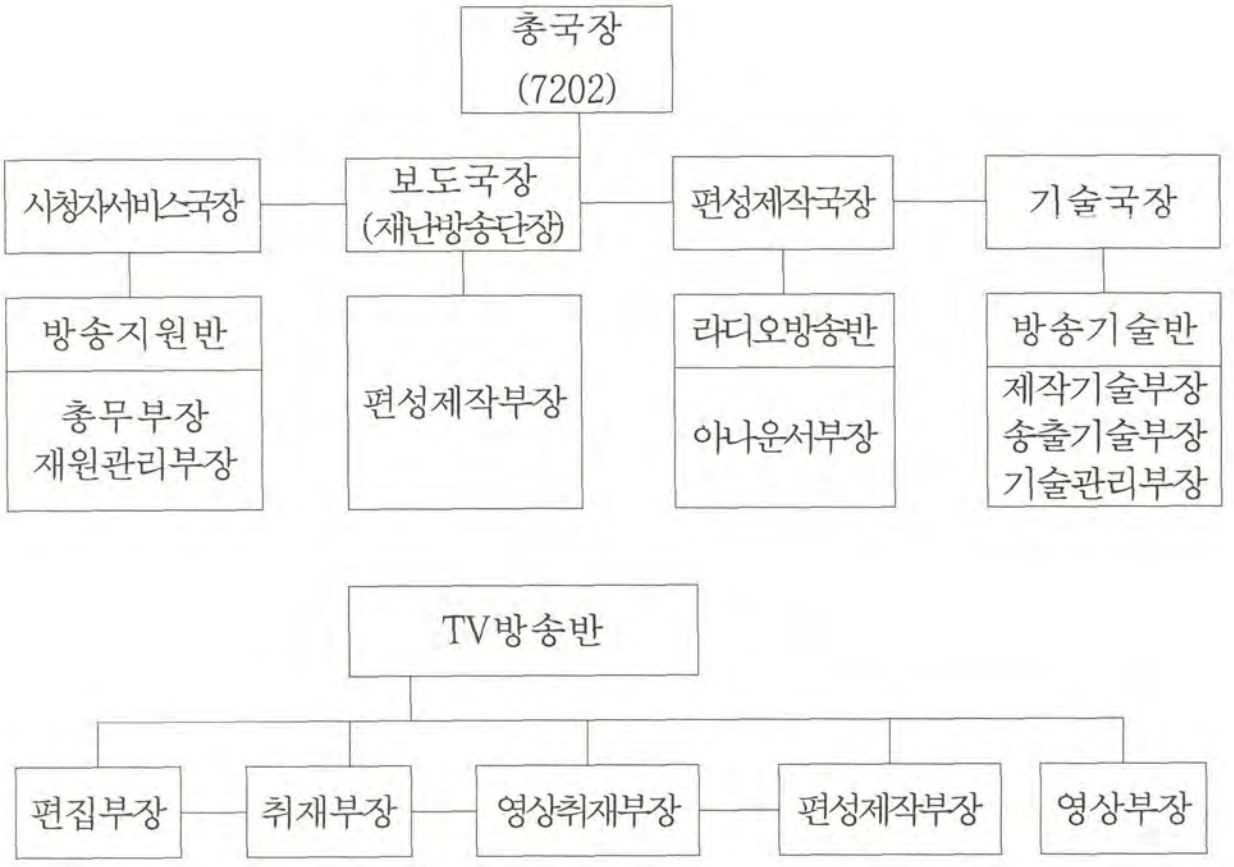

7. 유관기관

기관명	기관명
대전시청	충청남도청
대전시 소방본부	충남 소방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농업기술원
금강홍수통제소	KT 충남본부
대전지방기상청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부

8. 주요 재난유형

○ 집중호우, 태풍, 폭설, 강풍, 지진, 대형사고 등

9.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비상연락망

▣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분야	담당		업무분장	연락처
	소속	직위		
총괄	보도국	국장	재난방송 총괄 지휘감독	470-7410
	편성제작국	국장	재난방송 지휘	470-7310
	기술국	국장	재난방송 기술업무 지휘	470-7510
	시청자서비스국	국장	재난방송 지원업무 지휘	470-7110
담당	편성제작국	제작부장	재난방송 프로그램 편성	470-7330
		편성부장	TV 스파트 제작과 TV프로그램 제작	470-7320
		아나운서부장	라디오 스파트 제작과 라디오 재난방송	470-7350
		영상부장	재난방송 현황 중계차 영상화면	470-7360
	보도국	편집부장	재난방송의 구성과 진행, 각종 CG제작	470-7420
		취재부장	재난방송 단신기사와 리포트 공급 타방송 모니터, 중계차, 기자 배정	470-7430
		영상부장	항공촬영, ENG 등 재난방송 현장 영상 수중카메라, SNG 등 특수장비 확보	470-7460
	기술국	제작기술부장	재난방송관련 기술업무	470-7520
		송출부장	재난방송 관련 송신업무	470-7590
	시청자서비스국	총무부장	재난방송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차량지원	470-7120
		재원관리부장	재난방송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470-7140

▣ 재난업무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사무실	팩스	핸드폰	
총무부	김운태	470-7125	470-7699	010-3193-0303	yooco@kbs.co.kr

37. 독립기념관

제1장 총 괄

1. 목 표

○ 안전사고 예방으로 관람객 안전 확보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관람객 및 방문객, 임·직원, 경내종사자의 피해 최소화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독립기념관 보유 자료·유물의 안전한 반출 및 보존

○ 건축물, 구축물, 각종 시설물, 전시물, 전기.기계.방재시설(이하 "장비시설"로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안전관리 기준 확립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

2. 추진방향

○ 수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으로 안전의식 고취

○ 민방위 훈련시 안전 훈련 병행

○ 소관업무별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보완

○ 소관 업무별(부서·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건물, 구축물,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점검 실시

○ 실내.외 전시물 및 자료의 파손, 도난에 대한 안전관리와 예방

○ 각 부서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소속직원 정기안전교육 실시

3. 기관별 역할과 책임

○ 독립기념관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지리적으로는 독립기념관 경내(부지내), 인적으로는 관람객을 포함한 입장객, 경내종사자, 임.직원 등이며, 물자는 독립기념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 등임.

○ 독립기념관 경내에서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관람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물자를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함.

4. 재난.안전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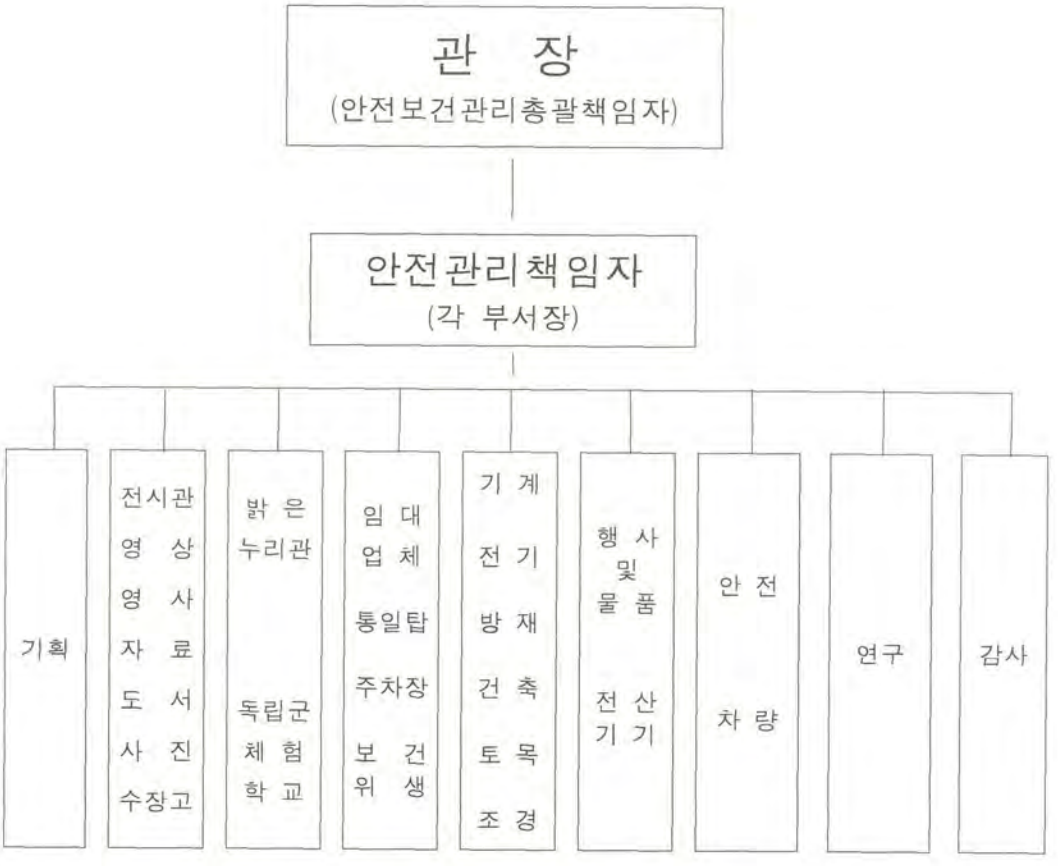

※ 『분임 안전관리자』는 부서별로 선임하여 운영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1. 자연재난 관리대책

1-1. 태풍 및 풍수해 대책

가. 개요 (목적)

○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나. 주요내용

○ 예 방 : 절개지 등 산사태 등 풍수해 발생 우려 지역 수시 점검

○ 대 비

.민방위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 정기 실시

.재난 발생 우려 시기 토목·건축공사 중단 또는 최소화

.소관부서별 주어진 업무에 맞는 사전 예방 및 대비활동 실시

○ 대 응

.재난지역 일반인 접근 금지 설정 및 비상인력 배치

.소방서 및 경찰서, 한전 등 긴급 구호 및 안전 유관기관 알림 및 구호조치 요청

.관람객, 종사자 임·직원 등 인적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

.피해지역 자료 반출계획에 따른 자료반출

.안전 확보시까지 물자 반입 금지, 인력 투입 금지

○ 복구대책

.안전보건 조직도에 의한 복구조직 운영

.각 부서별 임무에 따른 복구활동 실시

2. 사회재난 관리대책

2-1. 화재대책

가. 개요(목표)

○ 산불을 포함한 경내 모든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나. 주요내용

○ 예 방

. 일일보안점검 실시(최종 퇴실자, 당직근무자)

. 전시관 근무자(경비,미화,안내등)의 정기순찰 등 화재예방 활동 강화

. 산불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 및 예방 순찰 강화

○ 대 비

. 소방계획에 의한 수시 훈련 및 교육 실시

. 경내 비상전화 점검 및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 방화도로 등 화재발생 우려지역 소화전 및 소화시설물 점검

. 관내 위치한 독립기념관119센터와 화재진압 유기체계 운영 및 협조진화 체계 유지

○ 대 응

. 소방계획에 따른 관람객 및 경내종사자, 임직원 대피

. 유물, 자료 반출 계획에 의한 반출

. 동남소방서, 동남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구호활동 실시

. 소방계획에 의한 분대별, 개인별 진화·구호활동

○ 복구대책

. 안전보건 조직도에 의한 복구조직 운영

. 각 부서별 임무에 따른 복구활동 실시

3. 안전관리대책

3-1. 감염병대책

가. 개요(목표)

○ 다중이용시설인 독립기념관에서 전염병 및 질병 발생 사전 예방

○ 해충, 곤충, 쥐 등의 감염병 발생 우려있는 해충을 방제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나. 주요내용

○ 예 방

. 경내 모든 건물 및 건물 정기 방역소독 실시(동절기 월1회, 하절기 월2회)

○ 대 비

. 건물 및 오염지대 정기 방역소독

. 전문 소독업체를 지정하여 건물·토지 등 시설물 방역소독 및 사전 점검 실시

○ 대 응

. 감염병발생시 감염요인 격리 조치

. 관람객 입장 통제

. 지역보건소 등 관련시설 비상연락

. 감염(우려)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인원 소독 실시

○ 복구대책

. 안전보건 조직도에 의한 복구조직 운영

. 각 부서별 임무에 따른 복구활동 실시

3-2. 백련못 안전관리대책

가. 개요(목표)

○ 백련못(인공연못)에서 관람객·입장객의 익수(溺水) 사고 예방

○ 익수(溺水)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로 피해 최소화

나. 주요내용

○ 예 방

. 익수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심(1.2m내) 유지

. 봄, 가을 성수기에는 별도 순찰 인력을 배치, 순찰 강화

. 관람객이 많이 찾는 다리 난간, 수변데크 및 주요 위험 지역에 "위험" "추락주의" 를 알리는 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

. 난간이 없는 좌우 수변 지역에는 인제(人除)선을 설치하고 그 인제선에 "위험! 접근금지" 삼각 현수막 부착

○ 대 비

. 광복의 큰다리 등 주요 위치에 인명구조함 설치

. 인접 근무자(매점, 순찰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대 응(인접 근무자 행동 요령)

. 고함을 쳐 인근의 보호자 및 관람객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

. 인근에 비치된 인명장비보관함을 열고 주위(보호자, 관람객 등) 사람들과 구명튜브, 구명조끼 등을 던져 구조활동 전개

. 가능한 물 밖에서 구조활동을 하되, 부득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 및 구명튜브 활용 등으로 2차 사고 예방

. 위 자력구조를 진행함과 동시에 소방 안전센터(119), 의무실(504), 당직실(501) 등에 신속히 신고.

○ 복구대책(구조자 행동 요령)

.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였으나, 의식불명, 호흡곤란일 경우에는 인공호흡 실시

. 인공호흡의 효과가 없거나 완전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방 안전센터(119) 도움을 받아 병원 긴급 후송

제3장 재난대응별 상호협력 계획

1. 목 적

가. 재난 발생시 긴급 지원 및 협력 (요청)

나. 재난에 대한 인적.물적, 2차·3차 피해 최소화

다.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 최소화

라. 단기간 재난 복구를 통한 조기 업무 정상화

2.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팩스,이메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2-2100-0001~2	02-2100-5590~2	화재 등
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불종합상황실)			042-481-4119 (주,야)		산불
천안소방서 (독립119센터)	소방위 (센터장)	주영규	119 010-3008-8626	-	화재 등
천안시보건소	주사 (팀장)	주미응	041-521-2653	jmeangel @korea.kr	전염병 등
한국전력 천안지점	직원	윤택상	010-5451-3874	taeksang@ kepco.co.kr	전력
천안동남경찰서	순경	김아영	041-590-2257 010-8522-8159	eee2001 @hanmail.net	방범
육군 32사단 99연대 천안대대	대위 (군수과장)	전명구	041-521-3241 010-7142-3570	-	군사

38.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1. 재난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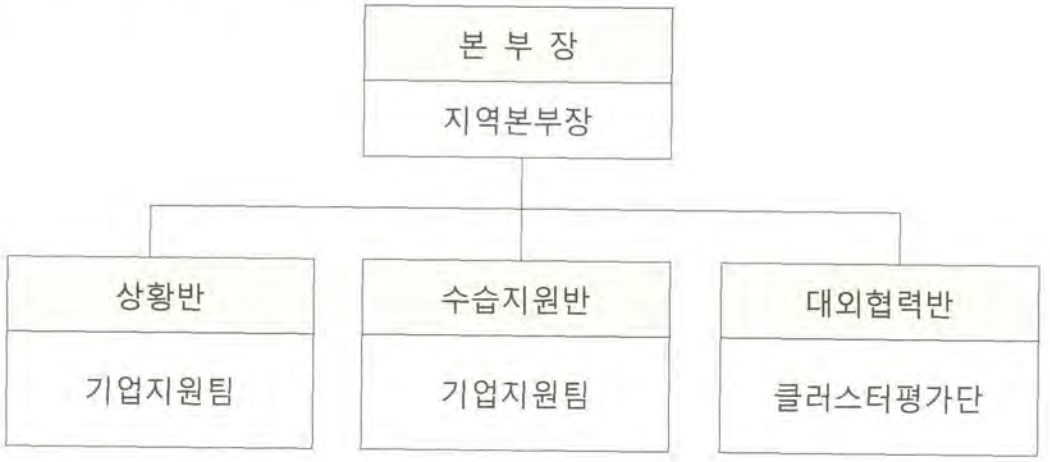

※ 변경가능

□ 임 무

○ 당직근무자로부터 상황 인수(재난 상황실 설치 이후 상황 유지)

○ 피해신고접수, 피해신고사정 등 정부(지자체) 피해수습 지원

○ 변동되는 상황파악 및 상황기록 유지(상황일지)

※ 시차별로 상황접수·보고 및 처리내용 기록

- 재난발생업체, 지자체, 관할 소방서와 연락유지
-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상황보고
- 상황실 설치 : 전화, FAX 등

○ 사고대책본부 임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임 무
상 황 반	ㅇ상황실 설치 및 사고대책 본부 운영 총괄 - 제반 현황자료 작성유지, 피해정보 수집, 피해복구 상황 보고 및 전파 -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ㅇ반 장 : 기업지원팀장- 사고대책본부 운영 총괄, 비상근무조 평성 ㅇ반 원 : 박종석 과장 - 피해복구 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일지 작성 김정언 대리 - 비상연락망 유지,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이고은 주임 - 업체연락체계 강화, 지자체 파견
수습지원반	ㅇ재해복구활동 총괄, 피해기업 지원, 피해신고 접수 등 ㅇ기타 피해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ㅇ반 장 : 박선웅 차장 - 재해복구 및 피해기업 지원 총괄 ㅇ반 원 : 이승수 대리 - 본사 및 지자체 수습지원책 요청 및 협조 박민규 주임 - 본사 및 지자체 수습지원책 요청 및 협조
대외협력반	ㅇ본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에 대응/언론보도자료 제공 ㅇ업체 애로사항 협조요청 ㅇ반 장 : 평가단 선임과장(차장) - 재해복구 및 피해기업 지원 총괄 ㅇ반 원 : 김장미 대리 - 재해복구활동 지원 및 사고 지원책 안내 정 석 주임 - 피해기업 인력 및 사고현장 환경정비 지원

* 정부(지자체) 사고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은 요청시에 파견

□ 보고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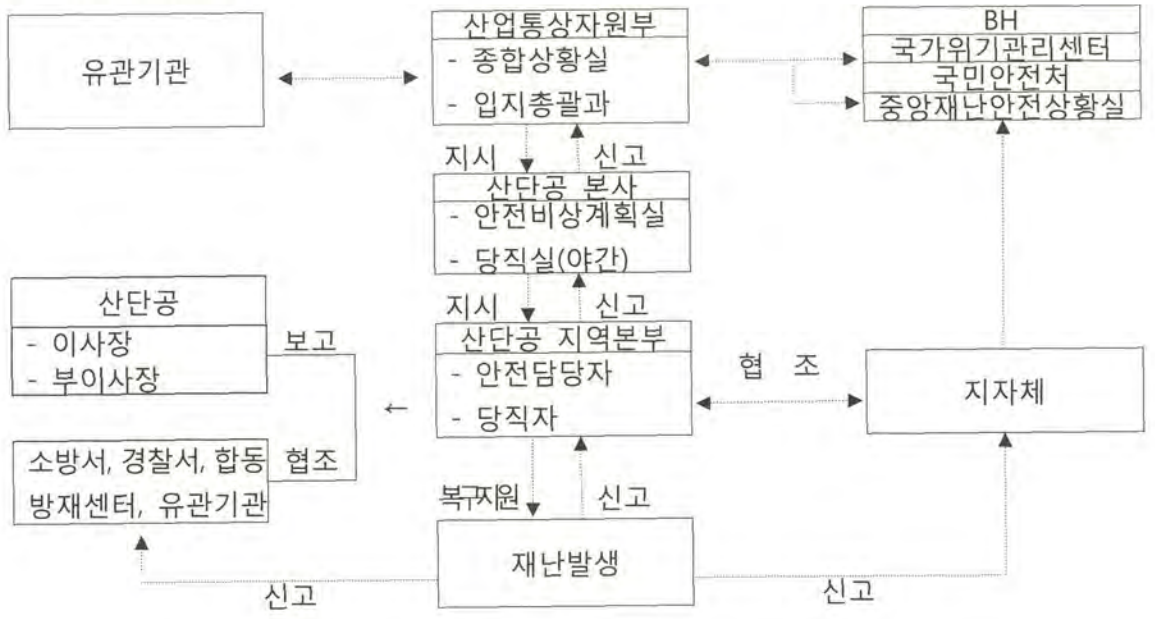

※ 사고발생시 : 지역본부 → 본사 → 산업부

2. 재난관리대책

□ 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조치

단 계	공단 대응조치
관 심 (Blue)	ㅇ평시 상황근무체계유지 ㅇ징후활동 주시
주 의 (Yellow)	ㅇ상황파악 및 상황보고 ㅇ징후활동 주시(계속) ㅇ필요시 상황근무 인원 보강
경 계 (Orange)	ㅇ재난상황실 또는 사고대책본부설치
심 각 (Red)	ㅇ지자체 사고대책본부와 협조체제 유지

3. 유관기관 협조사항

유 관 기 관	협 조 사 항
지방자치단체 (충남도, 천안시)	ㅇ지자체 결정사항 정보공유 등 협조 ㅇ입주업체 요구사항 건의
지방 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지방고용노동청 등	ㅇ추가 확산 방지을 위한 조치사항 등 협조 ㅇ입주업체 요구사항 건의 등
천안인주경영자협의회, 천안총무부서장 협의회	ㅇ업체간 지원 협조 ㅇ인근 입주업체 자체 안전 조치 ㅇ업체간 복구 지원 : 인원, 장비, 시설 등

4. 입주업체 상황전파

ㅇ 지자체 결정사항 중 입주기업* 해당사항 전파(가동중지, 대피 등)

* 입주업체 현황 첨부

5. 재난사고 상황보고

ㅇ 변동상황 발생시에 양식* 에 의거 보고

* 보고양식 첨부

6. 사고현장출동

o 안전담당자/당직자는 필요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파악

※ 사고현장 출입시 안전조치 선시행 또는 현장 안전확보 후 출입

o 자연재난시는 현장 출동을 자제하고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유지

o 현장 출동 직원은 피해상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사무실 근무자는 사고보고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본부, 본사로 보고

7. 연락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업지원팀 (천안)	이주석 팀장	070-8895-7610	ljs@kicox.or.kr
기업지원팀 (천안)	전찬호 대리 (안전담당자)	070-8895-7617	bodyshot@kicox.or.kr
당진지사	함영민 지사장	070-8895-7675	anstop@kicox.or.kr
당진지사	권중원 과장 (안전담당자)	070-8895-7676	486kjw@kicox.or.kr

첨부 1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천안시청 재난안전과	041-521-2417	041-521-2419
천안서북소방서	041-360-0213	041-360-0219
소방본부	041-635-5597	041-635-3078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041-661-5802 041-661-5803,5832	041-661-5810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65	041-560-2870
천안서북경찰서	041-536-1224	
대전지방기상청	042-862-0367	042-864-3108
한국전력 천안지사	041-560-2222	041-560-2292
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041-570-3311	041-574-7770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042-280-3412	042-258-6411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042-485-0019	042-486-6494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042-229-3403	042-229-3439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800	042-861-2309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042-220-0100	042-220-0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	041-570-3421	041-579-8907

첨부 2 천안 · 인주 · 천안5 외투기업 대표번호 및 팩스

업체명	업종	대표번호 (041~)	팩스번호(041~)
천안외국인투자지역			
프렉스에어서피스테크놀로지스㈜	전기전자	560-2404	564-6619
(주)에스티에프	운송장비	901-0334	901-0319
㈜ABB코리아	전기전자	529-2135	529-2132
㈜디아이디 1,2공장	전기전자	621-7541	621-6595
㈜신창코넥타	운송장비	564-7370	564-7373
코디엠㈜	전기전자	620-9006	620-9029
㈜서원전원	전기전자	522-8455	522-8458
스테코㈜	전기전자	629-7136	629-7492
브이테크놀로지코리아㈜	전기전자	564-6181	564-0133
하나레이져테크㈜	전기전자	564-0250	522-7477
한국GKN㈜	운송장비	620-6672	620-6670
㈜화이트스톤	전기전자	558-5800	558-5801
(주)티씨씨	전기전자	523-2248	523-2238
하나머티리얼즈㈜	전기전자	410-1013	410-1090
노바테크㈜1,2,3공장	전기전자	557-5727	557-5725
㈜티아이오토모티브 1,2공장	운송장비	560-2005	621-6718
(주)다은테크	전기전자	522-4001	522-4015
㈜타이스일렉	전기전자	580-1819	581-8009
(주)DIC코리아액정	석유화학	413-3004	417-2025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석유화학	629-8414	621-4673
에어리퀴드코리아㈜	석유화학	621-0102	621-0103
한국유미코아(유)1,2공장	석유화학	620-0246	620-0201
(유)한국타코닉1,2,3공장	석유화학	522-1858	522-1857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	석유화학	529-5615	621-9327
회명세미크린㈜	전기전자	620-2320	621-2367
회명파인테크㈜	전기전자	620-2379	621-2367
(주)드림텍 1,2공장	전기전자	589-4611	583-7722
미래산업㈜	기계	559-8912	559-8717
에드워드코리아㈜	기계	621-7070	621-7300
한부엔지니어링㈜	기계	621-0543	621-3068
한국첼리㈜	기계	621-0052	621-0057
회명디스플레이(주)	전기전자	620-2320	621-2367
인주외국인투자지역			
오웬스코닝비엠코리아(유)	기계	538-6600	538-6605
아딕센진공코리아(유)	기계	541-6277	541-6279
㈜우드브리지코리아	운송장비	537-2406	
㈜린데코리아 1,2공장	석유화학	538-5700	538-573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석유화학	538-3743	538-3799
(주)팸테크놀로지	석유화학	538-3782	538-3799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			
(주)MSC테크	기계	542-1215	546-5238
㈜코벤티아코리아	석유화학	558-2921	558-2923
㈜JCU코리아	석유화학	566-4095	566-8567

3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1. 재난 상황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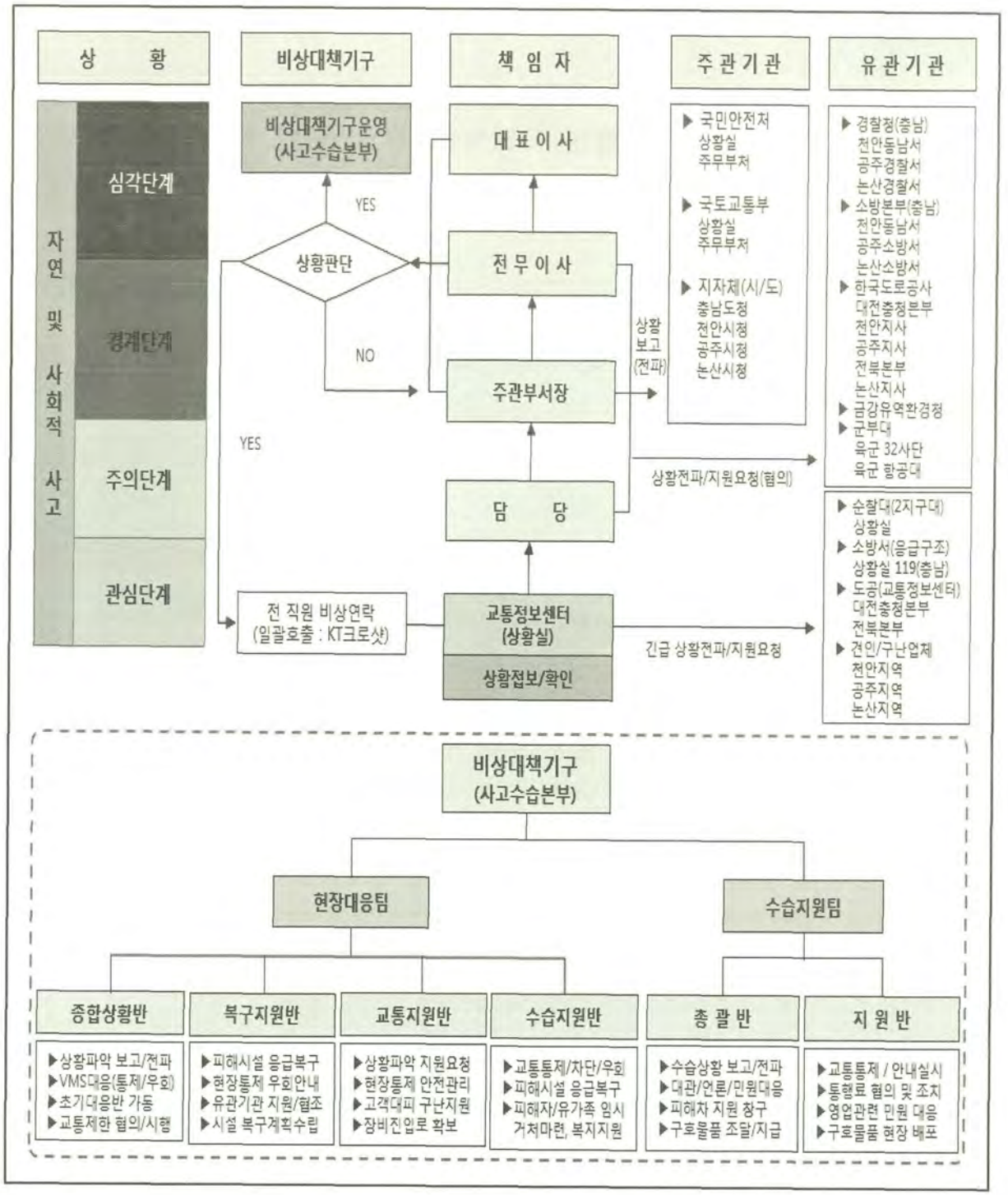

2. 위기단계별 대응절차

가. 관심단계(Blue)

□ 상황

안개예보 및 시정거리 1,000m이하, 강설확률 30%이상 예보, 시설물피해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유해물질 적재차량 사고, 도로 및 시설물의 이상 징후 등의 상황 발생시

□ 조치사항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근무기준</td><td>• 기본근무 :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table>
<tr><th>구 분</th><th>계</th><th>정보센터</th><th>도로순찰</th><th>유지보수</th><th>주말당직</th></tr>
<tr><td>주 간</td><td>15명</td><td>2</td><td>6</td><td>6</td><td>1</td></tr>
<tr><td>야 간</td><td>11명</td><td>2</td><td>6</td><td>2</td><td>1</td></tr>
</table>
• 대 책 반 : 각 부서 평시 근무체계 유지
• 산하기관 : 터널, 영업소, 휴게/주유소 24시간 근무체계 유지</td></tr>
<tr><td>조치사항</td><td>• 도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 이상 징후 발생 시 실무부서 담당자 즉시 통보
• 기상/도로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 순찰요원 간 교신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 도로/시설물 상태점검 및 취약구간 집중순찰
• 상황대비 인력 및 장비 추가투입상태 상시유지
• 유관기관(경찰/소방/견인업체 등) 통신망 유지
• 교통사고 등 Event 발생상황 신속대응체계 유지
– 교통상황 연계대응 / 도공(대전충청/전북), 국토청
•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의 신속성 유지
– 내/외부 비상연락망 점검(수시정비)
– 교통방송 등 재난문자 전송시스템 가동상태 유지</td></tr>
</table>

나. 주의단계(Yellow)

□ 상황

안개시정거리 250m이하, 대설예비특보 발효 및 적설량 3cm내외 예상, 호우/태풍주의보 발효, 시설물피해 발생 교통사고, 터널 내 교통사고로 정체발생, 위험물 적재차량 교통사고 등의 상황 발생시

□ 조치사항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근무기준</td><td>• 기본근무 : 관심단계 이상 근무체계 유지
<table>
<tr><th>구 분</th><th>계</th><th>정보센터</th><th>도로순찰</th><th>유지보수</th><th>주말당직</th></tr>
<tr><td>주 간</td><td>15명</td><td>2</td><td>6</td><td>6</td><td>1</td></tr>
<tr><td>야 간</td><td>11명</td><td>2</td><td>6</td><td>2</td><td>1</td></tr>
</table>
• 대 책 반 : <u>상황별 실무담당자 1명 이상</u>
– 사회재난 : 교통안전담당, 자연재난 : 실무부서담당
• 산하기관 : 터널, 영업소, 휴게/주유소 24시간 근무체계 유지</td></tr>
<tr><td>조치사항</td><td>• 도로 및 기상 모니터링 강화
– 도로 및 시상상황 실시간 정보제공
• 도로/시설물 취약지점 순찰 강화
– 사고예상구간 집중점검 및 거점관리
• 사고대비 장비/인력 추가투입 준비
– 긴급보수인력 및 장비 대기상태 점검
• 유관기관(경찰/소방/견인업체 등) 통신망 점검
• 교통사고 등 Event 발생상황시 신속대응
– 신속한 현장 도착 및 2차사고 예방
– 교통상황 연계대응 / 도공(대전충청/전북), 국토청
•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의 신속성 유지
– 내/외부 비상연락망 점검
– 교통방송 등 재난문자 전송시스템 가동상태 유지</td></tr>
</table>

다. 경계단계(Orange)

□ 상황

안개시정거리 100m이하, 대설주의보 발효, 호우/태풍경보 발효, 10분간 평균풍속 10~15m/s 예상,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사망1, 부상5) 발생, 터널 내 화재사고, 유해물질 누출사고 등의 상황 발생시

□ 조치사항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근무기준</td><td>• 기본근무 : 주의단계 이상 근무체계 유지
<table>
<tr><th>구 분</th><th>계</th><th>정보센터</th><th>도로순찰</th><th>유지보수</th><th>주말당직</th></tr>
<tr><td>주 간</td><td>15명</td><td>2</td><td>6</td><td>6</td><td>1</td></tr>
<tr><td>야 간</td><td>11명</td><td>2</td><td>6</td><td>2</td><td>1</td></tr>
</table>
• 대 책 반 : <u>분야별 비상근무체계 유지</u>
–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 2명 이상 근무
• 산하기관 : 터널관리소, 영업소, 휴게/주유소 24시간 근무
– 기관장 상황대응(교통통제, 우회, 안내 및 민원대응)</td></tr>
<tr><td>조치사항</td><td>• 상황파악 보고/전파
– 유관기관(경찰/소방/견인) 사고 상황전파(긴급출동요청)
– 내부 / 임원 및 각 부서장
– 외부 / 국토부 ITS센터, 상황별 주무부처 담당관
• 교통통제(차단/우회 등) 협의 및 대응
– 유관기관 연계대응(우회, 진입금지, 교통상황 안내 등)
– 산하기관(영업소 등) 차량통제 및 우회안내 지시
• 사고현장 초기대응 및 추가인력 비상연락망 가동
– 초기대응반 가동(현장통제 및 2차사고 예방)
– 긴급복구반 가동(피해시설 긴급복구 등)
– 추가 장비/인력 현장 출동조치(복구/통제/구난/구호작업)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추가지원 협의(경찰, 소방, 환경 등)
• 사고 상황 및 도로/기상상황 실시간 홍보(안전운행 유도)
– 도로전광판(VMS), 교통방송 등</td></tr>
</table>

라. 심각단계(Red)

□ 상황

안개시정거리 50m이하, 대설/태풍경보 발효, 10분간 평균풍속 25m/s 이상 예상, 교통사고로 사상자(사망3명, 부상20명 이상) 발생, 화약/유류/가스 및 유해물질 적재차량 사고 등의 상황 발생시,

□ 조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근무기준	• 기본근무 : 비상근무체계 가동 및 상황대응 – 사고발생 前 : 경계단계 이상 근무체계 유지 • 대 책 반 :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팀(반)별 대응체계 유지 • 산하기관 : 터널관리소, 영업소, 휴게/주유소 – 사고수습본부장 지휘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조치사항	• 피해현장 총력 복구시스템 가동 – 전 임직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 팀 및 반별 위기대응 임무 수행 • 피해현장 통행제한 실시(차단/우회/회차 등) – 인명구조/구난업무 총력 지원 – 긴급구조장비 진입로 확보 및 현장통제(안전관리) • 사고현장 사고 및 고립차량 신속한 대피유도 – 견인/구난차량 긴급 투입 – 우회로 확보(비상회차로 개방 등) • 사고수습상황 실시간 상황보고 및 전파(홍보) – 주관기관(국토부, 국민안전처) 상황보고 – 수습상황 방송요청 / 언론브리핑(필요시) • 피해시설물 긴급 복구시행 및 현장정리 – 복구 장비 및 인력 추가투입 총력복구 –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특수 장비 지원요청(필요시)

3. 반별 기본임무

구 분			책임자	기능 및 임무	
천안논산고속도로 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사 장	• 사고수습본부 총괄지휘 • 현장 지휘책임 및 현지 언론대응	
	현장대응팀	책임자	전 무	• 현장대응반 업무총괄 및 연락담당관 • 필요장비, 물자파악 및 요청, 유관기관 협의	
		종합상황반	교통안전실장	• 현장대응반 조별업무 총괄 • 현지 사고수습 상황파악/전파 • 지역 교통관리 실시(VMS상황대응) • 교통제한 협의 및 시행 (진입통제/우회/회차)	• 유관기관 지원요청/협조 • 초기대응반 가동 • 국토부 본부와 연락 체계유지 • 발생상황 기록관리
		복구지원반	도로운영부장	• 파손 방재시설 응급복구 • 복구장비 투입, 업무수행 지원 • 회차로 개방 및 차량우회 유도 • 사고원인조사 및 피해규모 파악 • 유관기관 장비 지원협의	• 복구현장 통제 및 교통 안내 • 유관기관 업무지원 • 복구계획 수립/보고
		교통관리반	교통안전과장	• 차량우회, 현장통제, 장비 진입로 확보 • 사고현장 2차사고 예방조치 • 구난/구호작업 지원	• 고객 대피유도 • 현장 상황파악 및 지원 요청
		사고수습반	시스템운영부장	• 파손 ITS시설 응급복구 • 교통통제, 차단, 우회지원 • ITS시설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계획 수립/보고	• 통신시설(무전기) 구축/관리 • 피해자 유가족 임시거처 마련 등 복지지원
	수습지원팀	책임자	상무	• 수습지원팀 업무총괄 • 대내외 수습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 지원협의	
		총괄반	경영지원부장	• 보도자료 작성/전파 • 유관기관(지자체 등) 지원 사항 협의 및 요청 • 구호물품 확보 및 현장지급	• 언론 및 민원대응 • 피해자 지원창구 역할 • 사고수습 및 지원 사항 종합보고
		지원반	영업지원부장	• 영업소 교통통제 및 우회안내 • 통행료 조정(면제) 협의 및 조치 • 통행료 정산 관련 민원대응	• 구호물품 현장지급 지원•휴게소 안내방송 및 진출차량 통제(필요시)

4. 상황대응 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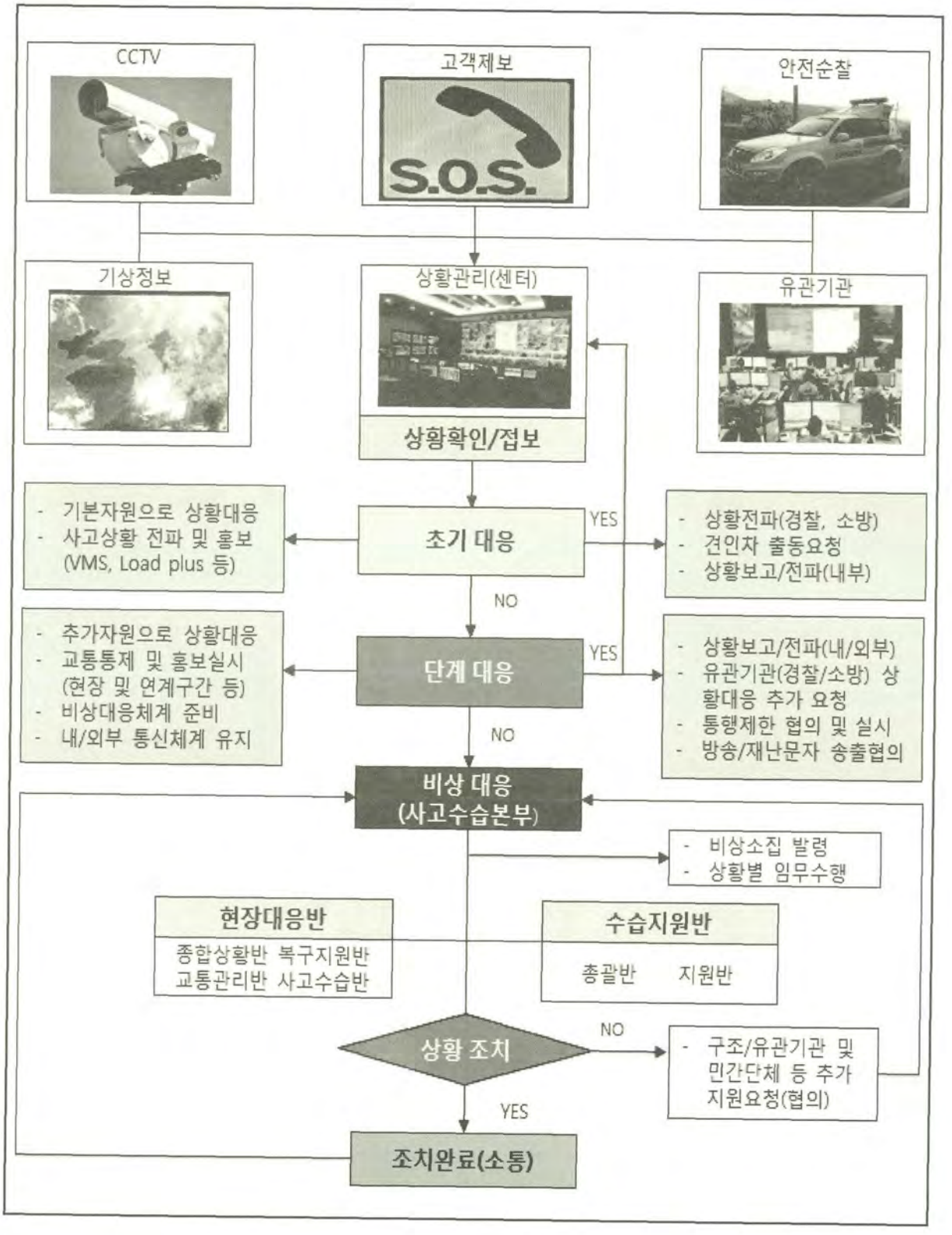

5. 비상연락망

근 무 반		소 속	직급	성 명	연락처
지역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임 원	사장	김 종 호	041) 850-6750
현장대응팀	책 임 자	임 원	전무	이 희 선	041) 850-6756
	종합상황반	교통안전실	부장	신 규 정	041) 850-6811
	복구지원반	도로운영부	부장	김 석 태	041) 850-6840
			부장	정 경 웅	041) 850-6841
			부장	조 용 호	041) 850-6845
			차장	박 재 현	041) 850-6842
			차장	조 현 민	041) 850-6855
	교통관리반	교통안전실	과장	송 달 섭	041) 850-6785
	사고수습반	시스템운영부	부장	이 선 귀	041) 850-6830
			차장	곽 대 승	041) 850-6835
수습지원팀	책 임 자	임 원	상무	원 순 환	041) 850-6750
	총 괄 반	경영지원부	부장	임 윤 섭	041) 850-6760
			부장	이 재 영	041) 850-6781
			부장	김 기 정	041) 850-6761
	지 원 반	영업지원부	부장	이 진 광	041) 850-6780
			부장	김 규 식	041) 850-6812
교통정보센터(상황실)					041) 850-6820

40. 충청남도개발공사

Ⅰ 재난 · 안전관리 총괄

Ⅰ. 목 표

○ 재난관리 및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한 우리공사 재난 · 안전 시스템 구축

○ 재난발생 시 신속 · 효율적인 대응 · 복구대책 수립으로 위기 대응능력 제고

Ⅱ. 추진방향

1. 예방위주의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관리

가.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강화

나. 재난 위험요인의 지속적 발굴과 능동적 대응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

2. 능동적인 재난관리

우리공사 관련 사업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 ·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또는 방지

3. 신속 · 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정립

가. 각종 재난 · 안전상황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 · 보고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협조체제 강화

나.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다. 신속한 수습복구로 2차 피해 확산방지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4. 즉각 대응 및 긴급 복구체계 확립

가. 재난발생시 신속 · 정확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응급복구

나.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복구 물자동원 등 대응체계 유지와 긴급복구체계 확립

다. 각 사업장 특성에 부합되는 재난 예방대책 강구를 통해 재난발생 최소화 및 방재대책 구축

5.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대형재난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 ·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나. 주기적인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실시로 위기관리체계 준비 및 재난징후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 배양

6. 세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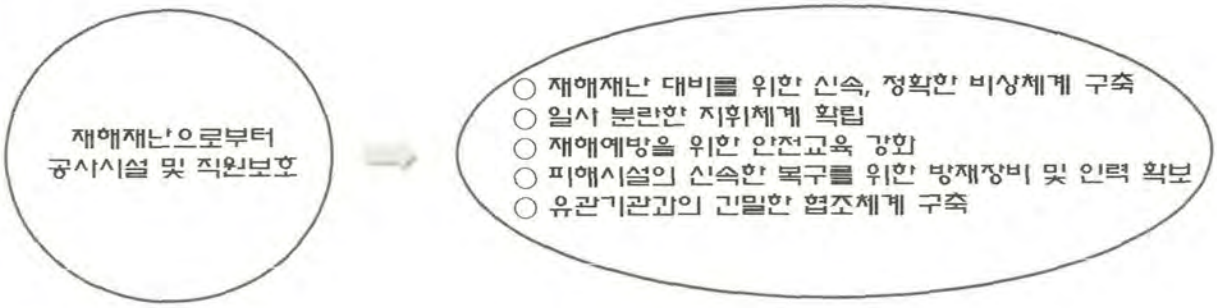

Ⅱ 재난 · 안전관리체계

가. 재해재난대책 근무체제를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백색), 경계(청색), 비상(적색)의 3단계 체재로 구분운영

구분 / 단계별	조 건	근무조 편성	근 무 방 법	근무시간
준비단계 (백 색)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필수요원	· 사업담당 현장대기 · 각 반별 사업장 재해위험 지구 점검 및 사전정비	18:00 ~ 09:00
경계단계 (주 황 색)	호우 및 태풍경보 발효 시	부서원의 1/2	·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각 사업장 재해위험지구 순찰강화 및 유사시 수방자재 지급 · 근무 조 현장대기	18:00 ~ 09:00
비상단계 (적 색)	경계단계 발령 후 1일 이상 지속 시	전부서원	· 전 직원 비상근무 · 각 사업장 수시 상황보고 · 피해발생시 복구 및 지원반 즉시투입	18:00 ~ 09:00

나. 재해(태풍,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지진 등)대비체계

구 분	기 준	근무인원	주요 특보사항
1단계-백색 (준비단계)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필수직원 (담당외1명)	· 호우주의보 : 12시간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주의보 :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태풍주의보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의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단계-주황색 (경계단계)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담당부서원 1/2근무	· 호우경보 : 12시간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경보 : 24시간 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 태풍경보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3단계-적색 (비상단계)	경계단계발령 후 1일 이상 지속 시	부서원 전원근무	· 경보사항이 1일 이상 지속 시

Ⅲ 재난 · 안전 조직도 및 역활

1. 재난안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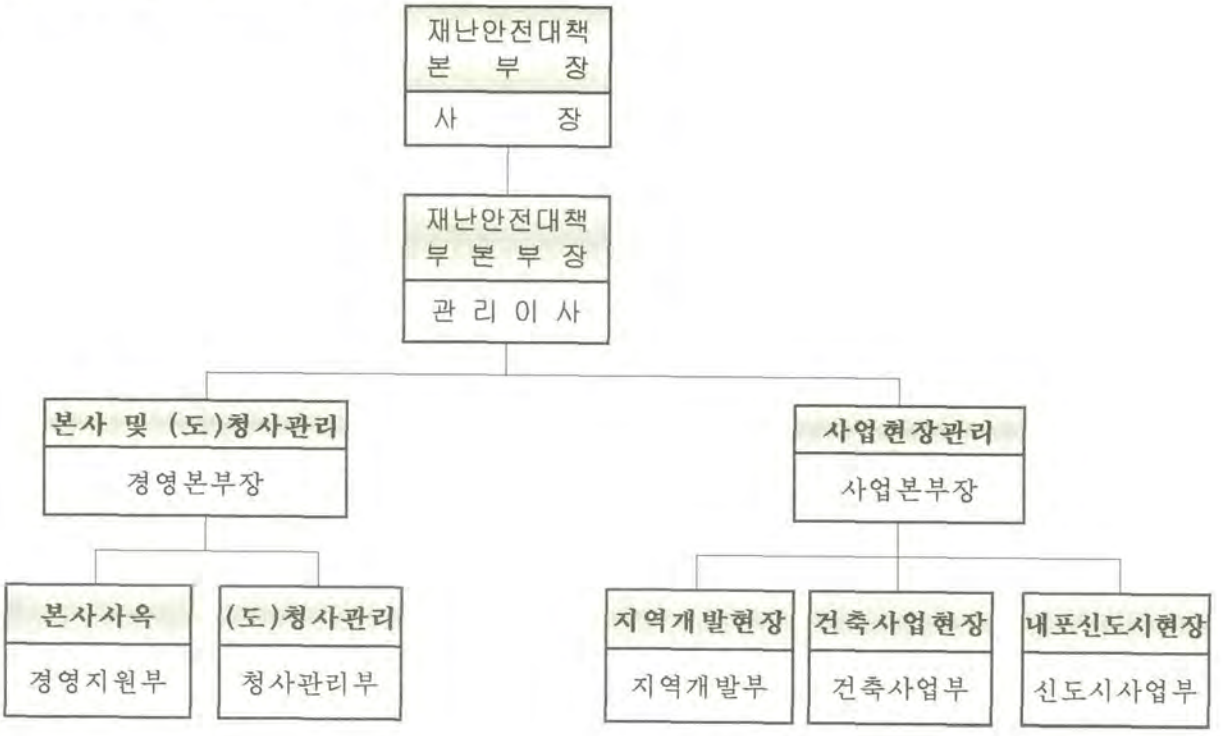

2. 재난복구조직의 역할

구 분	관 련 업 무
총 괄 (사 장)	○ 본부 업무 총괄, 긴급사태 발생시 회의소집, 의사결정 승인
통 제 관 (관리이사)	○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사항 총괄 및 조정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지원
업 무 총 괄 (경영본부장)	○ 위기관련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 주관 ○ 관련사항 대처 및 비상대책 시행
진 압 반 (사업본부장)	○ 재난 상황 인지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전파 ○ 수시로 상황을 전파와 대응사항을 전파하여 피해 최소화 조치
재난안전관리 책 임 자 (각 부서장)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 수립 ○ 소관사업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활동

Ⅳ 유형별 관리대책 및 비상연락망

1. 주요 재난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재해유형	예방 / 대비대책	대응 / 복구대책
풍 수 해	○ 재해정보 전달을 위한 각종 통신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보	○ 비상재해대책반 편성 및 운영 ○ 응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
설 해	○ 공사현장 및 관리시설물 등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 추진 ○ 제설재료 등 사전 확보	○ 제설상황실 설치 ○ 피해상황조사 및 복구
동 절 기	○ 구조물 위의 눈 제거 ○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 설치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 비상연락망

소 속	직 위	이 름	담 당	연 락 처
충남개발공사	사 장	강 익 재	재 난 관 리 총 괄	041)630-7801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	한 용 태	재 난 관 리 통 제	041)630-7804
경 영 본 부	본 부 장	박 일 신	본사 및 (도)청사 재난관리 총 괄	041)630-7810
사 업 본 부	본 부 장	임 성 빈	사업현장 재난관리 총괄	041)630-7830
경 영 지 원 부	부 장	강 신 보	본 사 사 옥 재 난 관 리	041)630-7851
청 사 관 리 부	부 장	유 병 문	(도) 청 사 재 난 관 리	041)630-8401
지 역 개 발 부	부 장	박 종 복	토 목 현 장 재 난 관 리	041)630-7831
건 축 사 업 부	부 장	황 인 석	건 축 현 장 재 난 관 리	041)630-7841
신도시사업부	부 장	이 선 형	내 포 신 도 시 재 난 관 리	041)630-7711

4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1. 재난대응체계



〔실무반 주요임무〕

구 분	구 성(명)	주요 임무
상황실	실장(1) 및 반원(3)	· 비상발령 및 피해현황 등 정보파악, 대책강구 · 당사 및 협력업체 인력, 장비 동원태세 확인 등
행정반	반장(1) 및 반원(3)	· 상황실, 직원 비상동원 등에 관련한 행정지원 등
복구반	반장(1) 및 반원(3)	· 복구대책 수립, 건설재해 현장 복구총괄
홍보반	반장(1) 및 반원(1)	· 회사의 공식적 보도문건 작성 및 언론홍보

※ 실무반 편성.인원 구성 등은 실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2. 주요 재난유형

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나. 전력수요급증 및 발전설비 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다. 인력부족 및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 등

3. 재난유형별 업무담당 및 연락처

유 형	주관부서	전화번호
자연재해(풍수해, 지진 등)	안전품질실 재난안전팀	070-7511-1812
전력수요 급증	발전처 복합운영팀	070-7511-1331
설비고장 · 광역정전	발전처 화력운영팀	070-7511-1321
노조쟁의 등 인력부족	경영관리처 노사협력팀	070-7511-1232
사이버테러	보안정보전략처 정보보안팀	070-7511-1911

4. 재난안전관리 목표

◈ 어떠한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전력공급 장애예방 및 설비피해 최소화

◈ 참여와 소통의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가. 예방대책

○ 월별 중점 안전관리대상 지정 운영

- 자체 점검반 구성 및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중점점검 시행

〔월별 중점 안전관리대상 지정현황〕

구분	공 통	발 전	건 설
1월	화재감시 및 소화전 설비점검	옥외설비 안전점검	공사현장 결빙개소 안전대책
2월	각종 안전표지 설치상태 점검	취수구 설비	구조물, 현장도로 침하 등 안전점검
3월	해빙기 대비 설비안전점검과 병행(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4월	봄철 산불예방 홍보	옥외설비 관리상태	건설현장 화재예방 대책
5월	안전장구 점검	매설 및 지하설비	맨홀 방호대책
6월	하절기 풍수해 대비 설비안전점검과 병행(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7월	휴가철 대비 교통안전교육	태풍, 폭우대비 침수 가능설비 점검	우기대비 붕괴 및 유실 우려지역 점검
8월	배수설비 관리상태	유독물 및 위험물 저장 설비 일제점검	대형 건설장비 전도방지 대책
9월	가설설비 일제점검	전기설비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고소작업 안전대책
10월	위험물 저장소 일제 점검	임시동력 및 전기설비 점검	굴착공사 안전점검
11월	동절기 대비 설비안전점검과 병행(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12월	월동장비 확보상태	한파 및 폭설관련 설비점검	화기사용 현장 점검

○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재난안전사고 예방 사업소 정기 안전교육 시행
  · 사업소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및 소내 방송 실시
- 기상특보 발효 시 안전활동 강화
  · 본사 및 사업소 상황실 설치 및 비상근무 실시
  ·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비(수중펌프 등) 정상 작동유무 점검
  · 수방장비 및 응급복구용 자재의 사전확보 및 관리상태 점검

나. 대비대책

○ 가상고장 모의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태세 강화(매월 1회 시행)

○ 재난재해 대비 안전한국훈련('16.5월) 및 자체 재난대응훈련 시행(매월)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시기 지정 및 관리강화(보령화력 등 44개소)

점 검 명		시기(빈도)	내 용
경영진「안전점검의 날」행사 참여		분기 1회	경영진 참여
「안전점검의 날」안전점검		매월	중점 안전관리대상 지정
특정시기, 계절별 안전점검		해빙기, 하·동절기	시설별 합동점검반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A급) 안전점검		반기 1회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발전설비 고장복구 모의훈련		월 1회	발전소별 설비운영부서
재난대응 훈련		월 1회	사업소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훈련
특별 안전 의날	화재예방 강조의 날	3.15	재난안전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 시행
	가설구조물 안전강조의 날	3.27	
	추락사고 예방강조의 날	8.12	
	가스안전 강조의 날	9.30	
	전기안전 강조의 날	12.23	

○ 방재장비 사전확보 및 유관기관 상호 지원체제 확립

- 복구자재, 장비, 인력동원의 사전확보 및 정비
- 응급조치 및 복구 활동시 관계기관(업체)과의 상호지원

다. 대응대책

○ 재난비상 시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비상단계	판단기준	근무인원 및 장비
관심	○ 상황발생과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낮을 시	○ 평시근무체계 유지 - 상황과 관련된 감시활동 - 비상연락망 등 점검
주의	○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으나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시 ○ 기상주의보 발효 시	○ 근무인원 - 평상근무 체제유지 및 소속직원 소재파악 - 해당부서 관계인원 비상대기 및 상황파악 • 주간 : 재난안전팀, 야간 : 당직자
경계	○ 상황이 긴박하여 재난 발생 우려가 농후하나, 그 대책 실행에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시 ○ 기상경보 발효 시	○ 근무인원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해당부서 관계인원의 1/2이상 비상근무 (필요시 교대근무) • 상황실 : 4명(팀장1, 팀원3)
심각	○ 상황이 급박하여 재난발생이 확실하며, 지체 없이 그 대책실행에 돌입해야 할 중대사태 시 ○ 기상예보가 전력설비 피해 및 전력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예상 될 때	○ 근무인원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해당부서 관계인원 전원 비상근무 (필요시 교대근무) • 상황실 : 4명(팀장1, 팀원 3)

○ 응급대응체제 확립

- 직원의 비상소집, 정보수집 연락체제 확립 및 대책본부 설치 등

○ 발전소·건설소별 긴급 출동반 편성 운영

- (대　　상) 보령화력, 서천화력 등 7개 중부발전 관할 사업소
- (운영방법) 발전소별 정비부서 기술인력 2~3명
- (장　　비) 각종 펌프류 및 지게차, 비상전원 등 확보
- (임　　무) 재난 상황에 따라 운전부서와 협조 응급조치 시행

○ 대형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활동 강화

- (대　　상) 신보령화력건설본부(충남 보령시)
- (운영시기) '16년 1 ~ 12월(연중)
- (운영방법) 협력기업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준수여부 점검, 건설현장 안전담당자 및 현장대리인 상주상태 수시점검, 작업 전 현장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철저

라. 복구대책

○ 재해재난 비상대책본부 구성 · 운영

- 재난발생시 초동단계 긴급출동, 응급조치 복구지원
- 보고 단계(정부 및 유관기관)
  - · 재해발생 보고 : 재해발생 시 즉시보고
  - · 일일상황 보고 : 1일 2회 보고(06:00, 17:00)
  - · 상황종료 보고 : 재해원인이 소멸된 후 즉시보고
  - · 복구완료 보고 : 재해시설의 응급복구 완료시 보고

○ 재난피해 발전설비 복구 지원

- 인력 동원
  - · 직원 비상소집 및 긴급출동반 현장투입
  - · 비상 복구조 현장상주 협력업체까지 확대운영
- 전력생산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발전설비 복구 시행
  - · 긴급 복구자재 조달 및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필요시 전력그룹사 동일.유사 사업소 발전설비 긴급자재 조달

- 소방서, 경찰서 및 지자체 등 협조 · 연락체계 유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2-2100-3220, 550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상황실)	044-203-4002~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041-635-4743
충청남도 보령시	재해대책본부	041-930-3419
	소방서	041-930-0423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처 재난관리부	061-345-8601
한국수력원자력	위기관리실 재난안전팀	02-3456-7412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 재난안전팀	070-8898-1612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 재난관리팀	02-2161-1772
한국남부발전	기술본부 안전품질팀	070-7713-8752
한국동서발전	안전품질처 재난관리팀	070-5000-1442
전력거래소	경영지원실 총무팀	061-330-6323

2016년 안전관리계획

- 발행일 : 2016년 1월
- 발행처 : 충청남도 안전정책과
- 전 화 : (041) 635-5621
- 팩 스 : (041) 635-3079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인 쇄 : 동방상사 (041)338-9520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